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0509-01

정책-고령친화-2011-53

##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 및 산업분석**

2011·11

**보 건 복 지 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제 출 문

이 보고서를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 및 산업분석』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1. 1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 장 고 경 화

■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주관연구책임자 : 유 재 성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연 구 진 : 김 기 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임 달 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박 종 숙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장 현 숙 (남서울대학교)

박 조 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제6장 고령친화산업 시장규모 및 활성화 과제 / 129

1. 고령친화산업의 시장 규모	129
2. 고령친화산업의 전략품목 및 시장규모	137
2.1 전략품목 선정기준	137
2.2 고령친화산업별 전략품목	137
2.3 고령친화산업 전략품목의 시장규모	138
3. 고령친화산업별 활성화과제	141

## 제7장 고령친화산업 중장기 발전전략 / 146

1. 필요성	146
2. 비전 및 발전 로드맵	147
2.1 비전	147
2.2 발전 로드맵	147
3.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과제	149
3.1 고령친화산업 육성 추진체계	149
3.2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과제	151

# Ⅱ 제2부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산업분석 및 활성화 과제

## 제1장 고령친화 요양산업 / 161

1. 개요 및 범위	161
1.1 고령친화 요양산업의 범위	161
1.2 고령친화 요양산업의 특징	162
2. 시장분석	163
2.1 세계 시장 변화	163
2.2 국내 환경 변화	170
2.3 국내 시장규모 및 전망	179
3. 전략품목 및 지원정책	182
3.1 전략품목 선정	182
3.2 제약요인 및 정책과제	184
3.3 정책 기대효과	186

## 제2장 고령친화 의약품산업 / 187

1. 개요 및 범위	187
1.1 고령친화 의약품산업의 범위	187
1.2 고령친화 의약품산업의 특징	189
2. 시장분석	190
2.1 세계 시장 변화	190
2.2 국내 환경 변화	197
2.3 국내 시장규모 및 전망	224

3. 전략품목 및 지원정책 .....	229
3.1 전략품목 선정 .....	229
3.2 제약요인 및 정책과제 .....	232
3.3 정책 기대효과 .....	237

### 제3장 고령친화 식품산업 / 239

1. 개요 및 범위 .....	239
1.1 고령친화 식품산업의 범위 .....	239
1.2 고령친화 식품산업의 특징 .....	240
2. 시장분석 .....	240
2.1 세계 시장 변화 .....	240
2.2 국내 환경 변화 .....	250
2.3 국내 시장규모 및 전망 .....	258
3. 전략품목 및 지원정책 .....	261
3.1 선정기준 및 전략품목 선정 .....	261
3.2 제약요인 및 정책과제 .....	264
3.3 정책 기대효과 .....	268

### 제4장 고령친화 화장품산업 / 269

1. 개요 및 범위 .....	269
1.1 고령친화 화장품산업의 범위 .....	269
1.2 고령친화 화장품산업의 특징 .....	270
2. 시장분석 .....	270
2.1 세계 시장 변화 .....	270
2.2 국내 환경 변화 .....	277
2.3 국내 시장규모 및 전망 .....	290
3. 전략품목 및 지원정책 .....	294
3.1 전략품목 선정 .....	294
3.2 제약요인 및 정책과제 .....	296
3.3 정책 기대효과 .....	297

### 제5장 고령친화 의료기기산업 / 298

1. 개요 및 범위 .....	298
1.1 고령친화 의료기기산업의 범위 .....	298
1.2 고령친화 의료기기산업의 특징 .....	300
2. 시장분석 .....	302
2.1 세계 시장 변화 .....	302
2.2 국내 환경 변화 .....	308
2.3 국내 시장규모 및 전망 .....	317
3. 전략품목 및 지원정책 .....	324
3.1 전략품목 선정 .....	324
3.2 제약요인 및 정책과제 .....	327
3.3 정책 기대효과 .....	330

## 제6장 고령친화 용품산업 / 331

1. 개요 및 범위 .....	331
1.1 고령친화 용품산업의 범위 .....	331
1.2 고령친화 용품산업의 특징 .....	333
2. 시장분석 .....	333
2.1 세계 시장 현황 .....	333
2.2 국내 환경 변화 .....	335
2.3 국내 시장규모 및 전망 .....	340
3. 전략품목 및 지원정책 .....	343
3.1 전략품목 선정 .....	343
3.2 제약요인 및 정책과제 .....	345
3.3 정책 기대효과 .....	347

## 제7장 고령친화 금융산업 / 348

1. 개요 및 범위 .....	348
1.1 고령친화 금융산업의 범위 .....	348
1.2 고령친화 금융산업의 특징 .....	349
2. 현황분석 .....	349
2.1 세계 시장 변화 .....	349
2.2 국내 환경 변화 .....	354
2.3 국내 시장규모 및 전망 .....	368
3. 전략품목 및 지원정책 .....	371
3.1 전략품목 선정 .....	371
3.2 제약요인 및 정책과제 .....	373
3.3 정책 기대효과 .....	374

## 제8장 고령친화 주거산업 / 375

1. 개요 및 범위 .....	375
1.1 고령친화 주거산업의 범위 .....	375
1.2 고령친화 주거산업의 특징 .....	376
2. 시장분석 .....	377
2.1 세계 시장 변화 .....	377
2.2 국내 환경 변화 .....	384
2.3 국내 시장규모 및 전망 .....	401
3. 전략품목 및 지원정책 .....	410
3.1 전략품목 선정 .....	410
3.2 제약요인 및 정책과제 .....	411

## 제9장 고령친화 여가산업 / 415

1. 개요 및 범위 .....	415
1.1 고령친화 여가산업의 범위 .....	415
1.2 고령친화 여가산업의 특징 .....	416

2. 시장분석 .....	418
2.1 세계 시장 변화 .....	418
2.2 국내 환경 변화 .....	428
2.3 국내 시장규모 및 전망 .....	443
3. 전략품목 및 지원정책 .....	449
3.1 전략품목 선정 .....	449
3.2 제약요인 및 정책과제 .....	451
3.3 정책 기대효과 .....	455

## 제10장 고령친화 기타산업 / 456

1. 고령친화 농업 .....	456
1.1 지원 현황 .....	456
1.2 시장 현황 .....	457
1.3 고령친화 농업 현황 및 결과 .....	461
2. 고령친화 교통산업 .....	463
2.1 지원 현황 .....	463
2.2 시장 현황 .....	464
3. 고령친화 교육산업 .....	466
3.1 지원 현황 .....	466
3.2 시장 현황 .....	467
4. 고령친화 장묘산업 .....	475
4.1 지원 현황 .....	475
4.2 시장 현황 .....	477
4.3 고령친화 장묘산업 현황 및 결과 .....	480

## 참고문헌 / 483

## 부록 / 475

1. 고령친화산업 욕구조사 설문지 .....	489
2. 고령친화산업 통계 .....	504



## 표 목 차

표 1-2-1	세계 연령계층별 인구비중 전망 .....	20
표 1-2-2	세계 및 한국의 노년부양비 전망 .....	21
표 1-2-3	세계 고령화 속도 .....	21
표 1-2-4	OECD 국가의 건강수명 순위 .....	22
표 1-2-5	국가별 건강지출 비율(GDP) .....	23
표 1-2-6	OECD 국가 고령자 고용 비율 .....	24
표 1-2-7	노인인구 및 구성비 추이 .....	26
표 1-2-8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 추이 및 전망 .....	28
표 1-2-9	지역별 노인관련 주요 지표의 변화 .....	29
표 1-2-10	독거노인 현황 .....	29
표 1-2-11	고령가구 추이 .....	30
표 1-2-12	노인 취업상태 현황 .....	30
표 1-2-13	취업노인의 종사 직종 .....	31
표 1-2-14	전체 인구 대비 베이비붐 세대 비중 .....	32
표 1-2-15	베이비붐 세대의 라이프스타일 .....	33
표 1-2-16	가구주 연령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전국, 2인 이상) .....	34
표 1-2-17	가구주 연령별 가구당 소비지출 비중 .....	34
표 1-2-18	일반적 특성별 현재 의사진단 만성질환수 .....	35
표 1-2-19	연령별 약 또는 건강식품 복용여부 및 종류 .....	36
표 1-2-20	연도별 노인진료비 현황(2005년-2010년) .....	36
표 1-2-21	요양병원 심사실적(2007년-2010년) .....	37
표 1-2-22	연도별 요양기관 종별 청구기관수 현황 .....	37
표 1-3-1	제1차 및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추진과제 비교분석 .....	48
표 1-3-2	제1차 및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세부내용 비교분석 .....	49
표 1-3-3	제1차 기본계획 중 고령친화산업 육성분야 성과 요약 .....	52
표 1-3-4	ATP의 사업별 기금 현황 .....	60
표 1-3-5	복지용구 개발사업 지원분야 및 연구과제 .....	62
표 1-3-6	노안장애인 보조기구 개발사업 연도별 지원 현황 .....	63
표 1-3-7	노안장애인 보조기구개발지원 지원내용 .....	64
표 1-4-1	고령자 대상 실태조사 현황 요약 .....	66
표 1-4-2	고령자 대상 통계자료 세부 현황 .....	67
표 1-4-3	응답자 일반 특성 .....	84
표 1-5-1	일본의 고령친화산업 세부 유형 .....	115
표 1-5-2	미국의 고령친화산업 세부 유형 .....	116
표 1-5-3	프랑스의 고령친화산업 세부 유형 .....	116
표 1-5-4	호주의 고령친화산업 세부 유형 .....	117
표 1-5-5	고령친화산업의 유형(정부측) .....	118

표 I-5-6	고령친화산업의 유형(학계)	119
표 I-5-7	고령친화산업 분류 현황에 대한 비교분석	121
표 I-5-8	고령친화산업의 세부 분류 현황 예시	123
표 I-5-9	고령친화산업 범위 설정	125
표 I-5-10	고령친화산업 분류체계 설정	127
표 I-6-1	고령친화산업별 시장규모 및 전망	131
표 I-6-2	고령친화 영양산업 시장규모 추정 및 전망	131
표 I-6-3	고령친화 의약품산업 시장규모 추정 및 전망	132
표 I-6-4	고령친화 의료기기산업 시장규모 추정 및 전망	133
표 I-6-5	고령친화 화장품산업 시장규모 추정 및 전망	133
표 I-6-6	고령친화 식품산업 시장규모 추정 및 전망	134
표 I-6-7	고령친화 여가산업 시장규모 추정 및 전망	134
표 I-6-8	고령친화 금융산업 시장규모 추정 및 전망	135
표 I-6-9	고령친화 주거산업 시장규모 추정 및 전망	136
표 I-6-10	고령친화 용품산업 시장규모 추정 및 전망	136
표 I-6-11	고령친화산업 35개 전략품목	138
표 I-6-12	고령친화산업별 전략품목 시장규모	140
표 I-6-13	고령친화산업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과제	143
표 II-1-1	고령친화 영양산업의 범위	162
표 II-1-2	OECD 주요국가 천명당 활동의사수 추이	163
표 II-1-3	OECD 주요국가 천명당 활동간호사수 추이	163
표 II-1-4	미국 고령자 영양산업의 기업 현황	164
표 II-1-5	개호 예산 추이(2002년-2010년)	167
표 II-1-6	개호 및 지원이 필요한 인원 수 추이(2002년-2009년)	167
표 II-1-7	2010년 개호 및 지원 서비스 지출	168
표 II-1-8	개호서비스 공급자 추이	169
표 II-1-9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법 제23조)	170
표 II-1-10	노인전문병원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171
표 II-1-11	설립구분별 장기요양기관 현황	172
표 II-1-12	급여종류별 장기요양기관 현황	174
표 II-1-13	연도별 노인전문병원 현황	175
표 II-1-14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 및 인정자 현황	176
표 II-1-15	연도별 급여종류별 총요양비 현황	177
표 II-1-16	연도별 급여종류별 요양급여비 현황	178
표 II-1-17	고령친화 영양산업 시장규모	181
표 II-1-18	고령친화 영양산업 전략품목 시장규모	181
표 II-1-19	고령친화 영양산업 시장규모 전망(예측)	182
표 II-1-20	고령친화요양산업 전략서비스군 도출	183
표 II-1-21	고령친화요양산업 전략품목 도출	183
표 II-1-22	고령친화 영양산업 정책과제	186
표 II-2-1	지역별 세계 의약품 시장규모	192
표 II-2-2	약효군별 세계 시장규모	193

표 II-2-3	세계 상위 10개 의약품 기업 판매 현황	194
표 II-2-4	2009년 매출규모별 제약회사 분포	203
표 II-2-5	연도별 의약품 수출입 현황	206
표 II-2-6	연도별 의약품(원료/완제) 수출입 현황	208
표 II-2-7	연도별 투자주체별 연구개발 투자재원	208
표 II-2-8	연도별 국가 총 연구개발 재원의 구성현황	209
표 II-2-9	부처별 연구개발 재원의 구성현황	210
표 II-2-10	지원단계별 국가 총 연구개발 재원의 구성현황	211
표 II-2-11	의약품산업의 매출액,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집약도	211
표 II-2-12	의약품산업 자체사용 연구비 연구단계별 현황	212
표 II-2-13	의약품산업 자체사용 연구비 용도별 현황	213
표 II-2-14	국내 신약개발 현황	215
표 II-2-15	국내 천연물신약 개발 현황	216
표 II-2-16	연도별 의약품(원료/완제) 생산 현황	217
표 II-2-17	연도별 의약품 약효군별 생산실적	219
표 II-2-18	노인의료서비스 내원일수 현황 : 질병분류별	220
표 II-2-19	연령별 주요 만성질병 유병률(의사진단 유병률)	221
표 II-2-20	성별 연령별 의약품 사용량(2009년)	222
표 II-2-21	성별 연령별 약품비(2009년)	222
표 II-2-22	주요 일부 의약품 성별 연령별 사용량(2009년)	223
표 II-2-23	주요 일부 의약품 성별 연령별 약품비(2009년)	223
표 II-2-24	약효군별 65세 이상 진료일수 및 급여일수 비중	226
표 II-2-25	연도별 고령친화 의약품산업 시장규모	227
표 II-2-26	연도별 고령친화 의약품산업 전략품목 시장규모	228
표 II-2-27	고령친화 의약품산업 시장규모 전망(예측)	229
표 II-2-28	상병대분류별 노인인구의 비중 및 해당 약효군	230
표 II-2-29	65세 이상 노인의 다빈도 질환	230
표 II-2-30	고령친화 의약품산업의 유망품목 평가결과	232
표 II-2-31	고령친화 의약품산업 정책과제	237
표 II-3-1	세계 국가별 식품시장 규모 순위	242
표 II-3-2	연도별 세계 기능성식품 시장현황	243
표 II-3-3	건강기능식품 분류별 매출액 현황	245
표 II-3-4	유니버설 디자인 푸드 생산 현황	246
표 II-3-5	각국별 특수영양식품의 분류	247
표 II-3-6	유니버설 디자인 푸드 상품등록현황 (505품목2010. 5월말 현재)	249
표 II-3-7	저작 단계별 UDF 제품	250
표 II-3-8	국내산업 대비 식품제조산업 비중	252
표 II-3-9	식품 유형별 생산 현황	253
표 II-3-10	연도별 식품제조산업 수출입 현황	255
표 II-3-11	건강기능식품 업소수 추이	255
표 II-3-12	건강기능식품 연도별 국내 생산실적	256
표 II-3-13	2009년 품목군별 수입건수 상위 10개 품목 수입 현황	257

표 II-3-14	국내 고령친화 식품산업 시장규모	259
표 II-3-15	국내 고령친화 식품산업 전략품목 시장규모	260
표 II-3-16	고령친화 식품산업 시장규모 전망(예측)	260
표 II-3-17	고령친화식품 전략품목 선정을 위한 설문 항목	261
표 II-3-18	고령친화식품 전략품목 설문조사 결과	262
표 II-3-19	고령친화식품 전략품목 설문조사 배점기준표	262
표 II-3-20	고령친화식품 전략품목 선정 평가표	263
표 II-3-21	최종 고령친화식품 전략품목 선정	264
표 II-3-22	고령친화 식품산업 정책과제	267
표 II-4-1	유형별 화장품 시장규모(2006년-2010년)	271
표 II-4-2	지역별 화장품 시장규모(2006년-2010년)	272
표 II-4-3	주요국의 화장품 시장규모(2006년-2010년)	273
표 II-4-4	2010년 세계 100대 화장품 기업 현황(2010년 매출액 기준)	274
표 II-4-5	세계 지역별 향노화제품	275
표 II-4-6	생산규모별 화장품 업체 현황	278
표 II-4-7	화장품 제조업체 운영인원 현황	278
표 II-4-8	제품 유형별 화장품 생산실적	279
표 II-4-9	연도별 한방화장품 생산실적	280
표 II-4-10	2009년 업체별 한방화장품 생산실적	280
표 II-4-11	연도별 화장품 수출입 실적(1994년-2009년)	281
표 II-4-12	우리나라 주요 수출국 현황(2007년-2009년)	282
표 II-4-13	우리나라 주요 수입국 현황(2007년-2009년)	283
표 II-4-14	공시 화장품기업의 연도별 매출액 현황	284
표 II-4-15	기능성 화장품 연도별 생산 현황	285
표 II-4-16	화장품산업 자체사용연구비의 사용단계 및 용도별 분포(2009년)	287
표 II-4-17	내국 주요출원인의 특허출원동향(화장품)	289
표 II-4-18	연령대별 화장품 사용 현황(2010년 조사)	291
표 II-4-19	고령친화 화장품산업 시장규모	292
표 II-4-20	국내 고령친화 화장품산업 전략품목 시장규모	293
표 II-4-21	고령친화 화장품산업 시장규모 전망(예측)	293
표 II-4-22	고령친화 화장품산업의 유망 품목	294
표 II-4-23	고령친화 화장품의 유망 제품	295
표 II-4-24	고령친화 화장품산업 정책과제	297
표 II-5-1	지역별 세계 의료기기 시장규모	303
표 II-5-2	2009년 국가별 의료기기 시장규모	304
표 II-5-3	치과용 의료기기 세계 시장 현황 (2002-2009)	306
표 II-5-4	치과용 의료기기 세계 시장 예측 (2009-2016)	307
표 II-5-5	인공수정체 유럽 시장 예측 (2005-2015)	308
표 II-5-6	연도별 의료기기 제조업체 및 종사자 현황	309
표 II-5-7	의료기기 제조업체 생산규모별 생산 현황	310
표 II-5-8	국내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입 현황(의료기기산업 시장현황)	313
표 II-5-9	연도별 의료기기 특허출원 동향	314

표 II-5-10	주요국가의 의료기기 세부분류별 특허출원 현황	315
표 II-5-11	고령친화 의료기기 분류	317
표 II-5-12	국내 고령친화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입 현황(고령친화 의료기기산업 시장현황)	321
표 II-5-13	고령친화 의료기기 분류별 생산실적	322
표 II-5-14	고령친화 의료기기 전략품목 시장규모	323
표 II-5-15	고령친화 의료기기산업 시장규모 전망(예측)	324
표 II-5-16	고령친화 의료기기 유망품목	325
표 II-5-17	고령친화 의료기기 유망품목 평가	326
표 II-5-18	고령친화 의료기기 전략품목	327
표 II-5-19	고령친화 의료기기산업 정책과제	330
표 II-6-1	고령친화용품 품목분류	332
표 II-6-2	복지용구산업 시장동향과 연평균 신장률	334
표 II-6-3	2002년 메디케어 보장구 급여 실적	335
표 II-6-4	고령친화용품산업 지역분포와 종사자 수	336
표 II-6-5	고령친화용품 총 생산 및 수입 현황(168개 조사 대상 업체 기준)	339
표 II-6-6	설문조사에 따른 업체의 매출액 현황(2009년 기준)	340
표 II-6-7	2009년 고령친화용품산업 시장규모	342
표 II-6-8	2009년 고령친화용품산업 전략품목 시장규모	342
표 II-6-9	고령친화용품산업 시장규모 전망(예측)	343
표 II-6-10	고령친화 용품산업 전략품목 선정기준	343
표 II-6-11	고령친화 용품산업의 전략품목 선정	344
표 II-6-12	고령친화 용품산업 정책과제	346
표 II-7-1	고령친화 금융산업의 범위	348
표 II-7-2	공공지출(10% 감축과 노인빈곤률1) 증가	350
표 II-7-3	국가별 보험료 현황	350
표 II-7-4	한국·일본·미국 가계의 자산구성비 비교	351
표 II-7-5	일본가계의 자산구성 추이	351
표 II-7-6	자산 중 실물자산과 금융자산의 비중	351
표 II-7-7	주요국 가계 금융자산의 구성	352
표 II-7-8	사적연금가입률의 국제비교	353
표 II-7-9	GDP 대비 사적 연기금 자산비율	354
표 II-7-10	60세 이상 가구주 대상 생활비(용돈) 마련 방법(2009년)	355
표 II-7-11	가구주 연령별 노후준비에 대한 생각(2009년)	357
표 II-7-12	금융 및 보험업 수익성 지수(상위 5대 기업)	357
표 II-7-13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	358
표 II-7-14	우리나라 가계의 금융자산 구성	362
표 II-7-15	우리나라 중·고령자 가계의 자산구성	362
표 II-7-16	개인금융자산의 규모(가구주 연령계층별 자산현황)(2010년)	363
표 II-7-17	공적연금 재정추계	364
표 II-7-18	건강보험 재정추계	364
표 II-7-19	고령인구 연금수령 여부	365
표 II-7-20	연도별 국민건강보험 65세 이상의 급여율 추이	365

표 II-7-21	사적연금시장의 규모(GDP 대비) .....	366
표 II-7-22	생명보험 연령별 가입률(2007년) .....	366
표 II-7-23	생명보험 상품별 가입률(2007년) .....	367
표 II-7-24	연도별 노령(퇴직)연금 수급자 현황 .....	367
표 II-7-25	베이비붐 세대의 국민연금 가입실태(2009년 기준) .....	367
표 II-7-26	2010년 고령친화 금융산업 시장규모 .....	370
표 II-7-27	고령친화 금융산업 전략품목 시장규모 .....	370
표 II-7-28	고령친화 금융산업 시장규모 전망(예측) .....	371
표 II-7-29	고령친화 금융산업 전략품목 선정기준 .....	372
표 II-7-30	고령친화 금융산업의 전략품목 선정 .....	372
표 II-7-31	고령친화 금융산업 정책과제 .....	373
표 II-8-1	고령친화 주거산업의 대상 .....	375
표 II-8-2	고령친화 주거산업의 범위 .....	376
표 II-8-3	연령계층별 주택 건축 연수 분포 .....	380
표 II-8-4	서비스 포함 고령자형 주택제도 개요 .....	381
표 II-8-5	고령화율 전망(미일 비교) .....	382
표 II-8-6	서포트 주택(supportive housing)의 종류와 특징 .....	383
표 II-8-7	복지법개정 주요골자 및 노인복지주택 관련 조항 개정의 변화 .....	387
표 II-8-8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기준(국민임대주택) .....	390
표 II-8-9	고령자전용 임대주택 사업계획 승인 실적 .....	391
표 II-8-10	일반가구 중 고령자가 세대주인 가구 비중(1985~2010년) .....	392
표 II-8-11	2010년 고령자 연령대별 거주 유형 .....	394
표 II-8-12	지역별 주택 개조 희망여부와 희망사항(노인개인) .....	396
표 II-8-13	2010년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현황 .....	397
표 II-8-14	고령자전용 임대주택 사업계획 승인 실적 .....	399
표 II-8-15	연도별 항목별 주택건설실적 .....	400
표 II-8-16	연도별 총조사 주택규모 .....	401
표 II-8-17	2010년 고령친화 주거산업 신규주택관련 시장규모 .....	403
표 II-8-18	총가구대비 개보수희망 고령자 가구비율 변화 .....	405
표 II-8-19	연도별 고령친화 주거산업 리모델링관련 시장규모(전략품목) .....	405
표 II-8-20	2010년 고령친화 주거산업 시장규모 .....	406
표 II-8-21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주택공급 예정주택 수 .....	406
표 II-8-22	고령친화 주거산업 신규주택관련 시장규모 전망(예측) .....	407
표 II-8-23	고령친화 주거산업 리모델링관련 총가구대비 개보수희망고령자 가구비율 전망(예측) .....	409
표 II-8-24	고령친화 주거산업 리모델링관련 시장규모 전망(예측) .....	409
표 II-8-25	고령친화주거산업 전략품목 .....	411
표 II-8-26	고령자 주거안정법 주요내용 .....	413
표 II-8-27	고령친화 주거산업 정책과제 .....	414
표 II-9-1	연도별 일본 세대주의 연령계층별 월평균 교양오락 소비지출 .....	419
표 II-9-2	세대주의 연령별 소비지출 (2인 이상 세대의 연령군 1개월간 지출) .....	421
표 II-9-3	일본 실버세대가 생각하는 즐거움 (대상 : 65세 이상) .....	422
표 II-9-4	크루즈 여행객수 추이 .....	422

표 II-9-5	일본 숙박 관광여행자의 비율 (2005년) .....	423
표 II-9-6	일본 숙박 관광여행의 연간실시횟수 (경험자의 평균, 2005년) .....	423
표 II-9-7	세대별 인터넷 이용률(개인) .....	424
표 II-9-8	연도별 미국 소비자의 연령별 엔터테인먼트 소비지출 .....	425
표 II-9-9	2010년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	429
표 II-9-10	연도별 여가시간 및 비용 .....	430
표 II-9-11	여가활동 유형(2010년) .....	431
표 II-9-12	연령별 주당 TV 시청 시간 .....	435
표 II-9-13	2009년 연령별 공연장 및 전시장 입장률 .....	436
표 II-9-14	가구주 연령별 서적 및 기타인쇄물 항목 월평균 가계수지(전국, 2인 이상) .....	436
표 II-9-15	연령별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	437
표 II-9-16	문화(콘텐츠)산업 매출액 및 종사자수 현황 .....	439
표 II-9-17	2009년 국내 스포츠산업 시장규모 .....	441
표 II-9-18	2009년 스포츠산업 교육서비스업 고객유형별 매출액 비중 .....	441
표 II-9-19	연도별 여행관광산업 시장규모 .....	443
표 II-9-20	2009년 고령친화 문화(콘텐츠)산업 시장규모 .....	446
표 II-9-21	2009년 가구당 월평균 운동관련 용품/서비스 가계수지(전국, 2인 이상) .....	447
표 II-9-22	2009년 고령친화 스포츠산업 시장규모 .....	447
표 II-9-23	2009년 한국을 방문하는 연령별 외국인관광객 .....	447
표 II-9-24	2009년 고령친화 여행관광산업 시장규모 .....	448
표 II-9-25	2009년 고령친화 여가산업 전략품목 시장규모 .....	448
표 II-9-26	고령친화 여가산업 시장규모 전망(예측) .....	449
표 II-9-27	고령친화 여가산업 전략품목 선정기준 .....	450
표 II-9-28	고령친화 여가산업의 전략품목 선정 .....	451
표 II-9-29	고령친화 여가산업 정책과제 .....	455
표 II-10-1	연령별 농가인구 추이 .....	458
표 II-10-2	농업 경영주 연령별 농가수 .....	459
표 II-10-3	농림어업 생산액 현황 .....	460
표 II-10-4	농림어업 품목별 생산액 현황 .....	461
표 II-10-5	고령친화 농업 시장규모 .....	462
표 II-10-6	고령친화 농업 시장규모 전망(예측) .....	463
표 II-10-7	고령자 대상 외출 시 주 교통수단 .....	465
표 II-10-8	고령자 대상 외출 시 불편한 사항 .....	465
표 II-10-9	우리나라 교육산업별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	468
표 II-10-10	우리나라 교육산업별 매출액 현황 .....	469
표 II-10-11	고령층(60세 이상) 평생학습 참여율 .....	469
표 II-10-12	2007년 비형식 평생학습 기관별 참여 비율 .....	470
표 II-10-13	2008년 평생학습의 개인적 성과 .....	470
표 II-10-14	2008년 평생학습의 사회적 성과 .....	471
표 II-10-15	2008년 평생학습 정보 접근 경로 분포 비율 .....	471
표 II-10-16	일반적 특성별 평생교육 경험 여부 및 실시기관 .....	472
표 II-10-17	일반 특성별 향후 평생교육 참여희망 및 희망 교육내용 .....	472

표 II-10-18	연령별 평생교육프로그램 미희망 이유 .....	473
표 II-10-19	2008년 평생학습 참여 장애요인 .....	473
표 II-10-20	2008년 평생학습 참여희망 프로그램 .....	474
표 II-10-21	장례식장 및 관련 서비스업 현황 .....	478
표 II-10-22	공설묘지 이용현황 .....	478
표 II-10-23	법인묘지 이용현황 .....	479
표 II-10-24	화장시설 및 봉안당 이용현황 .....	479
표 II-10-25	2010년 고령친화 장묘산업 시장규모 .....	482
표 II-10-26	고령친화 장묘산업 시장규모 전망(예측) .....	482



## 부 록 목 차

부표 1	노인의료복지시설 총괄표 .....	504
부표 2	재가노인복지시설 총괄표 .....	505
부표 3	64세 이상 가구주 대상 동, 별거형태 변화 추이 .....	506
부표 4	연령별 복용하는 약이나 건강식품 가지수 .....	507
부표 5	2009년 연령별 1인당 연간 총요양비 크기별 실인원 및 진료비 현황 .....	508
부표 6	급여종류 및 설립구분별 장기요양기관 현황 .....	509
부표 7	연도별 급여종류별 총요양비 현황 .....	510
부표 8	연도별 급여종류별 요양급여비 현황 .....	510
부표 9	연도별 급여종류별 장기요양 급여실적 .....	511
부표 10	세계 상위 15개 의약품 기업 판매 현황 .....	512
부표 11	2009년 세계시장 매출 상위 15대 의약품 판매 현황 .....	513
부표 12	2009년 세계시장 매출 상위 15대 의약품 판매 전년대비 성장률 .....	514
부표 13	국내 주요 의약품 업체별 매출액 .....	515
부표 14	국내 주요 의약품 연령별 매출액 .....	515
부표 15	노인의료서비스 수요 현황(질병분류별) .....	516
부표 16	연령별 주요 만성질환 유병률(의사진단 유병률) .....	518
부표 17	2007년 의약품산업 기술수준 현황 .....	525
부표 18	2009년 국가별 의료기기 시장규모 .....	526
부표 19	2009년도 기준 생산액 상위 10대 품목 현황 .....	527
부표 20	2009년도 기준 수출액 상위 10대 품목 현황 .....	527
부표 21	2009년도 기준 수입액 상위 10대 품목 현황 .....	528
부표 22	주요 국가의 출원연도별 의료기기 특허출원동향 .....	528
부표 23	2009년 고령친화의료기기 일본수입회사 수입금액별 30위 업체 .....	529
부표 24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	530
부표 25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매출액 현황 .....	530
부표 26	2010년 화장품 유형별 생산실적 .....	531
부표 27	2009년 매출액 기준 세계 식품제조기업 현황 .....	534
부표 28	국가별 가공식품 시장규모 .....	538
부표 29	건강기능식품 국가별 매출액 현황 .....	540
부표 30	유기농 식품의 연도별 수입 현황 .....	541
부표 31	건강기능식품 연도별 국내 생산실적 .....	541
부표 32	2009년 유기농 식품의 국가별 수입 현황 .....	542
부표 33	국가별 가계의 오락, 문화비 지출 .....	543
부표 34	국가별 정부의 오락, 문화비 지출 .....	544
부표 35	일반적 특성별 노후 희망활동(자원봉사) .....	545
부표 36	일반적 특성별 노후 희망활동(종교활동) .....	545
부표 37	일반적 특성별 노후 희망활동(자아개발) .....	546
부표 38	일반적 특성별 노후 희망활동(여가 및 취미활동) .....	546
부표 39	일반적 특성별 노후 희망활동(근로활동) .....	547

부표 40	일반적 특성별 여가생활 불만족 이유	547
부표 41	문화(콘텐츠)산업 수출입 현황	548
부표 42	일반적 특성별 단체활동 유형별 횟수별 참여율	549
부표 43	일반적 특성별 단체활동 유형별 참여율	550
부표 44	희망하는 가족여가활동 : 부모-자녀와 함께(2010년)	550
부표 45	희망하는 가족여가활동 : 배우자와 함께(2010년)	551
부표 46	연령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전국, 2인 이상)	551
부표 47	생활비(용돈) 마련하는 방법(2009년)	552
부표 48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 여부(2010년)	552
부표 49	노후생활에 중요한 것(1순위)(2010년)	553
부표 50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553
부표 51	연령별 가입종별 가입자 현황	553
부표 52	연도별 수급자 현황	554
부표 53	65세 이상 공적연금 수급자	554
부표 54	사회적 보호서비스에 대한 욕구(주된 응답)	555
부표 55	국가별 보험료 현황	556
부표 56	월평균 부모 부양비 지출(2010년)	557
부표 57	일반적 특성별 지난 1년 동안의 낙상률 및 낙상 횟수	558
부표 58	연령별 지난 1년 동안의 낙상 장소(중복응답)	558
부표 59	연령별 낙상 이유(중복응답)	559
부표 60	65세 이상 가구주 대상 동, 별거형태 변화추이	559
부표 61	연령별 선호하는 노후부양방법(2010년)	560
부표 62	노인주거복지시설 현황	560
부표 63	우리나라 주택보급률(2005년, 2010년)	561
부표 64	연도별 인터넷 이용 비율(인터넷 이용자수 100명당)	562
부표 65	20대 대비 연령별 정보화 수준	563
부표 66	60세 이상 고령자 인터넷 이용률 상위 10위(%)	564
부표 67	연령대별 인터넷 쇼핑물 이용률(%)—만12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	564
부표 68	연령대별 인터넷뱅킹 이용률(%)—만12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	564
부표 69	연령대별 인터넷 주식거래 이용률(%)—만18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	564
부표 70	연령대별 전자책 이용 의향(%)—만12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	564
부표 71	농업 경영주 연령별 농업 경영 기간(2009년)	565
부표 72	연령계층별 농림어업 취업자	566
부표 73	시도별 귀농, 귀촌 현황	567
부표 74	연령별 귀농, 귀촌 현황	567
부표 75	2010년 귀농현상	568
부표 76	2010년 연령별 귀농현상	568
부표 77	2010년 귀농 후 농업 주종사 분야	568
부표 78	2010년 귀농 전 직업현황	568
부표 79	농촌 계속 거주 의향	569
부표 80	농촌 계속 거주 이유	569
부표 81	비형식 평생교육기관 총개황	570

## 그림 목 차

그림 1-2-1	세계 연령계층별 인구비중 전망 .....	19
그림 1-2-2	연령층별 전국 추계인구 .....	25
그림 1-2-3	2010년 지역별 65세 이상 인구비율 .....	27
그림 1-2-4	한국인의 기대수명(전국) .....	31
그림 1-2-5	전체 인구 대비 베이비붐 세대 비중 .....	32
그림 1-3-1	일본 실버산업 시장 규모 .....	61
그림 1-3-2	일본의 복지용구 시장규모 추이 .....	62
그림 1-4-1	지원이 필요한 산업분야 .....	85
그림 1-4-2	지원이 필요한 제품분야 .....	86
그림 1-4-3	요양서비스를 받고 싶은 장소 .....	86
그림 1-4-4	재가서비스 중 받고 싶은 서비스 유형 .....	87
그림 1-4-5	건강지원서비스 중 받고 싶은 서비스 유형 .....	87
그림 1-4-6	요양시설 선택시 고려사항 .....	88
그림 1-4-7	노후 소득을 위한 준비사항 .....	88
그림 1-4-8	노후준비를 하지 않는 이유 .....	89
그림 1-4-9	금융 및 자산관리 정보원천 .....	89
그림 1-4-10	노후준비를 위해 가장 필요한 서비스 .....	90
그림 1-4-11	평소에 주로 하는 여가활동 .....	90
그림 1-4-12	향후에 하고 싶은 여가활동 .....	91
그림 1-4-13	평소에 주로 하는 여가활동과 향후에 하고 싶은 여가활동 비교 .....	91
그림 1-4-14	여가활동을 하기 어려운 주된 이유 .....	92
그림 1-4-15	노후에 필요한 여가지원서비스 .....	92
그림 1-4-16	노후에 여가활동을 함께 하고 싶은 사람 .....	93
그림 1-4-17	현재 거주주택의 소유 여부 .....	93
그림 1-4-18	현재 보유주택의 형태 .....	94
그림 1-4-19	현재 보유주택의 연수 .....	94
그림 1-4-20	현재 보유주택에서 노후를 보낼 의향 .....	95
그림 1-4-21	현재 보유주택에서 노후를 보내는 이유 .....	95
그림 1-4-22	현재 보유주택의 불편사항 .....	96
그림 1-4-23	노후에 살고 싶은 주거 형태 .....	96
그림 1-4-24	현재 거주 주택과 향후 희망하는 거주주택 비교 .....	97
그림 1-4-25	노후에 집을 선택시 중요 고려사항 .....	97
그림 1-4-26	노후에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서비스 .....	98
그림 1-4-27	현재 사용중인 고령친화제품의 종류 .....	98
그림 1-4-28	고령친화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 .....	99
그림 1-4-29	고령친화제품 구입 의향 .....	99
그림 1-4-30	고령자용 정보통신기기 구입 의향 .....	100
그림 1-4-31	고령자용 여가용품 구입 의향 .....	100

그림 1-4-32	고령자용 패션용품 구입 의향 .....	101
그림 1-4-33	고령자용 가전제품 구입 의향 .....	101
그림 1-4-34	향후(노후)에 고령자용 제품 미구매 이유 .....	102
그림 1-4-35	고령친화제품 선택시 고려사항 .....	102
그림 1-4-36	현재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의 종류 .....	103
그림 1-4-37	현재 의약품 복용시 불편사항 .....	103
그림 1-4-38	고령자용 식품 구입의향 .....	104
그림 1-4-39	고령자용 식품 중 구입의향이 있는 식품 유형 .....	104
그림 1-4-40	평소 선호하는 식품의 종류 .....	105
그림 1-4-41	노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식품의 종류 .....	105
그림 1-4-42	평소 선호하는 식품과 노후 필요한 식품의 종류 비교 .....	106
그림 1-4-43	현재 사용중인 화장품의 종류 .....	106
그림 1-4-44	향후(노후)에 사용하고 싶은 화장품의 종류 .....	107
그림 1-4-45	현재 사용중인 화장품과 향후(노후)에 사용하고 싶은 화장품 비교 .....	107
그림 1-5-1	기존연구와 본연구 산업범위 비교 .....	126
그림 1-6-1	고령친화산업 시장규모 전망 .....	130
그림 1-6-2	고령친화산업별 비중 변화 .....	130
그림 1-7-1	고령친화산업 발전 로드맵 .....	148
그림 1-7-2	고령친화산업 육성 추진체계 .....	150
그림 2-1-1	미국의 고령자 요양산업 시장규모 .....	164
그림 2-1-2	미국의 전 산업 대비 고령자 요양산업의 매출액 비중 .....	165
그림 2-1-3	미국의 메디케어 이용자 현황(1975년-2009년) .....	165
그림 2-1-4	요양서비스 기관 현황 .....	171
그림 2-1-5	설립구분별 장기요양기관 현황 .....	172
그림 2-1-6	급여종류별 재가요양기관 현황 .....	173
그림 2-1-7	급여종류별 시설요양기관 현황 .....	173
그림 2-1-8	연도별 급여종류별 총요양비 현황 .....	175
그림 2-1-9	연령대별 장기요양 급여실적 현황 .....	177
그림 2-1-10	연도별 연령별 1인당 연간 총요양비 크기별 진료비 비율 .....	179
그림 2-2-1	의약품산업 세계시장 규모 .....	191
그림 2-2-2	지역별 세계 의약품 시장규모(비중) .....	192
그림 2-2-3	세계 상위 10개 의약품 기업 판매 현황 .....	194
그림 2-2-4	2009년 세계시장 매출 상위 10대 의약품 판매 현황 .....	195
그림 2-2-5	연도별 제약회사 매출액 분포 .....	202
그림 2-2-6	국내외 의약품 기업의 성장성 관련 지표 비교 .....	204
그림 2-2-7	국내외 의약품 기업의 수익성 관련 지표 비교 .....	205
그림 2-2-8	국내외 의약품 기업의 안전성 관련 지표 비교 .....	205
그림 2-2-9	2009년 국내 주요 의약품 업체의 매출액 현황 .....	206
그림 2-2-10	연도별 의약품 수출입 증가율(전년대비) .....	207
그림 2-2-11	연도별 투자주체별 투자재원 .....	209
그림 2-2-12	의약품산업 연도별 연구개발 투자 현황 .....	212
그림 2-2-13	의약품산업 자체사용 연구비 연구단계별 현황 .....	213

그림 II-2-14	의약품산업 자체사용 연구비 용도별 현황	214
그림 II-2-15	연도별 의약품 생산 현황	217
그림 II-2-16	연도별 의약품 생산 증가율(전년대비)	218
그림 II-3-1	식품산업 세계시장 규모	241
그림 II-3-2	2009년 식품산업 지역별 시장규모	241
그림 II-3-3	2009년 기준 세계 식품산업체 매출액 순위	242
그림 II-3-4	연도별 세계 기능성식품 시장현황	243
그림 II-3-5	2008년 건강기능식품 국가별 매출액 현황	244
그림 II-3-6	건강기능식품 분류별 매출액 증가율 현황	244
그림 II-3-7	일본의 특별용도식품 허가표시와 젤리유형의 고령자식품	248
그림 II-3-8	국내 식품산업 생산현황	252
그림 II-3-9	식품 유형별 생산 현황	253
그림 II-3-10	2009년 식품제조산업 수출입 현황	254
그림 II-3-11	건강기능식품 연도별 국내 생산실적	256
그림 II-3-12	특수용도식품 품목수 및 종업원수 현황	257
그림 II-4-1	화장품 산업의 범위	269
그림 II-4-2	화장품산업 세계시장 규모	271
그림 II-4-3	미국, 유럽지역 연령대별 뷰티관련 관심도(2006)	276
그림 II-4-4	연도별 화장품 제조업 생산 추이	277
그림 II-4-5	기능성 화장품 세부 유형별 점유율 추이	285
그림 II-4-6	화장품산업 연구개발지원 관련 조사대상 기업규모별 분포(2009년)	286
그림 II-4-7	화장품산업 연도별 종업원수와 매출액의 변화 추이	286
그림 II-4-8	화장품산업 연도별 연구개발 투자 현황	287
그림 II-4-9	화장품 특허출원건수	288
그림 II-4-10	출원연도별 내·외국인의 화장품 특허출원건수	288
그림 II-4-11	내·외국인의 화장품 세부분야별 특허점유율	289
그림 II-5-1	고령친화의료기기의 범위	300
그림 II-5-2	고령친화 의료기기 산업의 특징	301
그림 II-5-3	세계 의료기기 시장규모	302
그림 II-5-4	지역별 세계 의료기기 시장규모(비중)	303
그림 II-5-5	2009년 국가별 의료기기 시장규모(비중)	304
그림 II-5-6	지역별 치과용 임플란트 점유율(2010년)	305
그림 II-5-7	세계 치과용 임플란트 주요 기업 시장 비중	305
그림 II-5-8	연도별 의료기기 제조업체 생산현황	310
그림 II-5-9	2009년도 기준 생산액 상위 5대 품목 현황	311
그림 II-5-10	2009년도 기준 수출액 상위 5대 품목 현황	312
그림 II-5-11	2009년도 기준 수입액 상위 5대 품목 현황	312
그림 II-5-12	주요 국가별 의료기기 특허출원건수	314
그림 II-5-13	연도별 미국/일본/스위스 의료기기 특허출원건수	315
그림 II-5-14	고령친화 의료기기 정부개발 지원 현황	316
그림 II-6-1	고령친화용품관련 품목분류 체계	332
그림 II-6-2	사업범위의 빈도 및 백분율	337

그림 II-6-3	고령친화용품산업체의 제품 현황 .....	339
그림 II-7-1	60세 이상 가구주 대상 생활비(용돈) 마련 방법(2009년) .....	355
그림 II-7-2	가구주 연령별 노후준비 여부(2009년) .....	356
그림 II-7-3	65세 이상 가구주의 노후준비 방법(2009년) .....	356
그림 II-7-4	사회적 보호서비스에 대한 욕구(주된 응답)(2009년) .....	358
그림 II-7-5	베이비부머 직업별 은퇴에 대한 인식(2010년) .....	359
그림 II-7-6	은퇴준비를 못한 이유(베이비부머 대상)(2010년) .....	359
그림 II-7-7	은퇴 후 소득원(베이비부머 대상)(2010년) .....	360
그림 II-7-8	연금보험 가입률(베이비부머 대상)(2010년) .....	361
그림 II-7-9	65세 이상 가구주 개인금융자산 규모 .....	363
그림 II-8-1	연도별 65세 이상 세대의 가족 유형별 세대수 추이 .....	378
그림 II-8-2	연도별 65세 이상 가구주 대상 동,별거형태 .....	393
그림 II-8-3	지난 1년 동안의 낙상 장소(중복응답) .....	394
그림 II-8-4	낙상 경험이 있는 60대 이상 조사 대상자의 낙상 이유(중복응답) .....	395
그림 II-8-5	연도별 노인주거복지시설 현황 .....	396
그림 II-8-6	선호하는 노후부양방법(2010년) .....	398
그림 II-8-7	연도별 주택건설실적 .....	399
그림 II-8-8	주거유형별 주택건설실적 .....	400
그림 II-8-9	연도별 주거용 건축물 리모델링 착공 면적(2002-2010) .....	404
그림 II-8-10	연도별 주거용 건축물 리모델링 착공 면적(2011-2020) .....	408
그림 II-9-1	국가별(한국/미국/덴마크/일본) 가계의 오락, 문화비 지출 .....	418
그림 II-9-2	국가별(한국/미국/덴마크/일본) 정부의 오락, 문화비 지출 .....	419
그림 II-9-3	연도별 일본 세대주의 연령계층별 월평균 교양오락 소비지출 .....	420
그림 II-9-4	연도별 미국 소비자의 연령별 엔터테인먼트 소비지출 .....	425
그림 II-9-5	2010년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	428
그림 II-9-6	연령별 여가시간 및 희망여가시간 .....	430
그림 II-9-7	연령별 여가비용 및 희망여가비용 .....	431
그림 II-9-8	연령별 희망 여가활동 유형(2010년) .....	432
그림 II-9-9	여가생활 불만족 이유 .....	432
그림 II-9-10	60대 여가생활 참여유형(취미오락활동) .....	433
그림 II-9-11	60대 여가생활 참여유형(휴식활동) .....	433
그림 II-9-12	60대 여가생활 참여유형(사회 및 기타활동) .....	434
그림 II-9-13	연령별 여가활동의 목적 .....	434
그림 II-9-14	현재 고령자와 차기 고령자의 여가인식 비교 .....	435
그림 II-9-15	문화(콘텐츠)산업 매출액 및 종사자 현황 .....	437
그림 II-9-16	연도별 문화(콘텐츠)산업 수출입 현황 .....	438
그림 II-9-17	문화(콘텐츠)산업 세부 산업별 매출액 비중(2010년) .....	439
그림 II-9-18	2009년 문화(콘텐츠)산업 세부산업별 수출입 비중 .....	440
그림 II-9-19	2009년 국내 스포츠산업 시장규모 .....	440
그림 II-9-20	2009년 국내 관광사업체 연간 매출액 현황 .....	442
그림 II-10-1	연도별 귀농, 귀촌 가구수 현황 .....	460
그림 II-10-2	연도별 화장품 현황 .....	480

# 요약문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요 약 문

## 1. 연구 목적 및 내용

### 1) 연구 목적

- 고령친화산업 실태파악을 위한 신뢰성 있는 통계생산 및 정부의 산업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고령친화산업의 분류체계 정비, 고령친화산업 시장규모 추정 및 산업분석, 주요 산업부문별 전략품목 도출,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고자 함

### 2) 연구 내용

- 고령친화산업 분류체계 정비 및 전략품목 선정
  - 국내외 고령친화산업 정책 및 제도 등 추진 현황 파악
  - 국내 고령친화산업 분류체계 및 전략품목 제시
-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 및 분석
  - 고령친화산업 소비자, 공급업체, 전문가 대상 조사
- 고령친화산업 시장규모 추계
  - 고령친화산업의 시장규모 예측
  - 고령친화산업 산업부문별 전략품목 시장규모 예측
- 고령친화산업 분야별 활성화 방안 제시
  - 고령친화산업 정책·제도 환경 분석 및 개선과제 도출
  - 고령친화산업 통계정보 및 활용방안 제시
  - 고령친화산업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 2. 주요 연구결과

### 1) 중고령자 대상 고령친화산업 욕구조사 결과

#### 가. 조사개요

- 중고령자의 고령친화산업 욕구를 파악하여 정부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전국(제주도 포함) 월평균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45세 이상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 및 개별 면접 조사를 실시함

## 나. 조사결과

- 중·고령자에게 지원이 필요한 산업은 경제적 측면(일자리 지원, 금융산업)과 여가/건강 측면(여가활동지원, 요양 및 건강지원서비스)을, 지원이 필요한 제품은 식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인식이 높음
- 요양 및 건강지원서비스 분야에서는 재가서비스를 선호하고, 건강지원서비스 중에서는 정기 건강검진을 선호함
- 노후 소득준비 방법으로 현재 부동산 비중이 높고, 다양한 금융서비스(연금, 보험, 자산관리 등)를 필요로 함
- 단순한 휴식 활동을 줄이고 다양한 문화/여가활동을 늘리려는 욕구가 내재되어 있고, 휴양 단지에 대한 요구도가 큼
- 노후의 거주 형태로 전원주택을 선호하고, 노인주거용 복합단지 등 새로운 주거형태의 지원을 요구함
- 향후에 고령친화제품 수요를 촉진시키는 요인은 건강유지와 편의성임
- 고령친화제품별 구입 의향을 보면, 고령화에 따른 신체를 보완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요구도가 큼

## 2) 고령친화산업 범위 및 분류체계

### 가. 개요

- 국내외적으로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통일된 분류체계는 아직 갖추어지지 않아 실태 파악 및 정부의 산업지원에도 한계로 작용하고 있음
- 따라서, 국내외 고령친화산업 분류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이에 대해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의 범주에 속하고, 지속적인 정책 수립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통계조사 분석 가능 여부, 제품·서비스 수요 및 정책 수요 등을 고려한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고령친화산업의 범위 및 분류체계를 설정함
- 2005년, 2006년 고령친화산업 활성화전략(1,2)와 이번 연구에서 도출된 산업을 비교하면 10대 산업은 예전에 중복되는 범위 등을 재조정하여 9대 산업으로 체계화하고, 4대 산업은 향후 논의될 산업으로 이번 연구에서는 기타산업으로 세부적으로 다루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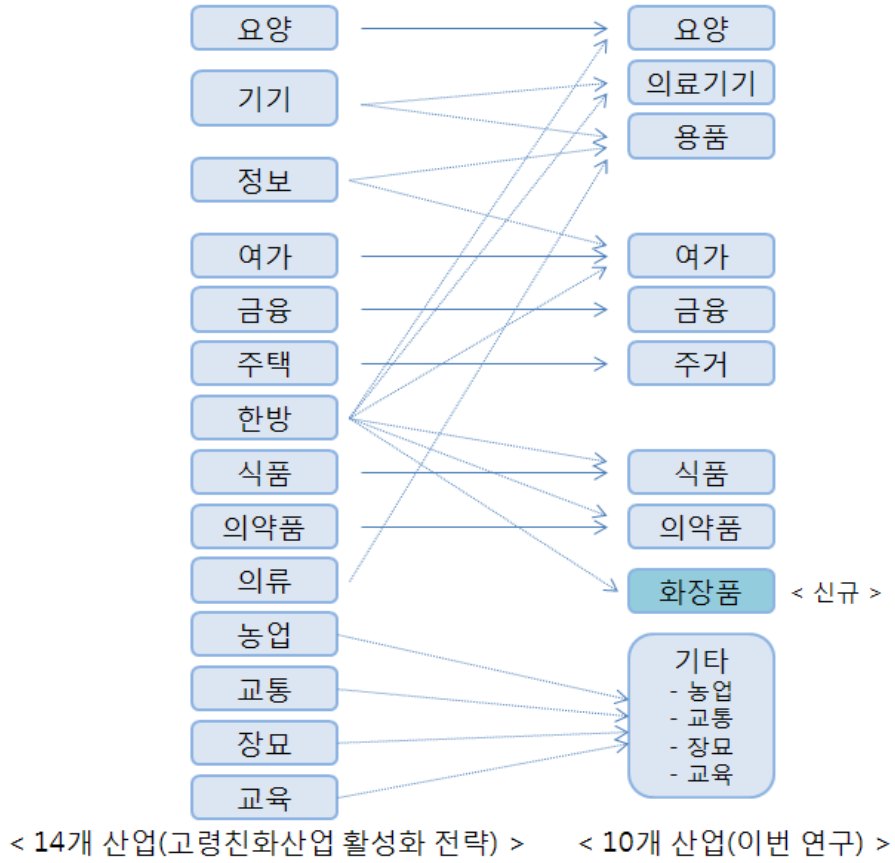


그림 1 기존연구와 본연구 산업범위 비교

나. 분류체계 설정

○ 9개 고령친화산업(요양, 의약품,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용품, 금융, 주거, 여가)에 대하여 분류체계를 설정함

표 1 고령친화산업 분류체계 설정

산업 부문	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고령친화 요양산업	시설요양서비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요양서비스	방문요양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복지용구 제공 및 지원서비스
	예방지원서비스	건강검진서비스, 질병상담 및 관리서비스, 영양개선서비스, 운동기능향상서비스
고령친화 의약품산업	신경계용약	치매용제, 알츠하이머용제
	대사성의약품	비타민제, 자양강장변질제, 당뇨병치료제
	순환계용약	고혈압용제, 동맥경화용제
	해열진통소염제	해열진통소염제
	안과용제	안과용제
	전립선치료제	전립선치료제
	종양치료제	종양치료제
고령친화 식품산업	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두부류 또는 묵류, 전통·발효식품(장류, 김치류, 젓갈류, 절임식품 포함)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
고령친화 화장품산업	기초 제품류	노화방지 화장품(주름개선 및 완화), 피부미백 및 검버섯 제거 화장품, 자외선 차단 및 방지 화장품
	색조제품류	피부색 보정 화장품
	바디제품류	피부 건조 및 가려움 개선 화장품, 체취 방지용 화장품(테오도란트, 향수류)
	헤어케어류	탈모 방지용 화장품, 염모용 화장품
고령친화 의료기기산업	치과 분야	치과용금속, 치관용재료, 의치상재료, 치관용근관 충전 및 치료제, 치과용접착 및 충전재료, 치과용인상재료, 치과용왁스, 치과용모형재료 및 매몰재, 치과용연마재료, 보철재료, 치과용매식재료, 예방치과재료, 보철물분리재료
	재활 분야	정형용품, 부목, 정형 및 기능회복용기구, 환자운반차, 시력보정용안경, 시력보정용렌즈, 보청기, 인체조직 및 기능대치품
	진단 분야	의료용엑스선장치, 비전리진단장치, 방사선진료장치, 체온측정용기구, 혈액검사용기기, 혈압검사 또는 맥파검사용기기, 검안용기기, 청력검사용기기, 지각 및 신체진단용기구
	치료 분야	의료용침대, 호흡보조기, 내장기능대용기, 이학진료용기구, 개인용전기자극기, 칩 또는 구용기구, 의료용자기발생기
고령친화 용품산업	개인건강·의료용품	건강측정용품, 호흡기 치료용품, 투약용품, 욕창예방용품, 온열·냉냉용품, 안마기, 자극기, 한방기기, 신발·의류, 신체보호용품
	기능저하예방용품	유산소운동용품, 근력운동용품, 기능훈련용품, 근력 및 운동기능 측정용품

산업 부문	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이동기기	한 손 조작 보행용품, 보행보조기, 복지차량,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변환용구, 리프트, 보행보조기 부속품, 휠체어 부속품, 자동차 개조용 부품
	목욕용품	목욕보조용품, 기타 목욕 용품
	배변용품	배변처리기, 기저위 용품, 화장실 용품
	침구용품	침대, 매트리스·모포 및 배개, 침대용 탁자, 침대부품
	가사용품	취사용품, 세척용품, 식사용품, 청소용품, 의류제작 및 수선용품, 탁자
	주거설비용품	조명기구, 의자용가구, 수납가구, 가구높이조절장치, 안전손잡이, 문·창·커튼 개폐장치, 주택용 건축부품, 수직승강장치, 건축물용 안전장치
	정보통신기기	시각용품, 청각용품, 발성용품, 그리기·글쓰기 용품, 전화기·통화용 기기, 신호표시기·경보기
	여가용품	완구, 게임, 스포츠용품, 악기, 사진용품, 수공예용품, 애완용품
고령친화 금융산업	장수리스크	개인연금(즉시연금보험 포함), 기업연금(퇴직연금), 주택연금(역모기지) 제도
	건강리스크	건강보험(암보험, 상해보험 포함), 장기간병보험
	재무리스크	자산관리서비스(PB, WA, FP)
고령친화 주거산업	주택 개보수	주택 개보수
	고령자 주택공급	고령자 주택공급
고령친화 여가산업	스포츠	경기업, 정보업, 시설운영업
	문화	고령친화방송, 영화, 음악 및 공연, 공예, 문화오락센터, 기능성게임, 정보 제공 웹사이트
	관광/레저	국내관광, 해외관광, 복권, 카지노, 경마, 놀이공원, 고령친화 휴양단지

### 3) 고령친화산업 시장규모 및 전략품목

#### 가. 고령친화산업 시장규모

- 2010년 산업별 시장규모를 모두 합한 고령친화산업 시장규모는 33조 2,241억 원이며, 2010년-2020년 연평균성장률(CAGR)은 14.2%로 나타남

표 2 고령친화산업 시장규모 및 전망

(단위 : 억 원, %)

	2010년		2015년		2020년		CAGR (10-20)
	시장규모	비중	시장규모	비중	시장규모	비중	
고령친화 요양산업	25,675	7.7	62,234	9.2	125,188	10.0	17.2
고령친화 의약품산업	30,486	9.2	57,464	8.5	108,315	8.7	13.5
고령친화 의료기기산업	10,903	3.3	13,516	2.0	16,975	1.4	4.5
고령친화 화장품산업	5,109	1.5	11,541	1.7	26,070	2.1	17.7
고령친화 식품산업	48,990	14.7	90,128	13.3	165,810	13.3	13.0
고령친화 여가산업	76,088	22.9	110,268	16.2	161,917	13.0	7.8
고령친화 금융산업	105,663	31.8	301,711	44.4	610,404	48.8	19.2
고령친화 주거산업	9,616	2.9	9,073	1.3	6,824	0.5	-3.4
고령친화 용품산업	19,711	5.9	23,347	3.4	28,322	2.3	3.7
전체	332,241	100.0	679,281	100.0	1,249,825	100.0	14.2

나. 고령친화산업 전략품목(9대산업 35개 전략품목)

산업 부문	전략품목
고령친화 요양산업(3)	방문요양서비스, 건강검진서비스, 질병상담 및 관리서비스
고령친화 의약품산업(6)	치매용제, 알츠하이머용제, 당뇨병치료제, 고혈압용제, 해열진통소염제, 종양치료제
고령친화 식품산업(4)	특수의료용도식품, 두부류 또는 묵류, 전통·발효식품(장류, 김치류, 젓갈류, 절임식품 포함), 건강기능식품
고령친화 화장품산업(3)	노화방지(피부 주름 개선 및 완화) 화장품, 피부 건조 및 가려움 개선 화장품, 체취 방지용 화장품
고령친화 의료기기산업(7)	치과용 임플란트, 치과용 CAD/CAM밀링장치 및 치과용도재(지르코니아), 인공수정체, 보청기, 치과용 전산화단층촬영엑스선장치, 의료용조합자극기, 관절치료기
고령친화 용품산업(3)	개인건강·의료용품, 기능저하예방용품, 여가용품
고령친화 금융산업(2)	개인연금, 퇴직연금
고령친화 주거산업(1)	주택개보수
고령친화 여가산업(6)	스포츠 시설운영업, 고령친화방송, 문화오락센터, 기능성게임, 정보제공웹사이트, 고령친화 휴양단지

#### 4) 고령친화산업 중장기 발전전략

##### 가. 필요성

-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산업실태와 정책사업들의 추진 경과 등을 고려하여 고령친화산업 발전을 위한 비전과 추진체계를 설정하고, 단계별 추진과제를 도출하는 등 고령친화산업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자 함

##### 나. 비전 및 활성화 과제

- 내수시장 활성화 및 글로벌 시장개척 역량 강화를 통한 지속적이고 성장가능한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것을 비전으로 제시
- 고령친화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 고령친화산업 정책 및 제도의 내실화, 고령친화산업 수요기반 강화, 고령친화산업 전략산업 집중 육성 등 3대 추진목표를 설정하고 단계별로 고령친화산업 발전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추진목표별 중점과제를 도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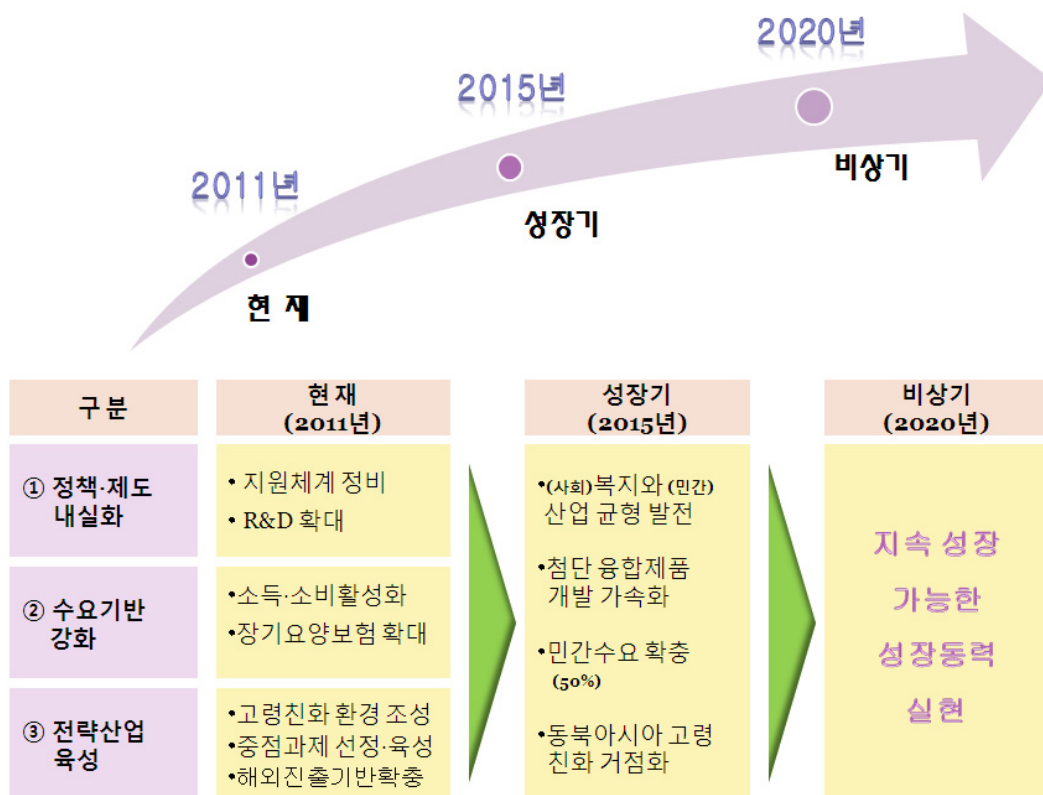


그림 2 고령친화산업 발전 로드맵

#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 및 산업분석

보 건 복 지 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 1 부

#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 및 발전방안

---

제1장 서론	11
제2장 고령화로 인한 환경변화	14
제3장 고령친화산업 지원 현황	35
제4장 중·고령자의 고령친화산업 욕구조사	61
제5장 고령친화산업 범위 및 분류체계	103
제6장 고령친화산업 시장규모 및 활성화과제	120
제7장 고령친화산업 중장기 발전전략	136

---





# 제1장 서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 급속한 인구고령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 베이비부머 은퇴 본격화 등으로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시장 수요가 확대될 전망
-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고령친화산업을 성장동력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한 정책 추진
- 인구고령화에 따른 고령친화산업 관련시장은 확대되고 있으나, 관련 통계 부족으로 인한 실태파악 어려움
- 고령친화산업 실태파악을 위한 신뢰성 있는 통계생산 및 정부의 산업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정보 제공 필요
- 이번 연구에서는 고령친화산업의 분류체계를 정비하고, 주요 산업부문별 전략품목 도출, 전략품목에 근거한 정확한 통계를 생산할 수 있는 기초 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고령친화산업 정책수립의 기초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고령친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과제를 도출하고 중장기 고령친화산업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2. 연구내용

### □ 고령친화산업 분류체계 정비 및 전략품목 선정

- 국내외 고령친화산업 정책 및 제도 등 추진 현황 파악
- 국내 고령친화산업 분류체계 및 전략품목 제시

□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 및 분석

- 고령친화산업 기업체 기본현황
- 고령친화산업 기업체 업무군별 인력 현황
- 고령친화산업 기업체 연구개발 투자 현황
- 고령친화산업 공급업체 및 소비자 대상 조사

□ 고령친화산업 시장규모 추계

- 고령친화산업의 시장규모 예측
- 고령친화산업 산업부문별 전략품목 시장규모

□ 고령친화산업 분야별 활성화 방안 제시

- 고령친화산업 정책·제도 환경 분석 및 개선과제 도출
- 고령친화산업 통계정보 및 활용방안 제시
- 고령친화산업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 3. 연구방법

□ 문헌고찰

- 국내·외 고령친화산업 산업실태 및 정책추진 현황 벤치마킹
- 고령친화산업 통계 관련 조사내용 및 조사결과 분석

□ 조사 및 분석

(수요)고령소비자의 고령친화산업 욕구조사

- 대상 : 경제력이 있는 45세 이상 중·고령자
- 내용 : 고령친화산업 분야별 지원 우선 순위, 각 산업별 이용의사 및 필요한 지원서비스 등 조사

(정책)고령친화산업 전략품목 및 활성화 과제 도출을 위한 전문가 의견 조사

- 대상 : 고령친화산업 관련 산업계, 학계, 연구계, 정부 등 전문가
- 내용 : 고령친화산업 분야별 전략품목 검토 및 선정,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과제 도출 및 우선순위 설정

(통계)고령친화산업 관련 산업체를 대상으로 의견 조사

- 고령친화산업 분류체계 및 조사대상 품목 선정
-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대상품목 공급업체 매출액/기업규모 조사
- 품목별 생산량 및 생산액, 수입량 및 수입액, 수출량 및 수출액 조사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고령친화산업 분야별 산·학·연 및 공무원 등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 개최

□ **해외방문조사**

- 해외 선진 고령친화산업 실태 파악을 위한 해외출장 실시



## 제2장 고령화로 인한 환경변화

- 인구 고령화는 65세 이상 인구의 증가뿐 아니라 출산율 하락으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사회·경제·문화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고령사회로의 변화는 퇴직 이후 경제적 불안으로 인한 노인 빈곤에 따른 소비와 저축의 감소, 노동력 부족과 노인부양비의 증가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지만, 높은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을 보이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는 새로운 수요창출, 의료수요의 증가, 생활욕구의 다양화로 위기와 기회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 ‘고령친화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요인으로 기대하고 있음
- 2005년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에서는 고령친화산업을 일반적으로 생물학적 노화 및 사회경제적 능력 저하를 보이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정신적·신체적 건강, 편익,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라고 말하고 있는 만큼 요양, 금융, 주거, 기기, 여가 등의 다양한 분야가 고령친화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이 장에서는 고령화로 인해 변화하는 요소들을 살펴봄으로써 고령친화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함

### 1. 고령화 진전

#### 1.1 세계

##### 1) 노인인구 비중

- 2010년 세계 연령계층별 인구비중은 15-64세가 65.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0-14세 인구 26.9%, 65세 이상 인구 7.6% 순이었다.

- 그러나 2050년에 이르면 0-14세의 인구 비중은 19.6%로 줄어드는 반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16.2%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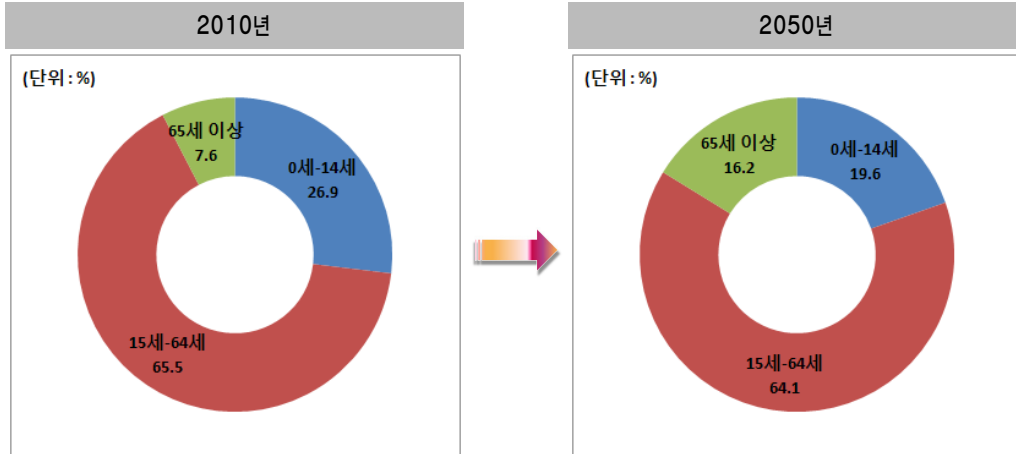


그림 I-2-1 세계 연령계층별 인구비중 전망

자료 :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장래인구추계(2006)

- 세계 연령계층별 인구 비중에서 65세 이상 고령자의 인구비중은 7.6%로 나타났으며, 선진국 15.9%, 개도국 5.8%로 선진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가장 높았다. 반면 개도국의 경우 세계 고령자 인구비중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50년에 이르면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6.2%를 차지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진국 26.2%, 개도국 14.6%로 선진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가장 높았다.
-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16.3%로 나타난 유럽이며, 아프리카가 3.4%로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가장 낮았다.
- 한편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비중은 11%로 아시아지역 고령자 인구비중(6.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50년에 이르면 65세 이상 인구는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I-2-1 세계 연령계층별 인구비중 전망

(단위 : %)

	2010년			2050년		
	0세-14세	15세-64세	65세 이상	0세-14세	15세-64세	65세 이상
세계	26.9	65.5	7.6	19.6	64.1	16.2
선진국	16.5	67.5	15.9	15.4	58.4	26.2
개도국	29.2	65.0	5.8	20.3	65.0	14.6
아프리카	40.3	56.3	3.4	27.3	65.6	7.1
아시아	26.2	67.1	6.7	17.9	64.8	17.3
유럽	15.4	68.3	16.3	15.0	57.6	27.4
라틴아메리카	27.7	65.4	6.9	17.0	63.5	19.5
북아메리카	19.8	67.1	13.1	16.9	61.1	22.0
오세아니아	24.2	65.0	10.8	19.1	62.3	18.7
한국	16.2	72.9	11.0	8.9	53.0	38.2
북한	21.2	69.0	9.8	16.6	65.3	18.1

자료 :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장래인구추계(2006)

주 : UN에서 인구통계작성 시 분류되는 선진국에는 유럽, 북미,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이 포함

## 2) 노인부양비

- 2010년 세계의 노년부양비는 전체 인구의 12%로 나타났으며, 선진국 24%, 개도국 9%였다. 2050년에 이르면 노년부양비는 각각 25%, 45%, 23%에 달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 노년부양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전체인구의 24%를 차지한 유럽으로 나타났으며, 북아메리카 19%, 오세아니아 17% 순이었다.
- 한국의 노년부양비는 전체인구의 15%로 나타났으며, 2050년에는 72%로 아시아지역의 노년부양비 27%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표 I-2-2 세계 및 한국의 노년부양비 전망

(단위 : %)

	2005년	2010년	2020년	2030년	2040년	2050년
세 계	11	12	14	18	22	25
선 진 국	23	24	29	36	41	45
개 도 국	8	9	11	15	19	23
아프리카	6	6	7	7	9	11
아 시 아	10	10	13	17	22	27
유럽	23	24	29	36	42	47
라틴아메리카	10	11	13	18	24	31
북아메리카	19	19	25	32	35	36
오세아니아	16	17	21	26	29	30
한 국	13	15	22	38	57	72
북 한	13	14	14	18	27	28

자료 :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장래인구추계(2006)

주 : 1. UN에서 인구통계작성 시 분류되는 선진국에는 유럽, 북미,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이 포함

2. 한국의 노년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에 대한 고령인구의 비(고령인구(65세이상)/생산가능인구(15-64세)\*100)

### 3) 고령화 추이

-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어 2050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38.2%로 세계 최고의 고령국가가 될 전망이다.
- 고령인구 비율이 7%에서 20%로 증가하는데 걸린 기간을 국가별로 비교해 보면, 프랑스가 154년, 스웨덴 127년, 미국 94년, 일본 36년이 소요되는 반면, 한국은 26년에 불과해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지속됨을 알 수 있다.

표 I-2-3 세계 고령화 속도

국 가	도달연도			증가 소요연수	
	고령화(7%)	고령(14%)	초고령(20%)	7%→14%	14%→20%
한 국	2000	2018	2026	18	8
일 본	1970	1994	2006	24	12
프랑스	1864	1979	2018	115	39
이태리	1927	1988	2006	61	18
미 국	1942	2015	2036	73	21
스웨덴	1887	1972	2014	85	42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

#### 4) 건강수명

- OECD 국가의 건강수명 순위가 가장 높은 나라는 일본으로 83세이며, 그 다음으로는 호주,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순이었다.
- 한편 우리나라는 건강수명 80세로 OECD 국가들 중 21위를 차지하였으며 2000년에 비하여 4년이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2-4 OECD 국가의 건강수명 순위

(단위 : 세)

순위	국가	2009년			2000년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1	일본	80	86	83	78	85	81
2	호주	80	84	82	77	82	80
3	아이슬란드	80	83	82	78	82	80
4	이스라엘	80	83	82	77	81	79
5	이탈리아	79	84	82	76	82	79
6	스페인	78	85	82	76	83	79
7	스위스	80	84	82	77	83	80
8	캐나다	79	83	81	77	82	79
9	프랑스	78	85	81	75	83	79
10	룩셈부르크	78	83	81	75	81	78
11	네덜란드	78	83	81	76	81	78
12	뉴질랜드	79	83	81	76	81	79
13	노르웨이	79	83	81	76	81	79
14	스웨덴	79	83	81	77	82	80
15	오스트리아	78	83	80	75	81	78
16	벨기에	77	83	80	75	81	78
17	핀란드	77	83	80	74	81	78
18	독일	78	83	80	75	81	78
19	그리스	78	83	80	76	81	78
20	아일랜드	77	82	80	74	79	76
21	<b>대한민국</b>	77	<b>83</b>	<b>80</b>	72	<b>80</b>	76
22	영국	78	82	80	75	80	78
23	칠레	76	82	79	73	80	77
24	덴마크	77	81	79	75	79	77
25	포르투갈	76	82	79	73	80	77
26	슬로베니아	76	82	79	72	80	76
27	미국	76	81	79	74	80	77
28	체코	74	80	77	72	79	75
29	멕시코	73	78	76	72	77	74
30	폴란드	71	80	76	70	78	74
31	에스토니아	70	80	75	65	76	71
32	슬로바키아	71	79	75	69	77	73
33	터키	72	77	75	67	73	70
34	헝가리	70	78	74	68	76	72

자료 : WHO, Data and Statistics-Life expectancy

주 : 1. WHO 자료 중 OECD 국가 기준으로 분석함

2. 2009년 전체 건강수명을 기준으로 순위 계산함



## 5) 건강지출

- 건강지출 비율(GDP)이 가장 높은 나라는 미국으로 17.4%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프랑스 11.8%, 독일 11.6%, 캐나다 11.4% 순이었다.
- 한편 우리나라는 6.9%로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건강지출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2-5 국가별 건강지출 비율(GDP)

(단위 : %)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Canada	9.8	9.8	9.8	10.0	10.0	10.3	11.4	11.3(e)
France	10.9	11.0	11.1	11.0	11.0	11.1	11.8	..
Germany	10.8	10.6	10.7	10.6	10.5	10.7	11.6	..
Japan	8.1	8.1	8.2	8.2	8.2	8.5	..	..
Korea	5.2	5.3	5.7	6.0	6.3	6.5	6.9	7.0(e)
Sweden	9.3	9.1	9.1	8.9	8.9	9.2	10.0	..
United Kingdom	7.8	8.0	8.2	8.5	8.4	8.8	9.8	..
United States	15.7	15.7	15.7	15.8	16.0	16.4	17.4	..

자료 : OECD Health Data : Health expenditure and financing : OECD Health Statistics (database)

주 : (e) : Estimate

## 6) 고령자 고용 비율

- 2009년 OECD 국가의 총 고령자 고용 비율은 53.6%로 전년대비 0.5%p 감소하였다.
- OECD 국가 중에서 고령자 고용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아이슬란드 80.8%이며, 뉴질랜드 72.1% 스웨덴 70.1% 순이었다.
- 한편 우리나라는 60.4%로 전체 고령자 고용비율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4 |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 및 산업분석 (제1부)

표 I-2-6 OECD 국가 고령자 고용 비율

(단위 : %)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Australia	48.5	50.3	51.7	53.5	55.5	56.6	57.4	59.0
Austria	29.2	30.3	28.8	31.8	35.5	38.6	41.0	41.1
Belgium	26.6	28.1	30.0	31.8	32.0	34.4	34.5	35.3
Canada	50.1	53.0	53.9	54.8	55.6	57.1	57.5	57.6
Chile	47.5	49.1	50.0	51.0	53.2	54.4	55.7	55.4
Czech Republic	40.8	42.3	42.6	44.6	45.2	46.0	47.6	46.8
Denmark	57.9	60.2	60.3	59.5	60.7	58.6	57.0	57.5
Estonia	51.6	52.3	52.4	56.1	58.5	60.0	62.4	60.4
Finland	47.8	49.9	51.0	52.6	54.5	55.0	56.4	55.6
France	39.3	37.0	37.6	38.7	38.1	38.3	38.2	38.9
Germany	38.6	39.0	41.8	45.5	48.1	51.3	53.8	56.1
Greece	39.2	41.3	39.4	41.6	42.3	42.4	42.8	42.2
Hungary	25.6	29.0	31.1	33.0	33.6	33.1	31.4	32.8
Iceland	87.2	83.3	82.0	84.8	84.9	84.9	83.3	80.8
Ireland	48.0	49.4	49.6	51.6	53.2	54.2	54.0	51.9
Israel	49.2	50.4	51.5	52.4	54.9	57.2	58.4	..
Italy	28.9	30.3	30.5	31.4	32.5	33.8	34.4	35.7
Japan	61.6	62.1	63.0	63.9	64.7	66.1	66.3	65.5
<b>Korea</b>	<b>59.5</b>	<b>57.8</b>	<b>58.5</b>	<b>58.7</b>	<b>59.3</b>	<b>60.6</b>	<b>60.6</b>	<b>60.4</b>
Luxembourg	27.9	30.3	30.4	31.7	33.2	32.0	34.1	38.2
Mexico	52.2	52.9	53.8	52.6	55.0	54.7	54.7	52.5
Netherlands	42.0	42.9	43.3	44.0	45.6	48.3	50.7	52.6
New Zealand	63.2	64.3	67.0	69.5	70.2	71.8	71.7	72.1
Norway	68.4	68.6	68.0	67.6	67.4	69	69.3	68.7
Poland	27.9	28.6	28.0	29.1	28.1	29.7	31.6	32.3
Portugal	51.4	51.6	50.3	50.5	50.1	50.9	50.8	49.7
Slovak Republic	22.9	24.6	26.8	30.4	33.2	35.7	39.3	39.6
Slovenia	24.5	23.5	29.0	30.7	32.6	33.5	32.8	35.6
Spain	39.7	40.8	41.3	43.1	44.1	44.6	45.6	44.1
Sweden	68.4	69.0	69.5	69.6	69.8	70.1	70.3	70.1
Switzerland	64.6	65.7	65.2	65.1	65.7	67.2	68.4	68.4
Turkey	35.3	32.7	29.5	28.0	27.6	27.1	27.4	28.2
United Kingdom	53.1	55.4	56.2	56.7	57.4	57.4	58.2	57.5
United States	59.5	59.9	59.9	60.8	61.8	61.8	62.1	60.6
OECD-Total	49.4	50.0	50.7	51.8	52.7	53.5	54.1	53.6

자료 : OECD, Statistics from A to Z beta version, Employment

주 : The statistical data for Israel are supplied by and under the responsibility of the relevant Israeli authorities. The use of such data by the OECD is without prejudice to the status of the Golan Heights, East Jerusalem and Israeli settlements in the West Bank under the terms of international law

## 1.2 국내

### 1) 노인인구 비중

- 연령층별 전국 추계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는 2010년 5,357천명에서 2025년 9,768천명 2050년 16,156천명으로 증가하는 반면 0-14세 인구는 2010년 7,907천명에서 2025년 5,778천명, 2050년 3,763천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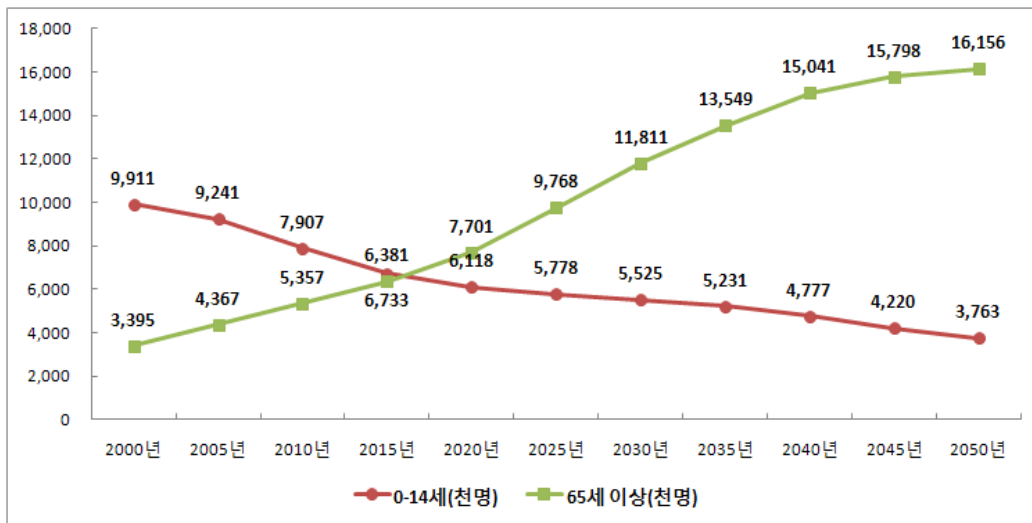


그림 I-2-2 연령층별 전국 추계인구

자료 :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장래인구추계(2006)

주 : 1. 2006.11월에 작성한 장래인구추계 자료임

2. 2005년까지는 확정인구이며, 2006년 이후는 다음 인구추계 시 변경될 수 있음

표 I-2-7 노인인구 및 구성비 추이

(단위 : %)

	총인구	65세 이상	구성비
2000년	47,008	3,395	7.2
2001년	47,357	3,578	7.6
2002년	47,622	3,772	7.9
2003년	47,859	3,968	8.3
2004년	48,039	4,166	8.7
2005년	48,138	4,367	9.1
2006년	48,297	4,586	9.5
2007년	48,456	4,810	9.9
2008년	48,607	5,016	10.3
2009년	48,747	5,193	10.7
2010년	48,875	5,357	11.0
2015년	49,277	6,381	12.9
2018년	49,340	7,075	14.3
2020년	49,326	7,701	15.6
2025년	49,108	9,768	19.9
2030년	48,635	11,811	24.3
2035년	47,734	13,549	28.4
2040년	46,343	15,041	32.5
2045년	44,521	15,798	35.5
2050년	42,343	16,156	38.2

자료 :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장래인구추계(2006)

주 : 1. 2006.11월에 작성한 장래인구추계 자료임

2. 2005년까지는 확정인구이며, 2006년 이후는 다음 인구추계 시 변경될 수 있음

-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라남도로 20.1%였으며, 경상북도 16.1%, 제주도 12.3%, 경상남도 12.3%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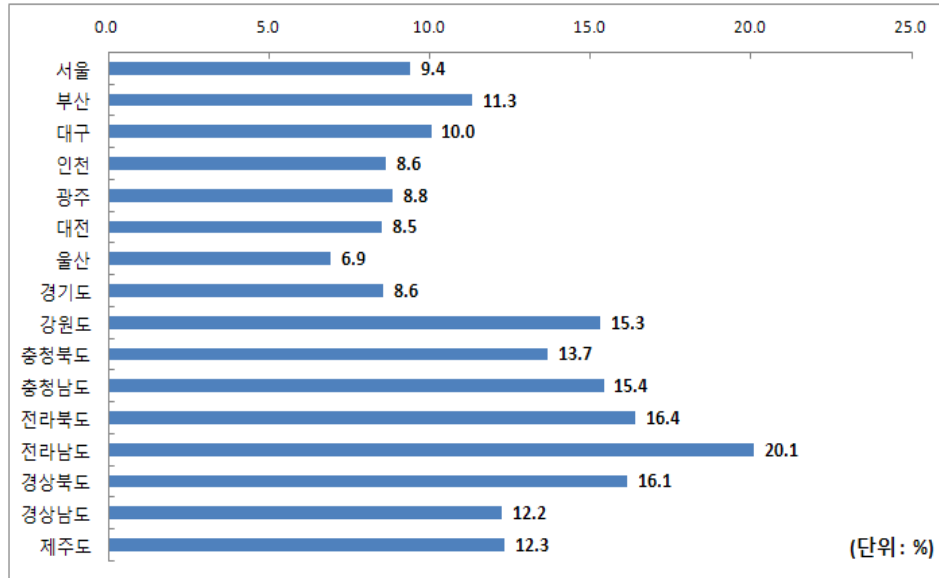


그림 I-2-3 2010년 지역별 65세 이상 인구비율

자료 :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장래인구추계(2006)

주 : 1. 2006.11월에 작성한 장래인구추계 자료임

2. 2005년까지는 확정인구이며, 2006년 이후는 다음 인구추계 시 변경될 수 있음

## 2) 노인부양비

- 노인부양비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에는 총 부양비 37.2% 중에서 노인부양비가 15.0%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2020년부터는 노인부양비(21.7%)가 유소년부양비(17.2%)를 앞서기 시작했으며 2050년에 이르면 총 부양비 88.8% 중에서 노인부양비의 비중이 72.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 노령화지수의 경우도 2010년 67.7%, 2020년 125.9%, 2050년 429.3%로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2-8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 추이 및 전망

(단위 : %)

	총부양비	유소년부양비	노년부양비	노령화지수
2000년	39.5	29.4	10.1	34.3
2001년	39.6	29.0	10.5	36.3
2002년	39.6	28.6	11.1	38.7
2003년	39.6	28.0	11.6	41.3
2004년	39.5	27.4	12.1	44.1
2005년	39.4	26.8	12.6	47.3
2006년	39.1	25.9	13.2	51.0
2007년	38.8	25.0	13.8	55.1
2008년	38.4	24.1	14.3	59.3
2009년	37.8	23.1	14.7	63.5
2010년	37.2	22.2	15.0	67.7
2015년	36.3	18.6	17.6	94.8
2020년	38.9	17.2	21.7	125.9
2025년	46.3	17.2	29.1	169.1
2030년	55.4	17.7	37.7	213.8
2035년	64.9	18.1	46.8	259.0
2040년	74.7	18.0	56.7	314.8
2045년	81.7	17.2	64.5	374.3
2050년	88.8	16.8	72.0	429.3

자료 :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장래인구추계(2006)

주 : 1. 2006.11월에 작성한 장래인구추계 자료임

2. 2005년까지는 확정인구이며, 2006년 이후는 다음 인구추계 시 변경될 수 있음

\* 총부양비 : 총부양비는 유소년부양비와 노년부양비의 합

\* 유소년부양비 : 유소년부양비=(0~14세인구)/(15~64세인구)\*100

\* 노년부양비=(65세이상인구)/(15~64세인구)\*100

\* 노령화지수=(65세이상인구)/(0~14세인구)\*100

○ 노인관련 주요 지표에서 2010년 노년부양비는 농촌이 32.6%로 도시에 비하여 약 3배가량 차이를 나타냈으며, 노령화지수의 경우도 도시(55.7%)와 농촌(140.4%)의 비율 차가 컸다.

표 I-2-9 지역별 노인관련 주요 지표의 변화

(단위 : %)

연도	노년부양비		노령화지수	
	도시	농촌	도시	농촌
2000년	7.7	23.2	25.2	78.3
2005년	9.8	29.0	36.7	108.2
2010년	12.4	32.6	55.7	140.4

자료 :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주 : 1. 도시는 동, 농촌은 읍면으로 구분함(통계청 기준으로 분석함)

2. 2000년의 경우 연령을 알 수 없는 963명을 제외하고 분석하였음

3. 노인부양비=(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100

4. 노령화지수=(65세 이상 인구/0~14세 인구)\*100

### 3) 고령자 가구

- 2009년 독거노인 수는 975,937명으로 전년대비 4.9%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독거노인 수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70-74세(294,02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2-10 독거노인 현황

(단위 : 명, %)

연령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65-69세	234,217	242,186	248,420	252,563	254,050
70-74세	235,776	258,241	271,416	283,273	294,027
75-79세	177,206	191,235	206,935	224,178	242,437
80-84세	93,994	101,910	110,072	118,578	127,957
85세 이상	35,803	41,269	46,448	51,980	57,466
합계	776,996	834,841	883,291	930,572	975,937
전년대비 증가율	-	7.4	5.8	5.4	4.9

자료 : 보건복지부, 2010 보건복지통계연보

- 2010년 65세 이상 고령자가 가구주인 ‘고령가구’의 비중은 전체 가구수의 17.4%로 2005년 15.2%, 2000년 11.9% 이었던 것에 비해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2000년 54.4만명(3.7%)에서 2005년 77.6만명(4.9%), 2010년에는 100만명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다.

- 가족 구성원의 핵가족화와 맞물려 고령가구 수의 증가, 독거노인 가구 비중이 늘어가는 상황에 고령자 주거공간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고 위험 상황을 알려줄 수 있는 산업영역의 발달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I-2-11 고령가구 추이

(단위 : 가구, %)

연도	총가구	고령가구(비율)	독거노인 가구(비율)
2000년	14,507,010	1,733,525 (11.9)	543,522 (3.7)
2005년	15,971,010	2,432,247 (15.2)	776,996 (4.9)
2010년	17,152,227	2,982,240 (17.4)	1,021,008 (6.0)
2020년	19,011,815	4,231,578 (22.3)	1,512,082 (8.0)

자료 : 통계청 「고령자 통계」 2011

#### 4) 고령자 고용 비율

- 노인의 취업상태는 비취업노인이 65.5%로 취업중인 노인 34.5%보다 약 2배가량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2-12 노인 취업상태 현황

(단위 : %)

	1994년	1998년	2004년	2008년
취업중	28.5	29.0	30.8	34.5
비취업	71.5	71.0	69.2	65.5
계	100.0	100.0	100.0	100.0

자료 :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e-나라지표

출처 : 노인실태조사,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 취업노인의 종사 직종 중에서 농,어,축산업 종사자가 51.2%로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단순노무 종사자 26.2%, 서비스/판매 종사자 11.4%, 기계,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3.1%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2-13 취업노인의 종사 직종

(단위 : %)

	1994년	1998년	2004년	2008년
농.어.축산업종사자	56.6	60.4	53.9	51.2
단순노무종사자	21.1	21.5	27.8	26.2
서비스/판매종사자	12.3	8.8	8.8	11.4
기계,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0.7	0.4	2.7	3.1
기능원.관련기능종사자	2.7	2.7	1.9	2.8
고위임직원.관리자	-	2.0	1.8	2.7
전문가	2.9	1.9	1.3	1.7
기술공.준전문가	0.4	1.1	1.1	0.0
사무종사자	3.3	1.2	0.7	0.9
계	100.0	100.0	100.0	100.0

자료 :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e-나라지표  
출처 : 노인실태조사,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 5) 기대수명

- 2010년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79.60세로 10년 전보다 3년이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50년에 이르면 86.02세로 현재보다 7년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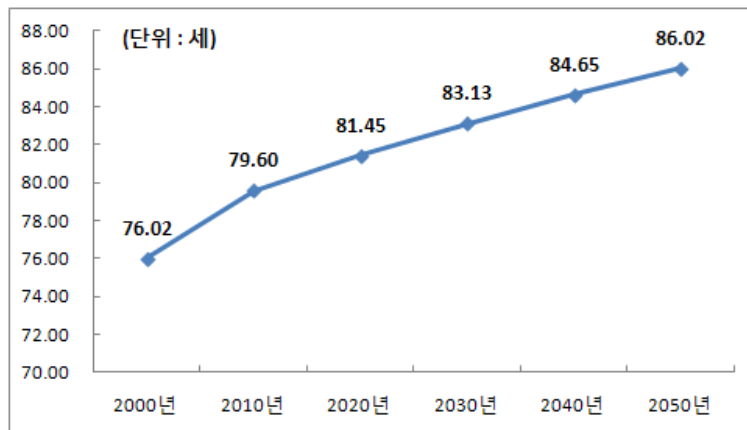


그림 I-2-4 한국인의 기대수명(전국)

자료 :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장래인구추계

주 : 1. 2006.11월에 작성한 장래인구추계 자료임

2. 2005년까지는 확정인구이며, 2006년 이후는 다음 인구추계 시 변경될 수 있음

## 2. 고령친화산업 수요 변화

### 1) 베이비붐 세대 대두

- 2010년 전체 인구 약 4,887만 명 중에서 47세부터 55세까지의 베이비붐 세대는 712.5만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4.6%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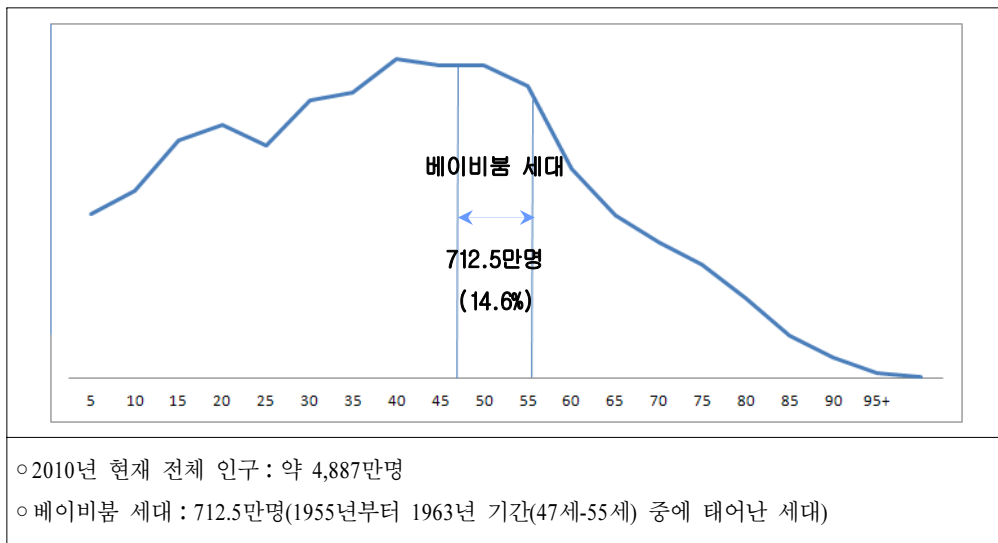


그림 I-2-5 전체 인구 대비 베이비붐 세대 비중

자료 :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베이비붐세대의 어제와 오늘, 2010

- 전체 인구의 14.6%를 차지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의 토지소유, 건물소유, 주식소유 비중은 각각 42.0%, 58.0%, 20.0%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2-14 전체 인구 대비 베이비붐 세대 비중

(단위 : %)

	인구	토지소유	건물소유	주식소유
베이비붐 세대 비중	14.6	42.0	58.0	20.0

자료 : 현대경제연구소, '잠재성장률 2%p 제고'를 위한 VIP REPORT

출처 : 미래에셋 투자연구소

- 과거 1인당 국민소득이 79\$였던 베이비붐 세대는 오늘날 17,175\$로 1960년에 비하여 17,096\$의 소득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64.8명에서 27.8명으로 과거에 비하여 줄어든 반면 학원 수는

많아졌고(2,746개→72,242개), 대학진학률(20%대→80%대) 또한 월등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평균 초혼연령도 남자 27.8세, 여자 24.8세에서 오늘날 남자 31.6세, 여자 28.7세로 남녀 모두 과거에 비하여 평균 초혼연령이 4년씩 늦춰진 것으로 나타났다.
- 주택유형별 가구분포의 경우 과거에는 단독주택(75.3%)의 비중이 아파트(14.8%)의 비중보다 단연 컸으나 오늘날에는 단독 45.1%, 아파트 42.3%로 분포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 남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과거 208.8시간에서 오늘날 189.3시간으로 19.5시간이 줄었으며, 여자는 204.8시간에서 190.9시간으로 13.9 시간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표 I-2-15 베이비붐 세대의 라이프스타일

(단위 : \$, 명, 개, %,세)

구분	과거		오늘			
	년도	값	년도	값		
1인당 국민소득(\$)	1960년	79	2009년	17,175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명)	1967년	64.8	2009년	27.8		
학원 수(개)	1973년	2,746	2009년	72,242		
대학진학률(%)	1979년	남	29.2	2009년	남	81.6
		여	20.7		여	82.4
평균 초혼연령(세)	1990년	남	27.8	2009년	남	31.6
		여	24.8		여	28.7
주택유형별 가구분포(%)	1990년	단독	75.3	2005년	단독	45.1
		아파트	14.8		아파트	42.3
월평균 근로시간(40~44세)	2000년	남	208.8	2008년	남	189.3
		여	204.8		여	190.9

자료 : 1. 현대경제연구소, '잠재성장률 2%p 제고'를 위한 VIP REPORT  
2.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베이비붐세대의 어제와 오늘, 2010

## 2) 노인의 소비지출 증가

- 2010년 가구주 연령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소득 3,632천원에서 60세 이상 가구주의 소득이 2,424천원으로 전년보다 238천원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 60세 이상 가구주는 소득 중에서 가계지출이 1,922천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비지출 1,495천원, 비소비지출 427천원 순이었다. 이는 전체 가구주 월평균 가계수지에서조차 마찬가지였다.

표 I-2-16 가구주 연령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전국, 2인 이상)

(단위 : 천원)

가계수지항목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전체	소득	2,631	2,788	2,898	3,038	3,200	3,391	3,432	3,632
	가계지출	2,147	2,277	2,366	2,475	2,584	2,718	2,776	2,961
	소비지출	1,700	1,797	1,872	1,945	2,016	2,114	2,149	2,287
	비소비지출	447	480	495	530	568	604	626	674
60세 이상	소득	1,814	1,993	1,947	2,010	2,125	2,179	2,186	2,424
	가계지출	1,531	1,623	1,617	1,670	1,760	1,787	1,780	1,922
	소비지출	1,213	1,293	1,291	1,322	1,395	1,417	1,391	1,495
	비소비지출	318	330	326	348	365	369	389	427

자료 :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가계동향조사(전국(명목)) 자료

- 2010년 가구주 연령별 소비지출 비중에서 60세 이상 가구주의 소비지출이 전체평균보다 높은 품목은 식료품·비주류음료 20.46%, 주거·수도·광열 13.78%, 보건 11.99%, 가정용품·가사서비스 4.08%, 주류·담배 1.45%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2-17 가구주 연령별 가구당 소비지출 비중

(단위 : %)

	2005년		2010년	
	전체평균	60세 이상	전체평균	60세 이상
식료품·비주류음료	14.61	20.27	13.86	20.46
주류·담배	1.52	1.91	1.20	1.45
의류·신발	6.35	5.52	6.38	5.41
주거·수도·광열	9.81	12.26	10.07	13.78
가정용품·가사서비스	3.58	3.71	3.77	4.08
보건	5.95	10.30	6.65	11.99
교통	12.04	11.29	11.85	11.05
통신	7.02	5.97	6.06	5.40
오락·문화	5.40	4.60	5.53	4.98
교육	11.32	3.94	12.98	2.41
음식·숙박	13.81	11.24	12.72	11.11
기타상품·서비스	8.61	9.00	8.92	7.87
전체(소비지출)	100.00	100.00	100.00	100.00

자료 :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가계동향조사(전국(명목)) 자료

### 3) 노인의 만성질환 증가

- 일반적 특성별 현재 의사진단 만성질환 수에 대하여 3개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30.7%, 27.9%로 평균 1.9%, 1.8%를 기록하면서 65세 이상 고령자가 60세 이상 고령자에 비하여 만성질환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성별 평균은 남성 1.5%, 여성 2.1%로 여성의 만성질환 수가 남성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75-79세, 80-84세의 평균이 2.1%로 다른 연령대보다 의사진단 만성질환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2-18 일반적 특성별 현재 의사진단 만성질환수

(단위 : %, 개)

특성		없음	1개	2개	3개 이상	평균	표준편차
전체	65세 이상	18.7	25.4	25.2	30.7	1.9	1.5
	60세 이상	21.2	27.0	23.9	27.9	1.8	1.5
성별	남성	27.5	31.3	22.3	18.9	1.5	1.4
	여성	16.4	23.8	25.1	34.6	2.1	1.6
연령	60-64세	27.2	30.9	20.8	21.1	1.5	1.4
	65-69세	21.7	27.4	24.7	26.2	1.8	1.5
	70-74세	17.7	24.1	24.9	33.3	2.0	1.6
	75-79세	15.1	23.0	26.6	35.3	2.1	1.5
	80-84세	15.9	23.8	25.3	35.0	2.1	1.6
	85세 이상	19.3	29.0	25.2	26.5	1.8	1.5

자료 : 보건복지부 통계포털, 2008 노인실태조사-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기초분석보고서

주 : 전체 조사대상자 15,146명을 대상으로 함

### 4) 건강식품 등 복용 증가

- 65세 이상 전체 인구 9,119명 중에서 약 또는 건강식품을 복용한다는 응답은 84.5%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응답률은 75-79세(88.7%)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그 중에서 병의원 처방약이 93.7%로 거의 대부분이었으며, 건강보조, 기능성식품 21.4%, 한방처방약 6.6% 비처방약 6.5% 순이었다.

표 I-2-19 연령별 약 또는 건강식품 복용여부 및 종류

(단위 : %, 명)

	복용함(중복응답)					계	명
	복용함	병의원 처방약	한방처방약	비처방약	건강보조, 기능성식품		
전체(65세 이상)	84.5	93.7	6.6	6.5	21.4	100.0	9,119
60-64세	76.2	90.1	4.9	6.7	27.1	100.0	3,314
65-69세	82.3	91.8	5.7	5.8	23.3	100.0	3,373
70-74세	85.1	94.6	7.7	6.9	21.1	100.0	2,612
75-79세	88.7	94.5	6.7	6.5	20.6	100.0	1,686
80-84세	86.5	96.5	5.8	8.2	18.6	100.0	903
85세 이상	79.6	94.8	8.4	6.6	19.0	100.0	547

자료 : 보건복지부 통계포털, 2008 노인실태조사-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기초분석보고서

### 5) 노인진료비 증가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0년 건강보험 주요통계를 보면, 노인진료비는 14조 58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2% 증가하였고, 전체 총진료비 중 32.2%로, 2005년 24.4%에 비해 7.8%나 증가하였고, 증가폭이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표 I-2-20 연도별 노인진료비 현황(2005년-2010년)

(단위 : 천일, 억원, 원, %)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적용인구(천명)	47,392	47,410	47,820	48,160	48,614	48,907
노인인구(천명)	3,919	4,073	4,387	4,600	4,826	4,979
비율 (%)	8.3	8.6	9.2	9.6	9.9	10.2
총진료비(억원)	248,615	284,103	323,892	348,690	393,390	436,281
노인진료비(억원)	60,731	73,504	91,189	107,371	124,236	140,583
비율 (%)	24.4	25.9	28.2	30.8	31.7	32.2
노인월진료비(원)	129,124	150,400	173,217	194,513	214,507	235,305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털 통계자료실, 2010년 건강보험 주요통계

주 : 1. 총진료비는 총요양급여비용을 의미함.

2. 노인인구는 65세이상 건강보험가입자 적용인구임.

## 6) 요양병원 증가

- 요양기관종별 요양급여비용 현황을 보면, 2010년 요양병원은 전체 급여비용의 약 4.0% 정도로, 전년대비 30.8%('09년 1조 3,257억 원 → '10년 1조 7,345억 원)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를 보였고, 2007년 대비 132.7% 증가하여 노인수 증가에 따른 요양병원 수요도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표 I-2-21 요양병원 심사실적(2007년-2010년)

(단위 : 천일, 억원, %)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증감율	
		내원 일수	요양급여 비용	내원 일수	요양급여 비용	내원 일수	요양급여 비용	내원 일수	요양급여 비용		
총계	계	1,207,911	322,590	1,235,606	350,366	1,329,284	394,296	1,369,919	436,570	3.1	10.7
	입원	74,839	97,977	84,388	109,722	92,847	124,020	103,766	144,926	11.8	16.9
	외래	1,133,073	224,613	1,151,217	240,644	1,236,437	270,275	1,266,153	291,644	2.4	7.9
요양 병원	소계	13,067	6,723	18,337	9,981	22,516	13,257	26,473	17,345	17.6	30.8
	입원	11,119	6,270	16,013	9,444	19,643	12,569	23,671	16,593	20.5	32.0
	외래	1,947	453	2,324	537	2,873	688	2,802	752	-2.5	9.3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0년 진료비통계지표

주 : 1. 내원일수 및 요양급여비용 증감율은 단위 절사하기 전의 비율임

- 요양기관종별 청구기관수 현황을 보면, 2010년 요양병원은 987개소로 전년도 대비 14.5%로 가장 크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표 I-2-22 연도별 요양기관 종별 청구기관수 현황

(단위 : 개소, %)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증감율(%)
상급종합병원	42	43	43	43	44	44	-
종합병원	257	266	274	284	286	293	2.4
병 원	1,192	1,407	1,802	2,156	2,237	2,437	8.9
(요양병원)	200	367	639	828	862	987	14.5
의 원	25,730	26,498	26,828	27,040	27,018	27,412	1.5
치과병원	130	142	163	172	195	208	6.7
치과의원	12,855	13,338	13,639	14,022	14,395	14,939	3.8
한방병원	166	165	167	161	177	198	11.9
한 의 원	9,867	10,533	11,220	11,699	12,039	12,449	3.4
보건기관 등	3,424	3,447	3,455	3461	3,459	3,459	-
약 국	20,752	21,146	21,296	21,263	21,250	21,463	1.0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0년 진료비통계지표

주 : 병원에는 요양병원이 포함되어 있음



## 제3장 고령친화산업 지원 현황

### 1. 법 · 제도

- 고령친화산업 지원을 위한 법령은 크게 3가지가 있음. 첫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 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05년 5월 제정). 둘째, 고령친화산업을 지원·육성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하는 고령친화산업진흥법(06년 12월 제정). 셋째,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07년 4월 제정)이 있음
- 고령친화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도 있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기본계획도 수립하여 진행하고 있으나 대부분 저출산 및 노인 복지에 중심이 되어 있고, 산업적인 지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제도 등으로 한정되어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초기 요양산업 및 복지용구 소비 촉진에 다소 기여하였으나, 현재 보험재정의 한계와 보험 도입을 통한 부작용(보험이 적용되는 저가 복지용구만 소비되어 산업경쟁력 약화, 요양서비스 질 저하 등) 등이 있어 산업활성화에는 크게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법·제도 관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05년 5월 제정)

- 목적 :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 주요 조항

## - 제20조(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제20조(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①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기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④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21조(연도별 시행계획)

제21조(연도별 시행계획)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변경하도록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기본계획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23조(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①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1.1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한 중·장기 인구구조의 분석과 사회경제적 변화전망에 관한 사항
2.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4.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5.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0.1.18>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2. 고령화 및 저출산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2.29]

2) 고령친화산업진흥법 ('06년 12월 제정)

- 목적 : 고령친화산업을 지원·육성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 조항
  - 제4조(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

제4조(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에 관한 계획(이하 "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이라 한다)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의 기본 방향
2. 고령친화산업의 분야별 발전시책
3.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조성
4.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
5.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역할분담
6.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제8조(고령친화산업 표준화)

제8조(고령친화산업 표준화)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령친화제품등의 품질향상과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품목 및 서비스의 경우에는 동법에 의한다.

1. 고령친화제품등의 표준의 제정·개정·폐지 및 보급
2.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국내의 표준의 조사·연구 및 개발
3.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령친화관련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에 대하여 제1항 및 제9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 제9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촉진)

제9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촉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와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하는 자를 지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령친화관련기관으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 제10조(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설립·지정)

제10조(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설립·지정)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령친화산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고령친화산업 관련 지원사업을 하는 연구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의 조사·연구
2.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술 및 표준화 연구
3.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업
4.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
5. 고령친화산업의 창업 및 경영지원, 정보의 수집·공유·활용에 관한 사업
6. 고령친화산업 발전을 위한 유통활성화와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7. 고령친화사업자에 대한 지원
8.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우수제품·우수사업자 지정 업무
9.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원센터로 지정한 기관에 대하여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지정·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우수제품 등의 지정·표시)

제12조(우수제품 등의 지정·표시)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품질 등이 우수한 고령친화제품등을 고령친화우수제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으로, 서비스의 질이 우수한 고령친화사업자를 고령친화 우수사업자(이하 "우수사업자"라 한다)로 각각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에 대하여는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의 지정업무를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센터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의 지정기준·지정절차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우수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및 환수)

제15조(우수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및 환수)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수제품을 제조하는 자 및 우수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기술개발 자금 및 시제품 상용화의 지원
2. 기술지도 및 관계법령에 의한 품질인증의 획득지원
3. 연구시설 및 장비의 이용지원
4.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우수제품을 제조하는 자 및 우수사업자가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지원 상당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지원 및 지원환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07년 4월 제정)

- 목적 :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함
- 주요 조항
  - 제6조(장기요양기본계획)

제6조(장기요양기본계획)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장기요양급여 대상인원 및 재원조달 계획
2.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전문인력 확충 방안
3. 그 밖에 노인등의 장기요양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우수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및 환수)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수제품을 제조하는 자 및 우수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기술개발 자금 및 시제품 상용화의 지원
2. 기술지도 및 관계법령에 의한 품질인증의 획득지원
3. 연구시설 및 장비의 이용지원
4.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우수제품을 제조하는 자 및 우수사업자가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지원 상당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지원 및 지원환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장기요양보험)

제7조(장기요양보험) ①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

②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는 공단으로 한다.

③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이하 "장기요양보험가입자"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93조에 따른 가입자로 한다.

④ 공단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보험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09.3.18, 2010.1.18>

-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①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6.7>

1. 재가급여

- 가.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 나.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다.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라.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마. 단기보호 :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바.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3. 특별현금급여

- 가. 가족요양비 : 제24조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장기요양급여
- 나. 특례요양비 : 제25조에 따라 지급하는 특례장기요양급여
- 다. 요양병원간병비 : 제26조에 따라 지급하는 요양병원장기요양급여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과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업무·보수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절차·방법·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1.12.8 제23조

-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①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평가하여 장기요양급여의 수준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제23조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였는지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의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2. 주요 정책 현황

- 고령친화산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지정, 고령자와 부양가족을 위한 고령친화제품 전시·체험 및 정보제공을 위한 고령친화 종합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음
- 주요 정책 현황은 다음과 같음

### 1)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 일반현황
  -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10조에 따라 고령친화산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는 연구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
  - 현재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로 지정 받은 기관은 2개 기관으로 다음과 같음
- 보건복지부지정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 보건복지부는 2008년 1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로 지정
  - 2011년 주요 업무
    - 고령친화산업 육성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지원
    - 고령친화산업정보은행(<http://www.esenior.or.kr>) 고령친화산업 대표 홈페이지 발전·운영
    - 고령친화우수제품, 정책 및 제도 등 고령친화산업 홍보를 위해 매년 홍보관 운영
    - 지역사회밀착형 전시·체험관 설치 운영
    - 고령친화산업 해외시장진출 지원 및 국제협력
    - 고령친화제품 사용성평가시스템 개발 및 운영
    - 고령친화 우수기업 발굴 및 장관 표창 지원

- 지식경제부지정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 산업자원부는 2008년 6월 (재)부산테크노파크를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로 지정
    - ※ 2010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종료되면서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업무를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로 이관
  - 주요 사업
    - 고령친화용품 산업화 지원기반 구축사업('10.8. 종료)
    - 한방실버웰리스산업 육성체계 구축('11.6. 종료)
    - 인체공학적 설계에 의한 고령친화형 기능성 신발개발('09.3. 종료)
    - 고령친화제품 단기실용화 기술개발 사업('09.4. 종료)
    - 동남권 IT융합 전동복지기기산업 육성('11.6.)
    - 기능성 One-stop & One-device 유니버설디자인 척추보조기 개발('11.4.)
    - 우수고령친화제품 무료체험 서비스 제공 및 고령친화제품 홍보대사 활용사업('12.2.)
    - 실버 웰페어기기 IT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12.7.)

## 2) 고령친화산업 종합체험관 구축

### 가. 고령친화 종합체험관 구축

- 일반현황
  - 고령자와 그 부양가족을 위해 신체 및 인지능력 저하 등 고령자 특성을 감안한 고령친화제품의 전시 및 동 제품의 이용을 통한 편익성과 안전성의 직접 체험, 각종 고령자에 대한 정보(요양, 주택, 문화, 관광, 자산관리 등) 등의 제공을 통해 고령친화산업의 신규 수요의 창출과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
  - 고령친화제품·서비스종합체험관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고령친화산업발전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현재 성남과 대구('08년)에 구축되었고, 광주체험관 ('11년)에 구축 예정임
- 성남 고령친화체험관
  - 2007년 7월 성남시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산업자원부의 고령친화산업서비스종합체험관 구축사업 최종사업자로 선정되어 2008년 12월에 1차 개관
  - 전시·생애·치매체험관 운영, 고령친화제품 및 기업소개, 기업을 대상으로 정책개발, 기업연수, 사용성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대구 고령친화체험관
  - 2008년 대구, 경북지역 중심의 고령친화체험관 구축하여 대구보건대학 주관으로 운영



-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 마련과, 기업의 입주, 홍보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지역 시니어와의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커뮤니티 운영

#### 나. 지역사회밀착형 전시체험관

- 지역사회내 건강하고 활동성 있는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지역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상생활 속 근거리 공간(노익복지관)에 체험관 설치를 통한 고령친화제품 인식을 확산하고, 수요기반을 확충하고자 함
- 2011년 서울 은평, 경기도 화성, 의왕시 3개 지역에 예비고령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한 ‘지역사회밀착형 전시체험관’ 설치 및 운영
  - 소규모의 고령친화체험관 설치를 통한 고령친화제품 이용 및 홍보
  - 고령친화제품의 올바른 사용법 등의 교육 프로그램 개설

### 3.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에 따라 두 차례(2006년 제1차, 2011년 제2차)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제21조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 저출산·고령사회 1,2차 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음

#### 1) 법적 근거

- 근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

- ①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2) 제1차('06~'10), 제2차('11~'15) 기본계획 비교·분석

- 정책 추진방향을 보면, 제1차 계획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구축을 목표로 광범위하게 추진되었다면, 제2차 계획은 점진적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더욱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I-3-1 제1차 및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추진과제 비교·분석

구분	제1차('06~'10)	제2차('11~'15)
비전	모든 세대가 함께 하는 지속발전가능사회	저출산고령사회 성공적 대응으로 활력있는 선진국가로 도약
목표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및 고령사회 대응 기반 구축	점진적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 대응체계 공고화
추진과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출산양육의 사회적 책임 강화</li> <li>(2) 일·가정 양립가능 사회시스템 구축</li> <li>(3) 가족친화·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li> </ol> </li> <li>2.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li> <li>(2) 건강·의료보장체계 구축</li> <li>(3) 노인친화적 사회기반 조성</li> </ol> </li> <li>3. 미래성장동력 확보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여성·고령 인력 활용</li> <li>(2) 인적자원의 경쟁력 제고</li> <li>(3) 고령친화산업 육성</li> </ol> </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일·가정 양립 일상화</li> <li>(2) 결혼, 출산, 양육 부담 경감</li> <li>(3)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환경조성</li> </ol> </li> <li>2.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베이비붐세대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li> <li>(2)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 생활보장</li> <li>(3) 고령친화 사회환경 조성</li> </ol> </li> <li>3. 미래성장동력 확보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li> <li>(2)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 개선</li> <li>(3) 고령친화산업 육성</li> </ol> </li> </ol>

○고령자 중심의 세부계획을 비교해 보면,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분야에서는 1차 계획이 노인일자리 창출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서 2차 계획은 내실화로, 저출산·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 분야에서는 1차 계획이 고령사회의 금융기반 조성에서 2차 계획은 이에 수반되는 제도개선으로, 고령친화산업 육성은 1차 계획이 고령친화 우수제품(사업자) 지정제도 도입에서 2차 계획은 이를 확대, 1차 계획은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클러스터 구축에서 2차 계획은 국내 수요기반 확충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으로 1차 계획은 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 등을 도입했다면, 2차 계획은 그에 따른 제도의 개선 및 확대, 이를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표 I-3-2 제1차 및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세부내용 비교·분석

제1차('06~'10)	제2차('11~'15)
<p><b>2.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b></p> <p>(1)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p> <p>1) 공적 연금제도 내실화</p> <p>①국민연금의 장기 지속가능성 확보</p> <p>②특수지역연금 제도 개선</p> <p>③국민연금과 특수지역연금 가입기간 연계</p> <p>④고령사회 근로유인 제공을 위한 연금체계 구축</p> <p>2)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p> <p>①경로연금 확대</p> <p>②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p> <p>3) 사적 소득보장제도 확충</p> <p>①퇴직연금제도 조기 정착</p> <p>②개인연금 활성화</p> <p>(2)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p> <p>1) 노후 건강관리 기반 조성</p> <p>①사전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p> <p>②노후 의료보장 내실화</p> <p>③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운동사업 활성화</p> <p>2) 고령사회 대비 노인 요양보호 기반 확충</p> <p>①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p> <p>②노인 요양 인프라 확충</p> <p>③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지원체계 구축</p> <p>④요양산업 활성화</p> <p>3) 평생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p> <p>①체육 인프라의 활용도 제고</p> <p>②연령별·개인별 특성에 맞는 체육프로그램 개발</p> <p>(3)안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 조성</p> <p>1) 안전한 주거공간의 확보</p> <p>①고령자가구의 주거기준 설정 및 주택개조 지원</p> <p>②저소득 고령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p> <p>2) 고령친화적 교통환경 조성</p> <p>①고령자를 배려한 대중교통 이용 및 보행 환경 개선</p> <p>②고령운전자에 적합한 교통기반 마련</p> <p>3) 활동적인 노인 사회참여 여건 조성</p> <p>①노인적합형 일자리 창출</p>	<p><b>2.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b></p> <p>(1)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p> <p>1) 다양한 고용기회 제공</p> <p>①고령자 고용연장</p> <p>②맞춤형 고령자 전직 및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p> <p>③중고령자 적합형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p> <p>④중고령인력 전문성 활용 제고</p> <p>⑤고용상 연령차별금지제도의 정착</p> <p>2)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확립</p> <p>①국민연금의 장기 지속가능성 확보</p> <p>②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p> <p>③사적 소득보장제도 확충</p> <p>3) 사전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p> <p>4) 노년기 생애대비 노후생활 설계 강화</p> <p>①노후설계 기반조성</p> <p>②노후설계서비스 지원 및 활성화</p> <p>(2)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조성</p> <p>1) 일자리 사업의 내실화</p> <p>①노인일자리 양적확충 및 질적 고도화</p> <p>②일자리사업 체계화</p> <p>2) 노인빈곤예방을 위한 소득보장 방안 마련</p> <p>①무연금·저연금 노인을 위한 연금제도 내실화</p> <p>②국민연금 급여의 근로유인성 제고</p> <p>③농어촌 고령자 소득보장</p> <p>3) 건강한 노후생활 및 의료비 지출 적정화</p> <p>①노년기 주요질환 관리체계 구축</p>

제1차('06~'10)	제2차('11~'15)
<p>②생산적인 여가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및 참여여  <u>진 조성</u></p> <p>③농어촌 노인 복지서비스 및 사회참여 기반 확충</p> <p>④노인권익증진 및 효문화 조성</p> <p><b>3. 저출산·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b></p> <p>(1)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p> <p>2)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생산적 고령화 시스템 구축</p> <p>①연령차별 금지 법제화 및 정년제도 개선</p> <p>②기업의 임금체계 개편 및 근로형태 다양화 지원</p> <p>③고령자 고용촉진 인센티브 강화</p> <p>④중고령자 직업능력개발 지원</p> <p>⑤고령근로자 직무수행환경 개선</p> <p>(2)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p> <p>1)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 및 평생학습체계 확립</p> <p>③평생학습, 직업훈련인프라 및 국가기술자격제  <u>도 혁신</u></p> <p>(3)고령사회의 금융기반 조성</p> <p>1)역모기제도 활성화</p> <p>2)자산운용산업의 활성화</p> <p>3)장기국채시장 활성화</p>	<p>②치매노인 관리체계 구축</p> <p>③장기요양보험 내실화</p> <p>④노령기 기초건강증진을 위한 운동사업 활성화</p> <p>⑤의료비 지출 적정화</p> <p>4) 다양한 사회참여, 여가문화 기회 제공</p> <p>①고령자 자원봉사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p> <p>②고령자의 여가문화 향유기반 확대</p> <p>(3)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p> <p>1) <u>고령친화적 주거·교통환경 조성</u></p> <p>①주거환경 조성</p> <p>②고령친화적 대중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p> <p>2) <u>노인 권익증진 및 노인공경 기반 마련</u></p> <p>①독거노인 및 부부노인가구의 보호강화</p> <p>②학대노인의 보호강화</p> <p>③노인공경 및 복지기반 마련</p> <p><b>3. 성장동력 확보 및 분야별 제도개선</b></p> <p>(1)잠재인력 활용 기반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p> <p>3)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체계 확립</p> <p>③평생학습 인프라 구축</p> <p>(2)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개선</p> <p>2) <u>인구고령화에 대비 주택 및 금융분야 제도개선</u></p> <p>①주택분야 제도개선</p> <p>②금융분야 제도개선</p> <p>3)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재정분      야 제도개선</p> <p>①미래 재정위험 대비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p>

제1차('06~'10)	제2차('11~'15)
<p>(4)고령친화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p> <p>1)고령친화산업 육성 인프라 조성</p> <p>①고령친화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정·시행</li> </ul> <p>②우수 고령친화제품(서비스) 지정·표시제도 도입</p> <p>③고령친화제품 종합체험관 설립</p> <p>2)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촉진 및 클러스터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설립</li> <li>- 고령친화제품개발 종합 지원 산업클러스터 구축</li> </ul> <p>3)고령친화제품 표준화 확대</p> <p><b>4.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b></p> <p>(1)전략적 교육·홍보</p> <p>(2)정책공동체 구축 및 사회적 합의 유도</p> <p>(3)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추진체계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중앙 및 지방자치단체간 정책 연계 강화</li> <li>②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성과관리체계 구축</li> <li>③인구패널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li> </ul>	<p>(3)고령친화산업 육성</p> <p>1)제품 및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산업경쟁력 확보</p> <p>①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촉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령친화제품 사용성 평가시스템 개발·운영</li> </ul> <p>②고령친화제품(서비스) 표준화</p> <p>③고령친화제품(서비스) 지정·표시제도 확대</p> <p>2)국내·외 시장 활성화</p> <p>①국내 수요기반 확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보관 운영 내실화</li> <li>- 고령친화 제품·서비스 종합체험관 운영 활성화</li> <li>- 지역사회밀착형 전시·체험관 운영</li> </ul> <p>②해외시장 선점 인프라 확충 및 지원</p> <p>3)고령자용 식품산업 기반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용도용식품 중 고령자용 식품 기준·규격 신설</li> <li>- 고령자용 식품 신규시장 창출 및 시장 활성화</li> </ul> <p><b>4.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b></p> <p>(1)홍보 및 교육</p> <p>(2)민간의 참여와 합의를 바탕으로 범국민운동 확산</p> <p>(3)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추진체계 구축</p>

\* 1차, 2차 계획을 비교하여 연계성이 있는 것은 밑줄로 표시

### 3) 제1차('06~'10) 기본계획 중 고령친화산업 육성분야 성과

○ 제1차 계획 중 고령친화산업 육성 분야는 크게 인프라 조성, 기술개발 촉진, 표준화 확대 등 3가지로 구분하여 지원하였음. 첫째, 인프라 조성 분야에서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을 제정·시행하였고, 고령친화제품(서비스) 지정제도 도입, 고령친화제품 종합체험관 설립, 고령친화 통합 DB를 개발 및 구축하였음. 둘째, 기술개발 촉진 분야에서는 단계별 기술개발 추진,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및 산업클러스터 구축, 우수제품 전시회를 운영하였음. 셋째, 표준화 확대를 위해 고령장애인 복지 표준 제개정 및 국제표준화 동향을 파악한 것으로 나타남

표 I-3-3 제1차 기본계획 중 고령친화산업 육성분야 성과 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령친화산업 육성 인프라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령친화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정·시행</li> </ul> </li> <li>○ 우수 고령친화제품(서비스) 지정·표시제도 도입</li> <li>○ 고령친화제품 종합체험관 설립(성남, 대구, 광주)</li> <li>○ 고령친화산업 통합 DB개발 및 구축(지경부, 복지부)</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계별 기술개발 추진(지경부, 행안부)</li> <li>○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설립</li> <li>○ 고령친화제품개발 종합 지원 산업클러스터 구축</li> <li>○ 우수제품 전시기회 확대</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령자장애인 복지 표준 제개정 추진</li> <li>○ 국제표준화 동향 파악 및 대응</li> </ul> </li> </ul>

#### 4) 제2차('11~'15) 기본계획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2011년 기준)

-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부처별, 지방자치단체별 시행계획의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가. 일반 현황

- 근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고령친화산업 관련 분야 투자 규모
  - 약 7.6조원 규모(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별 시행계획 포함)
    - 부처 : 7.0조원(고령화 5.5조원, 성장동력 1.5조원)

- 지방자치단체 : 0.6조원(고령화 0.5조원, 성장동력 0.1조원)

## 나. 부처별 시행계획

### ○ 보건복지부

- 고령화 분야에 ①보건소 중심 통합건강관리체계 구축, ②만성질환자 관리프로그램 도입, ③노인일자리 단계적 확대, ④기초노령연금 내실화, ⑤노인구강증진 서비스 확대, ⑥품질 높은 요양서비스 제공, ⑦장기요양보험 운영지원, ⑧독거노인 및 손자녀 양육노인의 보호강화를 추진 중임

- 노인일자리 창출, 기초노령연금 내실화를 위한 금융지원과 요양산업 위주의 계획이 이뤄지고 있음

- 성장동력 분야는 고령친화제품 사용성 평가시스템 개발 운영을 통한 고령친화 기기산업 부분에 투자하고 있음

### ○ 고용노동부

- 고령화 분야에 ①기업-노령자 친화적 임금피크제 활성화, ②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제도 개편, ③중고령층취업성공패키지 운영 등 고용안정 촉진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 ○ 교육과학 기술부

- 고령화 분야에 ①중고령자 유아교육 인력풀 구축, ②중고령자를 활용한 취업상담서비스 제공, ③과학연구분야 퇴직인력 활용도 제고 등의 고령자의 일자리 마련에 대부분을 지원하고 있음

### ○ 국토해양부

- 고령화 분야에 ①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②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부분의 고령자 주거안정을 위한 환경조성에 힘쓰고 있음

### ○ 문화체육 관광부

- 고령화 분야에 ①노인운동문화 확산 및 전문인력 확충, ② 문화바우처 지원, ③고령자의 여가문화 프로그램 개발 보급, ④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 노인운동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음

### ○ 농림수산식품부·농진청

- 고령화 분야 ①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②경영이양직접지불제 내실화, ③농지연금 도입, ④농어촌 가사도우미, ⑤농촌건강장수마을 조성

### ○ 지식경제부

- 성장동력 분야에 ①고령친화제품 서비스 표준화, ②고령친화제품 종합체험관 운영 활성화

화(비예산)에 주력하고 있음

- 여성가족부
  - 고령화 분야에 독거노인 및 손자녀 양육 노인의 보호 사업을 지원
- 행정안전부
  - 고령화 분야 고령자 자원봉사활동 다양화하여 고령자의 사회봉사 참여도를 높이도록 하는 사업을 계획
- 금융위원회
  - 성장동력 분야 개인·주택 연금 활성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주식펀드투자 규제완화 검토
- 기획재정부
  - 성장동력 분야 개인·주택 연금 활성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주식펀드투자 ③재정건전성 관리시스템 개선, ④신규세원 발굴 등 세입기반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장기금융시장의 재정소요 증대에 대응
- 경찰청
  - 성장동력 분야에 노인보호구역 지정하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고령운전자 안전교육 추진
- 중기청
  - 고령화 분야 ①시니어 창업지원, ②퇴직인력 활용 상인조직 육성을 지원함

## 나. 지방자치단체별 시행계획

- 서울특별시
  - 서울시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고령화 분야에 879억원을 투자하여, 잠재인력 활용 및 교육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
  - 고령화 분야
    - 노인생활체육 활성화
    - 재가관리사 지원서비스 강화
    - 건강한 노년을 위한 치매통합관리
    - 데이터케어센터 설치 및 인증제 실시
    - 노인주치의 확대
    - 9988 복지세터·어르신 행복타운 조성
    - 실버갤러리 운영
    -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 저소득 노인 급식



- 노인성 질환 전문치료병원 확충
- 노인의 자원봉사 참여 확대
- 노인복지관 신축 지원
- 경로당 문화르네상스
- 실버극장 확대 운영
- 어르신 행복 콘서트
- 꿈꾸는 청춘예술대학
-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종합계획
- 어르신 인문학 아카데미
- 노인복지 옴부즈만 제도
- 노인관련단체 네트워크 강화
- 실버영화제 개최
- 종로실버문화벨트 조성
- 학교시설활용 노인프로그램 확대
- U헬스케어 서비스 운영
- 성장동력 분야
  - 가족친화 및 효문화 함양 교육 강화
  - 평생학습 인프라 확충
  -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학교 교육 강화
- 부산광역시
  -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창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을 통한 노인보호사업, 고령친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음
  - 고령화 분야
    - 노인소득증대지원 : 노인일자리 제공 등
    - 저소득 노인 생활안정지원 : 기초노령연금 지급 등
    - 노인보호사업 강화 : 노인요양시설 확충, 요보호노인 보호강화 등
    - 고령친화산업 경쟁력 제고 : 고령친화산업 지원센터 운영, 고령친화용품 산업 박람회 개최 등
    - 장사시설 조성 : 추모공원 봉안시설 관리시스템 구축 등
  - 성장동력 분야
    - 국립노화종합연구원 부산유치 추진 : 위원회 운영 등
    - 2020년 부산노인사회 비전 수립 추진 등

○ 대구광역시

-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및 저출산·고령사회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고령화 분야에 지원을 하고 있으며, 품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요양시설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
- 고령화 분야(1억원)
  - 노인상담소 운영지원 등
  - 노인생활시설 노인에 대한 결연사업
- 성장동력 분야
  - 평생학습인프라 확충(교육청)

○ 인천광역시

- 고령화 분야
  - 노인의 생활안정 지원 : 소외계층 노인 우선지원 등 맞춤형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 기초노령연금의 내실 있는 추진
  - 노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 노인들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지원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다양한 노인 여가문화 보급 및 시설 인프라 확충
  -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치매 등 노인성 질환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치매 등 노인성 질환에 대한 전문의료서비스 제공, 보건소중심의 통합건강관리체계 구축 및 노인건강진단 실시

○ 광주광역시

-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복지서비스 인프라 구축에 주안점을 두었음
- 고령화 분야
  - 찾아가는 보건서비스 등 건강관리지원
  - 실버예술단, 은빛 축제 등 여가프로그램 운영

○ 대전광역시

-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과 성장동력확보 및 분야별 제도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
- 고령화 분야
  - 베이비 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 다양한 고용기회 제공, 중고령자 인력풀 구축, 노인 건강관리 증진 등
  -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 노인 여가활동을 위한 인프라 마련, 노인체육행사 지원, 평생교육대학 운영
  - 고령친화적 사회 환경조성 : 효문화 정착을 위한 효행장려 여건 조성

- 울산광역시
  - 노인의 사회참여비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 위주로 추진
  - 고령화 분야
    - 치매노인 지원센터 운영
    - 다양한 노인여가 프로그램 개발
    - 경로식당 운영
    - 재사서비스 활성화
    - 노인불법주정차 단속보조원 채용
    - 노인의날 Beautiful Silver Festaval
    -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 문화행사지원 등
- 경기도
  - 일자리 창출 및 고령자의 사회참여를 높일 수 있는 사업 추진
  - 고령화 분야
  - 노인 장기요양 재가(시설)급여 지원
  -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 시군 실버인력뱅크 운영 등
- 강원도
  - 고령화사회 대응 방안 보다 출산장려사업들을 위주로 계획되고 있음
  - 고령화 분야
    - 장수수당 지급 : '22년 이전 출생어른에게 월2만원 장수수당 지급
- 충청북도
  - 베이비붐 세대를 대비한 고령화 대응체계구축 및 노인 소득보장을 위한 방안 마련, 건강한 노후생활 관리체계 구축, 고령자 사회 참여 기회 제공 등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
  - 고령화 분야
    -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사업
    - 경로당 혁신을 위한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 노인봉사활동 지원
- 충청남도
  - 여성 및 고령자 잠재인력 활용 기반구축,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기반조성
  - 고령화 분야
    - 고령사회 대비 평생프로그램 운영

- 노인건강프로그램 운영 등
- 전라북도
  -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 기반 구축
  - 고령화 분야
    - 결식 우려노인 지원사업 등
  - 성장동력 분야
    - 평생학습인프라 확충
- 전라남도
  - 고령화 분야
    - 농어촌 건강증진 센터(공중목욕장) 건립
    - 경로당 운영비 지원
- 경상북도
  - 고령자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
  - 고령화 분야
    - 경로식당 무료급식
    - 독거노인 무료간병지원
    -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
    - 무의탁 노인 건강음료배달 및 안부 묻기
    -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센터 운영
    - 경로당 특별 연료비 지원
    - 경로당 운영지원
    - 노인교실 운영
- 경상남도
  - 건강하고 행복한 고령사회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 고령화 분야
    - 결식 우려노인 무료 급식사업
    - 노인지원상담실 운영
    - 노인관련단체 직원
    - 경남 실버대학원 운영 등 노인 참여활동 지원
    - 고령화 시대 노인복지증진과 권익신장 제고
- 제주특별자치도
  -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 및 부작용 최소화, 주거·교통 등의 분야에서 고령친화적 사회

- 기반 구축, 고령친화산업을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시키고자 하는 방향으로 추진
- 고령화 분야
    - 장수노인수당, 노인고육축진장려금

## 4. 고령친화산업 R&D 지원 현황

### 1) 외국

#### 가. 미국

- 미국은 노인과 가족의 동거율이 18%로 낮은 편이며, 자립심이 강하여 자녀나 가족과는 떨어져 살고 있는 노인인구가 많은 편임
- 미국의 유료 복지사업은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어 노인복지를 위한 사업에 많은 민간 기업이 참여를 하고 있고, 노인을 소비자로 인식하여 보다 높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산업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음
- 또한, 기업에 대한 통제와 감독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州)에서 마련한 법이 엄격히 적용되고 있으며, 기기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음

#### ① 미국의 ATP (NIST의 고령자를 위한 첨단의료기술 프로그램)

- 개요
  - 미국 상무성 산하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 and Technology)에서 추진
  - NIST내에 경제평가실이라는 별도의 독립 조직을 두고 기술개발 측면뿐만 아니라 개발 사업자의 효율적인 경영 상태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고령자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관련 기술에 자금을 지원
  - 고령자 대상의 질환치료나 진단 의료기기, 모니터링 및 센서장치, 의사소통 도구, 약투여 시스템, 원격 건강관리 지원, 건강기록, 병의 진단 및 치료 옵션 등

표 I-3-4 ATP의 사업별 기금 현황

(단위 : 개, 백만 달러)

명 목	ATP 지원과제	ATP 기금	산업 기금	전체 기금
만성 질환의 진단과 치료	13	23.6	17.7	41.3
건강관리 보급(Healthcare Delivery) 증진	3	5.8	2.1	7.9
자립적인 삶	2	3.4	2.8	7.2
조직공학(tissue engineering)과 조직이식 영역	16	30.8	21.0	51.8
전 체	34	63.6	44.6	18.2

※ 자료원 : ATP, 2009

## ○ ATP의 사후관리 프로그램 특징

- 경제적 영향 평가 및 대정부차원 서비스
  - 정부차원에서 국가개발연구사업의 효과 극대화를 위한 지속적으로 경제적 가치제고 효과 평가방법을 연구하고 평가 결과는 프로그램의 발전에 피드백되는 체계임
  - 경제평가실(Economic Assessment Office)이라는 독립된 조직을 운영하며, 경제 및 사업 이슈의 다양성을 포함하는 ATP의 특별 정책 연구를 수행하며 ATP 본부, NIST, 상무 부에 기술정책자문 역할도 수행함
- 기술적, 경제적 측면에서 지속적인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 ATP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에 대해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여부에 초점을 두고 사업선정단계에서부터 단기, 중기, 장기성과를 평가함
  - OEA의 내부 직원뿐만 아니라 대학 및 컨설팅 기업 등의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함
  - 지원된 프로젝트의 실용화 및 상업적 성공 여부를 사후적으로 모니터링함
- 교육 및 연구서비스
  - ATP 자금 수혜기관들의 기술의 응용개발과 상업화를 지원할 수 있는 타 자금의 효과적 조달 지원을 위해 워크샵 및 각종 교육 활동들을 지원함
  - 연구, 출판 및 연구 커뮤니티와의 상호협력 등을 통해 변화관리 서비스를 제공함
-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
  - ATP 과제선정평가단 (SEB : Source e-valuation Board)의 구성에 기술전문가뿐만 아니라 벤처사업 및 비즈니스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음

## 나. 일본

### ① 일반 현황

- 일본의 고령화는 이미 우리나라보다 30년 앞서 진행되었으며, 장수국가의 명성에 맞게 주거, 여가, 생활, 의료 등의 산업이 발달되었음
- 일본은 1995년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이 시행되면서 고령사회대책의 추진으로 고령친화산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함
- 일본의 실버산업 시장 규모
  - 과거 일본의 실버산업은 정부의 적극적인 주도하에 양적 성장을 거듭해 왔으나, 2006년 개호보험제도 정비를 민간기업 참여가 늘어나고 소비자가 서비스를 선택하는 품질중시의 질적 성숙 단계로 진입
  - 2005년을 기점으로 성장폭이 다소 둔화되나 고령층의 비율 증대와 함께 실버산업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 1990년 33조엔에서 2030년에는 약 77조엔 규모로 성장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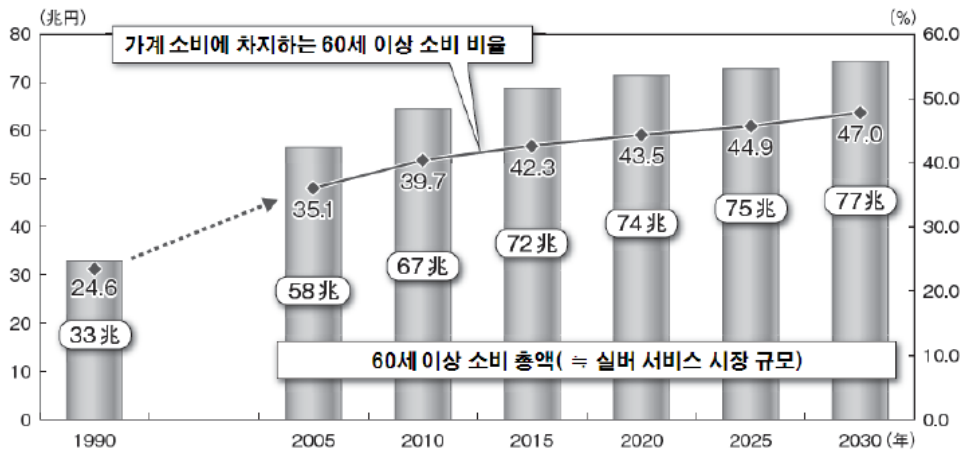


그림 I-3-1 일본 실버산업 시장 규모

※ 자료원 : 일본 닛세이키초 연구소, 일본 실버서비스산업 진흥회

### ○ 복지용구산업 시장규모

- 2000년 공적 개호보험제도가 실시한 이후, 2007년도 복지용구산업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0.7% 증가한 1조 2,608억엔으로 복지용구 시장규모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일본복지용구·생활지원용구협회,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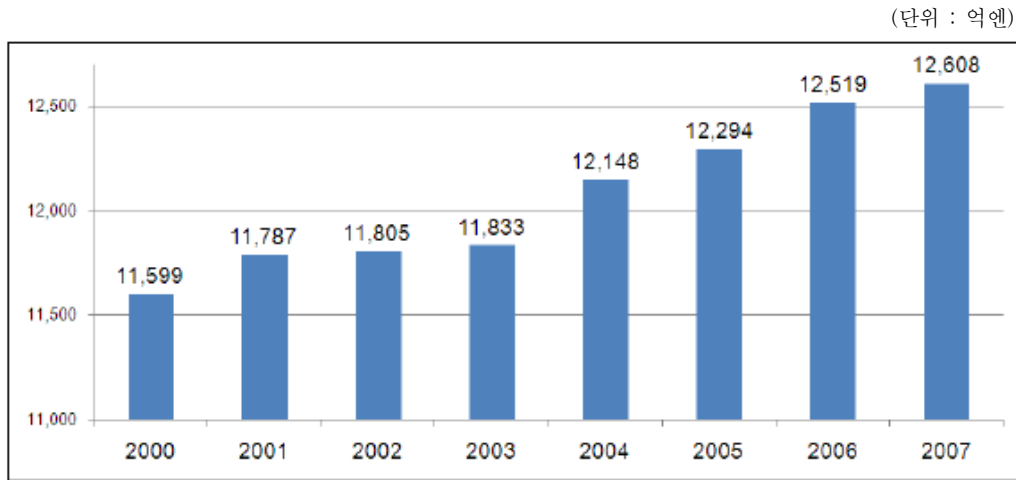


그림 I-3-2 일본의 복지용구 시장규모 추이

② 복지용구 연구개발 사업

- 일본은 1987년 후생성 산하에 ‘재)테크노에이드협회’를 설립하여 복지용구의 표준화, 연구개발, 시험평가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음
- 관련법에 따라 복지용구의 보급에 의해서 자립의 촉진, 간호자의 부담경감, 연구개발 및 보급의 촉진, 산업기술의 향상에 노력하고 있음
  - \* 복지용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의 촉진에 관한 법률(2003년, 법률 제 38호)
- 자립지원, 개호지원, 생체기능 보조 등의 분야에 지원

표 I-3-5 복지용구 개발사업 지원분야 및 연구과제

지원분야	연구과제
자립지원 분야	재택 고령자용립 입위식 배설 보조용 이송 기기(리프트 등)
	자신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장애인·고령자를 위한 식사 자립 장치
	휴대형 화상 처리 기능부 전자 확대경(작은 문자 등을 확대해 볼 수 있는 장치)
	원터치 조작으로 이송 지원할 수 있는 휠체어형 이송기
개호지원 분야	세면 휴대용 화장실(압송 배수식), 욕실용 개호 리프트, 구강 케어 장치(양치질 등)
생체기능 보조분야	스키용 종아리 의족
	반신불수자의 보행 능력 개선을 위한 조절 기능을 가지는 컴팩트한 하지 장비
기타	적외선 보청기 시스템
	휠체어 전도시의 완충용 에어백식 인체 방호 장치
	고령자를 간단하게 조작할 수 있는 보이스 메일 시스템



## 2) 국내

### ○ 정부의 투자지원

- 고령친화산업이 중소기업적 특성을 갖고 있으나 아직은 관련 중소기업의 참여가 부진하며 이에 따라 R&D 투자 및 전문인력이 부족함
  - 국내 고령친화제품 시장이 협소한 데다 대부분의 업체들이 영세하여 기술투자가 어렵고 국외시장의 정보도 부족하여 국제경쟁력 확보 및 수출산업화가 부진함
  - 국산화율이 낮은 상황에서 고가·고기능 고령친화제품의 대부분은 일본산이, 저가·단순기능 제품은 중국산이 국내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 정부의 R&D 자금이 지원되지 못하는 사각지대
  - 고령친화용품 중 시장성이 있는 제품들은 기술적으로 high-tech가 아닌 low-tech 또는 mid-tech 분야임. 따라서 high-tech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하는 기존 기술개발과제에 신청하더라도 선정되기가 쉽지 않음
  - 기업의 규모가 크다면 미래의 큰 시장을 위한 R&D 투자가 가능하겠지만 이 분야의 업체들은 매우 열악한 중소기업으로 R&D 투자가 크게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이들을 위한 별도의 R&D 자금의 지원이 요망됨

### ○ 정부의 R&D 지원 현황

- 고령화 연구개발 사업이 특화되어 있지 않으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에서 2008년부터 노인·장애인 보조기구 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 연간 200백만원 이내, 2년 이내 지원
  - 2008년 10개 과제(1,718백만원), 2009년 13개 과제(2,332백만원), 2010년 13개 과제(2,426백만원)를 지원하여 약 65억원을 지원함

표 I-3-6 노인·장애인 보조기구 개발사업 연도별 지원 현황

사업명	'08년	'09년	'10년	합계 (백만원)
노인·장애인 보조기구개발지원	1,718 (10과제)	2,332 (13과제)	2,426 (13과제)	6,476

- 장애 및 고령인구를 위한 지체보조기구, 청각보조기구, 시각보조기구, 일상생활보조기구 제품개발(핵심부품 포함)을 지원을 하고 있음

표 I-3-7 노인·장애인 보조기구개발지원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지체보조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손상된 신체 또는 노화로 인하여 이동성 및 자세유지에 제약을 받는 사람을 위해 자립 및 이동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구(환경제어시스템 포함)</li> <li>○손상된 신체(절단, 마비 및 관절기능)를 대체 할 수 있는 기구(의지, 인공보조물)나, 감각-운동 등 신체기능 회복하기 위한 보조기구</li> </ul>
청각보조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손실된 청각을 보상하기 위해 청각적 정보를 증폭, 혹은 시각, 촉각을 대체하여 정보접근을 가능케 하는 기구(난청인 보조기구, 소음공해 제거 및 예방기구포함)</li> </ul>
시각보조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손상된 시력을 보상하기 위해 시각적 정보를 확대하거나 시각적 정보를 청각이나 촉각으로 대체, 비장애인과의 유사한 정보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기구(휴대용 보행 보조장치 포함)</li> </ul>
일상생활보조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상생활동작(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 즉 취침, 옷 벗기, 식사, 배변, 배뇨, 세면, 목욕 등을 수행하기 힘든 경우, 보완 대체 할 수 있는 기구</li> </ul>

○R&D 자금 지원 방향

- 낙후된 R&D능력

- 고령친화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영세한 중소기업의 R&D능력은 효율적인 생산을 하기 어렵고 개발된 기술을 양산하는 능력도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업체에서는 판매량이 적어 소량생산을 하기 때문에 기술력의 축적이 어려워 자체 R&D를 할 수 없음

- R&D 자금지원 부족

- 대부분의 자금지원은 기업의 부도를 막기 위해 지원되고 있지만 산업의 발전을 위해 연구개발 투자 목적으로 이뤄져야 함
- 성장이 유망한 우수업체들을 선별하고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지원 스타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실행되어야 함
- 고가의 외국산 제품과 중국산 저가제품의 틈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품질개선과 생산비용을 줄이기 위한 투자가 이뤄져야 함



## 제4장 중·고령자의 고령친화산업 욕구조사

### 1. 고령자 대상 실태조사 현황

#### 1) 고령자 대상 실태조사 현황파악의 목적

고령자 대상 고령친화산업 욕구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기존 고령자 대상의 실태조사 결과를 최대한 활용하고, 그 이외의 고령친화산업별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항목 도출을 위하여 고령자 대상 실태조사 현황과 그 세부내용을 파악하고자 함

#### 2) 고령자 대상 실태조사 현황

고령친화산업진흥법 및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05. '06)에서 분류한 14대 산업분야와 관련된 어떤 실태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조사·분석하였다. 조사한 결과, 제조업분야(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 고령친화용품 등)에 대한 고령자 실태조사는 없었고, 조사된 다른 산업도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은 이루어지지 않아, 고령친화산업 욕구조사에서는 산업 전반에 대한 수요조사와 더불어 다른 실태조사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은 분야(요양 등) 및 항목(산업적 측면)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제조업 분야(의약품, 화장품, 식품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I-4-1 고령자 대상 실태조사 현황 요약

산업	관련 통계자료 <sup>1)</sup>	주요 조사결과	정책제언
요양	4	노인복지서비스 중 요양서비스의 이용희망률이 높음	
	12,14,15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의사가 있으며, 지속적 건강관리 요구도 높음	- 만성질환예방을 위한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강화 -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 특성별 건강증진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금융 (소득)	1,2,3,4, 5,6,9,13	전체적인 노후 소득 준비가 약함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	-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정·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 노후설계서비스의 제공 - 역모기지제도 활성화
문화 여가	4,7,8	40대 이상은 휴식(TV시청 등)을 즐기지만, 희망여가활동은 관광임.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회참여 활동 요구도 증가	- 문화활동 활성화 - 여가 프로그램의 내용과 수준의 다양화
주거	1,3,4,9	주택소유율이 높고, 주거축소계획이 있으며, 현재 지역에서 살고 싶어함	- 적정 주거기준 마련 및 실현 - 다양한 생활밀착형 서비스 개발 및 서비스 시장 활성화 - 고령친화 도시환경 조성
교통	4	대중교통의 불편함 호소	
정보	7,10	인터넷 등 정보이용이 낮으나 연령이 낮을수록 이용률 증가	맞춤형 정보화 교육의 실시
장묘	2,4	매장보다 화장을 선호	- 화장 증가 추세를 감안하여 중앙정부 및 지자체는 이에 대한 대비 - 죽음의 질 제고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기타	3,11	일자리창출을 가장 선호(노후소득에 대한 불안) 교육에 관심이 큼(특히 일자리, 건강 등)	- 소득보장, 일자리지원 - 노동시장에서의 수요공급원활화 - 고령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수요처 개발 - 효과적인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 시스템의 확립 -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 고령친화산업 육성

고령자 대상 실태조사 세부 현황을 보면, 주거분야는 주거실태조사(국토해양부) 등을 통해 주거형태 및 주거환경을 조사하였고, 경제상태, 건강, 여가, 노후 삶의 질 등 전반적인

1) 관련 통계 : 1. 베이비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현황 분석, 2. 베이비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3. 초고령사회 서울의 변화전망과 정책과제, 4. 2008년도 노인실태조사(전국 노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5. 2009 한국 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6. 2010년 여성가족 패널조사 사업보고서 및 심층분석보고서, 7. 문화향수실태조사, 8. 2010년 국민여가활동조사, 9. 2008년도 주거실태조사, 10. 2009년 정보문화지수 실태조사, 11. 일자리창출을 위한 노·사·정 역할모형, 12. 2010년 사회조사, 13. 2011년 1/1분기 가계동향, 14. 국민건강영양조사(2009), 15. 건강관리서비스 관련 일반 국민 수요조사보고서

생활실태를 간략하게 파악하는 정도의 실태조사로 노인생활실태조사가 대표적이다. 문화여가분야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향수실태조사, 국민여가활동조사를 통해 여가의 유형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정보분야는 행정안전부에서 정부문화지수 실태조사를 통해 응답자의 인터넷 이용특성 등을, 건강분야는 건강행태, 만성질환 등을 파악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보건복지부) 등이 있다. 주로 전반적인 생활실태에 대한 간단한 현황 파악임을 알 수 있다.

표 I-4-2 고령자 대상 통계자료 세부 현황

구분	주관기관	조사연도	조사대상	조사내용
베이비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현황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만48세~56세 (2011년 4월 기준)	거주관련 선호와 노후소득준비 실태
베이비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46세~59세 (조사기간 2010.7.5 ~8.15)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건강상태 및 행태 - 경제상태 및 소비스타일 - 경제활동, 사회참여, 가치관 - 노후관련 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욕구 - 죽음 및 상제례에 대한 가치관
초고령사회 서울의 변화전망과 정책과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10	45세이상 (조사기간 2010.4.28 ~5.19)	서울시 중·고령자 가구실태 및 욕구조사 - 경제활동 및 경제상태 - 주택 및 환경 - 일상생활
2008년도 노인실태조사 (전국 인생활 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보건복지부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2008	만60세 이상 12,567가구 조사	노인실태조사 - 가구 및 가구주의 특성 - 가구의 경제상태 - 일반적 특성 및 거주형태 - 가족 및 사회적 관계와 상호지원 - 경제상태 - 경제활동 - 건강 및 보건의료실태 - 기능상태 및 간병수발실태 - 여가 및 사회활동 - 노인복지서비스 - 노후생활과 삶의 질 - 생활환경
2009 한국 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09	1차 표본규모는 7,072 가구이며, 조사대상은 표본가구, 표본가구에 속하는 15세이상 가구원, 부가조사대상으로 구분되며, 4차 조사완료된 가구는 신규가구	- 가구 및 가구원의 특성 - 경제활동(가족구성원의 근로능력 및 경제활동 참여상태) - 가구경제(소득, 지출, 재산 및 부채) - 주거(주택시설 및 가격, 구조성능, 환경) - 건강 및 의료(건강상태 의료기관 이용현황) - 가족(가족관계, 가족문제)

구분	주관기관	조사연도	조사대상	조사내용
			를 포함하여 6,207가구이다.(조사기간 2008.4.18~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실태·만족 및 자원활동</li> <li>- 사회보험, 개인연금, 퇴직금</li> <li>- 공공부조(신청 및 신청탈락, 수급 및 탈피, 의료급여수급실태)</li> <li>- 사회복지서비스</li> <li>- 아동부가조사(학교생활, 정서와 행동, 부모와의 관계)</li> </ul>
2010년 여성가족패널조사 사업보고서 및 심층분석보고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0	조사대상 가구(원표본 가구+분가가구)에 거주하는 만 19~64세 여성(조사기간 2008.10~2009.6)	<p>가구와 개인의 변화에 관한 기초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구(가구원, 이사 및 주거 현황, 소득)</li> <li>- 여성 개인 응답자의 변화와 특징(결혼, 부부 생활, 가사노동, 이혼, 자녀와의 관계)</li> <li>- 여성과 일(경제활동, 일 만족도)</li> </ul> <p>여성가족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한 여성의 일자리 연속성에 관한 사건사 분석</p>
문화향수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0	15세 이상의 전 국민을 모집단으로 삼고, 다단계 층화무작위표집법에 의해 추출된 5,000명 대상(조사기간 2010.4.5~5.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향유(예술행사 관람)</li> <li>- 문화예술교육</li> <li>- 문화시설 이용</li> <li>- 문화활동(문화관련 자원봉사 활동, 동호회활동)</li> <li>- 문화관광(역사문화유적지 방문, 지역축제 관람)</li> <li>- 사이버 문화활동 및 매체이용 예술감상</li> </ul>
2010년 국민여가활동조사	문화관광체육부	2010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15세 이상 가구를 대상(조사기간 2010.7.5~7.16)	<p>국민여가활동 실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가자원 활용 실태</li> <li>- 여가활동 참여 형태</li> <li>- 주40시간 근무제의 영향</li> </ul> <p>여가동향분석 및 전망</p>
2008년도 주거 실태조사	국토해양부	2008	조사기간 내 조사지역에 거주하는 가구 및 이들의 거처(조사기간 2008.9.16~1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구특성 및 경제력(가구원수, 가계수지)</li> <li>- 주거 및 주거환경(주택유형, 점유형태, 거주기간, 자가마련 방법)</li> <li>- 주거이동 및 주택구입 계획</li> <li>- 주거지표</li> </ul>
2009년 정보문화지수 실태조사	행정안전부	2009	전국의 만6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조사기간 2009.11.1~12.11)	<p>정보문화지수 산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문화지수 체계</li> <li>- 정보문화지수 산출결과</li> </ul> <p>정보문화 실태와 정책시사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답자의 인터넷 이용특성</li> <li>- 정보역량 현황</li> <li>- 정보윤리 현황</li> <li>- 정보감성 현황</li> <li>- 정보실천 현황</li> </ul>

구분	주관기관	조사연도	조사대상	조사내용
일자리창출을 위한 노·사·정 역할모형	노사정위원회	2010	만 19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000명 (조사기간 2010.3.2~3.5)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식 - <b>고용문제에 대한 의견</b> -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한 인식 -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계의 역할 - 노사정 역할 모형에 대한 견해 일자리창출을 위한 노사정 역할 모형 - 노사정 역할 모형 - 노사정 역할모형 구축방안
2010년 사회조사	통계청	2010	만15세 이상 가구원 (약 37,000명)을 대상 (조사기간 2010.5.17~5.29)	가족 - 결혼생활에 대한 태도 - 결혼·이혼·재혼에 대한 견해 - 가족관계 만족도 - 부모 생활비 주 제공자 - 청소년이 고민하는 문제 - 분거가족 교육 - 자녀 유학 - 부모의 자녀 기대 교육 수준 및 기대 교육 목적 - 대학생 등록금 마련방법 - 전공과 직업의 일치도 보건 - 스트레스 정도 - 자살에 대한 충동여부 및 이유 - 흡연, 음주 - <b>의료서비스 만족도 및 불만 이유</b> - 식품 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 및 식품 안전이 불안한 이유 -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 사회의 안전상태 변화 환경 - 환경보호 부담 의향 - 환경 오염 방지 노력
2011년 1/4분기 가계동향	통계청	2011	전국 약 8,700개의 표본가구를 대상	전국가구(2인 이상) 동향 - 소득 동향 - 소비지출 동향 - 가계수지 동향 - 소득 5분위별 가계수지
국민건강 영양조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09	1세 이상 가구원	국민 건강 및 영양조사 - 건강행태 - 만성질환 - 삶의 질

구분	주관기관	조사연도	조사대상	조사내용
건강관리서비스 관련 일반 국민 수요조사보고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0	20세 이상 성인 1000명 (조사기간 2010.10.12~15)	건강관리서비스 수요조사 - 건강관리서비스 의용 의향 - 원격관리 서비스 이용의향 - 건강관리서비스 비용에 대한 이용자 인식

\* 고령친화산업과 관련성이 있는 것은 밑줄로 표시

### 3) 고령자 대상 주요 실태조사 결과 분석

고령자의 일반적 현황 및 고령친화산업 욕구조사를 위한 방향과 항목도출을 위해 세부적으로 결과를 분석해 보았다.

#### 가. 베이비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현황 분석

- 일반특성은 만 48세~56세의 베이비 붐세대를 대상(2,250명)으로 하여 남, 여 비율은 거의 반이고, 지역별로는 서울, 인천, 경기지역이 48.5%를 차지하였고, 학력은 전문대 이상 43.5%로 학력 수준도 높고, 가구월소득도 300만원 이상이 55.3% 정도로 높게 나타나, 경제력도 있음을 알 수 있다.
- 베이비부머의 노후 거주관련 선호실태를 보면, 주택은 82.1% 정도가 자가소유로 소유율이 높으나, 향후 노후 주택을 축소할 계획이 41.0%였고, 현거주지를 유지하려는 비율이 50%이상으로 현재의 공간에서 이탈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노후 소득준비 현황에서는 연금, 퇴직금, 저축 등 다양한 설계를 하고 있지 않아 소득보장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 정책제언

구분	주요 정책적 관심사	정책방향
여가/문화	문화서비스 소비주체로서의 베이비부머의 문화활동 활성화	- 법·제도적 인프라, R&D 지원, 정책자문창구 개설 등 기반마련
금융	베이비 부머가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정·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 공적연금, 사적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성요소의 적용 확대 및 연계성 강화 - 다각적인 자산유동화 방안 모색
주택	베이비 부머가 노년기 진입시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	- 적정 주거기준 마련 및 실현
건강지원	향후 베이비 부머가 경험할 노화에 따른 건강 및 기능 약화에 대비	- 만성질환예방을 위한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강화
기타	베이비 부머에게 일을 통한 사회참여활동 지원	- 노동시장에서의 노동력 공급자로서의 베이비 붐 세대의 인적자원 증진 및 수요공급원활화 - 고령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수요처 개발
	지금부터 노년기까지의 베이비 부머의 지속적인 자원봉사활동 참여촉진	- 성인 및 고령자 특화 자원봉사 활동 지원

## 나. 베이비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 일반특성은 베이비붐 세대(46세~59세) 총 3,027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고등학교 이상 학력이 70% 이상으로 교육 수준이 높고, 대다수(85.6%)가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건강상태 및 건강행태를 보면, 건강검진 수검률이 80.8%로 높았고, 취약계층에서 만성질환 및 우울증상의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검진 및 건강증진행위(식이·운동, 스트레스 관리, 건강교육, 상담 등)에 대한 서비스를 선호하고 있어 평소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소비스타일은 학력 및 소득이 높을수록, 가격 정보 수집 후 지출하고 가격에 상관없이 구입하고 구매활동도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나 경제력 있는 베이비부머는 노후에도 적극적인 구매활동이 예상된다.
- 노후의 삶에서 83.7%가 노후에 여가가 중요하다고 했고, 교육으로는 건강관리교육(64.1%), 여가와 취미 관련 교육(15.5%)을 원했고, 노후설계에 대한 관심도(43.9%)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공적인 노후를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건강(45.1%)과 경제적인 안정과 여유(40.6%)를 꼽았다.
- 노후 관련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소득관련 50.2%(소득보장 32.9%, 노년기 고용연장 및 기회확대 17.3%)와 노후 건강보호와 장기요양보장 43.5%으로 건강과 소득을 중요시함을 한 번 더 알 수 있다.

- 장례방법은 화장을 선호(85.5%)하고, 존엄사(72.5%), 장기기증(41.3%)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어 죽음이나 장례를 맞이하는 경향이 변화함을 알 수 있다.
- 정책제언

구분	주요 정책적 관심사	정책방향
요양	- 장기요양 비용증가의 억제를 위한 체계 구축	- 고비용의 시설 입소를 사전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주거형태 개발 및 지역사회 중심의 재가·지역사회서비스 체계의 구축 -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이용에 따른 장기요양보험의 지속성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재정안정화 방안 마련
정보	- 맞춤형 정보화 교육의 실시	- 컴퓨터 및 인터넷을 일상생활에서 능숙하게 활용하지 못하는 다수의 베이비 부머에게 맞춤형 정보화 교육 실시
여가/문화	- 여가 프로그램의 내용과 수준의 다양화	- 교육수준의 향상, 청장년기에 누린 다양한 활동참여 경험, 취미활동이나 자기개발을 하는 노후생활에 대한 선호하는 베이비 부머를 위한 다양한 여가활동 기회 제공 및 프로그램 내용의 고급화
금융	- 공적 연금의 사각지대 해소 - 노후설계서비스의 제공	- 미가입자의 가입확대와 미불입자에 대한 지원 정책 등의 정책 개선 - 체계화된 노후설계 서비스의 제공 및 향후 노후설계의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적 홍보와 사회적 공론 형성
주택	- 다양한 생활밀착형 서비스 개발 및 서비스 시장 활성화	- 주거형태와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생활서비스 개발 및 제고
장묘	- 장례 서비스의 다양화	- 화장 증가 추세를 감안하여 중앙정부 및 지자체는 이에 대한 대비 - 인식의 확산과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는 자연장 조성
교육	- 효과적인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 시스템의 확립 - 맞춤형의 다양한 일자리 개발	- 은퇴 후에도 노동시장에 재진입을 시도할 베이비 부머의 지속적인 자기개발을 위한 효율적인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 시스템 확립 - 베이비 부머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저임금의 단순한 일자리뿐만 아니라 그들의 노하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개발 - 베이비 부머의 은퇴 이후 제2의 커리어에 대한 정책 개발시 계층적 특성에 대해 차별화된 정책 프로그램 개발
건강지원	-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 특성별 건강증진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보험금 인상 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국민적 논의의 공론화 및 구체화 - 직장내에서의 사전적인 스트레스예방프로그램 개발 - 스포츠활동이나 문화강좌의 수강을 통한 스트레스해소를 위해서 지역내 스포츠클럽 및 문화강좌의 수강비용을 바우처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활성화 - 만성질환이나 우울증상의 유병률이 높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신체 및 정신적 건강관리 대책 강화 - 베이비 부머와 같은 중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만성질환 예방대책을 통한 의료비 절감
기타	- 전 생애주기에 걸친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 죽음의 질 제고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 베이비 부머 중 일단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면 장기간 참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노년기 이전부터 자원봉사활동을 독려하는 사회적 시스템 및 분위기 형성 - 긍정적인 태도가 형성된 존엄사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기반 마련과 장기기증의사가 구현될 수 있는 체계적인 절차 마련

#### 다. 초고령사회 서울의 변화전망과 정책과제

- 일반특성은 45세 이상자 총 1,000명으로, 2세대 가구 64.4%로 높게 나타남
- 고령자의 소득 및 자산특성은 65세 이상 고령자가구(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소득은 229.3만원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근로소득 비중은 감소하고, 재산소득과 이전소득 비중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 소비구조를 보면, 미래노인은 현재 노인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며, 적극적 소비주체로서 문화, 여가, 레저, 교육 분야 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됨
- 정책제언

구분	주요 정책적 관심사	정책방향
금융	-안정적 소득 유지 -역모기지제도 활성화	-국민연금 및 개인연금 등 연금가입률 제고 정책 -역모기지제도 교육 및 홍보전략 -자산설계 및 운용 등에 대한 노후설계교육
주택	고령친화 도시환경 조성	-고령친화적 도시계획 -고령친화적인 커뮤니티 개발 -고령자들이 생활하기 편리한 물리적 환경 조성(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을 도입한 도시환경 개선, 노인의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는 주거 옵션 개발 등)
교육	고령자 고용지원정책 강화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용기회 제공 -취업알선 등 고용지원서비스 강화, 평생직업교육체계 구축 등 고령자 고용지원
건강지원	건강증진프로그램 강화	노인을 대상으로한 복지, 보건, 체육분야의 건강증진프로그램 강화
기타	고령친화산업 육성	-수요발굴을 위한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정보제공과 홍보, 실버산업 종합 체험관 건립, 장기 대여사업 추진 등 -공급자 지원 방안으로 R&D 투자, 사업 아이템 발굴,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기업 인식 개선 등

#### 라. 2008년도 노인실태조사(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 일반특성으로 만60세 이상 총 12,567가구를 대상으로 노인가구의 자가비율은 79.3%로 높으나 노인독거가구의 자가 비율은 57.7%에 불과하였다.
- 가계수지에서 노인가구의 월평균소득 157.5만원, 월평균 가구지출 117.2만원으로 가구지출 항목 중에서는 식비(28.0%), 주거비(15.6%), 보건의료비(9.7%), 경조사비(6.0%), 통신비(5.5%), 차량유지비(5.1%) 등의 순임
- 가구순자산 규모는 1억8천4백만원 정도이고, 유동성의 취약한 부동산자산(86.9%)에 집중되어 있음

- 거주실태에서는 현 가구형태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 노인은 61.0%로 높게 나타났고, 주된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54.9%), 아플때 수발받기 어려움(13.7%), 식사·청소 등 가사일의 부담(13.6%)등으로 나타남
- 경제활동 욕구는 미취업노인의 37.1%가 향후 경제활동 의사가 있었으며, 미취업노인(65.5%)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주된 이유 건강상의 문제(45.6%)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건강상태에서는 노인의 의사진단 유병률은 고혈압(44.4%), 골관절염/류마티스관절염(27.4%), 요통/좌골신경통(17.0%), 당뇨병(15.6%), 골다공증(12.4%)순으로 나타났고, 약 또는 건강식품 복용률도 82.1%로 높게 나타남
- 건강행태에서는 노인의 식사습관, 영양관리 개선이 필요한 노인이 전체 노인의 24.5%, 영양관리에 주의가 요구되는 노인은 21.5%로 나타남. 독거노인(45.0%)이 노인부부가구(19.4%)나 자녀동거가구(20.6%)에 비해 영양관리개선이 2배 이상 많음
- 여가활동으로 노인이 지난 1년간 가장 즐거움을 느꼈던 활동(1순위)은 가족과 함께 하는 일(52.3%), 친구들과의 만남·회식 18.5%, 신문보기·책읽기·TV시청·라디오청취 10.5%, 종교활동 6.7%, 국내외여행 2.5% 등의 순으로 정적인 것을 즐기고 있었음
-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참여경험은 12.1%로 낮고, 향후 참여의사는 25.8%였고, 건강관리가 41.1% 가장 높고, 여가와 취미(31.6%), 정보화교육(8.3%), 일반교양(8.3%) 등의 순으로 건강관리와 여가를 중요하게 생각함을 알 수 있음
- 컴퓨터·인터넷 이용실태에서는 이용경험은 11.4%로 낮고, 뉴스나 생활정보(76.6%), 바둑이나 게임(28.5%), 채팅(26.0%), 편지나 문서 작성(24.7%), 쇼핑물 판매 및 구매(10.8%) 등의 순으로 활용이 높아 취미 생활에 주로 이용하고 있었음
- 노인복지서비스 중 요양시설 및 서비스의 이용희망률이 높았음(방문간호 51.1%, 방문요양50.1%, 노인전문병원 47.8%, 요양시설 45.7%, 방문목욕서비스 43.6%순으로 높음)
- 복지서비스별 인지 및 이용현황을 보면,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인지율(91.9%) 및 수혜율(46.1%)이 높은 반면, 노인일자리사업(인지율 40.7%, 참여율 3.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인지율 26.4%, 이용률 0.5%) 및 노인돌보미바우처서비스(인지율 23.2%, 이용률 1.0%)가 낮아 홍보가 필요함을 알 수 있음
- 노인복지서비스 인지경로와 정책적 우선 순위를 보면, 노인을 위해 필요한 정책 1순위는 기본적인 생활유지를 위한 소득보장(67.7%), 일자리지원(12.1%), 건강증진서비스(7.5%), 요양보호서비스(4.7%), 가사지원서비스(3.1%), 문화 및 여가활동지원서비스(2.1%), 편리한 교통 및 주거환경 조성(1.6%) 순으로 소득보장을 가장 중요시함을 알 수 있음
- 노후생활에 준비하였거나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한 노인은 37.7%로 낮고, 준비방법은 자신

- 의 소득(28.7%), 자녀를 통한 경제적 도움(28.5%), 공적연금(26.8%), 적금 및 예금(15.6%), 부동산투자(9.5%), 개인연금(3.0%), 유산(2.3%)순으로 나타남
- 노후 희망 활동은 근로활동 37.0%, 여가나 취미활동 33.1%, 종교활동 29.3%, 자아개발 24.6%, 자원봉사활동 16.0% 순으로 나타남
- 노인이 희망하는 향후 본인의 장례방법 화장 47.9%이 높게 나타남
- 노인이 외출시 주로 이용한 교통수단은 버스(47.9%), 자가용(15.6%), 지하철(14.2%), 걸어 다님(7.8%), 택시(4.8%) 등의 순임
- 정책제언
  - 노인을 위해 필요한 정책 1순위는 기본적인 생활유지를 위한 소득보장(67.7%), 일자리지원(12.1%), 건강증진서비스(7.5%), 요양보호서비스(4.7%), 가사지원서비스(3.1%), 문화 및 여가활동지원서비스(2.1%), 편리한 교통 및 주거환경 조성(1.6%) 순임
  - 경제활동에의 참여와 예방적 건강행위를 통한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관리에 욕구가 높음
  - 독거노인에 대한 경제적 건강관리의 필요성 증대
  - 동부와 읍면부의 거주지역 특색에 맞는 보건복지서비스의 개발과 전달체계가 필요함
  - 성공적 노화에 대한 교육과 홍보 강화
  - 노인의 허약단계별 적절한 지원책이 필요함

#### 마. 국민여가활동조사

- 여가활동 참여비율은 60대 이상은 휴식, 사회 및 기타활동, 취미오락활동 순으로 나타남
- 관광활동 참여비율은 60대는 온천/해수욕, 자연명승/풍경관람, 삼림욕, 드라이브 순으로, 70대이상은 온천/해수욕, 자연명승/풍경관람, 문화유적방문, 소풍/야유회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희망 여가활동은 60대는 관광활동, 취미·오락·휴식·기타활동, 스포츠 활동, 문화예술활동 순, 70대 이상은 관광활동, 취미·오락·휴식·기타활동, 문화예술활동, 스포츠 활동 순
- 정책제언
  - 고령층의 여가생활 참여 유도 필요
  - 고령층은 관광활동에 대한 욕구는 있으나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개인 활동 또는 시간 소비 활동에 주력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4) 고령자의 일반적 현황 및 욕구조사 방향성 설정

##### □ 고령자의 일반적 현황

- 베이비붐세대는 일반적으로 학력이 높고, 경제력(월평균소득 300만원 이상이 55.3%)도 있으나 노후를 위한 소득보장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주거분야는 대부분(80%정도)이 주택을 자가 소유하고 있으며, 현거주지를 유지하려는 특징이 있었음. 건강측면에서는 건강검진 수검률이 높고(80.8%), 취약계층에서 만성질환 및 우울증상의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소비스타일은 학력 및 소득이 높을수록 구매활동이 적극적이고, 노후에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은 건강과 경제적 여유로 나타남. 장례방법은 화장을 선호하고, 존엄사와 장기기증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
- 고령자(만 60세 이상)는 소득적인 특성은 월평균소득이 160만원 정도로 베이비붐 세대에 비해 낮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근로소득은 감소하고, 유동성이 취약한 부동산자산(86.9%)에 집중됨. 주거는 자가 소유가 대부분(80%)이고, 현 가구형태에 어려움이 있는 것(61.0%)으로 나타났고, 그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54.9%)이 가장 큼. 건강상태는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고, 약 또는 건강식품 복용률(82.1%)이 높아 건강에 대한 관심과 염려가 지대함을 알 수 있음. 여가활동은 가족 및 친구들과의 만남, 신문보기 등 평소 정적인 것을 즐겨하나 관광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정보분야는 컴퓨터·인터넷 등의 이용은 잘 하지 않고, 하더라도 뉴스나 게임 등 취미생활에 주로 이용하고 있음. 노인복지서비스로 소득보장과 건강에 대한 정책 지원을 요구했음. 장례방법으로 화장을 선호함
- 이를 통해 베이비붐세대와 고령자는 공통적으로 노후를 위해 소득과 건강을 가장 중시하고 있으며, 주거 소유율이 높고, 여가활동으로 가족과의 만남 등 평소 정적인 것을 즐기나 경제적 여력이 되면 관광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장례방법은 화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베이비붐세대와 고령자는 경제력에 큰 차이를 보여, 연령이 증가할수록 근로소득은 감소하고, 유동성이 취약한 부동산자산(86.9%)에 집중되어 있어 향후 베이비붐세대가 고령자가 된다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적극적인 소비주체가 되어 고령친화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 고령친화산업 욕구조사 방향 설정

예비고령자와 현재 고령자와의 경제력 등 특성의 차이가 있으므로, 고령친화산업 수요조사를 위해서는 현재 고령자와 예비고령자를 모두 분석할 필요가 있고, 다른 실태조사에서 언급되지 않은 분야(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 고령친화용품 등)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미리 실태조사된 부분 중에서 산업적인 측면을 알아보기 위해 더 세부적인 항목 도출이

필요함. 또한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구매가 수반되어야 하므로, 어느 정도의 경제력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토대로 욕구조사 방향을 설정하였다.

## 2. 고령친화산업 욕구조사

### 2.1 조사개요

#### 1) 조사 목적

- 본 연구에서는 국내 고령인구 증가 상황에서 예비고령자(45세~64세) 및 현재 고령자(65세 이상)의 고령친화산업 욕구를 파악하여 정부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하였음

#### 2) 조사 내용

##### □ 고령친화산업별 지원 요구도 파악

- 지원이 필요한 고령친화산업 분야 및 제품

##### □ 고령친화산업별 세부 이용 욕구

- 요양/건강지원서비스 분야
  - 서비스별 이용 의향 및 비이용 이유, 이용 시 중요 고려사항
- 금융자산관리서비스
  - 노후소득을 위한 준비 현황, 미준비시 이유, 필요로 하는 금융서비스
- 문화/여가 분야
  - 평소의 여가활동 및 희망하는 여가활동, 미활동 이유, 여가활동을 함께 하고 싶은 사람
- 주거 분야
  - 집의 소유율, 집의 형태, 집의 노후정도, 향후 이사 여부와 그 이유, 노후에 희망하는 주거 형태와 선택시 고려사항, 지원이 필요한 주거지원서비스
- 고령친화제품
  -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고령친화제품 및 미사용 이유, 향후 구매하고 싶은 제품의 종류 및 세부 품목, 선택시 고려사항
  - 의약품, 식품, 화장품 분야 현 사용 실태 및 향후 사용 희망 제품, 미사용 이유, 선택시

중요 고려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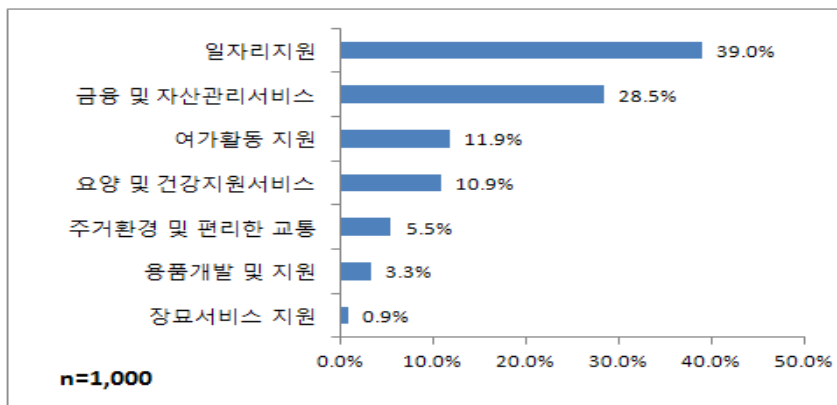
3) 조사대상 및 방법

- 조사대상
  - 전국(제주도 포함) 월평균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45세 이상 중·고령자
- 조사방법
  - 예비 고령자(만45 ~ 만64세) : 온라인 조사
  - 고령자(만 65세 이상) : 개별 면접 조사
- 조사규모
  - 총 유효표본 : 1,000명
  - 만45세~만54세이하 : 350명, 만45세~만64세이하 : 350명, 만65세 이상 : 300명
- 표본추출
  - 인구비례추출법(단, 최소 유효표본 유지)
- 표본오차
  - 95% 신뢰구간 내 ± 3.2%
- 조사기간
  - 2011년 9월 8일~ 9월 21일

2.2 조사결과 요약

1) 지원이 필요한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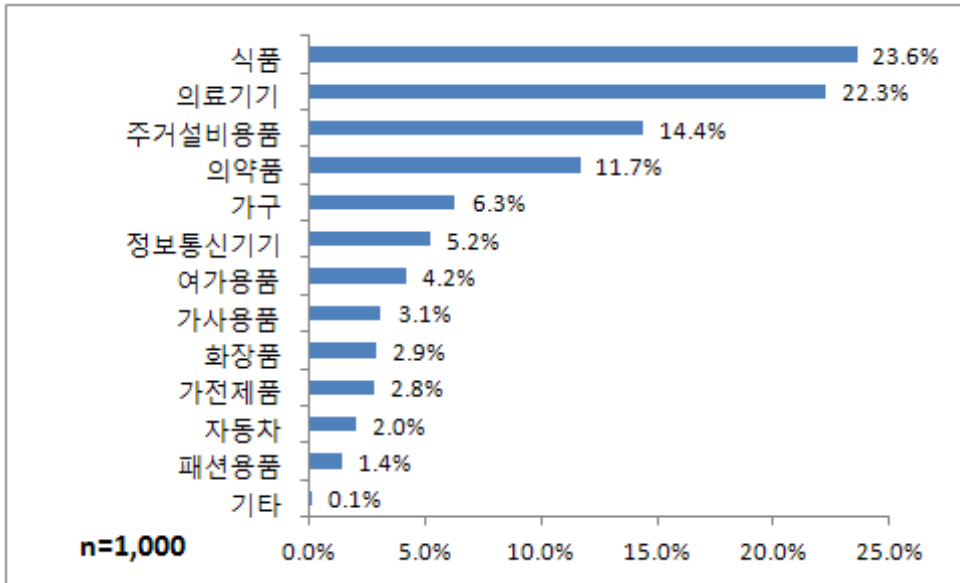
- 일자리 39.0%, 금융 28.5%, 여가 11.9%, 요양 10.9%, 주거 및 교통 5.5%, 용품 개발 3.3%, 장묘 0.9%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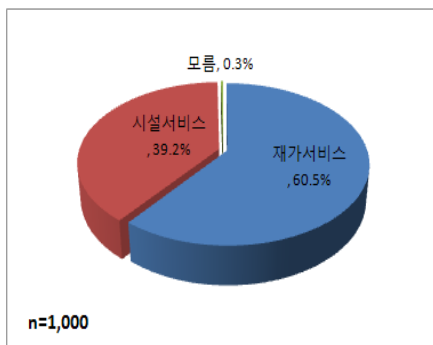
## 2) 지원이 필요한 제품

○ 식품 23.6%, 의료기기 22.3%, 주거설비용품 14.4%, 의약품 11.7%, 가구 6.3%, 정보통신기기 5.2%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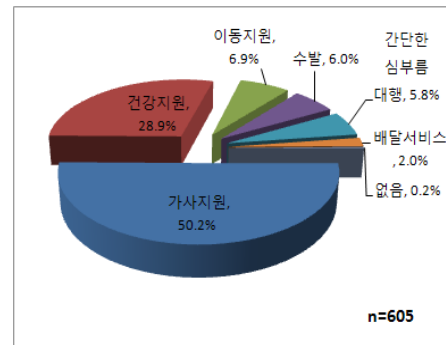


## 3) 요양 및 건강지원서비스

○ 재가서비스 이용의향이 60.5%로 높고, 재가서비스 중 가사지원 50.2%, 건강지원 28.9%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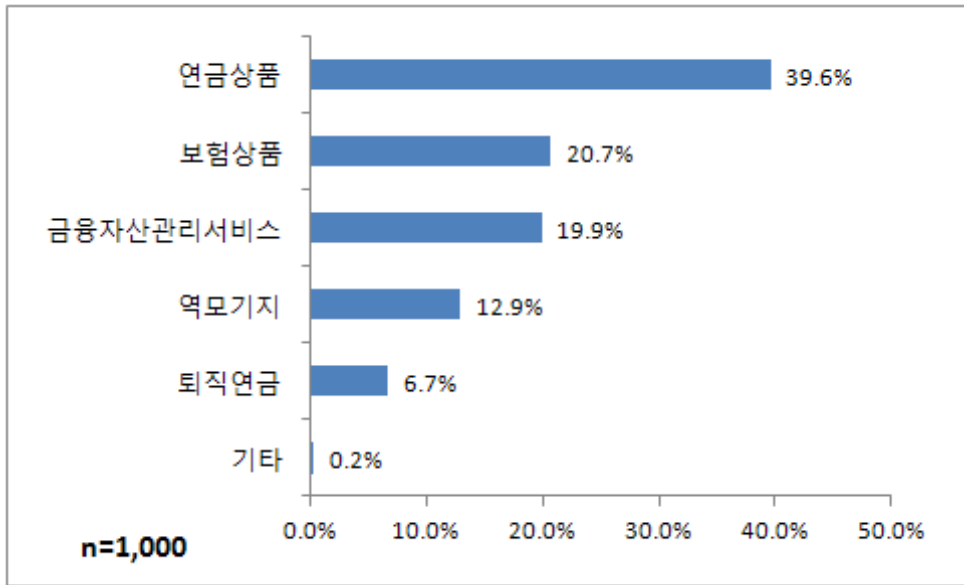
〈 재가 및 시설서비스 이용 의향 〉



〈 재가서비스 유형별 이용 의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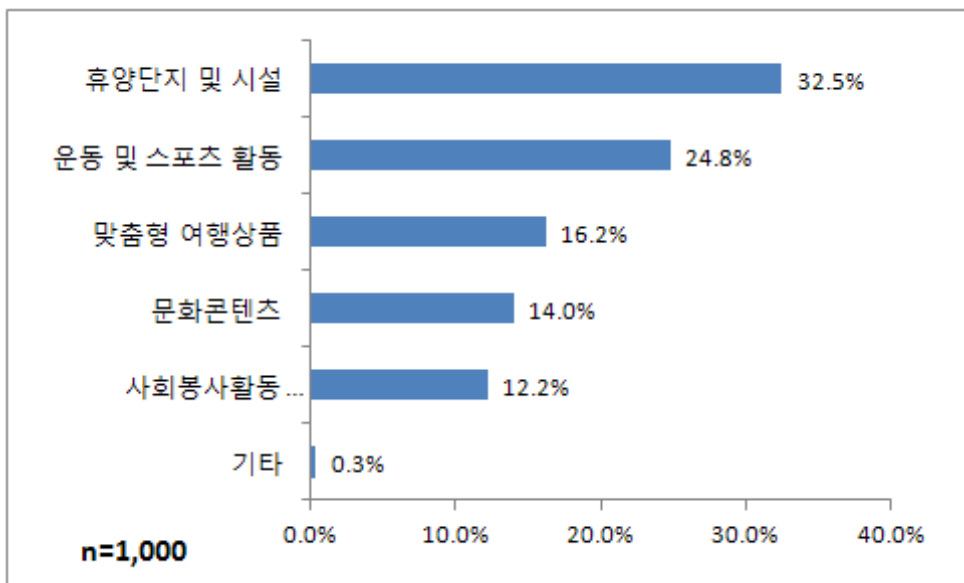
#### 4) 금융 및 자산관리서비스

○ 노후 준비를 위해 가장 필요한 금융서비스는 연금상품 39.6%, 보험상품 20.7%, 금융자산 관리서비스 19.9%, 역모기지 12.9%, 퇴직연금 6.7%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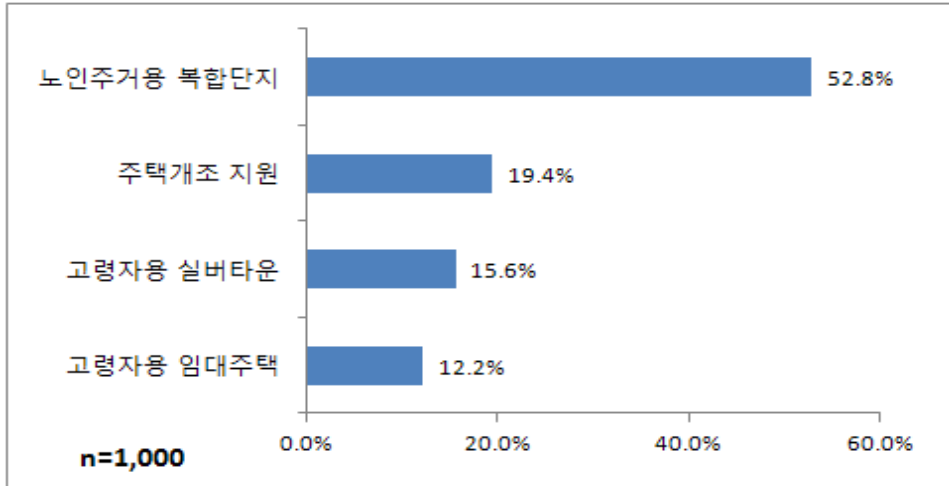
#### 5) 여가지원서비스

○ 노후에 가장 필요한 여가지원서비스는 휴양단지 및 시설 32.5%, 운동 및 스포츠 활동 24.8%, 맞춤형 여행상품 16.2%, 문화콘텐츠 14.0%, 사회봉사활동 12.2%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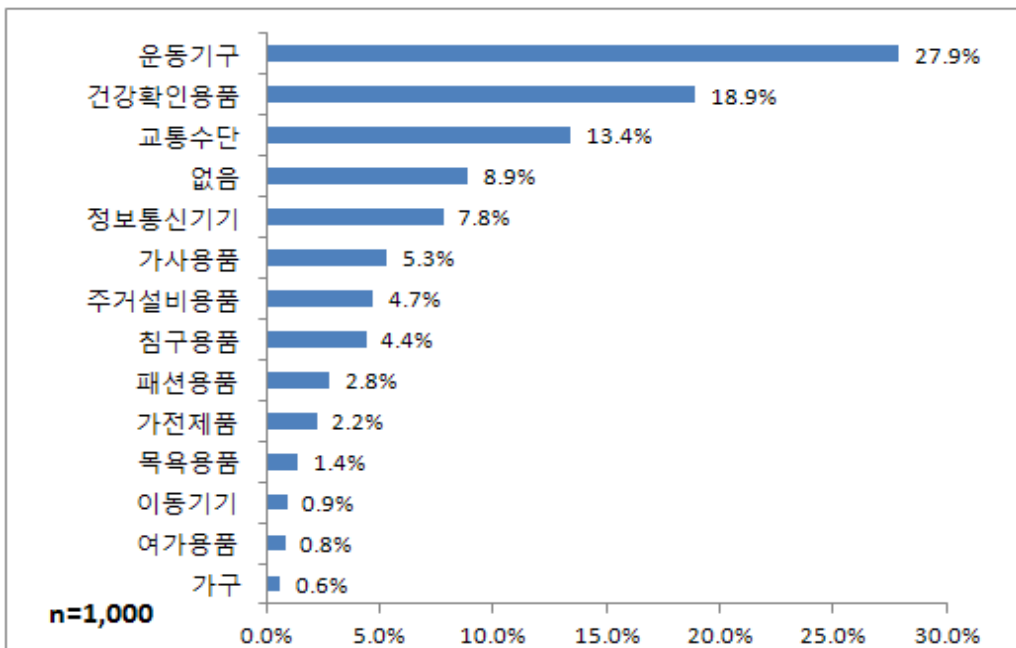
## 6) 주거지원서비스

- 노후에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서비스는 노인주거용 복합단지가 52.8%로 가장 높고, 주택 개조지원 19.4%, 고령자용 실버타운 15.6%, 고령자용 임대주택 12.2%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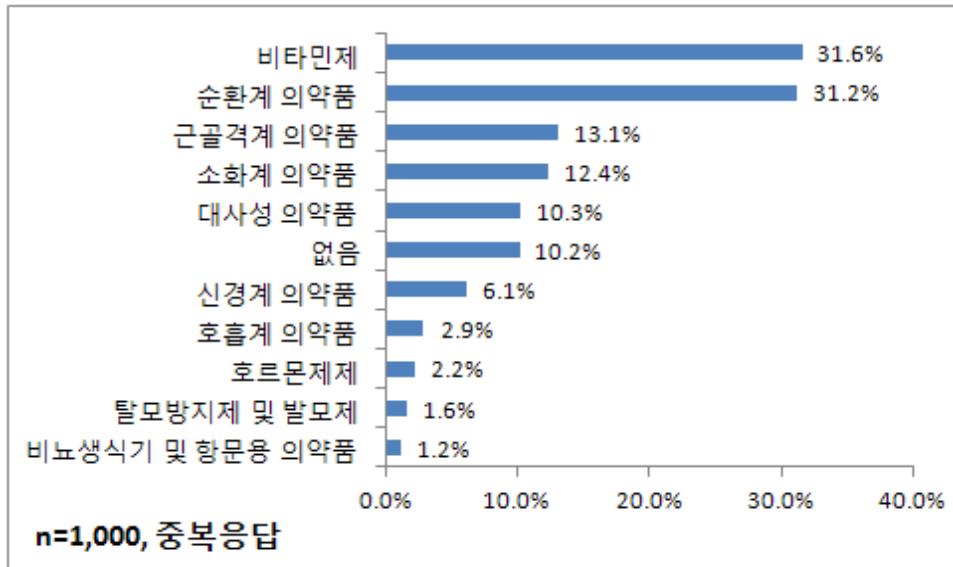
## 7) 고령자용 제품

- 노후에 가장 사고 싶은 고령자용 제품은 운동기구 27.9%, 건강확인용품 18.9%, 교통수단 13.4%, 정보통신기기 7.8%, 가사용품 5.3%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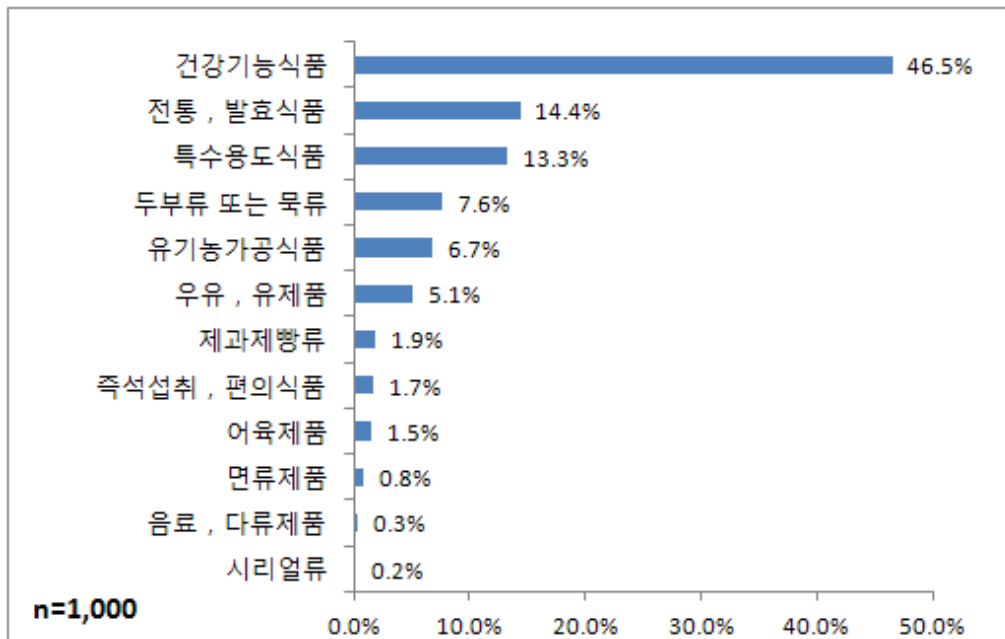
### 8) 의약품

- 중고령자가 현재 복용하는 의약품은 비타민제 31.6%, 순환계 의약품 31.2%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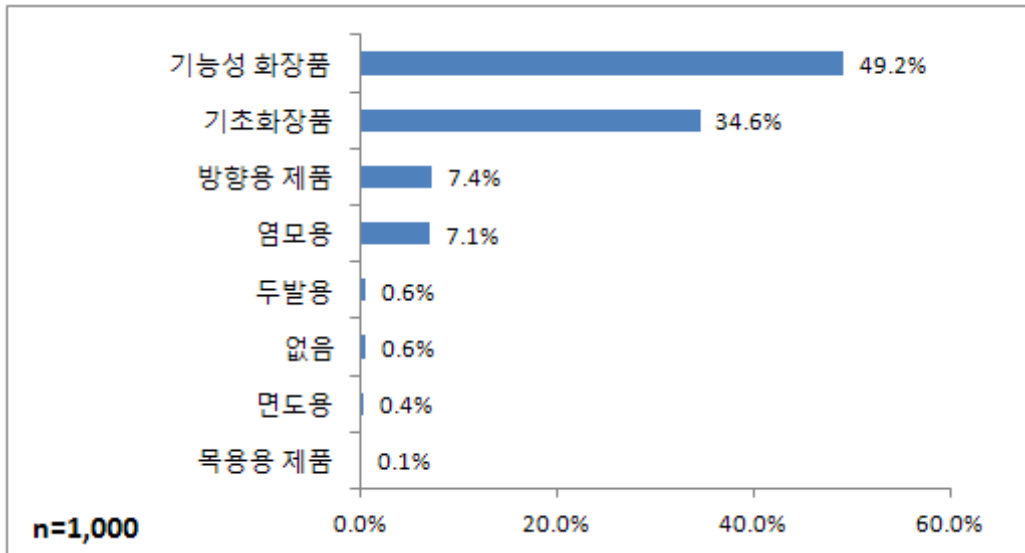
### 9) 식품

- 노후에 가장 필요한 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이 46.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10) 화장품

- 노후에 가장 사용하고 싶은 화장품은 기능성 화장품 49.2%, 기초화장품 34.6%로 높게 나타남



## 2.3 조사결과

### 1) 응답자 특성

- 성별로는 남 50%, 여자 50%
- 연령별로는 45~54세 35%, 55~64세 35%, 65세 이상 30%
- 소득별로는 300~400만원 미만 46.2%, 400~500만원 미만 21.4%, 600만원 이상 17.3%, 500~600만원 미만 15.1% 순으로 300~400만원 미만이 다수(46.2%)이지만, 고른 분포를 보임
- 학력별로는 대졸이상이 45.7%로 가장 많고, 고졸이상이 85.8%로 학력수준도 높음
- 가족구성원은 응답자+미혼자녀가 50.6%, 부부 35.7%로 전체의 86.3%를 차지
- 지역별로는 서울/광역시 45.3%, 시지역(동) 43.2%, 시지역(읍면) 8.5%, 군지역(3.0%)로 나타남

표 I-4-3 응답자 일반 특성

		사례수	%
■ 전체 ■		(1000)	100
성별	남자	(500)	50.0
	여자	(500)	50.0
연령별	45~54세	(350)	35.0
	55~64세	(350)	35.0
	65세 이상	(300)	30.0
소득별	300~400만원 미만	(462)	46.2
	400~500만원 미만	(214)	21.4
	500~600만원 미만	(151)	15.1
	600만원 이상	(173)	17.3
학력별	중졸이하	(142)	14.2
	고졸	(321)	32.1
	전문대졸	(80)	8.0
	대졸이상	(457)	45.7
직업별	사무관리직	(317)	31.7
	판매, 서비스직	(190)	19.0
	생산노무직	(94)	9.4
	기타	(96)	9.6
	무직	(303)	30.3
가구 형태	1인 가구	(30)	3.0
	부부가족	(357)	35.7
	응답자(부/모)+미혼자녀	(506)	50.6
	응답자(부/모)+기혼자녀	(50)	5.0
	노부모+응답자(부/모)+기타 가족원	(49)	4.9
	기타 가족	(8)	0.8

		사례수	%
지역별(대분류)	서울/광역시	(453)	45.3
	시지역(동)	(432)	43.2
	시지역(읍면)	(85)	8.5
	군지역	(30)	3.0
지역별(소분류)	서울특별시	(183)	18.3
	부산광역시	(78)	7.8
	대구광역시	(50)	5.0
	인천광역시	(52)	5.2
	광주광역시	(30)	3.0
	대전광역시	(30)	3.0
	울산광역시	(30)	3.0
	경기도	(193)	19.3
	강원도	(34)	3.4
	충청북도	(32)	3.2
	충청남도	(44)	4.4
	전라북도	(41)	4.1
	전라남도	(45)	4.5
	경상북도	(61)	6.1
경상남도	(67)	6.7	
제주도	(30)	3.0	

## 2) 고령자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산업 및 제품분야

### 가. 지원이 필요한 산업

- 1순위 응답기준시, 일자리지원 39.0%, 금융 및 자산관리서비스 28.5%, 여가활동지원 11.9%, 요양 및 건강지원서비스 10.9%, 주거환경 및 편리한 교통 5.5%, 용품개발 및 지원 3.3%, 장례환경 및 장묘서비스 지원 0.9%순으로 나타남
- 1+2순위 응답기준시, 일자리지원 57.5%, 금융 및 자산관리서비스 42.0%, 여가 활동지원 37.1%, 요양 및 건강지원서비스 33.6% 순으로 나타남
- 따라서, 경제적 부문(일자리지원, 금융 및 자산관리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고, 그 다음으로 여가활동, 요양 및 건강 관련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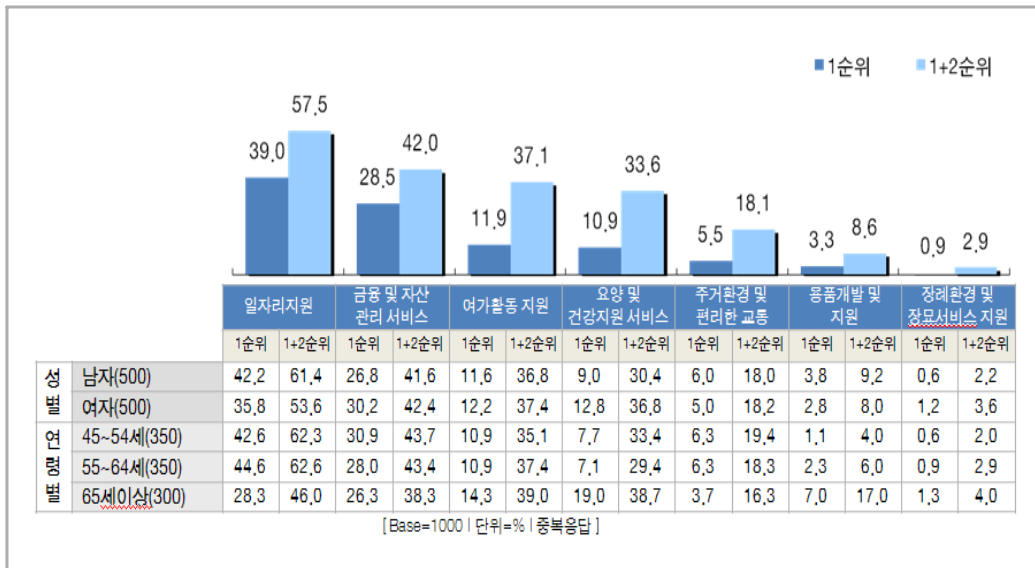


그림 I-4-1 지원이 필요한 산업분야

### 나. 지원이 필요한 제품

- 1순위 응답기준시, 식품 23.6%, 의료기기 22.3%, 주거설비용품 14.4%, 노인용 의약품 11.7%, 가구 6.3, 정보통신기기 5.2%순으로 나타났고, 이외 제품군은 5% 미만으로 나타남
- 1+2순위 응답기준시, 의료기기 39.4%, 식품 38.3%, 주거설비용품 28.8%, 노인용 의약품 22.3%, 가구 16.7, 정보통신기기 11.6%, 여가문화용품 10.5%, 가사용품 10.2% 순으로 나타났고, 이외 제품군은 5% 미만으로 나타남
- 따라서, 식품을 기본으로 질병 예방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한 의료기기, 의약품 및 생활편이를 위한 주거설비용품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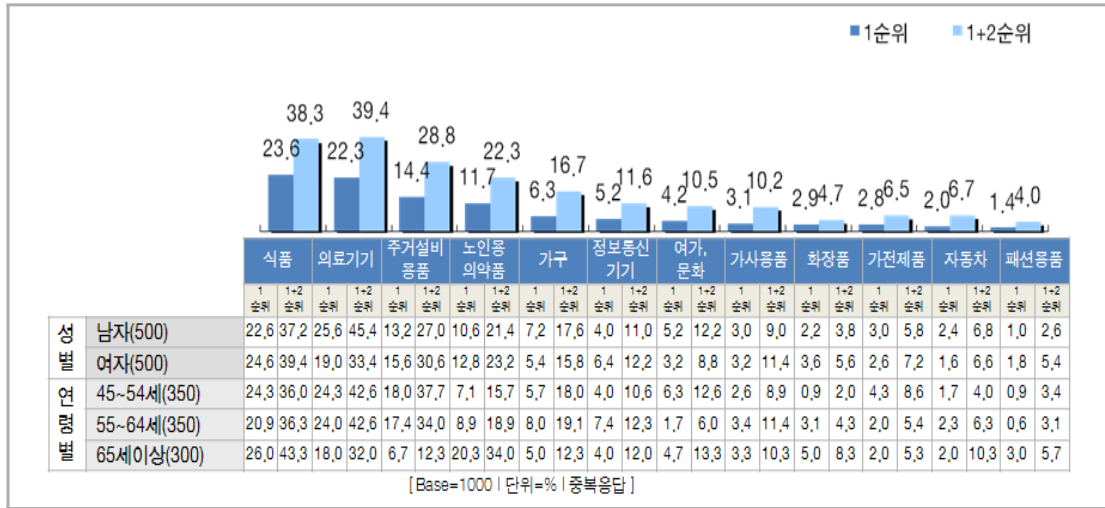


그림 I-4-2 지원이 필요한 제품분야

### 3)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이용 의향

#### 가. 요양 및 건강지원서비스

- 요양 서비스를 받고 싶은 장소는 집이 60.5%로 높게 나타나 시설서비스(39.2%)보다 재가 서비스(60.5%)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성별로 재가서비스 선호도를 보면, 여자, 연령이 낮을수록 군지역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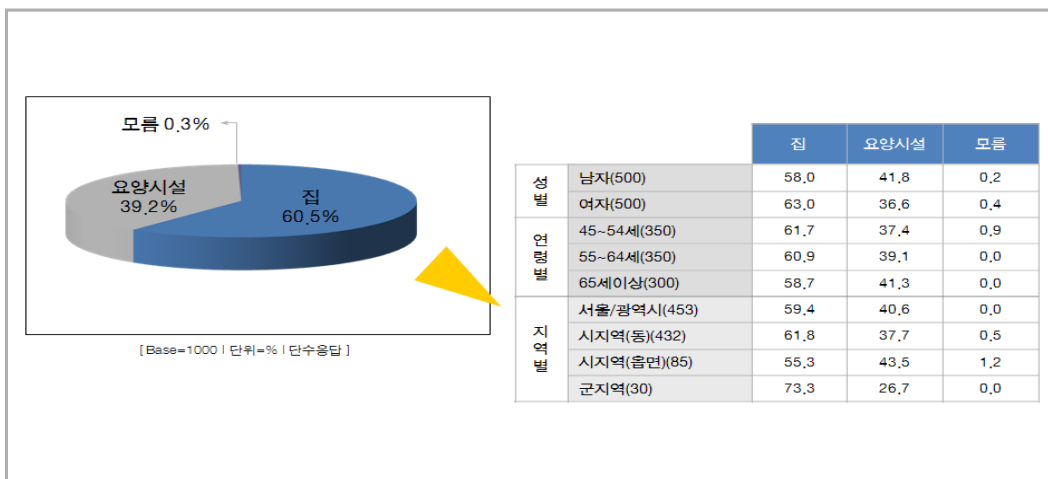


그림 I-4-3 요양서비스를 받고 싶은 장소



○ 집에서 받고 싶은 서비스는 가사지원 50.2%, 건강지원 28.9%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이동지원 6.9%, 수발 6.0%, 간단한 심부름 대행 5.8%, 배달서비스 2.0%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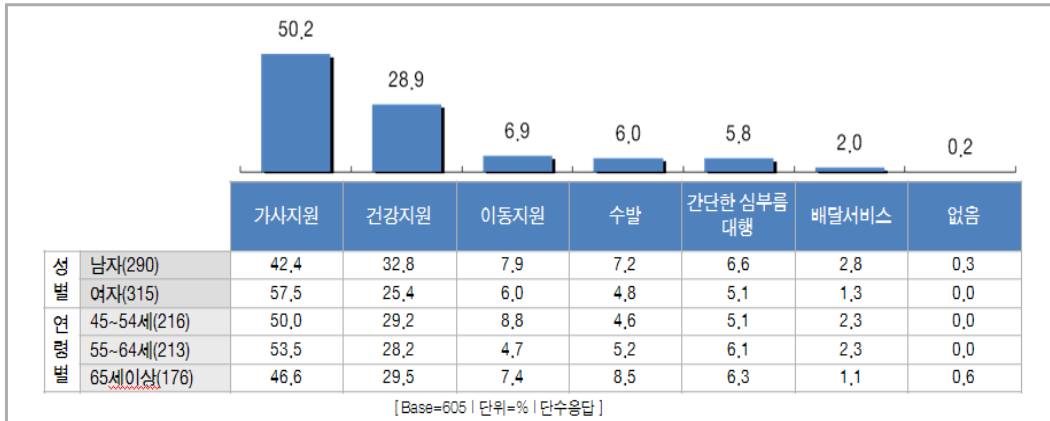


그림 I-4-4 재가서비스 중 받고 싶은 서비스 유형

○ 건강지원서비스 중 받고 싶은 서비스는 정기 건강검진이 46.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질병상담 및 관리 18.3%, 영양 또는 운동처방 16.0%였고, 그 이외 서비스는 10% 미만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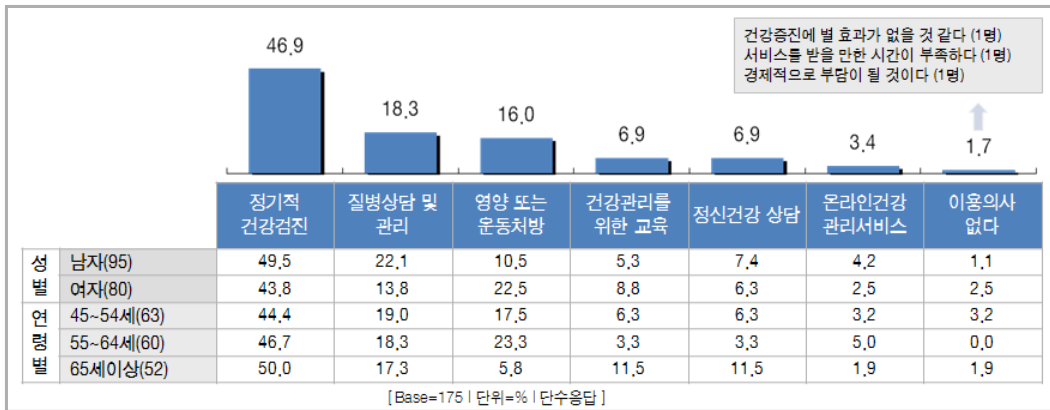


그림 I-4-5 건강지원서비스 중 받고 싶은 서비스 유형

○ 요양시설 선택 시 중요 고려 사항은 1순위 기준시 자연환경 29.8%, 좋은 시설 21.7%, 저렴한 비용 21.2%, 전문인력과 친절도 18.1% 순으로 나타났고, 각종 프로그램 운영과 자녀와의 거리는 낮게 나타남. 1+2+3순위 응답 기준시에는 저렴한 비용 65.6%, 전문인력과 친절도 63.0%, 좋은 시설 59.9%, 자연환경 52.0%로 높게 나타나 자연환경, 좋은시설, 저렴한 비용, 전문인력과 친절도 4가지 요인을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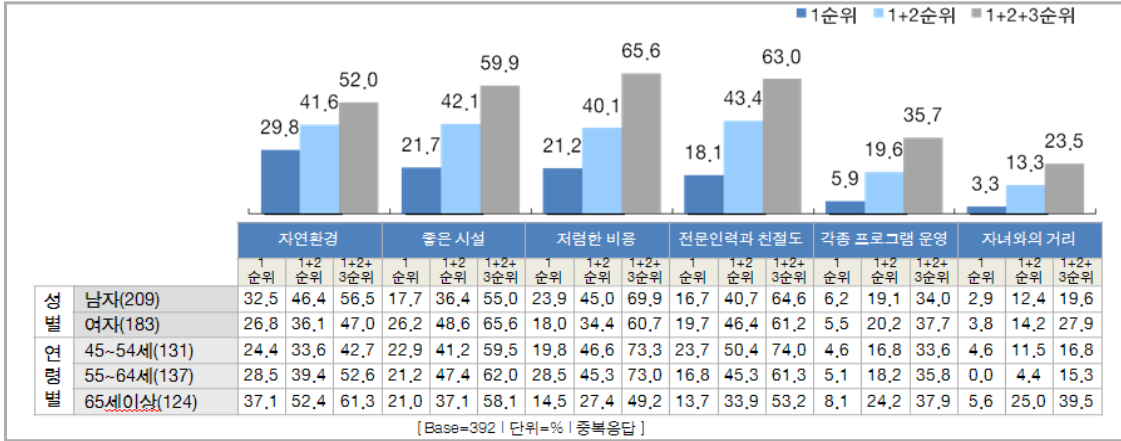


그림 I-4-6 요양시설 선택시 고려사항

### 나. 금융자산관리서비스

- 노후 소득을 위한 준비 사항으로 거주 주택이 61.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공적연금 49.8%, 금융자산 48.4%, 개인연금 32.6%, 집 이외 부동산 28.6%였고, 펀드 등 투자 16.2% 및 퇴직연금 10.3%로 낮게 나타남
- 성별로는 남자가 공적연금, 개인연금이 높은 반면, 여자는 금융자산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거주 주택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부동산 비중(거주 주택 72.7%, 이외 부동산 48.7%)이 매우 높은 반면, 예비 고령자는 연금(공적연금/개인연금/퇴직연금)이 상대적으로 높음. 그러나, 예비 고령자도 아직까지 부동산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 금융자산 재설계가 필요한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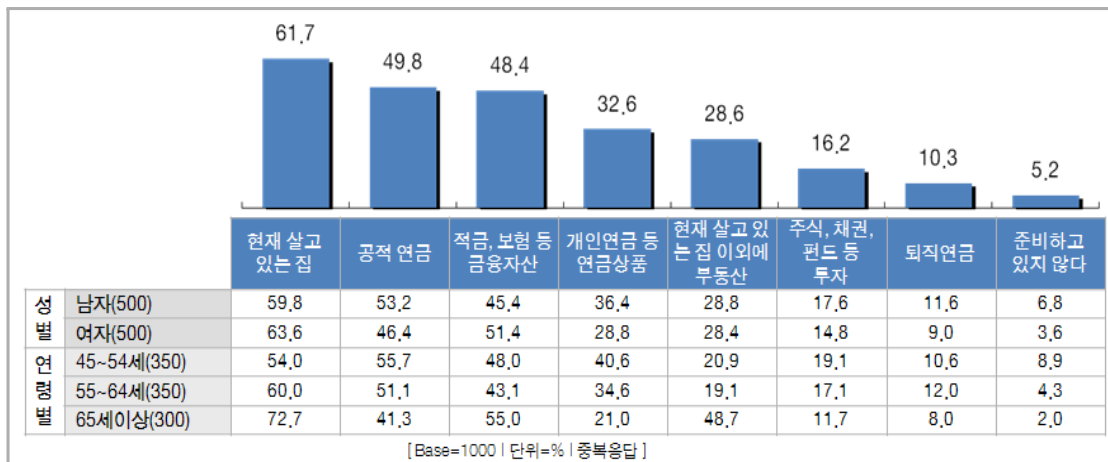


그림 I-4-7 노후 소득을 위한 준비사항

- 노후를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비중은 전체의 5.2%였고, 그 이유로는 자녀교육/결혼 등 준비 54.9%, 이외 경제적 사정이 52.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노후 준비방법을 모른다는 응답은 7.8%로 45~54세 연령층에 집중되어 있어 이를 위한 교육·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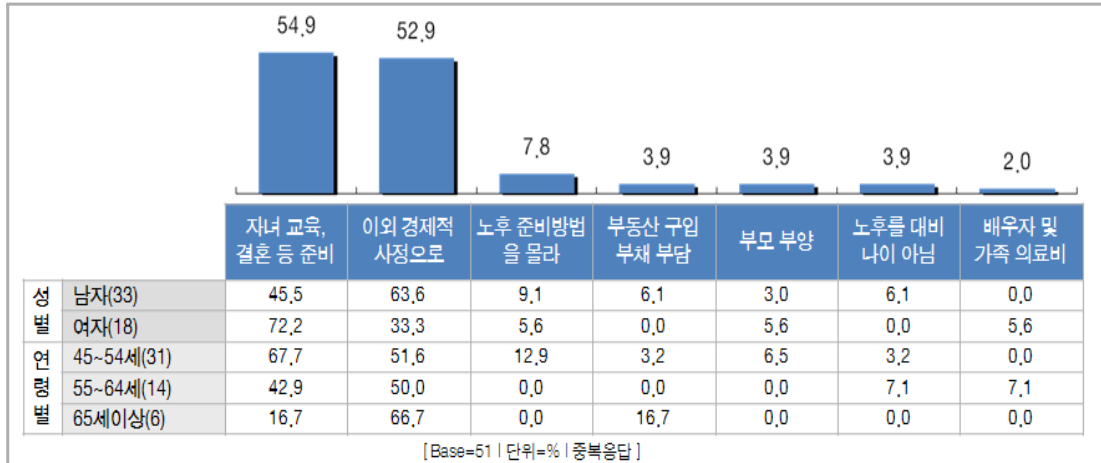


그림 I-4-8 노후준비를 하지 않는 이유

- 금융 및 자산관리를 위한 정보를 얻는 곳은 가까운 금융기관 37.6%, TV·인터넷 매체 36.0%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가족/친지가 19.8%, 금융전문가가 6.1%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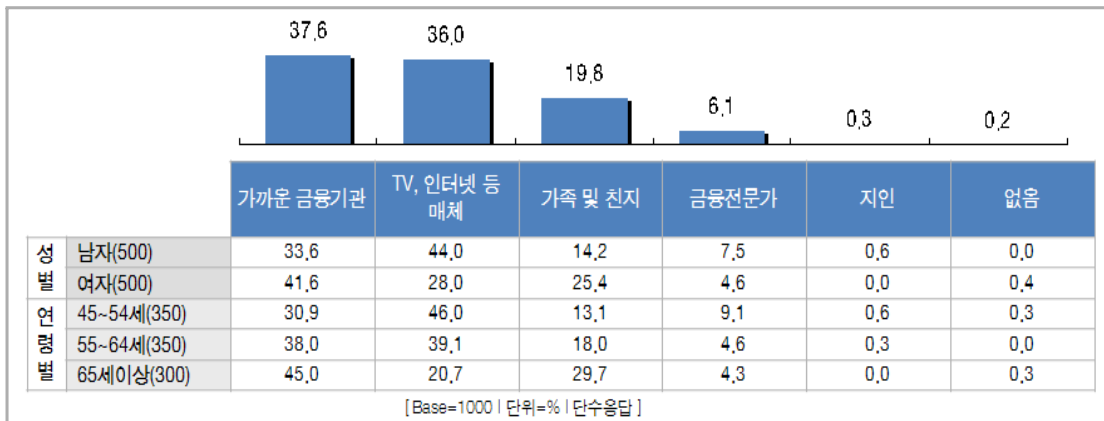


그림 I-4-9 금융 및 자산관리 정보원천

- 노후준비를 위해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연금상품이 39.6%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보험 상품 20.7%, 금융자산관리서비스 19.9%, 역모기지가 12.9%, 퇴직연금 상품 활성화가 6.7%로 나타남. 예비 고령자는 연금상품에 대한 관심이 현재 고령자에 비해 높은 반면, 현재 고령자는 금융자산관리서비스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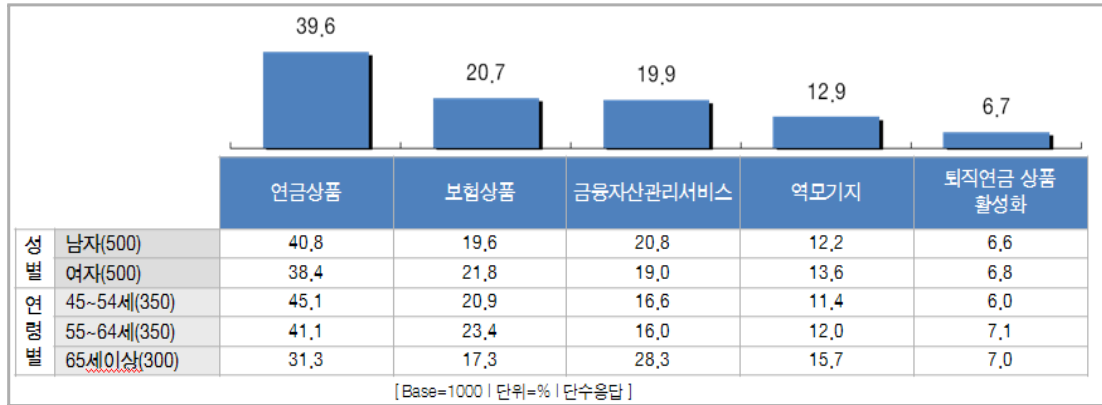


그림 I-4-10 노후준비를 위해 가장 필요한 서비스

#### 다. 문화 및 여가서비스

○ 평소에 주로 하는 여가활동은 1순위 기준으로 휴식활동이 41.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취미오락활동 24.6%, 스포츠 참여활동 12.8%, 관광 8.9%, 종교 및 봉사활동 6.9% 등의 순으로 나타남. 한편, 1+2순위를 종합한 결과도 1순위 응답과 거의 균형을 이루고 있으나 관광이 24.2%로 스포츠 참여활동 보다 약간 더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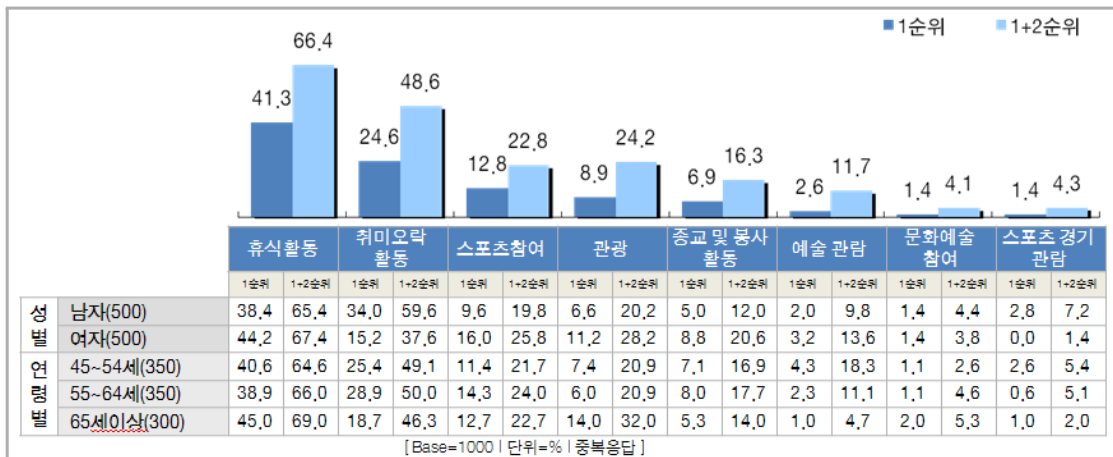


그림 I-4-11 평소에 주로 하는 여가활동

○ 향후에 하고 싶은 여가활동은 1순위 기준으로 관광이 27.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취미오락활동 24.7%, 휴식활동 13.5%, 스포츠 참여활동 11.8%, 종교/봉사활동 10.8%, 문화예술 참여 6.4% 등의 순으로 나타남. 한편, 1+2순위를 종합한 결과도 1순위 응답과 거의 균형을 이루고 있으나 스포츠 참여가 28.3%로 휴식활동 보다 약간 더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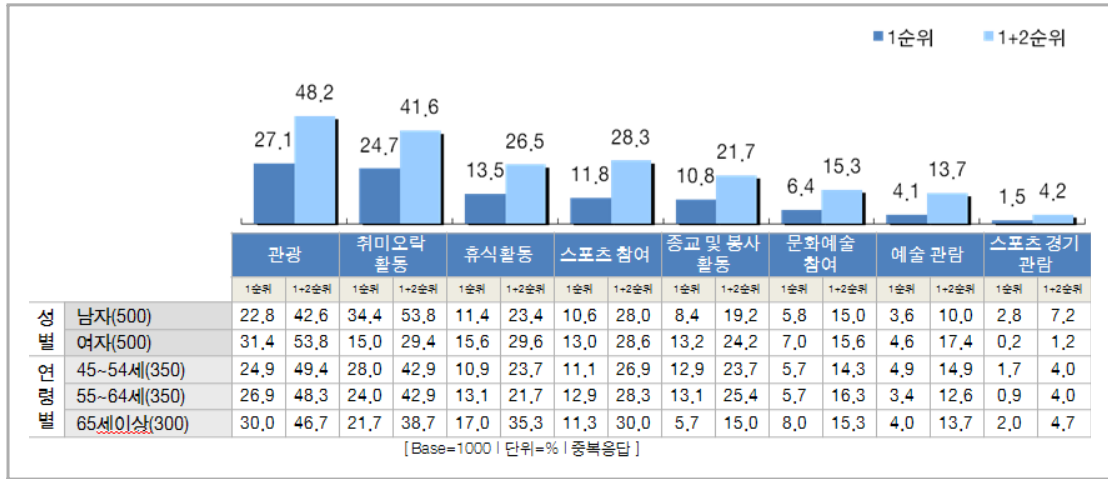


그림 I-4-12 향후에 하고 싶은 여가활동

○ 따라서, 평소에 주로 하는 여가활동과 향후에 하고 싶은 여가활동을 비교해 보면, 평소 휴식활동을 줄이고 관광, 예술관람, 문화예술 참여, 스포츠참여, 종교 및 봉사활동 등을 늘리려고 하는 욕구가 있음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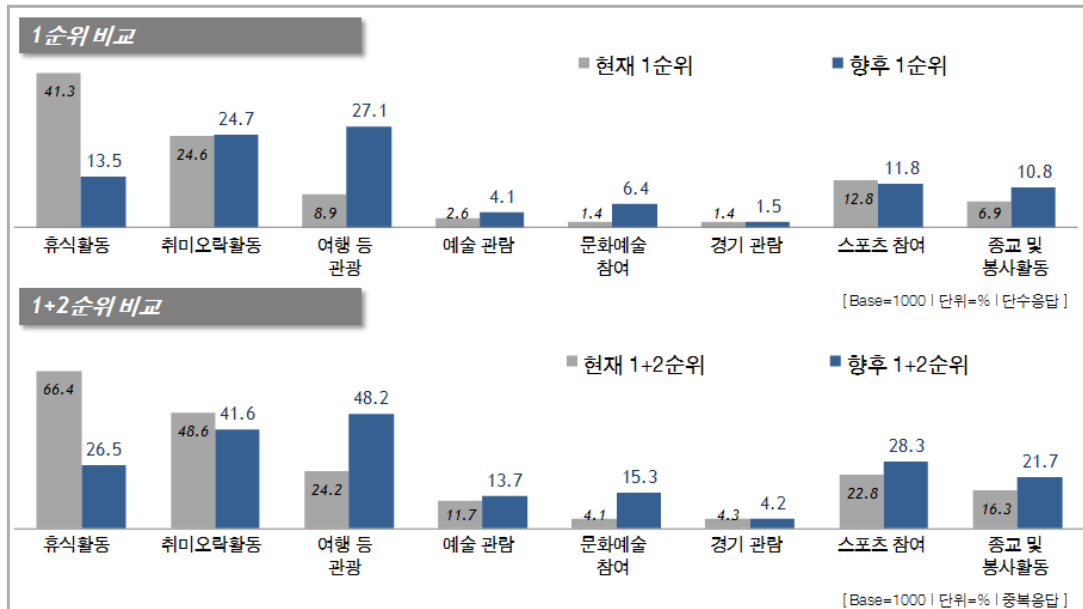


그림 I-4-13 평소에 주로 하는 여가활동과 향후에 하고 싶은 여가활동 비교

○ 여가활동을 하기 어려운 주된 이유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가 35.9%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여가 비용이 없어서 20.5%, 여가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없어서 14.4% 등의 순으로 나타남.

예비 고령자는 시간적 여유와 여가비용이 없어서 인데 반해 현재 고령자는 여가 정보 및 지식 부족, 여가시설 및 장소 부족, 하고 싶은 프로그램 없음 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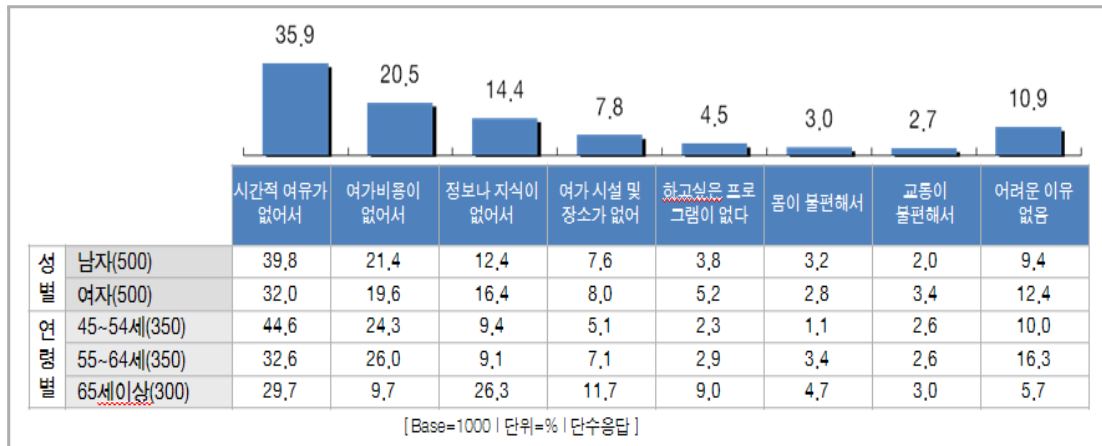


그림 I-4-14 여가활동을 하기 어려운 주된 이유

○ 노후에 가장 필요한 여가지원서비스는 휴양단지 및 시설이 32.5%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그 다음으로 운동 및 스포츠 활동 24.8%, 맞춤형 여행상품 16.2%, 문화콘텐츠 14.0%,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 12.2 순으로 나타남. 남자는 휴양단지 및 시설을 상대적으로 높게 선택한 반면, 여자는 문화콘텐츠에 대한 지원을 상대적으로 높게 선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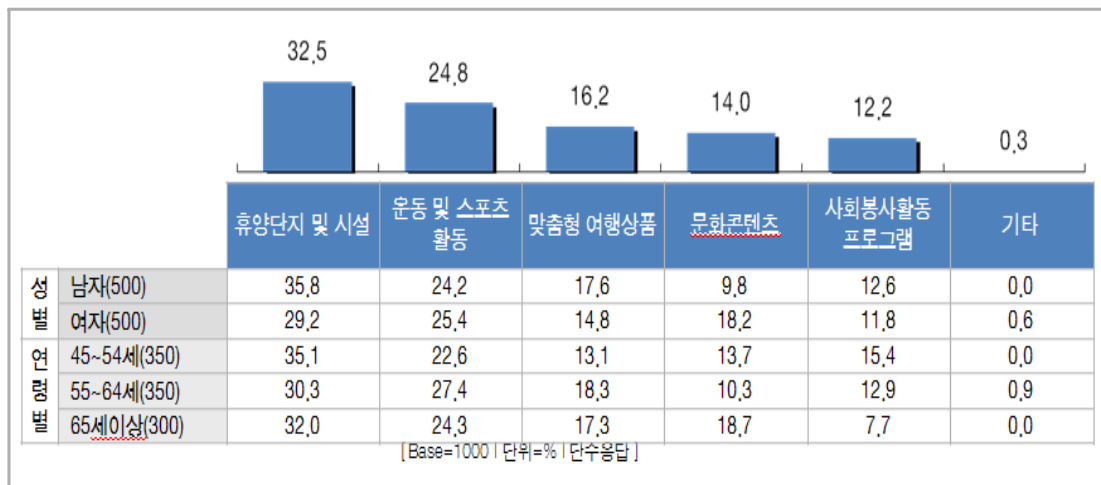


그림 I-4-15 노후에 필요한 여가지원서비스

○ 노후에 여가활동을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은 배우자가 63.9%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그 다음으로 친척 및 친구 15.6%로 높게 나타났으나 기타는 5.0% 미만으로 나타남. 남자는 배우

자와 동반하려는 경향이 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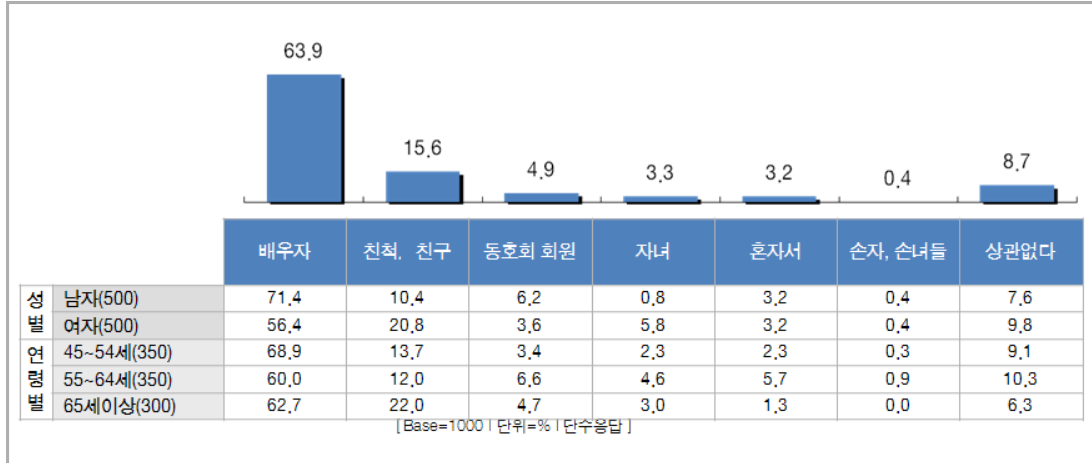


그림 I-4-16 노후에 여가활동을 함께 하고 싶은 사람

라. 주거

- 현 거주주택의 자가 소유 비율은 전체 응답자 기준 78.2%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연령이 높을수록 자가 비율이 높고 군 지역 거주자의 자가 비율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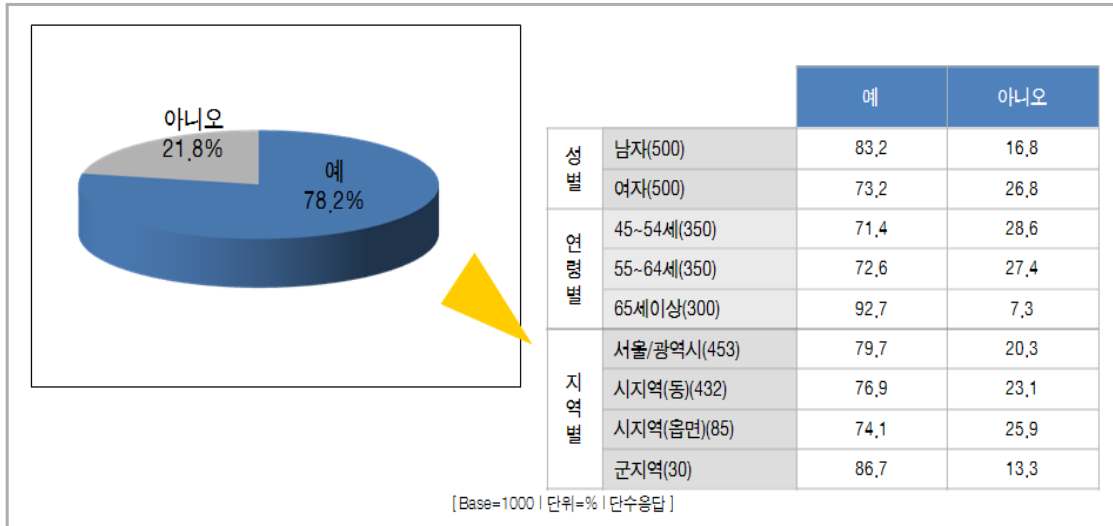


그림 I-4-17 현재 거주주택의 소유 여부

-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 형태는 아파트가 61.5%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그 다음으로 단독주택 24.8%, 빌라/다세대 8.7%, 주상복합 3.7%, 전원주택 1.3% 순으로 나타남. 연령

이 증가할수록 단독주택 보유가 늘어나고, 아파트 보유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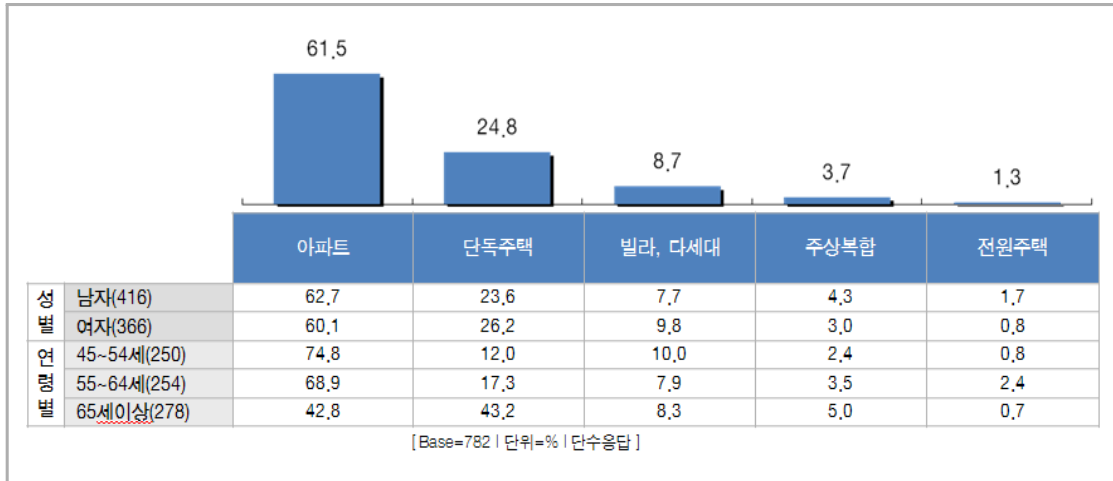


그림 I-4-18 현재 보유주택의 형태

-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연수는 10년 이상이 전체의 64.9%로 노후 주택 거주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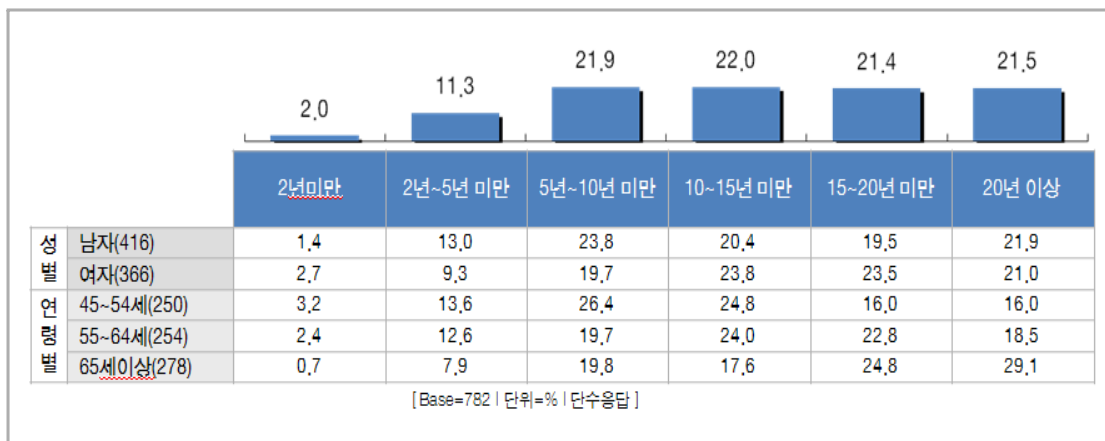


그림 I-4-19 현재 보유주택의 연수

-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집에서 노후를 보낸다는 응답은 52.6%였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도심지에서 벗어난 지역 거주자일수록 더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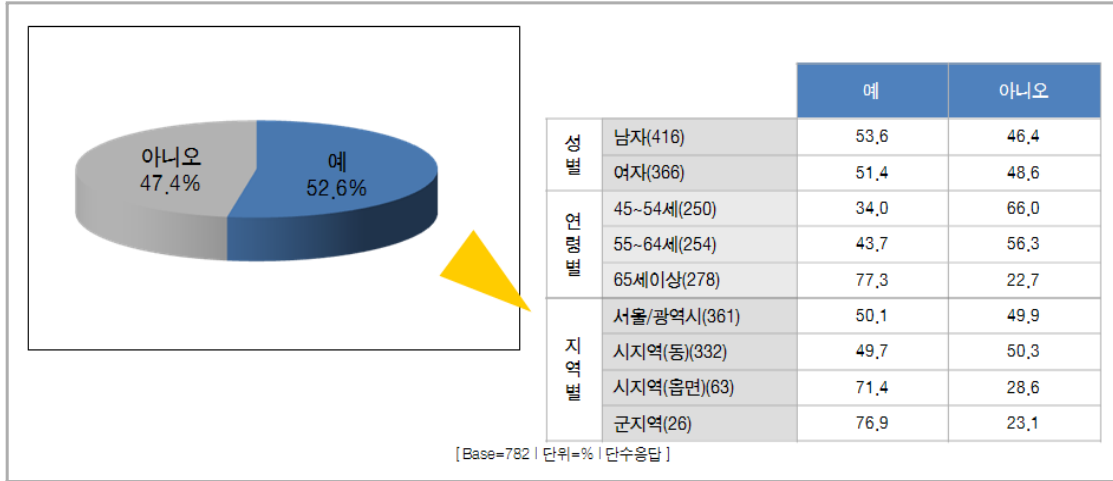


그림 I-4-20 현재 보유주택에서 노후를 보낼 의향

- 현재 집에서 노후를 보내는 가장 큰 이유는 생활 환경에 대한 적응이 42.6%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쾌적한 환경 19.0%, 경제적 이유 14.4%, 자녀/친인척과의 가까움 8.8%, 편리한 교통 7.8%, 편의시설 7.5% 순으로 나타남. 현재 고령자는 생활 환경에 대한 적응, 자녀/친인척과 가까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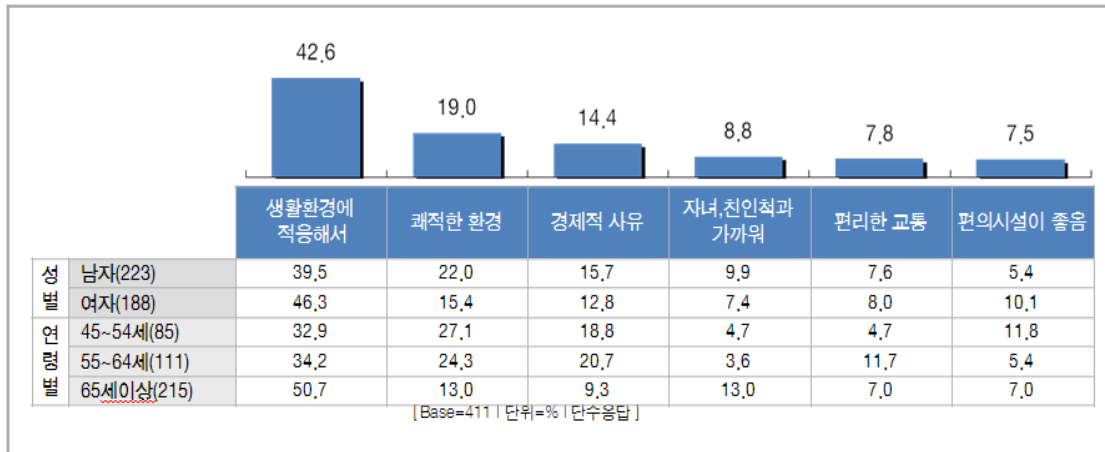


그림 I-4-21 현재 보유주택에서 노후를 보내는 이유

- 현재 집에서 노후를 보내기에 가장 불편한 사항은 편의시설과의 접근성이 28.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집의 구조 19.7%, 주변 환경 15.1%, 집의 크기 14.8%, 교통 11.9% 등의 순으로 나타남. 현재 고령자는 집의 구조, 주변환경, 교통 불편함을 상대적으로 높게 호소했고, 예비고령자는 집의 크기에 대한 불편함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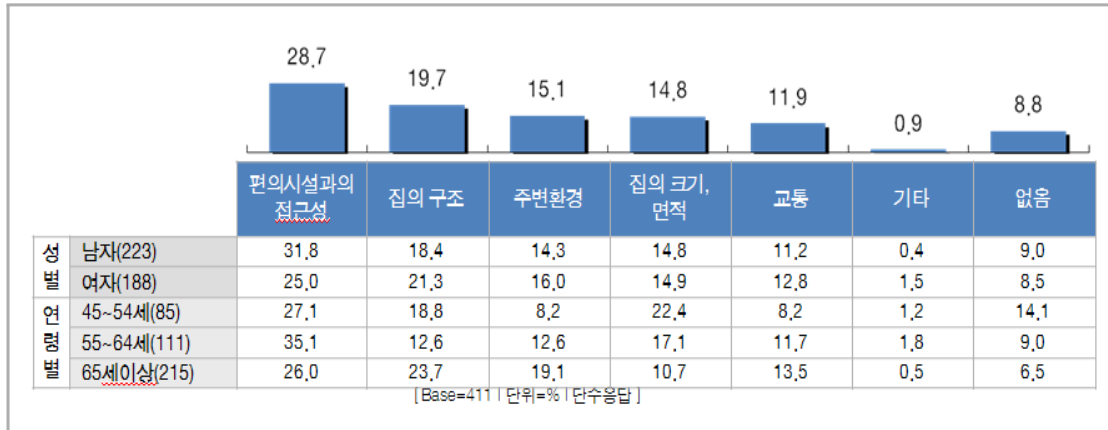


그림 I-4-22 현재 보유주택의 불편사항

○ 노후에 살고 싶은 주거 형태는 전원주택이 50.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아파트 19.1%, 고령자용 주택 17.7%, 단독주택 10.0% 등의 순으로 나타남. 전원주택에 대한 욕구는 남자, 예비 고령자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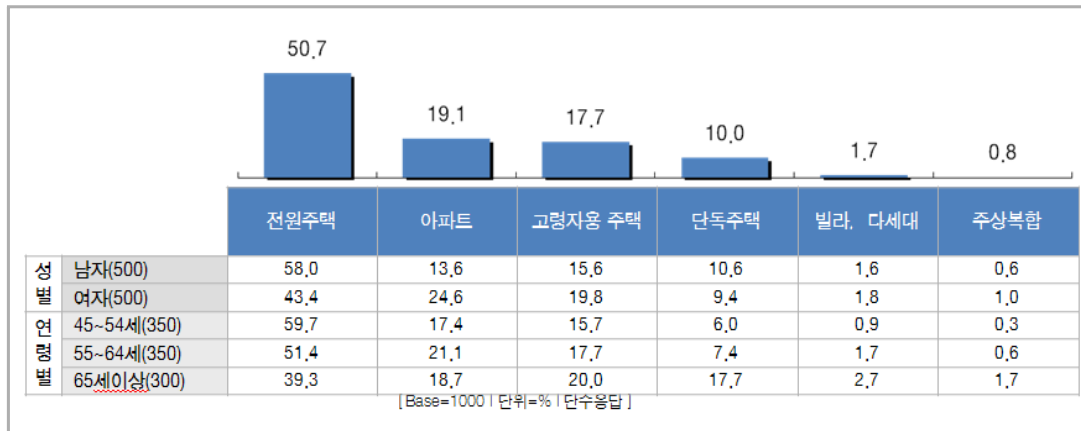


그림 I-4-23 노후에 살고 싶은 주거 형태

○ 따라서, 현재 거주 주택과 향후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의 형태를 비교하면 현재의 거주 주택은 아파트가 61.5% 높은 반면, 향후 거주 희망 주택은 전원주택이 50.7%로 높게 나타남. 한편, 고령자용 주택에 대한 욕구가 17.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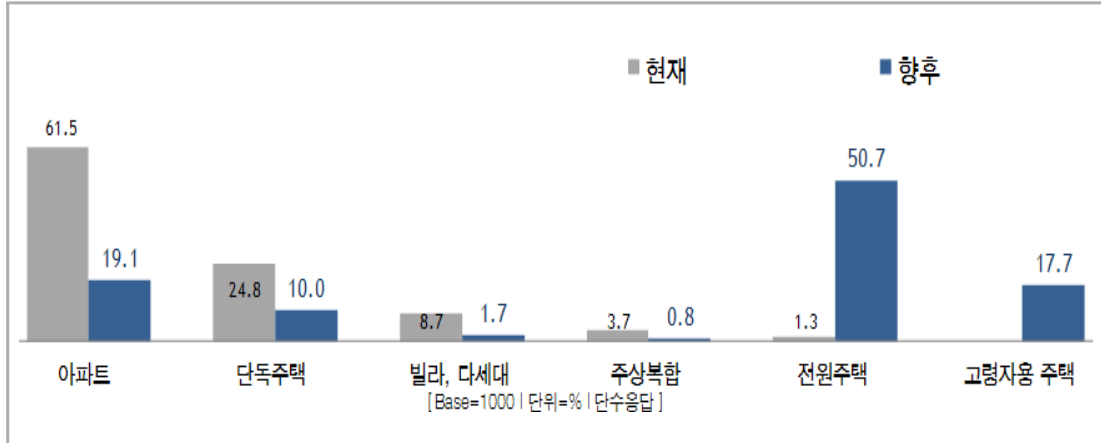


그림 I-4-24 현재 거주 주택과 향후 희망하는 거주주택 비교

○ 노후에 집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내용은 쾌적한 주변 환경이 33.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편의시설 21.1%, 경제적 여건 20.5%, 주택 구조의 편리성 11.5%, 부부 중심의 작은집 6.0% 등의 순으로 나타남. 남자는 쾌적한 주변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 여자는 편의시설, 경제적 여건, 주택 구조 편리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연령이 낮을수록 쾌적한 주변환경과 경제적 여건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주택 구조의 편리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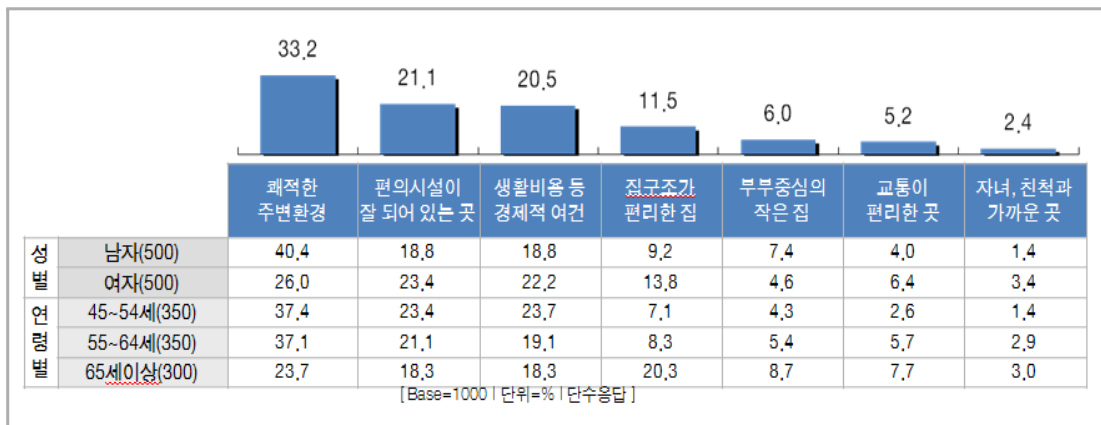


그림 I-4-25 노후에 집을 선택시 중요 고려사항

○ 노후에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서비스는 노인 주거용 복합단지가 52.8%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고령자용 주택 개조 지원 19.4%, 실버타운 15.6%, 고령자용 임대주택 12.2% 순으로 나타남. 고령자용 주택 개조 지원은 현재 고령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필요성을 지니고

있는 반면, 고령자용 임대주택은 연령이 낮을수록 더 필요하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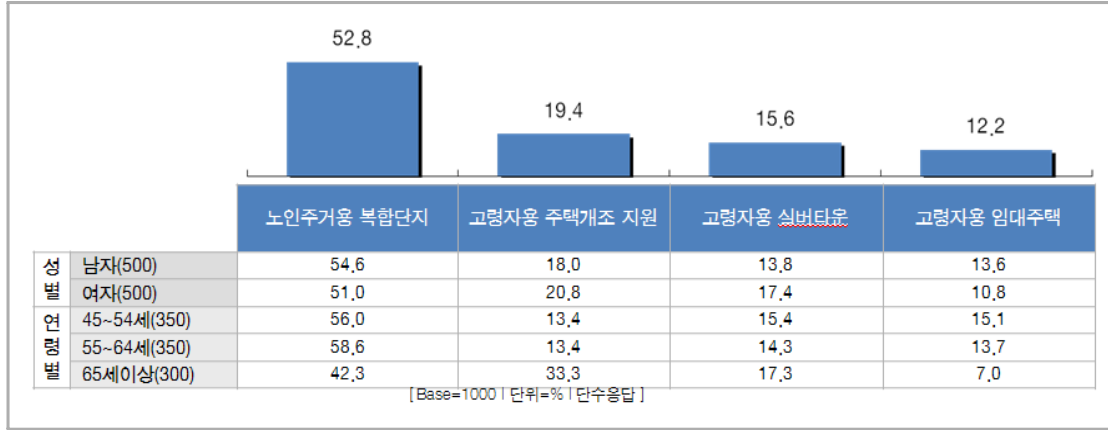


그림 I-4-26 노후에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서비스

마. 고령친화제품

○ 현재 사용중인 고령 친화 제품으로는 운동기구 25.3% 및 건강확인용품 23.6%로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정보통신기기가 11.5%, 침구용품, 여가용품, 목욕용품, 이동기기 등은 5% 미만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고령친화제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6.2%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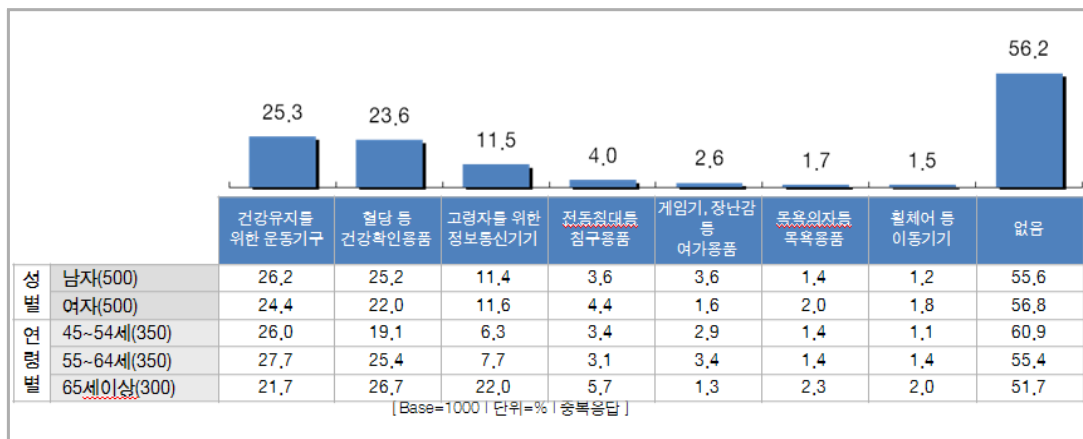


그림 I-4-27 현재 사용중인 고령친화제품의 종류

- 현재 고령친화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필요성 인식 부재가 78.1%로 가장 높고, 그 외에 고령친화제품 인지 부재 10.1%, 고가격 4.6%, 기능 미비 2.3%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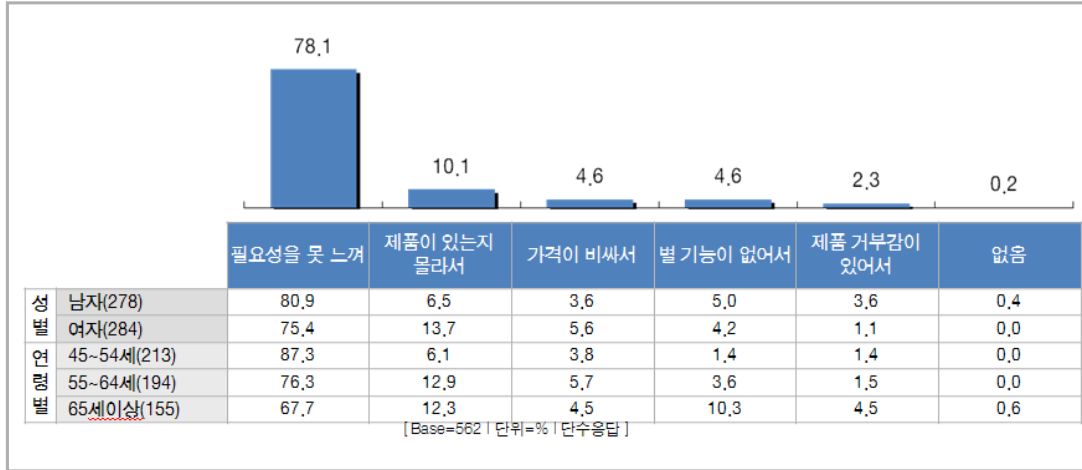


그림 I-4-28 고령친화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

- 노후에 가장 사고 싶은 고령자용 제품은 1순위 기준으로 운동 기구가 27.9%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건강 확인 용품 18.9%, 교통 수단 13.4%, 정보통신기기 7.8%, 가사용품 5.3% 등의 순으로 나타남. 한편, 1+2순위 종합하면, 운동기구가 40%대, 건강확인용품과 교통 수단이 20%대, 정보통신기기, 가사용품, 주거설비용품이 10%대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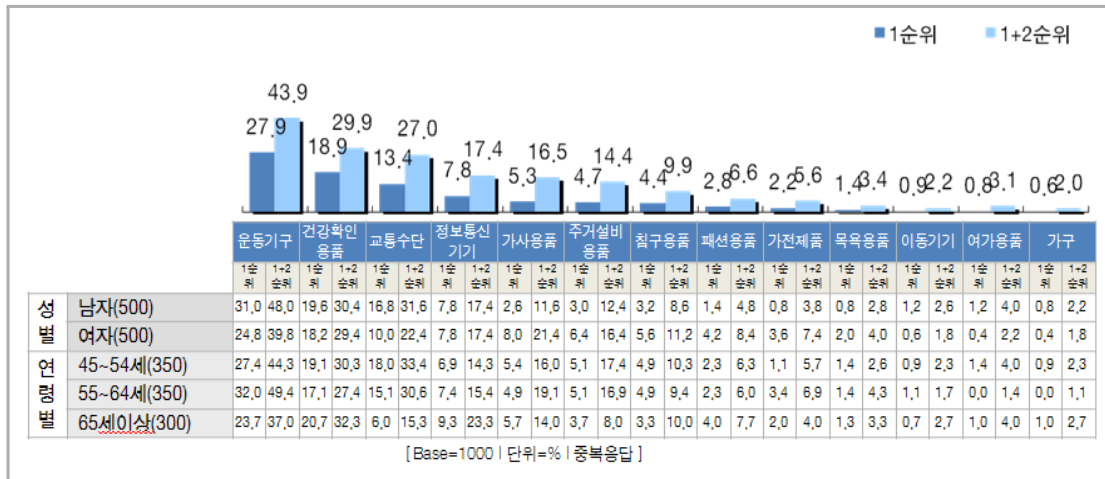


그림 I-4-29 고령친화제품 구입 의향

- 고령자용 정보통신기기 중 가장 사고 싶은 것은 통신기기가 77.6%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건강체크용품 14.4%, 위치확인용품과 문자영상확대용기기는 4.0%로 나타남. 건강체크용 제품은 남자, 현재 고령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구입 의향을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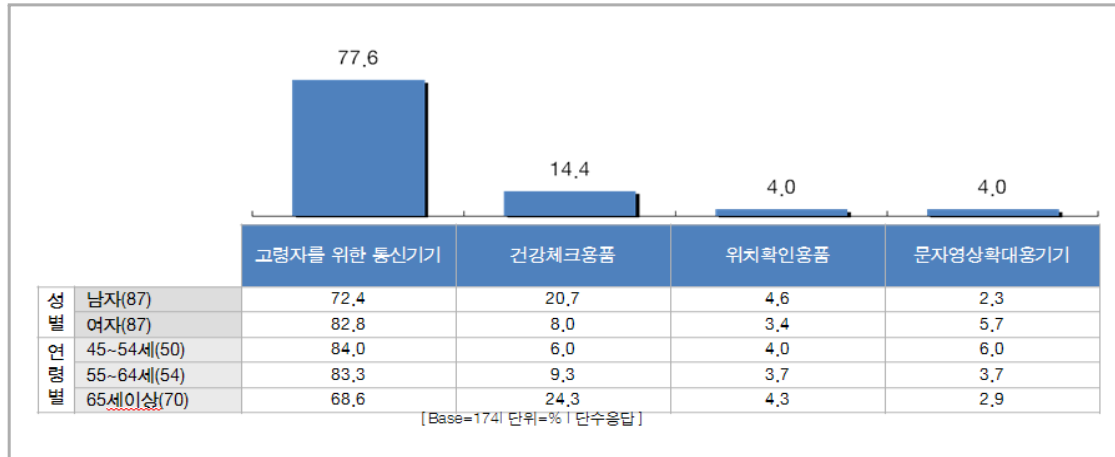


그림 I-4-30 고령자용 정보통신기기 구입 의향

- 고령자용 여가용품 중 가장 사고 싶은 것은 취미용품이 51.6%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스포츠용품 16.1%, 게임기 12.9%, 애완용품 및 사진용품 각 9.7% 순으로 나타남. 남자는 취미용품이 65.0%로 높은 반면, 여자는 취미용품과 게임기를 각 27.3%로 높은 응답률을 보임. 한편, 여자, 고령자는 사진용품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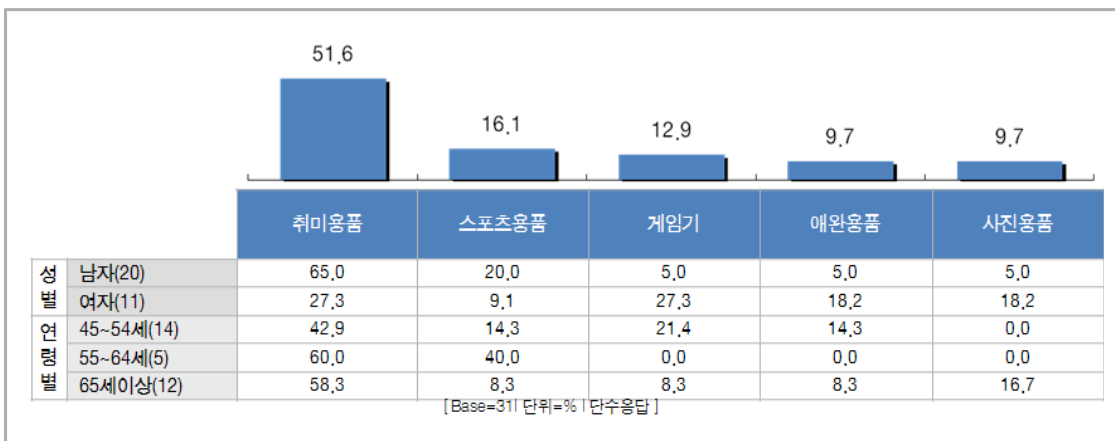


그림 I-4-31 고령자용 여가용품 구입 의향

- 고령자용 패션용품 중 가장 사고 싶은 것은 운동복이 36.4%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그 다음으로 스마트웨어 24.2%, 건강보조용 속옷 16.7%, 신발 13.6% 등의 순으로 나타남. 남자는 운동복, 스마트웨어 및 신발이 상대적으로 높고 여자는 건강보조용 속옷이 높게 나타남. 운동복의 경우 연령이 낮아질수록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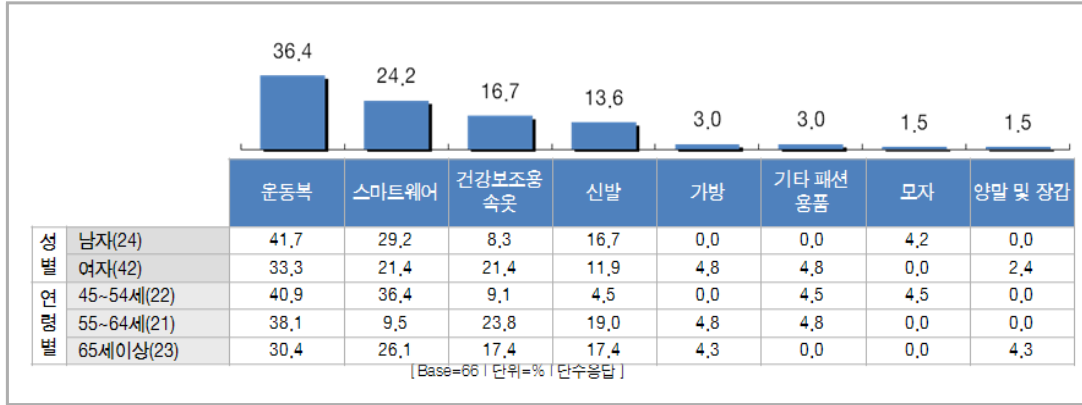


그림 I-4-32 고령자용 패션용품 구입 의향

- 고령자용 가전제품 중 가장 사고 싶은 것은 청소기가 51.8%로 가장 높고, 냉난방기가 17.9%였고, 이외 제시된 가전제품은 10% 미만의 구입의향을 보임. 성별로는 여자는 청소기가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남자는 구입 의향이 있는 제품이 비교적 다양한 것으로 나타남. 현재 고령자는 냉난방기가 가장 높고 세탁기, 주스/믹서기/녹즙기에 대한 구입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청소기는 연령이 낮을 수록 구입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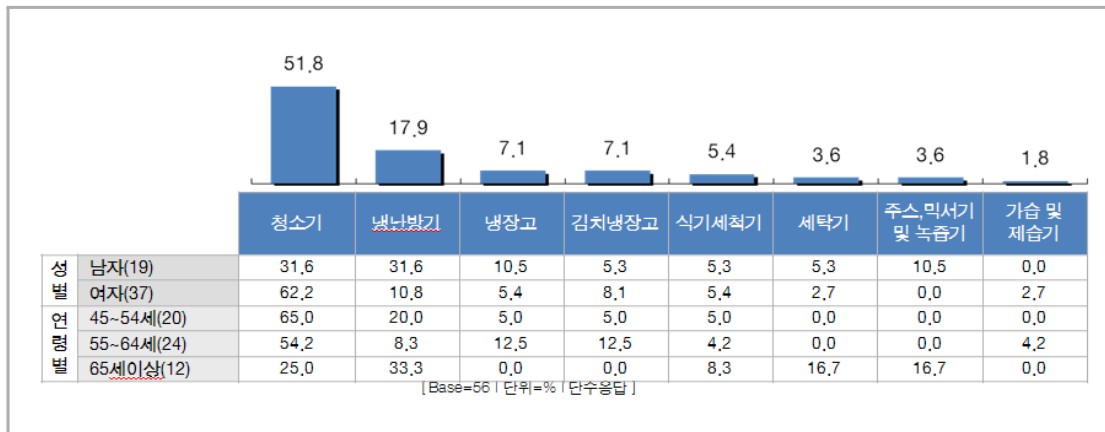


그림 I-4-33 고령자용 가전제품 구입 의향

- 노후에 고령친화제품을 구매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8.9%였고, 그 이유로는 필요성 인식 부재가 74.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노인용 제품에 대한 거부감이 12.4%, 믿을만한 제품이 없어서 7.9%, 경제적 부담 4.5% 등의 순으로 나타남. 성별로는 여자가 노인용 제품에 대한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연령별로는 노인용 제품에 대한 거부감은 연령이 낮을 수록 높게 나타났고, 현재 고령자는 믿을만한 제품이 없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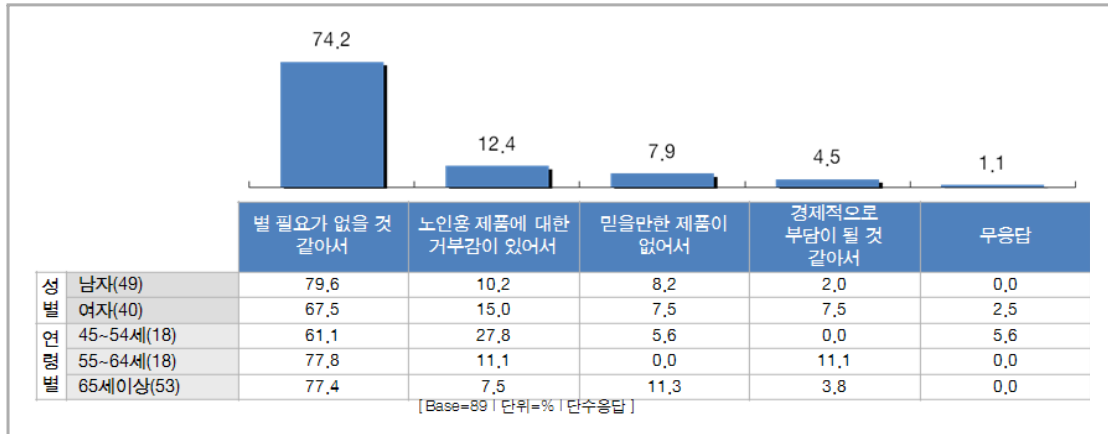


그림 I-4-34 향후(노후)에 고령자용 제품 구매 이유

○ 고령친화제품 선택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1순위 기준으로 인증마크가 40.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성능 35.7%, 제조업체 6.7%, 가격 6.6% 등의 순으로 나타남. 한편, 1+2+3순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능, 인증마크, 가격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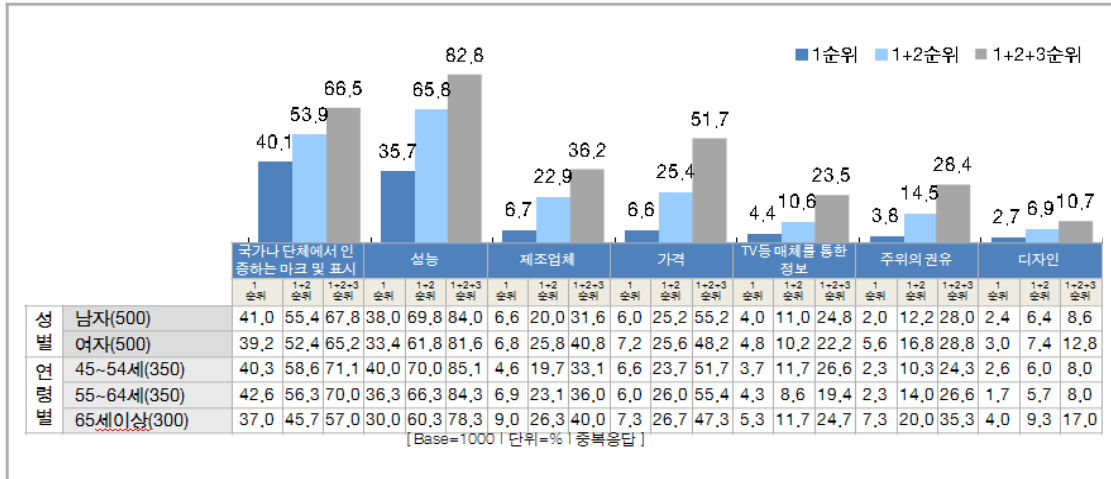


그림 I-4-35 고령친화제품 선택시 고려사항

바. 고령친화 의약품

○ 현재 복용하는 의약품으로는 비타민제 31.6%, 순환계의약품 31.2%로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근골격계 의약품 13.1%, 소화계 의약품 12.4%, 대사성 의약품 10.3%, 신경계 의약품 6.1% 등의 순으로 나타남. 한편, 현재 복용하는 의약품이 없다는 비율은 10.2%로 높게 나타남. 성별로는 남자는 순환계의약품을, 여자는 비타민제, 근골격계 의약품, 노화방



지호르몬제제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연령별로는 순환계의약품, 근골격계의약품, 소화계의약품, 대사성의약품, 호흡계의약품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복용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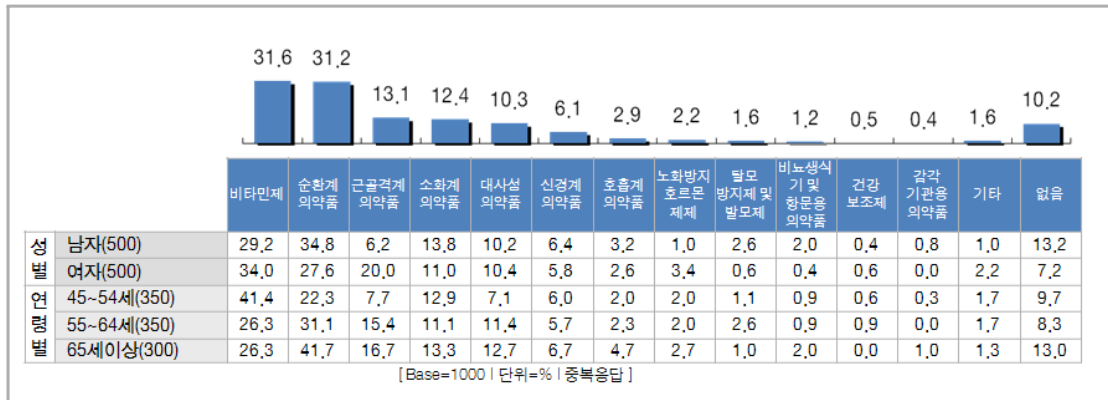


그림 I-4-36 현재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의 종류

○ 의약품 복용시 가장 불편한 점은 약을 시간에 맞게 챙겨 먹는 것이 어렵다는 응답이 60.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약이 너무 커서 9.6%, 잇고 두 번씩 먹기도 한다 8.4%, 딱딱하다 5.5% 등의 순으로 나타남. 성별로는 여자가 약이 너무 커서 먹기가 힘들, 잇고 두 번씩 먹기도 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연령별로는 예비고령자가 약을 시간에 맞춰 먹는게 어렵다, 약이 너무 커서 먹기 힘들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고, 현재 고령자는 약이 너무 딱딱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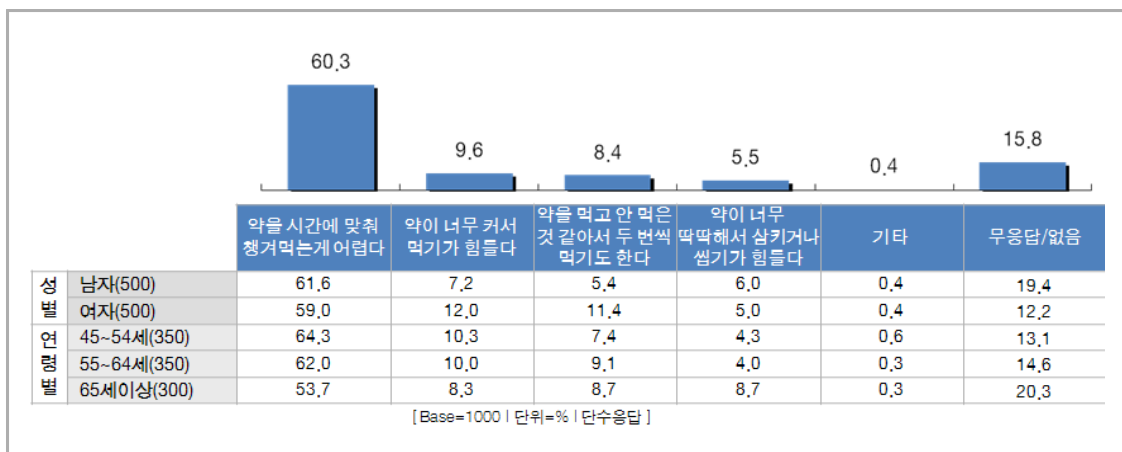


그림 I-4-37 현재 의약품 복용시 불편사항

사. 고령친화 식품

○ 고령자용 식품 구입 의향은 50.0%로 나타났고, 여자 및 서울/광역시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은 구입의향을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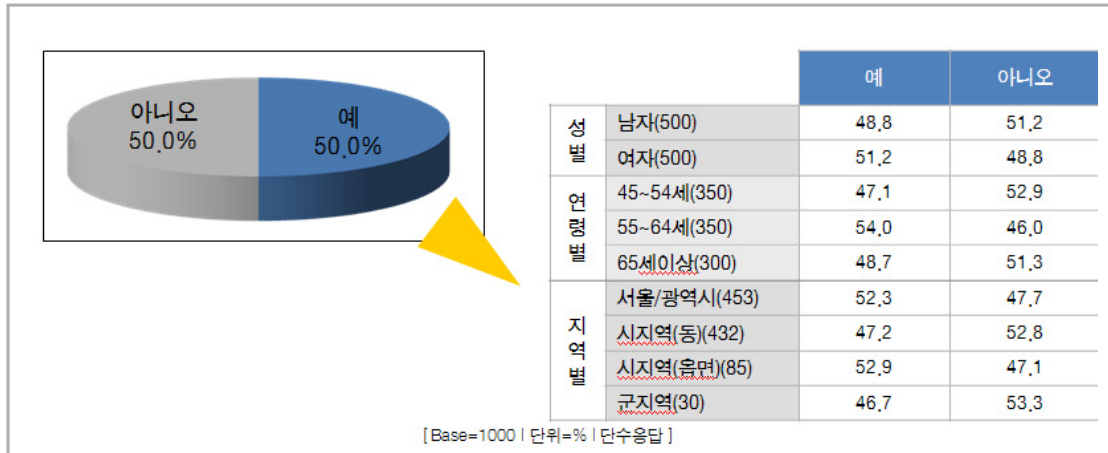


그림 I-4-38 고령자용 식품 구입의향

- 고령자용 식품 구매의향자가 선호하는 식품은 영양분이 갖춰진 식품이 60.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소화가 잘 되는 식품 16.6%, 부드러운 식품 16.4%, 특정 영양성분 함유 식품 6.4%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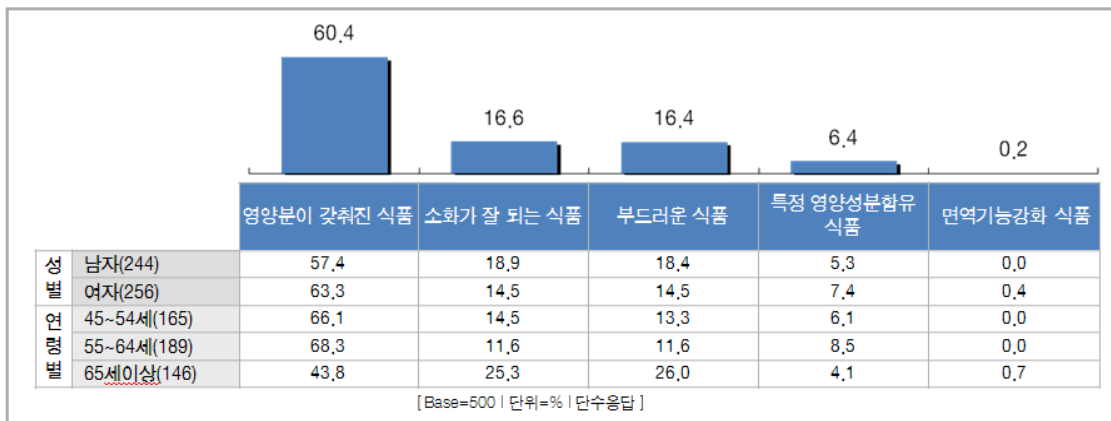


그림 I-4-39 고령자용 식품 중 구입의향이 있는 식품 유형

○ 평소 선호하는 식품은 전통·발효식품, 건강 기능식품, 두부류/묵류가 각각 55.9%, 55.5%, 52.3%로 높고, 그 다음으로 우유·유제품 39.8%, 음료/다류제품 31.1%, 제과제빵류 31.0%, 면류제품 30.5%, 유기농 가공식품 27.3%, 어육제품 20.0%, 즉석섭취/편의식품 7.6%, 특수

용도식품 6.2%, 시리얼류 5.9% 순으로 나타남.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현재 고령자가 전통·발효식품, 건강기능식품, 두부류 또는 목류, 특수용도식품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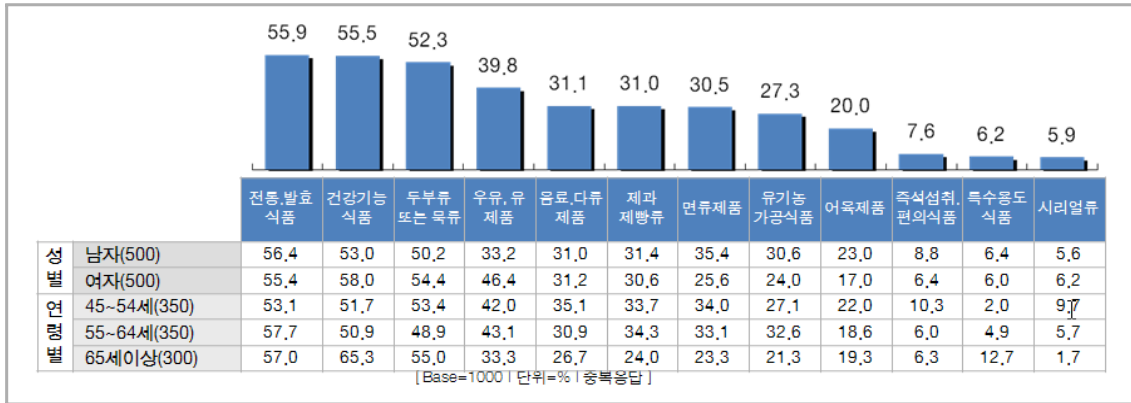


그림 I-4-40 평소 선호하는 식품의 종류

○ 노후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식품은 1순위 기준으로 건강기능식품이 46.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전통/발효식품 14.4%, 특수용도식품 13.3%, 두부류/목류 7.6%, 유기농 가공식품 6.7%, 우유/유제품 5.1%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이외 제품은 2.0%이하로 필요성 인식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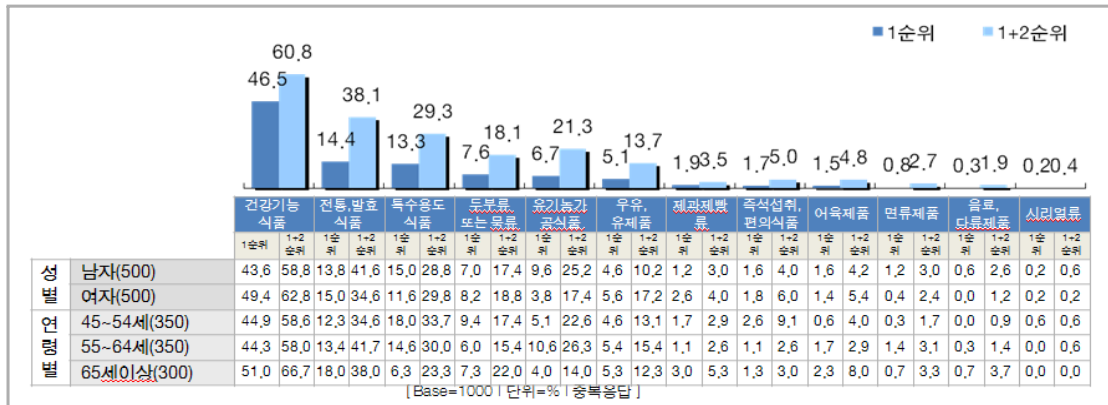


그림 I-4-41 노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식품의 종류

○ 평소 선호하는 식품과 향후 필요한 식품을 비교해 보면, 평소에도 선호하면서 향후에도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식품은 건강기능식품, 전통발효식품으로 나타나며 평소에는 선호하지만 향후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식품은 제과/제빵류, 면류, 우유/유제품, 어육, 시리얼류 등인 반면 평소 선호하지 않지만 향후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식품으로는 특수용도식품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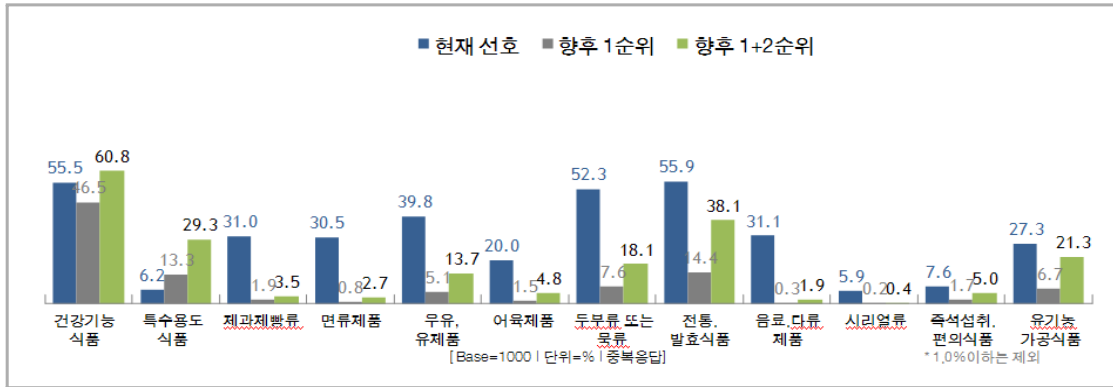


그림 I-4-42 평소 선호하는 식품과 노후 필요한 식품의 종류 비교

### 아. 고령친화 화장품

-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화장품은 기초화장품이 84.8%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기능성화장품 33.2%, 염모용 21.5%, 두발용 16.2%, 방향용제품(체취방지용 포함) 13.4%, 목욕용 8.2%, 면도용 5.5%, 색조화장용(눈화장포함) 5.4%, 손발톱용 1.6% 순으로 나타남. 성별로는 여자가 기능성 화장품 사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연령별로는 기초화장품 및 기능성화장품 연령에 상관없이 높게 나타난 반면, 65세 이상은 45세~64세에 비해, 두발용, 염모용, 목욕용, 면도용 제품 사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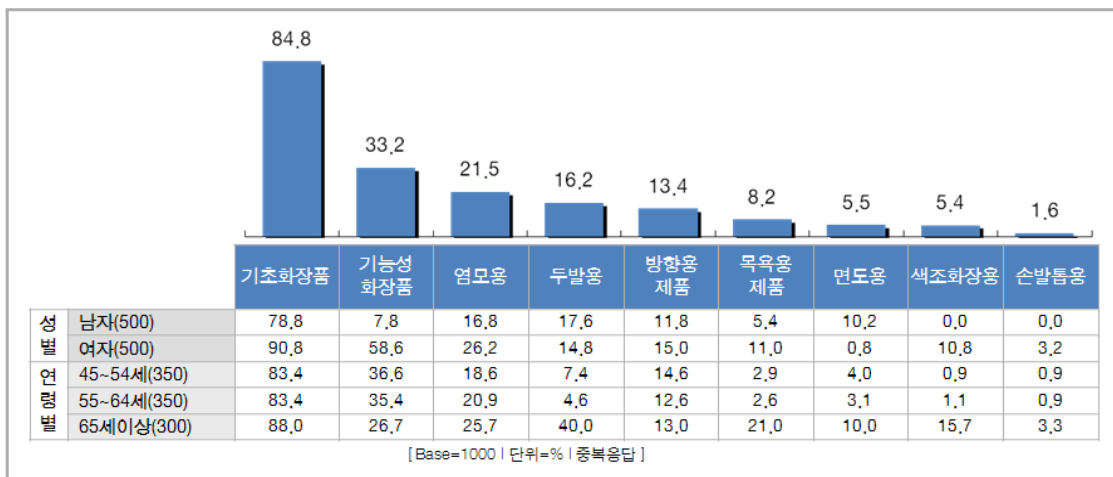


그림 I-4-43 현재 사용중인 화장품의 종류

- 향후(노후)에 사용하고 싶은 화장품은 1순위 기준으로, 기능성 화장품이 49.2%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기초화장품 34.6%, 방향용(체취방지용 포함) 7.4%, 염모용 7.1% 순으로 나타

남. 성별로는 여자가 기능성화장품을 남자는 방향용(체취방지용 포함), 염모용 제품에 대한 사용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은 45세~64세에 비해, 기능성화장품 사용의사는 감소한 반면, 기초화장품, 방향용(체취방지용 포함), 염모용 제품 사용의사는 높아짐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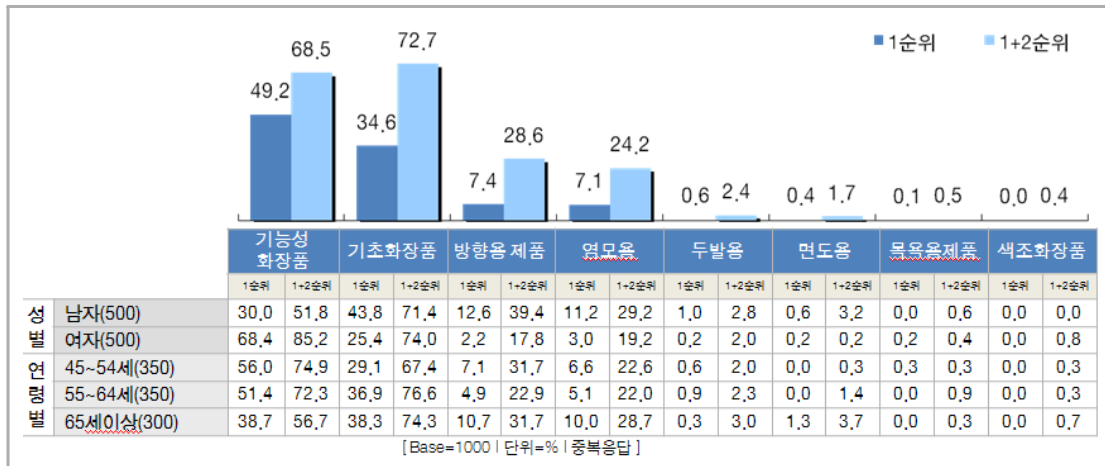


그림 I-4-44 향후(노후)에 사용하고 싶은 화장품의 종류

○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화장품과 향후(노후)에 사용하고 싶은 화장품을 비교해 보면, 현재 사용 화장품이면서 향후에도 사용성을 높게 인식하는 화장품은 기초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염모용 화장품으로 나타났고, 현재 사용하지만 향후 사용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화장품은 두발용, 목욕용, 면도용, 색조화장품인 반면 현재 사용율은 낮지만 향후 사용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화장품은 방향용 화장품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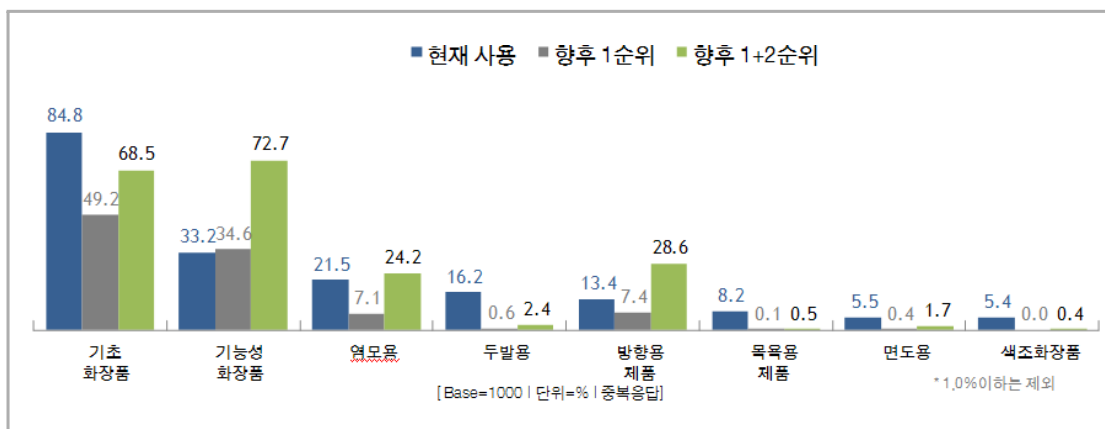


그림 I-4-45 현재 사용중인 화장품과 향후(노후)에 사용하고 싶은 화장품 비교

## 2.4 시사점

### 1) 중·고령자에게 지원이 필요한 산업은 경제적 측면과 여가/건강 측면을, 지원이 필요한 제품은 식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인식이 높음

- 중·고령자에게 지원이 필요한 산업은 일자리 지원(39.0%), 금융 및 자산관리 서비스(28.5%)로 높고, 그 다음으로 여가활동지원(11.9%), 요양 및 건강지원 서비스(10.9%)로 나타나 경제적인 측면에 대한 지원 요구도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여가 및 건강에 대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남
  - 성별로는 남자는 일자리지원을, 여자는 금융 및 자산관리서비스, 요양 및 건강지원서비스를 더 필요로 함
  -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은 요양 및 건강지원서비스, 용품개발 및 지원을, 45~54세 미만은 일자리 지원, 주거환경 및 편리한 교통을 더 필요로 하여, 예비고령자는 경제적 측면에 치중하는 반면, 65세 이상은 건강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서비스 및 제품에 관심이 높음
- 중·고령자에게 지원이 필요한 제품은 식품(23.6%), 의료기기(22.3%), 주거설비용품(14.4%), 노인용 의약품(11.7%)으로 나타나, 기본적인 먹거리와 사는 곳에 대한 지원과 질병에 대비한 의료기기와 의약품에 대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남
  - 성별로는 남자는 의료기기, 여가/문화제품을, 여자는 식품, 주거설비용품, 의약품, 정보통신기기를 더 필요로 하여, 남녀 생활패턴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은 노인용 의약품, 화장품, 패션용품을, 45~54세 미만은 의료기기, 주거설비용품, 여가/문화용품, 가전제품을 더 필요로 하여, 현재 노인은 건강 및 외모관리를 중요시하고, 예비고령자는 다양한 제품에 대한 요구도가 커서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다양한 고령친화제품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음

### 2) 요양 및 건강지원서비스 분야에서는 재가서비스를 선호함

- 시설서비스(39.2%)보다 재가서비스(60.5%)를 선호함
  - 재가서비스는 여자, 45세~54세 미만이 상대적으로 높아 고령화가 진전되면, 재가서비스 요구도는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재가서비스로는 가사지원, 건강지원이 각각 50.2%, 28.9%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건강지원 서비스 중에서는 정기 건강검진이 46.9%로 절반 정도를 차지함
  - 성별로는 여자는 가사지원을, 남자는 건강지원, 이동지원, 수발을 더 필요로 하여, 남자의 건강 및 그에 수반되는 서비스 욕구가 높음을 알 수 있음

-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은 수발, 간단한 심부름 대행, 45~54세 미만은 가사지원, 배달서비스를 더 필요로 함
- 요양시설을 선택한 392명 응답자 중 요양시설을 선택하는 요인은 저렴한 비용, 전문인력과 친절도, 좋은 시설, 자연환경으로 나타나 향후 요양시설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 및 시설서비스 가이드라인의 확산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3) 노후 소득준비 방법으로 현재 부동산 비중이 높고,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필요로 함

- 노후 소득준비 방법은 65세 이상은 거주 주택과 이외 부동산이 각각 72.7%, 48.7%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45세~54세 미만은 연금(공적연금/개인연금/퇴직연금) 및 펀드 등 투자가 상대적으로 높음
- 필요로 하는 금융서비스는 연금상품(39.6%), 보험상품(20.7%), 금융자산관리서비스(19.9%), 역모기지(12.9%) 순이었으며, 45세~54세 미만은 연금상품에, 65세 이상은 금융자산관리서비스에 상대적으로 높은 필요성을 제기함
- 이를 통해 현재 노인을 위해서는 부동산을 활용한 노후대책 방안과 예비고령자를 위해서는 종합적인 금융자산 진단 및 관리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4) 단순한 휴식 활동을 줄이고 다양한 문화/여가활동을 늘리려는 욕구가 내재되어 있고, 휴양 단지에 대한 요구도가 큼

- 현재 휴식활동이 41.3%로 가장 높은 반면, 향후에는 여행 등 관광, 취미오락활동, 스포츠 참여, 종교 및 봉사활동 등을 늘리려는 욕구가 높음
- 노후에 필요한 여가지원서비스는 휴양 단지(32.5%), 운동 및 스포츠 활동 (24.8%), 맞춤형 여행상품(16.2%), 문화콘텐츠(14.0%), 사회봉사프로그램(12.2%) 순으로 다양함
  - 성별로는 여자는 문화콘텐츠를, 남자는 휴양단지 및 맞춤형 여행상품 요구도가 더 높음
  -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은 맞춤형 여행상품 및 문화콘텐츠를, 45~54세 미만은 휴양단지 및 사회봉사활동프로그램 지원 요구도가 더 높음
- 고령자를 위한 활동적이고 다양한 여가지원서비스의 필요성이 대두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함을 알 수 있음

### 5) 노후의 거주 형태로 전원주택을 선호하고, 노인주거용 복합단지 등 새로운 주거형태의 지원을 요구함

- 현재 아파트 거주가 61.5%로 절반 이상이나 전원주택(50.7%)이나 고령자용 주택(17.7%)으

로 이전하려는 의향이 높음

- 노후용 주택 선택 시 중요 고려 요인은 쾌적한 주변 환경(33.2%), 편의시설 구비(21.1%), 경제적 여건(20.5%) 등의 순으로 높고, 최우선 주거지원서비스로는 노인주거용 복합단지 가 52.8%로 절반정도를 차지했고, 그 다음이 주택개조지원(19.4%)으로 고령자를 위한 새로운 주거형태에 대한 요구가 큼을 알 수 있음
  - 남자 및 45세~54세 미만은 노인주거용 복합단지, 고령자용 임대주택을, 여자 및 65세 이상은 고령자용 주택개조 및 고령자용 실버타운 요구도가 더 큼
  - 65세 이상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서 노후를 보내겠다는 응답이 대부분(77.3%)임
- 따라서, 현재 노인을 위해서는 주택개조 지원이 절실하고, 예비고령자를 위해서는 쾌적한 환경 및 편의시설을 갖춘 노인주거용 복합단지 형태가 각광받을 것으로 전망됨

#### 6) 향후에 고령친화제품 수요를 촉진시키는 요인은 건강유지와 편의성임

- 고령 친화 제품의 구입 의향을 보면, 운동기구 27.9%, 건강확인용품 18.9%, 교통수단 13.4%, 정보통신기기 7.8% 등의 순으로 나타나 건강 유지 및 확인, 이동수단에 대한 관심도가 높음
- 분야별 고령친화제품 구입 의향을 보면, 정보통신분야는 고령자를 위한 통신기기, 여가용품은 취미용품, 패션용품은 운동복 및 스마트웨어, 가전제품은 청소기로 다양한 고령친화 제품을 요구하고 있음
- 고령친화제품을 구매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8.9%로, 필요성 인식 부재가 74.2%, 노인용제품에 대한 거부감이 12.4%로 고령친화제품에 대한 홍보 및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고령친화제품 선택 시 중요한 요인은 인증마크(40.1%), 성능(35.7%) 순으로 제품력을 중시하고, 좋은 제품임을 인정받은 것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음
- 이를 종합하면, 고령친화제품은 향후 고령자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분야 제품이 요구되고, 특히 건강 및 노인의 신체적으로 약화된 것을 보완할 수 있고, 편리성이 가미된 제품이 구매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또한 고령친화제품의 홍보강화를 통해 고령친화제품 인식개선 및 구매를 유도하고, 제품별 인증마크를 통해 믿고 구입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함

#### 7) 고령친화제품별 구입 의향을 보면, 고령화에 따른 신체를 보완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요구도가 큼



- 현재 복용하는 의약품은 비타민제(31.6%), 순환계의약품(31.2%)으로 높고, 약을 시간에 맞추어 복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응답이 60.3%로 복약지도 및 이것을 알려주는 기기 등 대처 방안 마련이 필요
- 고령자용 식품 구입의향은 50.0%로 영양이 갖추어진 식품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소화성, 유동성을 중요시함
  - 평소 선호 식품과 향후 선호식품을 비교해 보면, 건강기능식품과 전통발효식품은 지속적으로 강세이고, 특수용도식품은 향후 강세로 성장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고령자용 식품은 고령자를 위한 영양이 골고루 잘 갖추어진 식품으로, 건강기능식품, 전통발효식품, 특수용도식품에 대한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화장품의 현재, 향후 사용 의사를 비교해 보면, 기초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염모용 화장품은 지속적으로 강세이고, 방향용 제품은 향후 강세로 성장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노인 신체의 단점을 보완해 주는 주름개선, 모발 염색을 중심으로 향후 노인용 체취를 보완해 주는 방향용 제품에 대한 수요에 대비한 제품 개발이 필요할 것임



## 제5장 고령친화산업 범위 및 분류체계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2조에는 고령친화제품 등에 대한 범위를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통일된 분류체계는 아직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로 실태 파악 및 정부의 산업지원에도 한계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국내외 고령친화산업 분류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이에 대해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의 범주에 속하고, 지속적인 정책 수립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통계조사 분석 가능 여부, 제품·서비스 수요 및 정책 수요 등을 고려한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고령친화산업의 범위 및 분류체계를 설정하고자 함

### 1. 분류체계 설정의 개요

#### 1.1 추진배경

##### 1) 현황 및 문제점

###### □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요구도 증가

- 급속한 인구고령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 베이비부머 은퇴 본격화 등으로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시장 수요가 확대될 전망

###### □ 정부는 고령친화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한 정책 추진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06, '10)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정('06년),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지정('08년)

- 고령친화종합체험관 구축·운영('08년 : 성남·대구, '11년 : 광주)

#### □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통일된 분류체계 미확립으로 산업지원에 한계

-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2조에는 고령친화친화제품 등에 대한 범위를 매우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와 사업 대상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고령친화산업’이라 함은 고령친화제품 등을 연구·개발·제조·건축·제공·유통 또는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1. “고령친화제품등”이라 함은 노인을 주요 수요자로 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노인이 주로 사용하거나 착용하는 용구·용품 또는 의료기기
- 나. 노인이 주로 거주 또는 이용하는 주택 그 밖의 시설
- 다. 노인요양 서비스
- 라. 노인을 위한 금융·자산관리 서비스
- 마. 노인을 위한 정보기기 및 서비스
- 바. 노인을 위한 여가·관광·문화 또는 건강지원서비스
- 사. 노인에게 적합한 농업용품 또는 영농지원서비스
- 아. 그 밖에 노인을 대상으로 개발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
  - 노인을 위한 의약품·화장품
  - 노인의 이동에 적합한 교통수단·교통시설 및 그 서비스
  - 노인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및 급식 서비스

#### □ 고령친화산업 실태파악을 위한 통계자료 등 기초 정보 부족

- 고령친화산업별로 시장 상황 등 정확한 통계자료를 통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

### 2) 목적

- 고령친화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하여 고령친화산업 범위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세부적인 분류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3) 기대효과

- 향후 시장 전망 추계
- 산업별 정책 우선 순위 결정

- 고령친화산업별 정책지원방향 및 발전방안 수립

## 1.2 고령친화산업 분류체계 설정기준

고령친화산업은 새롭게 태어난 산업이라기 보다는 노인인구 증가와 더불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제품과 서비스 활동이 증가됨에 따라 일상생활과 관련된 여러 산업 활동 중에서 고령자를 대상으로한 부분들이 하나의 산업영역으로 분류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국제적 분류기준이 없고, 2006년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2조에는 고령친화친화제품 등에 대한 범위를 매우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분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산업의 유형과 시장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 있고, 그 분석의 목적성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산업이란 본질적으로 자의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넓게도 좁게도 정의할 수 있다. 고령친화산업은 규모의 경제성보다는 범위의 경제성이나 연결의 경제성을 추구해야 하는 관계로 자원의 공동 활용에 기초한 산업클러스터 형태가 효과적이다. 따라서 고령친화산업진흥법, 고령친화산업범위 설정을 위한 정부, 학계 분석 현황, 해외 고령친화산업의 범주 등을 종합하여 고령친화산업의 범위 및 분류체계를 설정하고자 한다.

## 2. 고령친화산업 분류

### 2.1 고령친화산업 분류체계 설정을 위한 조사·분석 현황

#### 1) 외국의 고령친화산업 분류 현황

##### 가. 일본

- 일본은 2000년 개호보험 도입이후 보험이 적용되는 관련용품 및 요양서비스시설 등을 중심으로 고령친화산업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1994년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개호서비스, 복지기기, 금융, 의료, 레저, 일상관련 등 7가지로 고령친화산업을 분류함

표 I-5-1 일본의 고령친화산업 세부 유형

구분	유형
개호서비스	재택개호서비스, 입욕서비스, 급식서비스, 개호노인대상서비스
복지기기 관련	안전, 안심기기, 생활용품, 건강기기, Barrier free 기기
금융 관련	노령기를 대비하기 위한 연금·보험·신탁·재산관리서비스 등
의료관련	의료서비스, 의료기기 등 노인의 건강과 관련된 시설, 용품 및 서비스 분야
레저관련	고령자대상 전문웹사이트 운영, 암검진 여행상품, 고령자 오토캠핑, 고령자 스포츠 비즈니스, 고령자용 게임 개발 등
주거관련	유료 노인 요양원 분양, 고령자용 IT주택개발, 고령자 주택을 대상으로 안전통보서비스, 휴양지에 퇴직자 커뮤니티 개발
일상관련	고령자용 급식 개발, 당뇨병 식단 강화, 체지방 감소 식품 등, 혈당·혈압 억제 건강식품, 고가의 치료식 택배사업 등

## 나. 미국

- 미국은 1965년 노인복지법을 제정하여 노인의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전국적 서비스 체계 확충에 제도적 기반을 제공해 왔다. 제1조 목적은 다음과 같다.
  - ① 퇴직자에게 미국의 표준생활기준에 부합하는 충분한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
  - ② 경제 능력에 상관없이 현재의 과학기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의 최고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것
  - ③ 노인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주거시설을 확보하고 유지하며, 이들 시설이 개별적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고, 위치 및 구조가 적합하고 편안한 주거시설이 되도록 할 것
  - ④ 시설보호 및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위해 충분한 서비스 체계를 확립하고, 노인이 자신의 주거 지역, 자신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 체계를 개발하고, 특히 이들을 부양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
  - ⑤ 연령으로 인한 고용 기회의 차별을 예방하고, 노인 고용 기회의 확대 도모
  - ⑥ 산업역군으로의 사회기여 후에 건강하고, 명예롭게, 그리고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퇴직할 수 있도록 할 것
  - ⑦ 사회, 문화, 교육, 훈련, 여가활동의 광범위한 영역에 활동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
  - ⑧ 실비의 교통수단 제공 서비스를 포함하는 효율적 지역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기보호주거시설의 선택 기회를 제공하며, 이들 시설이 취약한 노인에게 지속적 보호의 차원에서 서비스를 전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즉각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

- ⑨ 건강과 안녕을 증진하고 유지시킬 수 있는 실증적 연구 결과를 즉각적으로 활용할 것
  - ⑩ 노인의 복지를 위하여, 학대, 유기, 악용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노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고 주관하는 데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것
- 이를 통해 보면, 요양, 금융, 여가 분야로 나누고, 그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음.

표 I-5-2 미국의 고령친화산업 세부 유형

구분	유형
요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간호사업</li> <li>○ 가정봉사원제도 : 의료서비스, 간병서비스 가정봉사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서비스 : 급식서비스, 약 배달 및 가정 건강 장비 제공, 노인의 가정에서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는 치료적 서비스와 의사의 왕진, 간호방문, 물리치료, 작업치료</li> <li>- 간병서비스 : 목욕 등 일상 활동의 보조, 약물 복용의 지도나 혈압검사와 같은 건강보조, 물리치료 보조 서비스</li> <li>- 가정봉사서비스 : 가사, 음식 준비, 세탁서비스 등의 기초적 서비스</li> </ul> </li> <li>○ 주간보호사업 : 건강 서비스, 사회적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 서비스 : ① 간호, ② 건강진단, ③ 식이요법, ④ 물리치료, ⑤ 목욕, ⑥ 작업치료, ⑦ 의료서비스, ⑧ 언어치료, ⑨ 투약에 대한 지문, ⑩ 치과서비스</li> <li>- 사회적 서비스 : ① 개별 관리(case management), ② 영양교육, ③ 교통편의 제공 서비스, ④ 전문적 상담, ⑤ 목회서비스, ⑥ 음악 감상, ⑦ 미용이발, ⑧ 식사 제공 서비스</li> </ul> </li> </ul>
금융	노령유족장애연금제도(OASDI : Old-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
여가	사회, 문화추진 보조

#### 다. 프랑스

- 프랑스는 소득, 보건의료, 여가·문화, 주거분야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지원을 하고 있음

표 I-5-3 프랑스의 고령친화산업 세부 유형

구분	유형
소득	연금제도, 사회부조(노령최저소득수당 지급)
보건의료	재가간병서비스, 재택입원
여가·문화	노인클럽(the third age clubs), 운영 교통편의 프로그램 지원, 여가문화 이용시 할인 및 무료 혜택 지원
주거관련	고령자 주택, 노인홈, 거주시설[노인수용주택(MAPA)과 의존노인수용주택(MAPAD)]

## 라. 호주

- 호주는 소득, 요양, 여가 분야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지원을 하고 있음

표 I-5-4 호주의 고령친화산업 세부 유형

구분	유형
소득	노령연금, 퇴직연금, 노인소득 관련 각종 수당·보상금
요양	시설보호, 지역사회보호, 간병인 정책
여가	Green Reserve, BITES(Basic IT enabling skills for older workers), 제3대학(University of the Third Age, U3A), 노인 인생 경험 강의 프로그램 (STYLE : Seniors Tell Youth Life Experiences Program)

- \* Green Reserve : 6개월 동안 1주일에 2일 관할 지역의 환경보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 \* BITES : 구직을 원하는 45세 이상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정보 및 기술 분야에서 국가가 요구하는 기술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
- \* 제3대학 : 50세 이상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소요비용을 정부가 보조
- \* 노인 인생 경험 강의 프로그램 : 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수업시간을 통하여 학습한 역사적 사건(예 : 베트남 전쟁과 대공황 등)에 직접 참여했던 노인들로부터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직접 들음으로써 학생의 이해를 돕고, 노인은 젊은 층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세대 간의 인식 차이를 좁힐 수 있는 계기를 제공

## 마. 종합의견

- 금융, 여가, 요양(보건의료 포함)분야는 4개국 모두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주거(일본, 프랑스)분야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 정부측 고령친화산업 분류 현황

- 정부에서는 고령친화산업진흥법(2006년) 제정 이전부터 고령사회에 대비한 산업을 발전 시키기 위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그에 따른 산업군을 분류한바 있음
- 2004년 고령친화산업분과별 실무추진위원회에서는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과제 개발이란 연구를 통해, 요양, 여가, 보험금융, 주택산업으로 구분함
- 2005년~2006년에는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1,2)에서 14대 산업(요양, 기기, 정보, 여가, 금융, 주택, 한방, 농업, 교통, 식품, 의약품, 장묘, 의류, 교육)으로 구분함
- 2005년 고령친화산업 중장기 실행전략 연구를 통해 8대 산업(요양, 기기, 정보, 여가, 금융, 주거, 한방, 농림)에 대한 중장기 방안 마련
- 고령친화산업 유형을 분류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여 전문가 의견을 중심으로 산업을 분류하였고, 그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음

표 I-5-5 고령친화산업의 유형(정부측)

구분	유형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과제 개발(2004)	요양, 여가, 보험금융, 주택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 1(2005)	요양, 기기, 정보, 여가, 금융, 주택, 한방, 농업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 2(2006)	교통, 식품, 의약품, 장묘, 의류, 교육
고령친화산업 중장기 실행전략 연구(2005)	요양, 기기, 정보, 여가, 금융, 주거, 한방, 농림

### 3) 학계 고령친화산업 분류 현황

- 각종 문헌조사를 통해 어떤 산업을 고령친화산업으로 포함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 삼성경제연구소(1992)는 고령친화산업을 ① 금융, ② 여가, ③ 의료·보건관리, ④ 주거관리, ⑤ 노인용품의 5개 분야로 구분
  - 김태현·이인수(1996)는 ① 서비스, ② 여가, ③ 보건관리, ④ 주거관리, ⑤ 노인용품 판매 등의 5개 분야로 구분
  - 문현상(1997)은 ① 노인주거, ② 재가서비스 ③ 노인의료 ④ 금융보험, ⑤ 복지기기, ⑥ 여가활동 등의 6개 분야로 구분
  - 서운(2000)은 고령친화산업의 유형을 ① 주거, ② 케어, ③ 보건·의료, ④ 복지용품(복지용품·생활용품의 제작 판매), ⑤ 여가(관광·취미·오락 등 여가 프로그램의 제공), ⑥ 금융, ⑦ 교육 및 삶의 보람 등 7개 분야
  - 최성재(2002)는 ① 건강보호, ② 건강보호관련 장비 및 기기, ③ 의약품 및 건강식품, ④ 운동 기구 및 체중조정, ⑤ 금융, ⑥ 주거, ⑦ 정보, ⑧ 여행 및 레저, ⑨ 식품 및 음료, ⑩ 자동차, ⑪ 의류 및 패션, ⑫ 화장품, ⑬ 교양 및 자기개발, ⑭ 배달 등 14개 분야
  - 황윤란(2005)은 ① 주거, ② 재가복지, ③ 의료·간병, ④ 여가활동, ⑤ 금융·보험, ⑥ 노인 복지 및 생활용품 등 6개 분야
  - 대한상공회의소(2006)는 미국과 일본사례 분석을 통해 ① 요양, ② 의료기기, ③ 정보, ④ 여가, ⑤ 금융, ⑥ 주택 등 6개 분야
  - 엄수원·임구원(2006)은 ① 주거, ② 보건·의료, ③ 금융·보험, ④ 여가, ⑤ 생활 등의 5개로 구분
  - 유문무(2006)는 사업에 따라 ① 주거, ② 보건의료, ③ 복지용구, ④ 금융, ⑤ 생활관련, ⑥ 여가활동의 6개 분야
  - 정윤모(2007)는 ① 주거(장기채류형 주택, 케어관련 주택, 단기 채류형 주택), ② 케어(주



택케어, 식사서비스, 케어상품 유통), ③ 건강(건강관리), ④ 스포츠와 레저(여행, 스포츠, 건강증진시설, 휴양시설), ⑤ 교육(취미, 오락, 종교시설, 교육), ⑥ 안전(긴급통신 서비스, 구제서비스), ⑦ 사는 보람(노령용 직업개발, 노령용 직업정보, 교체서비스, 사회봉사 활동) 등 7가지 유형을 분류

- 조경훈(2008)는 ① 주거·시설, ② 의료·요양, ③ 보험·금융, ④ 용구·용품기기, ⑤ 재가복지서비스, ⑥ 여가·정보·학습 등 6가지 유형을 분류
- 이러한 고령친화산업의 유형을 정리하면 <표 I-5-6>과 같다.

표 I-5-6 고령친화산업의 유형(학계)

	유형
삼성경제연구소(1992)	주거, 의료·보건, 금융, 여가, 노인용품
김태현·이인수(1996)	주거, 보건, 여가, 서비스, 노인용품
문현상(1997)	주거, 의료, 금융보험, 레저, 복지기기, 생활용품
서윤(2000)	주거, 보건·의료, 금융, 케어, 복지용품, 여가, 교육 및 삶
최성재(2002)	주거, 건강보호, 금융, 건강보호장비, 의약품 및 건강, 여행 및 레저, 운동기구 및 체중조정, 의료 및 패션, 정보, 식료품 및 음료, 자동차, 화장품, 배달
황윤란(2005)	주거, 의료·간병, 금융·보험, 재가복지, 여가활동, 생활용품
대한상공회의소(2006)	주택, 요양, 금융, 의료기기, 여가, 정보
엄수원·임구원(2006)	주거, 보건·의료, 금융·보험, 여가, 생활관련
유문무(2006)	주거, 보건의료, 금융, 복지용구, 여가, 생활관련
정윤모(2007)	주거, 케어, 건강, 스포츠와 레저, 교육 안전, 사는 보람
조경훈(2008)	주거·시설, 의료·요양, 보험·금융, 용구·용품기기, 재가복지서비스, 여가·정보·학습

○ 각종 문헌조사를 통한 고령친화산업 분류 기준을 보면, 기본적으로 정부보고서 및 제외국(일본, 미국 등)의 제도 등을 참고 및 인용(대한상공회의소, 유문무, 정윤모 등)하여 산업을 제시한 것으로 객관적인 기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4) 고령친화산업 분류 현황 분석

앞서 조사한 정부, 학계의 고령친화산업 분류 현황을 보면, 객관적인 기준없이 제외국의 사례, 전문가 의견 등을 통해 몇 개의 산업에 한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고령친화산업 범위 및 분류체계 설정을 위해서는 2006년 제정된 고령친화산업법에 근거하면서 해외 사례, 각종

보고서 및 문헌을 종합하여 분석하고, 그에 따른 분류체계 설정이 필요하다.

### 가. 고령친화산업 현황 분석

고령친화산업 범위 및 분류체계와 관련하여 고령친화산업진흥법, 해외 사례, 각종 보고서 및 문헌 조사를 통해 고령친화산업 분류 현황을 종합하면 크게 15개 산업군으로 나타났고, 그 중 요양, 기기, 여가, 금융, 주거산업을 포함하는 경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제외국 : 금융, 여가, 요양(보건의료 포함), 주거분야를 주로 지원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 복지기기분야도 지원하고 있음
- 고령친화산업진흥법 : 기기(용구·용품 또는 의료기기), 주거, 요양, 금융, 정보, 여가, 농업, 의약품, 화장품, 교통, 건강기능식품분야를 포함하고 있음
- 정부측 : 요양, 여가, 금융, 주거분야를 기본산업으로 하여, 14대 산업(요양, 기기, 정보, 여가, 금융, 주택, 한방, 농업, 교통, 식품, 의약품, 장묘, 의류, 교육)을 포함함
- 학계 : 요양, 기기, 정보, 여가, 주거분야를 포함하고 있음

표 I-5-7 고령친화산업 분류 현황에 대한 비교분석

(■ : 법, □ : 정부측 보고서, □ : 학계)

No	산업 구분	참고문헌								선택 비중 (%)	비고
		법	1	2	3	4	5	6	7		
1	요양	요양	요양	요양		요양	재가복지 간병	요양	재가복지 서비스 요양	85.7	요양은 재가서비스, 시설서비스로 구분됨
2	기기	기기·용구·용품		기기		기기	생활용품	의료기기	용구·용품기기	71.4	기기에는 의료, 생활, 주거, 여가분야가 넓게 포함
3	정보	정보		정보		정보		정보		42.9	
4	여가	여가	여가	여가		여가	여가	여가	여가	85.7	
5	금융	금융	보험금융	금융		금융	금융보험	금융	금융보험	85.7	
6	주거	주택	주택	주택		주거	주거	주택	주거	85.7	
7	한방			한방		한방				28.6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방관련 항목을 추출
8	농업	농업		농업		농림				28.6	
9	교통	교통			교통					14.3	
10	식품	식품			식품					14.3	
11	의약품	의약품			의약품					14.3	
12	장묘				장묘					14.3	
13	의류				의류					14.3	
14	교육				교육					14.3	
15	화장품	화장품									

- 1)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과제 개발, 고령친화산업분과별 실무추진위원회, 2004.12
- 2) 고령친화산업 활성화(1) 전략,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2005.2
- 3) 고령친화산업 활성화(2) 전략,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06.2
- 4) 고령친화산업 중장기 실행전략 연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5.10
- 5) 고령사회대비에 따른 실버산업 발전방안, 황윤란, 2005
- 6) 국내 실버산업의 성장성 전망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2006.7.28
- 7) 실버산업의 이해, 조정훈, 2008

## 나. 고령친화산업 분류체계 파악

-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분류체계 설정을 위해서는 각 산업군이 어떻게 세분화되어 있고, 산업간 연계성은 어떠한지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였고, 이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한방산업은 기기, 의약품, 화장품, 식품, 여가, 주거 등 각 산업과 연계되어, 전체 고령친화산업에서 보면 중복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정보산업은 정보통신기기는 기기산업과, 디지털컨텐츠는 여가산업과 연계되어 있음
  - 농업은 주로 주거산업 및 관광산업과 연계되어 있음
  - 기기산업은 의료, 생활, 주거, 여가 등 모든 기기.용품이 포함되어 있어 대단히 광범위함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고령친화산업 세부 범위별로 객관적인 자료(통계자료 등) 및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합리적으로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

표 I-5-8 고령친화산업의 세부 분류 현황 예시

No	구분	분류
1	요양	•재가서비스 •시설서비스
2	기기	•의료분야(재택원격/진단진료시스템, 신체기능보조대행시스템, 한방의료기기, 고정밀영상진단기, PDA형 다기능건강정보시스템) •생활분야(간호지원시스템, 실내외 이동시스템) •주거분야(침단주거시설) •여가분야(운동/오락용시스템 개발) •산업지원분야(산업화지원센터 구축)
3	정보	•정보통신 보조기기 •디지털컨텐츠 개발 •홈케어
4	여가	•스포츠(경기업, 정보업, 시설운영업) •문화(방송, 영화, 음악 및 공연, 공예, 문화오락센터) •관광레저(국내관광, 해외관광, 복권, 카지노, 경마, 놀이공원, <b>고령친화휴양단지</b> )
5	금융	•연금(개인연금, 퇴직연금, 역모기지제도) •보험(민영건강보험, 장기간병보험) •자산관리서비스(은행, 증권, 부동산, 부가서비스)
6	주거	•주택개조 •고령자 주택공급 •서비스부가 고령자용 주거시설 공급
7	한방	•의료(중풍 및 치매예방 치료제 개발, 노인병 전문 한방병원, <b>한방보건관광</b> ) •여가주거(한방고령친화타운, 고령친화약초농장) •기기용품( <b>항노화 건강기능식품개발</b> , 한방고령친화의료기기, 한방노인생활용품, <b>노인용 한방화장품</b> )
8	농업	•원예치료농업, 특수 동·식물 사육 •관광농업, 은퇴농장, <b>전원형 고령친화농업 테마타운</b> , 도시형 고령친화농업 테마타운 • <b>고령친화 귀농교육</b>
9	교통	•교통수단제조업 : <b>저장버스</b> 제조업, 초소형 차량제조업 •교통시설 건설업 : <b>고령자감응침단신호기</b> 제조업, 엘리베이터 제조업, 기능성포장재 제조업 •교통서비스업 : <b>형광표지판</b> 제조업, 양방향 통신카드 제조업
10	식품	•건강기능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인삼·홍삼제품, 특수영양식품
11	의약품	•의약품 전체 - 전략품목 : 신경계용약, 순환계용약, 대사성 의약품
12	장모	•장래관련 용품 : 매장용품, <b>화장 및 납골용품</b> •화장 및 납골시설서비스 : 화장장·납골당 운영, 납골서비스, 산골서비스 •웰엔딩서비스 : <b>웰엔딩 준비 및 체험교실</b> ,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시신 메이크업 서비스 •개장 및 이장서비스
13	의류	•포맬웨어, 캐주얼웨어, <b>레저스포츠웨어(건강개선용)</b> , <b>이너웨어(체형보정용)</b> , 유니폼, <b>스마트웨어(건강보조)</b>
14	교육	•직장연수, 학원수강, 교양강좌, 직업훈련( <b>일자리 교육 및 훈련</b> ), 기타

\* 화장품산업은 범에 명시되어 있으나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음

자료 :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1,2), 2005, 2006

## 2.2 고령친화산업 분류체계 설정

### 1) 고령친화산업 설정

#### 가. 설정기준

- 고령친화산업진흥법 및 고령친화산업 조사·분석 결과를 토대로한 15개 산업 중에서 분류 체계를 파악하여 산업을 조정함
  - 조사결과, 고령친화산업 전체로 보아 중복되는 산업의 조정이 불가피함
    - 한방산업은 각 산업분야(의약품, 기기, 화장품 등)로 흡수
    - 정보산업에서 정보기기는 기기산업으로, 콘텐츠는 여가산업으로 흡수
    - 기기산업은 광범위하여 구분이 명확한 의료기기산업과 용품산업으로 구분이 필요
      - ※ 용품산업에 생활용품(가사용품), 주거용품(주거설비용품), 여가용품, 정보통신기기, 신발, 의류를 포함하고 있어, 의류산업이 여기에 귀속됨
    - 농업은 주로 주거산업 및 관광산업과 연계되어 있어 농산물 재배, 축산 등의 실제 농업과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음
  - 요양, 기기, 여가, 금융, 주거산업은 고령친화산업 유형에서 거의 빠지지 않는 분야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따라서, 13개 산업군(요양, 의료기기, 용품, 여가, 금융, 주거, 농업, 교통, 식품, 의약품, 장묘, 교육, 화장품)에서 재검토가 필요함
- 조정된 13개 산업군에서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주요분야 여부(요양, 기기, 여가, 금융, 주거), 산업통계 여부(산업 지원을 위한 데이터 수집 가능 여부) 및 최근의 제품·서비스 수요 및 정책 수요 등을 고려한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고령친화산업을 설정하고자 함

#### 나. 고령친화산업 범위 설정

- 고령친화산업 설정기준에 따라, 9개 산업분야(요양, 의료기기, 용품, 여가, 금융, 주거, 식품, 의약품, 화장품)를 설정함. 한편, 해외 사례 및 전문가 의견 등을 통하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를 감안하여 요양산업에서 노인의료서비스를 포함하여 다루기로 함. 농업, 교통, 장묘, 교육산업은 크게 고령친화산업 범위에는 포함되나 설정기준을 통해 이번 연구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음. 향후 이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고, 산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향노화, IT산업 등 전 산업에 걸쳐 특성화 할 수 있는 산업화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표 I-5-9 고령친화산업 범위 설정

No	구분	법	주요분야	산업통계	전문가 의견	수용 여부	비고
1	요양	○	○	○	○	○	고령자의 만성질환증가 등으로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의료수요 증대가 예상됨으로, 요양산업에서 함께 다루는 것이 필요
2	의료기기	○	○	○	○	○	
3	용품	○	○	△	○	○	
4	여가	○	○	○	○	○	
5	금융	○	○	×	○	○	
6	주거	○	○	△	○	○	
7	농업	○	×	△	×	×	2010년 기준 귀농인구(전연령)는 총인구수의 0.02%이고, 그 중 60세 이상은 18.9%(총인구수의 0.0038%)로 미미하고, 고령자의 경우 산업적 측면보다는 소일거리, 취미생활 측면으로 생각하고 있음
8	교통	○	×	×	○	×	교통산업 자체도 광범위하여 산업화되지 못한 상태임
9	식품	○	×	○	○	○	
10	의약품	○	×	○	○	○	
11	장묘	×	×	△	×	×	고령자가 평소 주로 사용하는 산업이 아니라 사망후 한번 거쳐가는 일회성 산업으로 과거 자료에서도 거의 포함하지 않았고 법에서도 포함되지 않음
12	교육	×	×	×	○	×	일자리 교육 중심으로, 산업추계가 어렵고, 향후 성장은 예상되지만 산업적 측면에서 후순위로 간주됨
13	화장품	○	×	○	○	○	

\* 법 : 고령친화산업진흥법에 포함되면 ○, 포함되지 않으면 ×

\* 주요분야 : 해외사례, 정부, 학계, 등 고령친화산업 조사분석에서 거의 빠지지 않는 산업분야인 요양, 기기(용품, 의료기기), 여가, 금융, 주거산업은 ○, 그 외 산업은 ×

\* 산업통계 : 시장규모 추계를 위한 통계수집자료 대부분이 있으면 ○, 일부 있으면 △, 거의 없으면 ×.

\* 전문가 의견 : 최근의 제품·서비스 수요 및 정책 수요 등을 감안하여 고령친화산업에 포함이 필요한 산업은 ○, 그렇지 않은 산업은 ×

\* 수용여부 : 4개 설정기준에서 3개 이상 ○을 획득한 것을 수용함

\* 비고 : 각 산업별 통계현황 및 전문가 의견 등을 기술

- 2005년, 2006년 고령친화산업 활성화전략(1,2)와 이번 연구에서 도출된 산업을 비교하면 14대 산업에서 10대 산업으로 조정되면서, 10개 산업은 예전에 중복되는 범위 등을 재조정하여 9개 산업으로 체계화하고, 4대 산업은 향후 논의될 산업으로 이번 연구에서는 기타산업으로 세부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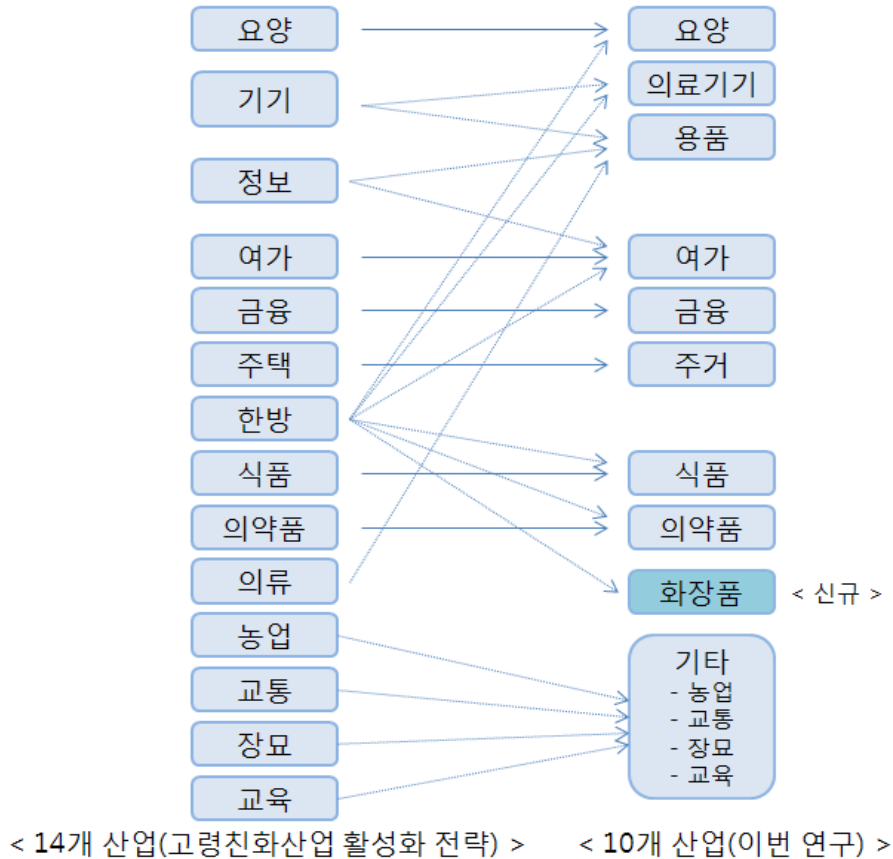


그림 I-5-1 기존연구와 본연구 산업범위 비교

## 2) 고령친화산업 분류체계 설정

- 9개 고령친화산업에 대하여 고령소비자 수요조사 결과, 시장 현황 분석,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하여 분류체계를 설정함. 이에 대한 상세 내용은 제2부의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산업 분석 및 활성화 과제를 참조하기 바람
- 분류체계에서 대분류의 개념은 산업을 크게 어떻게 분류하는지, 중분류는 대분류 속에 어떻게 세부적으로 분류되는지 개념임



표 I-5-10 고령친화산업 분류체계 설정

산업 부문	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고령친화 요양산업	시설요양서비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요양서비스	방문요양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복지용구 제공 및 지원서비스
	예방지원서비스	건강검진서비스, 질병상담 및 관리서비스, 영양개선서비스, 운동기능향상서비스
고령친화 의약품산업	신경계용약	치매용제, 알츠하이머용제
	대사성의약품	비타민제, 자양강장변질제, 당뇨병치료제
	순환계용약	고혈압용제, 동맥경화용제
	해열진통소염제	해열진통소염제
	안과용제	안과용제
	전립선치료제	전립선치료제
	종양치료제	종양치료제
고령친화 식품산업	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두부류 또는 묵류, 전통·발효식품(장류, 김치류, 젓갈류, 절임식품 포함)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
고령친화 화장품산업	기초 제품류	노화방지 화장품(주름개선 및 완화), 피부미백 및 검버섯 제거 화장품, 자외선 차단 및 방지 화장품
	색조제품류	피부색 보정 화장품
	바디제품류	피부 건조 및 가려움 개선 화장품, 체취 방지용 화장품(데오도란트, 향수류)
	헤어케어류	탈모 방지용 화장품, 염모용 화장품
고령친화 의료기기산업	치과 분야	치과용금속, 치관용재료, 의치상재료, 치관용근관 충전 및 치료재, 치과용접착 및 충전재료, 치과용인상재료, 치과용왁스, 치과용모형재료 및 매몰재, 치과용연마재료, 보철재료, 치과용매식재료, 예방치과재료, 보철물분리재료
	재활 분야	정형용품, 부목, 정형 및 기능회복용기구, 환자운반차, 시력보정용안경, 시력보정용렌즈, 보청기, 인체조직 및 기능대치품
	진단 분야	의료용엑스선장치, 비전리진단장치, 방사선진료장치, 체온측정용기구, 혈액검사용기기, 혈압검사 또는 맥파검사용기기, 검안용기기, 청력검사용기기, 지각 및 신체진단용기구
	치료 분야	의료용침대, 호흡보조기, 내장기능대용기, 이학진료용기구, 개인용전기 자극기, 침 또는 구용기구, 의료용자기발생기
고령친화 용품산업	개인건강·의료용품	건강측정용품, 호흡기 치료용품, 투약용품, 욕창예방용품, 온열·한냉용품, 안마기, 자극기, 한방기기, 신발·의류, 신체보호용품
	기능저하예방용품	유산소운동용품, 근력운동용품, 기능훈련용품, 근력 및 운동기능 측정용품
	이동기기	한 손 조작 보행용품, 보행보조기, 복지차량,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변환용구, 리프트, 보행보조기 부속품, 휠체어 부속품, 자동차 개조용 부품

산업 부문	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목욕용품	목욕보조용품, 기타 목욕 용품
	배변용품	배변처리기, 기저위 용품, 화장실 용품
	침구용품	침대, 매트리스·모포 및 배개, 침대용 탁자, 침대부품
	가사용품	취사용품, 세척용품, 식사용품, 청소용품, 의류제작 및 수선용품, 탁자
	주거설비용품	조명기구, 의자용가구, 수납가구, 가구높이조절장치, 안전손잡이, 문·창·커튼 개폐장치, 주택용 건축부품, 수직승강장치, 건축물용 안전장치
	정보통신기기	시각용품, 청각용품, 발성용품, 그리기·글쓰기 용품, 전화기·통화용 기기, 신호표시기·경보기
	여가용품	완구, 게임, 스포츠용품, 악기, 사진용품, 수공예용품, 애완용품
고령친화 금융산업	장수리스크	개인연금(즉시연금보험 포함), 기업연금(퇴직연금), 주택연금(역모기지) 제도
	건강리스크	건강보험(암보험, 상해보험 포함), 장기간병보험
	재무리스크	자산관리서비스(PB, WA, FP)
고령친화 주거산업	주택 개보수	주택 개보수
	고령자 주택공급	고령자 주택공급
고령친화 여가산업	스포츠	경기업, 정보업, 시설운영업
	문화	고령친화방송, 영화, 음악 및 공연, 공예, 문화오락센터, 기능성게임, 정보 제공 웹사이트
	관광/레저	국내관광, 해외관광, 복권, 카지노, 경마, 놀이공원, 고령친화 휴양단지



## 제6장 고령친화산업 시장규모 및 활성화 과제

### 1. 고령친화산업의 시장 규모

본 보고서의 각 산업별로 시장규모 추정 및 예측방법을 명시하였다. 고령친화산업으로 다양한 산업분야가 포함되어 있어 분석 방법이 다양하며, 분석 방법에 각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였다.

- 고령친화산업 범위는 요양,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 여가, 금융, 주거, 용품 등<sup>2)</sup> 주요 산업 9개와 기타산업이 있으며, 주요산업 9개 시장규모를 모두 합한 값을 고령친화산업 시장규모<sup>3)</sup>로 하였다.
- 2010년 산업별 시장규모를 모두 합한 고령친화산업 시장규모는 33조 2,241억 원이며, 2010년-2020년 연평균성장률(CAGR)은 14.2%로 나타났다.

2) 농업, 교통, 장묘, 교육산업은 크게 고령친화산업 범위에는 포함되나 설정 기준을 통해 이번 연구에서는 기타산업으로 분류되어 기본적인 산업 현황을 간단하게 정리하였다.

3) 각 산업별 시장규모는 매출액, 생산금액, 시장규모(생산+수입-수출) 등 다양한 값을 기준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산업별 시장규모의 크기 비교 및 합계(고령친화산업 시장규모) 설명은 한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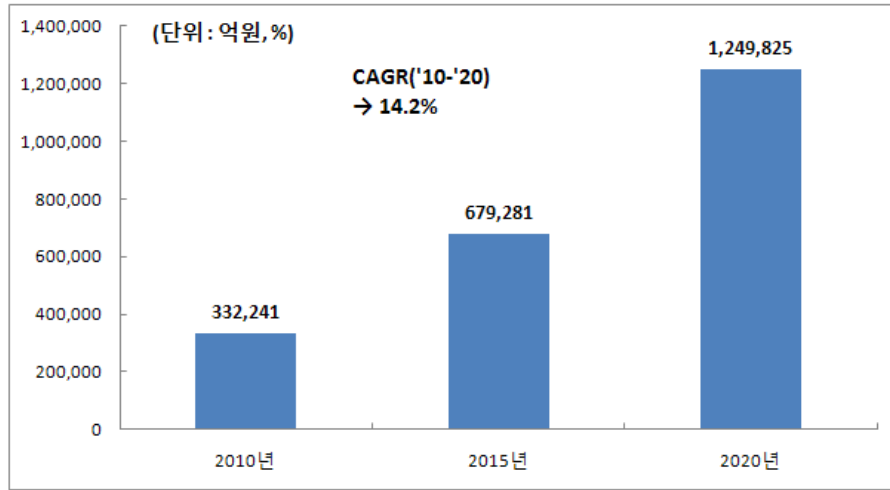


그림 I-6-1 고령친화산업 시장규모 전망

- 2010년 기준 고령친화 산업별 비중은 아래 그림과 같다. 전체 고령친화산업 시장규모 중 금융산업(31.8%) 및 여가산업(22.9%)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20년 고령친화산업 중 가장 큰 비중 변화를 보이는 산업은 금융산업으로 전체 시장의 48.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요양산업(7.7%→10.0%) 및 화장품산업(1.5%→2.1%)의 비중이 2010년 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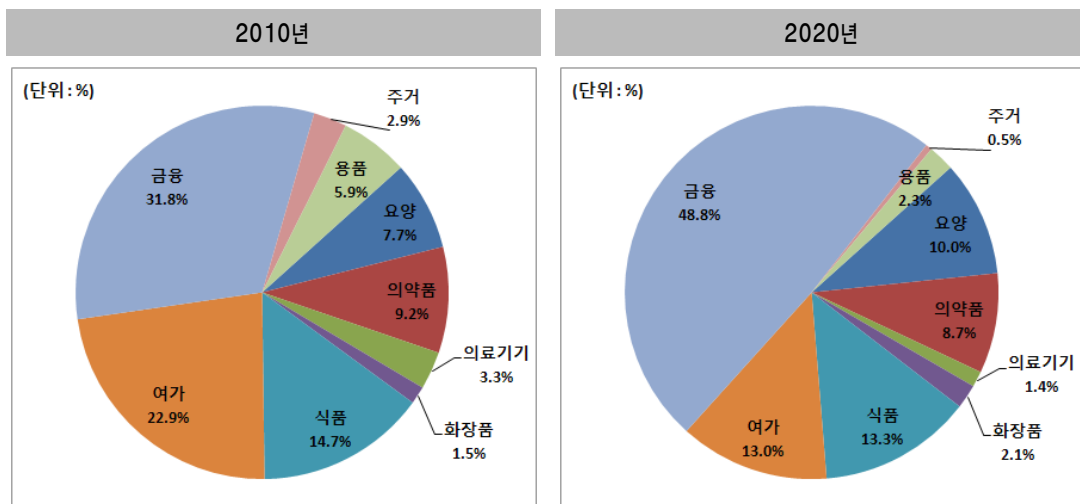


그림 I-6-2 고령친화산업별 비중 변화

표 I-6-1 고령친화산업별 시장규모 및 전망

(단위 : 억 원, %)

	2010년		2015년		2020년		CAGR (10-20)
	시장규모	비중	시장규모	비중	시장규모	비중	
고령친화 요양산업	25,675	7.7	62,234	9.2	125,188	10.0	17.2
고령친화 의약품산업	30,486	9.2	57,464	8.5	108,315	8.7	13.5
고령친화 의료기기산업	10,903	3.3	13,516	2.0	16,975	1.4	4.5
고령친화 화장품산업	5,109	1.5	11,541	1.7	26,070	2.1	17.7
고령친화 식품산업	48,990	14.7	90,128	13.3	165,810	13.3	13.0
고령친화 여가산업	76,088	22.9	110,268	16.2	161,917	13.0	7.8
고령친화 금융산업	105,663	31.8	301,711	44.4	610,404	48.8	19.2
고령친화 주거산업	9,616	2.9	9,073	1.3	6,824	0.5	-3.4
고령친화 용품산업	19,711	5.9	23,347	3.4	28,322	2.3	3.7
전체	332,241	100.0	679,281	100.0	1,249,825	100.0	14.2

- 고령친화 요양산업은 장기요양보험을 기준으로 재가요양서비스 및 시설요양서비스로 구분된다. 분석결과 2010년 고령친화 요양산업의 시장규모는 2조 5,675억 원으로 모태산업 시장규모 중 약 9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향후 2020년 고령친화 요양산업은 모태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5.2%로 높으며, 2010년-2020년 연평균성장률(CAGR)이 17.2%로 모태산업 연평균성장률(CAGR) 17.0%보다 약간 높게 전망되었다.
- 고령친화 요양산업으로 노인의료서비스 부분이 고려되었지만, 시장규모 분석에서 다루어 지지는 않았다. 향후 건강보험 통계자료(건강보험공단)를 이용하여 규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연구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고령친화산업의 구분에 있어서 요양서비스와 의료서비스를 분리하여 각각의 산업으로 분석하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다.

표 I-6-2 고령친화 요양산업 시장규모 추정 및 전망

(단위 : 억 원, %)

구분	2010년	2015년	2020년	CAGR(10-20)
고령친화 요양산업	25,675	62,234	125,188	17.2
모태산업 대비 비중	93.5	94.4	95.2	-
모태산업	27,456	65,956	131,467	17.0

- 고령친화 의약품산업은 전체 의약품 약효군 중 고령자가 주로 이용하는 약효군을 선정하였으며, 건강보험통계를 이용하여 약효군별 가중치를 분석 한 후 이를 반영하여 시장규모를 추계하였다.
- 2010년 고령친화 의약품산업 시장규모<sup>4)</sup>는 3조 486억 원으로 모태산업 중 약 2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2020년 연평균성장률(CAGR)의 경우 고령친화 의약품산업(13.5%)이 모태산업(7.4%)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며, 2020년 모태산업 대비 고령친화 의약품산업의 비중은 약 37.3%로 전망된다.
- 고령친화 의약품산업 시장규모 분석은 타 산업보다 자료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많으며, 향후 시장규모 예측을 위한 기존 자료의 시계열 유지 또한 타산업에 비해 유리한 부분이 있다.

표 I-6-3 고령친화 의약품산업 시장규모 추정 및 전망

(단위 : 억 원, %)

구분	2010년	2015년	2020년	CAGR(10-20)
고령친화 의약품산업	30,486	57,464	108,315	13.5
모태산업 대비 비중	21.5	28.4	37.3	-
모태산업	141,559	202,631	290,051	7.4

- 고령친화 의료기기산업은 전체 의료기기 품목 중 65세 이상 고령자의 사용 비중을 고려하여 구분하였으며, 각 품목별 시장규모(생산+수입+수출)에 사용 비율을 고려하여 시장규모를 추계하였다.
- 2010년 고령친화 의료기기산업 시장규모는 1조 903억 원으로 모태산업 중 27.9%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태 의료기기산업의 경우 시장규모(생산+수입+수출) 연평균성장률이 다소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으며, 2010년-2020년 고령친화 의료기기산업 연평균성장률(CAGR)은 4.5%로 나타났다.
- 고령친화 의료기기산업 시장규모는 2008년-2010년 생산실적 자료를 이용하였지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사용 비율은 2010년 사용 비율을 조사한 후, 2008년-2009년 시장규모 분석 시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따라서 추후 시장규모 분석 시 당해연도 고령자의 의료기기 사용 비율에 대한 조사가 선행된 후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4) 고령친화 의약품산업 시장규모는 2009년을 기준연도로 분석되었으며, 전망을 위하여 2007년-2008년 고령친화 의약품산업 시장규모를 기준연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표 I-6-4 고령친화 의류기기산업 시장규모 추정 및 전망

(단위 : 억 원, %)

구분	2010년	2015년	2020년	CAGR(10-20)
고령친화 의류기기산업	10,903	13,516	16,975	4.5
모태산업 대비 비중	27.9	28.6	29.7	-
모태산업	39,027	47,255	57,217	3.9

- 화장품 유형 중 어린이용 제품을 제외한 화장품 유형을 고령친화 화장품으로 각 유형별 65세 이상 사용 비율을 고려하여 시장규모를 추계)하였다.
- 2010년 고령친화 화장품산업의 시장규모는 5,109억 원으로 모태산업 대비 8.5%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에는 고령친화 화장품산업이 모태산업 대비 약 11.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친화 화장품산업의 2010년-2020년 연평균성장률은 17.7%로 모태산업 성장률(13.9%)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 고령친화 화장품산업 시장규모는 2007년-2010년 생산실적 자료를 이용하였지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사용 비율은 2010년 사용 비율을 조사한 후 2007년-2009년 시장규모 분석 시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또한 65세 이상 응답자 수가 작아서 가중치 계산에 60세 이상 화장품 유형별 사용 비율을 적용하였으며, 추후 시장규모 분석 시 당해연도 65세 이상 고령자의 화장품 사용 비율에 대한 조사가 선행된 후 시장규모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표 I-6-5 고령친화 화장품산업 시장규모 추정 및 전망

(단위 : 억 원, %)

구분	2010년	2015년	2020년	CAGR(10-20)
고령친화 화장품산업	5,109	11,541	26,070	17.7
모태산업 대비 비중	8.5	10.0	11.8	-
모태산업	60,146	115,298	221,025	13.9

- 고령친화 식품산업 시장규모 추정 및 전망의 경우 전체 식품 유형 중 건강기능식품 및 특수용도식품은 전체를 고령친화 식품으로 분류하였으며, 이를 제외한 일반 식품에 대해서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을 고려하여 시장규모를 추계하였다.
- 2010년 고령친화 식품산업 시장규모는 4조 8,990억 원으로 분석되었으며, 모태산업 대비 고령친화 식품산업비중은 13.7%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2020년 연평균

5) 본 연구에서 새로운 산업으로 추가된 고령친화 화장품산업의 경우 시장규모를 추정하는 방법에 대한 의견이 다양했으며, 또한 화장품 산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시장규모 추정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성장률은 고령친화 식품산업이 13.0%이며, 모태산업은 8.9%로 전망된다.

- 고령친화 식품산업은 고령친화 식품으로 선정된 품목에 대한 의견이 다소 일치하지 않았으며, 전문가의 의견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전 연령에 걸쳐 소비되는 산업으로 특정 품목을 선정하는 것이 다소 어려우며 각 식품 품목별 고령자 사용 정도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따라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산업이다.

표 I-6-6 고령친화 식품산업 시장규모 추정 및 전망

(단위 : 억 원, %)

구분	2010년	2015년	2020년	CAGR(10-20)
고령친화 식품산업	48,990	90,128	165,810	13.0
모태산업 대비 비중	13.7	16.4	19.7	-
모태산업	358,241	549,433	842,663	8.9

- 고령친화 여가산업은 크게 문화(콘텐츠)산업, 스포츠산업, 여행관광산업으로 구분하여, 65세 이상 인구비율 및 각 산업의 세부 영역 매출액, 65세 이상 소비비율, 가중치 등을 고려하여 추계하였다.
- 2010년 고령친화 여가산업<sup>6)</sup>은 모태산업(124조 3,768억 원) 대비 6.1% 비중으로 나타났으며, 시장규모는 7조 6,088억 원으로 나타났다. 2010년-2020년 연평균성장률(CAGR)은 고령친화 여가산업(7.8%)이 모태산업(4.1%) 보다 다소 높게 전망된다.
- 고령친화 여가산업은 광범위한 영역으로 구성되며, 자료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많지만, 소규모 조사 결과이거나 시계열 유지가 되지 않는 자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양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분석 방법 또한 세부 영역에 따라 상이하게 분석되었다. 본 보고서에 분석된 방법은 기존 자료를 근거로 가중치를 고정한 상태에서 분석되었으며, 오차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각 영역별 연령별 사용 및 이용 정도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표 I-6-7 고령친화 여가산업 시장규모 추정 및 전망

(단위 : 억 원, %)

구분	2010년	2015년	2020년	CAGR(10-20)
고령친화 여가산업	76,088	110,268	161,917	7.8
모태산업 대비 비중	6.1	7.2	8.7	-
모태산업	1,243,768	1,525,698	1,858,075	4.1

6) 고령친화 여가산업 시장규모는 2009년을 기준연도로 분석되었으며, 2010년 시장규모는 예측치이다.



- 고령친화 금융산업은 퇴직연금, 개인연금, 민영의료보험, 주택연금 등으로 구분되며, 각 부분의 시장규모에 65세 이상 가입률을 적용하여 시장규모를 추계하였다.
- 2010년 고령친화 금융산업 시장규모는 10조 5,663억 원으로 모태산업(218조 3,113억 원) 중 4.8%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에는 61조 404억 원으로 모태산업 중 7.1%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2020년 연평균성장률(CAGR)은 19.2%로 고령친화산업들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 고령친화 금융산업의 경우 자료원으로 사용된 데이터가 시계열이 유지되고 있었으며, 정확한 자료가 많은 반면, 65세 이상 고령자와 관련된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추후 금융산업과 관련하여 고령자 가중치를 조사하여 시장규모 분석에 반영해야 한다.

표 I-6-8 고령친화 금융산업 시장규모 추정 및 전망

(단위 : 억 원, %)

구분	2010년	2015년	2020년	CAGR(10-20)
고령친화 금융산업	105,663	301,711	610,404	19.2
모태산업 대비 비중	4.8	6.4	7.1	-
모태산업	2,183,113	4,741,535	8,627,149	14.7

- 고령친화 주거산업 시장규모는 크게 신규주택시장과 주택리모델링시장으로 구분하여 시장규모를 추계하였으며, 신규주택시장은 매년 신축되는 주택시장 규모를 추정하고, 고령자 가구가 구입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시장규모를 분석하였다. 또한 주택리모델링시장의 경우도 전체 주택개조시장을 추정하고, 고령자가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을 고령친화 개조시장으로 파악하였다.
- 고령친화 신규주택시장이 개조시장보다 상당히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2010년 고령친화 주거산업의 시장규모는 9,616억 원으로 전체 주택산업 중 1%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산업과 달리 고령친화 주거산업<sup>7)</sup>의 2010년-2020년 연평균성장률(CAGR)은 -3.4%로 나타났다.
- 고령친화 주거산업은 기준연도의 시장규모 분석의 경우 자료원으로 사용되는 데이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지만, 향후 시장규모 예측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계점이 있다. 신규주택산업 전망의 경우 향후 5년간 준공될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계획된 정도(2015년까지)를 고려하였지만, 2016년-2020년의 경우 2011년-2015년 자료의 연간 평균값을 이용

7) 다른 산업과 달리 주거산업은 구입비용 및 리모델링 비용이 크며, 정부의 정책변화에 의해 크게 변동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주택리모델링의 경우 '고령자 주거안정법안' 등이 18대 국회 또는 19대 국회에서 통과되면 시장 확대가 예상된다. 하지만, 본 연구의 시장규모 분석에서는 기존의 패턴이나 제도 등이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보수적으로 추정하였다.

하였다. 따라서 향후 개발계획에 따라 추정값이 변할 수 있으며, 이를 반영한 전망이 이루어져야 한다.

표 I-6-9 고령친화 주거산업 시장규모 추정 및 전망

(단위 : 억 원, %)

구분	2010년	2015년	2020년	CAGR(10-20)
고령친화 주거산업	9,616	9,073	6,824	-3.4
모태산업 대비 비중	1.0	1.0	1.0	-
모태산업	949,149	886,363	654,090	-3.7

- 고령친화용품산업 시장규모는 시장규모 추정방법이 타 산업과는 다른 방법으로 분석되었다. 타 산업의 경우 모태산업을 기준으로 고령친화 산업 시장규모를 추정하였지만, 고령친화용품산업은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으로 고령친화용품산업 시장규모를 추계한 것으로 모태산업을 고려하지 않았다. 즉, 추계한 전체 시장규모가 고령친화 관련 시장규모로 분석된 것이다.
- 2010년 고령친화용품산업의 시장규모는 1조 9,711억 원으로 향후 2020년에는 2조 8,322억 원으로 예측된다. 또한 2010년-2020년 연평균성장률(CAGR)은 3.7%로 예측된다.
- 고령친화용품산업의 경우 모태산업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65세 이상을 고려한 고령친화산업으로 간주하고 시장규모를 파악하였다. 추정방법 또한 타 산업과는 구분되어 구간추정으로 분석되었으며, 중간값을 이용하였다. 의료기기산업과 겹치는 부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I-6-10 고령친화 용품산업 시장규모 추정 및 전망

(단위 : 억 원, %)

구분	2010년	2015년	2020년	CAGR(10-20)
고령친화 용품산업	19,711	23,347	28,322	3.7

- 고령친화산업은 다양한 영역으로 구성되는 산업으로, 각 산업별 시장규모분석 방법이 다름을 인정하고, 산업에 맞는 시장규모 파악이 이루어져야한다.
- 시계열유지를 위하여 각 산업별 시장규모 분석 시 필요한 고령자의 사용 및 이용 정도를 조사를 통하여 분석 할 필요가 있다. 비용 및 신뢰성 등을 고려할 때 모든 산업 대상 조사보다는 산업별 단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최소한의 자료도 없는 산업에 대한 우선적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각 고령친화산업 전략품목 시장규모 분석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보고서의

시장규모 분석 방법은 모태산업 중 고령친화 산업 시장규모를 추정하였고, 고령친화산업 별 시장규모에서 전략품목에 대한 시장규모가 추정되었다. 따라서 전문가 대상 조사를 통하여 각 산업별 전략품목들 간 비중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 각 고령친화 산업별 향후 시장규모 전망(예측)에 있어서 본 보고서의 경우 기본적으로 산업별 연평균성장률(CAGR)을 이용하여 전망(예측)하였다. 향후 경제성장률, 노인인구 비율, 고령자의 사용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망할 필요가 있다.

## 2. 고령친화산업의 전략품목 및 시장규모

### 2.1 전략품목 선정기준

고령친화산업 전략품목 선정기준은 국제경쟁력, 시장매력도, 공공성 등을 적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산업별 특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에서는 주로 전문가의견을 토대로 부문별 전략품목을 설정하였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전국 4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소비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산업별 각종 통계자료 조사·분석을 통한 현황분석 등 구체적인 자료를 근거로 하여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하여 전략 품목을 도출하였다.

부문별 전략품목 선정 배경 및 기준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산업분석 및 활성화 과제를 참조하기 바란다.

### 2.2 고령친화산업별 전략품목

이상의 전략품목 선정기준을 토대로 9대 산업에 걸쳐 35개 전략품목을 선정하였다.

산업분야별 전략품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고령친화산업 요양산업은 방문요양 서비스, 건강검진서비스, 질병상담 및 관리서비스 등 3개 품목을, 고령친화 의약품산업은 치매용제, 알츠하이머용제, 당뇨병치료제, 고혈압용제, 해열진통소염제, 종양치료제 등 6개 품목을, 고령친화 식품산업은 특수의료용도식품, 두부류 또는 목류, 전통·발효식품(장류, 김치류, 젓갈류, 절임식품 포함), 건강기능식품 등 4개 품목을, 고령친화 화장품산업은 노화방지(피부 주름 개선 및 완화) 화장품, 피부 건조 및 가려움 개선 화장품, 체취 방지용 화장품 등 3개 품목을, 고령친화 의료기기산업은 치과용 임플란트, 치과용 CAD/CAM 밀링장치 및 치과용도재(지르코니아), 인공수정체, 보청기, 치과용 전산화단층촬영엑스선장치, 의료용조

합자극기, 관절치료기 등 7개 품목을, 고령친화 용품산업은 개인건강·의료용품, 기능저하예 방용품, 여가용품 등 3개 품목을, 고령친화 금융산업은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2개 품목을, 고령친화 주거산업은 주택 개보수 등 1개 품목을, 고령친화 여가산업은 스포츠 시설운영업, 고령친화방송, 문화오락센터, 기능성게임, 정보제공웹사이트, 고령친화 휴양단지 등 6개 품목을 선정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2부의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산업분석 및 활성화 과제를 참조하기 바란다.

표 I-6-11 고령친화산업 35개 전략품목

산업 부문	전략품목
고령친화 요양산업(3)	방문요양서비스, 건강검진서비스, 질병상담 및 관리서비스
고령친화 의약품산업(6)	치매용제, 알츠하이머용제, 당뇨병치료제, 고혈압용제, 해열진통소염제 중양치료제
고령친화 식품산업(4)	특수의료용도식품, 두부류 또는 목류, 전통·발효식품(장류, 김치류, 젓갈류, 절임식품 포함), 건강기능식품
고령친화 화장품산업(3)	노화방지(피부 주름 개선 및 완화) 화장품, 피부 건조 및 가려움 개선 화장품, 체취 방지용 화장품
고령친화 의료기기산업(7)	치과용 임플란트, 치과용 CAD/CAM밀링장치 및 치과용도재(지르코니아) 인공수정체, 보청기, 치과용 전산화단층촬영엑스선장치, 의료용조합자극기, 관절치료기
고령친화 용품산업(3)	개인건강·의료용품, 기능저하예방용품, 여가용품
고령친화 금융산업(2)	개인연금, 퇴직연금
고령친화 주거산업(1)	주택개보수
고령친화 여가산업(6)	스포츠 시설운영업, 고령친화방송, 문화오락센터, 기능성게임, 정보제공웹사이트, 고령친화 휴양단지

### 2.3 고령친화산업 전략품목의 시장규모

- 산업분야별 전략품목 시장규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고령친화 요양산업 전략품목은 재가서비스 중 방문요양서비스와 예방지원서비스 중 건강검진서비스, 질병상담 및 관리서비스가 선정되었다. 그 중 방문요양서비스는 규모 파악이 가능하지만, 예방지원서비스는 규모를 파악할 수 없다. 분석결과 2010년 방문요양서비스 시장규모는 1조 1,992억 원으로 나타났다.
- 고령친화 의약품산업 전략품목으로 선정된 약효군은 고혈압용제, 당뇨병용제, 중양용약,

- 해열/진통/소염제, 기타의 중추신경용약(알츠하이머용 및 치매용제) 등이다. 고령친화 의약품산업 전략품목 시장규모는 2009년 기준 1조 1,072억 원이며, 그 중 고혈압용제(4,423억 원) 및 해열/진통/소염제(4,072억 원)의 시장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고령친화 의료기기산업 전략품목으로 치과용임플란트, CAD/CAM장비 및 치과용도재, 인공수정체, 보청기, 치과용 CT, 의료용조합기, 관절치료기 등이 선정되었다. 2010년 기준 전략품목 시장규모는 1조 137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치과용 CT(7,436억 원) 및 임플란트(1,535억 원)의 시장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고령친화 화장품산업 전략품목은 노화방지(피부 주름 개선 및 완화) 화장품, 피부 건조 및 가려움 개선 화장품, 체취방지용 화장품 등으로 2010년 기준 고령친화 화장품산업 전략품목 시장규모<sup>8)</sup>는 1,229억 원으로 나타났다.
  - 고령친화 식품산업 전략품목은 특수의료용도식품, 두부류 또는 묵류, 전통발효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2010년 기준 고령친화 식품산업 전략품목 시장규모는 1조 4,075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건강기능식품 및 전통발효식품의 시장규모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 고령친화 여가산업 전략품목으로 스포츠 시설 운영업, 고령친화방송, 문화오락센터, 기능성게임, 정보제공웹사이트, 고령친화 휴양단지 등으로 2009년 기준 고령친화 여가산업 전략품목 시장규모는 2조 728억 원으로 추계되었으며, 그 중 고령친화방송 및 고령친화 휴양단지 시장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고령친화 용품산업 전략품목은 개인건강·의료용품, 기능저하예방용품, 여가용품 등으로 2009년 기준 고령친화 용품산업 전략품목 시장규모는 1조 1,311억 원으로 추계되었다.
  - 고령친화 금융산업 전략품목은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으로 2010년 기준 전략품목 시장규모는 6조 5,232억 원으로 추계되었으며, 그 중 개인연금이 4조 8,978억 원으로 높게 나타났다.
  - 고령친화 주택산업 전략품목은 주택리모델링이며, 2010년 기준 전략품목 시장규모는 175억 원으로 추계되었다.

8) 전략품목으로 선정된 노화방지화장품은 생산실적 기능성화장품 시장규모로 대체하였다. 또한 체취방지용 화장품은 2010년 생산실적에 추가된 유형으로, 그 이전 자료에는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

표 I-6-12 고령친화산업별 전략품목 시장규모

(단위 : 억 원)

산업 및 전략품목		2010년	
요양산업	방문요양서비스	11,993	
의약품산업	고혈압용제	강심제	60*
		이뇨제	90*
		혈압강하제	3,514*
		혈관확장제	758*
		소계	4,423*
	당뇨병용제	1,089*	
	종양용약	627*	
	해열, 진통, 소염제	4,072*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860*	
	합계	11,072*	
의료기기산업	치과용임플란트	1,537	
	CAD/CAM장비 및 치과용도재	208	
	인공수정체	360	
	보청기	446	
	치과용 CT	7,436	
	의료용조합자극기	109	
	관절치료기	41	
	합계	10,137	
화장품산업	기능성화장품	1,228	
	체취방지용	0 <sup>9)</sup>	
	합계	1,229	
식품산업	건강기능식품	10,211	
	특수용도식품	711	
	전통발효식품	2,534	
	두부류 또는 묵류	619	
	합계	14,075	

9) 실제 2010년 고령친화 퀘취방지용 제품류 시장규모(생산실적)는 2,126만 원이다.

산업 및 전략품목		2010년	
여가산업	기능성 게임(게임)	140*	
	고령친화방송(방송)	15,895*	
	정보제공 웹 사이트(지식정보)	1,429*	
	시설운영업(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766*	
	고령친화 휴양단지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교육기관	493*
		관광편의시설업	2,004*
합계		20,728*	
용품산업	개인건강, 의료용품	11,188*	
	기능저하 예방용품	116*	
	여가용품	7*	
	합계		11,311
금융산업	퇴직연금	16,253	
	개인연금	48,978	
	합계		65,232
주거산업	리모델링	175	

주 : \*는 2009년 자료

### 3. 고령친화산업별 활성화과제

- 고령친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 크게 관련 법·제도 개선, 홍보강화, R&D 지원, 분야별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제품 및 서비스 표준화 등으로 나타났다.
- 고령친화산업별로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고령친화 요양산업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법·제도 개선, 시설서비스 표준화, 예방지원 서비스 등 이에 대한 실태조사
  - 고령친화 의약품산업 : 노인의약품 사용 실태조사, 허가절차 간소화 등 법·제도개선, 복약이행 가이드 라인 등 활용체계 마련
  - 고령친화 식품산업 : 고령친화산업진흥법 등 법·제도 개선, 고령친화식품 개발을 위한 R&D 지원, 고령자를 위한 영양관리서비스 제공
  - 고령친화 화장품산업 : 고령친화 화장품의 필요성 등 홍보강화, 제품 개발을 위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소비자 및 기업체 대상 실태조사

- 고령친화 의료기기산업 : 고령친화 의료기기 안전성 기준 마련 등 법·제도 개선, 홍보강화, R&D 지원
  - 고령친화 용품산업 : 고령친화용품 실태조사, R&D 지원, 표준화 개발
  - 고령친화 금융산업 : 자산운영 규제, 세계 확대,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법·제도 개선, 실태조사
  - 고령친화 주거산업 : 산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개조 비용 지원 등을 포함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고령자 주거 안전법 추진 등 법·제도 개선을 강조함
  - 고령친화 여가산업 : 여가활동 지도자 교육의 제도화 등 법제도개선, R&D지원, 혁신 클러스터 구축, 고령자를 위한 콘텐츠 개발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 고령친화산업별 활성화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2부의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산업분석 및 활성화 과제를 참조하기 바란다.



표 I-6-13 고령친화산업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과제

산업	정책지원
요양 산업	(1) 재가요양서비스 지원
	- 법제도 개선(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시설 및 서비스 표준화
	- 제3기관을 통한 서비스 질 평가제도 도입
	(2) 예방지원서비스 지원
	- 법제도 개선(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료법)
	- 현황과약을 위한 실태조사
- 단계별 시범사업 추진	
- 서비스 제공기관 육성	
의약품 산업	(1) 고령친화 의약품 개발 지원
	- 노인환자 의약품 사용행태 등 평가를 위한 조사·연구
	- 천연물신약, 개량신약분야 R&D 지원
	- 정책 및 제도 개선 : 허가절차 간소화, 합리적 가격설정기전 마련, 품질제고체계 강화
	(2) 고령친화 의약품 복약이해도 개선방안 마련
	- 노인환자의 약품 사용 지침서 개발
	- 적절한 약물 사용을 위한 활용 체계 마련
- 지속적인 관리시스템 마련	
식품 산업	(1) 산업계의 제품개발 및 상업화 촉진
	- 시장진입 규제요인 분석
	-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추진
	- 고령친화식품 마케팅 지원
	- 고령친화 식품산업 인증사업 추진
	(2) 고령친화 식품산업의 법적 지위 명확화
	- 고령친화식품의 법적 지위 및 지원 근거 명확화
	- 고령친화 식품산업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예산지원
	(3) 고령자를 대상으로 영양관리서비스
	- 고령자 맞춤형 영양관리서비스 개발
	- 고령자용 케이터링 서비스 개발
	- 고령친화 식품산업의 보건증진 효과 및 경제적 영향분석
	(4) 고령친화식품 연구개발 지원
	- 고령친화 식품산업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 고령자 양태별 영양불균형 상태 조사
- 고령친화식품 소재 및 가공방법 개발 지원	
- 전문인력 양성 로드맵 작성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 고령친화 식품산업 해외진출 로드맵 작성 및 지원사업 수행	

산업	정책지원
화장품 산업	고령친화 화장품 홍보 강화(고령자의 피부관리 등)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투자 활성화(세제 혜택 등) 소비자 및 기업체 대상 실태조사 대외 수출 강화
의료기기 산업	(1) 법규 개선 - 2등급 의료기기 심사 민간위탁 전면 확대 - 고령친화 의료기기 안전성 및 유효성 확보 (2) 국산의료기기 홍보 및 활성화 정책 - 국·공공립 의료기관 국산의료기기 우선구매 - 장기적인 홍보 프로그램 (3) R&D지원 활성화 - 고령친화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신설 - 유망 고령친화 의료기기 발굴 및 지원을 위한 기획 및 예산 확보 (4) 제품화 연계 정책 - 지속적인 성과관리 및 모니터링 - 성과확산 프로그램
용품 산업	(1) 고령친화용품산업 품목분류 및 실태조사 - 고령자의 특성을 반영한 고령친화용품 품목분류 조사·연구 - 품목분류에 따른 고령친화용품 산업체의 실태조사 - 정책 및 제도 개선: 정부지원 확대 방향, 전문인력의 양성 등 (2) 고령친화용품산업 R&D 지원 - 실태조사를 통한 정부지원 R&D 방향 도출 (3) 고령친화용품 표준 개발 - 실태조사를 통한 표준개발 우선 품목 선정 - 관련기관의 고령자의 안전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표준 개발 - 표준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정책 지원(ISO 표준 등록)
금융 산업	(1) 전략화 방향 설정 - 고령친화 금융산업 실태조사 (2) 법·제도 지원 - 자산운용 규제 완화 - 적극적인 세제 혜택 부여 - 투자자 교육 강화 - 계약자 보호체계 강화 - 불공정 판매 근절 - 금융회사 재무건정성 확보를 위한 감독기관의 관리감독 강화 - 전문인력 양성

산업	정책지원
주거 산업	법·제도 개선 - 주택·개보수산업 지원 육성 - 고령자 주거 안전법 추진(개조비용에 대한 용자 지원) - 노인장기요양법 개정(주택 개보수 비용 지원) - 고령층을 위한 주택개조를 위한 금융·용자지원 등의 지원 프로그램 개발
여가 산업	(1) 노인 여가문화 활성화 - 노인 여가 향유 지원 - 여가 프로그램의 특성화 - 제도 정비(여가활동 지도자 교육의 제도화 등) (2) 노인 여가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 실버콘텐츠산업 정책의 개념화 - 범부처 및 지자체와 민간 주체의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 - 고령자를 위한 콘텐츠 비즈니스 혁신 클러스터 구축 - 고령자를 위한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 투자 활성화 지원 - 핵심 기술 개발 - 선도 콘텐츠 개발 - 비영리단체 및 시민단체의 실버콘텐츠 서비스 참여 보장



## 제7장 고령친화산업 중장기 발전전략

### 1. 필요성

- 우리나라는 2000년에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이 7.0%가 넘어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2018년에 14%로 고령사회, 2026년에는 20%가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이 예상되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에 있다.
- 인구고령화에 따른 성장 잠재력 저하 가능성에 대비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하여 고령자의 생활 편익 및 안전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고령친화산업을 미래의 성장동력산업으로 집중 육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할 수 있다.
- 인구고령화 속도가 가속화되고 경제력을 지닌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 되면서 고령친화산업의 시장규모는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65세 이상이 되는 '20년에는 고령친화산업의 주 소비층으로 등장하여 125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인구고령화 추세는 글로벌 트렌드이며, 이미 고령사회 국가인 일본과 거대한 중국 시장 등 고령친화산업은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첨병 역할도 가능하다.
-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그 동안 정부에서는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을 제정하고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는 등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나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사업들을 전개해 가는데 있어서는 예산과 인력 등 상당히 제한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 보다 효과적으로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고령친화산업진흥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고령친화산업의 범위 등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추진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투자여력과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산업을 육성하는 등의 전략적 사고가 요구된다.
- 본 장에서는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산업실태와 정책사업들의 추진 경과 등을 고려하여 고

령친화산업 발전을 위한 비전과 추진체계를 설정하고, 단계별 추진과제를 도출하는 등 고령친화산업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자 한다.

## 2. 비전 및 발전 로드맵

### 2.1 비전

- 고령친화산업은 인구고령화와 베이비부머 은퇴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속 가능성 경제성장을 견인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고 인구고령화의 글로벌 트렌드를 기회로 삼아 세계 시장을 개척하는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 베이비부머가 은퇴하는 2020년을 기점으로 고령친화산업 육성 추진을 위한 비전을 2020년까지 내수시장 활성화와 글로벌 시장개척 역량 강화를 통한 지속적이고 성장가능한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 2.2 발전 로드맵

- 2006년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정 이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내 고령친화산업 육성 정책은 보건복지부와 지식경제부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최근 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해오던 고령친화산업 정책사업들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면서 고령친화산업 육성 정책은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2008년부터 시행되면서 고령친화산업 육성 정책은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복지용구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추진되어 2006년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정 이후 폭넓은 정책개발과 추진에 한계를 가지고 있는 점도 사실이다.
-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을 소관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에서는 2011년부터 고령친화산업 예산을 확대하고 고령친화제품 사용성평가, 해외진출 지원 등 다양한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100세 사회 대응 고령친화제품 연구개발 사업’을 신규로 기획하는 등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그러나, 고령친화산업은 노인을 수요자로 하는 모든 제품 및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어, 보건복지부의 노력에 더하여 고령친화산업진흥법에 명시하고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동의 노력과 정책개발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고령친화산업 시장규모 추계에서 2020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고령친화 금융산업, 여가산업 등으로 제시되는 등 고령자가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에서의 다양한 정책개발이 요구된다.

- 본 연구진은 고령친화산업의 체계적이고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 고령친화산업 정책 및 제도의 내실화, 고령친화산업 수요기반 강화, 고령친화산업 전략산업 집중 육성 등 3대 추진목표를 설정하고 단계별로 고령친화산업 발전을 위한 로드맵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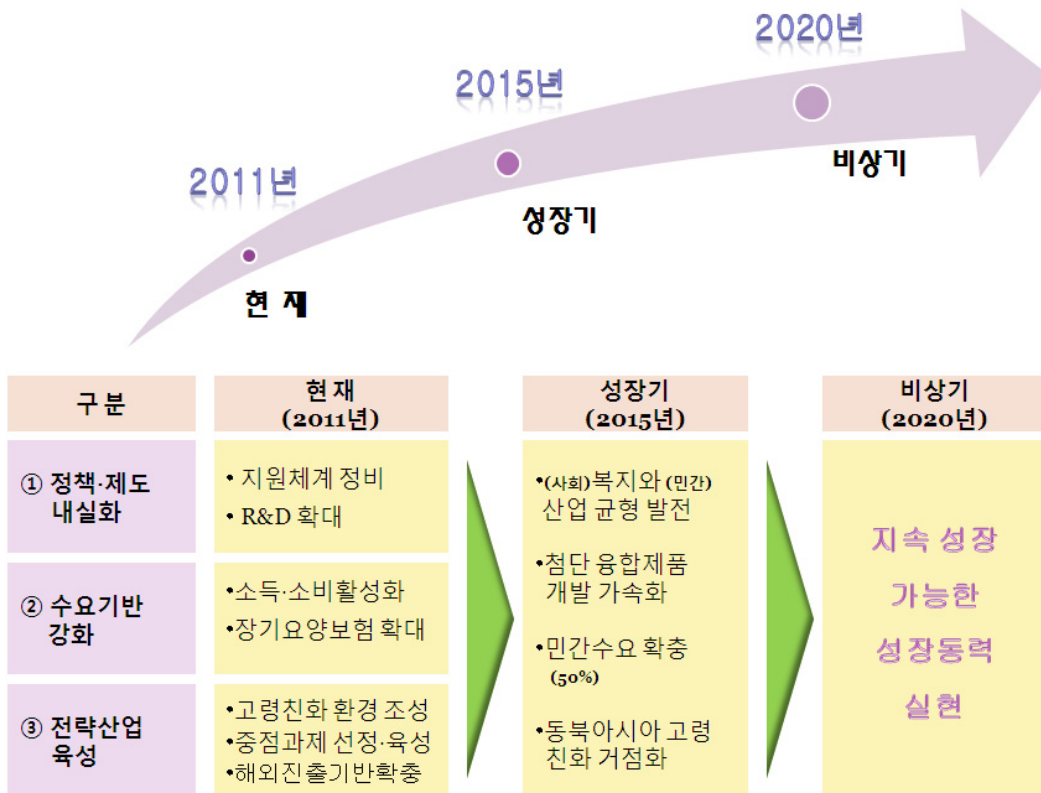


그림 I-7-1 고령친화산업 발전 로드맵

- 현재 단계에서는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기초 인프라 확충에 더욱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실효성 있는 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 수립,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한 운영의 내실화, 그리고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정부 조직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본다.
-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서 본다면 고령친화산업은 고령친화 제품 및 서비스가 공급되면 필요한 고령자는 비용을 지출하면서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재의 고령층은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 실제로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이다. 이로 인해 산업체에서는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 개발, 공급에 투자를 미루고 있어 일시적으로라도 수요 기

- 반을 확대해 나갈 정책개발이 요구된다.
- 고령친화산업의 다양한 범위에서 정책집행의 효과성, 투자예산의 한계, 고령소비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제품 및 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고령친화산업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전략산업 중심으로 정책을 집행해 가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 2014년까지의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노력을 통해 2015년에는 정부의 복지제도와 균형있는 고령친화산업의 발전과 융·복합 제품 개발 가시화, 민간소비 활성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역량 강화 등에 중점 투자를 통해 2020년 비상기를 맞아 고령친화산업이 지속 성장 가능한 경제발전의 성장동력을 실현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 3.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과제

#### 3.1 고령친화산업 육성 추진체계

- 고령친화산업 발전 로드맵의 현재 단계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체계를 정립하고자 한다. 3대 추진목표로 고령친화산업 정책제도 내실화, 고령친화산업 수요기반 강화, 고령친화산업 전략산업 육성을 설정하고 목표별 중점과제를 제시하였다.
- 또한, 고령친화산업의 체계적 육성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에서는 정부에서 수립한 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연도별 시행계획과 성과를 모니터링하는 등 진도관리가 요구되며, 지원센터는 비즈니스 가치사슬 단계별 즉, 연구개발, 인·허가, 제조, 유통, 마케팅, 판매, 수출 등의 각 단계별로 산업체에서 요구되는 또는 필요한 과제들을 발굴하고 이를 지원하는 역할 수행이 가능하여야 할 것이다.
-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는 고령친화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의 조사연구,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술 및 표준화연구,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 고령친화산업의 창업 및 경영지원, 정보의 수집·공유·활용에 관한 사업, 고령친화산업 발전을 위한 유통활성화와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고령친화사업자에 대한 지원, 고령친화 우수제품·우수사업자 지정, 그 밖의 고령친화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업 등 고령친화산업진흥법에서 명시한 업무에 대해 관련 협회·단체, 민간 전문가 등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다학제간 정보교류를 기반으로 전문조직으로 성장해 나가야 할 것이다.
- 고령친화산업 추진목표에 따른 중점과제에 대해서는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과제에서 자세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비전** 2020년 지속성장 가능한 성장동력 확충

**내수시장 활성화 & 글로벌 시장개척 역량 강화**

추진 목표	제도·정책 내실화	수요 기반 강화	전략산업 육성
중점 과제	① 육성·지원체계 강화 ② 조사 및 연구개발 확대 ③ 제품서비스 경쟁력 향상 ④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	① 소득 안정화 정책 ② 소비 활성화 촉진 ③ 요양보험 급여 확대 ④ 전사·체험관 확산	① 고령친화 보건산업 - 영양, 의약품,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② 고령친화 금융산업 ③ 고령친화 여가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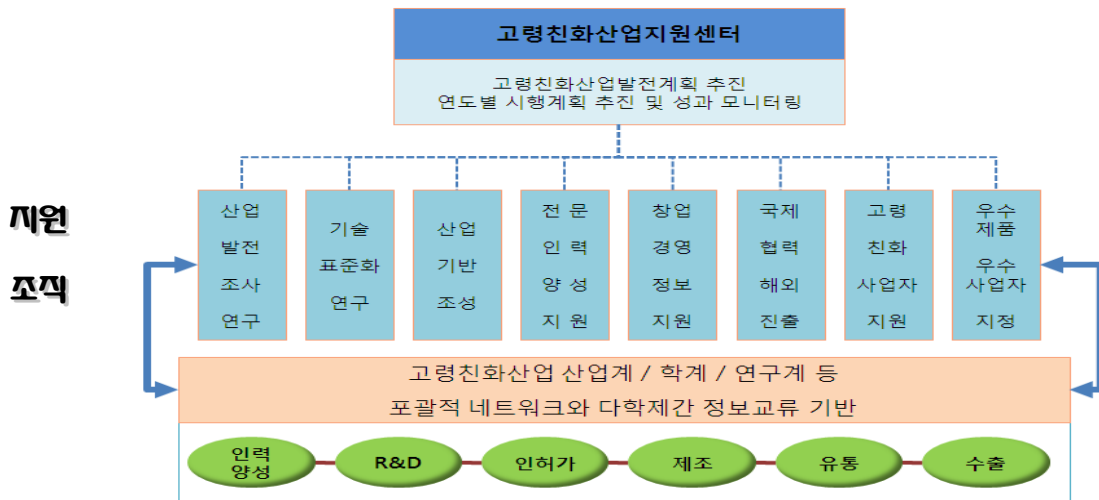


그림 I-7-2 고령친화산업 육성 추진체계



## 3.2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과제

### 1) 고령친화산업 정책 제도 내실화

#### 가. 고령친화산업 육성 지원체계 강화

- 고령친화산업 지원을 위해서는 고령친화산업진흥법에 명시하고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총괄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내에 고령친화산업 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행정조직이 필요하다 하겠다. 지난 2009년 ‘고령친화산업과’ 폐지 이후로 보건복지부 중심의 고령친화산업 육성 정책 추진으로 고령소비자의 관심이 많은 건강관리, 금융, 여가 등의 산업이 충실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고령친화산업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고령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적 조항은 있으나,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없는 것이 그 예가 될 것이며, 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도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다양한 고령친화산업 육성 정책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에 대해서는 고령친화산업진흥법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인력의 투자 확대가 요구되며, 고령친화산업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비즈니스 가치사슬 단계별 지원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 확대가 요구된다. 또한, 지원센터를 기반으로 고령친화산업 관련 산업계, 학계, 연구계 및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종합적으로 수렴되어야 하며,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한 정책사업 전개를 통해야지만 산업계에서는 고령친화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나. 고령친화산업 조사 분석 및 연구개발 확대

- 고령친화산업은 인구고령화 및 베이비부머 은퇴 본격화 등 수요자의 급속한 확대로 시장 전망이 밝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현재의 고령친화산업은 정부의 복지제도와 연계되어 제한적으로 공적시장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어, 공적시장이 아닌 민간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고령친화산업의 민간수요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고령친화 제품과 서비스가 얼마나 다양한지, 외국에는 어떠한 제품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공급되고 있는지, 외국의 주요 기업

들에서는 어떤 제품들에 연구개발을 투자하는 지, 미래의 유망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전망 등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고령친화산업 백서를 발간하는 적정 시점에 대해서는 제고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국내 고령친화산업체가 대부분 중소기업의 영세한 실정으로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산업계의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보다는 구체적으로 산업투자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는 정보의 제공이 필요하다.

- 또한,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 및 산업분석을 위한 통계조사가 필요하다. 고령친화산업은 그 범위가 상당히 넓어 체계적인 분류체계 정립과 이에 대한 산업동향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통계조사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지난 2005년 이후 고령친화산업 실태에 대한 조사 연구가 부족한 이유도 분류체계에 대한 정리가 미비한 데에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의 사회적, 산업적 환경변화에 따라 가감될 수는 있으나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분류체계를 토대로 고령친화산업의 전망과 산업육성을 위한 발전 과제들이 도출되는 것이 보다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 고령친화산업은 고도의 첨단기술이 요구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보다는 고령자가 쉽고 안전하게 접할 수 있는 그리고 비교적 단순화되고 고착화된 개인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어 이러한 유형의 상품개발에 대한 투자기반이 취약한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2012년 고령친화제품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연구개발비를 산업계에 지원할 때 관련 산업의 상황과 수준을 고려해서 효과적인 집행기준 마련이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 다. 고령친화산업 제품·서비스 경쟁력 강화

- 국내 고령친화제품은 외산 제품을 단순히 모방하는 수준에서 개발되고 있는 제품이 상대적으로 많아 제품별로 유사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경쟁력 있는 고령친화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고령자 자체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 고령친화제품 사용성평가는 이러한 고령소비자가 만족해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사업이다.
- 사용성평가 결과에 대한 정보공유를 통해 산업체에서 고령자를 위한 제품을 개발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고령자가 제품을 사용할 때 어떠한 특실이 있는지에 대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DB 구축이 앞으로 정부에서 추진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결국 이러한 정보에 기초하여 개발되는 제품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 고령친화산업체는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독자적으로 이러한 경쟁 우위를 분야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것이 바로 정책사업으로 추진되어 하는 이유가 될 것이다.

- 고령친화 서비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유형은 아직까지 장기요양서비스에 머물러 있다는 판단이다. 언론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기사중에는 실버타운에 입주한 노인이 보증금을 나중에 되돌려 받지 못하는 등의 사례를 볼 수 있다. 실버타운 서비스 지침 또는 가이드라인 등이 마련되어 제공되고 산업체에서는 이러한 지침을 준용해 나가는 것이 건전한 서비스 산업을 견인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고령친화 서비스는 제품보다 더욱 다양성을 갖고 있어 향후 고령친화 서비스 영역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를 구체화해나가는 노력이 고령친화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 고령친화 우수제품·우수사업자 지정제도에 대한 투자 확대가 요구된다. 산업체에서는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고자 할 때 소비자는 정말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요구하게 된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특히 더욱 그러하다. 신규 시장을 열어가고 활성화시켜 가기 위해서는 ‘S마크’와 같은 지정표시 제도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노력과 안전성에 대한 사후관리가 병행해서 추진되어야 한다. ‘S마크’에 대한 인터넷, 지하철, 신문 등에 광고 추진과 다양한 공모전을 기획하고 추진해 보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 고령친화 제품·서비스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에서는 개호보험에서 제공되는 복지용구에 대해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복지용구를 선정하는 복지용구상담사 등의 민간 차원의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복지용구는 꼭 필요한 노인에게는 득이 될 수 있지만, 남용은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노인의 건강한 생활유지를 위한 노인생활체육지도사, 고령자의 정보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는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령친화산업 활성화를 이끌어가는 전문인력을 개발할 수 있는 인력양성 프로그램이 개발 보급되어야 할 것이다.

#### 라. 고령친화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 '10년 기준으로 국내 65세 이상 고령자의 수는 전체 인구대비 11% 수준인 약 535만 7천명이며, '20년까지 은퇴 예정인 베이비부머 약 712만명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국내 시장만을 대상으로 해서는 고령친화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확대 발전시키기에는 제한적일 것이다.
- 인구 고령화 현상은 우리나라의 문제만이 아니다. 최고의 고령화 국가인 일본과 고령자가 증가하고 있는 중국 등 주변국까지 시야를 넓혀 우리 고령친화산업의 소비 대상으로 포함시켜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제품 또는 서비스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진출대상 국가별 시장조사 및 분석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 고령친화산업 해외시장 진출 전략수립 및 지원활동 강화를 위하여 고령친화산업 관련 산·학·연 등 관계자들간의 협의체 운영을 생각할 수 있다. 해외시장 진출 경험을 보유한 산업계와 관련 지원정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지원기관 등의 경험에 기초한 체계적인 시장진출 노력이 필요하며, 이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이 또한 요구된다. 협의체에는 시장진출 경험에 대한 사례의 공유와 공동의 대처, 수출 전략국가별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 2) 고령친화산업 수요기반 강화

### 가. 고령자 소득안정화 지원 정책 개발

- 고령친화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적정 수요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공급이 균형있게 순환하는 구조가 되어야 고령친화산업 시장이 활성화가 될 수 있으나, 고령자 대부분은 부동산 등의 고정자산에 집중하는 경향으로 개개인의 일상생활 질 향상을 위한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소비에 투자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고령친화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고령자들의 가처분소득을 높이기 위한 주택, 토지 등 부동산자산에 대한 역모기지 제도 홍보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건강검진서비스를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더라도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다양한 연금에 가입을 촉구하여 노후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을 형성하는 정책의 개발 보급이 필요하다.
- 고령자에 대한 새로운 소득 창출을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돌봄서비스, 방과후 어린이집 지원 등의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고령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지역내 세대간의 갈등 완화에 긍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새로운 소득 창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고령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고령자가 갖고 있는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개발도 필요하지만 고령자만 할 수 있는 일자리 개발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다.
- 고령자에 대한 소득원 창출 노력에 더하여 소득을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고령자의 소득 안정화를 위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에는 자산설계와 운영, 노후설계와 건강관리, 기부문화 확산과 자산신탁제도와 같은 내용이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 나. 고령 소비자 피해예방을 통한 소비 활성화 촉진

- 고령자의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제품 또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 소비 활성화에 앞서서 공급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사고 및 피해사례에 대한 보고체계를 수립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단순 낙상으로 일반인과는 다르게 고령자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고령 소비자가 겪은 사고 또는 피해사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제품 또는 서비스 공급업체에서는 동일한 유형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과 고령 소비자 또는 사전에 꼼꼼히 따져보는 눈높이를 가질 수 있어 수요자, 공급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이다.
- 부적합한 제품 또는 서비스로 인해 이를 사용하는 고령 소비자는 상태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 이는 곧 국민의료비의 지출을 초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질 좋은 제품과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불량제품을 선별하고 퇴출시키기 위해서는 신고 보상금제도를 시행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

#### 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품목 확대를 통한 내수시장 활성화

-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복지용구에 대해 정부지원으로 고령친화산업의 일부 용품에 대한 시장이 가시화되어 있는 실정이나, 복지용구는 16개 품목으로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 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자는 전체 65세 이상 고령자의 약 6% 이내의 범위를 커버하고 있으나, 향후 장기요양보험 급여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상태가 더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예방적 차원의 서비스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자의 범위를 현재의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고령친화산업의 내수시장 활성화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 현재의 16개 품목에는 목욕리프트와 같은 이용실적이 저조한 품목도 있으며, 품목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보험급여 재정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자세변환용구 등의 품목도 포함되어 있어 일부 수정 보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 라. 지역사회 밀착형 전시·체험관 확산

- 지식경제부에서는 고령친화제품의 대국민 인식확산을 위한 홍보의 일환으로 고령친화제품종합체험관을 경기도 분당, 대구광역시에서 '08년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12년 광주광역시에서도 본격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나, 고령자의 접근성을 고려해본다면 현

- 재의 3곳이 충분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며, 보다 적극적인 홍보노력이 요구된다.
- 복지부에서는 고령친화제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령자가 직접 제품을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에서 '11년 시범적으로 3개의 노인복지관에 전시·체험관을 설치하였다. 전국에는 약 200여개 이상의 노인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나 일 평균 약 150명 내외의 고령자가 왕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 노인복지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센터 등 고령자의 접근성이 용이한 곳을 활용하여 고령친화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의 정책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노인복지시설 또는 노인복지관 등 일정규모 이상의 기관에서는 지역사회 밀착형 전시·체험관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 또는 노인복지시설 평가지침에 반영되도록 정책을 개선하는 방안이 그 유용한 예가 될 것이다.

### 3) 고령친화산업 전략산업 육성

#### 가. 고령친화 보건산업

- 고령친화 요양산업, 의약품산업, 식품산업, 화장품산업, 의료기기산업 등은 보건산업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로, 이들 산업을 고령친화 보건산업으로 분류하고 해당 산업별 주요 육성 과제 및 방향성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 고령친화 요양산업은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의료비 절감을 위해서 등급외자 중 예방을 요하는 사람을 추가 등급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개정, 예방이 필요한 자로 확대하고 그에 따른 서비스도 재가 및 시설서비스에 예방서비스를 포함하여 관리하는 것이 요구된다. 예방지원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개발 및 보급으로 민간시장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통계조사 및 시범사업, 지원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
- 고령친화 의약품산업은 통상 3가지 이상 질병이 함께 발생하는 노인환자들이 3-4개 이상의 약품을 한꺼번에 복용하고 있어 약물상호작용의 우려가 높은게 현실이며, 이러한 질환들은 만성질환이 많아 장기치료를 요한다. 만성질환의 유병률이 높은 노인환자에 대한 복약이행도 제고를 위해 노인환자의 약물사용지침서 개발 노력과 이를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요구된다. 그리고 노인환자의 약물사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러한 고령친화 의약품에 대한 적절한 공급 및 사용체계의 마련은 증가하는 수요에 대한 적절한 대처와 국민건강증진, 이를 통한 고령친화 의약품에 대한 수출증대와 고용확대로 이어져 의약품산업에 긍정적인 영향과 궁극적으로 국가경쟁

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 고령친화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안전기본법 등 다양한 법률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며,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도 요구된다. 또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영양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영양관리서비스 및 케이터링 서비스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하겠다.
- 고령친화 화장품산업은 고령화에 따른 피부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고령친화 화장품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고령친화 화장품 개발을 위한 산·학·연 클러스터 구성 및 지원정책, 특히 소재개발 연구에 대한 부분이 특히 요구된다. 또한, 고령화에 따른 피부변화 및 사용 실태조사를 통한 활성화 전략 마련과 고령친화 화장품에 대한 국제 표준화 마련 및 수출증대를 위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 고령친화 의료기기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허가신고제도에 대한 업계의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노력과 함께 일본 등 외국의 고령친화 의료기기 관련 지원정책과 제도를 조사분석, 지원정책 발굴 노력이 요구된다. 고령친화 의료기기 분야는 국제적인 분류도 없고, 고기술력을 요하는 분야라기 보다는 맞춤형 소량생산 체제로, 현재의 의료기기 기술력에 노인의 특성을 감안하여 IT, BT 등과 결합하고, 주거환경, 복지환경 및 생활시스템의 결합에 의하여 완성도를 높이는 방향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 나. 고령친화 금융산업

- 고령화 진전에 따라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고령소비자 및 금융기관을 통한 실태조사를 통해 중장기적인 고령친화 금융산업의 방향 및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령화에 따른 건강, 간병 및 의료 관련 보장서비스에 대한 수요증대에 대비하여 보험시장 육성을 적극 도모해야 할 것이다.
- 고령화 관련 금융상품의 접점을 확대하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생애주기, 투자성향 등을 감안한 종합적인 금융자문 서비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투자자 교육 및 계약자 보호체계를 정비하고, 불공정 판매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노후에 직면하게 될 3가지 위험요소 즉, 장수, 의료비용 증가, 시장불확실성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고령친화 금융산업 활성화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이를 통해 노후소득 준비 강화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정부측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노후 소득보장 안정화를 통해 소비 촉진에 기여함으로써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에도 기여할 것이다.

#### 다. 고령친화 여가산업

- 고령자를 위한 여가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산업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사업 발굴·추진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고령친화 여가산업에 대한 정책적 개념을 구체화하는 노력, 여가산업 발전 종합대책 마련 및 여가산업 관련 콘텐츠 제작사, 플랫폼 사업자, 네트워크 사업자 등 관계기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장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 IT 및 VR기술을 적용한 실버 세대용 기능성 콘텐츠가 시장 창출을 선도할 킬러콘텐츠로 예상되므로, 스크린골프나 스크린승마와 같은 기능성 콘텐츠, 노인들의 체력과 편리성을 고려한 풀스크린 활용 콘텐츠, 작은 동작으로도 조작성이 가능한 촉각(haptic) 기술접목 콘텐츠 등 고령자를 위한 선도적인 콘텐츠 개발 등 발굴 지원노력이 필요하다.
- 비영리단체 및 시민단체가 실버콘텐츠 서비스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지자체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소관 부처의 공동 주관으로 이들이 제작하는 콘텐츠를 지원하는 프로젝트 추진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노인들의 활발한 여가활동 지원을 통해 고립된 존재가 아닌 사회의 한 일원으로 활기찬 노후생활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고, 고령친화 여가산업의 선도적 콘텐츠 개발 및 혁신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 및 국제적으로 산업경쟁력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제 2 부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산업분석 및 활성화 과제

제1장 고령친화 요양산업	149
제2장 고령친화 의약품산업	175
제3장 고령친화 식품산업	227
제4장 고령친화 화장품산업	258
제5장 고령친화 의료기기산업	287
제6장 고령친화 용품산업	319
제7장 고령친화 금융산업	336
제8장 고령친화 주거산업	363
제9장 고령친화 여가산업	403
제10장 고령친화 기타산업	444



# 제1장 고령친화 요양산업

## 1. 개요 및 범위

### 1.1 고령친화 요양산업의 범위

요양산업은 민간이 주체가 되어 노인들을 대상으로 요양서비스를 생산하고 운영하는 영역으로 재가요양과 시설요양 부문으로 구분하고 있다. 재가요양서비스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대여 및 지원 등의 서비스로, 필요한 이용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따라 기능회복, 기능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간호, 훈련 및 일상 생활 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함을 말한다. 시설요양서비스는 주로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의 입소자에게 신체적·정신적 상태 및 욕구 수준에 적합한 의학적 치료, 간호, 재활 및 일상 활동 지원서비스 급식 등과 함께 기능회복, 기능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 참가기회를 제공하여 입소자의 총체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을 말한다. 재가서비스는 노인복지법 상에 재가노인복지시설이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그에 대한 시설 및 운영기준을 상세히 다루고 있고, 시설서비스는 노인복지법상에 노인의료복지시설로서 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하고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만을 포함한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노인전문병원 등 요양과 별도로 생각할 수 없는 노인의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치료 및 노인을 위한 의료서비스 전반을 포함하고자 한다.

표 II-1-1 고령친화 요양산업의 범위

구분	종류
시설요양서비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요양서비스	방문요양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복지용구 제공 및 지원서비스
노인의료서비스	노인전문병원 등 노인진료서비스 전체

## 1.2 고령친화 요양산업의 특징

요양산업은 노인들에게 필요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수익자 부담으로 민간시장에서 구입하도록 되어 있어 영리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동시에 국가와 사회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노인들의 욕구와 문제를 해결해 주는 민간복지사업의 하나로 간주될 수 있어 노인복지적인 요소도 있다. 노인요양서비스는 국가 및 지자체에 의한 서비스 뿐만 아니라 가족의 구성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또는 민간 사회복지단체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 등 제3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일체의 서비스를 포함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기 전에는 주로 가족의 구성원에 의해 제공되었고, 국가에 의한 서비스를 받을 권한은 저소득층에 제한되어 있었으나, 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보호가능 인구간의 불균형 심화는 노인요양서비스 분야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요구하게 되면서 2008년 7월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선별적인 복지제도로써 주로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던 공적 노인요양서비스는 대상이 확대되었다. 요양산업은 민간주도의 영리성을 중심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하의 공적인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산업으로 양적, 질적인 수준 향상 및 국민(노인, 가족 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발전해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 2. 시장분석

### 2.1 세계 시장 변화

- 우리나라의 의료인력은 주요 OECD 국가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의사인력은 2000년 103천명에서 2007년 131천명으로 7년간 약 28% 증가하였다. 의사수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나, 천명당 활동의사수는 1.7명으로 타 OECD 국가에 비해 의료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1-2 OECD 주요국가 천명당 활동의사수 추이

(단위 : 명)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캐나다	2.1	2.1	2.1	2.1	2.1	2.2
프랑스	3.3	3.3	3.4	3.4	3.4	3.4
독일	3.3	3.4	3.4	3.4	3.5	3.5
이탈리아	4.4	4.1	4.2	3.8	3.7	3.7
일본	2	-	2	-	2.1	-
한국	1.5	1.6	1.6	1.6	1.7	1.7
영국	2.1	2.2	2.3	2.4	2.5	2.5
미국	2.3	2.4	2.4	2.4	2.4	2.4

자료 : OECD Health Data 2009

- 간호사 또한 매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외국에 비해 활동간호사수가 크게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노인의료서비스 차원에서 전문인력 양성이 수반되어야 하고, 의료서비스의 산업화를 위해서는 관리감독 하에 규제완화와 같은 시장친화적인 경쟁시스템을 구축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표 II-1-3 OECD 주요국가 천명당 활동간호사수 추이

(단위 : 명)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캐나다	9.4	8.5	8.5	8.7	8.8	9.0
프랑스	6.9	7.0	7.2	7.4	7.6	7.7
독일	9.6	9.7	9.7	9.7	9.8	9.9
이탈리아	5.4	5.4	6.7	7.0	7.1	7.0
일본	7.8	-	9.0	-	9.3	9.4
한국	3.4	3.5	3.8	3.8	4.0	4.2
영국	11.7	12.1	12.3	12.3	11.9	10.0
미국	10.2	10.1	10.3	10.4	10.5	10.6

자료 : OECD Health Data 2009

1) 미국

○ 2010년 미국 고령자 요양산업의 시장규모는 약 478억 달러(52조 5,613억원)로 2005년 이후 지속적인 성장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성장세를 보면 2010년 시장 증가율은 전년대비 2%로서 이전 5년(2005~2009년) 동안의 연평균 증가율 7.1%보다 하락하고 있어 다소 둔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향후 2015년까지는 현 수준의 완만한 시장 성장세(연평균 2.4%)가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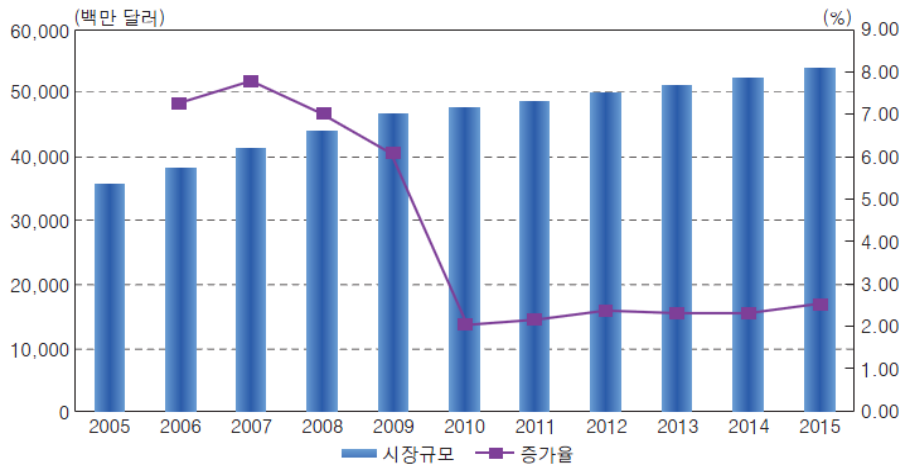


그림 II-1-1 미국의 고령자 요양산업 시장규모

자료 : US census and federal statistics(~2010년 자료), Anything Research (www.anythingresearch.com, 2011년 이후 자료), KIET 산업동향브리프 2011년 3월(제18호) 인용

○ 세부 부문별로는 요양시설 및 병원 입소(원)자에 대한 서비스가 주요 부문(75%)을 형성함으로써 동 산업의 수요 계층이 젊은 고령자보다는 75세 이상의 고(高) 고령자이며, 생물적 노화 및 질병에 대한 대응이 주요 니즈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동 산업의 시장은 미국의 베이비부머(1946~64년생)가 70세 이상이 되는 2016년 이후에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자 요양산업 관련 기업들의 평균 규모는 매출액 288만 달러(약 32억 원), 종업원 수 50인으로 소규모 기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기업 수는 2005년 이후 연평균 2.7%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표 II-1-4 미국 고령자 요양산업의 기업 현황

(단위 : 개소, 명)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기업 수	14,546	14,983	15,313	15,772	16,166	16,605
종업원 수	678,933	705,492	732,560	761,760	800,073	828,452
기업 평균 수입(천달러)	2,452	2,553	2,693	2,799	2,897	2,878
기업평균 종업원 수	47	47	48	48	49	50

자료 : US census and federal statistics

- 고령자 요양산업은 매출액 1억 달러 미만의 업체가 66%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의 전체 산업과 비교할 때 기업규모별 분포가 다양한 편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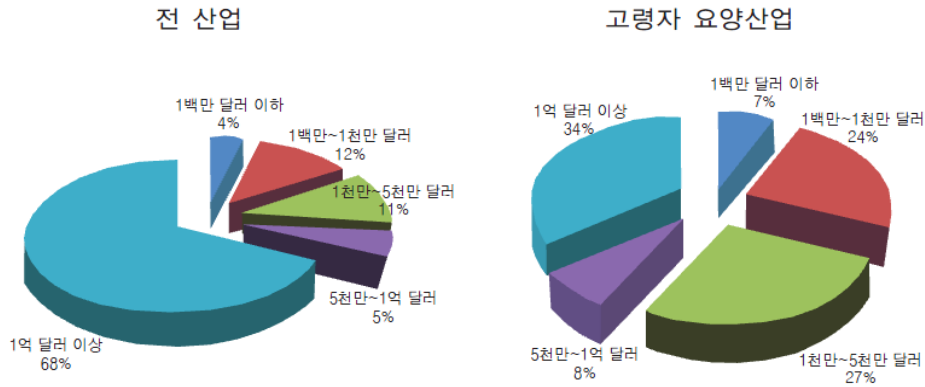


그림 II-1-2 미국의 전 산업 대비 고령자 요양산업의 매출액 비중

자료 : KIET 산업동향브리프 2011년 3월(제18호) 인용

- 미국은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위한 연방정부 의료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케어(Medicare)를 운영 중에 있는데 65세 미만이라도 장애 및 말기 신장질환자에게는 적용이 되고 있다. 메디케어는 4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부분은 Part A(병원보험, Hospital Insurance(HI))와 Part B(보조적 의료보험Supplementary Medical Insurance (SMI))이고, 나머지 Part C(Medicare Advantage program)와 Part D(prescription drug insurance)로 구분된다.
- 2009년 기준으로, Medicare는 총 5,090억 달러를 지출하였고, Part A는 46백만명에게 2,393억 달러, Part B는 43백만명에게 2,026억 달러, Part D는 33백만명에게 605억 달러를 지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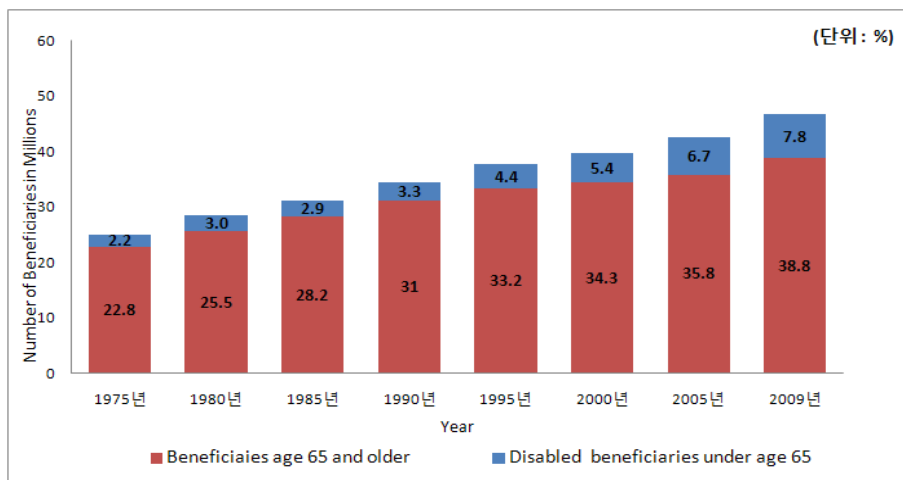


그림 II-1-3 미국의 메디케어 이용자 현황(1975년-2009년)

자료 : Data Compendium : 2009 Edition, Chapter IV

- Part A에는 입원환자 병원케어(Inpatient hospital care), 숙련된 간호시설[Skilled nursing facility (SNF) care], 재가 건강 기관 케어[Home health agency (HHA) care], 호스피스(Hospice care)가 포함된다. 입원환자 병원케어(Inpatient hospital care)에서는 병실(semi-private room), 식사, 간호서비스, 수술 및 회복실, 집중치료, 입원환자 처방약, 검사, X-ray, 정신병원, 입원환자 재활과 장기요양 및 기타 병원에서 제공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 Part B에서는 내외과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응급실, 외래 진료 또는 응급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Part A가 제공되지 못하는 재가 건강케어, 검사, X-ray, 다른 진단적 방사선 검사, 예방적 케어서비스와 스크리닝 검사, 대부분의 물리적 치료 및 언어 치료, 상당한 외래 재활 시설서비스와 부분적인 병원에서 진행되는 정신 프로그램에서 정신 건강케어를 받을 수 있다.
- Part C는 선택적 메디케어로써, 개인회사 및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호스피스를 제외하고 최소한의 Part A, B 서비스를 포함한다. 일부 서비스는 예방적인 건강케어 또는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s (HMOs) 또는 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s (PPOs)와 협력하여 제공한다.
- Part D는 2006년에 시작한 처방약 보험으로 Part A와 Part B에 등록된 개인과저소득층에게 할인 및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보조적 지원이다.

## 2) 일본

- 일본에서는 고령화에 수반되어 나타나는 의료비 증가로 인한 재정적 압박과, 과중한 가족 개호부담의 경감 등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회보험방식의 개호보험제도를 2000년 4월부터 시행하였고, 2006년 개정으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경증고령자(요지원, 요개호 1)의 상태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예방시스템이 도입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개호등급 6단계(요지원, 요개호1~요개호5)에서 7단계(요지원1~요지원2, 요개호1~요개호5)로 변경되었고, 동시에 요지원 및 요개호상태가 될 가능성이 있는 특정고령자의 개호예방을 위해 지역지원사업이 신설되었으며, 이를 추진하는 기관으로 지역포괄지원센터가 창립되고, 근력기능향상 및 영양개선, 구강기능향상과 같은 서비스가 신설되었다.
- 개호보험의 변화추이를 보면, 개호예산은 2010년 7조 9,130억엔으로 2002년 5조 1,929억엔에 비해 52.4%증가하였고, 증가폭의 차이는 있으나 연평균 5.8%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표 II-1-5 개호 예산 추이(2002년-2010년)

(단위 : 개소, 명)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총액	51,929	56,891	62,025	63,657	63,615	66,719	69,497	76,866	79,130
전년대비 증감율	13.1	9.6	9.0	2.6	-0.1	4.9	4.2	10.6	2.9

자료원 : 후생노동성, 개호보험 현황 보고서, 2011

- 개호 및 지원이 필요한 인원은 '02년 대비 '09년에 54.8%(303만명 → 469만명) 증가하였고, 연평균 증가폭은 요지원2가 272.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1-6 개호 및 지원이 필요한 인원 수 추이(2002년-2009년)

(단위 : 명, %)

	2002년	2004년	2006년	2008년	2009년	CAGR
요지원 1	398,322	601,258	58,678	551,720	574,997	10.2%
요지원 2			45,414	629,071	661,881	272.2%
일시적인 개호가 요구되는 형			654,952	1,460	0	-
요개호 1	890,772	1,252,269	1,386,738	769,388	788,133	5.2%
요개호 2	571,012	594,806	651,370	806,110	822,691	11.1%
요개호 3	393,646	492,195	560,602	711,337	737,951	12.9%
요개호 4	393,783	478,585	524,989	578,873	589,512	8.2%
요개호 5	381,472	455,021	465,350	500,255	514,758	8.5%
총 계	3,029,007	3,874,134	4,348,093	4,548,214	4,689,923	11.6%
전년대비 증감율(%)	17.3%	11.2%	5.8%	3.2%	3.1%	

자료 : 후생노동성, 개호보험 현황 보고서, 2011

주 : 지원이 요구되는 것으로 확정된 사람은 2006년 1월 개호보험법 개정으로 일시적인 개호가 요구되는 범주에 속함

- 개호보험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는 크게 4가지로, 재가서비스, 간호예방지원/재가요양지원, 지역밀착형서비스, 시설서비스로 나누어져 있다. 2010년 1월 기준으로 총 6,153억 엔을 지출하였고, 그 중 시설서비스가 41.0%, 재가서비스가 45.3%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표 II-1-7 2010년 개호 및 지원 서비스 지출

(단위 : 백만엔, %)

구 분	지출(백만엔)	백분율(%)
총계	615,336	100.0
1. 재가서비스(간호예방서비스 포함)	278,525	45.3
1-1 방문/통근	219,118	35.6
(1)방문개호	60,260	9.8
(2)방문입욕개호	4,843	0.8
(3)방문간호	11,738	1.9
(4)방문재활	1,947	0.3
(5)통원개호	88,875	14.4
(6)통원재활	35,200	5.7
(7)복지용구 대여	16,255	2.6
1-2 단기제도	30,594	5.0
(1)단기입소 생활개호	25,872	4.2
(2)단기입소 요양개호(노인을 위한 건강서비스 시설)	4,292	0.7
(3)단기입소 요양개호(병원 등)	430	0.1
1-3 거택요양관리지도	3,271	0.5
1-4 특정시설 입소자 생활개호	25,542	4.2
2. 간호예방지원/재가 요양 지원	29,249	4.8
3. 지역밀착형서비스(간호예방서비스포함)	55,310	9.0
3-1 야간대응형 방문개호	120	0.0
3-2 인지증대응형 통원개호	5,929	1.0
3-3 소규모다기능형 거택개호	7,328	1.2
3-4 인지증대응형 공동생활개호(단기이용 제외)	39,173	6.4
3-5 인지증대응형 공동생활개호(단기이용)	18	0.0
3-6 지역밀착형 특정시설 입소자 생활개호	543	0.1
3-7 지역밀착형 개호복지시설서비스	2,199	0.4
4. 시설서비스	252,283	41.0
4-1 개호복지시설서비스	120,205	19.5
4-2 개호보건시설서비스	95,931	15.6
4-3 개호요양시설서비스	36,147	5.9

자료 : 후생노동성, 개호서비스 요금 조사(2010.1)

주 : 매달 중순에 개호가 요구되는 사람부터 지원이 요구되는 사람까지 모두 포함

- 개호서비스 공급자 추이를 보면, 전년대비 성장률은 간호예방서비스 중 간호예방적 통원 재활(415.9% 증가), 통원재활(402.3% 증가)이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있고, 연평균 성장률로 보면, 간호예방적 통원재활(129.3% 증가), 지역밀착형 개호복지시설서비스(106.8% 증가)로 나타나, 예방적 서비스 및 재가서비스 분야의 증가가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표 II-1-8 개호서비스 공급자 추이

(매년 4월말 기준, 단위: %)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전년대비 증감율	CAGR
1. 재가서비스							
방문개호	24,795	26,599	27,602	26,955	26,741	-0.8	1.9
방문입욕개호	2,916	2,837	2,695	2,449	2,407	-1.7	-4.7
방문간호	67,458	69,581	62,440	64,003	64,955	1.5	-0.9
방문재활	54,356	56,562	50,059	51,885	53,105	2.4	-0.6
거택요양관리지도	147,967	151,606	150,343	153,510	154,870	0.9	1.1
통원개호	17,245	19,973	21,615	22,844	24,188	5.9	8.8
통원재활	6,238	6,330	6,591	6,659	33,447	402.3	52.2
단기입소 생활개호	6,115	6,530	7,019	7,395	7,653	3.5	5.8
단기입소 요양개호	6,884	6,588	6,298	5,972	5,789	-3.1	-4.2
특정시설 입소자 생활개호	1,285	1,744	2,585	2,896	3,047	5.2	24.1
복지용구 대여	8,692	9,043	8,743	8,053	7,319	-9.1	-4.2
2. 지역밀착형서비스							
야간대응형 방문개호	-	-	86	121	107	-11.6	11.5
인지증대응형 통원개호	-	-	3,087	3,385	3,569	5.4	7.5
소규모다기능형 거택개호	-	-	703	1,547	2,056	32.9	71.0
인지증대응형 공동생활개호	6,645	7,666	8,938	9,576	9,946	3.9	10.6
지역밀착형 특정시설 입소자 생활개호	-	-	51	81	117	44.4	51.5
지역밀착형 개호복지시설서비스	-	-	61	155	261	68.4	106.8
3. 장기 요양	30,390	31,996	32,462	31,973	31,907	-0.2	1.2
4. 시설서비스	-	-	-				
개호복지시설서비스	5,478	5,677	5,898	6,054	6,134	1.3	2.9
개호보건시설서비스	3,270	3,353	3,461	3,526	3,603	2.2	2.5
개호요양시설서비스	3,758	3,413	2,961	2,550	2,329	-8.7	-11.3
5. 간호예방서비스							
간호예방적 방문개호	-	-	25,817	25,654	25,757	0.4	-0.1
간호예방적 방문입욕개호	-	-	2,296	2,136	2,141	0.2	-3.4
간호예방적 방문간호	-	-	55,576	57,391	59,290	3.3	3.3
간호예방적 방문재활	-	-	43,996	46,337	48,414	4.5	4.9
간호예방적 거택요양관리지도	-	-	120,344	124,353	128,407	3.3	3.3
간호예방적 통원개호	-	-	20,374	21,961	23,345	6.3	7.0
간호예방적 통원재활	-	-	6,353	6,473	33,395	415.9	129.3
간호예방적 단기입소 생활개호	-	-	6,436	6,947	7,241	4.2	6.1
간호예방적 단기입소 요양개호	-	-	5,956	5,688	5,578	-1.9	-3.2
간호예방적 특정시설 입소자 생활개호	-	-	2,454	2,751	2,895	5.2	8.6
간호예방적 복지용구 대여	-	-	7,602	7,179	6,893	-4.0	-4.8
6. 지역밀착형 간호예방서비스							
간호예방적 인지증대응형 통원개호	-	-	2,920	3,192	3,326	4.2	6.7
간호예방적 소규모다기능형 거택개호	-	-	539	1,215	1,663	36.9	75.7
간호예방적 인지증대응형 공동생활개호	-	-	8,502	9,299	9,379	0.9	5.0

자료: 일본 WAMNET

주: 지역밀착형 서비스, 간호예방서비스, 지역밀착형 간호예방서비스는 2006년 4월에 신설됨

## 2.2 국내 환경 변화

### 1) 법·제도

우리나라는 2005년 5월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여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2006년 12월에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을 제정하여 노인요양서비스를 포함한 고령친화산업 범위 및 고령친화산업을 지원·육성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2007년 4월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여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여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 및 재가급여(복지용구 포함)를 제공하여 국가에서 공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시설급여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하고,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제공)를 말한다.

표 II-1-9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법 제23조)

구분	종류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재가급여	방문요양서비스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방문목욕서비스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방문간호서비스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주야간보호서비스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단기보호서비스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복지용구 제공 및 지원서비스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
특별 현금급여	가족요양비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를 지급
	특례요양비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당해 수급자에게 특례요양비로 지급
	요양병원간병비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요양병원간병비로 지급

노인전문병원은 노인복지법에서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을 말하며, 노인전문병원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노인복지법을 준용하고, 이외의 규정은 「의료법」의 규정을 준용하게 된다.

표 II-1-10 노인전문병원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노인전문병원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제3항관련)	
1. 설비시설	
가. 물리치료실	
나. 한방요법실(한방요법실을 두는 경우에 한한다)	
2. 설비기준	
가. 입원실	입원실에는 의사 또는 간호사를 신속하게 호출할 수 있는 비상연락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물리치료실	물리치료실에는 노인의 생활훈련 또는 재활훈련에 필요한 도구·장비 및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3. 직원배치기준	
가. 물리치료사(병원당 1인 이상을 두되, 연평균 1일 입원환자가 100인 이하인 경우에는 1인을 두고,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00인마다 1인씩을 더 두어야 한다)	
나. 사회복지사(병원당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 2) 국내 시장 현황

### 가. 요양서비스 기관 현황

○ 2010년 요양서비스 기관은 14,979개소이며, 정원은 139,397명으로 나타나 전년 대비 각각 419개소, 18,227명이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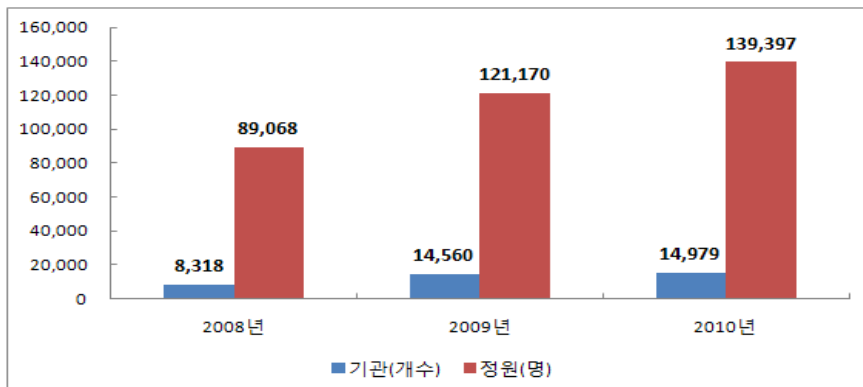


그림 II-1-4 요양서비스 기관 현황

자료 : 보건복지부 통계포털, 2009년 장기요양보험주요통계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털 통계자료실, 2010년 장기요양보험 주요통계

주 : 연도말 지급기준

- 설립구분별 장기요양기관은 2009년 14,560개소로 전년대비 75.0%, 정원 121,170명으로 36.0%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세부적으로 나누어보면 지방단체가 182개소에서 227개소로 24.7% 증가하였고 정원도 6,796명에서 7,817명으로 15% 증가하였다. 그러나 전체적인 비중으로 보면 2008년 2.1%에서 2009년 1.6%로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 법인기관은 3,504개소에서 3,889개소로 전년대비 11.0%, 정원은 56,829명에서 70,651명으로 24.3% 증가하였다.
- 개인기관은 4,856개소에서 10,135개소로 전년대비 108.7%, 정원은 24,696명에서 42,013명으로 전년대비 70.1%로 장기요양기관 중에 증가율이 가장 컸다. 그로 인하여 개인기관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8년 55.4%에서 69.6%로 늘어났다. 한편 기타기관은 226개소에서 309개소로 전년대비 36.7% 증가하였지만 정원은 747명에서 689명으로 전년대비 7.8% 감소하였다.

표 II-1-11 설립구분별 장기요양기관 현황

(단위 : 개소, 명)

	2008년		2009년		전년대비 증가율	
	기관	정원	기관	정원	기관	정원
계	8,318	89,068	14,560	121,170	75.0	36.0
지방단체	182	6,796	227	7,817	24.7	15.0
법인	3,504	56,829	3,889	70,651	11.0	24.3
개인	4,856	24,696	10,135	42,013	108.7	70.1
기타	226	747	309	689	36.7	-7.8

자료 : 보건복지부 통계포털, 2009년 장기요양보험주요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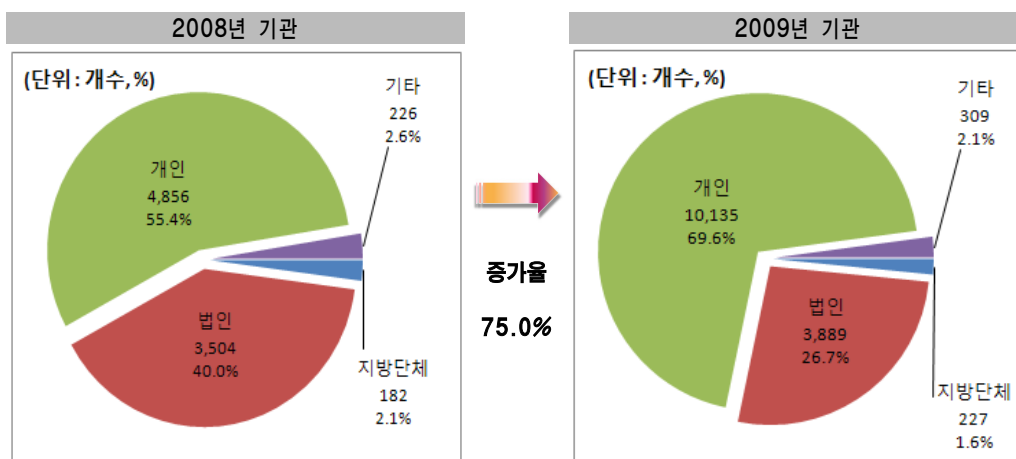


그림 II-1-5 설립구분별 장기요양기관 현황

자료 : 보건복지부 통계포털, 2009년 장기요양보험주요통계

- 급여종류별 재가요양기관은 방문요양기관이 4,206개소에서 8,446개소로 100.8%, 방문목욕기관은 2,959개소에서 6,279개소로 112.2%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 그 뒤로 단기보호기관이 790개소에서 1,368개소로 73.2%, 주야간보호기관이 59.4%, 복지옹구기관이 50.8%, 방문간호기관이 32.9%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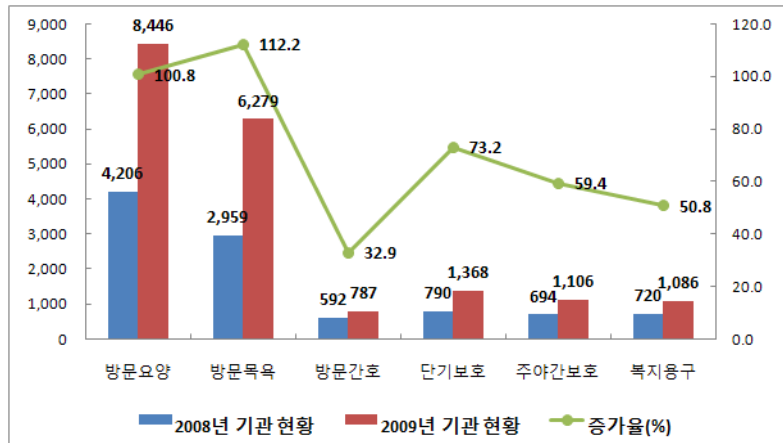


그림 II-1-6 급여종류별 재가요양기관 현황

자료 : 보건복지부 통계포털, 2009년 장기요양보험주요통계

- 급여종류별 시설요양기관은 노인요양시설이 522개소에서 725개소로 38.9%, 노인요양시설(구법)은 375개소에서 482개소로 28.5%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 또한 노인전문요양시설이 1.2%의 미미한 증가율을 기록한 반면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은 191.0%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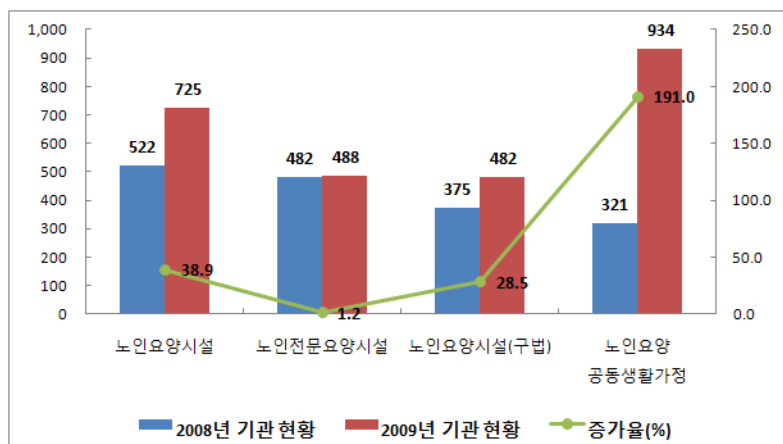


그림 II-1-7 급여종류별 시설요양기관 현황

자료 : 보건복지부 통계포털, 2009년 장기요양보험주요통계

- 2009년 급여종류별 장기요양기관 14,560개소 중 방문요양기관이 8,446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방문목욕기관(6,279개소), 단기보호기관(1,368개소), 주야간보호기관(1,106개소), 복지용구기관(1,086개소) 순이었다.
- 급여종류별 장기요양기관 정원 121,170명 중 노인요양시설의 정원이 31,56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노인전문요양시설 29,159명, 노인요양시설(구법) 19,492명 순으로 정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12 급여종류별 장기요양기관 현황

(단위 : 개소, 명)

급여종류별	2008년		2009년	
	기관	정원	기관	정원
계	8,318	89,068	14,560	121,170
방문요양	4,206	-	8,446	-
방문목욕	2,959	-	6,279	-
방문간호	592	-	787	-
단기보호	790	13,075	1,368	14,677
주야간보호	694	7,015	1,106	18,302
복지용구	720	-	1,086	-
노인요양시설	522	20,703	725	31,567
노인전문요양시설	482	28,478	488	29,159
노인요양시설(구법)	375	17,043	482	19,492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321	2,754	934	7,973

자료 : 보건복지부 통계포털, 2009년 장기요양보험주요통계

- 급여종류별 총요양비는 방문요양비가 8,285억 원(2009년)에서 1조 2,825억 원(2010)으로 가장 컸으며 전체 요양비에서 절반에 가까운 비중(46.7%, 2010)을 차지하였다.
- 노인전문요양시설(구법)은 3,795억 원(2009)에서 3,801억 원(2010)으로 약간 늘었으나 비중은 19.2%(2009)에서 13.8%(2010)로 줄어들었다. 노인요양시설(구법)은 요양비와 비중이 모두 줄었으며 그 외 기관은 앞에 열거한 기관보다 상대적으로 요양비와 비중이 작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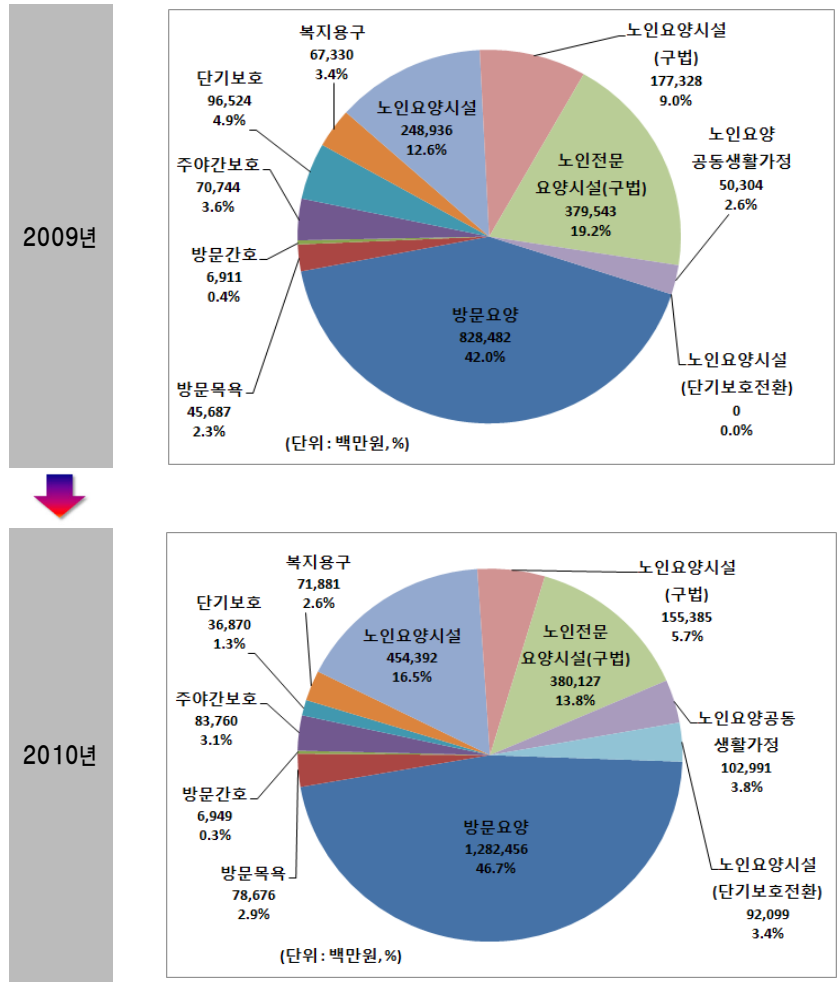


그림 II-1-8 연도별 급여종류별 총요양비 현황

자료 : 보건복지부 통계포털, 2009년 장기요양보험주요통계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털 통계자료실, 2010년 장기요양보험 주요통계  
 주 : 각 연도별 결산 기준  
 노인요양시설(단기보호전환)은 2010년 3월부터 시행

○ 노인전문병원은 2006년 83개소에서 2009년 61개소로 감소하였다가 2010년에 77개소, 입소 정원 12,207명으로 2009년 대비 시설은 26.2%, 입소정원은 42.4%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표 II-1-13 연도별 노인전문병원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전년 대비 증감률	
	시설수	입소정원	시설수	입소정원	시설수	입소정원	시설수	입소정원	시설수	입소정원
노인전문병원	72	10,096	78	11,047	61	8,575	77	12,207	26.2%	42.4%

자료 : 보건복지부 통계포털, 2011년 노인 복지시설 현황



**나. 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비 현황**

- 2010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는 총 622,346명이며 이 중 인정자는 315,994명으로 50.8%인 것으로 나타났다.
- 2009년 인정자 중 65세 이상 인정자 비율은 92.7%이며, 2010년은 92.5%인 것으로 나타났다.
- 65세 이상 장기요양보험 신청자수는 586,449명으로 전체의 94.2%를 차지하였고, 인정자수는 292,314명으로 전체의 92.5%로, 신청자수 대비 49.8%가 인정되었다.

표 II-1-14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 및 인정자 현황

(단위 : 명, %)

구분	2009년				2010년				비율 (%)	
	신청자		인정자		신청자		인정자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총계	376,032	100.0	258,476	100.0	622,346	100.0	315,994	100.0	50.8	
65세 미만	계	17,591	4.7	18,987	7.3	35,897	5.8	23,680	7.5	66.0
	남자	9,628	2.6	10,941	4.2	20,914	3.4	13,790	4.4	65.9
	여자	7,963	2.1	8,046	3.1	14,983	2.4	9,890	3.1	66.0
65세 이상	계	358,441	95.3	239,489	92.7	586,449	94.2	292,314	92.5	49.8
	남자	97,137	25.8	64,916	25.1	155,642	25.0	78,001	24.7	50.1
	여자	261,304	69.5	174,573	67.5	430,807	69.2	214,313	67.8	49.7

자료 : 보건복지부 통계포털, 2009년 장기요양보험주요통계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털 통계자료실, 2010년 장기요양보험 주요통계  
 주 : 연도말 지급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 총요양비는 1조 9,718억 원(2009년)에서 2조 7,456억 원(2010년)으로 전년 대비 39.2% 증가하였다. 그 중 재가요양서비스의 총요양비는 전년 대비 39.9% 증가하였으며 시설요양서비스의 총요양비는 38.4% 증가하였다.
- 연령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65세 미만의 재가요양서비스의 총요양비는 1,252억 원이고 65세 이상은 1조 4,353억 원으로 각각 48.4%, 39.2%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 시설요양의 경우 65세 미만의 총 요양비가 528억 원, 65세 이상이 1조 1,322억 원으로 각각 45.5%, 38.1%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표 II-1-15 연도별 급여종류별 총요양비 현황

(단위 : 백만원, %)

		전체	재가	시설
2009년	합계	1,971,789	1,115,679	856,111
	65세미만	120,722	84,426	36,296
	65세이상	1,851,068	1,031,253	819,815
2010년	합계	2,745,586	1,560,592	1,184,994
	65세미만	178,047	125,248	52,799
	65세이상	2,567,539	1,435,344	1,132,195
증가율	합계	39.2	39.9	38.4
	65세미만	47.5	48.4	45.5
	65세이상	38.7	39.2	38.1

자료 : 보건복지부 통계포털, 2009년 장기요양보험주요통계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털 통계자료실, 2010년 장기요양보험 주요통계  
 주 : 연도말 지급기준

- 연령대별 장기요양 급여실적을 비교해보면 65세 미만 실인원이 23,141명으로 전년 19,173명보다 증가하였고, 총요양비와 요양급여비도 1,207억 원에서 1,780억 원, 1,082억 원에서 1,589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 65세 이상의 실인원은 325,420명으로 전년 272,217명보다 증가하였고 총요양비와 요양급여비도 1조 8,511억 원에서 2조 5,675억 원, 1조 6,287억 원에서 2조 2,434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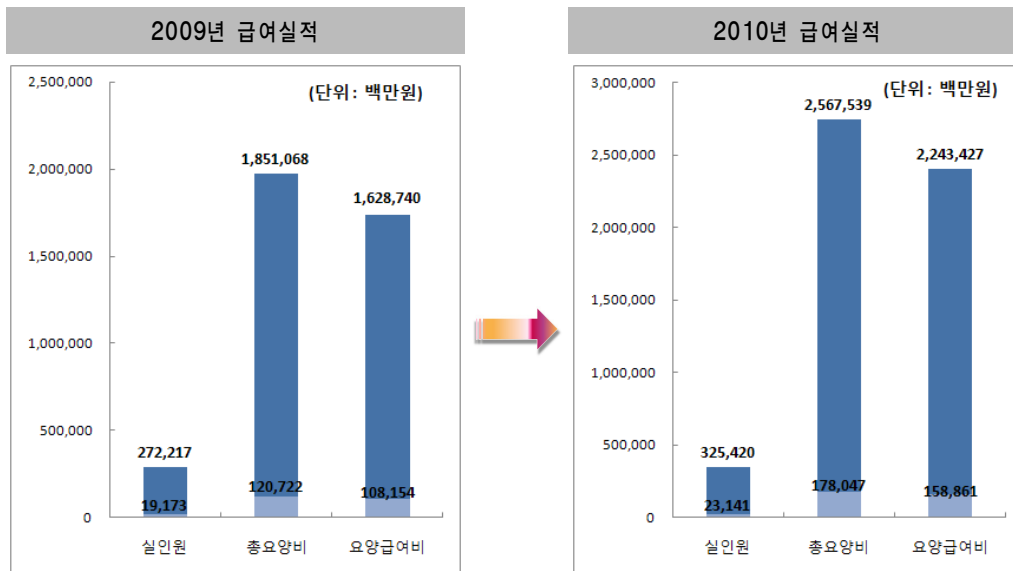


그림 II-1-9 연령대별 장기요양 급여실적 현황

자료 : 보건복지부 통계포털, 2009년 장기요양보험주요통계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털 통계자료실, 2010년 장기요양보험 주요통계  
 주 : 연도말 지급기준

- 연도별 급여종류별 요양급여비의 2009년 총 요양비는 1조 9,718억 원이고 2010년 총 요양비는 2조 7,456억 원으로 전년대비 39.2%가 증가하였으며, 요양급여비의 경우 1조 7,369억 원(2009년)에서 2조 4,023억 원(2010년)으로 전년대비 38.3%가 증가하였다.
- 재가요양서비스 중에서 방문목욕은 총 요양비 72.2%, 요양급여비 70.2%로 전년대비 증가율이 가장 컸으며 단기보호의 경우 총요양비 및 요양급여비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각각 -61.8%, -61.7%의 마이너스 성장으로 나타났다.
- 시설요양서비스 중에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총요양비 및 요양급여비 전년대비 증가율은 각각 104.7%, 106.6%로 가장 컸으며, 노인요양시설(구법)은 총요양비 -12.4%, 요양급여비 -12.5%로 마이너스 성장이 나타났다.

표 II-1-16 연도별 급여종류별 요양급여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9년		2010년		증가율	
	총요양비	요양급여비	총요양비	요양급여비	총요양비	요양급여비
계	1,971,789	1,736,894	2,745,586	2,402,287	39.2	38.3
방문요양	828,482	733,447	1,282,456	1,129,639	54.8	54.0
방문목욕	45,687	40,599	78,676	69,097	72.2	70.2
방문간호	6,911	6,194	6,949	6,175	0.5	-0.3
주야간보호	70,744	61,834	83,760	73,142	18.4	18.3
단기보호	96,524	84,289	36,870	32,283	-61.8	-61.7
복지용구	67,330	59,234	71,881	63,699	6.8	7.5
노인요양시설	248,936	211,776	454,392	388,337	82.5	83.4
노인요양시설(구법)	177,328	156,913	155,385	137,291	-12.4	-12.5
노인전문요양시설(구법)	379,543	340,252	380,127	338,342	0.2	-0.6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50,304	42,355	102,991	87,519	104.7	106.6
노인요양시설(단기보호전환)	-	-	92,099	76,764	-	-

자료 : 1. 보건복지부 통계포털, 2009년 장기요양보험주요통계

2.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털 통계자료실, 2010년 장기요양보험 주요통계

주 : 1. 연도말 지급기준

2. 노인요양시설(단기보호전환)은 2010년 3월부터 시행

- 연령별 1인당 연간 총요양비 크기별 진료비를 비율로 보면 65세 이상이 93.5%, 65세 미만 이 6.5%로 65세 이상의 진료비 비율이 매우 컸으며, 이는 전년과 유사하였다.
- 진료비비율은 5,000,001 ~ 10,000,000원이 35.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10,000,001 ~ 15,000,000원이 27.4%, 15,000,001 이상이 22.6%, 1,000,001 ~ 5,000,000원이 8.1%, 1,000,000 이하가 0.5%로 그 비중이 가장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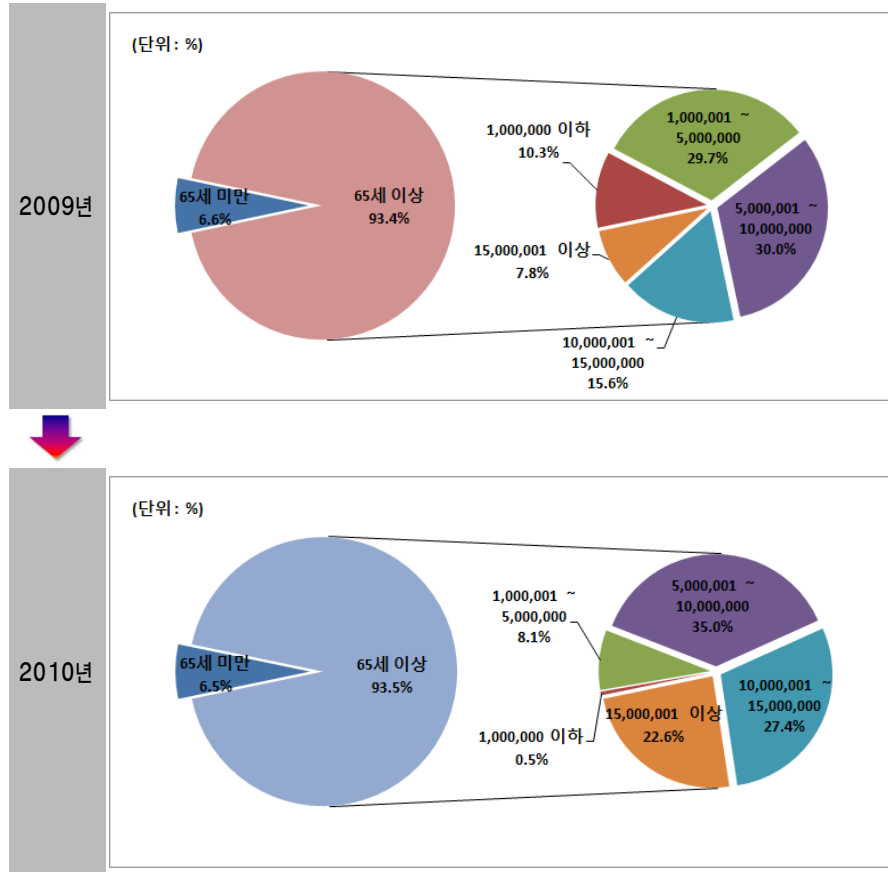


그림 II-1-10 연도별 연령별 1인당 연간 총요양비 크기별 진료비 비율

자료 : 1. 보건복지부 통계포털, 2009년 장기요양보험주요통계  
 2.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털 통계자료실, 2010년 장기요양보험 주요통계  
 주 : 각 연도별 결산 기준

## 2.3 국내 시장규모 및 전망

### 1) 시장규모 분석 방법

#### 가. 기준연도 시장규모 추정 방법

모태산업(요양산업)의 시장규모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자료원으로 장기요양보험통계<sup>10)</sup> (국민건강보험공단)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 시장규모 분석을 위한 자료로 이용하였다.

고령친화 영양산업은 크게 재가요양서비스와 시설요양서비스로 구분되며, 장기요양보험

10) 2009년 및 2010년 장기요양보험의 총요양비를 이용하여 요양 시장규모 추정 및 예측하였다.

의 재가요양서비스 및 시설요양서비스의 시장규모는 장기요양보험통계 중 총요양비를 이용하여 정의하였으며, 향후 모태산업 시장규모를 전망하기 위하여 총요양비를 각각의 값으로 환산하여 변수로 나타냈다.

각 연도 장기요양보험 신청자 중 인정자에 대한 장기요양보험 총요양비를 모태산업 시장 규모로 규정하였으며, 평균요양비를 이용하여 가중치<sup>11)</sup>를 계산하였다. 그리고 65세 인정자에 해당하는 총요양비를 고령친화 요양산업 시장규모로 정의하였으며, 평균요양비를 이용하여 가중치를 계산하였다.

$y_i = (\text{인정자수}_i) \times (\text{평균요양비}_i) \times (12\text{개월}) \times (\text{가중치}_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ath>y_i</math> : <math>i</math>연도의 고령친화 요양산업 시장규모</li> <li>▪ 인정자수<math>_i</math> : <math>i</math>연도 65세 이상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li> <li>▪ 가중치<math>_i</math> : <math>i</math>연도 전체 금액과 [(인정자수) × (평균요양비) × (12개월)] 차이를 보정해주는 값</li> </ul> <p>※ 시장규모 전망(예측)을 위하여 전체 금액을 각각의 값으로 환산함</p>

## 나. 시장규모 전망(예측) 방법

2020년까지의 모태산업 및 고령친화 요양산업의 시장규모 전망은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의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의 증가를 반영하여 분석하였으며, 또한 2009년과 2010년 장기요양보험 인정자의 증가를 반영하여 전망하였다.

고령친화 요양산업의 시장규모 예측은 65세 인정자의 증가 및 65세 이상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정자의 비중을 반영하여 분석 하였다. 모태산업 시장규모 전망은 전체 인정자의 증가 및 65세 미만 인구 대비 65세 미만 인정자의 비중을 반영하여 65세 미만에 대한 요양산업 시장규모를 전망하였으며, 앞에서 분석한 고령친화 요양산업 시장규모 전망결과를 합하여 나타냈다.

## 2) 시장규모 추정 및 예측 결과

### 가. 기준연도 시장규모 추정 결과

- 2010년 고령친화 요양산업 시장규모는 장기요양보험 전체 인정자 중 65세 이상 인정자의 총요양비로 2조 5,675억 원으로 나타났다.

11) 향후 시장규모 예측에서 인정자가 재가 및 시설요양서비스를 중복으로 이용하는 경우 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를 보정해 주기 위하여 가중치를 계산함

표 II-1-17 고령친화 요양산업 시장규모

(단위 : 명, 백만원, %)

	비중	인구	인정자(65세 이상)	평균요양비	시장규모(총요양비)
2009년	고령친화 요양산업	5,192,710	239,489	563,905	1,851,068(93.88)
	65세 미만	43,553,983	18,987	563,905	120,722
모태산업 시장규모		1,971,789			
2010년	고령친화 요양산업	5,356,853	292,314	656,410	2,567,539(93.52)
	65세 미만	43,517,686	23,680	656,410	178,047
모태산업 시장규모		2,745,586			

자료 : 1. 보건복지부 통계포털, 2009년 장기요양보험주요통계

2.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털 통계자료실, 2010년 장기요양보험 주요통계

주 : 연도말 지급기준

- 고령친화 요양산업 전략품목 시장규모를 분석<sup>12)</sup>한 결과 2010년에는 1조 1,993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요양산업 시장규모의 46.7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18 고령친화 요양산업 전략품목 시장규모

(단위 : 백만원, %)

연도	모태산업(A)	고령친화 요양산업(B)	비중(B/A)	전략품목(방문요양)(C)	비중(C/B)
2009년	1,971,789	1,851,068	93.88	777,759	42.02
2010년	2,745,586	2,567,539	93.52	1,199,291	46.71

#### 나. 시장규모 전망(예측) 결과

- 앞에서 설명한 방법을 활용하여 향후 고령친화 요양산업 시장규모를 추계하여 본 결과, 고령친화 요양산업 시장규모는 2015년 6조 2,234억 원, 2020년 12조 5,188억 원 정도로 추정되며 2010년-2020년 연평균성장률(CAGR)은 17.17%인 것으로 나타났다.
- 2010년 요양산업 대비 고령친화 요양산업 시장규모의 비중은 93.5%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 94.4%, 2020년 95.2% 정도의 비중으로 전망한다.

<sup>12)</sup> 요양산업 시장규모에서 고령친화 요양산업 시장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전략품목에 대한 시장규모를 분석하였다.

표 II-1-19 고령친화 요양산업 시장규모 전망(예측)

(단위 : 백만원, %)

연도	2010년	2015년	2018년	2020년	CAGR(10-20)
고령친화 요양산업	2,567,539	6,223,446	9,520,270	12,518,750	17.17
비중	93.52	94.36	94.81	95.22	-
모태산업(요양산업)	2,745,586	6,595,568	10,041,115	13,146,654	16.59

### 3. 전략품목 및 지원정책

#### 3.1 전략품목 선정

##### 1) 선정기준

전략품목 선정의 전단계로서 고령소비자 대상 수요조사 결과 및 전문가 의견을 통하여 전략서비스군을 선정하였다. 고령소비자 대상 수요조사 결과 60.5% 재가서비스를 원했고, 39.2%가 시설서비스를 원해서, 재가서비스에 대한 수요도가 높음을 알 수 있고, 그 중에서도 50.2%가 가사지원을 위해 현재 운영하는 요양서비스 중에서도 방문 요양을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의견으로는 선진 외국에서는 요양서비스도 인본주의를 강조하여 탈시설화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또한 그로 인해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기대수명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재가서비스 이용이 더 많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현재의 요양서비스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일본 등 선진 외국과 같이 등급에 진입하지 않도록 예방 및 재활지원서비스가 반드시 포함되어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요양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한편, 노인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건강을 중요시함으로써 중풍, 치매, 뇌졸중, 신체장애, 정신질환 등 노인성 질환의 예방을 위한 양질의 전문적인 의료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를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재가요양서비스와 신규로 요양 및 의료서비스 측면에서 공통으로 요구되는 노인성 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예방지원서비스를 전략서비스군으로 선정하였고, 예방지원서비스는 건강검진, 질병상담 및 관리서비스, 영양개선서비스, 운동기능향상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세부 품목을 설정하였다.

표 II-1-20 고령친화요양산업 전략서비스군 도출

구분	수요조사	전문가 의견	선정여부	비고
시설요양서비스	×	×	×	
재가요양서비스	◎	◎	○	
노인의료서비스	×	×	×	
예방지원서비스	◎	◎	○	신규서비스 발굴

\* 수요조사 결과는 재가요양서비스의 경우 60.5%를, 예방지원서비스는 재가서비스 선택자 중 29% 차지

## 2) 전략품목 선정

전략서비스군으로 선정된 재가요양서비스와 예방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고령소비자 수요조사 결과 및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각 서비스별 전략품목을 선정하였다. 이 때 적용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전략품목 선정 기준은 고령소비자의 요구도가 가장 중요하므로 시장구 매력도 중요한 기준이 되었으며, 사회복지서비스의 일종으로 공공성도 고려하였다.

표 II-1-21 고령친화요양산업 전략품목 도출

전략서비스	전략품목
재가요양서비스	방문요양
예방지원서비스	건강검진, 질병상담 및 관리서비스

고령소비자 수요조사 결과 재가서비스 중에서 가장 받고 싶은 서비스는 가사지원(50.2%)으로 나타나, 현재의 재가요양서비스 중에서는 방문요양과 가장 가깝고, 이를 반영하듯이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2010년 방문요양서비스는 총요양비의 46.7% 차지할 만큼 크고, 고령화가 더 빨리 진행된 일본의 경우에도 방문개호서비스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예방지원서비스는 2000년 개호보험을 실시한 일본에서 2006년에 경증고령자(요지원, 요개호1)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상태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시스템이 도입되었다. 기존의 개호등급을 6단계(요지원, 요개호1~요개호5)에서 7단계(요지원1~요지원2, 요개호1~요개호5)로 변경하고, 동시에 요지원 및 요개호상태가 될 가능성이 있는 특정고령자의 개호예방을 위해 지역지원사업이 신설되었고, 추진하는 기관으로 지역포괄지원센터가 창립되었다. 이용 가능한 급여도 예방급여가 신설되었다. 예방급여는 기존의 서비스 중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방문개호, 통소개호, 통소재활, 복지용구대여, 방문간호, 단기보호, 그



룹흡 등이 해당되며, 새로운 서비스로는 근력기능향상 및 영양개선, 구강기능향상과 같은 서비스가 해당된다. 지역지원사업 중 개호예방사업은 65세 이상의 모든 고령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하고, 요개호 및 요지원이 될 가능성이 있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운동기능의 향상, 영양개선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예방적 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2006년 일본 정부는 ‘고령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보장법’을 제정하여 공적 건강보험 시스템을 통한 만성질환 예방프로그램을 2008년까지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법에 따라 40세 이상을 중심으로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 뇌졸중 등의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매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건강관리 참여정도 결정, 지도/조정 절차를 거쳐 전문가를 통한 식습관, 운동 등 질병상담 및 관리서비스를 받고 지속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7년 4월에 만 40세, 만 66세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검진을 확대하여 일본과 같이 예비고령자(만 40세 이상)부터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지속적인 질병상담과 건강관리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 속에서 장기요양보험 및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를 막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방지원서비스 측면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며, 그 수단 중에 대표적인 것이 건강검진을 통한 증상 및 질환 진단, 그에 따른 질병상담 및 관리라고 할 수 있다.

## 3.2 제약요인 및 정책과제

### 1) 제약요인

요양산업은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가요양서비스 및 예방지원서비스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3등급 형태에서 예방을 요하는 사람을 추가하여 확대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재가서비스와 시설서비스만을 단순 지원하는 체계에서 예방지원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2008년 이후 장기요양기관이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부당청구, 서비스 질 저하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을 평가하고 있지만, 급여가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여서 제3기관을 통한 서비스 질평가를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이 수반되어야 한다. 요양산업은 주로 사람을 통한 서비스 제공이므로, 요양보호사 등 전문인력의 자질 강화와 처우 개선을 통한 고령소비자 및 가족의 만족도 제고도 고려해야 한다. 요양산업은 사회복지서비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타 산업보다 국가적 지원을 많이 요하는 산업으로, 서비스 기반이 구축된다면 사회복지서비스와 민간서비스가 융합되어 고령사회에 대비한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

## 2) 정책과제

요양산업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제약요인들을 점차 해소하고, 중장기적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첫째, 요양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인 요양보호사 및 노인전문간호사 등의 전문성 강화와 그들의 처우개선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복지법』의 개정을 통해 요양보호사 양성 및 자격관리체계를 강화하도록 개정하고, 요양보호사 양성기관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요양보호사 자격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의료비 절감을 위해서 등급외자 중 예방을 요하는 사람을 추가하여 등급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개정하여 예방이 필요한 자로 확대하고, 그에 따라 지원하는 서비스도 지금의 단순한 재가 및 시설요양서비스에 예방지원서비스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요양 및 의료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제3기관을 통한 서비스 질 평가가 수행되어야 한다. 서비스를 잘 제공하고 있는 업체에게는 인센티브 제공하여 건전한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

넷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상향 평준화를 위해 시설환경 및 서비스 표준화를 위한 지침 및 서비스 매뉴얼 개발이 필요하다.

다섯째, 신규로 발굴한 예방지원서비스는 실태조사를 통한 산업분석 결과를 토대로 산업 규모, 추진전략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전략품목 외에 고령소비자 실태조사 결과 가사지원, 이동지원, 간단한 심부름 대행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어, 민간시장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표 II-1-22 고령친화 요양산업 정책과제

정책지원
(1) 재가요양서비스 지원
- 법제도 개선(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시설 및 서비스 표준화
- 제3기관을 통한 서비스 질 평가제도 도입
(2) 예방지원서비스 지원
- 법제도 개선(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료법)
- 현황과약을 위한 실태조사
- 단계별 시범사업 추진
- 서비스 제공기관 육성

### 3.3 정책 기대효과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의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 시킴으로써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전문적 서비스 제공을 통해 노인의 상태에 따라 예방서비스부터 상태의 유지 및 호전 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노인의 만족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전통 가치관에 따라 가족이 직접 수발해야한다는 강박 관념에서 벗어나 우리 가족이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윤리적/도덕적 스트레스를 경감시킴으로서 가족해체를 예방함은 물론이고 고령화 사회의 진전과 더불어 새로이 등장하고 있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사회안전망을 보완 확대하는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시설 투자에 따른 경제적 과급효과를 비롯하여, 관련 분야 일자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여성 등 비공식 요양노동의 사회경제활동 활성화가 기대된다. 중증의 노인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최소 1명 이상의 가족구성원이 본인의 사회적 활동과 근로소득활동을 거의 포기하게 되는데, 사회보장을 통해 이들이 노인부양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이 중 일부는 근로소득을 취할 수 있는 경제활동에 복귀하게 됨으로써 사회경제적 편익이 발생될 수 있다.



## 제2장 고령친화 의약품산업

### 1. 개요 및 범위

#### 1.1 고령친화 의약품산업의 범위

고령친화 의약품산업의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우선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이용하여 의약품 산업의 범위를 설정하고, 이 중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주로 사용하는 의약품군을 분류하였다.

한국표준산업분류(9차, 2008)상에서 의약품 관련 분류를 살펴보면,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46441. 의약품 도매업, 47811.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등이다.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은 ‘인간 또는 동물의 각종 질병을 진단, 치료, 예방하는데 사용되는 의약품 및 의료용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혈액, 미생물 및 그 배양액 등으로 만들어지는 백신, 항독제 등의 생물학적제제 및 합성품, 천연약물 유효성분인 의료화학제제 및 원료형태의 항생물질, 약용식물 및 동물의 약용 부분이나 분비물 등을 조제·가공한 생약제제, 단일 또는 몇 가지 종류의 의약제제를 배합·조제하여 분말제, 정제, 캡슐제, 시럽제, 주사제, 연고 등 일정한 형태의 의약제제품과 의료용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되며, 그 구체적인 구분은 다음과 같다.

####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211. 기초 의약품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 2110. 기초 의약품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 21101. 의약품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2. 의약품 제조업

2121.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22. 한의약품 제조업

21220. 한의약품 제조업

2123.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213.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213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의약품 도매업은 최종 소비용 의약품 및 의약제제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되며, 다음의 분류에 따른다.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464. 가정용품 도매업

4644. 의약품, 의료용품 및 화장품 도매업

46441. 의약품 도매업

의약품 소매업은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는 각종 의약품과 한의약, 가정용 또는 위생용의 의료용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그 분류표상에서 다음과 같이 위치한다.

47. 소매업; 자동차 제외

478.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4781. 의약품, 의료용 기구, 화장품 및 방향제 소매업

47811.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한편, 의약품에 대해서는 약사법 제2조 4항에서 가. 대한약전(大韓藥典)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 나.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다.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藥理學的)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고령친화 의약품은 의약품 중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의약품, 즉인구의 고령화에 의해 수요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노인성 질병에 대한 의약품으로 정의하

며, 고령친화 의약품산업은 고령친화 의약품의 제조업 및 이들 의약품의 도·소매업으로 설정하였다.

## 1.2 고령친화 의약품산업의 특징

고령친화 의약품산업은 의약품산업 중에서 의약품의 범위를 고령자가 주로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한정된 것으로 일반적인 의약품산업의 특징을 공유한다. 의약품의 특성과 함께 일반적인 의약품산업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의약품은 질병치료의 중요한 수단으로 보건의료의 재화로서의 특성을 일정정도 갖고 있다. 보건의료의 재화로서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sup>13)</sup>.

첫째는 정보의 비대칭성이다. 건강과 관련된 지식은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급자에게 편중되어 있으며, 따라서 소비자의 무지가 존재한다.

둘째는 수요와 공급의 불확실성이다. 질병발생의 시기 및 종류를 예측하기 어려우며, 치료의 결과가 불확실하다.

셋째는 공급의 법적 독점이다. 보건의료서비스는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 생산권이 한정된 면허권자에게만 주어진다.

넷째, 보건의료서비스는 우량재로서 개인의 소비가 국가 전체에도 편익을 제공하며, 따라서 국민 누구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을 사용할 권리가 건강권으로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다섯째, 외부효과를 갖는다. 즉 보건의료서비스의 소비로 인한 효과가 개인뿐만 아니라 주위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의약품의 특성으로 인하여 의약품산업은 다른 산업과 구별되는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갖는다.<sup>14)</sup>

첫째, 의약품산업은 효과와 안전성을 보장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개별 소비자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품의 생산 및 판매 전 과정에 정부가 개입하여 적절하게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는다.

둘째,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받는다. 의약품산업은 첨단 기술 및 지식 집약 산업으로 다른 제품에 비하여 개발 비용이 막대한 반면 복제는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특허제

13) 보건경제학(양봉민, 2002)을 요약·정리함.

14) 의약품산업분석보고서(보건산업진흥원, 2010)에서 일부 발췌함.

도로 개발자에 대해 법적 독점권을 부여한다.

셋째, 의약품 가격은 비탄력적인 특성을 갖는다. 의약품의 경우 다른 상품과는 달리 가격이 높아지더라도 소비가 크게 감소하지 않는다. 따라서 다른 산업보다 경기 변동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

넷째, 일반 판매용 의약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약품은 최종선택권이 소비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자에게 있다. 따라서 제약기업들은 이들 의약품의 마케팅은 일반소비자가 아니라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상의 의약품산업의 특징이외에 고령친화 의약품산업은 고령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의약품을 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몇가지 특징을 갖는다.

첫째, 고령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이들의 의약품 사용이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빈번하기 때문에 산업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둘째, 고령자의 질병 특성상 고령친화 의약품은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이 대부분이며, 따라서 의약품의 개발에 있어서 안전성이 특히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환자고령자의 질병특성 및 신체적인 특성상 복용순응도를 높이기 위한 약물의 개발 및 약물정보 서비스의 제공이 특히 중요하게 부각된다.

## 2. 시장분석

### 2.1 세계 시장 변화

#### 1) 세계 시장 규모

- 2009년 세계 의약품 시장 규모는 8,373억 달러로 2002~2009년 동안 연평균 7.2% 성장하였다. 2002~2003년 9%에 이르던 성장률은 이후 성장 속도가 둔화되는 추세에 있다가 2009년 7%로 회복하였으며, 이러한 증가세는 향후 일정기간 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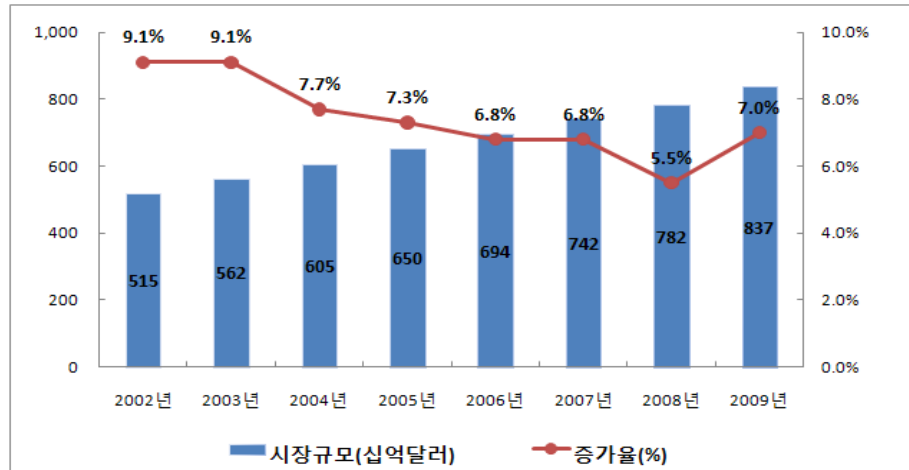


그림 II-2-1 의약품산업 세계시장 규모

자료 : 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0년 의약품산업 분석 보고서  
2. IMS Health(2010) IMS Health Market Prognosis

-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침체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계 의약품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크게 개발도상국들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노인인구 증가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은 블록버스터 신약의 특허만료 및 신약개발 환경 악화로 인한 승인 건수의 감소 등으로 성장이 둔화되고 있으나, 아시아, 중남미 및 아프리카 지역의 의약품 시장은 경제성장, 인구의 증가, 만성질환의 급증 등으로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고성장 추세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 또한, 세계적인 인구고령화 추세에 따라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질환에 대한 치료 시장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 경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만성질환이 전 세계 질병의 70%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이와 함께 소득증대 및 생활패턴의 변화로 보건의료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면서 의약품 분야에 대한 지출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 IMS Health(2010)에 따르면 2009년 기준, 아시아/아프리카/호주, 중남미의 시장규모는 1,545억 달러로 세계 시장의 18.5%에 그치고 있지만, 선진국들의 2009년 기준 향후 5년간 의약품 시장의 성장률이 6%이하임에 반해 아시아/아프리카/호주 및 중남미는 12-15%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향후 의약품 시장 확대에 이들 국가의 기여분은 매우 커 보인다.



표 II-2-1 지역별 세계 의약품 시장규모

(단위 : 억 달러, %)

지역	2009년		2008년	성장률		
	시장규모	전년대비 성장률	전년대비 성장률	2004-2009 CAGR	2010	2009-2014 CAGR
북미	3,238	5.5	1.9	5.2	3-5	3-6
유럽	2,639	4.8	7.0	6.6	3-5	3-6
아시아/아프리카/호주	1,066	15.9	15.0	13.9	13-15	12-15
일본	950	7.6	2.1	3.9	0-2	2-5
중남미	479	10.6	12.7	10.9	10-12	12-15
세계	8,373	7.0	5.5	6.7	4-6	5-8

자료 : 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0년 의약품산업 분석 보고서  
 2. IMS Health(2010) IMS Health Market Prognosis  
 주 : (E)는 예상치. 2009년 4분기 평균 환율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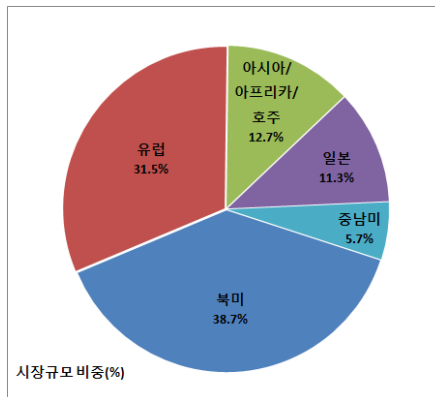


그림 II-2-2 지역별 세계 의약품 시장규모(비중)

자료 : 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0년 의약품산업 분석 보고서  
 2. IMS Health(2010) IMS Health Market Prognosis

- 세계 의약품 시장을 약효군별로 살펴보면, 상위 15개 약효군이 3,417억 달러로 전체 의약품 시장의 45.4%를 차지하였다. Oncologics(항암제)가 524억 달러로 2008년과 마찬가지로 가장 많이 판매되었고, 그 다음으로 Lipid Regulators(콜레스테롤 조절제), Respiratory Agents(호흡기질환 치료제)가 각각 353억 달러, 336억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 15개 약효군 가운데 Respiratory Agents, Antidiabetics(당뇨병치료제), Angiotensin II Antagonists(고혈압치료제), HIV Antivirals(HIV 항바이러스제) 등은 2008년 대비 10% 이상 판매액이 증가한 반면, Anti-epileptics(간질치료제), Erythropoietins(적혈구생성 촉진인자), Antidepressants(항우울제) 약효군은 2008년 보다 감소하였다.

○ 이들 약효군 중 항암제, 콜레스테롤조절제, 당뇨병치료제, 항정신병약, 고혈압치료제, 마약성·비마약성 진통제 등을 고령친화 의약품으로 구분할 때, 15개 약효군 중 7개 약효군이 고령친화 의약품군인데 이들의 비중은 55.3% 에 이르고 있고, 성장률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어 고령친화 의약품군의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표 II-2-2 약효군별 세계 시장규모

(단위 : 백만달러, %)

약효군	2007년	YoY	2008년	YoY	2009년	YoY
Oncologics (항암제)	41,949	15.8	49,438	13.4	52,372	8.8
Lipid Regulators (콜레스테롤 조절제)	34,141	-5.8	34,445	-1.2	35,281	4.9
Respiratory Agents (호흡기질환 치료제)	28,775	11.9	31,186	5.9	33,596	11.0
Antidiabetics (당뇨병 치료제)	24,401	10.8	27,548	10.1	30,406	13.4
Anti-ulcerants (궤양 치료제)	29,174	2.6	30,032	0.0	29,610	0.6
Angiotensin II Antagonists (고혈압 치료제)	19,418	14.0	22,998	13.3	25,209	11.5
Antipsychotics (항정신병약)	20,693	11.4	22,742	7.7	23,248	4.6
Antidepressants (항우울제)	19,581	-6.2	20,194	1.1	19,416	-1.3
Autoimmune agents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12,815	17.4	15,612	19.3	17,961	18.0
Platelet Aggregation Inhibitors (혈소판응집 억제제)	11,952	8.7	13,647	10.4	14,604	9.0
HIV Antivirals (HIV 항바이러스제)	101,699	12.8	12,280	12.7	13,758	14.9
Anti-epileptics (간질치료제)	15,136	13.7	16,792	9.8	12,995	-19.8
Narcotic analgesics (마약성 진통제)	9,530	12.9	10,534	8.9	11,235	8.6
Non-narcotic analgesics (비마약성 진통제)	10,451	7.9	11,187	4.1	11,174	7.3
Erythropoietins (적혈구생성촉진인자)	12,883	-8.3	11,467	-13.2	10,806	-4.1
15개 약효군 합계	301,598	10.3	330,102	9.5	341,671	3.5

자료 : IMS Health(2010) Topline Industry Data.

주 : 1. 시장규모는 분기별 환율 적용

2. YoY는 전년대비 성장률을 의미하며 환율 변동치를 정규화한 불변가격 성장률임(LC다달러)

3. 처방의약품 및 일부 OTC 포함, 의약품기업 및 도소매업의 판매액

4. 각 약효군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음

Oncologics L1, L2 &amp; Revlimid HIV Antivirals J5C

Lipid Regulators C10A &amp; C10C&amp;C11 Anti-epileptics N3A

Respiratory Agents R3 Narcotic analgesics N2A

Antidiabetics A10C,A10H,A10J,A10K,A10L,A10M,A10N,A10S,A10X Non-narcotic analgesics N2B

Anti-ulcerants A2B Erythropoietins B3C

Angiotensin II Antagonists C9C &amp; C9D &amp; C9X

Antipsychotics N5A

Antidepressants N6A

Autoimmune agents MIC &amp; Remicade &amp; Cimzia (from I4A)

Platelet Aggr. Inhibitors B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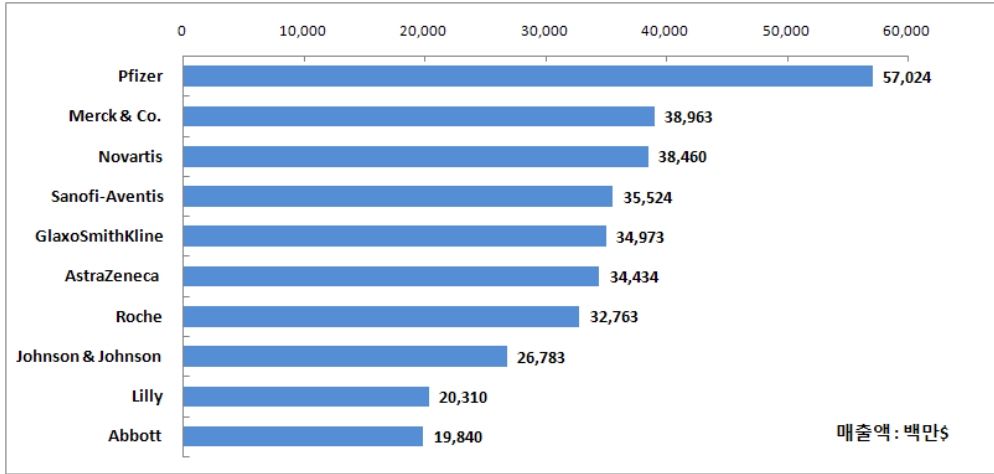


그림 II-2-3 세계 상위 10개 의약품 기업 판매 현황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0년 의약품산업 분석 보고서  
IMS Health(2009) IMS Health Midas

○ 2009년 Pfizer의 매출은 570억 달러로 전 세계 의약품 기업 가운데 1위를 차지하였다. Merck & Co.와 Novartis가 390억 달러, 385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여 각각 2,3위를 차지하였다. Johnson & Johnson의 매출은 전년대비 -10.7% 하락하여 상위 10개 기업 가운데 가장 크게 감소하였다.

표 II-2-3 세계 상위 10개 의약품 기업 판매 현황

(단위 : %)

기업(국가)	2009년		CAGR(05-09)
	비중	전년대비 성장률	
Pfizer(미국)	7.6	-2.9	-0.9
Merck & Co.(미국)	5.2	-1.3	3.7
Novartis(스위스)	5.1	4.6	6.9
Sanofi-Aventis(프랑스)	4.7	-2.6	3.2
GlaxoSmithKline(영국)	4.7	-5.0	0.5
AstraZeneca(영국)	4.6	5.6	9.0
Roche(스위스)	4.4	7.6	13.6
Johnson & Johnson(미국)	3.6	-10.7	0.0
Lilly(미국)	2.7	6.2	9.8
Abbott(미국)	2.6	2.2	7.8
Global Market	100.0	3.3	7.3

자료 : 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0년 의약품산업 분석 보고서  
2. IMS Health(2009) IMS Health Midas

- 세계 의약품 시장 매출 상위 10대 제품은 2001년 이후 Pfizer사의 Lipitor가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으며 2009년 133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그 뒤를 이어 Plavix, Nexium, Seretide가 각각 91억 달러, 82억 달러, 81억 달러의 순으로 나타났다. Crestor와 Abilify, Humira의 매출액이 2008년 대비 30~40%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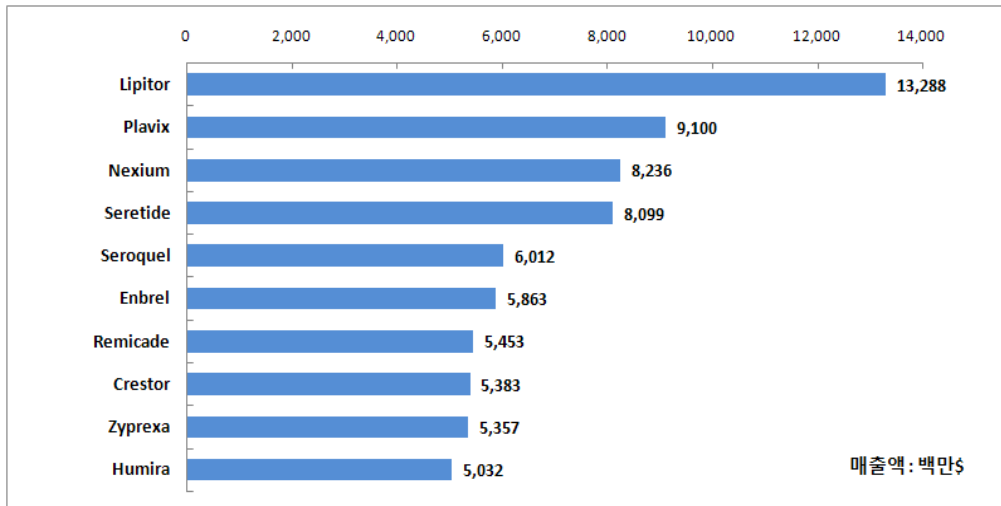


그림 II-2-4 2009년 세계시장 매출 상위 10대 의약품 판매 현황

자료 : 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0년 의약품산업 분석 보고서  
2. IMS Health(2009) IMS Health Midas

## 2) 세계 의약품산업의 환경변화

세계 의약품 시장은 다른 산업에 비해 고도 성장을 지속하고 있지만, 그 성장세나 시장구성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연구개발 생산성 악화

세계 제약산업의 환경 변화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연구개발의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저하되면서 신약개발에 투자되는 비용은 증가하지만, 미국 FDA의 승인을 받는 신약수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비용증가의 원인으로는 허가절차 강화, 신약승인감소, 연구개발비 증가 등이 지적되고 있다.

미국 제약협회에 따르면, 2006년 미국 제약업체의 R&D 비용은 552억 달러로 파악되며, 연구 10억 달러당 신약 출시 건수는 1996년 3.13개에서 2006년 0.38개 수준으로 낮아졌다.

## 나. 블록버스터<sup>15)</sup>의 특허 만료 기간 도래

세계 주요 제약업체 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블록버스터들의 특허가 거의 만료되고 있다. 미국 시장에서 매출이 가장 많은 10개 제품들이 늦어도 2011년까지는 특허가 만료된다. 또한 인슐린을 시작으로 1980년대 초반부터 개발된 바이오의약품의 경우에도 2019년까지 시장규모 1조원 이상의 바이오의약품 15개 품목의 특허가 만료될 예정이다.

이러한 특허만료는 다국적 기업의 수익성에 큰 위협이 되고 있으며, 이의 극복을 위하여 더욱 활발한 신약개발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위에서 언급한대로 R&D 생산성의 저하로 난항을 겪고 있다.

## 다. M&A를 통한 세계 제약업계의 구조개편

제약 산업은 '90년대 중반 이후 Pfizer의 Warner-Lambert 인수, Sanofi와 Aventis의 합병과 같은 대규모 M&A를 통해 글로벌 메이저 제약회사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세계 제약 산업의 M&A는 글로벌 판매망 확대, 제품 파이프라인 보완 및 강화, R&D 효율성 제고 등 시너지 강화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근 들어 제약 산업의 새로운 M&A의 형태로써 주요 제약업체와 바이오 업체간 M&A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는 블록버스터의 특허기간 만료가 임박함에 따라 비슷한 품목을 가진 제약회사를 인수하는 것은 대형화 이외에는 실익이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 라. 전략적 제휴를 통한 혁신의 분업구조 확산

최근 세계 제약 산업은 약물의 발견과 임상개발/마케팅이 분리되는 혁신의 분업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즉, 바이오벤처와 같이 혁신적인 중소기업들이 후보물질을 발굴하면 거대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이것을 사들여 임상개발을 완료하고 시장에 출시하여 이익을 후보물질 발굴자와 배분하는 방식의 비즈니스 모델이 확대되고 있다.

## 마. 비용절감을 위한 해외로의 아웃소싱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모든 생산설비를 자체적으로 갖추기 보다는 해외에 생산 및 연구개발 대행 기지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글로벌 제약업체의 아웃소싱 기지로 중국과 인도 등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가격 경쟁력과 풍부한 인력 및 높은 시장 잠재력 등을 들고 있다.

15) 연간 매출 10억 달러를 넘는 제품

## 바. 노인성 질환에 대한 수요의 급속한 증가

세계적인 인구고령화 추세에 따라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질환에 대한 치료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 경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만성질환이 전 세계 질병의 70%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이러한 만성질환의 경우 완치가 어렵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건강증진 관련 지출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 2.2 국내 환경 변화

### 1) 법·제도

#### 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국가적 지원과 육성을 통해 국내 제약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킨다는 취지하에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11년 3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2년 4월 시행예정이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제약산업 발전기반 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추진을 위해 5년마다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둘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셋째, 정부는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연구개발, 연구생산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연구개발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우선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그 밖에도 조세감면혜택 제공, 연구시설에 대한 건축특례, 연구개발투자 확대, 연구개발 정보의 수집과 보급, 제약기업의 국제협력활동 지원 등이 포함되었다.

#### 나. 근거중심의 의약품 평가 및 지속적인 가격 인하

2006년 전체 보건의료지출 증가를 상회하여 증가하는 약제비와 관련하여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에 위해 약제비 적정화방안 도입을 도입하였다. 이는 치료적, 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의약품만을 선별·급여하는 선별목록제 도입, 적정 약가 유지를 위한 협상절차 도입 및 약가 산정기준의 합리화, 의약품 품질강화 및 실거래가 파악을 위한 의약품 유통 투명화, 의약품 적정사용 유도를 위한 효율적 관리기준 마련 등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 도입이후 신약에 대한 가격협상 절차의 추가로 제품 출시까지의 기간 연장 및 적정약가 수준에 대한 이견으로 인한 가격협상 난항 등으로 신약의 도입이 상대적으로 지연되고 있다.

또한 약가 산정 기준의 변화로 인한 특허만료 신약 및 최초 복제약의 가격 인하, 선별목록제 도입에 따른 기등재 의약품의 목록정비 과정에서의 가격 인하, 그리고 2011년에 발표된 약가개편에 따른 가격인하 등 의약품 가격 인하정책이 지속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 8월 12일, 국민의 약값 부담을 줄이고 연구개발 중심으로 제약 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의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 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현재 특허만료된 오리지널 약값은 최초 오리지널(특허 보호 당시)의 80%, 첫 제네릭(복제약)은 최초 오리지널의 68%를 약값(상한가격)으로 책정하고 있는데 이를 일괄적으로 53.5%로 낮춘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국민부담액 6천억원, 건강보험지출 1조5천억원 등 연간 2조1천억원의 약값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였다.

그러나 제약업체에서는 이는 그대로 수익감소로 이어져 경영악화의 요인이 됨에 따라, 제약 종사자 8만 1,227명(2009년말 기준) 중 약 2만명(25%)정도의 정리해고가 이루어 질 것이며, R&D 투자를 대폭 감소시켜 회사의 경영과 신약개발 동기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 다. 의약품의 품질관리 강화

의약품의 품질을 강화하기 위하여 DMF제도(원료의약품신고제도, Drug Master File) 도입, 생물학적 생동성 시험 확대, 품목별 GMP 단계적 도입 등 다양한 제도가 도입, 확대되고 있다.

DMF는 원료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행된 제도로 원료의약품에 대하여 의약품제조시설, 제조방법, 공정별 투입물질, 불순물, 유연물질, 잔류용매 관리 등 상세한 정보를 담은 자료로서 의약품 허가과정에서 이를 제출케 함으로서 의약품에 관리를 원료의약품으로까지 확대적용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다.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은 인체를 대상으로 의약품의 약효가 신약(대조약)과 동일함을 입증하는 시험으로서, 제네릭 의약품의 약효를 보증하고 적정한 품질 확보수단으로 그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의약품의 약효와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제도가 마련될 예정이다.

GMP는 Good Manufacturing Practice의 약자로, 원자재의 입고에서부터 완제품의 출하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직 관리와 구조, 설비에 대한 필요요건을 규정한 것이다. 기준이 제형별에서 선진국에서와 같이 품목별로 강화하였으며, 이를 통해 의약품 수출증진 및 의약품 실사상호협력기구(PIC/S)에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품질관리 강화 정책의 도입은 제약산업의 관련 비용을 증가시키게 된다. 즉, 제약기업들은 관련 시설의 업그레이드, 자료의 구축과 관리, 전문 인력 충원 등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인적, 물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 라. 의약품 유통 투명화

제약 산업은 막대한 초기 투자자본 투입이 필요하고 소비주체인 환자가 의약품의 선택과 가격결정과정에서 거의 배제되기 때문에 리베이트 유인이 쉽게 작동하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판매관리비가 다른 일반제조업에 비해 3배 이상 높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즉, 국내 제약회사는 리스크 부담이 많은 신약개발보다는 손쉬운 복제의약품 중심의 영업경쟁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영업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9년 8월 리베이트 근절법이 도입되고, 2010년 4월 새로운 공정경쟁규약, 같은 해 11월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었다. 이를 통해 리베이트를 제공받는 의료인, 약사 등에 대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 정지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고, 불법 리베이트 제공자뿐만 아니라 수령자도 형사 처벌 대상임을 명시해 수수행위 쌍방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리베이트로 받은 경제적 이익은 전액 몰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제도의 시행으로 제약업계의 자정노력으로 마케팅에 대한 인식개선과 함께 새로운 마케팅기법을 개발하는 등 거래관행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은 제도 시행의 긍정적 효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업계 일부에서는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으로 인해 자칫 부작용을 양산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쌍벌제 시행은 제약기업의 영업, 마케팅 활동과 기업문화 전반에 상당한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제약기업 스스로 윤리경영 및 정도경영을 통해 공정한 경쟁질서를 구축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약업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쌍벌제와 시장형실거래가제가 연달아 시행되면서 제약업계는 극심한 영



업실적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10대 제약기업은 지난 1/4분기 당기순이익 -10.21%라는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다. 이 같은 실적 부진은 2/4분기에도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제약기업 CEO들은 매출실적이 -30%까지 갈수 있다는 최악의 상황을 각오하고 직원들에게 리베이트 근절과 새로운 영업, 마케팅 전략 개발을 주문하고 있다. 최고 경영자들의 이러한 강한 실천 의지는 의약품 거래풍토를 일신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장우순, 2011).

#### 마. 비용효과적인 약물사용 및 적절한 약물관리 제도 도입

의약품의 사용량 관리에 있어서 ‘약제비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도입, 일반의약품 비급여 전환 및 급여제한, 의료쇼핑 환자 사후관리 방안 등이 시행되고 있다. 또한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정책으로 의약품사용평가(Drug Utilization Review, 이하 DUR)이 시행되었으며, 환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선택의원제 도입이 진행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955년 71만3천520명에서 2000년 총 인구의 7.2%인 339만명, 2007년 말 기준 481만363명으로 1955년 대비 약 6.7배 증가하였으며, 2011년에는 13.3%로 추계되고 있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노인성 질환의 유병률 및 질병부담도 커지고 있다. 2011년 1분기 건강보험통계에 의하면, 건강보험 대상인구 중 10%가 노인인구이며, 이들이 총진료비의 31.6%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06년을 기준으로 9.6%에 불과했지만 건강보험 총 진료비의 25%를 차지하고 있어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높기 때문에 이로 인한 약제비 지출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노인 인구의 증가는 만성퇴행성 질환 등의 유병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에 따라 노인환자의 약물처방 빈도도 높아지게 된다. 또한 노인층은 일반적으로 의료기관 이용 빈도가 높고 여러 동반질환과 장애를 겪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기관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노인층이 젊은 층에 비해 약물의 다제복용 비율이 높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부적절한 약물사용의 위험성이 높고, 부적절한 약물사용으로 인한 약물유해반응의 발생빈도가 증가하게 된다는 연구결과에서도 확인되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8).

또한, 국민건강 측면에서 보면 가장 대표적인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이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아 합병증이 발생하고, 중증인 입원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만성질환 유병률을 살펴보면 고혈압이 2001년도 기준 28.6%에서 2009년 30.3%, 당뇨가 8.6%에서 9.6%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병자 중 적정치료율은 2008년도 기준 고혈압 59.4%, 당뇨 52.3%, 조절률은 고혈압 42.4%, 당뇨 27.1%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질환은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에서의 지속적인 진단과 약물요법 등으로 관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치료

의 불이행으로 증상의 악화 및 합병증 발병으로 입원으로까지 이어져 불건강의 심화 및 보건의료비의 과다 지출 사례를 초래하는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의 구조를 개선하는 경우 국민 부담을 크게 감소시키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노인층을 위한 차별화된 의약품 사용 및 관리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며 특히 제도적, 정책적 차원에서 비용효과적인 약물사용 유도과 적절한 약물관리 강화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현재 도입시행단계인 DUR제도와 선택의원제(만성질환관리제)를 활용할 수 있다.

### ① 의약품사용평가(DUR) 제도

의약품사용평가란 의약품의 처방이 적절하고 의학적으로 필요하며 부정적인 의학적 결과를 낳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또는 시스템을 말하며, Drug Utilization Review, Drug Use Review(DUR), Drug Use Evaluation(DUE), Medication Use Evaluation(MUE) 등의 여러 용어로 통용되고 있다. 의약품사용평가는 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과정을 사전에 만들어진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의약품이 부적절하게 처방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개선하도록 중재함으로써 부적절한 약물 사용에 의한 부작용을 예방하고 치료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과정이다.

약물상호작용은 노인 환자 등 여러 가지 질환을 가진 환자의 경우처럼 복용하는 의약품의 수가 증가할수록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인구노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의 증가, 질병의 다양화, 적극적인 치료경향 등에 따라 환자당 치료약물의 종류와 양이 늘어나고 있으며, 자가 투약 또한 증가하고 있어 약물상호작용 발생 가능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이용 및 약물사용이 더욱 증가하고 있지만, 처방중복에 따른 약물 상호작용을 점검하는 시스템에 한계가 있어 약물중독으로 인한 질병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의약품사용평가 시스템(DUR 시스템)은 병용금지, 연령금기로 고시된 의약품이나 안전성 등의 문제로 사용이 중지된 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2008년 4월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 ② 선택의원제

선택의원제란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 기능재정립’이라는 기본계획 하에 경증의 만성질환자가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것을 억제(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이용 시 약품비 본인부담금 인상 계획 등)하고, 대신에 가까운 동네의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하여 1차 의료기관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201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선택의원제는 국민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만성질환 관리 강화와 의원은 외래, 병원은 입원이라는 의료기관의 기능 재정립을 통해 고령인구에 의해 증가되는 보건의료비의 억제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선택의원제를 통해 만성질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고혈압, 당뇨 환자의 인지, 치료, 조절 등 관리를 향상시켜 각종 합병증, 입원 등 악화를 방지하고 생활습관 개선 등 환자 스스로 질병관리에 대한 관심과 능력을 증가시킴으로서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의 수준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실례로 대구시 고혈압·당뇨 시범사업 분석 결과에 따르면 1개월 주기 관리환자는 시범사업 미참여 환자에 비해 입원 비율이 62%(고혈압), 65%(당뇨) 낮았고, 입원일수도 25%(고혈압), 37%(당뇨)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또한 대형병원 쏠림 완화를 위한 정책과 병행하여 의원 외래, 병원 입원 중심의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정책을 구체화할 수 있고, 1차 의료 활성화를 통한 대국민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다.

## 2) 국내 시장 현황

### 가. 의약품산업 매출 현황

○ 우리나라 의약품 매출액 변화추이는 아래의 그래프와 같이 제시되고 있다. 2008년 의약품 매출액 9조 3,994억 원에서 2009년에는 10조 2,469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전년대비 9.0%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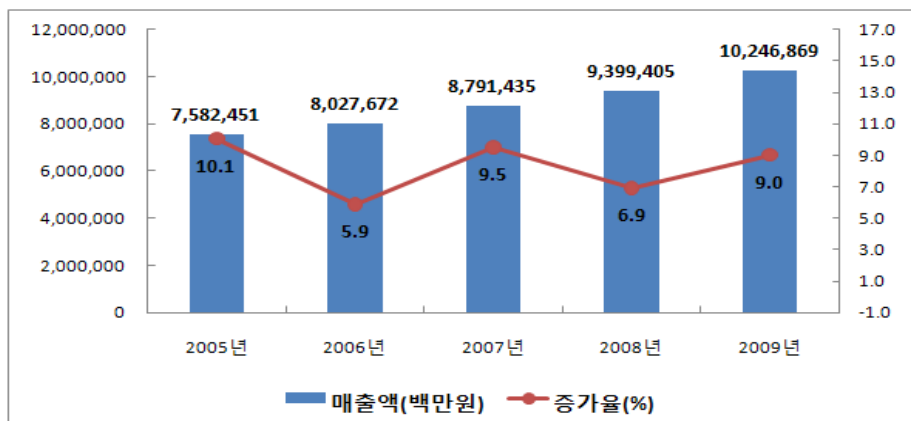


그림 II-2-5 연도별 제약회사 매출액 분포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2010년도 식품의약품통계연보

- 2009년 매출규모별 제약회사 분포는 매출액이 100-500억 원인 업체가 25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2000억 원 이상인 업체가 16개소, 500-1000, 1500-2000억 원인 업체가 각각 12개소였다.
- 매출규모별 점유율을 보면 매출액이 2000억 원 이상인 업체의 매출이 7조 290억 원으로 68.6%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1000-1500억원 업체의 매출이 1조 3,964억 원으로 13.6%, 500-1000억 원 업체의 매출이 9천 62억원으로 8.8%의 순이었다.

표 II-2-4 2009년 매출규모별 제약회사 분포

(단위 : 개소, 백만원, %)

구분	업체수	매출(백만원)	점유율
100억원 미만	9	37,823	0.4
100-500억원	25	700,335	6.8
500-1000억원	12	906,216	8.8
1000-1500억원	12	1,396,397	13.6
1500-2000억원	1	177,141	1.7
2000억원 이상	16	7,028,956	68.6
총계	75	10,246,869	100.0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2010년도 식품의약품통계연보

- 글로벌 의약품 기업과 우리나라의 의약품 기업이 성장하고 있는가를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경영성과를 분석<sup>16)</sup>한 결과가 아래와 같다.
- 2009년 중 우리나라 의약품기업(80개 상장기업)의 매출액증가율은 11.9%로 글로벌 의약품기업(4.1%)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2007년 이후 10% 이상 성장하고 있다.
- 매출액 증가율, 총자산 증가율 모두 우리나라 의약품기업이 글로벌 의약품기업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 세계적인 주요 의약품 기업의 경영성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Datamonitor의 PharmaVitae Explorer-Financial Analysis를 이용하였으며, 2003-2009년 동안의 주요 재무제표를 이용가능한 31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우리나라 의약품 기업의 경영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Nice 신용평가정보의 KisValue 재무제표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표준산업분류상에서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을 제외한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가운데 상장기업(코스닥 상장 포함)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추출한 대상 기업수는 80개로 3월 결산법인 경우 차년도 데이터를 당해연도 데이터로 전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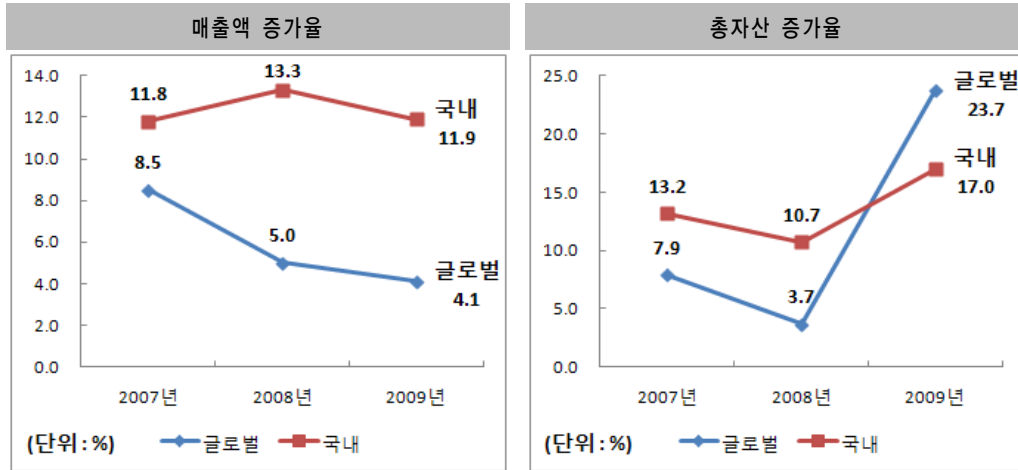


그림 II-2-6 국내외 의약품 기업의 성장성 관련 지표 비교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0년 의약품산업 분석 보고서

- 우리나라 의약품기업이 글로벌 의약품기업보다 매출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나 EBIT 등의 수익성 성과는 글로벌 의약품기업이 2배 이상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 의약품 기업의 매출증가는 영업성과보다는 판매관리비와 매출원가 증가에 의한 성장이라고 볼 수 있다.
- 글로벌 의약품기업의 영업이익률, EBIT 비율은 2007년 이후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둔화되어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다.
- 2009년 글로벌 의약품기업의 매출원가율은 27.9%로 우리나라(51.5%)보다 낮아 제품생산 구조가 더 효율적이었다. 매출액 대 판매관리비는 글로벌 의약품 기업이 30.5%, 우리나라가 37.7%로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판매관리비 비중이 매우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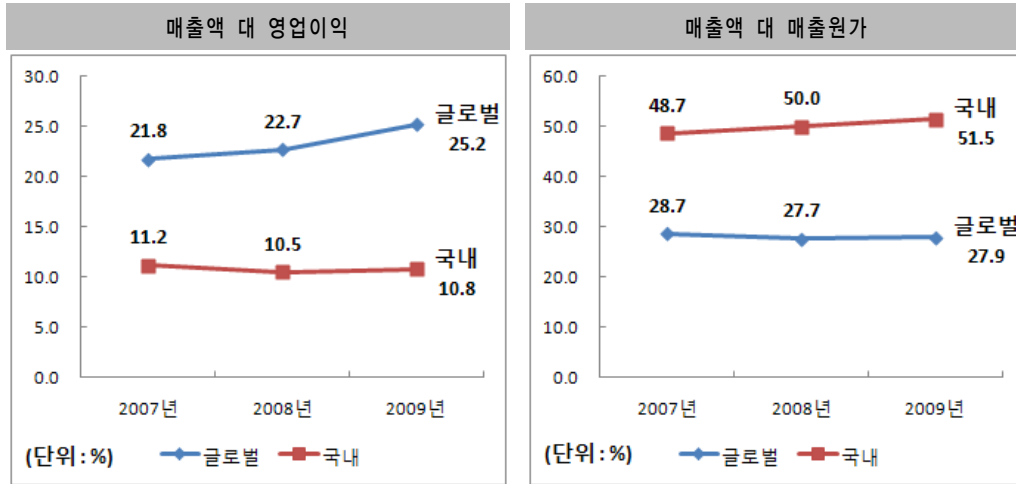


그림 II-2-7 국내외 의약품 기업의 수익성 관련 지표 비교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0년 의약품산업 분석 보고서

- 2009년 중 글로벌 의약품 기업의 부채비율은 106.5%로 비교적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갖고 있으며 자기자본 비율도 48.4%로 양호하였다. 우리나라 의약품기업의 부채비율은 56.3%로 매우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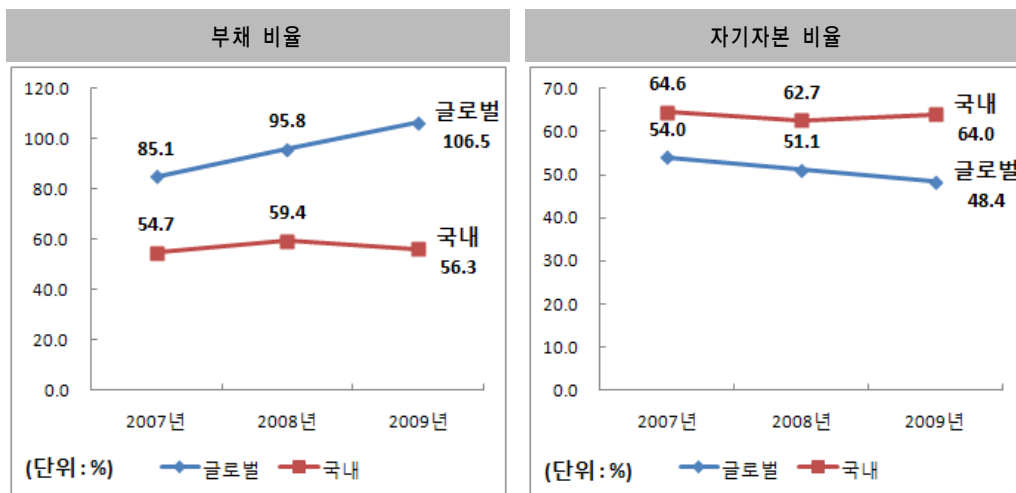


그림 II-2-8 국내외 의약품 기업의 안전성 관련 지표 비교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0년 의약품산업 분석 보고서

- 80개 상장기업의 의약품 매출액은 전년대비 11.9% 상승하였다. 최근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관련 기업체의 매출은 빠른 성장을 지속하여 동아제약은 8,011억 원으로 매

출액이 가장 컸으며, 전년대비 14.1% 상승하였다.

- 녹십자는 신종인플루엔자의 영향으로 관련 백신에 대한 매출이 증가하면서 2009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24.6%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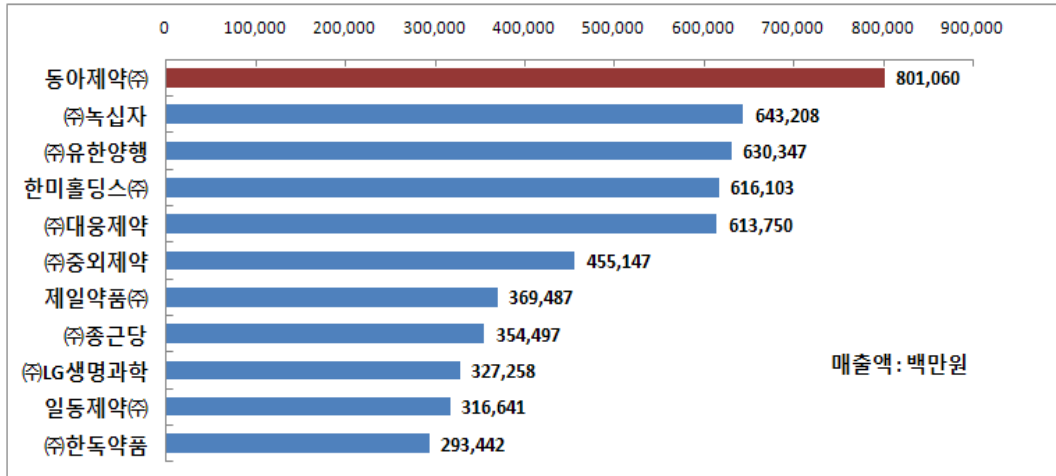


그림 II-2-9 2009년 국내 주요 의약품 업체의 매출액 현황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0년 의약품산업 분석 보고서

### 나. 의약품산업 수출입 현황

- 우리나라의 의약품 교역량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09년 의약품의 수출입액은 수출이 1조 3,915억 원, 수입이 3조 8,811억 원으로 2005년부터 2009년 동안 수출과 수입은 각각 연평균 15%와 10.7% 증가하였다.
- 이처럼 수출이 수입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수입이 수출보다 3배 이상 큰 구조로 인하여 무역수지 적자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표 II-2-5 연도별 의약품 수출입 현황

(단위 : 천달러)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수출	794,386	903,125	1,019,014	1,139,037	1,391,469
수입	2,583,858	3,425,599	3,670,634	3,917,826	3,881,135

자료 : 한국 의약품수출입협회, Facts & Survey Report

- 의약품 수출입 현황을 전년대비 증가율 면에서 보면 수출증가율은 09/08년에 급격한 증가율을 나타냈고 수입증가율은 05/04년에 20.8%에서 06/05년에 32.6%로 증가했다가 07/06년

- 에 7.2%로 증가율이 감소하더니 09/08년에는 -0.9%의 마이너스 증가율이 나타났다.
- 즉, 최근 무역수지 적자 증가율의 속도는 감소되는 추세이다. 이는 최근 LG 생명과학, 중외제약 등 의약품 기업을 중심으로 수출이 큰폭으로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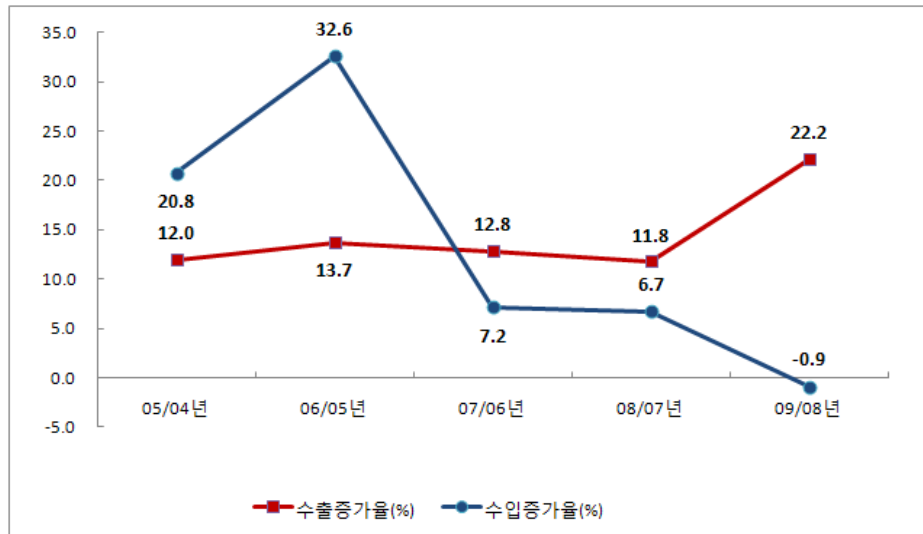


그림 II-2-10 연도별 의약품 수출입 증가율(전년대비)

자료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Facts & Survey Report

- 의약품(원료/완제) 수출입 현황을 보면 완제의약품 수출이 2008년 5,870억 원에서 7,774억 원으로 전년대비 32.4% 증가하였다. 원료의약품은 5,520억 원에서 6,140억 원으로 전년대비 11.2% 증가하였다.
- 의약품 수입에서 완제 의약품은 2008년 2조 135억 원에서 2조 1,271억 원으로 전년대비 5.6% 증가하였고 원료의약품은 1조 9,043억 원에서 1조 7,540억 원으로 전년대비 7.9% 감소하였다.
- 2006년까지 의약품 교역액 가운데 원료비중이 높았으나 2007년 완제 의약품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원료에서 완제의약품으로의 무게 중심이동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II-2-6 연도별 의약품(원료/완제) 수출입 현황

(단위 : 천달러, %)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수출	완제	292,474	345,958	408,783	489,805	587,045	777,449
		-	(18.3)	(18.2)	(19.8)	(19.9)	(32.4)
	원료	416,894	448,428	494,342	529,209	551,992	614,020
		-	(7.6)	(10.2)	(7.1)	(4.3)	(11.2)
수입	완제	933,921	1,214,871	1,740,426	1,979,140	2,013,540	2,127,130
		-	(30.1)	(43.3)	(13.7)	(1.7)	(5.6)
	원료	1,205,321	1,368,987	1,685,173	1,691,494	1,904,286	1,754,005
		-	(13.6)	(23.1)	(0.4)	(12.6)	(-7.9)

자료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Facts & Survey Report

주 : ( )안의 숫자는 전년대비 성장률임

#### 다. 의약품산업 연구개발 현황

##### ① 국가의 R&D지원 현황

- 신약개발을 위한 연구개발투자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5.8%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기업자체부담과 국가총연구개발재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기업자체부담은 같은 기간 3,445억원에서 7,273억원으로 2배가 넘게 증가하여, 연평균 증가율이 16.1%를 기록하였다. 반면, 국가재원은 동기간 492억원에서 915억원으로 86.0% 증가하였고, 연평균 증가율은 13.2%로 나타났다.
- 의약품 연구개발 투자는 국가재원보다 기업자체 재원이 다소 높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전체 연구개발투자 중 두 주체가 차지하는 비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기업 대비 국가 투자규모의 비율은 2005년 87.5% : 12.5% 였으나, 2009년에는 88.8% : 11.2% 로 변화하였다.

표 II-2-7 연도별 투자주체별 연구개발 투자재원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기업자체부담	금액	344,459	470,422	488,812	538,802	727,283
	증감률	7.0	36.6	3.9	10.2	35.0
국가총연구개발재원	금액	49,153	56,650	95,764	83,043	91,500
	증감률	18.7	15.3	69.0	-13.3	10.2
계	금액	393,612	527,072	584,576	621,845	818,783
	증감률	8.3	33.9	10.9	6.4	31.7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0년도 보건산업 연구개발실태조사 분석,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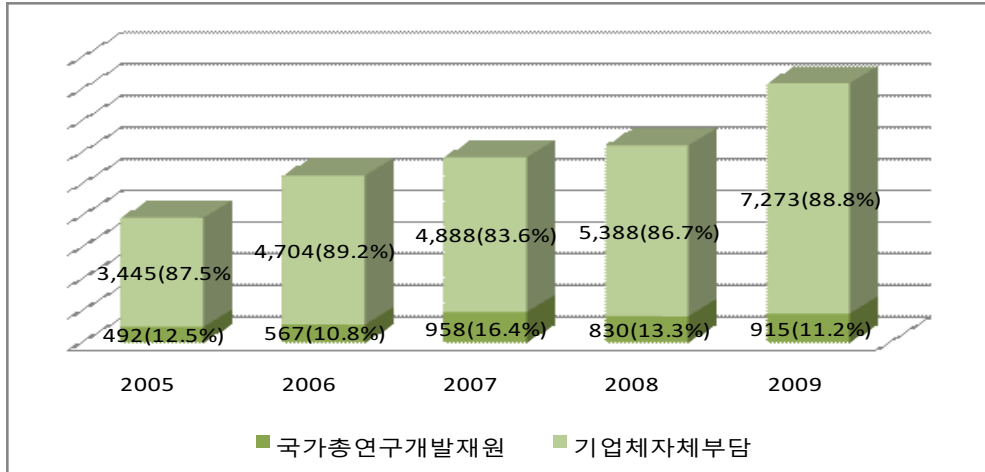


그림 II-2-11 연도별 투자주체별 투자재원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0년도 보건산업 연구개발실태조사 분석, 재구성

○ 국가 총 연구개발비는 정부재원, 공공재원, 민간재원, 외국재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대부분을 정부재원이 차지하고 있다. 2009년 재원별로 살펴보면, 정부재원은 95.9%, 민간재원 2.7%, 외국재원 1.1%, 공공재원 0.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금액에 있어서 정부재원은 2008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공공재원과 민간재원 또한 2007년 급격히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외국재원은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09년 다소 증가하였다.

표 II-2-8 연도별 국가 총 연구개발 재원의 구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정부재원	87,680	91.6	81,330	97.9	87,761	95.9
공공재원	1,026	1.1	214	0.3	330	0.4
민간재원	6,910	7.2	1,360	1.6	2,442	2.7
외국재원	148	0.2	139	0.2	967	1.1
	95,764	100.0	83,043	100.0	91,500	100.0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0년도 보건산업 연구개발실태조사 분석, 재구성

○ 신약개발 관련 주요 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지식경제부의 최근 5년간(2004~2008년)의 투자는 총 3,863억원이었으며, 부처별로는 교과부 44.2%(총 1,709억원), 복지

부 36.5%(총 1,409억원), 지경부 19.3%(총 745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모든 부처에서 지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규모는 아직 작지만 지경부의 지원규모는 매우 크게 증가하고 있다.

표 II-2-9 부처별 연구개발 재원의 구성현황

(단위 : 백만원)

부처명	세부사업명	2006년	2007년	2008년	총계
교과부	바이오통계개발등	35,318	39,209	47,016	170,935
지경부	바이오의료기기 등	14,450	21,102	24,657	74,481
복지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22,708	22,698	32,365	140,925
계		72,476	83,009	104,038	386,341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전주기적 부처연계 신약개발사업', 2010,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국내신약개발R&D활성화를 위한 신약개발현황 및 신약개발비 분석, 2010, 재구성

- 정부의 의약품산업 연구개발 지원 규모는 과제수, 지원금액, 과제당 지원금액 모두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이를 연구단계별로 살펴보면, 과제수에 있어서는 기초단계가 2008년 284건으로 전체과제의 40%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응용, 개발, 기타의 순으로 나타났다. 개발단계의 과제는 다른 단계와는 달리 과제수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지원금액에 있어서는 개발단계가 628억원으로 37.2%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응용, 기초, 기타 등의 순서를 보였다. 지원금액 부분에서 개발단계는 계속 1위를 고수하고 있으나 기초 단계는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응용단계는 증가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 과제건당 지원금액은 개발단계가 약 3억 7천만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순서는 지원금액과 마찬가지로 응용, 기초, 기타 등의 순이었다. 순위변화나 증가율 부분에서는 지원금액과 동일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II-2-10 지원단계별 국가 총 연구개발 재원의 구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06년	2007년	2008년
과제수	기초	284	322	284
	응용	185	179	189
	개발	182	142	168
	기타	11	2	68
	합계	662	645	709
지원금액	기초	37,449	45,653	43,239
	응용	46,334	51,794	57,010
	개발	58,386	50,905	62,789
	기타	2,902	295	5,665
	합계	145,071	148,647	168,703
과제건당지원 금액	기초	131.9	141.8	152.3
	응용	250.5	289.4	301.6
	개발	320.8	358.5	373.7
	기타	263.8	147.5	83.3
	합계	219.1	230.5	237.9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9년도 보건산업 연구개발실태조사 분석, 재구성

## ② 기업의 R&amp;D 투자 현황

- 의약품산업의 매출은 2005년 이후 5년 동안 연평균 8.2%의 성장세를 유지하여 2009년 12조 6천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전년대비 증가율은 6.5%로 상승세가 둔화되었다. 연구개발비는 2009년 7,273억원으로 동기간 연평균 16.1%의 성장하여 매출증감률보다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집약도 지표 또한 변동이 존재하나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II-2-11 의약품산업의 매출액,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집약도

(단위 : 백만원,%)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총매출액 (전년대비증감률)	8,489,323 (23.6)	8,763,695 (3.2)	9,983,968 (13.9)	11,829,400 (18.5)	12,600,222 (6.5)
연구개발비	344,459 (7.0)	470,442 (36.6)	488,812 (3.9)	538,802 (10.2)	727,283 (35.0)
연구개발집약도	4.06	5.37	4.90	4.55	5.77

주 : 의료기관 제외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0년도 보건산업 연구개발실태조사 분석,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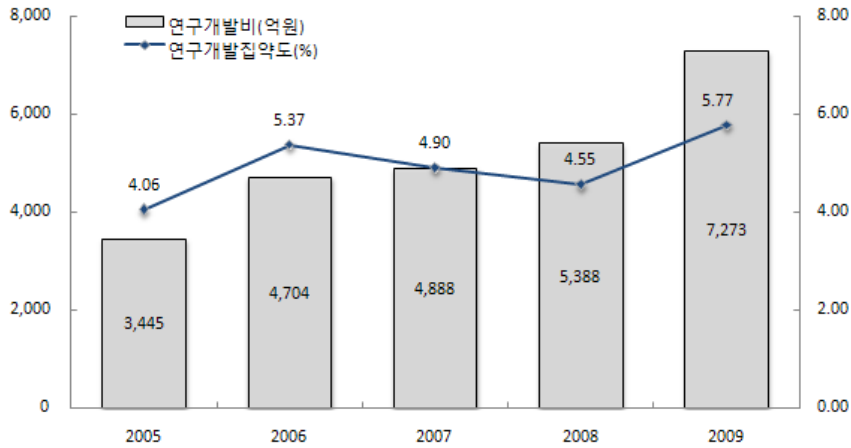


그림 II-2-12 의약품산업 연도별 연구개발 투자 현황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0년도 보건산업 연구개발실태 조사·분석, 2010

- 제약기업의 자체사용 연구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연구단계별로 살펴보면, 개발단계는 4,221억원, 62.4%로 계속 1위를 고수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응용, 기초 순으로 나타났다. 응용단계의 투자는 2008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기초단계에 대해서는 2007년 이후 감소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II-2-12 의약품산업 자체사용 연구비 연구단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금액	분포	금액	분포	금액	분포	금액	분포	금액	분포
기초	32,508	9.4	54,558	12.1	84,551	14.5	67,112	10.8	57,584	8.5
응용	101,456	29.5	125,790	28.0	154,752	26.5	119,589	19.2	196,752	29.1
개발	210,533	61.1	269,100	59.9	345,272	59.1	435,144	70.0	422,066	62.4
소계	344,497	100.0	449,448	100.0	584,575	100.0	621,845	100.0	676,402	100.0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0년도 보건산업 연구개발실태조사 분석,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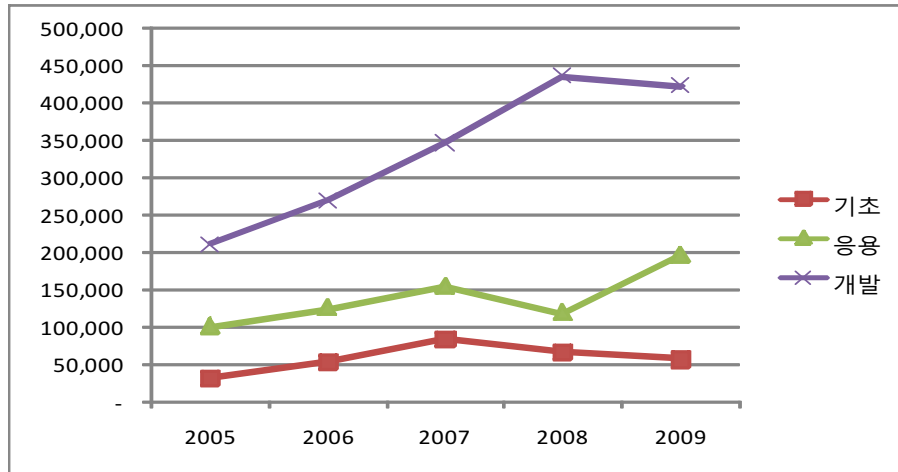


그림 II-2-13 의약품산업 자체사용 연구비 연구단계별 현황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0년도 보건산업 연구개발실태조사 분석, 재구성

- 제약기업의 자체사용 연구비를 용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 신제품개발이 4,312억원, 63.7%로 계속 1위를 고수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기존제품개선, 신공정개발, 기존공정개선 순으로 나타났다. 신제품개발은 그 비중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기존제품개선 및 기존 공정개선은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2-13 의약품산업 자체사용 연구비 용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금액	분포	금액	분포	금액	분포	금액	분포	금액	분포
신제품개발	196,055	56.9	226,524	50.4	374,161	64.0	386,944	62.2	431,173	63.7
기존제품개선	69,534	20.2	141,844	31.6	109,892	18.8	110,121	17.7	108,683	16.1
신공정개발	38,170	11.1	38,431	8.6	51,841	8.9	70,332	11.3	84,318	12.5
기존공정개선	40,739	11.8	42,649	9.5	48,679	8.3	54,448	8.8	52,228	7.7
소계	344,498	100.0	449,448	100.0	584,573	100.0	621,845	100.0	676,402	100.0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0년도 보건산업 연구개발실태조사 분석,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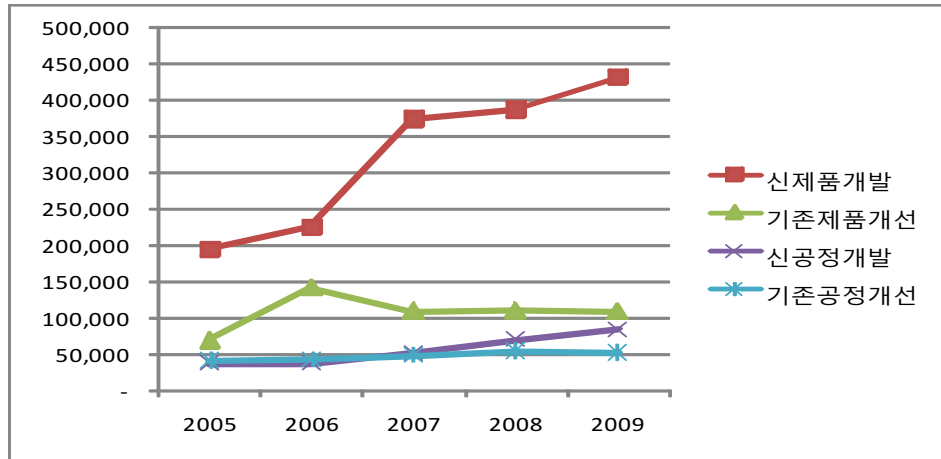


그림 II-2-14 의약품산업 자체사용 연구비 용도별 현황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0년도 보건산업 연구개발실태조사 분석, 재구성

### ③ R&D 성과

- 우리나라는 1999년 선플라주(국산신약 1호, SK케미컬)의 허가 이후 2011년 8월 현재 식약청 집계 국내개발신약은 17개에 이르고 있다.
- 개발된 신약의 평균적인 R&D 비용은 대략 430억원이며, 이 중 정부 투자비는 약 6.4% 정도로 대부분 민간(기업)의 투자로 민간 주도의 신약개발이 추진되었다. 국산신약 개발에는 평균 10.5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7)</sup>.
- 그러나 국산신약 매출액은 저조한 실정으로 '10년 건강보험실적 기준 매출이 100억원이 넘는 제품은 자이데나(발기부전, 동아제약) 163억원, 레보비르(B형간염, 부광약품) 약 125억원에 그치고 있다.
- 이처럼 신약개발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효과 창출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초기투자 위험도가 매우 높고, 개발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제품 시판 후 상업적인 성공 확률이 불확실한 점 등 때문에 국내 제약회사의 신약개발이 활성화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17)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국내 신약개발 R&D 활성화를 위한 신약개발 현황 및 신약개발비 분석, 2010

표 II-2-14 국내 신약개발 현황

연번	제품명	회사명	주성분	효능·효과	허가일자	2010 매출액
1	선플라주	에스케이케미칼(주)	헵타플라틴	항암제(위암)	'99.7.15	0
2	이지에프외용액	(주)대웅제약	인간상피세포성장인자	당뇨성 족부궤양치료제	97.3.4	4.8억
3	밀리칸주	동화약품공업(주)	질산홀름-166	항암제(간암)	'01.7.6	0.03억
4	큐록신정	(주)중외제약	발로플록사신	항균제(항생제)	'01.12.17	22억
5	팩티브정	(주)엘지생명과학	메탄술폰산제미플록사신	항균제(항생제)	'02.12.27(KFDA) '03.4.4(FDA)	17.4억
6	아피톡신주	구주제약(주)	건조밀봉독	관절염치료제	'03.5.3	0
7	슈도박신주	씨제이제일제당(주)	건조정제슈도모나스백신	농구균예방백신	'95.1.26	품목취하
8	캄도벨정	(주)종근당	벨로테칸	항암제	'03.10.22	33억
9	레바넥스정	(주)유한양행	레바프라잔	항궤양제	'05.9.15	80.6억
10	자이테나정	동아제약(주)	유테나필	발기부전치료제	'05.11.29	163억
11	레보비르캡슐	부광약품(주)	클레부딘	B형간염치료제	'06.11.13	125.3억
12	펠루비정	대원제약(주)	펠루비프로펜	골관절염치료제	'07.4.20	26.6억
13	엠빅스정	에스케이케미칼(주)	염산미로테나필	발기부전치료제	'07.7.18	30.2억
14	놀텍정	일양약품(주)	일라프라졸	항궤양제	'08.10.28	17.6억
15	카나브정	보령제약(주)	피마살탄칼륨삼수화물	고혈압치료제	'10.9.9	-
16	피라맥스정	신풍제약(주)	피로나리딘인산염, 알테수네이트	말라리아치료제	'11.8.17	-
17	제피드정	(주)JW중외제약	아바나필	발기부전치료제	'11.8.17	-

자료 : 1. 식품의약품안전청, 보도자료, 2011.8.17

2. 보건복지부, 한국제약협회(2011)

\* 단, 매출규모는 2010년 보험청구액 기준임

- 이러한 신약개발의 어려움 때문에 최근들어 천연물신약에 대한 개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천연물 신약은 개발비용이나 기간의 측면에서 합성신약에 상대적으로 투자규모가 적고, 투자에 따른 위험이 적기 때문에, 연구개발의 생산성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였을 때 높은 투자 효율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 이러한 측면이 고려되면서 2000년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제정 및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제1차 천연물신약연구개발 촉진계획 등의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졌고, 실제로 한



미 FTA에 대한 대응책으로 많은 제약기업들이 천연물신약 개발을 위한 투자에 나서면서 일부 제품들은 그 결실을 보기도 하였다.

- 국내 신약 중 천연물 신약은 2011년 5월 현재 12개에 이르고 있으며, 그 매출액에 있어서도 2008년 기준 100억원이 넘는 제품이 6개에 이르고 있어 식약청에서 집계하고 있는 국내개발신약에 비해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표 II-2-15 국내 천연물신약 개발 현황

연번	기업	제품명	적응증	주요성분	허가연도	매출 (2008, 억원)	비고
1	동아제약	스티렌캡셀	위염	에엽	2002.6	700	PC생성 촉진, 위점액분비 촉진
2	SK케미칼	조인스정	관절염	위령선, 팔루근, 하고초	2001.7	160	연골과괴억제, 관절염분해효소억제
3	안국제약	푸로스판	진해거담	아이비잎	2000.2	300	
4	휴온스	살사라진	복부비만	당귀,작약,천궁,연교, 박하 등 18종	2003.4/2007.7	100	동의보감 처방
5	구주제약	아피톡신	관절염	봉독	1999.11/2003.5	16	
6	광동제약	편자환	간염,안염	사향,우황등	1983.12	1.3	중국처방 도입
7	유유제약	타나민D	혈액순환	은행잎	(1993)2008.4	(350)	독자개발
8	SK케미칼	기백신	혈액순환	은행잎	(1991)	(500)	독자개발
9	한국신약	아스망정	기관지질환	신이(목련꽃)추출물			
10	녹십자	신바로캡슐	골관절염	자오가,우슬,방풍,두충, 구척,흑두견조엑스	2011.1		
11	안국약품	시네츄라시럽	기관지염	황련,아이비엽	11.03.11		
12	동아제약	모티리톤정	기능성 소화불량	현호색,견우자	11.05.16		

\*자료 : 쿠키뉴스, 2011.7.6  
약업신문, 2011.9.8

#### 라. 의약품산업 생산 현황

- 우리나라 의약품 총 생산액은 아래의 그래프와 같이 제시되고 있다. 2009년 의약품 생산액은 14조 7,884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6.4% 성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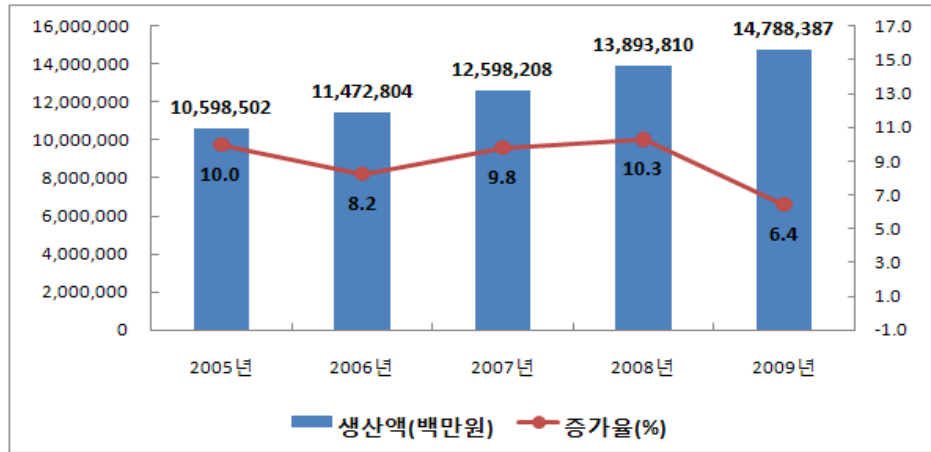


그림 II-2-15 연도별 의약품 생산 현황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0년 의약품산업 분석 보고서  
한국제약협회, 제약협회 통계집

○ 2009년 완제 의약품 생산액은 13조 3,668억 원으로 전년 (12조 6,755억 원) 대비 5.5% 증가한 데 반하여 원료 의약품은 1조 4,216억 원으로 전년 (1조 2,183억 원) 대비 16.7% 증가하여 원료의약품 생산 증가율이 완제의약품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2-16 연도별 의약품(원료/완제) 생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완제 <sup>1)</sup>	8,886,281	9,797,831	10,573,475	11,565,635	12,675,484	13,366,782
원료 <sup>2)</sup>	751,081	800,671	899,329	1,032,573	1,218,326	1,421,605
합계	9,637,363	10,598,502	11,472,804	12,598,208	13,893,810	14,788,387

자료 : 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0년 의약품산업 분석 보고서

2. 한국제약협회, 제약협회 통계집

주 : <sup>1)</sup> 완제 : 완제의약품, 마약, 한의마약, 향정신성의약품 포함

<sup>2)</sup> 원료 : 화학원료, 한약재, 의약품 고압가스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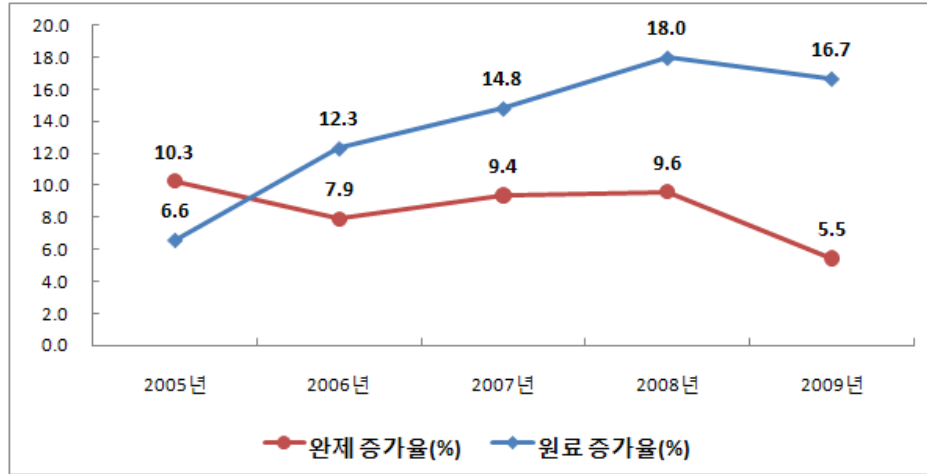


그림 II-2-16 연도별 의약품 생산 증가율(전년대비)

자료 : 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0년 의약품산업 분석 보고서  
 2. 한국제약협회, 제약협회 통계집

- 연도별 의약품 약효군별 생산실적은 순환계용약의 생산금액이 2조 3,715억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년대비 3.5%, 연평균 7.8%의 성장률을 나타냈다.
- 소화기관용약의 생산금액은 1조 6,888억 원으로 전년대비 4.5% 연평균 7.7%가 성장하여 순환계 용약의 성장률과 유사하였다.
- 중추신경계용약은 1조 5,685억 원으로 전년대비 1.7%의 미미한 성장률을 보였으나 연평균 성장률은 8.6%로 비교적 높았다.
- 항생물질제제는 전년대비, 연평균 성장률이 2.8%, 3.9%로 낮았으며, 기타의 대사성 의약품은 전년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으나 연평균 성장률은 10.6%로 약효군 중에 가장 높았다.

표 II-2-17 연도별 의약품 약효군별 생산실적

(단위 : 억원, %)

분류번호	약효별	2008년	2009년	전년대비 성장률	CAGR (05-09)
		생산금액	생산금액		
총계		124,955	131,760	5.4	8.0
210	순환계용약	22,913	23,730	3.6	7.8
230	소화기관용약	16,160	16,889	4.5	7.7
110	중추신경계용약	14,795	14,942	1.0	7.3
610	항생물질제제	13,901	14,291	2.8	3.9
390	기타의 대사성 의약품	10,490	10,388	-1.0	10.6
630	생물학적제제	7,054	10,122	43.5	34.7
320	자양강장변질제	5,296	5,045	-4.7	-0.4
620	화학요법제	4,899	4,564	-6.8	4.2
330	혈액 및 채액용약	3,195	3,969	24.2	17.0
220	호흡기관용약	3,386	3,770	11.3	10.0
260	외피용약	3,663	3,537	-3.5	-2.9
240	호르몬제(항호르몬제를 포함)	2,439	2,569	5.3	9.3
140	알레르기용약	2,205	2,416	9.5	5.7
310	비타민제	2,442	2,361	-3.3	-1.1
720	진단용액	2,208	2,281	3.3	10.0
120	말초신경계용약	2,367	2,121	-10.4	2.6
250	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약	1,630	2,117	29.9	16.8
130	감각기관용약	1,768	2,084	17.8	18.9
420	종양용약	2,190	2,040	-6.9	11.0
340	인공관류용제	759	863	13.6	4.2
430	조직세포의 치료 및 진단을 목적	498	625	25.6	38.2
740	관련제품	61	367	498.9	-5.9
640	기생동물에 대한 의약품	246	335	36.2	-2.8
490	기타의 조직세포의 기관용의약품	158	145	-8.0	11.3
710	조제용약	46	48	6.2	-7.9
190	기타의신경계및감각기관용의약품	43	48	12.5	-12.0
790	기타의 치료를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의약품	79	43	-45.9	-15.6
730	공중위생용약	43	35	-19.6	3.3
410	조직부활용약	20	15	-25.6	35.5
290	기타의 개개의 기관용의약품	2	3	59.5	4.0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통계연보

주 : 마약, 한외마약, 항정신성의약품 포함

마. 고령자 의약품 소비 현황

- 노인의 의료서비스 내원일수는 입원보다 외래로 내원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분류별로 살펴보면 신생물은 입원내원일수의 비율(10.0%)이 외래내원일수(2.0%)보다 높았는데 이는 정신 및 행동장애, 순환기계의 질환도 마찬가지였다.
- 호흡기계의 질환은 외래내원일수가 17,159,275일(11.0%)로 입원내원일수 2,341,771일(6.0%)보다 많았고 소화기계의 질환,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도 입원내원일수보다 외래내원일수가 더 많았다. 특히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은 입원과 외래의 내원일수 비율 차가 매우 컸다.

표 II-2-18 노인의료서비스 내원일수 현황 : 질병분류별

(단위 : 일, %)

구 분	입원		외래	
	내원일수	비율	내원일수	비율
총계	39,264,131	100.0	156,272,216	100.0
특정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780,375	2.0	2,552,154	1.6
신생물	3,941,673	10.0	3,047,367	2.0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한 특정 장애	64,329	0.2	183,944	0.1
내분비, 영양 및 대사질환	1,495,011	3.8	7,882,871	5.0
정신 및 행동장애	7,689,846	19.6	3,101,401	2.0
신경계의 질환	2,653,303	6.8	2,667,366	1.7
눈 및 유양돌기의 질환	352,627	0.9	8,178,656	5.2
귀 및 유양돌기의 질환	108,906	0.3	2,723,483	1.7
순환기계의 질환	9,482,316	24.2	23,235,693	14.9
호흡기계의 질환	2,341,771	6.0	17,159,275	11.0
소화기계의 질환	1,345,543	3.4	15,817,732	10.1
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	256,721	0.7	5,657,753	3.6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3,525,999	9.0	48,009,728	30.7
비노생식기계의 질환	1,176,109	3.0	5,446,632	3.5
임신, 출산 및 산욕	0	0.0	0	0.0
주산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0	0.0	0	0.0
선천성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10,858	0.0	23,089	0.0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 소견	307,991	0.8	2,121,777	1.4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3,628,764	9.2	7,301,670	4.7
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	53,787	0.1	829,191	0.5
기타	48,202	0.1	332,434	0.2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9년 건강보험통계연보

주 : 1. 298개 질병분류별 자료를 이용하여 대분류 22개로 분석함

2. 세부연령별 자료에서 65세 이상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함

○노인의 주요 만성질환 유병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의사진단 시 주요 만성질환 유병률에서 비중이 높은 질병은 비만(만 19세 이상), 고혈압(만 30세 이상), 영구치우식(만 19세 이상), 백내장(만 40세 이상), 비중격 만곡증(만 12세 이상), 골감소증(만 50세 이상) 등이 있는데 이 중 전체 유병률이 가장 높은 질병은 골감소증(47.5%)으로 의사진단 유병률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II-2-19 연령별 주요 만성질환 유병률(의사진단 유병률)

(단위 : %)

		전체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비만(만 19세 이상)		31.3	40.0	37.0	31.1
당뇨병(만 30세 이상)		9.6	12.3	22.0	21.8
이상 지혈증	고콜레스테롤혈증(만 30세 이상)	11.5	17.4	18.0	14.0
	저HDL콜레스테롤혈증(만 30세 이상)	28.2	29.6	34.5	34.2
	고중성지방혈증(만 30세 이상)	16.5	21.8	21.7	15.9
고혈압(만 30세 이상)		30.3	39.2	55.6	69.5
폐쇄성폐질환(만 40세 이상)		10.5	9.1	17.7	26.2
구강질환	영구치우식(만 19세 이상)	33.8	29.1	27.2	28.8
	치주질환(만 19세 이상)	29.4	49.2	47.8	47.4
B형 간염 표면항원 양성률(만 10세 이상)		3.2	3.6	3.2	2.6
빈혈(만 10세 이상)		8.2	6.0	9.3	18.3
안질환	시력장애(만 40세 이상)	1.0	0.5	1.2	4.3
	안검하수(만 3세 이상)	10.0	11.9	22.5	35.6
	백내장(만 40세 이상)	40.4	32.9	71.5	94.1
	군날개(만 40세 이상)	9.2	8.2	13.7	18.5
	단요망막병증(초기)(만 30세 이상)	5.3	4.7	8.8	13.8
	나이관련황반변성(만 40세 이상)	11.2	8.6	14.6	9.0
이비인후 (귀, 코, 목) 질환	만성중이염(만 4세 이상)	2.7	4.7	6.0	6.3
	일측성 난청(만 12세 이상)	5.7	6.9	14.7	17.8
	양측성 난청(만 12세 이상)	4.5	2.9	12.1	31.7
	비중격 만곡증(만 12세 이상)	43.1	47.1	44.9	41.0
	후각장애(만 12세 이상)	4.1	5.1	7.2	8.6
	비염(만 6세 이상)	26.0	22.0	17.8	16.2
골다공증(만 50세 이상)		23.1	8.1	24.0	48.4
골감소증(만 50세 이상)		47.5	50.1	49.3	40.9
골관절염(만 50세 이상)		24.2	14.0	24.5	43.6
뇌졸중(만 50세 이상)		3.3	1.5	4.2	5.6
천식(만 19세 이상)		7.6	7.3	10.3	15.1
알레르기성비염(만 19세 이상)		11.9	8.0	5.7	2.9
아토피피부염(만 19세 이상)		2.9	1.9	0.6	0.6
협심증 또는 심근경색증(만 30세 이상)		1.6	1.4	4.5	4.4
위십이지장궤양(만 30세 이상)		6.4	9.3	9.5	7.3

자료 : 보건복지부, 2009 국민건강통계\_국민건강영양조사(2009)

주 : 고령자 유병률이 낮은 만성질환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 성별 의약품 사용량은 비노생식기계 및 성호르몬 19.3DDD를 제외하면 여성이 남성보다 의약품 사용량이 많았고, 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이 60-69세보다 많았다. 약품별 사용량은 인구 천 명당 심혈관계용이 203.0DDD로 가장 많았으며, 소화기관 및 신진대사용이 127.7DDD, 신경계용 55.5DDD, 호흡기계용 54.4DDD 순이었다.

표 II-2-20 성별 연령별 의약품 사용량(2009년)

(단위 : DDD/1,000명/일)

성	연령	소화기관 및 신진대사용	심혈관계용	비노생식기계 및 성호르몬	전신성 항감염	근골격계용	신경계용	호흡기계용
남	60-69세	439.7	762.2	89.8	43.3	68.0	124.6	107.9
	70세이상	482.2	908.3	168.8	48.3	93.6	184.2	188.6
	전체	120.1	188.4	19.3	28.4	24.4	47.1	52.9
여	60-69세	451.7	795.4	36.5	40.8	162.1	159.9	89.3
	70세이상	521.5	1,019.2	26.2	38.5	208.7	215.8	118.5
	전체	135.5	217.8	15.4	30.1	51.3	64.0	56.0
총 계		127.7	203.0	17.4	29.2	37.8	55.5	54.4

자료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년도 의약품 소비량 및 판매액 통계조사

○ 성별 약품비는 비노생식기계 및 성호르몬약과 전신성 항감염약을 제외하면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고, 연령별 약품비는 70세 이상이 60-69세보다 높았다. 약품군별 약품비는 심혈관계용이 123,885원으로 가장 높았고 소화기관 및 신진대사용이 109,242원, 전신성항감염이 101,815원 순이었다.

표 II-2-21 성별 연령별 약품비(2009년)

(단위 : 원/1,000명/일)

성	연령	소화기관 및 신진대사용	심혈관계용	비노생식기계 및 성호르몬	전신성 항감염	근골격계용	신경계용	호흡기계용
남	60-69세	326,583	452,664	95,084	198,306	88,651	153,743	76,563
	70세이상	349,382	500,621	182,773	253,305	120,509	253,119	129,839
	전체	102,093	116,220	20,804	106,601	31,552	54,409	35,128
여	60-69세	347,670	490,237	25,110	162,078	228,524	171,922	58,830
	70세이상	382,659	564,756	26,521	175,563	278,199	285,882	77,157
	전체	116,457	131,622	10,943	96,984	70,440	67,616	35,232
총 계		109,242	123,885	15,896	101,815	50,906	60,982	35,179

자료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년도 의약품 소비량 및 판매액 통계조사

- 주요 일부 의약품의 성별 사용량은 당뇨병치료제, 혈압강하제, 레닌안지오펜신약물을 제외하면 여성의 의약품 사용량이 남성보다 많았고, 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이 60-69세보다 많았다. 약품별 사용량은 칼슘차단제가 77.7DDD로 가장 많았고, 당뇨병치료제가 58.5 DDD, 레닌안지오펜신약물이 36.7DDD 순이었다.

표 II-2-22 주요 일부 의약품 성별 연령별 사용량(2009년)

(단위 : DDD/1,000명/일)

성	연령	소화기관 및 신진대사용		신경계용	심혈관계용				
		위궤양 치료제	당뇨병 치료제	항우울제	혈압강하제	이노제	베타차단제	칼슘차단제	레닌안지오펜신약물
남	60-69세	74.4	243.2	13.6	23.3	63.5	52.0	287.4	148.0
	70세이상	89.1	223.3	17.3	44.7	94.6	54.7	322.7	165.1
	전체	23.6	59.4	5.4	5.1	15.5	13.2	70.3	37.5
여	60-69세	96.4	231.5	21.6	2.3	83.5	55.4	313.8	128.1
	70세이상	115.2	242.6	23.3	3.3	131.5	65.3	403.1	163.4
	전체	34.2	57.6	8.6	0.7	24.7	15.4	85.1	35.8
총 계		28.9	58.5	7.0	2.9	20.1	14.3	77.7	36.7

자료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년도 의약품 소비량 및 판매액 통계조사

- 주요 일부 의약품의 성별 약품비는 당뇨병치료제와 혈압강하제를 제외하면 여성의 약품비가 남성보다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당뇨병치료제를 제외하면 70세 이상의 약품비가 60-69세보다 높았다.

표 II-2-23 주요 일부 의약품 성별 연령별 약품비(2009년)

(단위 : 원/1,000명/일)

성	연령	소화기관 및 신진대사용		신경계용	심혈관계용				
		위궤양 치료제	당뇨병 치료제	항우울제	혈압강하제	이노제	베타차단제	칼슘차단제	레닌안지오펜신약물
남	60-69세	81,506	100,599	10,801	10,930	4,517	39,317	110,166	139,696
	70세이상	93,666	89,498	14,206	20,872	7,210	41,850	123,643	143,443
	전체	25,506	25,448	4,504	2,493	1,147	9,920	26,960	36,863
여	60-69세	95,892	96,520	18,930	1,586	5,650	39,191	118,329	137,904
	70세이상	111,689	93,486	19,967	1,663	9,544	47,414	150,370	163,594
	전체	33,063	24,247	7,423	768	1,735	10,805	32,007	38,388
총 계		29,267	24,850	5,957	1,634	1,439	10,360	29,472	37,622

자료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년도 의약품 소비량 및 판매액 통계조사



## 2.3 국내 시장규모 및 전망

### 1) 시장규모 분석 방법

#### 가. 기준연도 시장규모 추정 방법

모태산업(의약품산업)의 시장규모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자료원으로 제약산업통계집<sup>18)</sup>(한국제약협회), 국민건강보험통계연보<sup>19)</sup>(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 시장규모 분석을 위한 자료로 이용하였다.

모태산업 대비 고령친화 의약품산업의 시장규모를 분석하기 위하여 모태산업의 범위 중 고령자가 주로 이용하는 약효군의 범위를 결정<sup>20)</sup>하였다. 선정된 고령친화 의약품의 범위는 해열·진통·소염제, 근이완제 순환계용약,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대사성의약품, 종양용제, 정신신경용제, 안과용제, 비노생식기관용제, 기타의 비노생식기관 및 항문용약 등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통계에서 사용하는 질병분류체계와 복지부 고시에 의한 의약품 분류체계가 상이하기 때문에 질병별로 주치료 약효군을 정확하게 선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분류체계의 상이함에서 발생하는 오차가 포함되어 있다.

건강보험통계를 이용하여 질병별 가중치(노인의 의료이용 규모로 전체 환자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인구의 이용 비율)를 파악한 후 선정된 의약품 약효군별 생산실적에 이 값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y_i = \sum_{j=1}^{10} (\text{생산금액}_{ij}) \times (\text{품목별가중치}_{ij})$$

- $y_i$  :  $i$ 연도의 고령친화 의약품산업 시장규모
  - $j$  : 선정된 약효군( $j = 1, \dots, 10$ )
  - 생산금액 $_{ij}$  :  $i$ 연도의 선정된  $j$ 번째 약효군 생산금액
  - 품목별가중치 $_{ij}$  :  $i$ 연도의 선정된  $j$ 번째 약효군 전체 급여일수 중 65세 이상 급여일수 비중
- ※ 시장규모 전망(예측)을 위하여 전체 금액을 각각의 값으로 환산함

다음의 의약품 시장규모 전망을 위하여 2007년-2008년 가중치 계산이 필요하다. 2009년

18) 2007년, 2008년, 2009년 의약품 생산실적 자료를 이용하여 모태산업 및 고령친화 의약품산업의 기본적인 규모를 정의하였다.

19) 2009년 건강보험통계연보 결과 중 연령별 급여현황 자료를 이용하여 질병별 가중치 계산에 활용하였다.

20) 건강보험통계에서 사용한 22개 질병대분류를 기준으로 1차적으로 질병이 추출되었으며,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최종 선정되었다.

건강보험통계 자료의 전체 급여일수 중 65세 이상 급여일수 비중을 2007년 및 2008년에 그대로 사용할 경우 예측이 정확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2007년 및 2008년 전체 내원일수<sup>21)</sup> 중 65세 이상 내원일수 비중을 이용하여 가중치를 계산하였다. 즉, 2009년도 약효군별 가중치를 기준으로 하며, 2007년 및 2008년 전체 가중치에 맞게 2009년 약효군별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연도별로 선정된 약효군의 시장규모에 가중치를 곱하여 고령친화 의약품산업 시장규모를 추정하였다.

노인인구의 정확한 의약품 사용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질병분류체계에 조응하는 약효군 분류체계를 사용하고, 이 분류체계를 기준으로 입원 및 외래환자의 처방자료 및 일반의약품으로 판매되는 약물의 규모가 파악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의약품 사용실적에 대한 공개적인 통계는 생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한적이거나 질병에 대한 통계치를 근거로 약물 사용량을 추정하였다.

## 나. 시장규모 전망(예측) 방법

고령친화 의약품산업의 2020년까지의 시장규모를 예측하기 위하여, 모태산업 및 고령친화 의약품산업 시장규모의 2007년-2009년 연평균성장률(CAGR)을 이용하였다. 세부적으로 장래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의약품 수요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2007년-2009년 가중치의 변화를 시장규모 추정과정에 반영하였다.

## 2) 시장규모 추정 및 예측 결과

### 가. 기준연도 시장규모 추정 결과

- 본 연구에서의 고령친화의약품 시장규모는 건강보험통계를 이용하여 질병별 가중치(전체 환자에서 65세이상의 노인인구의 이용 비율)를 파악한 후 해당 의약품 약효군별 시장규모에 이 값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 2007년, 2008년의 경우 급여일수 자료가 없어 진료일수를 이용하여 대체하였으며, 2009년의 경우 급여일수를 이용하여 65세 이상 급여일수 비중을 각각 아래의 표로 나타내었다.
- 기준연도가 되는 2009년 65세 이상의 급여일수 비중은 33.34%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7년 29.98%보다 다소 높아졌다.

21) 2007년 및 2008년 건강보험통계 자료의 경우 연령별 급여일수 자료가 없어서 내원일수 자료를 이용하여 가중치를 계산하였다.

표 II-2-24 약효군별 65세 이상 진료일수 및 급여일수 비중

(단위 : %)

약효군명	2007년	2008년	2009년
순환계용약	40.88	44.35	45.47
대사성의약품	31.49	34.16	35.02
종양용약	27.66	30.00	30.76
비노생식기관용제	26.58	28.83	29.56
기타의 비노생식기관 및 항문용약	26.58	28.83	29.56
정신신경용제	33.57	36.42	37.34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33.57	36.42	37.34
안과용제	31.17	33.82	34.67
해열, 진통, 소염제	42.45	46.06	47.22
근이완제	42.45	46.06	47.22
전체	29.98	32.52	33.34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9년 건강보험통계연보

주 : 1. 수진기준 (한방제외, 급여일수, 진료비와 급여비는 약국포함)

2. 65세 이상 급여일수(진료일수) 비중 = 65세 이상 급여일수(진료일수) / 전체 급여일수(진료일수)

- 2007년-2009년의 시장규모(생산금액)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한 고령친화 의약품 시장 규모는 아래의 표와 같이 제시되고 있다. 2009년 고령친화 의약품의 총 시장규모는 2조 6,856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에서 순환계용약의 시장규모가 1조 790억으로 고령친화 의약품 시장규모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며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 그 다음으로는 대사성의약품(7,923억 원), 해열, 진통, 소염(4,072억 원), 정신신경용제(867억 원)가 뒤를 이었다.
- 2009년 모태산업 대비 고령친화 의약품산업의 시장규모 비중은 20.38%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7년-2009년 모태산업의 연평균성장률(CAGR) 7.44%로 고령친화 의약품산업 시장규모의 연평균성장률(CAGR) 13.52%보다 낮았다.

표 II-2-25 연도별 고령친화 의약품산업 시장규모

(단위 : 백만원, %)

약효군명	2007년	2008년	2009년	전년대비 성장률	CAGR 07-09)
순환계용약	803,114	1,016,232	1,078,994	6.18	15.91
대사성의약품	668,005	757,678	792,301	4.57	8.91
종양용약	54,038	65,709	62,747	-4.51	7.76
비노생식기관용제	1,807	2,174	2,270	4.40	12.08
기타의 비노생식기관 및 항문용약	29,339	40,668	55,706	36.98	37.79
정신신경용제	56,762	73,249	86,669	18.32	23.57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54,654	83,043	86,013	3.58	25.45
안과용제	42,622	56,997	69,162	21.34	27.39
해열, 진통, 소염제	333,083	406,707	407,196	0.12	10.57
근이완제	40,690	44,539	44,531	-0.02	4.61
고령친화 의약품산업 시장규모	2,084,114	2,546,995	2,685,589	5.44	13.52
비중	18.26	20.38	20.38	-	-
모태산업(의약품산업)	11,415,011	12,496,878	13,176,005	5.43	7.44

자료 : 1.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9년 건강보험통계연보

2. 한국제약협회, 제약협회 통계집

주 : 1. 완제의약품 기준이며, 마약류는 제외함

2. 수진기준 (한방제외, 급여일수, 진료비와 급여비는 약국포함)

- 시장매력도, 공공성, 국제경쟁력, 기타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유망약효군은 종양치료제, 치매용제, 해열진통소염제, 알츠하이머용제, 고혈압용제, 당뇨병용제 등이다. 선정된 유망 품목에 대한 시장규모는 아래의 표로 제시되어 있다.
- 전략품목 중 고혈압용제의 2009년 시장규모는 4,423억 원으로 고령친화 의약품산업 중 16.4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열/진통/소염제가 15.16%로 두번째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략품목으로 선정된 치매용제 및 알츠하이머용제 약효군에 대한 시장규모의 2007년 -2009년 연평균 성장률(CAGR)은 25.45%로 모태산업 및 고령친화 의약품산업의 시장규모의 연평균 성장률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II-2-26 연도별 고령친화 의약품산업 전략품목 시장규모

(단위 : 백만원, %)

약효군명		2007년	2008년	2009년	비중 <sup>22)</sup>	CAGR(07-09)
고혈압용제	강심제	5,734	6,197	6,025	0.22	2.51
	이뇨제	8,477	9,088	9,039	0.34	3.26
	혈압강하제	268,978	347,385	351,443	13.09	14.31
	혈관확장제	63,087	76,863	75,777	2.82	9.60
	소계	346,277	439,533	442,285	16.47	13.02
당뇨병용제		89,363	114,803	108,940	4.06	10.41
중앙용약		54,038	65,709	62,747	2.34	7.76
해열, 진통, 소염제		333,083	406,707	407,196	15.16	10.57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54,654	83,043	86,013	3.20	25.45
합계		877,414	1,109,794	1,107,181	-	12.33
비중		42.10	43.57	41.23	-	-
고령친화 의약품산업		2,084,114	2,546,995	2,685,589	-	13.52
모태산업		11,415,011	12,496,878	13,176,005	-	7.44

자료 : 1.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9년 건강보험통계연보

2. 한국제약협회, 제약협회 통계집

주 : 기타의 중추신경용약은 전략품목으로 선정된 치매용제 및 알츠하이머용제 약효군에 대한 자료임

#### 나. 시장규모 전망(예측) 결과

- 앞에서 설명한 방법을 활용하여 향후 고령친화 의약품산업의 시장규모를 추계하여 본 결과, 고령친화 의약품산업의 시장규모는 2015년 5조 7,464억 원, 2020년 10조 8,315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 2010년 모태산업 대비 고령친화 의약품산업의 비중은 21.54%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 28.36%, 2020년 37.34% 정도의 비중으로 전망된다.

22) 고령친화 의약품 시장규모 대비 각 전략품목의 시장규모 비중을 나타낸다.

표 II-2-27 고령친화 의약품산업 시장규모 전망(예측)

(단위 : 백만원, %)

시장규모	2010년	2015년	2018년	2020년	CAGR(10-20)
고령친화 의약품	3,048,588	5,746,379	8,405,655	10,831,529	13.52
비중	21.54	28.36	33.45	37.34	-
모태산업(의약품산업)	14,155,900	20,263,107	25,128,535	29,005,115	7.44

자료 : 1.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9년 건강보험통계연보

2. 한국제약협회, 제약협회 통계집

주 : 완제의약품 기준이며, 마약류는 제외함

### 3. 전략품목 및 지원정책

#### 3.1 전략품목 선정

##### 1) 선정기준

고령친화의약품의 범위를 설정하기 위하여, 건강보험통계에서 사용한 22개 질병대분류를 기준으로 전체 급여일수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급여일수가 30% 이상인 질병을 1차적으로 추출하였으며, 298개 질병분류별 통계를 이용하여 전체 노인질환 대비 각 질환의 비중, 전체환자 중 노인환자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상위의 점유율을 나타낸 질병을 추가하였다.

전체 환자의 급여일수 중 노인환자의 비중이 높은 것은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 질환(47.2%), 순환기계 질환(45.5%), 신경계 질환(39.6%), 내분비·영양 및 대사 질환(35.0%), 신생물(34.7%), 정신 및 행동장애(32.3%), 눈 및 눈부속기 질환(30.8%), 비노생식기계 질환(29.6%)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질병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의약품 범위를 설정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이들 질병의 주 치료제군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선정된 고령친화의약품의 범위는 해열·진통·소염제, 근이완제, 순환계용약,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대사성의약품, 종양용제, 정신신경용제, 안과용제, 비노생식기관용제, 기타의 비노생식기관 및 항문용약 등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통계에서 사용하는 질병분류체계와 복지부 고시에 의한 의약품분류체계가 상이하기 때문에 질병별로 주 치료 약효군을 정확하게 선정하는 것은 제한적이며, 따라서 분류체계의 상이함에서 발생하는 오차가 존재할 수 있다.

표 II-2-28 상병대분류별 노인인구의 비중 및 해당 약효군

상별분류	전체중 노인비율	약효군명	분류번호
근골격계및결합조직의질환	47.2	해열, 진통, 소염,	114
		근이완제	122
순환기계질환	45.5	순환계용약	210
신경계질환	39.6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119
내분비·영양 및 대사질환	35.0	대사성의약품	300
신생물	34.7	종양용제	131
정신 및 행동장애	32.3	정신신경용제	117
눈 및 눈부속기 질환	30.8	안과용제	420
비노생식기계의 질환	29.6	비노생식기관용제	255
		기타의비노생식기관및항문용약	259

주요 전략품목 선정의 경우, 보다 세부적인 약효군 선정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22개의 질병 대분류 대신 298개의 세분류별 실적을 사용하였다. 건강보험통계를 이용하여 298개 질병분류별 급여일수를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노인의 상위 10개 상병 및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의 노인의 급여일수 비율 상위 10대 상병을 추출하였다.

표 II-2-29 65세 이상 노인의 다빈도 질환

구분	질환명	65세 이상의 급여일수	전체일수중 65세 이상의 비중	65세 전체일수 중 비중
급여일수 상위 10대질환	본태성(원발성)고혈압	446,672,881	42.5	23.9
	당뇨병	160,090,681	41.0	8.5
	기타 배병증	75,979,923	56.8	4.1
	관절증	67,179,407	58.3	3.6
	전립선의 비대	52,877,933	63.5	2.8
	기타 허혈성 심장질환	49,994,294	54.9	2.7
	뇌경색증	45,043,500	66.1	2.4
	기타 고혈압성 질환	43,987,577	47.5	2.3
	뼈밀도 및 구조장애	26,516,254	54.1	1.4
기타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26,508,783	28.6	1.4	
노인비율 상위 10대질환	노쇠	52,195	98.7	0.0
	치매	20,952,043	93.7	1.1
	알츠하이머	2,213,147	91.7	0.1
	전립선	4,440,929	86.8	0.2
	대퇴골골절	2,346,637	82.3	0.1
	파킨슨병	10,664,443	78.5	0.6
	심부전	8,698,094	75.7	0.5
	백내장	10,269,335	72.3	0.5
	방광의 악성신생물	1,387,227	72.0	0.1
졸중	1,429,299	68.2	0.1	
총계		1,872,517,327	66.7(평균)	56.5(계)

이들 상병별로 다시 주 치료제를 기준으로 유망약효군을 선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는 세부상병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사용하는 의약품의 약효군은 동일한 경우가 있어, 총 11개 약효군으로 구분되었다. 선정된 유망약효군을 대상으로, 시장매력도, 공공성, 국제경쟁력, 기타(기호성, 편의성, 소화율 등)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전문가평가를 통해 유망품목을 선정하였다.

## 2) 전략품목 선정

65세 이상 노인의 다빈도 질환을 통해 주치료제를 추출하고, 노인의 사용비율과 노인의 사용약물 중 비중을 고려한 유망약효군으로 해열진통소염제, 치매용제, 알츠하이머용제, 안과용제, 고혈압용제, 동맥경화용제, 전립선질환용제, 비타민제, 자양강장변질제, 당뇨병치료제, 종양치료제 등을 선정하였다.

이들 약효군을 대상으로 시장매력도, 공공성, 국제경쟁력, 기타 등의 기준으로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전략품목을 선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용된 사용된 평가지표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각 지표별로 4점척도를 이용하였다.

- 시장매력도 : 시장성장률과 시장의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
- 국제경쟁력 : 해외 수출을 감안하여 해외에서 선진업체와 경쟁했을 때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정도
- 공공성 : 고령친화산업은 공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복지 등의 차원에서 공공성의 정도
- 기타 : 기호성, 편의성, 소화율 등

이를 통해 종양치료제, 치매용제, 해열진통소염제, 알츠하이머용제, 고혈압용제, 당뇨병치료제 등을 전략품목으로 선정하였다



표 II-2-30 고령친화 의약품산업의 유망품목 평가결과

약효군	시장매력도	공공성	국제경쟁력	기타	종합평가	
					점수	판정
해열진통소염제	3	2	1.5	3	9.5	전략품목
치매용제	3	3.5	2	1.5	10	전략품목
알츠하이머용제	3	3	2	1.5	9.5	전략품목
안과용제	1.5	2	1.5	2.5	7.5	-
고혈압용제	3	2.5	2.5	1.5	9.5	전략품목
동맥경화용제	2.5	3	2	1.5	9	-
전립선질환치료제	3	2.5	2	1.5	9	-
비타민제	2.5	2.5	1	2.5	8.5	-
자양강장변질제	2	2	1	3	8	-
당뇨병치료제	3	3	2	1.5	9.5	전략품목
종양치료제	3.5	3	2.5	1.5	10.5	전략품목

주 : 4점, 3점, 2점, 1점

※ 1. 시장매력도 : 시장성장률과 시장의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

2. 국제경쟁력 : 해외 수출을 감안하여 해외에서 선진업체와 경쟁했을 때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정도

3. 공공성 : 고령친화산업은 공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복지 등의 차원에서 공공성의 정도

4. 기타 : 기호성, 편의성, 소화율 등

## 3.2 제약요인 및 정책과제

### 1) 제약요인

고령친화 의약품산업의 활성화가 필요한 이유는 급속하게 증가하는 고령자의 의약품 수요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현재 적절한 치료제가 존재하지 않는 질병에 대한 새로운 약물의 개발의 중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와함께 현재 사용하는 약들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

우선, 새로운 의약품의 개발에 있어서,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규모의 영세성, 다품종소량 생산 방식, 판촉위주의 영업형태 등의 특성은 큰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그간의 정부의 지원과 일부 제약기업의 노력으로 17개의 신약이 개발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들의 시장장악력을 고려해 보았을 때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에는 일정정도의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본 연구의 고령소비자 욕구조사에서 나타났듯이, 고령자의 약물복용 상의 가장 큰

문제는 복용의 불편함이다. 이러한 복용상의 불편함을 감소할 수 있는 제제개발 등에 대한 연구개발은 고령친화 의약품산업 측면에서는 매우 유의미함에도 불구하고 연구지원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의약품산업이 소매업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고령자의 약물사용 효과를 높이기 위해 환자에게 약물이 전달 및 복용단계에서의 적절한 복약서비스의 수행 또한 매우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려가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도 제약요인의 하나로 지적할 수 있다.

## 2) 정책과제

고령친화 의약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고령친화 의약품산업 설정의 유의미성에 대한 인식이 공유되어 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공유하에, 고령친화 의약품군의 설정이 필요하며, 현재의 가용할 수 있는 의약품군에 대한 평가를 통해 새로운 의약품의 개발 필요성 여부 및 개발의 방향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고령친화 의약품산업의 궁극적인 이유가 노인환자에게 적절한 약물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점에서 볼 때, 이들 의약품이 환자에게 적절하게 투여될 수 있는 방안마련이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인구의 경우, 만성질환의 유병률이 높다는 점과 신체적 노화에 따른 생리기능의 저하라는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고령친화 의약품의 요건은 장기복용에 따른 안전성, 고령인구의 신체적 특성에 맞춘 용량, 복약이행도를 높일 수 있는 제형 및 복용방법 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들 의약품이 환자에게 적절하게 투여되고, 환자 스스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즉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자의 합리적인 약물투여와 환자의 복약순응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가. 고령친화 의약품 개발 지원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 추세에 따라 의약품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또한 예외가 아니어서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노인성 질환의 유병률 및 질병부담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고령인구의 증가추세와 고령인구의 의약품 지출 확대는 의약품산업에 있어서도 노인인구를 고려한 고령친화 의약품의 개발과 생산에 주력해야할 이유가 될 것이다.

고령친화 의약품산업의 측면에 보면, 새로운 신약의 개발도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의 신약 개발환경과 고령인구의 약물복용 관리의 강화 및 편이성 증대라는 현실적인 수요를 고려하였을 때 천연물신약이나 개량신약은 주목할 필요가 있는 제품개발 영역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천연물신약이나 개량신약개발은 신약개발에 비해 상대적으로 효능 및 독성시험, 임상시험 절차가 덜 복잡하고, 개발기간이 짧으며, 개발비용이 적게 드는 등 적은 비용으로 상당기간 독점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제약기업이 향후 신약개발 주력분야로서 신규구조화합물(화합물신약)에 집중하면서, 바이오신약과 천연물신약개발도 그 비중을 높이고 개량신약의 경우 제형변경 분야를 주력으로 다루려는 움직임<sup>23)</sup>이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고령친화의약품의 개발은 국내 수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며, 해외시장 진출이 가능하다면 국내 기업의 성장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해외시장 진출까지를 고려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첫째, 고령친화 의약품 개발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즉, 고령친화 의약품 즉, 노인인구의 높은 만성질환 유병률과 신체적 노화에 따른 생리기능의 저하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복용에 따른 안전성, 고령인구의 신체적 특성에 맞춘 용량, 복용이행도를 높일 수 있는 제형 및 복용방법 등이 확보된 약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환자의 의약품 사용 행태 및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를 통해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의 R&D 지원에 있어서 고령친화 의약품에 대한 위상을 설정하여야 한다.

고령친화 의약품의 측면에서는 적절한 치료제가 없는 질병을 위한 신약개발과 함께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제형 및 제제의 개선이 병행해서 고려되어야 한다. 2009년 국가총연구개발투자 규모는 전체 연구개발투자 비용의 11.2%였으며, 이는 대부분 바이오신약(36.2%)과 합성신약(32.3%)에 집중되어 있으며, 개량신약(806%)이나 천연물신약(11.0%)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고령친화 의약품의 수요도에 따른 국가투자에 대한 평가 및 재배치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고령친화 의약품 개발에 있어서 정책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의약품 연구개발에서 시판까지 여러 과정이 포함된다. 이 중 허가절차 및 가격제도는 기

23)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 제약산업 연구개발 백서, 2009

술력이 아닌 정책으로 운영되는 부분이다. 사전상담제, 신속심사제 등 허가과정을 단축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보다 확대되어야 하며, 투자를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설정 기전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고령친화 의약품 측면에서도 품질제고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적,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cGMP의 도입 등 품질관리 선진화를 위한 많은 노력들이 수행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며, 이는 향후 지속,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FTA 협정이 여러국가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기반으로 의약품 실사상호협력기구(PIC/S) 가입 추진 등 품질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제품의 경쟁력 제고와 수출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은 매우 유의미하다.

#### 나. 고령친화 의약품 복약이행도 개선 방안 마련

노인환자들은 많은 질환들이 복합적으로 발병하는데 통상 3가지 이상 질병이 함께 발생하여 3-4개 이상의 약물을 한꺼번에 복용하고 있어 약물상호작용의 우려가 높다. 그리고 이러한 질환들은 만성질환이 많아 장기치료를 요한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전체 노인의 90.9%가 각종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고, 81.2%가 최근 3개월간 치료, 건강을 위하여 약 또는 건강식품을 복용하였다고 응답하였고(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77.7%가 최소한 한 개 이상의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윤종률 등, 2001)

노인층은 일반 성인에 비해 신체가 노화됨에 따라 생리적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약물 선택 시 약물의 투여 용량, 특정 약물의 사용여부, 약동학, 약력학 등의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 깊게 고려되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2004)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1개의 종합병원 방문 환자를 대상으로 ‘노인 부적절 처방 목록’으로서 Beers criteria를 적용한 결과, 입원환자 4,519명 중 2,592명(57.3%)이 부적절한 약물을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현 등(2007)의 연구결과에서는 총 입원환자 중 고령입원환자가 5,490명으로 27.5%를 차지했고, 이들 중 노인 부적절 약물을 처방받은 환자 수는 2,350명으로 전체 고령입원환자의 42.7%에 해당했고, 한 환자가 받은 부적절 약물의 최대 개수는 7개로 나타났다. Zhan's classification의 분류에 따라 절대적으로 금해야 할 약물(AA)이 전체의 31.8%를 차지하였으며, 노인의료센터에 입원한 113명 환자 중 28.3%인 32명이 부적절 약물 처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노인환자의 약물사용에 있어서 노화에 따른 생리적 기능저하라는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노력은 부족한 게 현실이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Beer's criteria을 개발하여 노인환자에 대한 약물사용의 적절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이는 미국의 의료재정부와 노인병학자와 약물학의 전문가들에 의해 개발된 노인환자 투여약물의 적절성 판단 표준지침서로서 전 세계적으로 노인환자의 약물사용 평가 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침서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약품사용평가(DUR) 시스템은 병용금지, 연령금기로 고시된 의약품이나 안전성 등의 문제로 사용이 중지된 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 청구가 의무화 되어있다. 그러나 연령금기 의약품 품목을 살펴보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분류가 주축이고, 노인층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은 전무한 상태이다.

우리나라에서 노인환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지침서가 개발, 적용된다면 부적절한 약물의 사용과 그로 인한 부작용을 감소시켜 노인인구의 삶의 질 제고 및 의약품 지출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노인환자에 대한 적절한 약물투여와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이 복약이행도를 높이는 것이다.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 지속성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며, 대부분의 만성질환은 약물 치료로 이루어지므로, 복약이행도의 제고는 치료중단으로 인한 질병의 악화, 합병증 발생 등을 차단함으로써 환자의 건강개선 및 비용절감에 매우 효과적이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당뇨병의 치료지속성은 0.85<sup>24)</sup>(1을 기준으로)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시행예정인 선택의원제는 만성질환의 치료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의 효과를 보다 높이기 복약이행도를 높이는 방안이 병행되어야 하지 않기에 대한 정책적 고려는 없는 상황이다.

만성질환의 유병률이 높은 노인환자에 대한 복약이행도 제고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들이 이루어져야한다.

첫째,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노인환자의 약물 사용 지침서가 개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약물에 대한 사용현황, 적절성 평가 및 약물상호작용의 평가 자료가 기본이 되어야하나 현재 이러한 노력은 미미한 상태이다. 일반적인 노인의 특성이외에 건강보조식품 및 한약 등을 복용률이 높은 우리나라 약물사용 특성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올바른 약품사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노인환자의 약물사용 적절성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시급하다.

2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원급 요양기관의 만성질환 관리방안, 2009

둘째, 이를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현재 일부 의약품에 대한 DUR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므로, 이것에 노인부분을 추가 확대하여 노인의 약물처방 및 투여에 있어서 일상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노인환자의 약물사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효과적인 노인 만성질환 관리를 위하여 2012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선택의원제 사업에 약국을 지역사회 협력기관으로 연계하여 투여된 의약품의 적절한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복약이행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표 II-2-31 고령친화 의약품산업 정책과제

정책지원
(1) 고령친화 의약품 개발 지원
- 노인환자 의약품 사용행태 등 평가를 위한 조사·연구
- 천연물신약, 개량신약분야 R&D 지원
- 정책 및 제도 개선 : 허가절차 간소화, 합리적 가격설정기전 마련, 품질제고체계 강화
(2) 고령친화 의약품 복약이행도 개선방안 마련
- 노인환자의약품 사용 지침서 개발
- 적절한 약물 사용을 위한 활용 체계 마련
- 지속적인 관리시스템 마련

### 3.3 정책 기대효과

고령친화 의약품산업은 의약품산업 중에서 고령자가 주로 사용하는 의약품군을 특화한 영역이다. 경제성장 및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등으로 의약품 사용은 계속 증가될 것이며, 특히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의약품 사용 증가세는 크게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고령친화 의약품에 대한 적절한 공급 및 사용체계의 마련은 증가하는 수요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통한 국민건강증진이라는 의약품산업의 궁극적 목적달성에 근접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고령친화의약품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자연스럽게 수출증대와 고용확대로 이어

져 우리나라의 전체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에 기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의약품의 개발과 이에 대한 효율적인 사용지원은 건강보험제정의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 제3장 고령친화 식품산업

### 1. 개요 및 범위

#### 1.1 고령친화 식품산업의 범위

식품산업의 범위는 근거법령에 따라 분류하면 식품위생법 소관의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기구·용기포장제조업, 식품판매업, 집단급식소업, 식품운반업, 식품보존업, 식품접객업 등이 있으며 건강기능식품법의 관리 하에 있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 건강기능식품판매업, 건강기능식품수입업 등 매우 광범위하다. 인간의 생명유지 및 성장에 필요한 영양성분을 제공하는 식품의 1차 기능과 기호성, 포만감 등 食道樂의 즐거움을 주는 2차 기능을 위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일상적으로 섭취해야 하는 식품은 필수적이고 중요한 산업이다. 그러나, 고령자의 경우 신체적 능력의 저하로 인하여 음식을 충분히 씹을 수 없고, 신체 기능의 저하로 음식물의 소화기능이 떨어져 신체에 충분한 영양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영양부족상태에 이르기 쉬우며, 이는 신체의 면역력 저하로 이어져 여러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 노령층의 인구가 증가되면서 주관심사로 건강이 대두되었으며, 건강 먹거리에 대한 관심을 증가하고 있고 질병의 치료보다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식품업계도 건강을 테마로 한 제품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 고령자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고령자의 경우 섭취, 소화, 대사능력제한과 함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평균수명의 증대됨에 따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대부분의 고령자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고령친화 식품산업의 범위는

- ① 일상식으로써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물성과 영양을 갖춘 제품을 포함하는 일반 식품산업



- ② 일반식품 중에 정상적으로 섭취, 소화, 흡수 또는 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거나 손상된 노인들을 위하여 특별히 제조·가공된 특수의료 용도식품산업
- ③ 고령자의 신체 건강 유지를 위해 섭취하는 건강기능식품산업 전체를 포함하여 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 1.2 고령친화 식품산업의 특징

질병치유를 위한 의약품이나 의료기술의 발달, 식품위생의 개선, 다양한 식품 영양소 섭취상태로 인간의 수명은 지속적으로 연장되고 있으며, 또한 출산율의 저하와 함께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빠른 속도로 초래하게 되었다. 고령화사회의 진전은 노동생산성의 하락, 연금 및 건강보험의 고갈, 노인부양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으나 고령친화 식품산업 분야에서는 새로운 사업기회가 탄생될 수도 있다.

인간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의 생리적인 노화가 진행되어 면역기능의 약화, 소화기능의 저하, 근골격의 약화 등으로 각종 질병이나 상해에 쉽게 노출되게 된다. 이러한 인체의 기능적인 쇠퇴를 최소화하고자 개발·판매되고 있는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은 일반식품에 비해 부가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고령친화 식품산업분야의 유망산업이다. 또한, 고령친화식품산업은 아직 시장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을 선도할 수 있고, 고령자의 신체특성에 맞춘 물성과 영양을 고려한 일상식을 제공함으로써 질환의 예방과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가 전체의 의료비의 감소 등을 가져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초조사, 시장조사, 선진사례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전략을 정립하고 국가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여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진흥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2. 시장분석

### 2.1 세계 시장 변화

#### 1) 세계 시장 현황

- Datamonitor 자료에 따르면 식품산업의 세계시장 규모는 2008년에 약 2조 4천 억 달러였고 2009년에는 2008년보다 3.7% 증가한 약 2조 5천억 달러로 연평균 약 3% 이상의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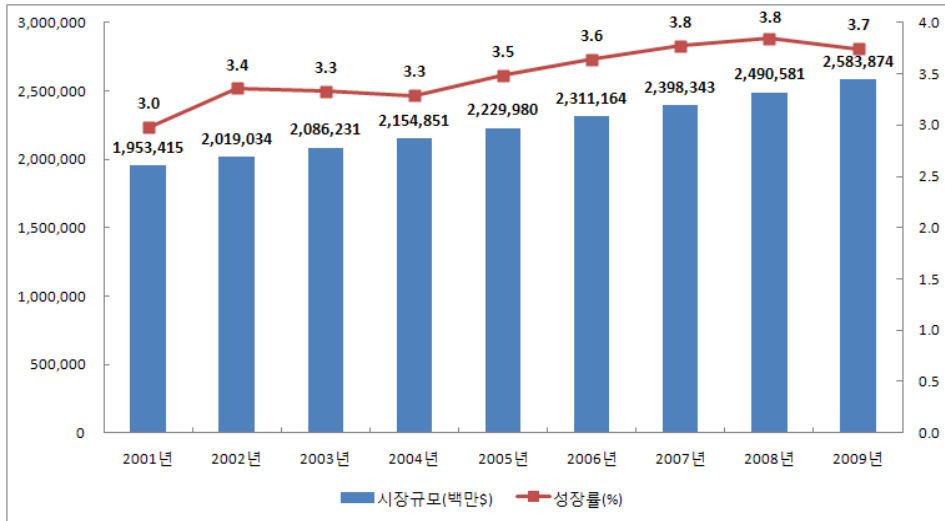


그림 II-3-1 식품산업 세계시장 규모

자료 : Datamonitor, Interactive Consumer Database, 2011(May)

주 : Datamonitor의 자료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재가공함

- 지역별 시장규모를 살펴보면 유럽시장이 40.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로 아메리카 28.6%, 아시아-태평양 27.6% 순이었다.
- 아시아 태평양 시장 중 중국시장의 비중이 10.6%로 가장 컸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1.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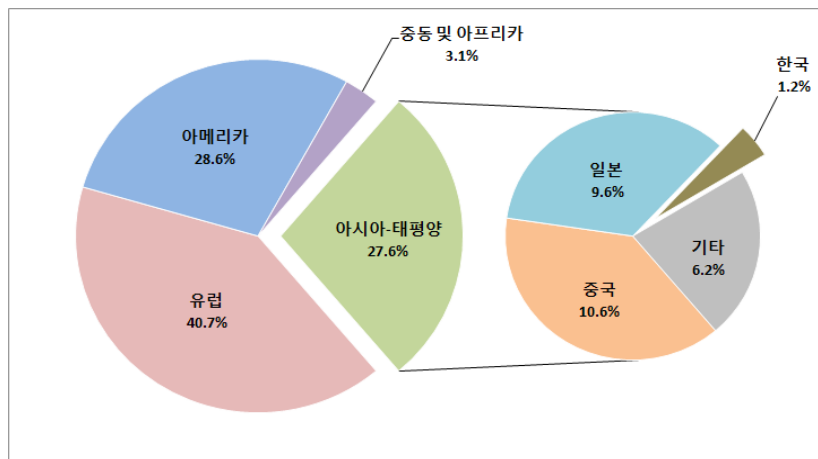


그림 II-3-2 2009년 식품산업 지역별 시장규모

자료 : Datamonitor, Interactive Consumer Database, 2011(May)

주 : Datamonitor의 자료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재가공함

- 세계 국가별 식품시장의 규모는 미국이 3,811억 달러로 가장 크고 중국 2,746억 달러, 일본 2,469억 달러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국가 (62개국) 중에서 한국은 312억 달러로 15위를 차지하였다.

표 II-3-1 세계 국가별 식품시장 규모 순위

(단위 : 백만 달러)

순위	국가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1	미국	334,587	344,844	355,905	368,774	381,067
2	중국	190,930	209,815	230,256	253,106	274,621
3	일본	226,218	230,747	235,646	241,118	246,892
4	독일	162,397	165,880	169,652	173,227	176,408
5	프랑스	127,914	130,120	132,644	135,209	137,756
15	한국	27,394	28,232	29,246	30,177	31,226
전체 국가(62개국)		2,229,980	2,311,164	2,398,343	2,490,581	2,583,874

자료 : Datamonitor, Interactive Consumer Database, 2011(May)

주 : Datamonitor의 자료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재가공함

- 세계 식품산업체 매출액 순위를 보면 스위스와의 Nestlé SA가 447억 달러로 1위를 차지하였으며, 그 뒤를 미국의 식품기업인 Kraft Foods, Inc. 398억 달러, Cargill, Incorporated 389억 달러, PepsiCo, Inc. 272억 달러로 잇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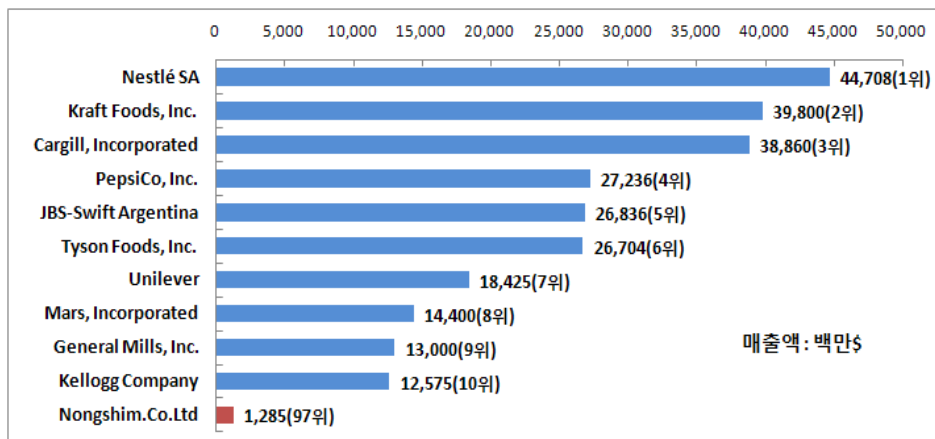


그림 II-3-3 2009년 기준 세계 식품산업체 매출액 순위

자료 : Datamonitor, Interactive Consumer Database, 2011(May)

주 : Datamonitor의 자료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재가공함

- 세계 기능성식품 시장은 2004년 1,967억 달러에서 2008년에 2,698억 달러로 그 규모가 방  
대해졌으며, 연평균 성장률은 8%대를 유지하고 있다.

표 II-3-2 연도별 세계 기능성식품 시장현황

(단위 : 백만 달러, %)

연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시장규모	196,679	213,361	230,578	249,886	269,797
성장률	8.6	8.5	8.1	8.4	8.0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산업 분석 보고서, 2009

출처 : Nutrion Business Journal, NBJ's Global Supplement &amp; Nutrition Industry Report, USA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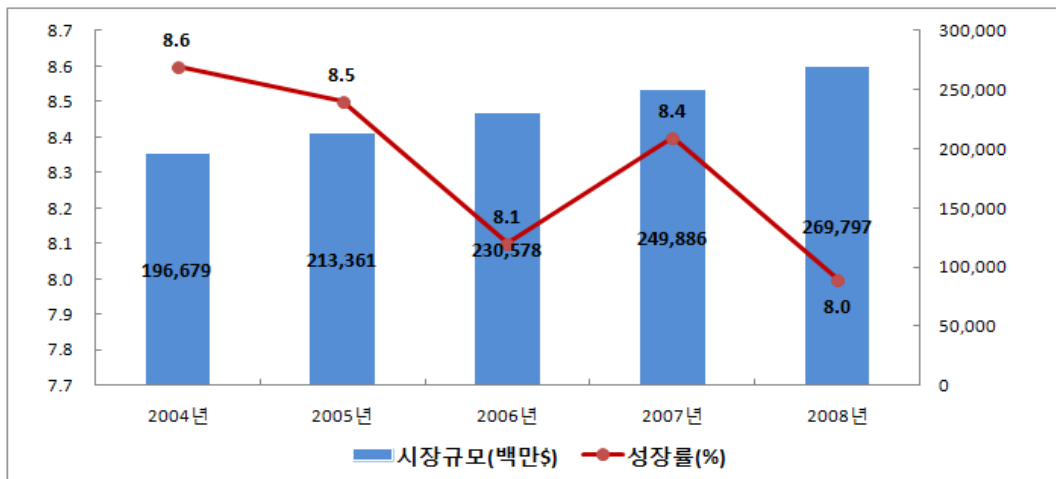


그림 II-3-4 연도별 세계 기능성식품 시장현황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산업 분석 보고서, 2009

출처 : Nutrion Business Journal, NBJ's Global Supplement &amp; Nutrition Industry Report, USA (2010)

- 세계 최대의 건강기능식품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으로 전체시장에서 37.7%의  
매출액 비중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서유럽이 28.2%, 일본이 14.2%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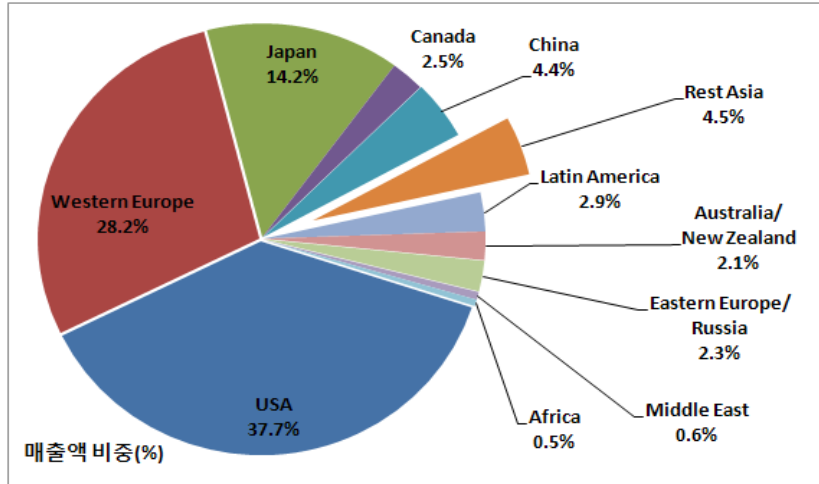


그림 II-3-5 2008년 건강기능식품 국가별 매출액 현황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산업 분석 보고서, 2009

출처 : Nutrion Business Journal, NBJ's Global Supplement & Nutrition Industry Report, USA (2010)

- 건강기능식품의 분류별 매출액 증가율 현황을 보면 유기식품(Natural & Organic Foods)은 12%로 그 폭이 고른 편이며, 유기상품(Natural & Organic Products)의 경우 2007년에 15.5%로 급격히 증가했다가 2008년에는 2006년과 비슷한 증가율이 나타났다.
- 식이보조식품(Dietary Supplements)과 기능성식품(Functional Foods)은 계속해서 증가율이 감소하다가 2007년부터는 일정한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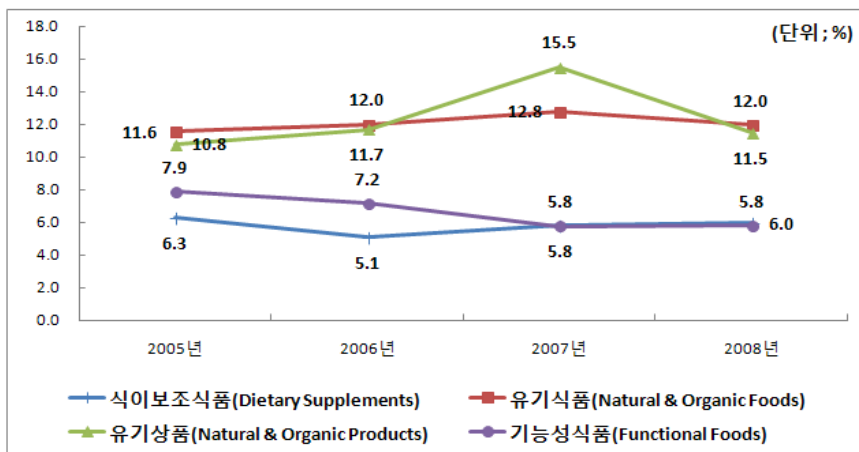


그림 II-3-6 건강기능식품 분류별 매출액 증가율 현황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산업 분석 보고서, 2009

출처 : Nutrion Business Journal, NBJ's Global Supplement & Nutrition Industry Report, USA (2010)

- 건강기능식품의 분류별 매출액 현황을 살펴보면 식이보조식품(Dietary Supplements)의 매출이 2004년에 611억 달러에서 2008년에 765억 달러로 5.8%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유기식품(Natural & Organic Foods)은 2004년 매출액 449억 달러에서 2008년에 708억 달러로 12.1%의 높은 성장을 하였다. 또한 기능성식품(Functional Foods)은 6.7%, 유기상품(Natural & Organic Products)의 경우 12.4%로 건강기능식품 분류 품목 중에서 가장 큰 성장을 이루었다.
- 건강기능식품의 분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기능성식품(2008년 기준)으로 35.3%였고 그 다음으로는 식이보조식품 28.4%, 유기식품 26.2%, 유기상품 10.0%의 순이었다.

표 II-3-3 건강기능식품 분류별 매출액 현황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04~'08 (CAGR)
식이보조식품 (Dietary Supplements)	매출액	61,104	64,957	68,275	72,231	76,545	5.8
	비중	31.1	30.4	29.6	28.9	28.4	
유기식품 (Natural & Organic Foods)	매출액	44,865	50,058	56,064	63,235	70,799	12.1
	비중	22.8	23.5	24.3	25.3	26.2	
유기상품 (Natural & Organic Products)	매출액	17,006	18,841	21,043	24,309	27,099	12.4
	비중	8.6	8.8	9.1	9.7	10.0	
기능성식품 (Functional Foods)	매출액	73,705	79,505	85,196	90,112	95,354	6.7
	비중	37.5	37.3	36.9	36.1	35.3	
합계		196,679	213,361	230,578	249,886	269,797	8.2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산업 분석 보고서, 2009

출처 : Nutriton Business Journal, NBJ's Global Supplement &amp; Nutrition Industry Report, USA (2010)

## 가. 일본

-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은 일본의 경우 고령친화 식품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1000억엔(약 1조4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그 중 연하장애 보조식품 시장이 100억엔으로 추산될 정도로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고령자를 위한 도시락 배달 사업 등을 포함한다면 그 규모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 일본의 경우 개호식품(유니버설 디자인 푸드, UDF)이 고령자를 주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는 식품으로 고령친화식품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일본의 경우와 비슷하거나 이보다 큰 고령친화 식품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일본의 경우 고령화 사회가 진행됨에 따라 일본의 개호식품 시장은 확대되고 있으며, 단순한 가공식품뿐 아니라, 가정배달식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일본의 고령친화 식품에 해당하는 개호식(유니버설 디자인 푸드)의 시장 규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009년 일본개호식품협의회에서는 회원기업을 대상으로 유니버설 디자인 푸드 생산통계를 집계한 결과, 생산량 5,880톤, 생산금액 7,226백만엔으로 전년 대비는 각각 107.3%, 115.2%로 크게 증가하였다.

표 II-3-4 유니버설 디자인 푸드 생산 현황

(단위 : 톤, 백만엔, %)

	2007년		2008년		2009년		09/08년비교		09/07년비교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단계	1	310	341	525	514	813	707	154.7	137.5	262.3	207.4
	2	483	484	410	409	402	413	98.1	101.1	83.2	85.3
	3	1,726	1,517	2,217	1,991	2,585	2,583	116.6	129.7	149.7	170.3
	4	1,570	1,097	1,415	920	1,016	814	71.8	88.5	64.7	74.2
토로미	750	1,920	912	2,440	1,065	2,710	116.8	111.0	141.9	141.1	
합계	4,839	5,359	5,479	6,274	5,880	7,226	107.3	115.2	121.5	134.8	
형태별	건조	745	1,914	912	2,440	1,091	2,789	119.6	114.3	146.5	145.7
	냉동	1,749	1,395	2,058	1,753	2,066	6,065	100.4	117.8	118.1	148.0
	상온	2,346	2,050	2,510	2,081	2,724	2,373	108.5	114.0	116.1	115.7
합계	4,839	5,359	5,479	6,274	5,880	7,226	107.3	115.2	121.5	134.8	
판매선별	시판	933	1,081	976	1,093	1,099	1,287	112.6	117.8	117.8	119.0
	업무	3,907	4,278	4,503	5,181	4,782	5,939	106.2	114.6	122.4	138.8
합계	4,839	5,359	5,479	6,274	5,880	7,226	107.3	115.2	121.5	134.8	

자료 : 일본개호식품협의회

## 2) 세계 고령친화 식품산업의 변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특수용도식품에 해당되는 제품군을, 미국은 특수용도식품(food for special dietary uses), 일본은 특별용도식품, 호주는 특수목적식품(special purpose foods), 유럽연합(EU)은 특수영양용도식품(foodstuffs intended for particular nutritional uses), 국제식품규격인 코덱스는 특수용도식품(food for special dietary uses)으로 제시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특수영양용도식품(foodstuffs intended for particular nutritional uses)이란 제품의 구성이나 제조 과정으로 인하여 보통의 소비를 위한 식품과 분명하게 구별되고, 제시하는 영양목

적에 적합성을 표현한 방식으로 판매하는 식품이라 규정함. 규정목록은 영유아를 위한 식품, 체중감소를 위한 열량제한 식사에 사용할 의도의 식품, 특수의료목적용 식품, 특수영양 용도를 나타내는 식품에 첨가되어질 수 있는 영양적 물질들의 급원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유럽연합, 2010). 국제식품 규격인 코덱스는 특수용도식품(food for special dietary uses)이란 특수한 신체적, 생리적 상태 혹은 질병 등에 의해 영양 요구량을 요구할 경우에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별히 가공되거나 조제된 식품이라 정의하고 있으며, 노인용 식품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의료식품의 표시 및 강조표시에서 제품이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제조된 경우는 그 효과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 표시를 규정하고 있다(CODEX, 2010). 미국의 특수용도식품(food for special dietary uses)이란 질환과 회복기, 임신, 수유,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 과민반응, 저체중·과체중 등의 육체적, 생리적, 병리학적 혹은 기타 조건을 이유로 필요한 특별한 식이를 공급하기 위함과 유아나 아동기를 포함하여 나이 때문에 필요한 특별한 식이를 공급하기 위한 이용시 사용되는 식품이라 정의하며, 유아용조제유와 저알레르기성 식품, 열량섭취 및 체중유지 또는 조절식품으로 관리한다(FDA, 2010).

표 II-3-5 각국별 특수영양식품의 분류

한 국	미 국	일 본	유럽연합
이유식	저알러지성 식품	유아용 조제분유	유아용 조제유
식이섬유 가공식품	저열량 식품	강화식품	이유식 및 유아식
유아용 조제유	유아식	특별용도식품	저칼로리식품
	당뇨식용식품	임산부용, 수유부용 분유	저나트륨식품
	나트륨섭취량 조절용식품	특정보건용 식품	무글루텐식
		<b>고령자용 식품</b>	의료용 식품
			운동선수 식품
			당뇨식용 식품

자료 : 김일성, 식품과 건강 저서, 2004.

또한, 건강, 영양식품협회 집계 결과 각종 성인병 예방을 위한 특정보건용 식품시장이 매년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노인영양 식품을 포함하는 특정보건용 식품시장의 유통형태로는 식품 유통경로가 92.7%, 약국유통이 3.8%, 통신판매가 1.0%를 차지한다.

일본은 영양개선법에 의해 특별용도식품이 관리되며, 특별한 용도 즉, 젓먹이, 유아, 임산부, 환자(병자) 등이 발육 또는 건강의 유지 및 회복용으로 공급하기에 적합하다는 뜻을 영양학적·의학적으로 한정시킨 식품이다(영양개선법, 2004). 일본은 1994년 특별용도식품 중



고령자용식품의 표시허가 취급에 대해 통지하였고, 고령자용식품은 저작곤란자용 식품과 저작인연하(삼킴)곤란자용 식품으로 분류하여 규정하였으나, 2009년 개정을 통해 연하곤란자용 식품만 법적으로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저작곤란자의 경우 민간협회나 업체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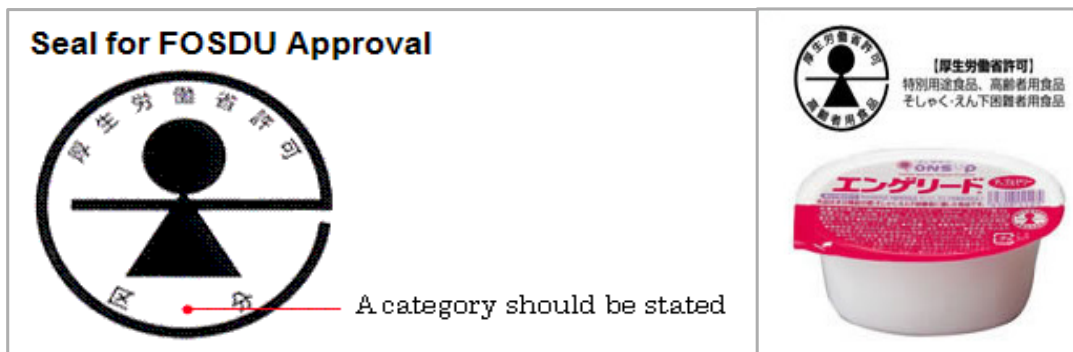


그림 II-3-7 일본의 특별용도식품 허가표시와 젤리유형의 고령자식품

자료출처 : 1. 후생노동성-<http://www.mhlw.go.jp/english/topics/foodsafety/fhc/03.html>,  
 2. 오사카업체; <http://www.otsukaki.jp/en/profile/products/mf/enge.html>

또한 노령층의 인구가 증가되면서 건강 먹거리에 대한 관심을 증가됨에 따라 질병의 치료보다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식품업계도 건강을 테마로 한 제품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며 개호식협회를 설립하여 저작과 연하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물성과 영양을 고려한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개호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홍보를 위하여 개호식과 건강기능식품과 함께 전시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업체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호식은 일본에서 급속한 노령화 진행으로 자녀들이 모시고 사는 노인보다 혼자 사는 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저작능력이 저하된 노인들이 혼자서도 쉽게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개발되었다.

미국의 경우,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근력강화식품이나 영양보충식품 등 고령자의 신체특성에 따라 필요로 하는 제품들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다. 또한 저소득 노인층을 위한 영양 관리는 Meals-on-wheels, Food Stamp, Senior Farmers' Market Nutrition과 같은 연방정부의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USDA와 학계의 연계를 통해 노인영양교육 및 노인층을 위한 식사 가이드라인이 발표·개발되고 있다.

고령자는 섭취기능과 소화흡수기능이 저하되어 식사의 양이 감소하고, 단백질이나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로 저영양이 되기 쉽다. 저영양이 되면 저항력이 약해지고, 오연성 폐렴(음

식물이 위로 들어가지 않고 폐로 들어가서 생기는 폐렴)이 시작되어 여러 가지 병에 걸리기 쉬어 영양개선이 필요하다. 고령자의 영양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먹기 쉬운 식사를 제공하여 식사량을 늘리는 것’ 또는 ‘영양가 높은 식사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섭취기능에 따른 식품을 제공하고, 식품자체에서도 영양가를 높이고 있다.

### 3) 선진사례

일본의 개호식을 저작 곤란한 고령자를 위한 식품으로 고령자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 누구나 먹을 수 있는 부드러운 음식이라는 뜻으로 유니버설 디자인 푸드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고령자가 알기 쉽도록 로고로 나타내고 있다. 유니버설 디자인 푸드의 상품 수는 현재 505 품목이 등록되어 있지만 해마다 수가 증가되고 있다. (2010년 5월말 현재) 당초는 레토르트 식품 등의 상온식품의 수가 많았지만, 근년에는 냉동식품의 등록수가 5배이상 증가하고 있다.

표 II-3-6 유니버설 디자인 푸드 상품등록현황 (505품목 · 2010. 5월말 현재)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토로미	합계
건조식품	0	0	2	0	42	44
냉동식품	57	19	193	7	0	276
상온식품	10	28	93	54	0	185
합계	67	47	288	61	42	505

협회의 발족 이래, 이용자, 식품 메이커에 관계없이 유니버설 디자인 푸드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후에도 생산량, 품목 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는 개호식 협회에 가입된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현황조사이므로 회원사가 아닌 곳에서 제조한 제품과 고령자를 위한 도시락 배달사업등의 시장을 포함하면 더욱 클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 개호식품의 경우 OEM으로 생산하는 경우가 많으며, 원료 회사가 다양하게 발달되어 있어 각 개호식품의 특성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일반적인 유통회사를 통한 판매와 통신판매, 도시락배달 등 여러 다양한 형태의 개호식이 있고, 매년 다양한 개호식품 전시회가 개최되고 있다. 연하곤란자용 식품을 판매할 경우는 대부분 병원에서 퇴원 시 의사나 영양사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단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표 II-3-7 저작 단계별 UDF 제품

저작 단계	제품 예시	저작 단계	제품 예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영양강화제품 (푸딩제품)	 <p>단백질, 미네랄 배합    VB1, VB2, 나이아신, VC, VD, VE    VB1, VB2, 나이아신, VC, VD, VE</p>		
일반제품 (푸딩제품)		토로미제품 (연하후련응등)	

## 2.2 국내 환경 변화

### 1) 법·제도

식품위생법 제 7조 1항의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한다.”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 제 14조 식품 등의 공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7조제1

항에 따라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 제9조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과 규격, 제10조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실은 식품 등의 공전을 작성·보급하여야 한다”로 정하고 있다. 이 법 조항에 근거하여 작성된 식품공전에서 제 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내에 제 19-5 특수의료용도등식품에 대한 개별 기준 및 규격을 정하고 있다.

특수용도식품이라 함은 영·유아, 병약자, 노약자, 비만자 또는 임신·수유부 등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특정 대상을 위하여 식품과 영양소를 배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가공한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임신·수유부용 식품을 말한다. (식품공전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내에 제19 특수의료용도식품 정의)

특수의료용도등식품이라 함은 정상적으로 섭취, 소화, 흡수, 또는 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거나 손상된 환자 또는 질병이나 임상적 상태로 인하여 일반인과 생리적으로 특별히 다른 영양요구량을 가진 사람의 식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할 목적으로 이들에게 경구 또는 경관급식을 통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식품공전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내에 제 19-5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정의)

이외에 특별히 고령친화식품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은 없으며, 「고령친화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노인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및 급식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

## 2) 국내 시장 현황

### 가. 식품산업 생산 및 수출입 현황

- 국내 식품산업 생산 현황은 2009년에 40조 4,090억 원으로 2003년을 제외한 전년 실적과 비교해 봤을 때 비교적 꾸준한 성장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증가율 면에서 보면 2002년 27.8%인 것이 2003년에 -40.5%로 급감하다가 2005년 이후부터는 10%대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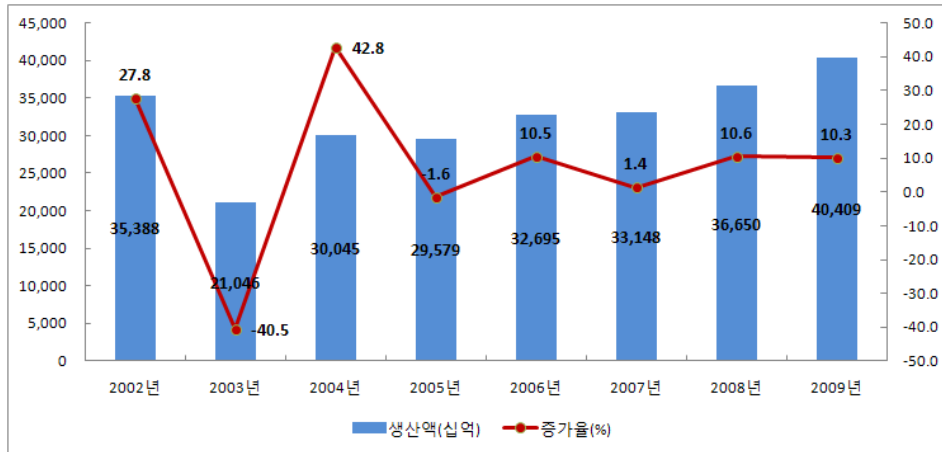


그림 II-3-8 국내 식품산업 생산현황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2010

- 주 : 1. 식품산업 = 식품 + 식품첨가물 + 기구, 용기, 포장지 + 축산물가공품(포장육 제외) + 건강기능식품
- 2. 생산량에서 도시락제조업, 용기류제조업은 단위가 '개'이므로 생산량(T)에서 제외
- 3. 증가율(%) = (당해년도매출액 - 전년도매출액) / 전년도매출액 × 100
- 4. 2003년 식품산업에는 축산물가공품 제외

-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9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은 1,063조 59억 원이며 제조업의 GDP는 265조 7,830억 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3.6%, 3.7% 증가하였다.
- 2009년도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조사결과 국내 식품제조산업의 총 생산규모는 40조 4,088억 원으로 2008년도 36조 6,496억 원에 비해 10.3% 증가하였다. 또한 국내총생산에 대한 비중은 3.8% 제조업 GDP에 대한 비중은 15.2%로 2008년도 3.6%, 14.2%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다.

표 II-3-8 국내산업 대비 식품제조산업 비중

(단위 : 십억원, %)

구분	국내총생산(GDP)	제조업 GDP	식품제조산업 총생산액	식품제조산업 비중	
				GDP 대비	제조업 GDP 대비
2001년	651,415	153,952	27,685	4.3	18.0
2002년	720,539	167,192	35,388	4.9	21.2
2003년	767,114	175,924	21,046	2.7	12.0
2004년	826,893	205,826	30,045	3.6	14.6
2005년	865,241	213,646	29,579	3.4	13.8
2006년	908,744	220,940	32,695	3.6	14.8
2007년	975,013	238,611	33,148	3.4	13.9
2008년	1,023,938	258,638	36,650	3.6	14.2
2009년	1,063,059	265,783	40,408	3.8	15.2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각 연도

주 : 식품산업 = 식품 + 식품첨가물 + 기구, 용기, 포장지 + 축산물가공품 + 건강기능식품

○ 전체 생산규모에 대한 비중을 기준으로 식품이 2008년(66.9%)에 이어 가장 높은 생산 비중(65.3%)을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축산물가공품이 8조 1,366억 원으로 20.1%, 기구용기포장지가 3조 9,684억 원으로 9.8%, 식품첨가물이 1조 2,389억 원으로 3.1%, 건강기능식품이 6,972억 원으로 1.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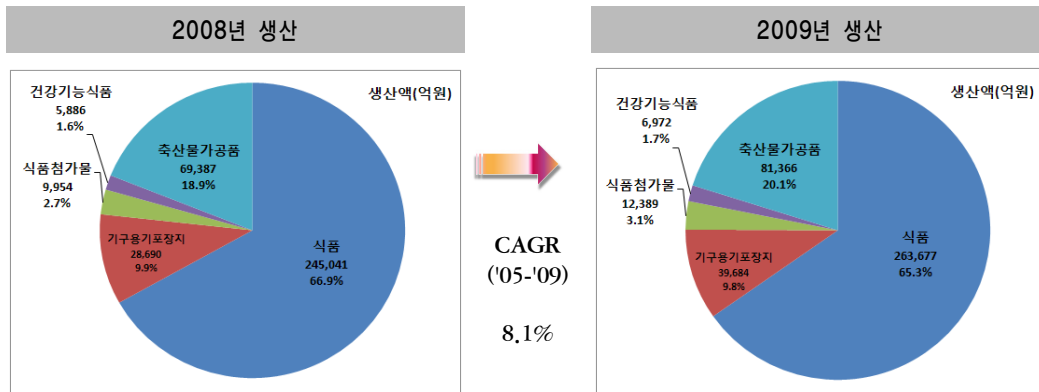


그림 II-3-9 식품 유형별 생산 현황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0년 식품산업 분석 보고서, 2010

○ 식품 등 유형별로는 기구·용기·포장지를 포함한 식품의 2009년 생산실적은 총 30조 3,361억 원으로 2008년 대비 7.8% 증가하였다. 생산규모는 2005년과 2007년을 제외하고 모두 10%대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2009년 전체 제조업의 GDP 증가율(3.7%)보다 약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3-9 식품 유형별 생산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비중	CAGR ('05-'09)
식품	생산액	197,423	211,957	208,975	245,041	263,677	65.3	7.5
	성장률	1.2	7.4	-1.4	17.26	7.61		
기구·용기·포장지	생산액	28,690	33,619	33,159	36,228	39,684	9.8	8.4
	성장률	2.5	17.2	-1.4	9.26	9.54		
식품첨가물	생산액	7,507	9,664	9,214	9,954	12,389	3.1	13.3
	성장률	-5.7	28.7	-4.7	8.03	24.46		
건강기능식품	생산액	5,026	4,929	7,215	5,886	6,972	1.7	8.5
	성장률	176.9	-1.9	46.4	-18.41	18.45		
축산물가공품	생산액	57,588	66,778	72,918	69,387	81,366	20.1	9
	성장률	-14.8	16	9.2	-4.84	17.26		
계	생산액	296,234	326,948	331,480	366,496	404,088	100	8.1
	성장률	-1.4	10.4	1.4	10.56	10.26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0년 식품산업 분석 보고서, 2010

- 2009년 식품제조산업의 수출입은 수입이 41억 달러로 66.7%, 수출이 20억 달러로 33.3%를 차지하여 수출보다는 수입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제조품목별로 구분해보면 (가공)식품이 40.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뒤로 기구용기가 13.6%, 식품첨가물 9.0%, 건강기능 식품 3.4%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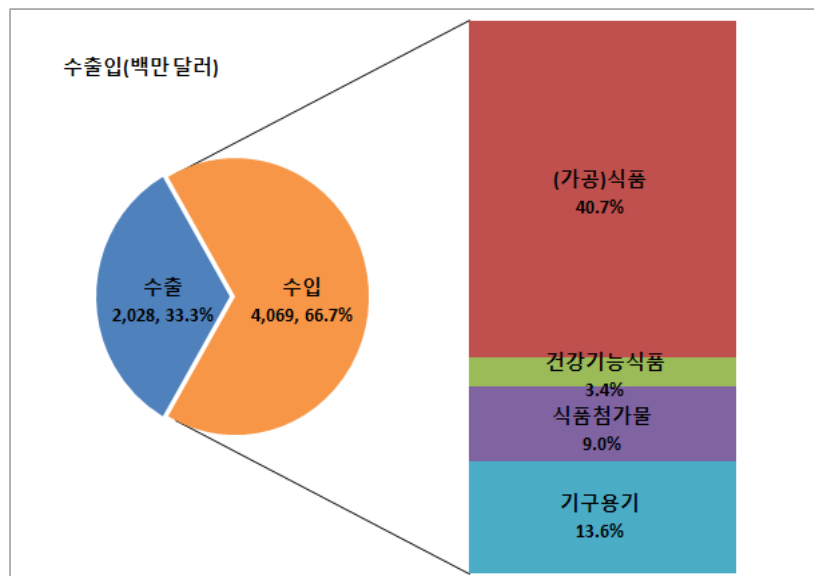


그림 II-3-10 2009년 식품제조산업 수출입 현황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식품등검사연보,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각 연도

주 : (가공)식품 등의 수입금액에는 주류와 공전에 언급되지 않은 품목류의 금액이 제외되어 가공식품 품목별 수입액의 총액 금액과 일치하지 않음

- 2009년도 식품 분류별 수출입현황을 보면, 가공식품(축산물가공품 포함)은 수출액이 16억 달러로 전년대비 약 10.6% 감소하였다. 수입액도 2008년 약 32억 달러에서 2009년 약 25억 달러로 21.6% 감소하였다.
- 가공식품의 무역수지 적자액은 약 9억 달러로 전년대비 35% 감소하였지만, 전체 식품제조산업 무역수지 적자액 중에서 약 45%로 나타났다.
- 기구·용기·포장은 수출액이 약 3억 달러로 전년대비 15.6% 감소한 반면 수입은 약 8억 달러로 전년대비 19.4% 증가하여 2008년보다 무역수지 적자폭이 크게 증가하였다.

표 II-3-10 연도별 식품제조산업 수출입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08년 대비 증감률
(가공)식품	수출	1,483	1,470	1,735	1,551	-10.6
	수입	2,520	2,727	3,163	2,479	-21.6
	무역수지	-1,037	-1,257	-1,428	-928	적자감소
건강기능식품	수출	39	37	39	36	-7.7
	수입	230	215	221	210	-5.0
	무역수지	-191	-178	-181	-174	적자감소
식품첨가물	수출	170	174	174	128	-26.4
	수입	470	519	615	550	-10.6
	무역수지	-300	-345	-441	-422	적자감소
기구용기 포장	수출	402	367	371	313	-15.6
	수입	604	708	695	830	19.4
	무역수지	-202	-341	-324	-517	적자증가
합계	수출	2,094	2,048	2,319	2,028	-12.5
	수입	3,824	4,169	4,694	4,069	-13.3
	무역수지	-1,730	-2,121	-2,375	-2,041	적자감소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식품등검사연보,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각 연도

주 : 1. (가공)식품 등의 수출금액에는 축산물가공품, 도시락/용기류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

2. (가공)식품 등의 수입금액에는 주류와 공전에 언급되지 않은 품목류의 금액이 제외되어 가공식품 품목별 수입액의 총액금액과 일치하지 않음

#### 나. 건강기능식품 및 특수용도식품 생산 현황

○ 2008년 건강기능식품의 업소수는 총 58,570개소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356개소 중 전문제조업소가 328개소, 벤처제조업소가 28개소, 건강기능식품 수입업소는 2,395개소였다. 또한 판매업소 55,819개소 중 일반 판매업소 54,538개소, 유통전문판매업소 1,281개소였다.

표 II-3-11 건강기능식품 업소수 추이

(단위 : 개소, %)

연도	총계	건강기능식품제조업			건강기능식품수입업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소계	전문제조업	벤처제조업		소계	일반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2005년	44,307	310	298	12	1,635	42,362	41,614	748
2006년	49,203	337	313	24	1,955	46,911	45,833	1,078
2007년	50,255	345	319	26	2,201	50,255	46,649	1,060
2008년	58,570	356	328	28	2,395	55,819	54,538	1,281

자료 : 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산업 분석 보고서, 2009

2.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통계연보(제11호),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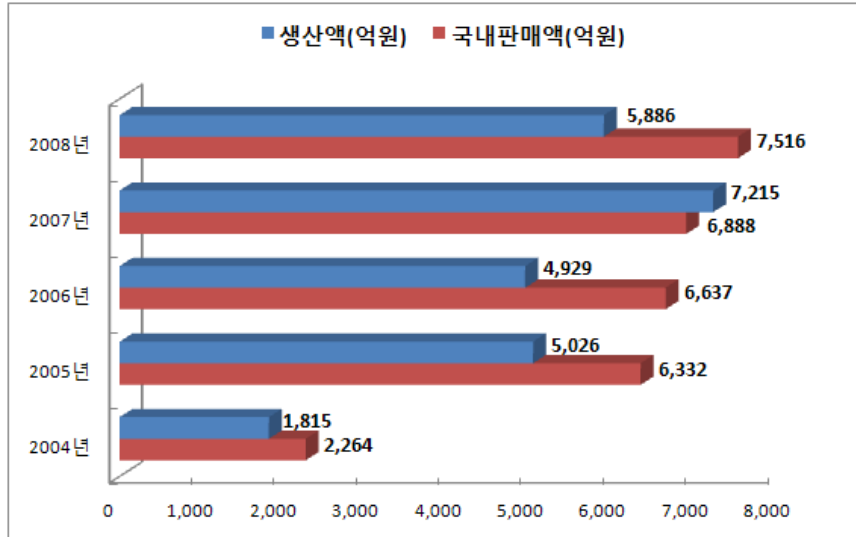


그림 II-3-11 건강기능식품 연도별 국내 생산실적

자료 : 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각 연도  
 2.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통계연보(제11호), 2009

- 건강기능식품의 2008년 생산량은 약 12,944 톤으로 전년대비 약 18% 증가한 반면 생산액은 5,886억 원으로 전년대비 약 18% 감소하였다. 따라서 전체 식품 생산액에서 건강기능식품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7년 약 2.2%에서 2008년에는 약 1.5%로 축소되었다.
- 그러나 국내외 판매량 및 판매액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과거에 생산된 제품이 일부 2008년도에 판매된 것으로 보인다.

표 II-3-12 건강기능식품 연도별 국내 생산실적

(단위 : 톤, 억원, 천달러)

연도	생산현황			출하현황			
	생산능력	생산량	생산액	국내 판매량	국내 판매액	국외 판매량	국외 판매액
2004년	228	5.47	1,815	4.25	2,264	0.51	20,224
2005년	350	12.67	5,026	13,262	6,332	1,316	41,327
2006년	518,653	12,269	4,929	10,933	6,637	667	38,889
2007년	472,691	10,934	7,215	10,239	6,888	339	37,143
2008년	467,827	12,944	5,886	12,989	7,516	697	39,263

자료 : 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각 연도  
 2.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통계연보(제11호), 2009

- 2009년 건강기능식품의 총 수입액은 2,097억 달러로 복합영양보충용제품이 874건, 376억 달러로 가장 많이 수입되었고, 코사핵사엔산(DHA)함유제품(569건, 124억 달러), 복합영양소제품(539건, 264억 달러), 개별인정형건강기능식품(446건, 129억)이 그 뒤를 이었다.

표 II-3-13 2009년 품목군별 수입건수 상위 10개 품목 수입 현황

(단위 : 건수, kg, 천달러)

순위	품목	수입건수	중량(kg)	금액(천달러)
1	복합영양보충용제품	874	895,629	37,562
2	코사핵사엔산(DHA)함유제품	569	646,222	12,443
3	복합영양소제품	539	450,740	26,422
4	개별인정형건강기능식품	446	286,496	12,924
5	오메가-3지방산함유유지제품	284	180,366	6,294
6	프로폴리스추출물제품	258	33,115	2,769
7	글루코사민함유제품	249	109,252	5,885
8	비타민보충용제품	248	192,084	6,991
9	비타민C	149	91,608	6,002
10	감마리놀렌산함유제품	145	42,567	2,162
합계		7,062	7,872,090	209,671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식품등검사연보, 각 연도

주 : 2009년도 건강기능식품 검사는 구(舊) 건강기능식품공전과 개정공전(2008년)으로 검사함에 따라 동일 품목이 상이할 수 있음

- 2004년에 특수용도식품은 215개 품목으로 나타났으며, 2008년도 110개 품목으로 감소폭이 심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2005년 고시개정으로 인하여 영양보충용 식품이 특수용도식품에서 제외됨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종업원의 경우 2004년 이후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며 2008년 5,297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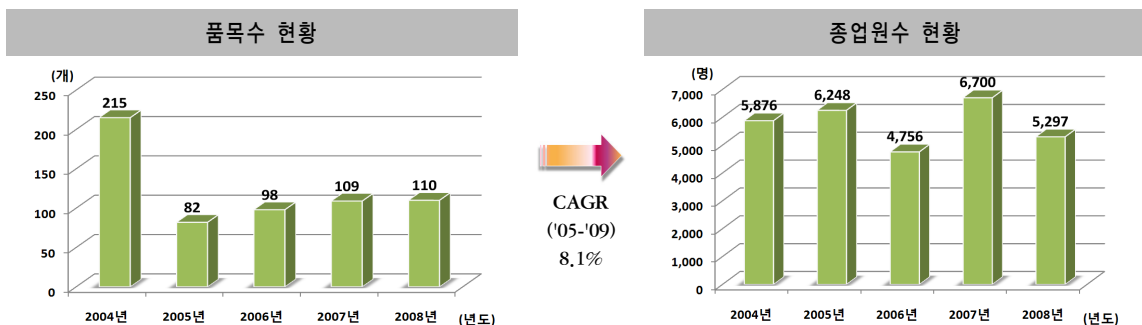


그림 II-3-12 특수용도식품 품목수 및 종업원수 현황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각 연도

○ 최근 노인용 식품의 안정성, 위생성, 경제성, 기호성 등이 고려된 식이처방의 요구도가 증가하여 기업에서는 상업용 특수 영양식을 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업용 특수영양 식품은 국내에서는 1990년대 초반부터 개발되었으며 구성은 일본과 같이 의약품계와 식품계로 나누어지고 있다. 이들 간의 영양학적 차이는 없으며 다만 허가를 받은 유형에 따라 식품과 의약품으로 구분되고 있다. 현재 당뇨, 신장질환, 간 질환 등의 질병을 가지고 노인들에 대한 제품이 개발된 상태이며 이는 40여개 질병을 대상으로 노인 환자용 식품을 개발·판매하고 있는 미국에 비해 매우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 2.3 국내 시장규모 및 전망

### 1) 시장규모 분석 방법

#### 가. 기준연도 시장규모 추정 방법

모태산업(식품산업)의 시장규모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자료원으로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sup>25)</sup>(식품의약품안전청)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 시장규모 분석을 위한 자료로 이용하였다.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관련 근거법령에 따라 분류하면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기구·용기포장제조업, 식품판매업, 집단급식소업, 식품운반업, 식품보존업, 식품접객업 등이 있으며 건강기능식품법의 관리 하에 있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 건강기능식품판매업, 건강기능식품수입업 등 매우 광범위하다.

고령친화 식품산업의 범주에는 일반 식품산업 중 일부와 건강기능식품산업 전체를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일반식품 중에 정상적으로 섭취, 소화, 흡수 또는 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거나 손상된 노인들을 위하여 특별히 제조·가공된 특수의료 용도식품산업은 전체를 포함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를 제외한 일반 식품산업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을 고려하여 시장규모를 추정하였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산업은 전체를 포함하여 시장규모를 추정하였다.

식품 생산실적 자료 중 국내출하액<sup>26)</sup>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적용하여 시장규모를 추정하였다.

25) 기준연도의 시장규모 추정을 위하여 2010년 생산실적 자료를 일부 활용하였으며, 2010년 생산실적 자료를 기준으로 2007-2009년 자료를 가공하여 분석함

26) 조업기간 내의 각 업체에서 제품을 생산, 국내에 출하한 제품의 생산액에 기업이윤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이다.

$$y_i = (\text{일반 식품산업}_i) \times (\text{인구비율}_i) + (\text{특수용도식품}_i) + (\text{건강기능식품}_i)$$

- $y_i$  :  $i$ 연도의 고령친화 식품산업 시장규모
- 일반식품산업 $_i$  :  $i$ 연도의 일반식품산업 시장규모<sup>27)</sup>
- 특수용도식품 $_i$  : 일반식품산업 중  $i$ 연도의 특수용도식품 시장규모
- 건강기능식품 $_i$  :  $i$ 연도의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

## 나. 시장규모 전망(예측) 방법

고령친화 식품산업의 2020년까지의 시장규모를 예측하기 위하여, 모태산업 및 고령친화 식품산업 시장규모의 2007년-2010년 연평균성장률(CAGR)을 이용하였다.

## 2) 시장규모 추정 및 예측 결과

### 가. 기준연도 시장규모 추정 결과

- 고령친화 식품산업 시장규모를 추정한 결과 2010년 4조 8,990억 원으로 전년 (4조 4,036억 원)보다 11.2% 상승하였다. 2007년-2010년 연평균 13.0% 성장하였으며, 전체 식품산업 대비 약 13.7%의 시장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특수용도식품은 전년대비 성장률이 31.3%로 가장 높으며, 2007년-2010년 연평균성장률 또한 34.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I-3-14 국내 고령친화 식품산업 시장규모

(단위 : 백만원, %)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전년대비 성장률	CAGR(07-10)
일반식품	2,680,148	2,962,928	3,431,058	3,806,763	11.0	12.4
건강기능식품	688,837	751,632	918,383	1,021,128	11.2	14.0
특수용도식품	29,228	40,269	54,113	71,061	31.3	34.5
고령친화	3,398,212	3,754,829	4,403,554	4,898,952	11.2	13.0
비중	12.3	12.7	13.3	13.7		
모태산업	27,716,079	29,503,555	33,181,636	35,824,108	8.0	8.9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각 연도

주 : 1. 일반식품 : 식품(특수용도식품)축산물가공품 제외+식품첨가물+기구/용기/포장지

2. 일반식품의 경우 연도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을 적용한 국내 출하액임

3. 모태산업 범위는 식품+식품첨가물+기구/용기/포장지+ 건강기능식품(축산물가공품 제외됨)

27) 일반 식품산업에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지 등이 포함되며, 이 중 특수용도식품은 제외한 부분이다. 보통 식품제조산업에 포함되는 축산물가공품은 농림부에서 집계하며, 2010년 자료에서 반영되지 않았으며, 2007-2009년 생산실적 자료에서도 제외할 후 분석하였다.(범위가 다소 제한적임)

- 고령친화 식품산업 전략품목으로 선정된 부분의 시장규모를 추정된 결과 2010년 1조 4,075억 원으로 전년 (1조 2,609억 원)보다 11.6% 상승하였다. 2007년-2010년 연평균 14.2% 성장하였으며, 전체 고령친화 식품산업 중 약 28.7%의 시장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3-15 국내 고령친화 식품산업 전략품목 시장규모

(단위 : 백만원, %)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전년대비	CAGR(07-10)
건강기능식품	688,837	751,632	918,383	1,021,128	11.2	14.0
특수용도식품	29,228	40,269	54,113	71,061	31.3	34.5
전통발효식품	187,991	224,928	233,047	253,412	8.7	10.5
두부류 또는 묵류	38,900	42,854	55,332	61,866	11.8	16.7
전략품목 전체	944,955	1,059,684	1,260,875	1,407,467	11.6	14.2
비중	27.8	28.2	28.6	28.7	-	-
고령친화 식품산업	3,398,212	3,754,829	4,403,554	4,898,952	11.2	13.0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각 연도

- 주 : 1. 일반식품 범위는 [식품(특수용도식품)축산물가공품 제외]+식품첨가물+기구/용기/포장지]임
- 2. 일반식품의 경우 연도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을 적용한 국내 출하액임

### 나. 시장규모 전망(예측) 결과

- 앞에서 설명한 방법을 활용하여 향후 고령친화 식품산업의 시장규모를 추계<sup>28)</sup>하여 본 결과, 고령친화 식품산업의 시장규모는 2015년 9조 128억 원, 2020년 16조 5,810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 2010년 모태산업 대비 고령친화 식품산업의 비중은 13.7%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 16.4%, 2020년 19.7% 정도의 비중으로 추정된다.

표 II-3-16 고령친화 식품산업 시장규모 전망(예측)

(단위 : 백만원, %)

	2010년	2015년	2018년	2020년	CAGR(10-20)
고령친화 식품산업	4,898,952	9,012,755	12,993,023	16,581,048	13.0
비중	13.7	16.4	18.3	19.7	
모태산업	35,824,108	54,943,296	71,016,344	84,266,322	8.9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각 연도

28) 식품산업 및 고령친화 식품산업 시장규모 2007년-2010년 연평균성장률(CAGR)을 이용하여 2020년까지 시장규모를 예측함

### 3. 전략품목 및 지원정책

#### 3.1 선정기준 및 전략품목 선정

##### 1) 선정기준

고령친화식품의 전략품목 선정은 식품업체(12개 선정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및 소비자(65세 이상) 설문조사를 이용하였다. 기업 설문조사의 항목은 해당 식품유형에 대한 65세 이상 노인층의 구매 비율, 현재 해당 유형에서 고령친화식품이 차지하는 비율, 해당 유형에서 고령친화식품이 향후 5년 안(단기)에 차지할 비율, 해당 유형에서 고령친화식품이 향후 15년 안(장기)에 차지할 비율의 항목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65세 이상 소비자에 대해서는 평소 선호 식품, 향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 식품에 대해 조사하였다. 배점방법은 최고점 10점에서 최저 2점으로 5단계로 차등 배점하였고 총 6개 항목 중에서 4개 항목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여 총 합이 100점 만점이 되게 하였으며, 80점 이상을 전략품목으로 선정하였다.

표 II-3-17 고령친화식품 전략품목 선정을 위한 설문 항목

	설문 내용	설문 대상	가중치
항목 1	65세 이상소비자의 구매 비율	식품업체	-
항목 2	현재 해당 유형에서고령친화식품이 차지하는 비율	식품업체	-
항목 3	해당 유형에서 고령친화식품이향후 5년 안(단기)에 차지할 비율	식품업체	× 2
항목 4	해당 유형에서 고령친화식품이향후 15년 안(장기)에 차지할 비율	식품업체	× 2
항목 5	65세 이상 소비자의 평소선호 식품	소비자	× 2
항목 6	65세 이상 소비자가 향후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 식품	소비자	× 2

표 II-3-18 고령친화식품 전략품목 설문조사 결과

	항목 1	항목 2	항목 3	항목 4	항목 5	항목 6
제과 · 제빵류(잼류 포함)	30%	0%	13%	20%	24.0%	5.3%
면류제품	18%	7%	14%	31%	23.3%	3.3%
우유, 육제품	4%	0%	15%	28%	33.3%	12.3%
어육제품	20%	5%	17%	30%	19.3%	8.0%
두부류 또는 묵류	20%	5%	22%	31%	55.0%	22.0%
전통 · 발효식품(장류, 김치류, 젓갈류, 절임식품 포함)	20%	5%	17%	25%	57.0%	38.0%
음료 · 다류제품(커피 포함)	11%	2%	7%	14%	26.7%	3.7%
시리얼류	1%	0%	3%	6%	1.7%	0.0%
즉석섭취 · 편의식품	6%	2%	7%	21%	6.3%	3.0%
특수의료용도식품	48%	28%	25%	43%	12.7%	23.3%
유기가공식품	2%	0%	6%	14%	21.3%	14.0%
건강기능식품	36%	24%	15%	30%	65.3%	66.7%

표 II-3-19 고령친화식품 전략품목 설문조사 배점기준표

	배점기준				
	10	8	6	4	2
항목 1	40% 이상	30%이상 ~ 40%미만	20%이상 ~ 30%미만	10%이상 ~ 20%미만	10%미만
항목 2	20% 이상	15%이상 ~ 20%미만	10%이상 ~ 15%미만	5%이상 ~ 10%미만	5%미만
항목 3	20% 이상	15%이상 ~ 20%미만	10%이상 ~ 15%미만	5%이상 ~ 10%미만	5%미만
항목 4	30% 이상	25%이상 ~ 30%미만	20%이상 ~ 25%미만	15%이상 ~ 20%미만	15%미만
항목 5	40% 이상	30%이상 ~ 40%미만	20%이상 ~ 30%미만	10%이상 ~ 20%미만	10%미만
항목 6	35% 이상	25%이상 ~ 35%미만	15%이상 ~ 25%미만	5%이상 ~ 15%미만	5%미만

## 2) 전략품목 선정

우선 고령친화식품과 관련된 12개의 품목을 선정하였으며, 기업 및 소비자의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배점이 높은 품목을 선정하였다.

기업의 설문조사 항목 배점의 경우 특수의료용도식품, 건강기능식품, 두부류 및 묵류, 어육제품의 순으로 높은 배점을 받았으며, 시리얼과 유기가공식품이 가장 낮은 배점을 받았다. 반면, 소비자의 설문조사는 전통·발효식품, 건강기능식품, 두부류 및 묵류, 우유 및 육제품의 순으로 높은 배점을 받았으며, 시리얼, 즉석섭취·편의식품이 가장 낮은 배점을 받았다.

기업 및 소비자의 설문조사를 모두 반영한 결과, 최종적으로 건강기능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두부류 및 묵류, 전통·발효식품(장류, 김치류, 젓갈류, 절임식품 등)을 선정하였다.

표 II-3-20 고령친화식품 전략품목 선정 평가표

	항목 1	항목 2	항목 3	항목 4	항목 5	항목 6	총합
제과·제빵류(잼류 포함)	8	2	12	12	12	8	54
면류제품	4	4	12	20	12	4	56
우유, 육제품	2	2	16	16	16	8	60
어육제품	6	4	16	20	8	8	62
두부류 또는 묵류	6	4	20	20	20	12	82
전통·발효식품(장류, 김치류, 젓갈류, 절임식품 포함)	6	4	16	16	20	20	82
음료·다류제품(커피 포함)	4	2	8	4	12	4	34
시리얼류	2	2	4	4	4	4	20
즉석섭취·편의식품	2	2	8	12	4	4	32
특수의료용도식품	10	10	20	20	8	12	80
유기가공식품	2	2	8	4	12	8	36
건강기능식품	8	10	16	20	20	20	94

주: 항목 3-6의 경우 가중치 적용

기업 설문조사에서 특수의료용도식품이 가장 높은 배점을 받았으나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현실적으로는 소비가 많지 않아 기업과 다른 입장을 보였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기업과 소비자에게 모두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건강기능식품의 범위가 넓고 특정 제품 또는 원



료에 대한 선호도가 조사되지 않아 추후 건강기능식품을 고령친화식품으로의 제조하기 위한 기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두부류 또는 묵류 및 전통·발효제품의 경우 소비자의 선호도 및 필요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제품의 물성 및 영양적인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고령친화식품의 전략품목으로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소비자 조사 결과, 고령자용 선호식품에 대한 선정기준을 보면 60% 이상의 답변자가 영양분이 갖춰진 식품이라고 답변하였고, 다음으로 소화가 잘되는 식품으로 답변하여 향후 고령친화식품 개발 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표 II-3-21 최종 고령친화식품 전략품목 선정

	항목 1	항목 2	항목 3	항목 4	항목 5	항목 6	총합
두부류 또는 묵류	6	4	20	20	20	12	82
전통·발효식품(장류, 김치류, 젓갈류, 절임식품 포함)	6	4	16	16	20	20	82
특수의료용도식품	10	10	20	20	8	12	80
건강기능식품	8	10	16	20	20	20	94

### 3.2 제약요인 및 정책과제

#### 1) 제약요인

고령친화산업진흥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르면 고령친화제품은 노인을 주요 수요자로 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로서 노인이 주로 사용하거나 착용하는 용구, 용품 또는 의료기기, 주택 및 시설, 요양서비스, 금융서비스, 정보기기 및 서비스, 관광 또는 건강지원서비스 및 노인을 위한 의약품, 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 및 급식서비스 등으로 정의되어 있다. 위의 내용을 근거로 고령친화 식품산업을 정의한다면 건강기능식품 및 급식서비스로 규정할 수 있겠다. 하지만 광범위한 식품산업의 범위를 감안하면 고령친화 식품산업을 건강기능식품 및 급식서비스로 제한하기에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식품위생법 제2조에서는 "식품"이란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로 정의하며,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에서는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식료품 제조업은 사람 또는 동물이 섭취하는 식료품 및 동물사료 등을 제조하는 산업 활동으로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업과 냉동보관업만을 포함하나, 국내 식품산업 통계기준에 의하면

식품(축산물가공식품 포함),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광의의 식품산업은 식품제조업, 외식산업, 식재료 및 식자재산업, 식품유통업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다.

향후 고령사회의 주요 소비자 그룹으로 활동할 노인 소비자의 건강증진 및 생활수준 향상 등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새로운 시장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다양한 의미의 식품산업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개발 및 제품화가 필요하며,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고령친화 식품산업의 범위의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겠다.

이미 인구고령화는 전 세계 트렌드이며,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속도의 인구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 중의 하나이다. 또한 고령친화 식품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성장 잠재력이 분명하며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증진 뿐만 아니라 산업적 측면에서 충분한 투자 가치가 있는 산업 분야로 볼 수 있겠다. 하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고령친화 식품산업 분야에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이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유사한 상황이다.

식품산업의 특징 상 많은 시설투자과 대규모 생산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시장진입의 시점이 타 산업에 비해 늦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인구 고령화는 이미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변화이며 식품시장의 소비자 양상의 변화라고 볼 수 있으며 대규모 글로벌 식품기업들은 이미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고령친화식품을 생산해 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식품기업들이 국내 식품산업에서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의 국가차원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기업의 투자가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 연구개발 지원 및 제도개선을 통한 산업화 지원 등 정부차원의 지원이 수반된다면 보다 신속하게 산업이 성장궤도에 올라 설 수 있으며, 다가올 고령사회에 경제성장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 산업영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2) 정책과제

고령친화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인 소비자에게 부족하기 쉬운 단백질 및 비타민 등 영양성분 보충 및 씹고 삼키는 섭취기능의 저하를 보완하는 등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의 개발 및 상업화 지원이 필요하겠다.

고령친화 식품산업의 활성화는 향후 고령사회의 국민 보건증진 뿐만 아니라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업계의

제품개발 및 상업화 촉진, 고령친화식품의 법적근거 확보, 고령친화식품 관련 서비스산업 개발과 고령친화식품 연구개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업계의 제품개발 및 상업화 촉진을 위해서는 시장진입의 규제요인 및 마케팅 제약요인 분석이 필요하겠다. 현재는 고령친화식품의 시장이 명확하게 형성되지 않고 있으며, 고령친화식품을 의미하는 식품 유형이 별도로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품에 식품 유형을 고령친화식품으로 명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시장진입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해야 하겠다. 또한, 고령친화식품에 대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증사업 등을 통한 마케팅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겠다.

고령친화 식품산업을 관련 법률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고령친화산업진흥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고령친화산업 관련 법률과 식품산업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안전기본법 등이 있으며, 관계 부처 역시 보건복지부, 농림수산물식품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여러 부처가 나누어 관할하고 있는 상황이다.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다양한 부처와 다양한 법률에 고령친화 식품산업의 정의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이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에 고령친화식품을 포함시켜 노인요양병원 및 시설에 있는 노인 수요자들의 구매력을 보충해 주는 방안 및 고령친화식품 바우처 사업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경제력이 충분하지 않은 노인 수요자의 구매력을 보충해 주는 방안 등이 검토가 필요하겠다.

또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영양관리서비스의 체계적인 제공을 위한 고령자용 맞춤형 영양관리서비스 및 케이터링 서비스 등의 사업이 효과적일 수 있겠다. 만성질환을 경험하고 있는 대부분의 고령자의 효과적인 관리는 국민 의료비의 경감으로 직결된다는 높은 비용-효과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체계적 개발은 부진하다고 볼 수 있다. 미국, 호주, 일본 등을 중심으로 기업 차원의 영양관리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내 기업에서는 사업 영역으로 도입이 미미한 실정이다. 영양 상담 및 교육 위주의 의료기관형 영양관리 서비스에 더하여 지속 가능한 형태의 맞춤형 질환/영양 관리식 제공까지 연계된 포괄적 영양관리 서비스 패키지 도입 필요하겠다. 또한 고령친화식품의 섭취 및 고령자의 영양관리 서비스의 국민 의료비 절감 및 보건증진 효과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통해 고령친화 식품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기반으로 활용 가능하겠다.

고령친화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로 다양한 노인 소비자의 요구에 대한 기초 연구를 들 수 있겠다. 노인 소비자의 만성질환별 영양 불균형 상태를 조사

하여 칼슘,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레시틴, 타우린 등 고령자에게 부족하기 쉬운 영양기 능성분의 활용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겠다. 그리고 식품가공 측면에서 노인 소비자들의 섭취를 도울 수 있는 점도조절 제품, 가공 및 유통과정에서 영양기능성분들의 손 실이 적고 온전한 체내 흡수를 도울 수 있는 제품 등 고령친화식품에 적합한 소재 및 가공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겠다. 더불어 이와 같은 소재 및 가공방법 연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유 형의 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제품화 및 상용화 지원 연구가 산학연 공동으로 추진될 필요 가 있겠다. 제품개발에 필요한 정보 생산, 소재 및 가공방법 지원, 마케팅 지원 등 초기 단계 의 고령친화 식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산학연이 참여하는 고령친화 식품산업 지원센터 운영이 필요하겠다.

표 II-3-22 고령친화 식품산업 정책과제

정책지원
(1) 산업계의 제품개발 및 상업화 촉진
- 시장진입 규제요인 분석
-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추진
- 고령친화식품 마케팅 지원
- 고령친화 식품산업 인증사업 추진
(2) 고령친화 식품산업의 법적 지위 명확화
- 고령친화식품의 법적 지위 및 지원 근거 명확화
- 고령친화 식품산업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예산지원
(3) 고령자를 대상으로 영양관리서비스
- 고령자 맞춤형 영양관리서비스 개발
- 고령자용 케이터링 서비스 개발
- 고령친화 식품산업의 보건증진 효과 및 경제적 영향분석
(4) 고령친화식품 연구개발 지원
- 고령친화 식품산업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 고령자 양태별 영양불균형 상태 조사
- 고령친화식품 소재 및 가공방법 개발 지원
- 전문인력 양성 로드맵 작성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 고령친화 식품산업 해외진출 로드맵 작성 및 지원사업 수행

### 3.3 정책 기대효과

사회적으로 고령친화제품 구입에 대한 보험급여가 확대되고, 종합체험관 건립 등으로 고령친화제품에 대한 홍보가 강화되며 대여사업 등의 활성화와 함께 고령친화 식품산업도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고령친화식품이 환자식이라는 개념보다는 환자가 아닌 일반 고령자 까지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의 식품 형태로 발전되어야 하며, 공급측면에서의 제품개발 촉진과 수요측면에서 주된 소비자가 될 노인인구의 구매 촉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고령친화 식품산업의 전략적 육성으로 다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 첫째, 고령친화 식품산업의 법적 범위 확대 및 구체화를 통해 정부의 지원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고령친화 식품의 연구개발, 제품화 및 시장 형성이 촉진되어 산업 활성화 기반이 구축될 것이다. 또한 영양관리서비스 등 고령자를 위한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 산업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고령자를 위한 식품의 판매 및 섭취 증가로 인해 고령자의 건강증진 및 이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 넷째, 고령친화 식품 산업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해외진출 노력으로 해외시장에서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다.

종합하면 고령친화식품의 활성화에 따라 기존 식품과는 다른 노인성 만성질환, 고령자의 신체 특성, 기호, 식습관 등의 과학적 데이터를 통한 건강기능식품 및 특수의료용도식품 등의 고령친화식품이 제공되며, 이에 따라 국민 보건증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시장진입 규제요인 분석, 새로운 식품유형 정의, 기업의 마케팅 제약요인 등을 분석하여 식품 업계의 생산증가 및 시장확대를 통한 식품산업의 활성화 및 신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 제4장 고령친화 화장품산업

### 1. 개요 및 범위

#### 1.1 고령친화 화장품산업의 범위

화장품법에서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화장품법 제2조)

화장품산업은 연구개발 단계에서 화장품이 만들어지고 마케팅과 판매과정을 거쳐 소비자에 이르게 되는데, 화장품산업은 연구개발, 생산, 판매·유통까지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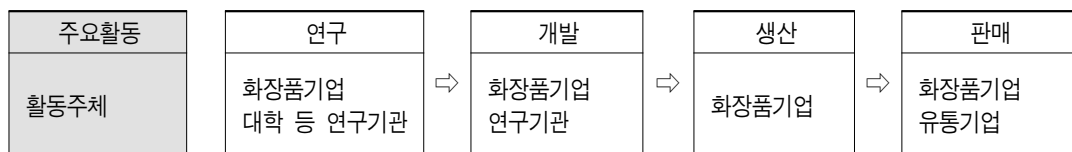


그림 II-4-1 화장품 산업의 범위

화장품법에서 일반화장품은 유형별 효능·효과에 따라 어린이용제품류, 목욕용제품류 등 11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어 오다, '10년 3월 화장품유형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여 12개의 분류 체계로 확대하였다. 12개의 유형은 어린이용, 목욕용, 인체 세정용, 눈 화장용, 방향용, 염모용, 색조화장용, 두발용, 손발톱용, 면도용, 기초화장용, 체취방지용 등이 그것이다. 기능성 화장품은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화장품 등 3개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앞서 화장품의 정의에서와 같이 화장품은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고령화에 따라 진행되는 각종 노화현상에서 젊음을 유지하거나 젊게 보이게 하려는 미적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임으로 연령별로 분류된 어린이용제품류를 제외한 전체 화장품에 해당하는 화장품산업이 고령친화산업이라 말할 수 있다.

## 1.2 고령친화 화장품산업의 특징

화장품산업은 인간의 미와 신체에 관련한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특수한 가치성으로 국가의 문화와 자존심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문화산업으로 선진국에서 발달한 산업이다. 또한 화장품 효과에 대한 다양한 소비자 요구에 따라 피부과학을 중심으로 BT(한방, 천연물, 합성성분 등), NT(제형 등), IT(피부측정 등) 등이 융합하여 발전하는 기술집약적 산업이다.

한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고용유발 계수는 10억원당 12.9명으로 제조업 4.9명, IT 8.2명에 비해 높으며, 부가가치 창출효과 또한 1,000억원당 788억원으로 제조업 650억원, 전산업 평균 740억원에 비해 높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08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인구구조의 고령화, 웰빙 트렌드, 미에 대한 관심 증가로 기능성과 친환경성을 강조한 제품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고, 특히 주름개선 등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고령친화 화장품산업은 고령자의 피부 타입(건성, 지성, 복합성 등) 및 신체 기능약화에 따른 보완(탈모, 노화 등)적인 기능을 하는 산업이다. 또한 고령자의 활동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기능성 소재 및 기술력이 집약된 산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 2. 시장분석

### 2.1 세계 시장 변화

#### 1) 세계 시장 현황

- 2010년 화장품산업 세계시장 규모는 2,331억 달러로 2009년 2,146억 달러보다 4% 증가하였다. 화장품산업 세계시장 규모는 2001년 이후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3%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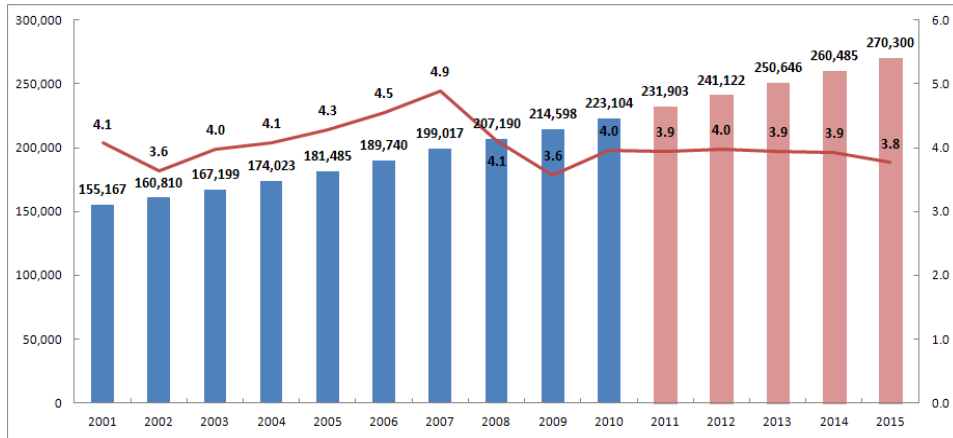


그림 II-4-2 화장품산업 세계시장 규모

자료 : Datamonitor Personal Care Market Data, 2011(Aug).

주 : Datamonitor의 자료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재가공함

- 유형별로는 Skincare 시장이 766억 달러로 전체 화장품 시장의 34.3%를 차지함으로써 유형별 화장품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규모를 형성하였으며, 다음으로는 Haircare와 Fragrances가 각각 400억 달러(17.9%), 363억 달러(16.3%)로 전체 화장품 시장에서 10%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년대비 성장률이 높은 유형은 8억 달러의 Feminine Care로 전년대비 5.3%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다른 유형에 비하여 비중은 작지만 앞으로 그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표 II-4-1 유형별 화장품 시장규모(2006년-2010년)

(단위 : 백만 달러, %)

유형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시장규모	YoY	비중
Skincare	64,139	67,361	70,374	73,273	76,563	4.5	34.3
Haircare	34,819	36,404	37,737	38,860	40,038	3.0	17.9
Personal hygiene	24,560	25,680	26,591	27,609	28,651	3.8	12.8
Fragrances	30,790	32,516	33,896	34,943	36,293	3.9	16.3
Make-up	29,306	30,704	32,028	33,114	34,510	4.2	15.5
Baby personal care	1,298	1,351	1,411	1,453	1,499	3.2	0.7
Male Toiletries	4,217	4,353	4,471	4,627	4,794	3.6	2.1
Feminine Care	612	648	683	718	756	5.3	0.3
Total	189,740	199,017	207,190	214,598	223,104	4.0	100.0

자료 : Datamonitor Personal Care Market Data, 2011(Aug).

주 : 1. Datamonitor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화장품 유형 위주로 자료를 분석함

2. YoY는 전년대비 증가율



- 2010년 지역별 시장규모는 유럽이 876억 달러로 세계시장의 39.2%를 차지하였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 661억 달러(29.6%), 북미 626억 달러(28.1%), 중동 및 아프리카 68억 달러(3.1%) 순이었다.
- 유럽은 화장품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나, 점유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시아 지역의 점유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중남미 시장은 소득 증가, 유통 및 마케팅 네트워크의 현대화, 소비자의 제품 인식도 변화, 미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 II-4-2 지역별 화장품 시장규모(2006년-2010년)

(단위 : 백만 달러, %)

지역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Europe	77,317 (40.7)	80,513 (40.5)	83,206 (40.2)	85,184 (39.7)	87,563 (39.2)
Asia-Pacific	54,659 (28.8)	57,446 (28.9)	60,251 (29.1)	63,053 (29.4)	66,085 (29.6)
Americas	52,620 (27.7)	55,504 (27.9)	57,762 (27.9)	59,967 (27.9)	62,628 (28.1)
Africa & Middle East	5,145 (2.7)	5,553 (2.8)	5,971 (2.9)	6,394 (3.0)	6,829 (3.1)
All Countries	189,740	199,017	207,190	214,598	223,104

자료 : Datamonitor Personal Care Market Data, 2011(Aug).

주 : 1. Datamonitor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화장품 유형 위주로 자료를 분석함

2. 괄호( ) 안의 숫자는 각 연도 지역별 점유율

- 화장품산업의 세계 시장규모는 미국이 326억 달러로 전체 시장의 14.6%를 차지하며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였고, 일본은 291억 달러로 세계 화장품 시장의 13.0%를 차지하며 미국에 이어 2위로 자리매김 되었다.
- 그 다음으로는 중국 159억 달러(7.1%), 독일 138억 달러(6.2%), 프랑스 135억 달러(6.1%) 순이었다.
- 한편 우리나라는 41억 달러로 세계시장에서 1.8%의 비중을 차지하여 전체 시장(62개국) 중 13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4-3 주요국의 화장품 시장규모(2006년-2010년)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시장규모	비중	YoY
1	미국	30,926	31,899	32,088	32,222	32,597	14.6	1.2
2	일본	26,658	27,286	27,885	28,442	29,074	13.0	2.2
3	중국	11,475	12,508	13,603	14,727	15,919	7.1	8.1
4	독일	12,862	13,185	13,409	13,604	13,810	6.2	1.5
5	프랑스	12,719	12,988	13,120	13,301	13,533	6.1	1.7
6	브라질	9,190	10,098	11,115	12,201	13,424	6.0	10.0
7	이탈리아	9,384	9,528	9,667	9,778	9,910	4.4	1.4
8	영국	8,126	8,710	9,104	9,450	9,787	4.4	3.6
9	스페인	6,258	6,563	6,863	6,920	7,002	3.1	1.2
10	러시아	4,449	4,781	5,126	5,337	5,607	2.5	5.1
11	멕시코	3,864	4,178	4,479	4,692	4,930	2.2	5.1
12	캐나다	3,658	3,792	3,922	4,052	4,187	1.9	3.3
13	한국	3,463	3,647	3,802	3,957	4,124	1.8	4.2
14	인도	2,004	2,310	2,678	3,054	3,479	1.6	13.9
15	네델란드	2,546	2,680	2,776	2,864	2,962	1.3	3.4
16	호주	2,490	2,595	2,682	2,769	2,859	1.3	3.3
17	대만	2,384	2,506	2,607	2,713	2,825	1.3	4.1
18	폴란드	2,324	2,467	2,612	2,682	2,802	1.3	4.5
19	베네수엘라	1,181	1,423	1,726	2,052	2,410	1.1	17.4
20	터키	1,526	1,656	1,787	1,920	2,060	0.9	7.3
전체시장(62개국)		189,740	199,017	207,190	214,598	223,104	100.0	

자료 : Datamonitor Personal Care Market Data, 2011(Aug).

주 : 1. Datamonitor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화장품 유형 위주로 자료를 분석함

2. YoY는 전년대비 증가율

- 2010년 세계 100대 화장품 기업 중에서 프랑스의 L'ORÉAL이 2,590억 달러, 매출액 점유율 14.7%로 1위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미국의 PROCTER & GAMBLE이 1,960억 달러 (11.1%), 영국의 UNILEVER 1,700억 달러(9.6%) 순으로 매출액이 크게 나타났다.
- 한편 우리나라의 AMOREPACIFIC GROUP은 220억 달러(1.2%)로 세계 100대 화장품 기업 중 16위를 차지하여 점유율은 다소 낮으나 전년대비 21.3%의 가장 큰 성장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세계 100대 화장품 기업 중 34위에 머문 우리나라의 LG HOUSEHOLD & HEALTH

CARE는 90억 달러(0.5%)로 AMOREPACIFIC GROUP처럼 점유율은 낮았으나 전년대비 10.9%의 비교적 큰 성장률을 나타냈다.

표 II-4-4 2010년 세계 100대 화장품 기업 현황(2010년 매출액 기준)

(단위 : 십억 달러, %)

순위	기업명	국가명	매출액	점유율	전년대비 성장률
1	L' ORÉAL	프랑스	25.9	14.7	11.6
2	PROCTER & GAMBLE	미국	19.6	11.1	5.2
3	UNILEVER	영국	17.0	9.6	16.2
4	THE ESTÉE LAUDER COS.	미국	8.3	4.7	10.6
5	SHISEIDO CO.	일본	7.8	4.4	6.4
6	AVON PRODUCTS	미국	7.7	4.4	3.5
7	BEIERSDORF	독일	6.7	3.8	6.1
8	KAO GROUP	일본	5.8	3.3	-7.6
9	JOHNSON & JOHNSON	미국	5.7	3.2	0.2
10	CHANEL	프랑스	4.4	2.5	18.0
11	LVMH MOËT	프랑스	4.1	2.3	12.2
12	COTY	미국	3.7	2.1	6.9
13	HENKEL	독일	3.6	2.1	8.8
14	NATURA COSMETICOS	브라질	2.9	1.7	21.1
15	MARY KAY	미국	2.6	1.5	4.2
16	AMOREPACIFIC GROUP	한국	2.2	1.2	21.3
17	GROUPE YVES ROCHER	프랑스	2.1	1.2	6.8
18	LIMITED BRANDS	미국	2.1	1.2	2.5
19	ORIFLAME COSMETICS	스웨덴	2.0	1.1	14.9
20	ALTICOR	미국	2.0	1.1	5.1
⋮					
34	LG HOUSEHOLD & HEALTH CARE	한국	0.9	0.5	10.9
합계(100개사)			176.1	100.0	6.7

자료 : Women's Wear Daily, WWD Beauty Report, 2011

주 : 100대 화장품기업의 향수, 메이크업, 스킨케어, 선케어, 헤어케어 및 데오드란트 제품류의 매출실적을 바탕으로 순위를 매겼으며, 비누, 면도기, 치약, 식이요법 제품, 의약품, 비타민 또는 세척제는 순위 집계에서 제외됨

## 2) 세계 고령친화 화장품산업의 변화

- 2006년 항노화제품 시장 규모는 미국 20.8억불, 유럽 16.5억불, 아시아-태평양 15.8억불이었고, '06년~'11년까지 항노화 제품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면, 미국 6.15억불(5.3%), 유럽 4.75억불(5.2%), 아시아-태평양 3.01억불(3.6%)로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표 II-4-5 세계 지역별 항노화제품

(단위 : 백만불)

	2006	2011	CAGR
<b>US</b>			
Anti-aging skincare	2,075	2,690	5.3%
Cosmetic toothpaste	1,020	1,352	5.8%
Intensive conditioner	225	273	4.0%
<b>EUROPE</b>			
Anti-aging skincare	1,654	2,129	5.2%
Cosmetic toothpaste	963	1,108	2.8%
Intensive conditioner	456	564	4.4%
<b>ASIA-PACIFIC</b>			
Anti-aging skincare	1,579	1,880	3.6%
Cosmetic toothpaste	1,011	1,220	3.8%
Intensive conditioner	397	501	4.7%

자료원 : Datamonator, Anti-Aging&Beauty Attitudes And Behaviors(Positioning and marketing personal and oral care products for success with beauty focused consumers), 2008

- 미국, 유럽 지역 50세 이상 여성의 뷰티 관련 관심도를 보면, 몸매(74%), 피부건조(71%), 주름(71%), 백발(62%), 체취 및 땀냄새 제거(57%), 치아미백(51%) 순으로 나타나 세계적인 고령화에 따라 이런 유형의 소비 증가분이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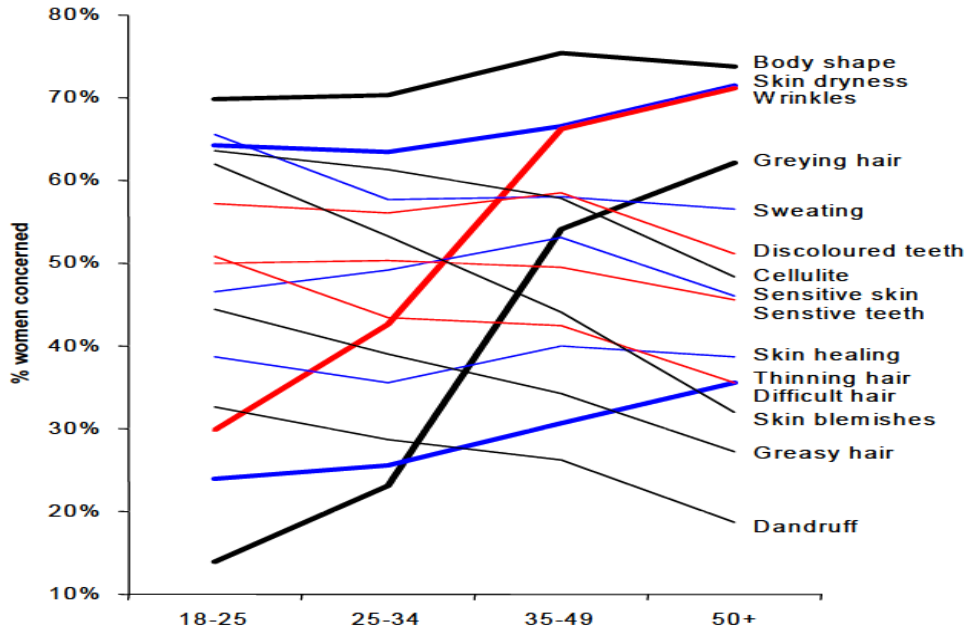


그림 II-4-3 미국, 유럽지역 연령대별 뷰티관련 관심도(2006)

자료원 : Datamonitor, Anti-Aging&Beauty Attitudes And Behaviors(Positioning and marketing personal and oral care products for success with beauty focused consumers), 2008

### 3) 선진사례

- 세계적인 화장품 기업들이 고령자를 타겟으로 주름개선 등 노인의 피부타입 등을 감안하여 다양한 화장품을 개발중에 있다. 랑콤에서는 55세이상 실버세대를 위해 칼슘공급을 통한 안티에이징 효과가 있는 Lancome Plantinum Hydroxy(a)-CalciumTM를 출시하였다. 폐경기 전후 여성의 피부호르몬 감소로 인한 고민을 케어하기 위해 에스테로더의 Estee-Lauder Resilience Life Extreme 라인 및 가네보의 Kanebo Evitark를 출시하였다. 시세이도는 호르몬 변화로 세포활동이 둔화된 갱년기 여성을 위한 안티에이징 효과가 있는 Shiseido Benefiance Nutriperfect 라인 및 60세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안색’을 관리하기 위해 세안, 스킨, 유액, 선케어, 크림의 단순 구성으로한 Shiseido Elixir Prior라인을 출시하였다. 이처럼 세계적인 기업들이 고령자 대상의 화장품 라인을 개발하여 선보이고 있으며, 향후 고령화가 진전되면, 더 다양한 제품이 개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 2.2 국내 환경 변화

### 1) 화장품산업 생산 및 수출입 현황

- 2010년 화장품 제조업 생산액은 6조 146억 원으로 전년대비 16.4%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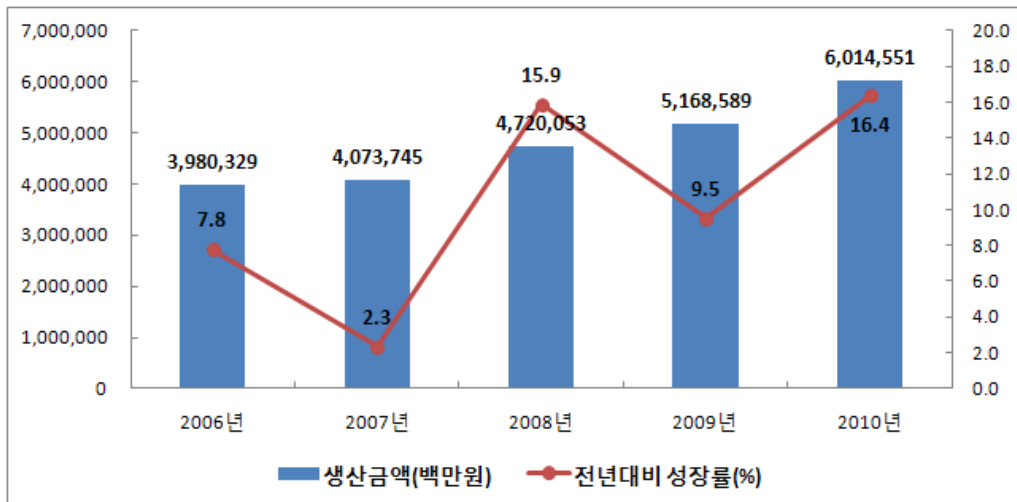


그림 II-4-4 연도별 화장품 제조업 생산 추이

자료 : 대한화장품협회, 화장품 생산실적 자료 각 연도

주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대한화장품협회의 화장품 생산실적 자료를 가공함

- 2010년 생산규모별 화장품 업체 총 773개사 중 생산액 10억 미만 업체가 599개사, 77.5%의 점유율로 그 규모가 가장 컸으며, 10억 이상~50억 미만 업체 113개사(14.6%), 100억 이상~500억 미만 업체 27개사(3.5%)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 생산실적의 경우 화장품 업체의 총 생산액 6조 146억 가운데 1,000억 이상 6개 업체의 생산금액이 4조 3,605억 원으로 전체 72.5%를 점유하여 생산업체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표 II-4-6 생산규모별 화장품 업체 현황

(단위 : 개사, %, 억원)

구분	2009년				2010년			
	제조업자		생산실적		제조업자		생산실적	
	개사	점유율	생산금액	점유율	개사	점유율	생산금액	점유율
1,000억이상	7	1.1	37,979	73.5	6	0.8	43,605	72.5
500억이상~1000억미만	5	0.8	3,474	6.7	8	1.0	6,055	10.1
100억이상~500억미만	22	3.3	5,396	10.4	27	3.5	5,619	9.3
50억이상~100억미만	19	2.9	1,341	2.6	20	2.6	1,397	2.3
10억이상~50억미만	109	16.4	2,667	5.2	113	14.6	2,597	4.3
10억미만	501	75.6	826	1.6	599	77.5	872	1.4
합 계	663	100.0	51,685	100.0	773	100.0	60,146	100.0

자료 : 대한화장품협회, 화장품 생산실적 자료, 각 연도  
 주 : 제조업자는 생산실적을 보고한 제조업자 기준임

○ 화장품 제조업체 운영인원 총 18,282명 가운데 생산직이 7,245명으로 전체 운영인원의 40%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사무직 3,995명(22.0%), 영업직 3,688명(20.0%), 연구직 2,255명(12.0%)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4-7 화장품 제조업체 운영인원 현황

(단위 : 명,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운영인원	점유율	운영인원	점유율	운영인원	점유율	운영인원	점유율
사무직	4,091	23.0	3,919	22.0	4,767	24.0	3,995	22.0
영업직	4,842	28.0	4,945	27.0	5,462	27.0	3,688	20.0
연구직	2,061	12.0	2,205	12.0	2,431	12.0	2,255	12.0
생산직	5,730	33.0	6,176	34.0	6,667	33.0	7,245	40.0
기 타	720	4.0	849	5.0	830	4.0	1,099	6.0
합 계	17,444	100.0	18,094	100.0	20,157	100.0	18,282	100.0

자료 : 대한화장품협회, 화장품 생산실적 자료, 각 연도

○ 화장품 유형 가운데 기초화장품이 2조 5,099억 원으로 다른 유형에 비하여 생산액 규모가 크게 나타났다.

- 기능성화장품은 1조 5,187억 원으로 기초화장용 제품류 다음으로 생산 규모가 컸으며, 전년대비 22.5%의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 한편 전년대비 성장률이 가장 큰 유형은 인체세정용 제품류(37.3%)였으며, 목욕용 제품류(34.0%), 면도용 제품류(33.8%)가 그 뒤를 잇고 있다.

표 II-4-8 제품 유형별 화장품 생산실적

(단위 : 백만원, %)

유형분류명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전년대비 성장률
기능성 화장품	752,828	773,478	1,103,292	1,240,149	1,518,659	22.5
기초화장용 제품류	1,791,590	1,869,136	2,109,007	2,253,982	2,509,911	11.4
눈화장용 제품류	113,099	109,259	119,558	134,966	157,521	16.7
두발용 제품류	626,717	592,675	684,864	777,840	926,668	19.1
면도용 제품류	143,899	165,786	97,181	117,276	156,952	33.8
목욕용 제품류	100,818	15,570	4,872	5,133	6,878	34.0
방향용 제품류	29,885	30,090	24,576	27,621	32,858	19.0
색조화장용 제품류	317,046	332,309	308,085	307,848	321,404	4.4
손발톱용 제품류	18,449	16,761	24,279	31,369	33,002	5.2
어린이용 제품류	75,562	54,574	79,284	61,854	64,421	4.2
염모용 제품류	10,436	12,464	10,634	27,044	33,891	25.3
인체 세정용 제품류	-	101,642	154,422	183,507	251,897	37.3
체취방지용 제품류	-	-	-	-	489	-
총합계	3,980,329	4,073,745	4,720,053	5,168,589	6,014,551	16.4

자료 : 대한화장품협회, 화장품 생산실적 자료, 각 연도

주 : 1. 2008년 화장품 유형이 확대됨에 따라 '인체세정용제품류'가 신규 추가됨(의약외품 중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외국에서 '화장품'으로 분류되고 있는 외용제를 화장품 유형으로 전환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취지). 2007년 목욕용제품류 및 인체세정용제품류의 생산실적은 2008년 기준에 맞추어 재분류한 것임

2. 2010년 '화장품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화장품 유형이 확대됨에 따라 '체취방지용 제품류(데오드란트)'가 신규 유형으로 추가되었으며, '손, 발의 피부연화 제품'(기초화장용 제품류), '외음부 세정제'(인체세정용 제품류)가 세부 유형으로 추가됨

- 2007년 한방화장품 생산은 8,343억 원으로 전년대비 14.1%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화장품 생산(4조 737억 원)의 20.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4-9 연도별 한방화장품 생산실적

(단위 : 억원, %)

연도	2005년	2006년	2007년
생산금액	5,801	7,312	8,343
전년대비 증가율(%)	-	26.0	14.1

자료 : 대한화장품협회, 화장품 생산실적 자료, 각 연도

- 한방화장품 생산 품목수(1,424개)는 전체 화장품 생산 품목수(58,300개) 중 2.4% 비중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II-4-10 2009년 업체별 한방화장품 생산실적

(단위 : 억원, %)

순위	회사명	품목수	생산량	금액
1	(주)아모레퍼시픽	240	309,600	536,146
2	(주)엘지생활건강	442	94,299	208,159
3	(주)코리아나화장품	251	14,512	50,201
4	소망화장품(주)	74	11,798	11,356
5	로제화장품(주)	71	5,124	6,909
6	(주)생그린	50	11,534	5,728
7	나드리화장품(주)	71	5,012	4,893
8	(주)사임당화장품	31	8,495	3,516
9	(주)한생화장품	77	1,963	2,632
10	한국화장품(주)	7	3,586	1,290
합계		1,424	470,399	834,335

자료 : 대한화장품협회, 화장품 생산실적 자료, 각 연도

- 2009년 화장품 수입액은 전년대비 2.4% 감소한 7억 243만 달러였으며 수출은 4억 1,600만 달러로 전년대비 12.1% 증가하였다. 수입과 수출의 증감률이 약 5배 정도 됨에 따라 2009년 무역수지 적자규모가 전년에 비하여 17.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4-11 연도별 화장품 수출입 실적(1994년-2009년)

(단위 : 수입/수출 천 달러, %)

연도	수입		수출		무역수지	
	수입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무역수지	증감률
1994년	124,565	-	30,921	-	-93,644	-
1995년	180,974	45.3	30,062	-2.8	-150,912	-61.2
1996년	284,167	57.0	31,197	3.8	-252,970	-67.6
1997년	271,297	-4.5	41,082	31.7	-230,215	9.0
1998년	113,605	-58.1	44,359	8.0	-69,246	69.9
1999년	216,733	90.8	44,739	0.9	-171,994	-148.4
2000년	395,589	82.5	76,492	71.0	-319,097	-85.5
2001년	379,459	-4.1	80,142	4.8	-299,317	6.2
2002년	520,910	37.3	123,550	54.2	-397,360	-32.8
2003년	499,191	-4.2	150,647	21.9	-348,544	12.3
2004년	485,871	-2.7	219,010	45.4	-266,861	23.4
2005년	530,795	9.2	286,130	30.6	-244,665	8.3
2006년	601,883	13.4	304,595	6.5	-297,288	-21.5
2007년	652,195	8.4	348,111	14.3	-304,084	-2.3
2008년	719,936	10.4	371,204	6.6	-348,732	-14.7
2009년	702,434	-2.4	416,002	12.1	-286,432	17.9

자료 : 의약품수출입협회, Facts &amp; Survey Report, 각 연도

- 2009년 화장품 총 수출액은 4억 1,600만 달러로 전년대비 12.1%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에 이어 대 중국 수출액이 1억 1,030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수출증가율은 6.2%로 전년과 달리 전체 수출 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중국 다음으로 화장품 수출을 많이 한 국가는 일본과 홍콩으로 각각 7,381만 달러와 4,127만 달러를 수출하였다. 특히 일본의 경우 2008년 전년대비 100.9% 증가하여 수출액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2009년 역시 전년대비 2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08년 대비 증감률이 가장 큰 국가는 태국으로 수출액이 1,263만 달러였으며, 말레이시아 1,058만 달러(44.6%), 대만 4,100만 달러(30.5%) 등도 높은 수출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표 II-4-12 우리나라 주요 수출국 현황(2007년-2009년)

(단위 : 천 달러, %)

순위	국가명	2007년	2008년	2009년	'08년 대비 증감률
1	중국	96,335	103,854	110,302	6.2
2	일본	29,076	58,420	73,813	26.3
3	홍콩	43,673	40,160	41,271	2.8
4	대만	27,756	31,428	41,003	30.5
5	미국	30,635	38,061	39,372	3.4
6	싱가포르	12,531	14,448	15,523	7.4
7	베트남	8,707	10,437	13,176	26.2
8	태국	3,661	6,017	12,634	110.0
9	말레이시아	4,744	7,319	10,581	44.6
10	이란	7,375	8,495	8,060	-5.1
합계(A)		264,493	318,639	365,735	14.8
전체 수출액(B)		348,111	371,204	416,002	12.1
비중(A/B)		76.0	85.8	87.9	

자료 : 의약품수출입협회, Facts & Survey Report, 각 연도

주 : 2009년 수출액 규모 기준으로 순위를 부여함

- 2009년 화장품 총 수입액 7억 243만 달러 중에서 대 프랑스 화장품 수입액이 1억 7,343만 달러로 2008년에 이어 가장 컸으나 전년대비 -6.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프랑스 다음으로 수입을 많이 한 국가는 미국과 일본으로 각각 1억 7,108만 달러와 1억 4,008만 달러였다. 미국은 2007년과 비교하여 수입이 2.9% 증가하였고, 일본은 2008년 33.5%, 2009년 3.3% 증가하였다. 수입이 전년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국가는 영국과 스페인으로 증가율은 각각 -23.0%, -12.7%인 것으로 나타났다.
- 전반적으로 화장품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 중국 수입액은 전년대비 9.2% 증가한 1,397만 달러로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증가폭이 컸다.

표 II-4-13 우리나라 주요 수입국 현황(2007년-2009년)

(단위 : 천 달러, %)

순위	국가명	2007년	2008년	2009년	'08년 대비 증감률
1	프랑스	174,088	186,264	173,432	-6.9
2	미국	156,391	166,213	171,083	2.9
3	일본	101,533	135,572	140,075	3.3
4	태국	37,771	40,361	41,076	1.8
5	이탈리아	32,107	33,825	31,755	-6.1
6	독일	30,057	28,107	27,156	-3.4
7	영국	33,238	35,081	27,023	-23.0
8	캐나다	14,848	17,270	16,235	-6.0
9	중국	9,746	12,786	13,966	9.2
10	스페인	8,778	10,047	8,767	-12.7
합계(A)		598,557	665,526	650,568	-2.2
전체 수입액 (B)		652,195	719,936	702,434	-2.4
비중(A/B)		91.8	92.4	92.6	

자료 : 의약품수출입협회, Facts &amp; Survey Report, 각 연도

주 : 2009년 수출액 규모 기준으로 순위를 부여함

- 2009년 공시 화장품 기업 총 44개 중 상위 20개 업체의 2009년 매출액은 2008년 보다 13.5% 증가한 5조 5,205억 원으로 나타났다. 아모레퍼시픽의 매출액은 전년대비 15.5% 증가하여 1조 7,690억 원으로 1위를 고수하였다. LG 생활건강의 매출액은 전년대비 12.6% 증가한 1조 5,251억 원으로 아모레퍼시픽과의 매출 격차가 2008년에 비하여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 상위 2개 기업의 매출액은 전체 44개 화장품 업체 매출액의 55.1%를 점유하고 있었고 상위 10개 기업이 전체 매출의 80.1% 가량을 차지하고 있었다.
- 한편 2008년에 10위권 밖에 있던 (주)에이블씨엔씨는 매출액 1,811억 원으로 전년대비 79.1% 성장하여 6위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주)에뛰드와 코스맥스(주)가 전년대비 각각 48.0%, 37.2% 성장하였다.

표 II-4-14 공시 화장품기업의 연도별 매출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회사명	2007년	2008년	2009년	전년대비 성장률
(주)아모레퍼시픽	1,357,006	1,531,336	1,769,010	15.5
(주)LG생활건강	1,172,451	1,354,585	1,525,071	12.6
애경산업(주)	296,688	323,848	338,259	4.5
(주)더페이스샵	209,745	235,068	257,122	9.4
한국콜마(주)	122,528	153,543	188,065	22.5
(주)에이블씨엔씨	78,462	101,137	181,127	79.1
보령메디앙스(주)	144,970	160,488	170,615	6.3
코스맥스(주)	71,009	93,048	127,653	37.2
소망화장품(주)	99,829	117,864	118,142	0.2
(주)에뛰드	63,885	77,519	114,697	48.0
(주)코리아나화장품	117,846	122,107	111,532	-8.7
유니레버코리아(주)	123,240	103,078	95,342	-7.5
(주)한국존슨앤드존슨	111,030	97,224	89,851	-7.6
엔프라니(주)	52,436	72,801	84,354	15.9
(주)마임	73,991	58,606	66,807	14.0
(주)남양	50,693	58,307	63,621	9.1
(주)아이피어리스	36,516	46,603	62,389	33.9
(주)참존	50,182	55,149	57,290	3.9
한국화장품제조(주)	61,355	56,244	51,048	-9.2
두리화장품(주)	34,399	45,090	48,476	7.5
합계(A)	4,328,263	4,863,646	5,520,470	13.5
전체(B)	4,751,399	5,283,830	5,982,895	13.2
비중(A/B)×100	91.1	92.0	92.3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주 : 1. 아모레퍼시픽은 '06년6월에 신설된 태평양의 사업자회사로 '06년은 태평양과 아모레퍼시픽의 실적을 합한 실적임  
 2.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중 화장품 제조업에 해당하는 44개 상장기업(상장, 코스닥상장, 외감)을 대상으로 분석함

- 2010년 기능성 화장품의 생산액은 1조 5,187억 원으로 전년대비 22.5% 증가하였다. 화장품 유형별 생산액에서 전년대비 증가율이 가장 큰 유형은 4,178억 원의 복합유형으로 전년대비 81.2%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 반면 미백은 2,865억 원으로 기능성 화장품 중에서 유일하게 전년대비 -29.4%의 감소율을 나타냈다.

표 II-4-15 기능성 화장품 연도별 생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전년대비증가율
미백	292,923	324,596	362,139	405,979	286,520	-29.4
주름개선	45,944	74,944	171,147	317,818	342,279	7.7
자외선 차단	229,262	219,954	314,819	285,774	472,066	65.2
복합유형	184,699	153,985	255,186	230,578	417,794	81.2
합계	752,828	773,478	1,103,292	1,240,149	1,518,659	22.5

자료 : 대한화장품협회, 화장품 생산실적 자료, 각 연도

- 2010년 기능성 화장품 세부 유형별 점유율은 자외선 차단(31.08%)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복합유형(27.51%), 주름개선(22.54%), 미백(18.87%)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 연평균 19.2%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기능성 화장품 시장이 2006년에 비하여 점유율 증가를 보이는 유형은 주름개선(6.10%→22.54%)인 반면 미백(38.91%→18.87%)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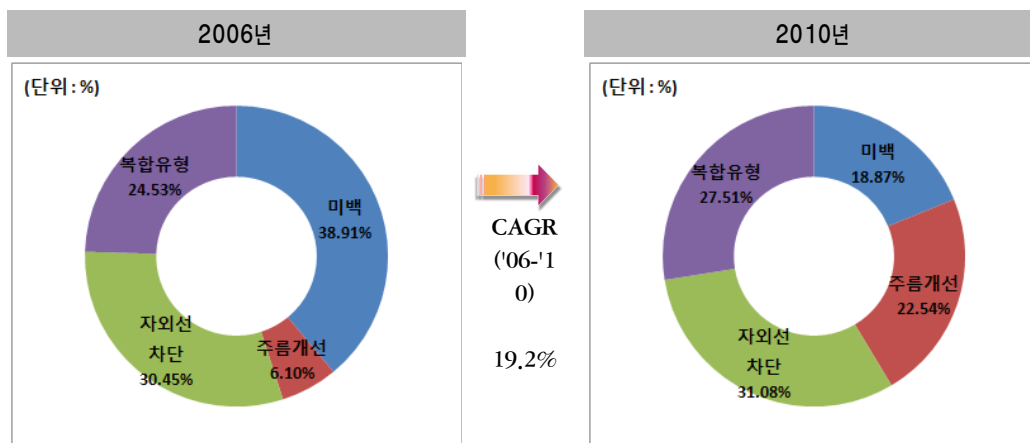


그림 II-4-5 기능성 화장품 세부 유형별 점유율 추이

자료 : 대한화장품협회, 화장품 생산실적 자료, 각 연도

## 2) 화장품산업 연구개발 및 특허 현황

- 화장품산업 연구개발자원 관련 조사대상 업체 중 중소기업이 58개(54.2%)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벤처기업 44개(41.1%), 대기업 5개(4.7%)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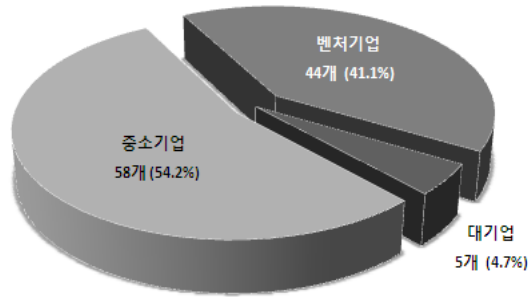


그림 II-4-6 화장품산업 연구개발자원 관련 조사대상 기업규모별 분포(2009년)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0년도 보건산업 연구개발실태 조사·분석

- 2009년도 종업원수는 12,687명으로 2007년 이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출액은 13.7%가 증가한 5조 903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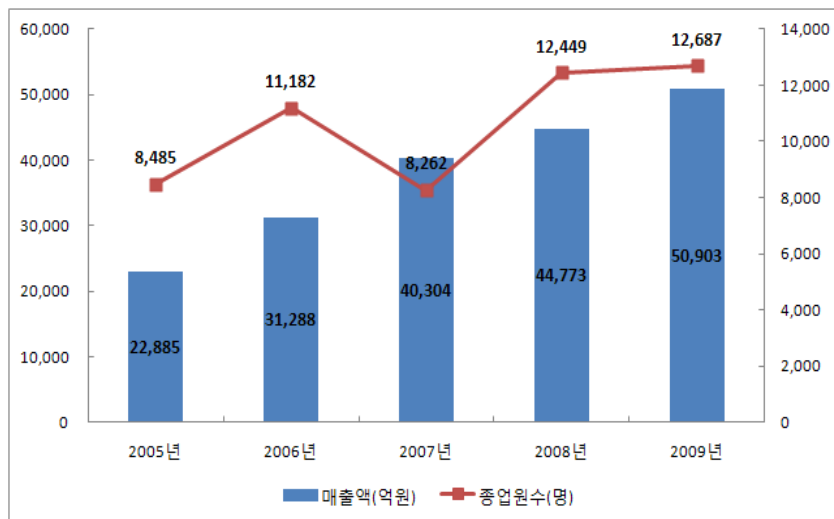


그림 II-4-7 화장품산업 연도별 종업원수와 매출액의 변화 추이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0년도 보건산업 연구개발실태 조사·분석

- 연구개발비는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2009년에는 전년대비 약 28.0% 증가한 1,467억 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 수준인 연구개발비

발집약도는 0.32%p 증가한 2.88%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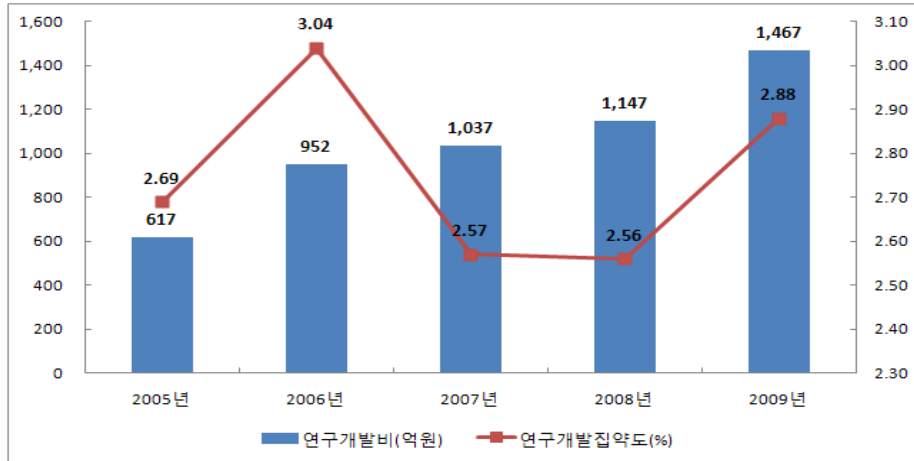


그림 II-4-8 화장품산업 연도별 연구개발 투자 현황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0년도 보건산업 연구개발실태 조사·분석

- 연도별 자체사용연구비 사용단계별 분포를 보면 개발단계에 대한 사용비율이 전체의 60.8% (879억 원)로 가장 많았으며, 사용용도별로는 신제품개발이 976억 원(67.5%)으로 전년대비 증가한 반면, 기존제품개선에 대한 연구비 사용비중이 354억 원(24.5%)으로 나타났다.

표 II-4-16 화장품산업 자체사용연구비의 사용단계 및 용도별 분포(2009년)

(단위 : 억원, %)

구분	단계			용도				자체사용 연구비계
	기초	응용	개발	신제품개발	기존제품개선	신공정개발	기존공정개선	
금 액	161	406	879	976	354	62	53	1,446
구성비	11.2	28.1	60.8	67.5	24.5	4.3	3.7	100.0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0년도 보건산업 연구개발실태 조사·분석

- 화장품 산업의 특허동향 분석은 2010년에 새로 정비된 Patmetrics Database를 이용하여 199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출원된 한국특허 중 제 1 IPC(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국제특허분류)가 화장품 산업과 관련성이 높은 IPC에 해당하는 화장품 특허 4,945건을 선정하여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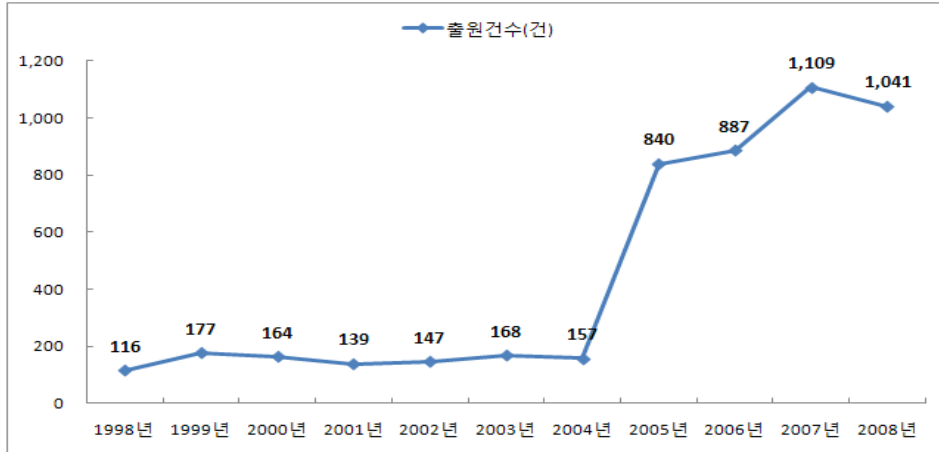


그림 II-4-9 화장품 특허출원건수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0년도 보건산업 연구개발실태 조사·분석

- 내·외국인은 모두 2005년에 출원인과 출원건수가 모두 급증한 가운데 내국인이 더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2008년 내국인 특허출원건수 821건으로 2007년 대비 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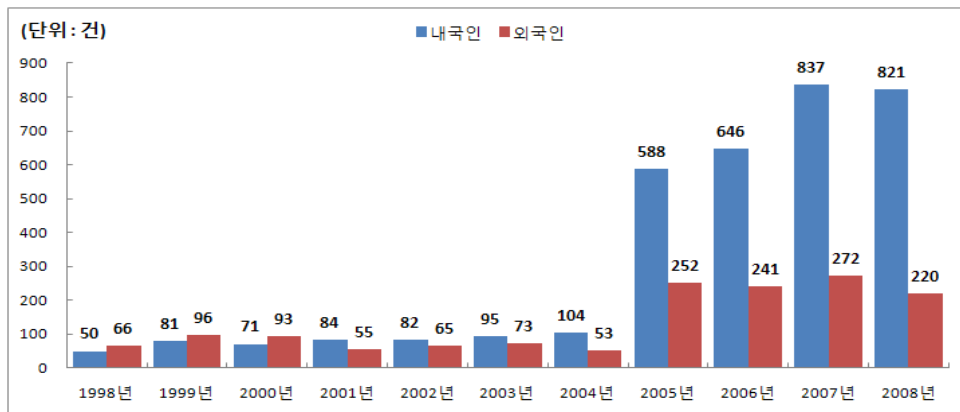


그림 II-4-10 출원연도별 내·외국인의 화장품 특허출원건수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0년도 보건산업 연구개발실태 조사·분석

- 내·외국인은 모두 화장품 조성물, 모발손질용, 메이크업제 및 매니큐어 순으로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내국인은 화장품 조성물 점유율이 83.5%로서 외국인의 77.6%에 비해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한 반면, 모발손질용 점유율은 11.4%로서 외국인의 28.7%에 비해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로써 내국인은 외국인에 비해 화장품 조성물

분야의 특허활동은 활발한 반면, 모발손질용 분야의 특허활동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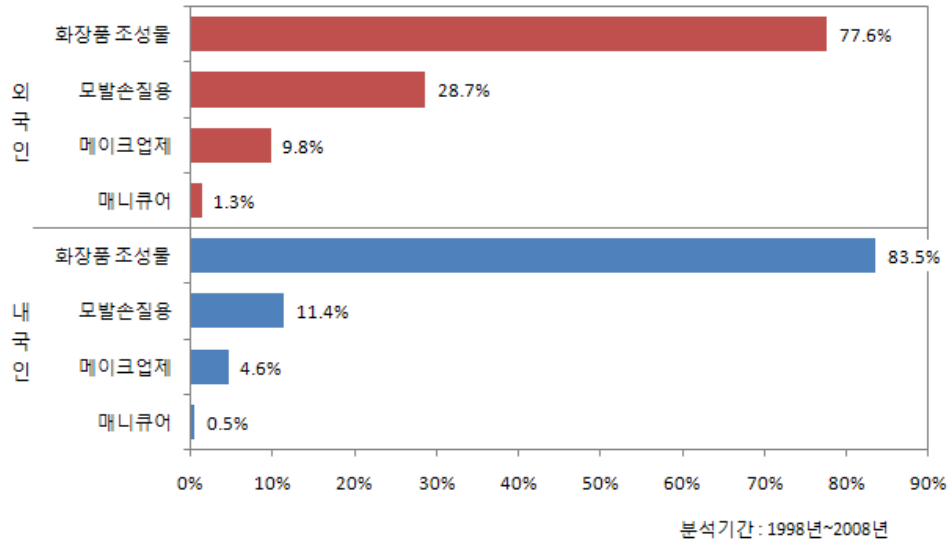


그림 II-4-11 내·외국인의 화장품 세부분야별 특허점유율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0년도 보건산업 연구개발실태 조사·분석

- LG생활건강은 1998년~2008년 동안 총 428건을 출원하여 최다출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LG생활건강의 특허출원은 2000년부터 시작된 반면, 아모레퍼시픽은 2005년까지 태평양으로 출원한 관계로 2006년 이후 출원 동향만 볼 수 있는데, 2006년~2008년 3개년 동안 각각 118건, 94건, 181건으로 활발한 특허활동을 보이고 있다.

표 II-4-17 내국 주요출원인의 특허출원동향(화장품)

(단위: 건)

출원인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계
LG생활건강	22	23	20	37	102	64	97	61	428
아모레퍼시픽	-	-	-	-	-	118	94	181	393
코리아나화장품	10	1	5	2	47	37	48	36	201
태평양	8	8	8	10	59	-	-	-	110
더페이스샵코리아	-	-	-	-	-	15	21	34	70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0년도 보건산업 연구개발실태 조사·분석

## 2.3 국내 시장규모 및 전망

### 1) 시장규모 분석 방법

#### 가. 기준연도 시장규모 추정 방법

모태산업(화장품산업)의 시장규모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자료원으로 화장품생산실적 자료(대한화장품협회), 의료기기, 화장품 시장조사(소비자 조사 결과)(보건복지부)<sup>29)</sup>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 시장규모 분석을 위한 자료로 이용하였다.

앞서 화장품 정의에서와 같이 노령화에 따라 진행되는 각종 노화현상에서 젊음을 유지하거나 젊게 보이게 하려는 미적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므로 연령별로 분류된 어린이용제품류를 제외한 전체 화장품에 해당하는 유형이 고령친화 화장품 유형이라 할 수 있다.

모태산업 대비 고령친화 화장품산업의 시장규모를 분석하기 위하여 선정된 화장품산업의 각 유형별 시장규모에 65세 이상 인구 비중, 소비 비중을 곱하여 시장규모를 추정하였다.

$$y_i = \sum_{j=1}^{12} (\text{유형별 시장규모}_{ij}) \times (\text{인구비율}_i) \times (\text{소비비율}_{ij})$$

- $y_i$  :  $i$ 연도의 고령친화 화장품산업 시장규모
- $j$  : 선정된 화장품 유형( $j = 1, \dots, 12$ )<sup>30)</sup>
- 인구비율 $_i$  :  $i$ 연도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sup>31)</sup>
- 소비비율 $_{ij}$  :  $i$ 연도의  $j$ 번째 유형의 65세 이상의 상대적 이용률<sup>32)</sup>

#### 나. 시장규모 전망(예측) 방법

고령친화 화장품산업의 2020년까지의 시장규모를 예측하기 위하여, 모태산업 및 고령친화 화장품산업 시장규모의 2007년-2010년 연평균성장률(CAGR)을 이용하였다.

29) 2009년 의료기기, 화장품 시장조사 중 소비자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고령친화 화장품산업 시장규모를 분석하였다. 1,500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이며, 결과 중 60세 이상 가구주의 화장품 유형별 사용 비율자료를 사용하였다.

30) 어린이용 제품류를 제외한 12개 화장품 유형으로 기초화장용 제품류, 기능성화장품, 눈화장용 제품류, 두발용 제품류, 면도용 제품류, 목욕용 제품류, 방향용 제품류, 색조화장용 제품류, 손발톱용 제품류, 염모용 제품류, 인체세정용 제품류, 체취방지용 제품류 등이 포함된다.(체취방지용 제품류는 화장품법의 변경으로 2010년 화장품 생산실적에 추가된 유형이다.)

31) 분석을 위해 사용된 참고자료 각 부문별 사용비율은 60세 이상 자료이며, 65세 이상 사용비율도 60세 이상 사용비율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다.(조사 대상자 중 65세 이상 조사 대상자의 자료를 이용하기에는 응답자 수가 다소 적은 규모임. 따라서 60세 이상 자료를 이용함.)

32) 노인의 상대적인 사용비율은 전체를 1로 보았을 때, 65세 이상의 화장품 유형별 사용비율을 나타낸다.

## 2) 시장규모 추정 및 예측 결과

### 가. 기준연도 시장규모 추정 결과

- 1,500명 대상 조사결과 기초화장용 제품류는 전체적으로 94.3% 대상자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인의 상대적 사용 비중은 전체 평균을 1로 보았을 때, 0.861로 노인의 기초화장용 제품류 사용이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염모용 제품류의 경우 전체적으로 26.0% 대상자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인의 상대적 사용 비중은 1.456으로 노인의 염모용 제품류의 사용이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I-4-18 연령대별 화장품 사용 현황<sup>33)</sup>(2010년 조사)

(단위 : 백만원, %)

유형	연령대					전체	상대적 이용률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기능성화장품	65.7	71.2	73.7	78.1	53.7	72.8	0.738
기초화장용 제품류	96.3	94.5	94.2	94.8	81.2	94.3	0.861
눈화장용 제품류	59.6	58.9	60.6	56.9	16.9	58.5	0.290
두발용 제품류	74.4	74.1	80.7	82.3	61.8	77.7	0.796
면도용 제품류	21.7	28.2	25.5	35.1	22.7	28.0	0.812
목욕용 제품류	79.3	81.6	77.4	80.7	78.0	79.7	0.978
방향용 제품류	41.6	40.0	39.8	41.1	15.8	39.7	0.397
색조화장용 제품류	64.0	67.8	72.0	69.9	43.2	69.1	0.624
손발톱용 제품류	43.2	38.8	42.9	46.7	31.4	41.7	0.753
어린이용 제품류	58.6	76.3	30.0	10.9	5.2	46.5	0.113
염모용 제품류	15.5	18.5	27.9	41.4	37.8	26.0	1.456
인체 세정용 제품류	67.6	59.7	64.2	56.3	41.9	60.8	0.689
체취방지용 제품류	41.6	40.0	39.8	41.1	15.8	39.7	0.397

자료 : 보건복지부, 의료기기, 화장품 시장조사, 2009(소비자조사 결과)

- 고령친화 화장품산업 시장규모를 추정한 결과 2010년 5,109억 원으로 전년(4,269억 원)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2010년 연평균 17.7% 성장하여 전체 화장품 시장 대비 약 8.5%의 시장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3) 실제 22세-69세 조사 대상자의 응답 결과이며, 60세 이상의 사용 비율로 65세 이상 사용 비율을 대체하였다.(시장규모 분석에 있어 제한점이 존재함)

○ 세부적으로 상대적 사용비율이 높았던 염모용 제품류의 경우 2010년 54억 원으로 전년(42억 원)보다 28.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를 제품의 다양화와 품질 향상 등으로 인해 안정적 소비시장을 확보했다고 평가한다.

표 II-4-19 고령친화 화장품산업 시장규모

(단위 : 백만원, %)

유형분류명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전년대비성장률	CAGR (07-10)
기능성화장품	56,662	84,018	97,486	122,831	26.0	29.4
기초화장용 제품류	159,825	187,464	206,813	236,953	14.6	14.0
눈화장용 제품류	3,141	3,573	4,164	5,000	20.1	16.8
두발용 제품류	46,839	56,264	65,964	80,857	22.6	20.0
면도용 제품류	13,356	8,138	10,138	13,960	37.7	1.5
목욕용 제품류	1,512	492	535	738	37.9	-21.3
방향용 제품류	1,185	1,006	1,168	1,429	22.4	6.4
색조화장용 제품류	20,595	19,848	20,473	21,992	7.4	2.2
손발톱용 제품류	1,252	1,886	2,515	2,722	8.2	29.5
염모용 제품류	1,801	1,598	4,194	5,408	28.9	44.3
인체 세정용 제품류	6,955	10,984	13,474	19,031	41.2	39.9
체취방지용 제품류	-	-	-	21	-	-
전체(고령친화 화장품)	313,125	375,272	426,922	510,941	19.7	17.7
비중	7.7	8.0	8.3	8.5	-	-
모태산업(화장품산업)	4,073,745	4,720,053	5,168,589	6,014,551	16.4	13.9

자료 : 1. 대한화장품협회, 화장품 생산실적 자료, 각 연도  
 2. 보건복지부, 의료기기, 화장품 시장조사, 2009(소비자조사 결과)

○ 고령친화 화장품산업 전략품목으로 선정된 부분의 시장규모를 추정한 결과 2010년 1,229억 원으로 전년 (975억 원)보다 26.0% 상승하였다. 2007년-2010년 연평균 29.4% 성장하였으며, 2010년 전체 고령친화 화장품산업 중 전략품목으로 선정된 유형이 약 24.0%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4-20 국내 고령친화 화장품산업 전략품목 시장규모

(단위 : 백만원, %)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전년대비	CAGR (07-10)
기능성화장품	56,662	84,018	97,486	122,831	26.0	29.4
체취방지용 제품류	-	-	-	21	-	-
전략품목	56,662	84,018	97,486	122,852	26.0	29.4
비중	18.1	22.4	22.8	24.0	-	-
고령친화 화장품산업	313,125	375,272	426,922	510,941	19.7	17.7

자료 : 1. 대한화장품협회, 화장품 생산실적 자료, 각 연도  
2. 보건복지부, 의료기기, 화장품 시장조사, 2009(소비자조사 결과)

#### 나. 시장규모 전망(예측) 결과

- 앞에서 설명한 방법을 활용하여 향후 고령친화 화장품산업의 시장규모를 전망<sup>34)</sup>하여 본 결과, 고령친화 화장품산업의 시장규모는 2015년 1조 1,541억 원, 2020년 2조 6,070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 2010년 모태산업 대비 고령친화 화장품산업의 비중은 8.5%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 10.0%, 2020년 11.8% 정도의 비중으로 추정된다.

표 II-4-21 고령친화 화장품산업 시장규모 전망(예측)

(단위 : 백만원, %)

	2010년	2015년	2018년	2020년	CAGR(10-20)
고령친화 화장품산업	510,941	1,154,127	1,881,841	2,606,969	17.7
비중	8.5	10.0	11.0	11.8	
모태산업	6,014,551	11,529,802	17,036,995	22,102,452	13.9

자료 : 1. 대한화장품협회, 화장품 생산실적 자료, 각 연도  
2. 보건복지부, 의료기기, 화장품 시장조사, 2009(소비자조사 결과)

34) 모태산업(화장품산업) 및 고령친화 화장품산업의 시장규모 추정 결과를 활용하여 2007년-2010년 연평균성장률(CAGR)을 활용하여 예측하였다.

### 3. 전략품목 및 지원정책

#### 3.1 전략품목 선정

##### 1) 선정기준

고령친화 화장품산업의 전략 품목 도출 기준은 어린이용 제품을 제외한 전체 화장품 품목 중에서 고령자 대상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1차 유망 품목을 선정하였다. 고령자 대상 수요조사 결과, 노후에 사용하고 싶은 화장품(1순위 기준)은 기능성 화장품 49.2%, 기초화장품 34.6%, 방향용제품 7.4%, 염모용 7.1%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이 품목들을 유망품목으로 도출하였다. 1차 유망품목군을 토대로 전문가 회의를 통해 유망품목을 최종 확정하였다. 고령자들의 피부질환 등 전 영역에서 고령자의 피부특성 등을 반영하여 기초제품류, 색조제품류, 바디제품류, 헤어케어류 등 4개 분야로 구분하고, 분야별로 고령자 수요조사 결과 및 고령자 피부질환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8개 유망품목을 도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4-22 고령친화 화장품산업의 유망 품목

품목	세부항목
기초 제품류	노화방지 화장품(주름개선 및 완화)
	피부미백 및 검버섯 제거 화장품
	자외선 차단 및 방지 화장품
색조제품류	피부색 보정 화장품
바디제품류	피부 건조 및 가려움 개선 화장품
	체취 방지용 화장품(데오도란트, 향수류)
헤어케어류	탈모 방지용 화장품
	염모용 화장품

이들 유망품목을 대상으로 전문가 회의를 통해 시장매력도, 국제경쟁력, 공공성 등 3가지 선정기준에 대해 4점척도를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상위 품목을 전략품목으로 선정하였다. 선정기준에서 시장매력도는 시장 성장률과 시장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이고, 국제경쟁력은 해외 경쟁 회사와의 경쟁력 정도를, 공공성은 공익적인 성격을 나타낸다.

## 2) 전략품목 선정

고령친화 화장품산업 4개 분야 8개 유망품목에 대하여 시장매력도, 국제경쟁력, 공공성 등 3가지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종합점수가 10점 이상인 경우를 전략품목으로 선정하였다.

표 II-4-23 고령친화 화장품의 유망 제품

품목	세부항목	시장 매력도	국제 경쟁력	공공성	점수	판정
기초 제품류	노화방지 화장품(주름개선 및 완화)	◎	◎	○	11	전략품목
	피부미백 및 검버섯 제거 화장품	○	○	○	9	-
	자외선 차단 및 방지 화장품	○	○	○	9	-
색조제품류	피부색 보정 화장품	○	△	△	7	-
바디제품류	피부 건조 및 가려움 개선 화장품	○	○	◎	10	전략품목
	체취 방지용 화장품(데오도란트, 향수류)	○	○	◎	10	전략품목
헤어케어류	탈모 방지용 화장품	○	△	○	8	-
	염모용 화장품	○	○	△	8	-

※ 척도 : ×낮음(1), △보통(2), ○높음(3), ◎매우 높음(4)

피부 노화방지 화장품 시장은 크게 주름이 생성되는 것을 예방해주는 화장품과 이미 생성된 주름을 개선해주는 화장품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향후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령화 산업의 성장성과 함께 가장 연관성이 높은 화장품 분야로서 피부노화 방지용 화장품(피부 주름 개선 및 완화 화장품)이 가장 경쟁력 있는 품목이 될 수 있다. 특히, 노화 방지 화장품 시장은 수명연장과 함께 여성들의 젊어지고 싶어 하는 욕구가 맞물려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가 될수록 신체의 노화와 신진대사 능력의 감소로 노폐물의 분해와 배출이 활발하지 못하여 몸의 체취가 나빠지며 노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이다. 노화가 되면 피부 중 지방산이 과산화지질로 산화되면서 노인 냄새를 유발하는데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는데 화장품이 고령화 시대의 중요한 전략 품목이 될 수 있다.

고령화가 되면서 피부에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인 피부 건조증은 피부에서 생성되는 피부 지질 성분의 저하로 인해 피부가 건조해지고 이로 인해 가려움증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피부 건조 및 가려움 완화 화장품은 노인들의 피부 문제를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주요한 품목이 될 수 있다.



## 3.2 제약요인 및 정책과제

### 1) 제약요인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시대가 도래 하면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사회적 현상에서 예외일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령화 관련 산업의 성장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관련 화장품 산업은 현재 까지 제 자리 걸음인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 ① 소비자 인식 및 수용 부족 - 화장품은 소비자의 욕구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개발되고 판매되는 제품인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젊고 아름다운 피부를 갖기를 원하면서 고령화 화장품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특히, 고령용 화장품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표현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소구도 가지고 있지 않다.
- ② 기업의 참여의지 부족 - 소비자의 고령화 제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에 따라 시장의 니즈에 따라 제품을 개발하고 시장을 선도해나가는 기업들은 고령화 제품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 ③ R&D 투자 및 산학연 공동 연구 기반 취약 - 노령화에 따른 다양한 질병에 대한 연구는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화장품 분야에서는 노인성 피부에 대한 R&D 투자 및 산학연 공동 연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 2) 정책과제

고령화에 따른 피부의 변화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연구 활동이 활발히 진행 될 수 있는 정책적 제도를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줌으로써 향후 도래하는 메가트렌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 과제를 제안한다.

- ① 고령자 화장품의 필요성 재고를 위한 홍보 활동 강화
  - 고령화에 따른 피부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 ② 고령자 화장품 개발을 위한 산학연 클러스트 구성 및 연구 지원 정책
  - 피부 노화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여러 가지 화장품 컨셉 개발이 가능하고 이를 제품 개발에 응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므로 적극적인 산학연 연구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견지에서 지원분야로서는 위에서 제안한 전략 품목과 관련된 연구분야 및 이를 해결해줄 수 있는 소재 개발 연구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 ③ 고령자 화장품 개발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한 기업 육성 정책

- 고령화에 따른 관련 화장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고령화 화장품 산업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관련 제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 ④ 고령자 화장품의 대외 경쟁력 강화 정책

- 고령화 화장품이 단지 노인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닌 대외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줌으로써 수출 경쟁력이 강화된 제품개발을 유도한다. 따라서 이를 위해 고령화를 통한 피부 변화 및 사용 실태조사를 통해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고, 현재 고령친화 화장품의 국제 표준화 마련 및 수출 증대를 위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표 II-4-24 고령친화 화장품산업 정책과제

정책지원
고령친화 화장품 홍보 강화(고령자의 피부관리 등)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투자 활성화(세제 혜택 등)
소비자 및 기업체 대상 실태조사
대외 수출 강화

## 3.3 정책 기대효과

2000년에 접어들면서 한국사회는 급속도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게 되고 2018년에는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비중 14% 이상),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비중 20% 이상)가 될 전망이다. 이와 동시에 고령인구의 경제 활동 참가율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고령화 시대의 새로운 시장 패러다임이 필요하고 화장품 산업 또한 이러한 패러다임에 맞게 시장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고령화 시대의 노인들은 구매력을 갖추고 있어 다양한 소비를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피부 노화를 막고 예방할 수 있는 화장품에 대한 구매력도 증가하고 다양한 화장품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고령친화 화장품은 향후 새로운 고부가가치 상품 중 하나로 자리 매김 할 수 있으며 특히 새로운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령친화 화장품의 성장은 여러 가지 피부 문제로 고민하는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산업의 성장은 신규고용 창출로 이루어 질 것이며 특히, 국내 뿐 아니라 해외 경쟁력도 강화되어 국제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 제5장 고령친화 의료기기산업

### 1. 개요 및 범위

#### 1.1 고령친화 의료기기산업의 범위

##### 1) 개념

의료기기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 질병의 진단 치료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구조 또는 기능의 검사 대체 또는 변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등을 말한다.

- ①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 목적
- ② 상해 또는 장애의 진단, 치료, 경감 또는 보정 목적
- ③ 구조 또는 기능의 검사 대체 또는 변형 목적
- ④ 임신조절 목적

이 다만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기구 중 의지(依支), 보조기(補助機)를 제외<sup>35)</sup>하고 있다.

의료기기산업은 의료기기를 통해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보건의료산업의 한 분야로써 의료기기 제품의 설계 및 제조에 관련된 다학제간(inter-disciplinary)기술이며, 임상 의학과 전기, 전자, 기계재료, 광학 등의 제공학이 융합되는 응용기술 산업분야이다(지식경제부, 2009). 따라서 의료기기 산업은 이러한 의료기기 제품을 제조 공급하는 기업군의 총칭으로 정의할 수 있다.

35) 지식경제부의 의료기기산업기술로드맵에서는 장애인 보조기구 중 의지, 보조기를 포함하기도 함  
지식경제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원천기술로드맵 2009.

## 2) 분류

의료기기는 사용 용도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이 있기 때문에 산업적 측면의 분류와 함께 안전등급과 관련한 분류기준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식약청의 안전등급과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이 대표적이며, 그와 더불어 보건복지부와 지식경제부의 의료기기 분류기준도 살펴보기로 한다.

### 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의료기기 분류

식약청의 분류기준은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으로 의료기기의 형태별, 제조공정, 품질관리체계 또는 기능에 따라 의료기기의 품목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나누고 있다. 대분류는 (A) 기구·기계(Medical Instruments) (B) 의료용품(Medical supplies) (C) 치과 재료(Dental Materials)로 구성되어 있다. 총 품목은 2,056개이며, 약 5만 여개의 제품이 존재한다.

### 나. 보건복지부의 보건산업기술분류(의료공학기술)

보건산업기술은 의약품 등 보건제조산업부터 병원, 보건기관 등의 보건의료서비스 산업에 걸쳐 질병치료와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개발 및 제품의 생산·유통·서비스제공에 이르기까지의 전과정으로 정의되는 보건산업 연구개발과 생산·제조에 기반이 되는 기술체계를 의미한다.<sup>36)</sup> 보건산업기술은 의료기술, 의약품기술, 의료공학기술, 화장품기술, 식품과학기술 등 5개의 대분류로 구분하고 있다.

### 다. 지식경제부의 산업기술분류(바이오·의료)

지식경제부의 산업기술분류는 기계·소재,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학, 바이오·의료, 에너지·자원, 지식서비스 등 7개의 대분류로 구분하고 있다.<sup>37)</sup>

## 3) 고령친화 의료기기산업의 범위

고령친화 의료기기산업이란 각종 소모성 질환에 노출되기 쉬운 현재 고령자, 예비 고령자는 물론 가족 등 케어하는 사람 등을 보조하여 쾌적한 노후와 사회 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의료복지기기를 제조하는 산업 군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고령친화 의료기기에 대한 명확한 개념 및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고, 재활보조기구, 보장구, 노인용 보장구, 의료기기, 고령

36)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01), 보건산업기술분류

37)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친화용품 등과 혼용해서 쓰이고 있다. 따라서, 고령친화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중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를 말하며, 이는 노인성 질병 및 생활보조적 역할 등을 고려하여 정의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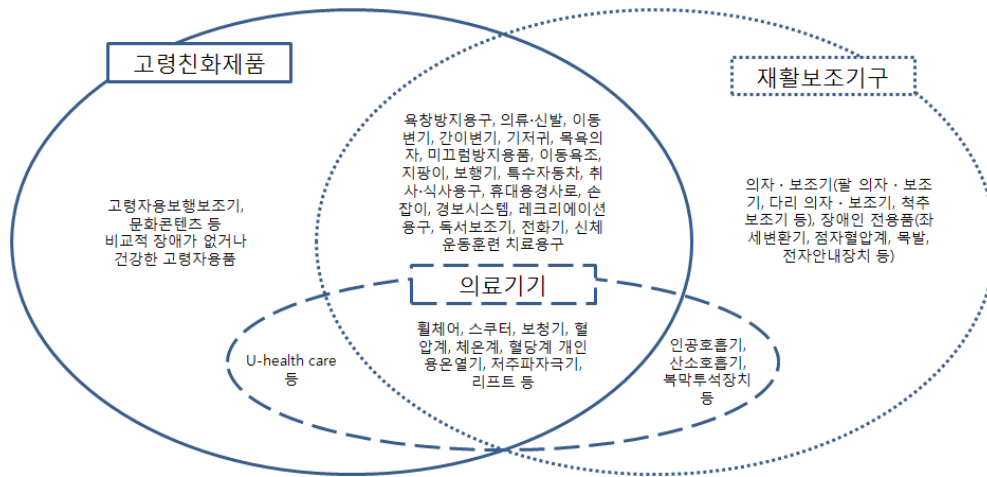


그림 II-5-1 고령친화의료기기의 범위

## 1.2 고령친화 의료기기산업의 특징

고령친화 의료기기산업은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공공성 측면과 민간사업자의 수익성 측면이 공존하며, 다품종 소량생산이 주류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적합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이동성이 적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할 때 one-stop 융합 서비스(예 : 보건+의료+복지+주거+기기)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높다.(예 : 실버타운)

- 소량다품종 산업
  - 고령자의 특성(물리/사회/심리/경제적, 노화/노인성질환 등)에 따라 소비성향이 다양함
  - 맞춤형이며 일정하지 않고 변화함
  - 대부분 중소기업형 산업이지만 일부 대기업의 큰 투자가 필요한 산업
- 융·복합 기술산업
  -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및 생활환경의 결합에 의하여 고령자가 선호하는 제품&서비스가 결정되므로 응용제품&서비스이며, 이는 IT, BT, CT, NT, ET의 결합은 물론 주거환경, 복지환경 및 생활시스템의 결합에 의하여 완성됨
- 지역밀착형 산업
  - 고령자는 지역에 기반을 둔 사회를 이루고 생활을 한다. 주 생활이 주거지 중심으로 이

루어지므로 생활지원, 건강/의료, 케어 등의 공급이 지역 중심일 수 밖에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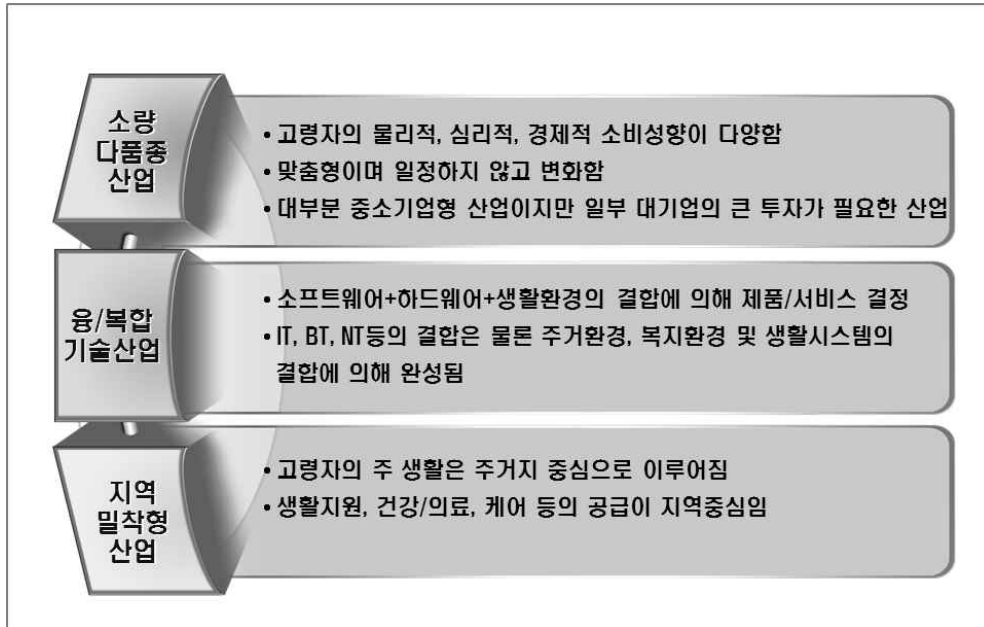


그림 II-5-2 고령친화 의료기기 산업의 특징

고령친화 의료기기산업은 국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서 국제경쟁력 및 시장매력도 등 수익성 외에 진일보한 복지국가차원에서 공공성 제고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즉, 신체적·사회적·경제적으로 취약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노인의 안전과 권익도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 관심이 특히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기존 산업과 다른 큰 특징이 있다 하겠다. 고령친화 의료기기산업은 기존 산업에서와 같이 현 수준보다 높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상품을 소비하는 성격과 달리 저하된 각종 능력을 저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려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산업이라 하겠다. 특히, 이들이 신체적, 사회 및 경제적으로 취약한 고령자라는 측면에서 정부의 보호 책무가 있으며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상품을 생산하는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산업이기도 하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고령친화 의료기기산업은 수급의 관계가 수익자 부담을 기초로 하는 시장경제원리를 따른다는 측면에서 노인복지와 차별화되거나 노인의 생존권과 복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하겠다. 즉, 고령친화 의료기기산업은 시장 기능을 활용한다는 측면이 정부의 재정을 사용하는 노인복지제도와 다를 뿐 궁극적으로 고령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하는 정부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이라는 측면에서는 그 맥을 같이 한다 하겠다. 따라서 특히 공적부조대상자들에게는 정부가

우선적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형식으로 시장을 활성화시킬 필요도 크다 하겠다.

고령 소비자가 필요한 제품은 신체적 기능을 보완하는 ‘첨단제품’보다 기능적으로 단순하여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적합제품’이 보다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 2. 시장분석

### 2.1 세계 시장 변화

#### 1) 세계시장 규모

○ 2009년 세계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2,337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2004년 1,609억 달러의 세계시장규모는 2008년 2,390억 달러까지 증가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으며, 2008년까지 10~11%대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다가 2009년에 전년대비 -2.2%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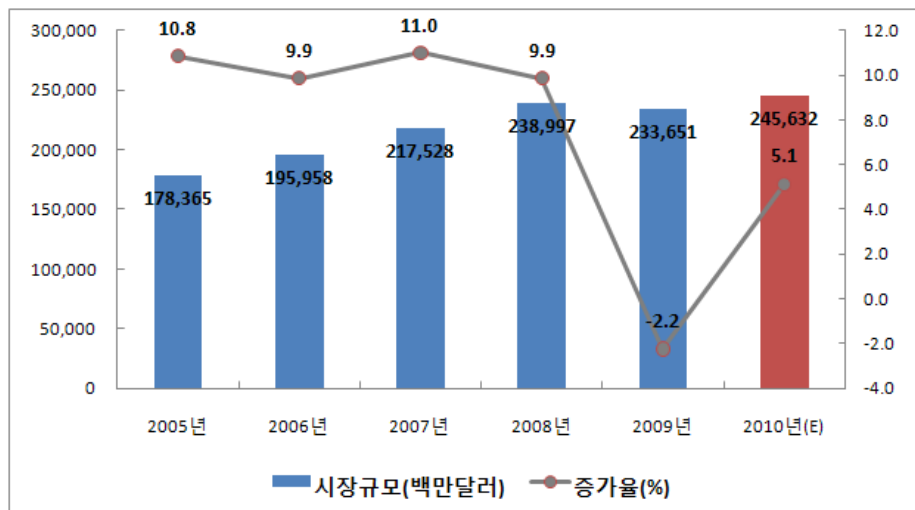


그림 II-5-3 세계 의료기기 시장규모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0년 의료기기산업 분석 보고서

주 : 2010년도 자료는 추정치임

○ 지역별로는 2009년 북미/남미 지역이 1,051억 달러(45.0%)로 가장 큰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독일, 영국, 이탈리아 등 서유럽 지역이 681억 달러(29.1%),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지역이 421억 달러(18.0%)로 나타났다. 이들 3개 지역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92.1%로 세계 의료기기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북미/남미 지역과 서유럽 지역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연평균 6%대의 안정적인 성장을 해왔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2009년 421억 달러로 연평균 10.2%의 성장을 이뤘다.

- 중앙유럽/동유럽,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각각 114억 달러(4.9%), 70억 달러(3.0%)로 두 지역이 세계 의료기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9%에 불과하나, 중앙유럽/동유럽 지역은 2004년 이후 연평균 17.4%가 성장하였으며, 중동/아프리카 지역은 12.8%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표 II-5-1 지역별 세계 의료기기 시장규모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E)	CAGR (05-09)
북미/남미	84,973	92,059	102,364	107,214	105,083	108,332	5.5
서유럽	54,682	60,086	65,550	71,962	68,101	47,480	5.6
아시아/태평양	28,482	31,119	33,225	38,807	42,070	12,638	10.2
중앙유럽/동유럽	5,650	7,393	10,323	13,994	11,419	7,575	19.2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4,577	5,301	6,065	7,020	6,978	69,607	11.1
합계	178,365	195,958	217,528	238,997	233,651	245,632	7.0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0년 의료기기산업 분석 보고서

주 : 2010년도 자료는 추정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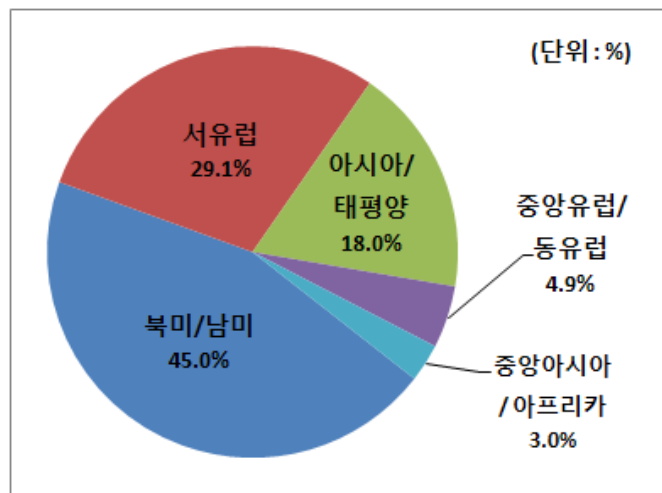


그림 II-5-4 지역별 세계 의료기기 시장규모(비중)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0년 의료기기산업 분석 보고서

주 : 2010년도 자료는 추정치임



- 2009년 미국의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927억 달러로 39.7%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은 217억 달러(9.3%)로 의료기기 시장규모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다음으로 독일 188억 달러(8.1%), 프랑스 91억 달러(3.9%), 이탈리아 87억 달러(3.7%)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 한편 우리나라의 2009년 시장규모는 세계 13위(29억 달러)로 세계 의료기기 시장의 1.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5-2 2009년 국가별 의료기기 시장규모

(단위 : 백만달러, %)

순위	국 가	2009년 시장규모	순위	국 가	2009년 시장규모
1	미국	92,662	7	중국	6,695
2	일본	21,713	8	캐나다	4,922
3	독일	18,843	9	러시아	4,913
4	프랑스	9,071	10	스페인	4,257
5	이탈리아	8,703	13	한국	2,855
6	영국	8,284	세계시장		233,651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0년 의료기기산업 분석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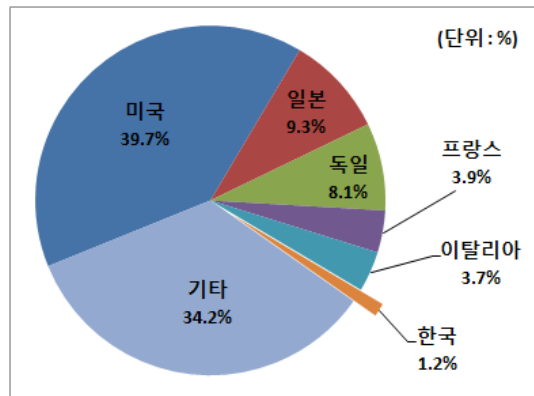


그림 II-5-5 2009년 국가별 의료기기 시장규모(비중)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0년 의료기기산업 분석 보고서

## 2) 고령친화 의료기기 유망품목 시장규모

- 치과용 임플란트 세계 시장의 점유율을 살펴보면, 유럽이 가장 높은 42%, 미국이 33%,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19% 그리고 BRICs 지역이 6%의 점유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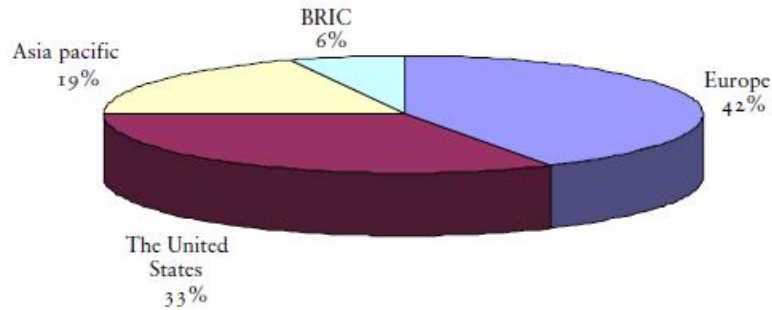


그림 II-5-6 지역별 치과용 임플란트 점유율(2010년)

자료 : Frost & Sullivan, Western European Dental Implants Market, 2011

- GBI Research에서 치과용 임플란트 세계 시장을 살펴보면, 2002년 8억 4,400만 달러에서 2009년 25억 9,110만 달러로 연평균 17%의 성장을 보이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치과용 임플란트 시장이 연평균 16%의 성장률을 보이며 치과용 의료기기 중 가장 높은 성장을 할 것으로 내다보았는데, 2009년 25억 9,110만 달러에서 2016년에는 63억 6,100만 달러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 세계 치과용 임플란트 주요 기업들의 비중은 노벨 바이오케어와 스트라우만이 각각 22%, 16%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특징적인 사항으로는 국내 기업인 오스텀 임플란트가 세계 시장에서 4%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은 국내 임플란트 기업의 기술력이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에 위치하고 있으며 높은 시장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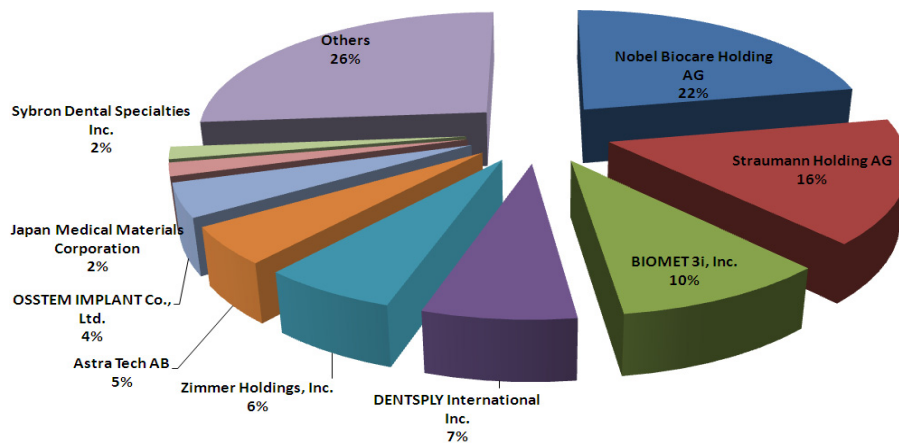


그림 II-5-7 세계 치과용 임플란트 주요 기업 시장 비중

자료 : GBI Research, Internal Database. SEP 2010

- 치과용 골이식재는 2002년 9,590만 달러에서 2009년 2억 1,440만 달러로 연평균 12%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용 골이식재의 향후 시장을 살펴보면, 2009년 2억 1,440만 달러에서 2016년 3억 9,700만 달러로 연평균 9%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나타났다.
- 치과용 방사선장치(치과용 CT, X-ray 등)의 경우 2002년 7억 1,080만 달러의 시장에서 2009년 12억 3,740만 달러로 연평균 8%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향후 2016년까지 7%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GBI Research에서는 나타내고 있다.
- 치과용 재료는 골이식재, 치주조직재생재, 골이식재 대체물 등 2002년 1억 8,460만 달러에서 2009년 약 4억 달러로 11%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9%의 성장으로 약 7억 달러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표 II-5-3 치과용 의료기기 세계 시장 현황 (2002-2009)

(단위 : 백만 달러)

Dental Device Market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CAGR
<b>Dental Implants</b>										
	Titanium Dental Implants	844.7	1,026.1	1,241.5	1,477.3	1,735.4	2,103.7	2,412.0	2,583.3	17%
	Zirconium Dental Implants	0.0	0.0	0.3	6.9	7.4	8.1	8.3	7.8	NA
Overall Revenues		844.7	1,026.1	1,241.8	1,484.2	1,742.8	2,111.8	2,420.3	2,591.1	17%
<b>Dental Radiography Equipment</b>										
	Extra Oral Radiography Equipment	560.6	619.4	674.2	737.4	786.2	855.3	942.2	976.4	8%
	Intra Oral Radiography Equipment	150.2	169.4	188.4	206.1	221.4	243.2	260.4	261.0	8%
Overall Revenues		710.8	788.8	862.6	943.5	1,007.6	1,098.5	1,202.6	1,237.4	8%
<b>Dental Biomaterials</b>										
	Dental Bone Grafts	95.9	114.5	133.3	146.9	162.2	187.6	209.1	214.4	12%
	Tissue Regenerative Materials	52.2	59.7	67.3	73.7	81.3	92.5	102.7	105.7	11%
	Dental Bone Grafts Substitutes	36.5	44.2	51.2	55.5	60.6	69.9	77.6	78.7	12%
Overall Revenues		184.6	218.4	251.8	276.1	304.1	350.0	389.4	398.8	11%

자료 : GBI Research, Internal Database, SEP 2010

표 II-5-4 치과용 의료기기 세계 시장 예측 (2009-2016)

(단위 : 백만 달러)

Dental Device Market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CAGR
<b>Dental Implants</b>										
	Titanium Dental Implants	2,583.3	2,922.0	3,311.0	3,758.0	4,274.0	4,869.0	5,557.0	6,353.0	16%
	Zirconium Dental Implants	7.8	8.0	8.0	8.0	8.0	8.0	8.0	8.0	NA
Overall Revenues		2,591.1	2,930.0	3,319.0	3,766.0	4,282.0	4,877.0	5,565.0	6,361.0	16%
<b>Dental Radiography Equipment</b>										
	Extra Oral Radiography Equipment	976.1	1,039.0	1,109.0	1,184.0	1,267.0	1,357.0	1,456.0	1,563.0	7%
	Intra Oral Radiography Equipment	261.0	274.0	288.0	303.0	319.0	336.0	355.0	375.0	6%
Overall Revenues		1,237.1	1,313.0	1,397.0	1,487.0	1,586.0	1,693.0	1,811.0	1,938.0	7%
<b>Dental Biomaterials</b>										
	Dental Bone Grafts	214.4	234.0	255.0	278.0	303.0	331.0	362.0	397.0	9%
	Tissue Regenerative Materials	105.7	114.0	124.0	134.0	145.0	157.0	170.0	184.0	8%
	Dental Bone Grafts Substitutes	78.7	84.0	91.0	97.0	105.0	112.0	121.0	130.0	7%
Overall Revenues		398.8	432.0	470.0	509.0	553.0	600.0	653.0	711.0	9%

자료 : GBI Research, Internal Database, SEP 2010

- 인공수정체의 경우 유럽 시장은 2005년 0.9억 달러에서 2015년 약 2억 달러로 연평균 10.5%의 성장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5-5 인공수정체 유럽 시장 예측 (2005-2015)

Year	Revenues	Revenues Growth Rate
	(\$ Billion)	(%)
2005	0.9	-
2006	0.96	6
2007	1.02	6.4
2008	1.09	6.8
2009	1.17	7.2
2010	1.26	7.7
2011	1.36	8.2
2012	1.48	8.8
2013	1.62	9.4
2014	1.78	9.9
2015	1.97	10.5

자료 : Frost & Sullivan, European Ophthalmic Surgical Devices Market, 2008

○ 글로벌데이터의 “Hearing Aid Devices - Global Pipeline Analysis, Opportunity Assessment and Market Forecasts to 2017”에서는 2010년 세계 보청기 시장은 66억 달러로 나타내고 있다. 고령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청력의 감소 그리고 보청기 기술의 혁신 등의 이유로 2017년까지 연평균 6%의 성장으로 약 1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며, 미국 시장에서는 2010년 약 23억 달러의 시장을 확보하였으며, 2017년까지 연평균 5.9% 성장으로 3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2.2 국내 환경 변화

### 1) 법·제도

고령친화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을 위해서는 관련 산업체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법·제도 정비가 최우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되었고, 고령친화산업진흥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다양한 법률이 새로 제·개정되었다. 관련법과 내용을 요약함은 다음과 같다.

핵심 과제	관련법	법·제도 해당 내용
공용품 및 보조기구 개발 및 보급확대	고령친화산업진흥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령친화산업체에 대한 금융지원</li> <li>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li> <li>우수제품 및 사업자에 대한 지원</li> <li>사업자단체 운영</li> </ul>
재택·원격진단·진료 및 휴대형 다기능 건강 정보기기 개발 및 보급확대	의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택·원격진단·진료 및 휴대형 의료기기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제공</li> </ul>
한방의료기기 개발 및 보급확대	건강보험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방진단기기를 통한 의료행위에 대한 의료보험 수가 재평가 및 조정</li> </ul>
노인질환의 사전예방 및 조기발견	노인복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적절한 치료 및 요양으로 노후생활의 안정 기여</li> </ul>
장기요양기관의 요양급여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급여</li> </ul>

## 2) 국내시장 현황

### 가. 의료기기산업 생산 및 수출입 현황

- 2009년 의료기기 제조업체수는 1,754개소이며, 종사자 수는 28,167명으로 전년대비 각각 28개소, 640명이 증가하였다.

표 II-5-6 연도별 의료기기 제조업체 및 종사자 현황

(단위 : 개소, 명)

연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제조업체수	1,012	1,500	1,596	1,624	1,662	1,726	1,754
종사자수	21,766	25,287	25,610	26,399	26,936	27,527	28,167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0년 의료기기산업 분석 보고서

주 : 제조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은 제조업체 중 생산실적을 보고한 업체들의 실적을 근거로 작성

-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2010년 생산액은 2조 9,644억 원으로 전년과 비교하였을 때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증가율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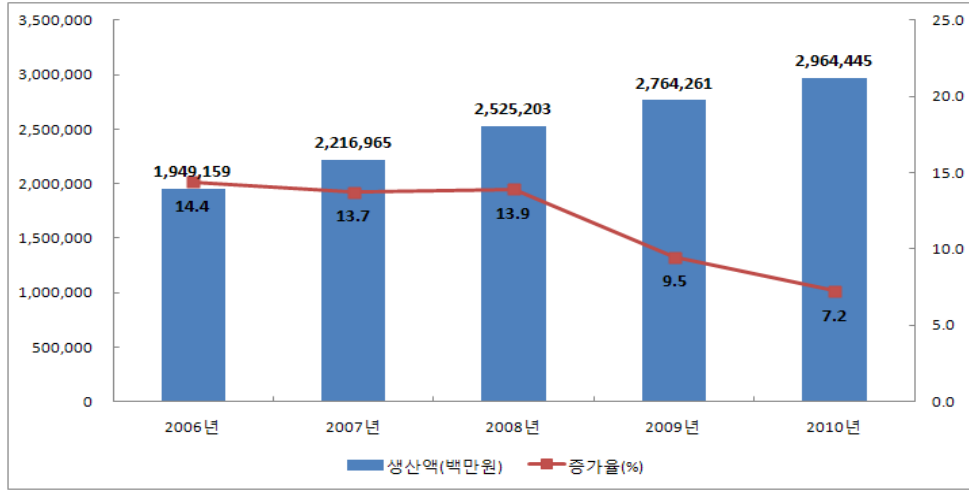


그림 II-5-8 연도별 의료기기 제조업체 생산현황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0년 의료기기산업 분석 보고서

주 : 생산액은 제조업체 중 생산실적을 보고한 업체들의 실적을 근거로 작성

○ 우리나라 의료기기산업의 생산현황을 생산액 규모별로 살펴보면 생산액이 10억 미만인 업체가 2009년 1,393개로 전체 제조업체의 79.4%를 차지하고 있으나 생산액은 2,422억 원으로 전체 생산액의 8.8%에 그치고 있다. 반면, 생산액이 10억 이상인 업체는 361개 업체에 불과하나 생산액은 2조 5,220억 원으로 전체 생산액의 91.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억 이상의 업체 비중이 53.1%로 전체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10-50억 미만 업체가 19.7%, 50-100억 미만의 업체가 18.5%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II-5-7 의료기기 제조업체 생산규모별 생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100억 이상	50-100억 미만	10-50억 미만	1-10억 미만	1억 미만	합계
2006년	업체수	29	61	220	560	754	1,624
	생산액	817,578	406,556	498,077	213,129	13,819	1,949,159
	비중	41.9	20.9	25.6	10.9	0.7	100.0
2007년	업체수	42	53	231	532	804	1,662
	생산액	1,082,686	364,525	542,296	212,628	14,830	2,216,965
	비중	48.8	16.4	24.5	9.6	0.7	100.0
2008년	업체수	42	61	253	528	842	1,726
	생산액	1,293,200	426,797	582,393	207,593	15,219	2,525,203
	비중	51.2	16.9	23.1	8.2	0.6	100.0
2009년	업체수	48	74	239	566	827	1,754
	생산액	1,466,592	512,105	543,348	226,153	16,062	2,764,261
	비중	53.1	18.5	19.7	8.2	0.6	100.0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0년 의료기기산업 분석 보고서

주 : 제조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은 제조업체 중 생산실적을 보고한 업체들의 실적을 근거로 작성

- 2009년 생산액이 가장 높은 품목은 초음파영상진단장치로 2008년에 비해 10.8% 감소한 2,867억 원을 생산하였다. 초음파영상진단장치는 우리나라 대표 생산품목이나 2009년에는 생산액이 감소하였다.
- 치과용귀금속합금의 생산액은 2008년 대비 4.4% 감소한 2,540억 원으로 2007년에 이어 2위 자리를 유지하였으며, 3위인 치과용임플란트의 2009년 생산액은 1,791억 원으로 2008년보다 6.8% 감소하였다. 시력보정용안경렌즈는 2008년 대비 3.5% 증가한 1,676억 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4위를 차지하였다. 5위 품목은 전년도와 동일한 개인용온열기로, 생산액은 전년대비 29.4% 증가한 1,314억 원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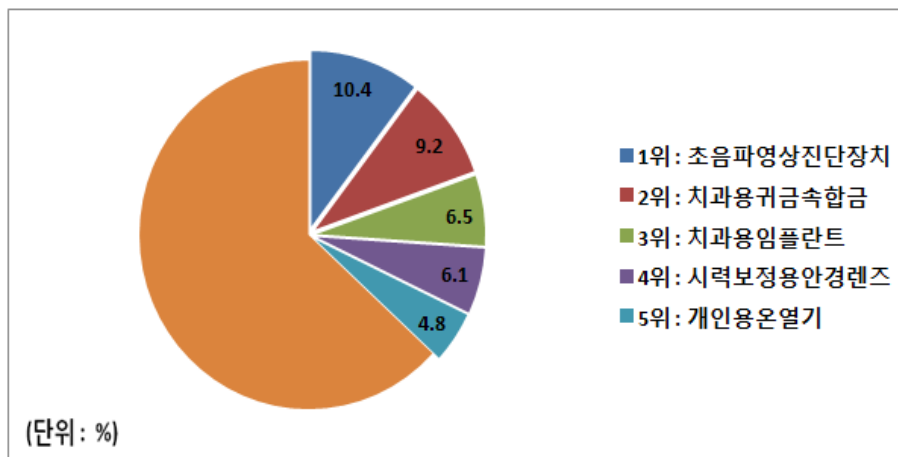


그림 II-5-9 2009년도 기준 생산액 상위 5대 품목 현황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0년 의료기기산업 분석 보고서

주 : 제조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은 제조업체 중 생산실적을 보고한 업체들의 실적을 근거로 작성

- 5대 주력 수출품목은 초음파영상진단장치(19.0%), 개인용온열기(8.3%), 시력보정용안경렌즈(6.2%), 혈당측정검사지(4.3%), 의료용프로브(4.2%)로 이들 품목은 2009년 5억 달러의 수출액으로 전체 의료기기 수출액의 42.1%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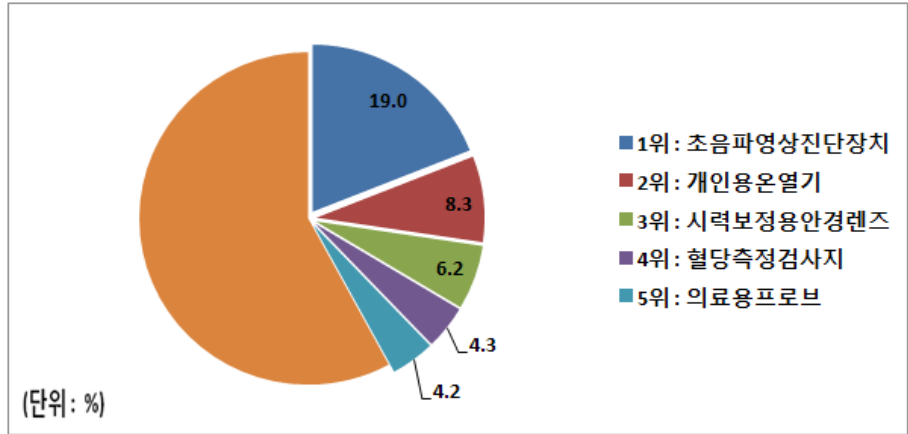


그림 II-5-10 2009년도 기준 수출액 상위 5대 품목 현황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0년 의료기기산업 분석 보고서

주 : 제조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은 제조업체 중 생산실적을 보고한 업체들의 실적을 근거로 작성

- 의료기기 수입의 경우에는 스텐트, 인공무릎관절, 소프트콘택트렌즈, 전산화단층엑스선촬영장치, 인공신장기용여과기 등 대부분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고가의 의료장비들의 수입 비중이 높게 유지되고 있다.
-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는 의료기기인 스텐트의 2009년 수입액은 9,297만 달러이며, 2위인 인공무릎관절은 6,693만 달러를 수입하였다. 소프트콘택트렌즈 6,015만 달러, 전산화단층엑스선촬영장치는 5,500만 달러를 수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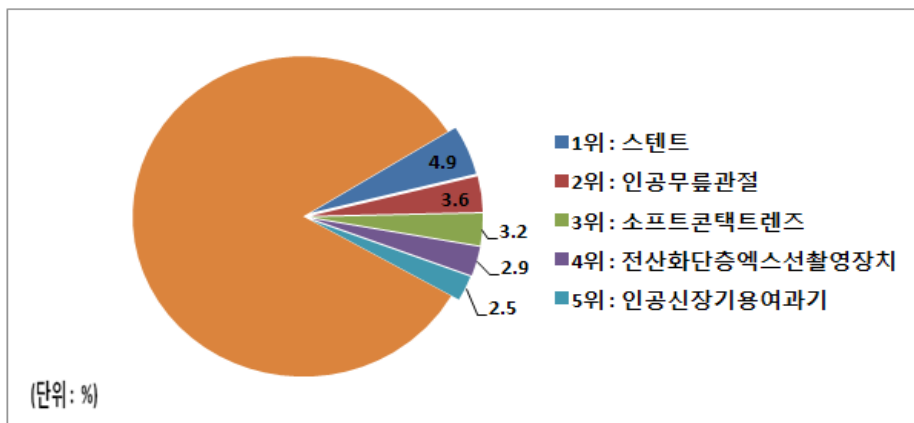


그림 II-5-11 2009년도 기준 수입액 상위 5대 품목 현황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0년 의료기기산업 분석 보고서

주 : 제조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은 제조업체 중 생산실적을 보고한 업체들의 실적을 근거로 작성

- 우리나라의 2010년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3조 9,027억 원으로 전년대비 7.1% 증가하였으며, 2008-2010년 연평균 3.9%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 의료기기 생산액은 2조 9,644억 원으로 2008-2010년 동안 연평균 8.3% 성장하였다.
- 의료기기 수출액은 2010년 1조 6,816억 원으로 연평균 16.1%의 고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입액은 2조 6,199억 원으로 전년대비 2,211억 원이 증가하였다.

표 II-5-8 국내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입 현황(의료기기산업 시장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CAGR(08-10)
생산	2,525,203	2,764,261	2,964,445	8.3
수출	1,248,137	1,519,027	1,681,619	16.1
수입	2,340,882	2,398,814	2,619,895	5.8
시장규모	3,617,948	3,644,047	3,902,720	3.9
시장증가율	11.0	0.7	7.1	

자료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실적보고, 각 연도

주 : 1. 시장규모는 생산 -수출+수입

2. 수출입에 대한 환율 적용은 한국은행의 연도별 연평균 기준환율을 사용

## 나. 의료기기산업 특허 동향

- 한국특허정보원에서 2010년에 새로 정비된 Patmetrics Database를 이용하여 199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출원된 특허 중 의료기기산업 관련 IPC에 해당되는 특허를 추출하여 의료기기 산업분야의 특허동향을 분석한 결과를 아래의 표와 같이 제시하였다.
- 특허출원건수는 내국인이 외국인보다 적으나 내국인의 출원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1998년 내국인이 308건으로 387건인 외국인보다 적었으나 1999년부터 외국인을 추월하여 2008년 2,404건으로 나타났다.

표 II-5-9 연도별 의료기기 특허출원 동향

(단위 : 건)

연도	내국인	외국인	합계
1998년	308	387	695
1999년	585	392	977
2000년	822	476	1,298
2001년	951	523	1,474
2002년	896	604	1,500
2003년	1,014	645	1,659
2004년	1,105	766	1,871
2005년	1,335	909	2,244
2006년	1,685	1,147	2,832
2007년	1,957	1,164	3,121
2008년	2,404	1,196	3,600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0년도 보건산업 연구개발실태 조사·분석

○ 외국 출원인을 대상으로 1998년-2008년 동안 한국에 출원된 의료기기 특허 8,209건에서 출원인 국가별 출원건수 및 점유율을 살펴보면, 미국이 3,900건(52.4%)을 출원하여 외국인 중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일본 1,897건(25.5%), 스위스 745건(8.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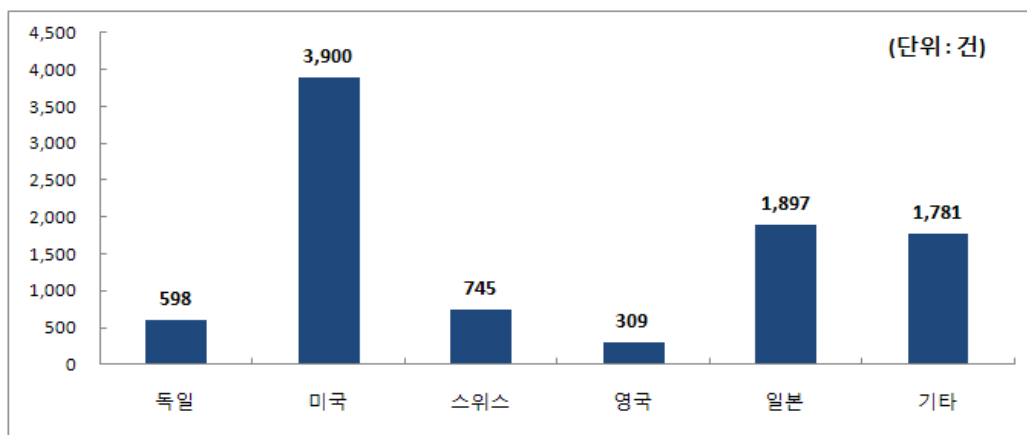


그림 II-5-12 주요 국가별 의료기기 특허출원건수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0년도 보건산업 연구개발실태 조사·분석

- 주 : 1. 제 1출원인의 국적이 한국인 특허를 대상으로 연구주체를 구분함
- 2. 출원연도 : 1998-2008년

○ 2008년 미국, 일본, 스위스의 의료기기 특허출원건수는 각각 715건, 394건, 193건이었으며, 세 나라 모두 전년대비 특허출원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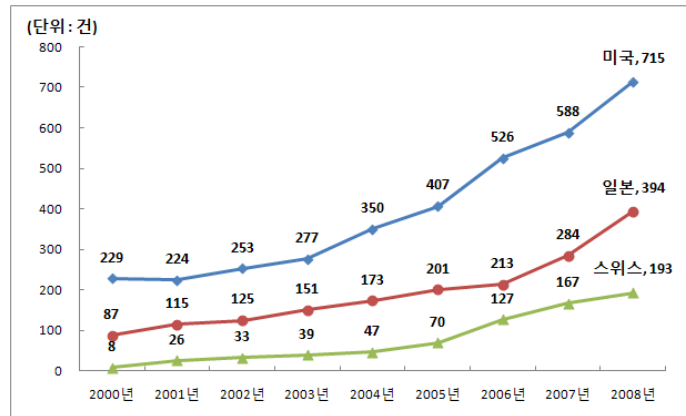


그림 II-5-13 연도별 미국/일본/스위스 의료기기 특허출원건수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0년도 보건산업 연구개발실태 조사·분석  
 주 : 국가는 제1출원인의 국적임

○ 미국, 일본, 독일 및 스위스는 모두 진단 수술용 의료기기에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하였다. 이에 반해 영국은 1998년-2008년 동안 의료기기의 특허 309건 중 134건을 인체삽입용 의료기기에 출원하였다.

표 II-5-10 주요국가의 의료기기 세부분류별 특허출원 현황

(단위 : 건)

기술분류	독일	미국	스위스	영국	일본	전체
물리치료장치용 의료기기	8	51	3	9	216	342
의료용 살균 또는 소독	52	318	51	25	137	736
인체삽입용 의료기기	120	684	184	134	270	1,835
전자기 치료기기	13	227	4	25	119	533
진단, 수술용 의료기기	187	1,692	307	69	869	3,681
치과용 의료기기	67	240	41	7	85	577
혈관이식 필터 등용 의료기기	129	657	155	35	150	1,403
환자수송용기구용 의료기기	22	31		5	51	123
계	598	3,900	745	309	1,897	9,230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0년도 보건산업 연구개발실태 조사·분석

### 다. 의료기기산업 R&D 지원 현황

- 2010년도 고령친화 의료기기와 관련하여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지원 총액은 250억 원으로 2009년 483억 원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하였고, 과제수는 2009년 199건에서 2010년 270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별 고령친화 의료기기 산업과 관련하여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지원된 연구개발사업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고령친화 의료기기의 분류가 따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보건의료복지 전체로 연구개발이 지원됨에 따라 연도별 지원 현황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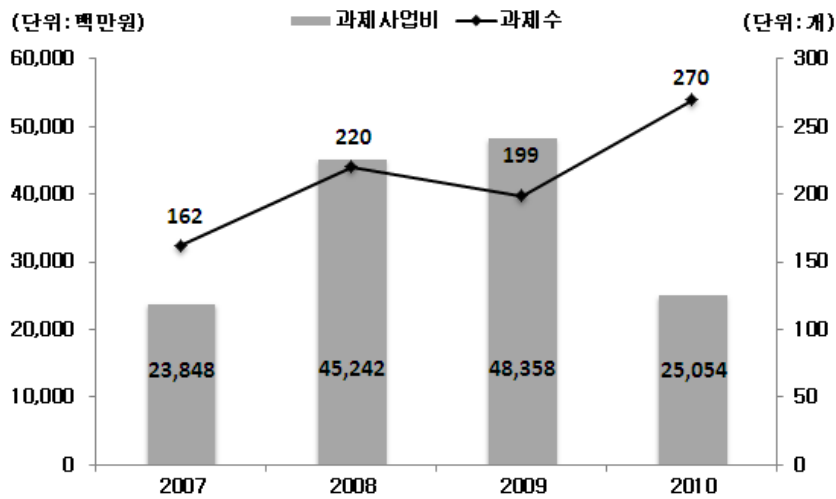


그림 II-5-14 고령친화 의료기기 정부개발 지원 현황

## 2.3 국내 시장규모 및 전망

### 1) 시장규모 분석 방법

#### 가. 기준연도 시장규모 추정 방법

모태산업(의료기기산업)의 시장규모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자료원으로 의료기기 생산/수출/수입 실적자료<sup>38)</sup>(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 시장규모 분석을 위한 자료로 이용하였다.

고령친화 의료기기에 대한 기준이 현재는 없는 상태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2010-91호 의료기기품목 및 품목별등급에 관한 규정을 기준으로 고령친화의료기기를 아래 표와 같이 분류하였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사용 비중을 예상하여 해당등급을 구분하였다.

표 II-5-11 고령친화 의료기기 분류<sup>39)</sup>

대분류		세부품명	시장비율
치과 분야	치과용금속	치과용순금속(1), 치과용귀금속합금(2), 치과용비귀금속합금(2), 아말감합금(2), 치과용수은(1), 치과용이용합금(1)	III
	치관용재료	치과용도재(2), 치관용레진(2), 의치용기성금합금치아(1), 도치(2), 성형된 플라스틱의치용치아(2), (기)성형된치관(1), 의치용이장·전장(1)	III
	의치상재료	의치상용레진(2), 트레이용레진(1), 의치받침(1,2), 의치상광택·경화제(2), 의치상수리용레진(2), 의치상이장용레진(2), 의치부착제(1,3)	III
	치과용근관 충전 및 치료재	거터-퍼차(1), 근관용은포인트(1), 근관충전용재료(2), 근관삽입재료(2), 근관치료용페이퍼포인트(1), 치과용클린저(1), 치과방수용재료(1)	II
	치과용접착 및 충전재료	치과용시멘트(2), 치과용충전제(2), 외동이장재(1,2), 임시충전제(2), 치과용접착제(2), 레진충전피막재료(1,2), 치아색상용합성수지(2), 지각과민치치제(2)	II
	치과용인상재료	치과용인상재료(1,2), 치과용인상처리제(1), 치과모형복제용인상재(1), 치과수복물제작용인상재(1)	II
	치과용왁스	치과용왁스(1), 의치상용젤락(1)	II
	치과용모형재료 및 매몰재	치과용모형재료(1), 치과용매몰재(1)	II
	치과용연마재료	치과용연마제(1)	II
	보철재료	치과용부착장치(1,2), 치과용클래스프(1), 근관용포스트(1), 치과용유지용핀(1), 치과용적합시험재(1), 치과용교합인기재(2)	II

38) 2008년-2010년 의료기기 생산실적 자료를 이용하여 모태산업 및 고령친화 의료기기산업의 기본적인 규모를 정의하였다

39) 고령친화 의료기기는 별도로 정해진 규격이 없어 본 연구에서 172개 품목으로 선정하였다.

대분류		세부품명	시장비율
	치과용매식재료	악안면성형용관(2), 악안면성형용나사(2), 악안면성형용줄(2), 치과용임플란트(3,4), 치과용골이식재(3,4), 치주조직재생유도재(3,4), 치과용임플란트시술기구(1)	III
	예방치과재료	치면열구전색제(2)	II
	보철물분리재료	보철물분리재(1)	II
재활 분야	정형용품	인공발목관절(3,4), 인공팔꿈치관절(3,4), 인공손가락관절(3,4), 인공영덩이뼈관절(3,4), 인공무릎관절(3,4), 인공어깨관절(3,4), 인공족지관절(3,4), 인공손관절(3,4), 골절합용관(3,4), 골절합용나사(4,4), 골수내고정막대(3), 원형결찰골고정재(3), 본캡(3), 금속골고정재(3,4), 추간체고정보형재(3,4), 체외고정기구(2), 골시멘트(3), 스텐트(3,4)	III
	부목	부목(1), 팽창성부목(1), 데니스브라운부목(1)	II
	정형 및 기능회복용기구	정형용견인장치(1,2), 정형용운동장치(1,2), 정형용기계장치(2), 정형용교정장치(2), 수술용기구(1,3), 기능회복용기구(1,2)	II
	환자운반차	휠체어(1,2), 의료용스쿠터(2)	IV
	시력보정용안경	시력보정용안경(1)	I
	시력보정용렌즈	시력보정용안경렌즈(1), 하드콘택트렌즈(3), 소프트콘택트렌즈(3), 치료용콘택트렌즈(2), 진단용콘택트렌즈(2)	I
	보청기	보청기(2,4)	III
인체조직 및 기능대치품	인공수정체(4)	II	
진단 분야	의료용엑스선장치	전산화단층엑스선촬영장치(3), 진단용엑스선촬영장치(3), 형광판식엑스선투시촬영장치(3), 이미지인텐시화이어엑스선투시촬영장치(3), 단층촬영용엑스선장치(3), 유방촬영용엑스선장치(3), 간접촬영용엑스선장치(3), 이동형엑스선장치(3), 혈관조영엑스선장치(3), 엑스선골밀도측정기(3), 디지털엑스선촬영장치(3), 치과진단용엑스선발생장치(3), 치과용전산화단층촬영엑스선장치(2)	I
	비전리진단장치	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장치(3)	I
	방사선진료장치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장치(3), 핵단층촬영장치(3), 단일광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장치(2)	II
	체온측정용기구	체온계(1,2)	I
	혈액검사용기기	혈당측정기(1)	III
	혈압검사 또는 맥파검사용기기	혈압계(1,2), 혈관내혈압계(3), 안저혈압계(2), 혈압감시기(2), 맥파계(2), 맥파분석기(3), 혈압검사용커피(1)	II
	내장기능검사용기기	심전계(2), 심전도감시기(2), 환자감시장치(2), 환자중앙감시장치(2), 호흡감시기(2), 혈압정보기(2), 초음파골밀도측정기(3), 뇌파계(2), 뇌파신호스펙트럼분석기(1)	II
	검안용기기	검안용렌즈(1), 검안용프리즘(1), 검안용편부착렌즈(1), 검안렌즈세트(1), 검안렌즈프레임(1), 영상시력측정기(2)	II
	청력검사용기기	청력검사기(2), 임피던스청력검사기(2), 청력검사용 전기잡음발생기(1), 의료용소리굽쇠(1)	III

대분류		세부품명	시장비율
	지각 및 신체진단용기구	이명적응용잡음발생기(2)	III
치료 분야	의료용침대	의료용공기분사침대(2), 의료용순환침대(2), 환자회전침대(2), 의료용교대 부양매트리스(2)	II
	호흡보조기	인공호흡기(3), 수동식인공호흡기(2), 의료용온습도조절기(2), 흉벽진동기(2)	I
	내장기능대용기	체온조절장치(2)	I
	이학진료용기구	저주파자극기(2), 전위발생기(2), 적외선조사기(2), 극초단파자극기(3), 초단파자극기(3), 고주파자극기(3), 초음파자극기(3), 파리핀욕조(2), 의료용중기욕조(2), 물요법장치(2), 온욕요법장치(1), 의료용온열기(2), 의료용저온기(2), 의료용조합자극기(2,3,4)	II
	개인용전자자극기	개인용온열기(2), 개인용저주파자극기(2)	III
	침 또는 구용기구	침(1,2), 부항기(1,2), 온구기(1,2)	III
	의료용자기발생기	의료용자기발생기(2), 의료용전자기발생기(2)	II

○ 그룹 구분 : 의료기기 중 65세 이상 노인에게 사용되는 비율에 따른 구분

- I : 고령친화 의료기기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사용비중 30% 이상 50% 미만
- II : 고령친화 의료기기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사용비중 50% 이상 80% 미만
- III : 고령친화 의료기기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사용비중 80% 이상 90% 미만
- IV : 고령친화 의료기기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사용비중 90% 이상

고령친화 의료기기산업의 시장규모를 분석하기 위하여 모태산업의 범위 중 선정된 품목으로 품목별 가중치(품목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사용 비중<sup>40)</sup>)를 파악한 후 선정된 의료기기 품목 시장규모에 이 값을 적용하여 시장규모를 산출하였다.

$$y_i = \sum_{j=1}^{172} (\text{시장규모}_{ij}) \times (\text{품목별가중치}_{ij})$$

- $y_i$  :  $i$ 연도의 고령친화 의료기기산업 시장규모
- $j$  : 선정된 의료기기 품목( $j = 1, \dots, 172$ )
- 시장규모 $_{ij}$  :  $i$ 연도의 선정된  $j$ 번째 의료기기 품목 시장규모
- 품목별가중치 $_{ij}$  :  $i$ 연도의 품목별 65세 이상 노인이 사용하는 비중  
※ 2010년 품목별 가중치를 2008년-2009년 시장규모 분석에 동일하게 적용함

40) 의료기기 관련 기관(병원)의 전문가 자문을 통한 품목별 가중치(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사용비중)를 파악하였다.



## 나. 시장규모 전망(예측) 방법

고령친화 의료기기산업의 2020년까지의 시장규모를 예측하기 위하여, 모태산업 및 고령친화 의료기기산업 시장규모의 2008년-2010년 연평균성장률(CAGR)을 확인<sup>41)</sup>하였다.

고령친화 의료기기산업의 2020년까지의 시장규모 예측에 있어 추가적인 고려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추가적으로 65세 이상 인구 증가를 반영하여 시장규모를 예측하였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0년 전체 인구의 약 10%를 차지하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30년 20%를 넘어 2040년에 전체 인구의 약 37%를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고령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고령친화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산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고령친화 의료기기산업의 시장규모 예측 시 향후 전체 인구에서 65세 인구의 증가정도를 변수로 사용하여 전망(예측)<sup>42)</sup> 하였다.

## 2) 시장규모 추정 및 예측 결과

### 가. 기준연도 시장규모 추정 결과

- 고령친화 의료기기 시장규모를 추정한 결과 2010년 1조 903억 원으로 전년 (1조 498억 원) 보다 소폭 상승하여 2008-2010 연평균 0.8% 성장하였으며, 전체 의료기기 시장 대비 약 30%의 시장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2010년 우리나라의 고령친화 의료기기 시장의 총 생산금액은 8,254억 원으로 2008년부터 연평균 4.4%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수입의 경우 같은 기간동안 3.3% 증가하면서 2010년 5,978억 원으로 나타났다. 수출의 경우 2008년 2,455억 원에서 2010년 3,329억 원으로 연평균 16.4%의 고성장을 보여 고령친화 의료기기 산업이 수출주도형 산업임을 입증하고 있다.

41) 모태산업(의료기기산업) 시장규모의 2008년-2010년 연평균 성장률(CAGR)은 3.9%이며, 고령친화 의료기기산업의 연평균 성장률(CAGR)은 0.8%로 나타났다. 현재 고령친화 의료기기산업의 시장규모는 (생산+수입-수출)의 산식으로 계산되며, 해당 의료기기 시장은 수출이 압도적으로 높은 시장이므로, 연평균 증가율(CAGR)이 다소 낮게 나타날 수 있다.

42) 모태산업(의료기기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3.9%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적용하여 전체인구 중 고령인구의 비중의 증가 정도를 함께 적용하여 예측하였다.

표 II-5-12 국내 고령친화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입 현황(고령친화 의료기기산업 시장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CAGR(08-10)
생산	757,339	804,977	825,387	4.4
수입	560,389	568,695	597,819	3.3
수출	245,520	323,914	332,865	16.4
시장규모	1,072,208	1,049,758	1,090,342	0.8

자료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실적보고, 각 연도

주 : 1. 시장규모는 생산 -수출+수입

2. 수출입에 대한 환율 적용은 한국은행의 연도별 연평균 기준환율을 사용

- 분류별 생산액을 살펴보면 치과분야가 3,836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재활분야 2,225억 원, 치료분야 1,185억 원, 진단분야 1,008억 원 순이었다.
- 진단분야는 네 분야 중에서 규모는 가장 작았으나 연평균 18.5%로 가장 큰 성장률을 기록한 반면 고령친화 의료기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치과분야는 -1.8%로 성장률이 낮아졌다.

표 II-5-13 고령친화 의료기기 분류별 생산실적

(단위 : 천원, %)

대분류	중분류	2008년	2009년	2010년	CAGR(08-10)
치과 분야	치과용금속	212,043,170	207,433,545	187,151,656	-6.1
	치관용재료	989,685	1,793,100	4,817,155	120.6
	의치상재료	0	115	0	-
	치과용근관 충전 및 치료재	4,179,758	5,900,651	6,091,540	20.7
	치과용접착 및 충전재료	1,987,453	3,564,778	3,788,662	38.1
	치과용인상재료	1,269,726	2,590,664	3,909,074	75.5
	치과용왁스	0	0	0	-
	치과용모형재료 및 매몰재	2,573,237	2,531,874	1,486,405	-24.0
	치과용연마재료	398,405	456,699	499,198	11.9
	보철재료	743,564	956,949	1,668,420	49.8
	치과용매식재료	173,876,035	161,208,935	173,954,755	0.0
	예방치과재료	87,714	77,197	232,685	62.9
보철물분리재료	0	0	0	-	
소계		<b>398,148,747</b>	<b>386,514,507</b>	<b>383,599,550</b>	<b>-1.8</b>
재활 분야	정형용품	55,184,610	58,960,938	83,247,263	22.8
	부목	13,630,325	15,877,064	17,938,770	14.7
	정형 및 기능회복용기구	4,317,997	5,232,678	6,625,215	23.9
	환자운반차	10,710,998	14,131,613	11,098,833	1.8
	시력보정용안경	91,472	413,628	1,032,661	236.0
	시력보정용렌즈	63,697,275	71,245,640	71,217,997	5.7
	보청기	21,176,432	21,619,439	31,275,015	21.5
	인체조직 및 기능대치품	144,026	26,982	28,591	-55.4
소계		<b>168,953,135</b>	<b>187,507,982</b>	<b>222,464,345</b>	<b>14.7</b>
진단 분야	의료용엑스선장치	40,237,365	51,317,300	62,653,532	24.8
	비전리진단장치	960,000	3,367,644	2,066,497	46.7
	방사선진료장치	0	0	0	-
	체온측정용기구	582,155	3,432,063	928,458	26.3
	혈액검사용기기	14,409,312	13,235,182	17,680,465	10.8
	혈압검사 또는 맥파검사용기기	4,462,372	4,605,290	6,142,699	17.3
	내장기능검사용기기	10,865,375	10,211,177	11,075,038	1.0
	검안용기기	0	3,500	0	-
	청력검사용기기	197,120	323,840	173,120	-6.3
	지각 및 신체진단용기구	77,417	171,279	127,428	28.3
소계		<b>71,791,116</b>	<b>86,667,275</b>	<b>100,847,237</b>	<b>18.5</b>
치료 분야	의료용침대	1,929,601	3,330,573	3,520,653	35.1
	호흡보조기	627,276	1,063,622	1,028,506	28.0
	내장기능대용기	0	21,780	24,750	-
	이학진료용기구	17,400,986	16,934,201	23,662,205	16.6
	개인용전자자극기	87,317,298	113,055,426	78,819,754	-5.0
	침 또는 구용기구	9,114,941	8,209,842	9,727,205	3.3
	의료용자기발생기	2,055,789	1,671,766	1,693,230	-9.2
소계		<b>118,445,891</b>	<b>144,287,210</b>	<b>118,476,303</b>	<b>0.0</b>
전체		757,338,889	804,976,974	825,387,435	4.4

자료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실적보고, 각 연도

- 치과용 CT는 2010년 기준 시장규모가 약 7,436억 원으로 2009년에 비해 시장규모가 매우 크며, 치과용 임플란트도 약 1,537억 원의 시장규모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치과 의료기기 품목이 인구고령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관련 품목의 시장규모도 계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 치과용 CAD/CAM 밀링장치 및 치과용도재(지르코니아) 역시 치과분야에서 고령자에게 약 90% 이상을 사용하는 유망품목이다. 08년~10년도 연평균 37.3%의 성장률을 보이며 2010년도에는 약 208억 원 규모의 시장규모를 나타낸다.
- 고령자들의 약 80%가 사용하는 보청기 또한 고령친화 유망품목으로 선정되었으며, 기술 수준은 낮지만 연평균 19.0%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표 II-5-14 고령친화 의료기기 전략품목 시장규모

(단위 : 백만원, %)

품목	시장규모			CAGR(08-10)
	2008년	2009년	2010년	
치과용임플란트	209,392	171,395	153,718	- 14.3
CAD/CAM장비 및 치과용도재	11,010	10,717	20,750	37.3
인공수정체	34,330	35,074	36,025	2.4
보청기	31,470	32,147	44,562	19.0
치과용CT	-	7,561	743,613	-
의료용조합자극기	8,698	7,781	10,866	11.8
관절치료기	4,965	4,947	4,118	- 8.9

자료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실적보고, 각 연도

## 나. 시장규모 전망(예측) 결과

- 앞에서 설명한 방법을 활용하여 향후 고령친화 의료기기산업의 시장규모를 전망<sup>43)</sup>하여 본 결과, 고령친화 의료기기산업의 시장규모는 2015년 1조 3,516억 원, 2020년 1조 6,975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 2010년 모태산업 대비 고령친화 의료기기산업의 비중은 27.9%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 28.6%, 2020년 29.7% 정도의 비중으로 추정된다.

43) 고령친화 의료기기산업 시장규모의 2008년-2010년 연평균 성장률을 계산한 결과 0.8%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0년 가중치를 2008년 및 2009년 시장규모를 계산하면서 동일하게 적용하여 시장규모가 과대하게 추정되었다고 보고 향후 예측에 있어서는 65세 이상 고령자 증가율을 적용하여 분석하게 되었다.

표 II-5-15 고령친화 의료기기산업 시장규모 전망(예측)

(단위 : 백만원, %)

	2010년	2015년	2018년	2020년	CAGR(10-20)
고령친화 의료기기산업	1,090,342	1,351,550	1,534,791	1,697,511	4.5
비중	27.9	28.6	29.0	29.7	
모태산업	3,902,720	4,725,471	5,300,194	5,721,671	3.9

자료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실적보고, 각 연도

### 3. 전략품목 및 지원정책

#### 3.1 전략품목 선정

##### 1) 선정기준

고령친화 의료기기 산업 전략품목으로 선정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차로 172개의 고령친화 의료기기 품목을 4개 분야 즉, 치과분야, 재활분야, 진단분야, 치료분야로 나누어 전문가 회의를 통해 분야별로 3~4개의 전략 품목을 선정하였다. 또한 2차 회의에서 품목별 시장규모, 성장성, 기술수준, R&D 지원 등을 고려하여 총 7개 품목을 선정하였다.

그 중 R&D 장기 지원이 필요한 품목을 제외한 고령친화 의료기기 산업의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정부지원이 가능한 품목 위주로 선정하였다.

그 과정에서 분야별 특성을 감안하여 보다 세분화 된 기준이 적용되기도 하였다. 고령친화 의료기기 품목 구분 자체가 명확하지 않으며, 의료기기 중 고령친화 의료기기로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업체, 병원, 학계 등의 관련 전문가를 모시고 2차 회의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분야별 전략품목을 선정하였다.

##### 2) 전략품목 선정

전략품목 선정 기준을 토대로 4개 분야에 걸쳐 총 14개의 유망품목을 도출하고 이를 시장규모, 성장성, 기술수준, R&D 지원 등의 기준으로 평가하여 7개의 전략품목을 최종 선정하였다.

1차 전문가 회의를 통해 172개의 고령친화 의료기기 품목을 대상으로 4개 분야 즉, 치과분야, 재활분야, 진단분야, 치료분야로 나누어 분야별 유망품목을 선정하였다.

표 II-5-16 고령친화 의료기기 유망품목

분야	유망품목
치과 분야	치과용 임플란트(Dental Implant)
	골이식재(Bone Graft Material)
	치과용 CAD/CAM밀링장치 및 치과용도재(지르코니아 등)(Dental CAD/CAM Device& Dental material)
재활 분야	인공무릎관절(Artificial Knee Joint)
	인공수정체(Intraocular Lens)
	인공엉덩이뼈관절(Artificial Hip Joint)
	보청기(Hearing Aid)
진단 분야	혈당측정기(Glucose Analyser)
	혈압계(Hemodynamometer, 또는 Blood Pump )
	인슐린주입기(Insulin Infusion Pump)
	치과용 전산화단층촬영 엑스선장치(Dental Computed Tomography)
치료 분야	개인용의료기기(Personal Medical Device, 또는 Home care Device)
	의료용조합자극기(Medical Combination Stimulator)
	관절치료기(Joint-therapy Device )

2차 전문가 회의를 통해 14개 유망품목에 대하여 시장규모, 성장성, 기술수준, R&D지원 등의 항목으로 평가하여, 전략품목을 도출하였다. 선정기준에서 ‘시장규모’는 세계시장을 의미하며, ‘기술수준’은 품질수준이 아닌 선진국대비 기준을 나타낸다. 4개 선정기준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장규모 : 대 (1조원 이상), 중 (5천억~1조 미만), 소 (5천억원 미만)
- 성장성 : 대 (연간 10% 이상 성장), 중 (5%~10%미만), 소 (5% 미만)
- 기술수준 : 대 (선진국 대비 90% 이상), 중 (70%~90%미만), 소 (70% 미만)
- R&D지원 : 장기 (5년 이상), 중기 (3~5년), 단기 (1년~2년)  
대 (연간 7억원 이상), 중 (4억~6억원), 소 (3억원 이하)

표 II-5-17 고령친화 의료기기 유망품목 평가

분야	유망품목	시장규모	성장성	기술수준	R&D지원
치과 분야	치과용 임플란트 (Dental Implant)	대	대	대&중	중기, 중
	골이식재 (Bone Graft Material)	소	대	중	중기, 중
	치과용 CAD/CAM밀링장치 및 치과용도재(지르코니아 등) (Dental CAD/CAM Device& Dental material)	중	대	중	중기, 중
재활 분야	인공무릎관절 (Artificial Knee Joint)	대	대	중	장기, 대
	인공수정체 (Intraocular Lens)	중	대	중	중기, 중
	인공엉덩이뼈관절 (Artificial Hip Joint)	중	대	소	중장기, 대
	보청기 (Hearing Aid)	중	대	소	중기, 중
진단 분야	혈당측정기 (Glucose Analyser)	중	중	중	중기, 소
	혈압계 (Hemodynamometer 또는 Blood Pump )	중	소	대	중기, 소
	인슐린주입기 (Insulin Infusion Pump)	소	소	중	중기, 중
	치과용 전산화단층촬영 엑스선장치 (Dental Computed Tomography)	대	대	중	중기, 중
치료 분야	개인용의료기기 (Personal Medical Device 또는 Home care Device)	대	대	중	단기, 소
	의료용조합자극기 (Medical Combination Stimulator)	대&중	대	중	중기, 중
	관절치료기 (Joint-therapy Device )	대	대	중	중기, 중

- 시장규모 : 대 (1조원 이상), 중 (5천억~1조 미만), 소 (5천억원 미만)
- 성장성 : 대 (연간 10% 이상 성장), 중 (5%~10%미만), 소 (5% 미만)
- 기술수준 : 대 (선진국 대비 90% 이상), 중 (70%~90%미만), 소 (70% 미만)
- R&D지원 : 장기 (5년 이상), 중기 (3~5년), 단기 (1년~2년) 대 (연간 7억원 이상), 중 (4억~6억원), 소 (3억원 이하)

선정기준에 따라 7개의 유망품목을 도출하였으며, 특히 추후 R&D 정부지원 대상을 고려하여 R&D 지원이 5년 이상 장기적으로 필요한 품목은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도출된, 고령친화 의료기기 전략품목은 다음과 같다. 치과분야에서는 치과용 임플란트, 치과용 CAD/CAM 밀링장치 및 치과용도재(지르코니아) 등 2개 품목이 선정되었으며, 재활분야에서는 인공수정체와 보청기 등 2개 품목, 진단분야에서는 치과용전산화단층엑스선촬영장치 1개 품목, 치료분야에서는 의료용조합자극기와 관절치료기 등 2개 품목이 선정되어 총 7개 품목이 선정되었다.

표 II-5-18 고령친화 의료기기 전략품목

분야	전략 품목
치과분야	치과용 임플란트, 치과용 CAD/CAM 밀링장치 및 치과용도재(지르코니아)
재활분야	인공수정체, 보청기
진단분야	치과용 전산화단층촬영엑스선장치
치료분야	의료용조합자극기, 관절치료기

## 3.2 제약요인 및 정책과제

### 1) 제약요인

고령친화 의료기기 산업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크게 법제도 및 표준과 관련된 사항, R&D와 세제 및 전문인력 관련된 사항, 추진체계 및 대외 인식과 관련된 사항, 성공사례 개발 및 확산과 관련된 사항으로 정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의료기기 특성상 인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임상시험까지 요구되는 경우가 있어서 R&D 지원이 장기적으로 필요한 품목의 경우는 기획 단계에서 인허가 단계까지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인 부분의 부담이 크다.

둘째, 전략품목으로 개발된 국산 의료기기의 인식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현재 국산 의료기기를 외면하고 외산의료기기를 선호하는 의료기관의 만연한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이에 우수한 고령친화의료기기를 연구 개발하는 제조업체에게 큰 부담이 있으며, 관련 고령친화 의료기기를 개발 및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정부 R&D지원 금액 및 기간이 적절히 편성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과제기간이나 금액이 품목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편성되어 있다. 대부분 단기 과제가 많고, 실제 제품화를 위한 과제기간 및 과제비가 낮게 책정되어 있어 효율적인 정부지원 R&D 지원금 및 과제수행에 제약이 있다.

넷째, 고령친화 유망의료기기 품목의 개발 완료 후, 제품화로 연결되지 못하거나 일회성에 그친 과제로 비효율적인 관리가 지속적인 산업의 발전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 2) 정책과제

우선 주요 지원정책으로는 첫째, 의료기기 산업 관련 법규의 정비가 필요하다. 고령친화 의료기기는 위에서 정의하였듯이 의료기기 중 고령자가 주로 사용하는 것을 구분한 것으로 의료기기법에서 관리되어야 한다. 따라서 고령친화 의료기기를 별도로 구분하여 독립적인 법·제도를 새로이 만드는 것보다는 현 의료기기법 안에서 개정을 통해 고령자의 안전과 보호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고령친화 의료기기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확보는 식약청고시 개정을 통하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고령친화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설계단계부터 barrier free를 고려하여 사용자 편의를 증진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최종사용자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내구성 및 사후관리 시스템에서도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령친화 의료기기 대부분이 1, 2등급으로 인허가 및 GMP 심사의 민간 전문기관으로 전면위탁을 통해 허가기간 단축 및 산업 육성 견인의 장점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등급 의료기기 심사업무의 민간위탁을 전면 확대하고, 위해성이 높은 3, 4등급 의료기기에 대한 심사 역량을 집중하여 의료기기 허가 심사업무를 효율적이고 개선하는 한편, 기 허가된 제품과의 동등성 검토에 따른 심사 차별화를 시도하여 허가 진입의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것이다. 이로써 고령친화 의료기기 품목으로 지정된 제품도 허가 신고에 대한 업계의 부담이 완화될 것이며, 시장진입을 가속화하여 국내 고령친화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고령친화 의료기기 산업이 발달한 일본 등 선진국의 고령친화 의료기기 관련 지원정책과 제도를 조사·분석하여, 국내 고령친화 의료기기산업 관련 정책 및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국내 고령친화 의료기기 산업의 효과적인 육성과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전략품목 중 개발된 국산 의료기기가 의료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과 지원책이 필요하다. 의료기관의 지나친 외산 선호사상이 의료기기 국산화에 커다란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획기적인 방안의 의료기기 국산화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에서 국산 의료기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의료기

관에서 국산의료기기 우선적으로 구매 하도록 하고, 우수한 국산 의료기기를 홍보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먼저 전략품목으로 개발된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국·공립의료기관에서 구매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전략품목으로 개발되고 지정된 고령친화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국내·외 전시회나 관련 학회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장기적으로 국산 의료기기의 홍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고령친화 의료기기 연구개발로 한정된 별도의 R&D지원 프로그램이 신설되어야 한다. 과거 정보통신부에서 출연한 기금인 IMT2000사업으로 “노인 및 재활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지원된 실적이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개발” 연구개발지원사업이 있으나 지원규모가 작고, 개발기간이 짧아 한정적인 제품개발에 국한 되어 있다. 또한 개발 범위도 노인 및 재활보조기구로 되어 있어 고령자를 위한 제품 개발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고령친화의료기기 개발만을 위한 독립된 정부 연구개발지원 사업을 추진이 필요하다. 고령친화 의료기기 개발사업은 개발아이템에 따라 적절한 지원기간(단기,중기,장기)과 연구개발비 지원이 되어야 한다. 정책적으로 고령친화 의료기기 유망품목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하기 위한 철저한 기획과 예산 확보가 성공적인 제품개발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넷째, 고령친화 전략품목의 실제적인 제품화 및 보완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성과관리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R&D 지원 후 실제적인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추후 제품개발에 보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부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를 통해 선정된 연구과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추후 과제에 반영하고, 효과적인 R&D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성공사례를 개발하고 확산할 필요성도 높다. 우선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성공사례를 도출하고 이를 민간부문으로 이전하여 성공확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계속적으로 고령친화 의료기기 품목을 추가로 발굴하고 종합적인 활성화 지원책을 마련하여 보다 고령친화 시장을 확대하여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표 II-5-19 고령친화 의료기기산업 정책과제

정책과제	
법규 개선	2등급 의료기기 심사 민간위탁 전면 확대
	고령친화 의료기기 안전성 및 유효성 확보
국산의료기기 홍보 및 활성화 정책	국·공공립 의료기관 국산의료기기 우선구매
	장기적인 홍보 프로그램
R&D지원 활성화	고령친화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신설
	유망 고령친화 의료기기 발굴 및 지원을 위한 기획 및 예산 확보
제품화 연계 정책	지속적인 성과관리 및 모니터링
	성과확산 프로그램

※ 우리나라는 기존 의료기기 인허가 상의 기간 지연 및 전문 인력의 부족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2등급 의료기기 기술문서 민간위탁 심사기관 지정공고」(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0-289호, 2010.12.30)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등 6개의 심사기관에서 2등급 의료기기 (현재 928개 품목, 전체 약 45%)에 대하여 제 3자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3.3 정책 기대효과

고령친화 의료기기산업은 세계적인 고령화추세에 맞춰 수출증대를 도모할 수 있고, 고령자의 삶의 질의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고령친화 의료기기 분야는 국제적인 분류도 없고, 고기술력을 요하는 분야라기보다는 맞춤형 소량 생산 체계로, 현재의 의료기기 기술력에 노인의 특성을 감안하여 IT, BT 등과 결합하고, 주거환경, 복지환경 및 생활시스템의 결합에 의하여 완성도를 높인다면 고령자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유지하면서도 고효율 저비용구조로 변환시킬 수 있어 보건의료개혁의 핵심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제6장 고령친화 용품산업

### 1. 개요 및 범위

#### 1.1 고령친화 용품산업의 범위

고령친화용품이란 ‘고령자를 대상으로 건강관리, 수발, 일상생활, 여가·문화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고령자의 정신적, 신체적 특성을 배려한 용품’을 말하며, 현재 고령친화용품관련 품목분류는 의료기기와 재활보조기구가 겹쳐있는 상태이다.

재활보조기구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과 보완 및 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보조기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 아직까지 고령친화용품은 건강한 노인보다는 일상생활 기능 저하 고령자를 위한 제품이 많기 때문에 장애인을 위한 용품은 재활보조기구가 혼동되어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의료기기는 전문의료인에 의해 진단, 치료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기로 고령친화용품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앞에서 논의한 고령친화용품의 정의에 의해 의료기기는 고령친화용품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의료기기 중에서 보청기, 혈당계, 혈압계, 환자운반차 분류에 속한 휠체어, 리프트, 개인용 전기자극기 등 주로 고령자 개인이 사용하는 용품은 고령친화용품으로 포함될 수 있으며 재활보조기구에 비해 겹치는 품목이 적다고 할 수 있다.

위의 사항을 고려해 볼 때 우선 고령친화용품 품목분류를 위해서는 재활보조기구, 고령친화용품과는 크게 구별되어지는 의료기기를 먼저 분류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령친화용품을 정의할 때 많은 품목이 장애인용 재활보조기구와 중복된 상태로 품목을 포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현재 고령친화용품이 신체가 건강한 고령자들 위주가 아닌 신체적 저하 기능이 있는 고령자들 위주의 용품이 활성화 되고 있기 때문에

재활보조기구와 고령친화용품이 각각 장애인과 고령자라는 서로 관점은 다르지만 중복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현재 고령친화용품산업의 범위는 아래 그림 및 표와 같다. 따라서, 고령친화용품은 고령자를 위한 개인건강·의료용품, 기능저하예방용품, 이동기기, 목욕용품, 배변용품, 침구용품, 가사용품, 주거설비용품, 정보통신기기, 여가용품을 포함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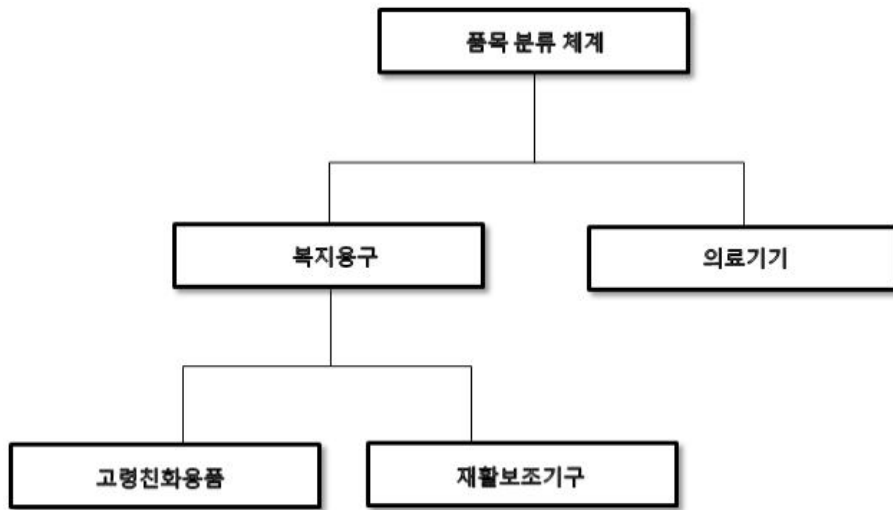


그림 II-6-1 고령친화용품관련 품목분류 체계

표 II-6-1 고령친화용품 품목분류

품 목	제 품
개인건강·의료용품	건강측정용품, 호흡기 치료용품, 투약용품, 욕창예방용품, 온열·한냉용품, 안마기, 자극기, 한방기기, 신발·의류, 신체보호용품
기능저하예방용품	유산소운동용품, 근력운동용품, 기능훈련용품, 근력 및 운동기능 측정용품
이동기기	한 손 조작 보행용품, 보행보조기, 복지차량,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변환용구, 리프트, 보행보조기 부속품, 휠체어 부속품, 자동차 개조용 부품
목욕용품	목욕보조용품, 기타 목욕 용품
배변용품	배변처리기, 기저위 용품, 화장실 용품
침구용품	침대, 매트리스·모포 및 베개, 침대용 탁자, 침대부품
가사용품	취사용품, 세척용품, 식사용품, 청소용품, 의류제작 및 수선용품, 탁자
주거설비용품	조명기구, 의자용가구, 수납가구, 가구높이조절장치, 안전손잡이, 문·창·커튼 개폐장치, 주택용 건축부품, 수직승강장치, 건축물용 안전장치
정보통신기기	시각용품, 청각용품, 발성용품, 그리기·글쓰기 용품, 전화기·통화용 기기, 신호표시기·경보기
여가용품	완구, 게임, 스포츠용품, 악기, 사진용품, 수공예용품, 애완용품

## 1.2 고령친화 용품산업의 특징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고령자의 복지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전반적인 고령친화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고령친화용품산업의 수준은 일본 및 미국 등의 고령친화복지 선진국에 비해 떨어지는 편이다.

고령친화용품산업은 고령자의 소비성향에 따른 소량다품종 산업으로서 중소기업에 맞는 산업으로 중소기업체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산업이다. 또한, 국내외 첨단기술(IT, BT, NT 등)과 결합한 융복합 기술산업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성장가능성이 큰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고령친화용품산업의 범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현재 고령친화용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가 되어 있지 않아, 정부에서 고령친화용품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에도 한계가 있고, 실태 조사에도 한계가 있어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

## 2. 시장분석

### 2.1 세계 시장 현황

#### 1) 일본

- 일본은 고령 사회에 대비해 이미 1980년대부터 고령친화산업에 박차를 가하여 고령친화 산업에 대해서는 세계의 벤치마킹 대상국이 되어왔다.
- 일본의 고령친화산업의 시장 규모는 2000년 38조엔(약 380조원), 2004년 60조엔(약 600조원)으로 늘어났고 2025년에는 120조엔(약 1250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고령친화용품의 규모를 살펴보면 고령친화용품 매출은 매년 10%의 성장을 기록하여 현재 약 39조엔의 시장 규모를 형성하였으며, 2025년에는 약 155조엔의 시장 규모를 형성할 예정이다.
- 품목별 경향은 개호보험제도와 2004년 6월에 제시된 개호보험제도의 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의해 현장의 복지용구 대여나 구매, 사용방법, 선택방법 등이 크게 변화되어 복지용구시장의 수급구조가 변화 되었다. 이용자 수요 증가와 그것에 대응하기 위한 대여 사업자 등의 재고 확보 등의 요인에 의해 수요가 확대 되었고, 구매대상 품목에는 고기능성

화, 고부가가치화 하는 방향으로 변화 되었다.

- 다음은 일본의 고령친화용품산업 시장동향과 연평균 신장률을 나타내었다. 영역C(사회참가지원기기)는 2000년에 비해 2004년에 44.9%(292억엔→423억엔) 성장하여 성장폭이 가장 컸고, 영역A(복지용구 등 포함)는 1.9% 성장(11,599억엔→11,821억엔)한 반면, 영역B(복지건설용기기시스템)은 31.2% 감소(77억엔→53억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6-2 복지용구산업 시장동향과 연평균 신장률

(단위 : 억엔)

분류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영역 A	11,599	11,787	11,817	11,788	11,821
복지용구	11,230	11,297	11,306	11,273	11,345
가정용치료기	1,071	1,062	1,167	1,162	1,162
의지, 장구	2,271	2,320	2,242	2,196	2,168
퍼스널 케어 관련	2,539	2,438	2,475	2,607	2,708
기저귀	860	801	828	923	1,021
입욕관련	231	215	244	268	274
배설관련	1,285	1,297	1,291	1,280	1,282
의류				64	70
기타	153	125	112	72	81
이동보조기기	997	1,104	1,104	1,086	1,062
지팡이, 보행기	58	56	64	68	70
휠체어	331	337	327	300	284
복지차량	582	684	686	695	687
리프트	26	27	27	23	21
가구, 건물	906	864	886	848	868
침대	533	492	486	476	500
흡엘리베이터	131	124	115	93	82
의자, 좌식유지장치				14	15
단차해소기	64	63	62	58	51
손잡이	77	93	109	115	121
기타				102	104
커뮤니케이션기기	2,921	2,998	2,900	2,809	2,849
안경	2,558	2,637	2,530	2,418	2,418
보청기	258	252	255	273	302
기타	95	109	115	118	120
주택등개호관련분야	491	482	500	529	502
기타	34	29	32	36	26
영역 B(복지건설용기기시스템)	77	63	64	63	53
영역 C(사회참가지원기기)	292	427	447	450	423

자료 : 고령친화제품 실태조사 및 초기시장 육성전략에 관한 연구. 건양대학교산학연구단, 2006.

## 2) 미국

- 미국에서는 복지용구를 ‘Assistive Technology Devices’라고 칭함. 1998년에 개정된 ‘복지용구에 관한 법률(Assistive Technology Act)’에 따르면, 복지용구란 장애인의 일상적인 생활 및 활동을 돕는 각종 도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팡이나 보행기 같은 낮은 수준(low-tech)의 제품에서부터 계단을 오르는 휠체어 같은 첨단 기술 수준(high-tech)의 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들이 망라되어 있다(Carlson 외, 2001).
- 연방정부의 교육부 산하 ‘국립 장애·재활 연구소’에서 작성한 보장구 분류체계에 따르면, 미국의 보장구 품목은 대부분 10종, 중분류 71종, 소분류 494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약 2,000여 개의 회사에서 약 18,000여 종에 이르는 다양한 보장구 품목들이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NIDRR, 2000; ABLEDATA, 2001).
- 미국의 복지용구 시장 현황을 보면, 2002년 기준 메디케어 보장구 시장규모는 98억 달러였고, 98년 이후 메디케어 총 지출 비중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표 II-6-3 2002년 메디케어 보장구 급여 실적

(단위 : 억 달러, %)

종류	급여액	구성비
지속적인 의료용 보장구(Durable Medical Equipment)	70	71
보조기구(Prosthetic Devices)	12	13
의지·보조기(Prosthetics & Orthotics)	9	9
기타 보조기구(Supplies)	7	7
계	98	100

자료 : CMS, Developments in Durable Medical Equipment(DME) Payment, 2002.

주 : 2002년 기준

## 2.2 국내 환경 변화

### 1) 법·제도

2006년 고령친화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이 제정되었고, 그 중 노인이 주로 사용하거나 착용하는 용구·용품 또는 의료기기가 해당된다. 이 법에 따라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제도 등을 운영하여 품질 향상을 꾀하고 있다. 2008년 7월에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어 16개 품목의 복지용구에 대한 구입 및 대여가 이루어져, 급여가 지원되는 품목에 한하여 활성화되고 있어, 다방면의 다양한 고령친화제품의 활성화는 이루





		10명 이하	11~20명	21~30명	31~40명	41~50명	50명 이하	결속	전체
충북	빈도	2	0	0	0	0	1	0	3
	%	1.2	0.0	0.0	0.0	0.0	0.6	0.0	1.8
충남	빈도	0	0	1	0	0	0	1	2
	%	0	0.0	0.6	0.0	0.0	0.0	0.6	1.2
전북	빈도	2	0	1	0	0	0	0	3
	%	1.2	0.0	0.6	0.0	0.0	0.0	0.0	1.8
전남	빈도	0	0	0	0	0	1	0	1
	%	0	0.0	0.0	0.0	0.0	0.6	0.0	0.6
경북	빈도	2	1	0	0	0	0	0	3
	%	1.2	0.6	0.0	0.0	0.0	0.0	0.0	1.8
경남	빈도	1	1	0	1	0	0	0	3
	%	0.6	0.6	0.0	0.6	0.0	0.0	0.0	1.8
전체	빈도	91	30	8	8	4	10	17	168
	%	54.2	17.9	4.8	4.8	2.4	6.0	10.1	100.0

자료 : 부산 TP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고령친화용품산업 실태조사 결과

- 고령친화용품산업체 168개의 제조, 유통, 판매, 수입, 수출 등 단계별 분포를 보면, 제조 129개 업체(76.8%), 유통 50개 업체(29.8%), 판매 121개 업체(72%), 수입 47개 업체(28%), 수출 40개 업체(23.8%)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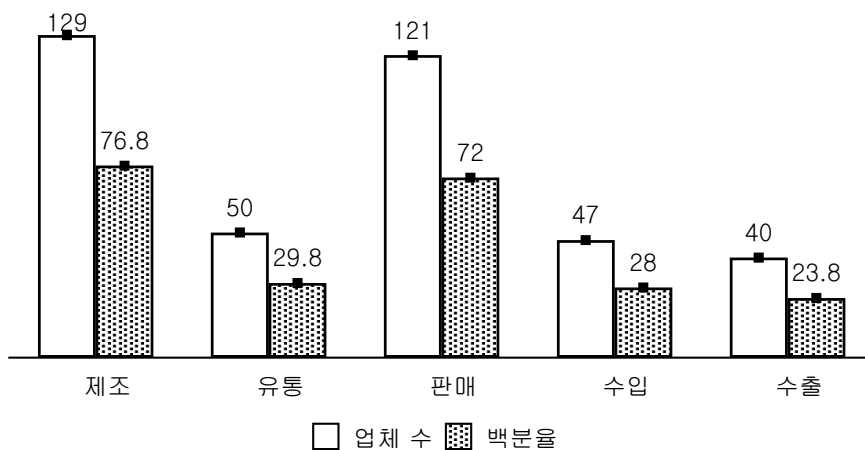


그림 II-6-2 사업범위의 빈도 및 백분율

자료 : 부산 TP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고령친화용품산업 실태조사 결과

- 168개 업체가 판매 또는 생산(수입)하는 제품을 중복으로 빈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개인 건강·의료용품을 판매 또는 생산하는 업체는 210곳으로 조사되었으며, 기능저하 예방용품은 28업체, 이동기기는 134업체, 목욕용품은 37업체, 배변용품은 46업체, 침구용품은 43업체, 가사용품은 6업체, 주거설비용품은 20업체, 정보통신기기는 16업체, 여가용품은 3업체, 기타물품은 16업체가 판매 또는 생산(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현재의 고령친화용품산업은 대부분이 노인들의 기능을 예방하는 차원의 제품보다는 기능상실 이후의 치료적 차원의 의료용품이나 휠체어 등 이동기기용품에 집중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고령자들을 위한 여가제품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개인건강·의료용품현황은 세부적으로 건강측정용품 38개, 호흡기 치료용품 9개, 욕창 예방용품 33개, 온열·한냉용품 25개, 안마기 44개, 자극기 17개, 한방기기 18개, 신발·의류 20개, 신체보호용품 6개로 나타났다.
- 기능저하 예방용품현황은 세부적으로 유산소 운동용품 8개, 근력운동 용품 12개, 기능훈련용품 6개, 근력 및 운동기능 측정용품 2개로 나타났다.
- 이동기기용품현황은 세부적으로 한 손 조작 보행용품이 22개, 보행보조기 32개, 보행보조기의 부속품 3개, 복지차량 6개, 수동휠체어 24개, 전동 휠체어 9개, 전동스쿠터 10개, 휠체어 부속품 11개, 자세변환용구 12개, 리프트 5개로 나타났다.
- 목욕용품 현황은 세부적으로 목욕 보조용품 37개로 나타났으며, 목욕 보조용품으로는 목욕의자, 목욕리프트 등을 들 수 있다.
- 배변용품 현황은 세부적으로 배변 처리기 16개, 기저귀 용품 11개, 화장실 용품 19개로 나타났다.
- 침구용품 현황은 세부적으로 침대 30개, 매트리스·모포 및 배게 13개로 나타났다.
- 가사용품 현황은 세부적으로 세척용품 2개, 식사용품 3개, 청소용품 1개로 나타났다.
- 주거설비용품 현황은 세부적으로 의자용 가구 3개, 수납가구 1개, 가구높이 조절장치 1개, 안전손잡이 9개, 주택용 건축부품 1개, 건축물용 안전장치 5개로 나타났다.
- 정보통신기기 현황은 세부적으로 시각용품 7개, 청각용품 7개, 전화기·통화용기기 1개, 신호표시기·경보기 1개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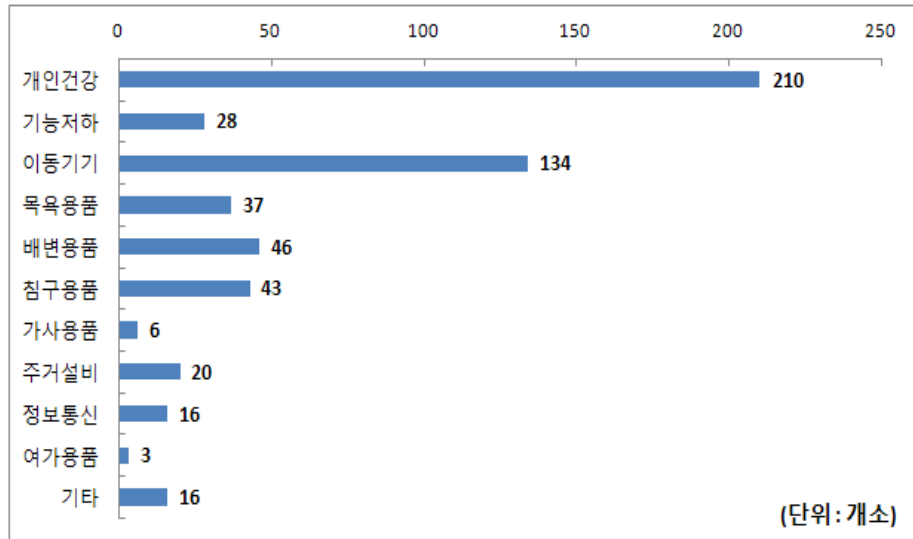


그림 II-6-3 고령친화용품산업체의 제품 현황

자료 : 부산 TP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고령친화용품산업 실태조사 결과

- 명확한 품목분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각 해에 적용되는 품목의 차이에 따라 변수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2009년에 비해 고령친화용품산업의 발전된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표 II-6-5 고령친화용품 총 생산 및 수입 현황(168개 조사 대상 업체 기준)

(단위 : 백만원)

품목	2009년			2010년		
	총 생산액	총 수입액	합계	총 생산액	총 수입액	합계
개인건강·의료용품	5,313	363	5,676	115,569	14,325	129,894
기능저하 예방용품	1,135	31	1,166	3,111	100	3,211
이동기기	540	148	688	57,987	1,909	59,895
목욕용품	122	43	165	12,654	457	13,110
배변용품	1,519	95	1,614	22,640	526	23,166
침구용품	474	4	479	5,358	3	5,361
가사용품	286	4	290	0	8	8
주거설비 용품	42	6	48	65,227	15	65,242
정보통신 기기	587	70	657	2,180	354	2,534
여가용품	11	2,683	2,695	16	44	60
기타용품	-	-	-	13,169	181	13,350
합계	10,029	3,448	13,477	297,910	17,922	315,832

자료 : 부산 TP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고령친화용품산업 실태조사 결과

## 2.3 국내 시장규모 및 전망

### 1) 시장규모 분석 방법

#### 가. 기준연도 시장규모 추정 방법

고령친화용품산업의 시장규모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자료원으로 고령친화용품산업실태조사(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 시장규모 분석을 위한 자료로 이용하였다.

아래 표는 설문조사를 통한 168개 업체의 매출(판매+수출)액이다.

표 II-6-6 설문조사에 따른 업체의 매출액 현황(2009년 기준)

(단위 : 원)

품목	총 판매액	총 수출액	합계
개인건강·의료용품	125,077,443,371	60,912,540,311	185,989,983,682
기능저하 예방용품	1,576,171,500	1,085,360,000	2,661,531,500
이동기기	14,093,326,683	109,000,000	14,202,326,683
목욕용품	2,651,810,400	0	2,651,810,400
배변용품	9,187,644,750	2,860,000,000	12,047,644,750
침구용품	4,315,063,594	700,000,000	5,015,063,594
가사용품	7,000,000	0	7,000,000
주거설비 용품	54,461,750,000	0	54,461,750,000
정보통신 기기	2,070,902,960	3,700,000,000	5,770,902,960
여가용품	64,000,000	0	64,000,000
기타용품	13,200,000,000	1,952,000,000	15,152,000,000
합계	226,705,113,258	71,318,900,311	298,024,013,569

자료 : 부산 TP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고령친화용품산업 실태조사 결과, 2010

위의 자료를 토대로 현재 고령친화산업의 시장규모와 미래시장 추정을 위해서 신뢰구간 및 모집단의 규모추정을 위해서 아래의 근거로 산출하였다.

- ① 모집단의 분산을 모르는 상태에서 표본크기가 충분히 크다면 중심극한정리에 의하여 근사적으로 표준정규분포에 따르게 되며 표본표준편차는 모집단표준편차를 대신할 수 있는 추정량의 역할을 하여 신뢰구간을 추정할 수 있다.

- ② 하지만 품목별 모집단 평균 추정치는 표본크기가 충분히 크지 못하므로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이룬다는 가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때 표본통계량은 정규분포가 아니라 자유도 n-1의 t분포(student's t distribution)를 따르게 된다.
- ③ 이에 따라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이룬다고 가정하고 95%의 신뢰구간을 설정하여 모평균의 생산액, 수입액, 국내 판매액, 수출액에 대해 산출하였다.
- ④ 최대, 최소값 : 신뢰구간 95% 범위 내 값임. 최소~최대값 범위 내에 전체 95%업체들이 랜덤으로 추출했을 때 포함되는 최소, 최대값을 나타냈다.

회수된 설문지는 168개이지만 본 협회가 조사하여 고령친화용품산업에 종사하는 업체는 631개이므로 631개를 유한모집단으로 산정하였고, 비록 협회의 조사범위를 벗어나 누락된 업체가 있을 수 있으나 바람직한 규모추정을 위하여 631개를 모집단으로 산정하였다. 168개 업체의 관리 품목이 총 559개이므로 유한모집단 631개 업체의 경우는 총 2,100개의 품목에 종사하는 것으로 예측하였다.

## 나. 시장규모 전망(예측) 방법

- 고령친화용품산업의 미래시장 규모를 추정하고자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결과 중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수와 고령친화용품산업체 매출액을 활용하여 전망하였다.
- 기준연도 고령친화용품산업체 매출액은 신뢰구간 95%의 구간추정량의 중위값을 적용하였으며, 미래시장규모는 2009년 기준 고령친화용품 산업규모에 노인인구증가율을 곱한 것으로 산출하였다. 미래시장 규모액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순현재가치(NPV)로 추정하였다.

## 2) 시장규모 추정 및 예측 결과

### 가. 기준연도 시장규모 추정 결과

- 이에 따른 고령친화용품산업의 시장규모(총 매출액)의 추정결과는 아래와 같다.
- 2009년 고령친화용품산업의 총 매출액의 구간추정은 95% 신뢰구간에서 최소값 834,008,617,769원, 최대값 2,993,314,225,603원으로 조사되었으며, 구간추정의 중앙값은 1조 9천억 원(1,913,661,421,686) 수준으로 추정된다.

표 II-6-7 2009년 고령친화용품산업 시장규모

(단위 : 백만 원, %, 개소, 개)

품목	비율	업체수	품목수	최소값	최대값
개인건강·의료용품	37.56%	237	789	476,473	1,761,033
기능저하 예방용품	5.00%	32	105	3,580	19,700
이동기기	23.97%	151	503	40,482	210,554
목욕용품	6.61%	42	139	4,522	27,874
배변용품	8.22%	52	173	52,173	165,917
침구용품	7.69%	49	162	7,082	45,511
가사용품	1.07%	7	23	174	279
주거설비 용품	3.57%	23	75	119,305	323,877
정보통신 기기	2.86%	18	60	15,998	43,821
여가용품	0.53%	3	11	443	924
기타용품	2.86%	18	60	113,776	393,825
합계	100%	631	2,100	834,009	2,993,314

자료 : 부산 TP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고령친화용품산업 실태조사 결과, 2010

○ 2009년 고령친화용품산업 전략품목의 총 매출액의 구간추정은 95% 신뢰구간에서 최소값 4,805억 원, 최대값 1조 7,817억 원으로 추정되었으며, 구간추정의 중앙값은 1조 1,188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표 II-6-8 2009년 고령친화용품산업 전략품목 시장규모

(단위 : 백만 원, %, 개소, 개)

품목	비율	업체수	품목수	최소값	최대값
개인건강·의료용품	37.6%	237	789	476,473	1,761,033
기능저하 예방용품	5.00%	32	105	3,580	19,700
여가용품	0.53%	3	11	443	924
전략품목 합계	-	-	-	480,496	1,781,657
합계	-	-	-	834,009	2,993,314

자료 : 부산 TP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고령친화용품산업 실태조사 결과, 2010

#### 나. 시장규모 전망(예측) 결과

○ 앞에서 설명한 방법을 활용하여 향후 고령친화용품산업 시장규모를 추계하여 본 결과, 추정된 고령친화용품산업 시장규모는 2015년 2조 3,347억 원, 2020년 2조 8,32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표 II-6-9 고령친화용품산업 시장규모 전망(예측)

(단위 : 천명, 백만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5년	2020년
65세 이상	5,193	5,357	6,381	7,701
노인인구증가율	1	1.03	1.22	1.48
시장규모	1,913,661	1,971,071	2,334,666	2,832,218

자료 : 부산 TP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고령친화용품산업 실태조사 결과, 2010

주 : 자료의 결과는 2009년 기준 중위값을 이용하여 추정함

### 3. 전략품목 및 지원정책

#### 3.1 전략품목 선정

##### 1) 선정기준

고령친화 용품산업은 전체 고령친화용품을 크게 10가지 품목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토대로, 고령자 대상 수요조사 결과, 시장매력도, 국제경쟁력, 기타 측면(기호성, 편의성 등) 등 4개 선정기준을 가지고 선정하였다. 선정기준별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시장매력도, 기술경쟁력, 기타 측면(기호성, 편의성 등) 등 3가지 분야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적으로 수요조사 결과 및 3개 선정기준에 대해 4점척도를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상위 품목을 전략품목으로 선정하였다.

표 II-6-10 고령친화 용품산업 전략품목 선정기준

기준	내용
수요조사 결과	• 중고령자가 노후에 가장 구매하고 싶은 고령친화제품으로 선택한 비율을 적용(1+2순위 기준) 30% 이상 : 4점, 20% 이상~30%미만 : 3점, 10%이상~20%미만 : 2점, 10%미만 : 1점
시장매력도	• 시장매력도 : 시장성장률과 시장의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
기술경쟁력	• 국제경쟁력 : 해외수출을 감안하여 해외에서 선진업체와 경쟁했을 때 국내기업의 경쟁력 정도
기타	• 향후 건강한 노인을 위한 다양한 제품 등 용품산업의 기호성, 편의성 등의 정도

※ 척도 : ×낮음(1), △보통(2), ○높음(3), ◎매우 높음(4)



## 2) 전략품목 선정

고령친화 용품산업의 전체 10개 품목에 대하여 고령자 대상 수요조사 결과, 시장매력도, 국제경쟁력, 기타 등 4가지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종합점수가 10점 이상인 경우를 전략품목으로 선정하였다. 전략 품목으로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는 품목은 개인건강·의료용품, 기능저하예방용품, 여가용품 등 3개 품목이다.

표 II-6-11 고령친화 용품산업의 전략품목 선정

품목	수요조사	시장 매력도	기술 경쟁력	기타	종합평가	
					점수	판정
개인건강·의료용품	○	◎	◎	△	13	전략품목
기능저하예방용품	◎	△	○	○	12	전략품목
이동기기	×	○	△	△	8	-
목욕용품	×	△	△	△	7	-
배변용품	×	△	○	△	8	-
침구용품	△	△	△	△	8	-
가사용품	△	×	×	△	6	-
주거설비용품	△	×	×	△	6	-
정보통신기기	△	×	○	△	8	-
여가용품	×	△	○	◎	10	전략품목

※ 척도 : ×낮음(1), △보통(2), ○높음(3), ◎매우 높음(4)

개인건강·의료용품은 건강치료 용품, 호흡기 치료용품, 욕창예방용품, 온열·한냉용품, 안마기, 자극기, 한방기기, 신발·의류 등으로써 현재 국내 시장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상대적으로 수출량도 많고, 노인의 건강 관심도 증가와 더불어 향후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이 예측된다.

기능저하예방용품은 활동적인 고령자가 많아지게 되고 지속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 증가로 고령자들에게는 필수 품목이 될 것이다. 또한, 신체의 기능저하 문제를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므로 지속적인 성장성이 예측된다.

여가용품은 ‘2026년 기준 65세 이상 전체 가구의 20.8 %’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통계청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참조), 베이비붐 1세대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그에 대한 요구도가 증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고령화가 먼저 시작된 일본의 경우에도 다양

한 여가제품이 개발되어 판매 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고령친화 여가용품이 많지 않은 상태여서, 거동이 불편하지 않고 활동적인 새로운 개념의 고령자세대를 위한 다양한 여가 제품을 개발할 필요가 높다고 하겠다.

## 3.2 제약요인 및 정책과제

### 1) 제약요인

고령친화용품산업의 활성화가 필요한 이유는 급속하게 증가하는 고령자의 고령친화용품 수요에 맞게 대처하기 위함이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산업에 대한 품목분류가 이루어지고 대분류 속에 중분류 및 소분류에 따른 실태조사를 통하여 품목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용품의 안전을 위한 표준개발, 산업체의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현재 고령친화용품은 성격 상 재활보조기구, 의료기기와 겹쳐지는 부분이 있으며, 의료기기와는 분류가 쉽지만 재활보조기구와는 분류가 어렵다. 이는 고령친화용품에 대한 인식이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위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고령친화용품에 대한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1차적으로 필요한 품목분류가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부분이 가장 큰 제약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다. 고령친화용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하려해도 어려운 실정이며 이와 마찬가지로 고령친화용품의 수출 및 수입에서도 명확한 품목분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각기 다른 HS 코드가 사용되고 있어 실태조사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또한, 고령친화용품 개발에 있어 현재 고령친화용품산업 참여기업들의 평균 자본금이 1.03억 원에 불과할 정도로 영세해 R&D 투자가 취약하다는 점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품목에 대하여 고령친화용품 산업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하여 상품 개발 후 품목 허가까지 장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상용화가 지연되고 있다.

또한, 품질 표준인증이나 표준화 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민간의 시장 진입이 어려운 상태이다.

### 2) 정책과제

먼저 고령친화용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고령친화용품산업에 대한 품목분류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정책지원 사업의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고령친화용품에 대한 품목분류가 명확해진 후에 나오는 실태조사를 통하여 정부지원 확대 방향,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방

향 및 베이비붐 1세대의 대거 은퇴에 따른 대책 방향 등이 명확해질 것이다.

정부지원의 확대 방향이 정해지면 현재 고령친화용품산업에 대한 R&D가 취약한 고령친화용품산업 참여기업들이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실버산업기술연구조합 등의 관련 기관을 이용해 제품 R&D를 주도하고 전파함으로써 참여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다. 고령친화용품 산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 시장규모가 작다는 것은 타 산업의 제품과는 달리 주요 소비자가 고령자 등 일부 계층에 국한되기 때문이며 수요가 비교적 증가한다는 것은 주 고객인 고령자의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고령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지속되는 것이고, 고령친화용품의 특성상 경기변동에 민감하지 않으므로 경기가 나쁘다고 구입하지 않는 제품은 아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관련 업체들이 고령자들의 일상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고령친화용품을 생산하고, 새로운 과학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동시에 관련 정부부처는 양질의 고령친화용품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개발하는 등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고령친화용품 산업체의 R&D 개발 시 고령자의 안전을 고려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표준개발을 해야 할 것이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증제도 및 정책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표 II-6-12 고령친화 용품산업 정책과제

정책지원
(1) 고령친화용품산업 품목분류 및 실태조사
- 고령자의 특성을 반영한 고령친화용품 품목분류 조사·연구
- 품목분류에 따른 고령친화용품 산업체의 실태조사
- 정책 및 제도 개선 : 정부지원 확대 방향, 전문인력의 양성 등
(2) 고령친화용품산업 R&D 지원
- 실태조사를 통한 정부지원 R&D 방향 도출
(3) 고령친화용품 표준 개발
- 실태조사를 통한 표준개발 우선 품목 선정
- 관련기관의 고령자의 안전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표준 개발
- 표준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정책 지원(ISO 표준 등록)

### 3.3 정책 기대효과

고령친화용품산업은 고령화 진전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핵심 산업중 하나로서 수출 등을 주도할 것이다. 또한 수출 기여 뿐만 아니라 고령자의 보조적 동반자로서 행복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앞으로 건강하고 경제력 있는 노인을 위한 다양한 제품 개발 및 세계 고령친화제품 표준화를 통해 블루오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 제7장 고령친화 금융산업

### 1. 개요 및 범위

#### 1.1 고령친화 금융산업의 범위

고령친화 금융산업은 인구의 고령화에 대응하여 개인 금융자산의 축적과 관리를 통해 노후소득의 안정적 흐름을 유지하는 금융서비스 전반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고령친화 금융산업의 범위는 고령자 계층이 안게 될 리스크인 생존리스크, 건강리스크, 재무리스크를 중심으로 설정될 수 있다. 생존리스크 관리와 관련해서는 노후소득 마련을 위한 개인연금, 역모기지 제도 등의 금융상품 및 서비스가 포함된다. 건강리스크 관리와 관련해서는 건강보험, 장기간병보험 등의 금융상품 및 서비스가 포함되고 재무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자산관리를 위한 금융서비스가 포함된다.

고령친화 금융산업은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된 선진국에서는 상당한 발전이 있으나 우리나라는 개인연금과 퇴직신탁/보험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금융상품은 아직 크게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급속한 고령화로 미래 성장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표 II-7-1 고령친화 금융산업의 범위

구분	사회보험	고령친화 금융산업
장수리스크	국민연금, 특수지역연금	개인연금(즉시연금보험 포함), 퇴직연금, 역모기지 제도
건강리스크	국민건강보험, 노인요양보험	건강보험(암보험, 상해보험 포함), 장기간병보험
재무리스크	기초노령연금	자산관리서비스(PB, WA, FP)

주 : PB = Private Banking, WA = Wrap Account, FP = Financial Planning

## 1.2 고령친화 금융산업의 특징

고령친화 금융 상품 및 서비스는 미래의 부담을 일시에 지지 않기 위해서 장기간에 걸쳐 준비되어야 하는데, 노후를 위해 자산축적을 하는 30-50대층과 노후소득관리 서비스를 받는 60대 이상층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고령친화 금융 상품 및 서비스는 정부가 사회보장제도 등을 통해 보장하는 기본적인 수준에 추가하여 개인의 필요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며, 사회보장제도와 달리 민영보험 및 금융의 원리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형평성의 원리보다는 효율성 및 수익성의 원리가 중시된다. 또한 일반 제조업처럼 일부 상품 또는 서비스만 수출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으며, 별도의 법인 또는 지점의 설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특성이 있다.

고령친화 금융산업은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닌 본인의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생활의 영위를 위한 종합적인 해결책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해결책들은 사회보장연금, 연금, 연금보험, 주식, 채권, 장기요양보험, 역모기지, 예금증서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중년기에 있어서 재정적 심리에 대한 다양한 장수의 영향들, 중년기의 자식들과 그들 부모의 인구학적 요소, 노화에 대한 생물학, 심리학, 사회학과 건강, 재정적, 법적, 윤리적인 주제에 대한 상호연결, 건강과 장기요양에 대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에 대한 선택, 그리고 장수에 대한 재정적 준비와 미래 수입에 대한 현재 자산의 전환 전략 등의 다양한 변수들을 확인하고, 금융기관들은 미래 고객들에 대한 심층적인 지식(생물학적, 심리적, 사회학적, 인구학적)을 학습함으로써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가야 한다.

고령친화 금융산업은 은퇴 및 보험 금융시장에서 여러 성장동력 요인을 가지고 있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자산관리 니즈가 증대되고 있으며, 고령자 간병 관련 민영보험 및 리스크 관리 사업 확대 등 확대일로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 2. 현황분석

### 2.1 세계 시장 변화

- 우리나라의 경우 연금을 포함한 공공지출 의존도가 낮기 때문에 공공지출 10% 감축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노인빈곤 인구 비중은 0.7%로 크지 않다. 그런데 우리나라 노인빈곤률은 36.2%로 멕시코 또는 미국보다 높기 때문에 사회복지 수요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수요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표 II-7-2 공공지출(10%) 감축과 노인빈곤률<sup>1)</sup> 증가

(단위 : %)

구분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한국	멕시코	스페인	영국	미국
빈곤률증가 <sup>2)</sup>	5.9	5.3	2.8	6.2	3.3	2.9	0.7	0.6	4.1	5.8	3.0
노인빈곤률	20.9	8.9	8.1	9.8	10.7	22.0	36.2	25.5	22.6	15.4	22.4

주 : <sup>1)</sup> 상대빈곤률(50% 기준), 건강보험은 제외함

<sup>2)</sup> 공공지출 10% 감축으로 인하여 빈곤층에 포함되는 노인인구 비중임

자료 : CSIS(2010)

- 2008년 국가별 생명보험료는 미국이 8,107억 달러로 가장 많았으며, 일본 3,405억 달러, 영국 2,828억 달러, 프랑스 1,788억 달러 순이었다.
- 손해보험료의 경우 미국이 8,094억 달러로 가장 많았으며, 영국 1,169억 달러, 프랑스 990억 달러, 일본 875억 달러 순이었다.
- 한편 우리나라의 생명보험료는 676억 달러로 가장 적었으며 손해보험료는 383억으로 오스트레일리아 265억 달러 다음으로 많았다.

표 II-7-3 국가별 보험료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국가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생명보험	손해보험	생명보험	손해보험	생명보험	손해보험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국	60,026	27,902	69,819	35,349	79,382	40,387	67,581	38,316
일본	257,345	86,040	238,635	83,134	270,356	81,052	340,530	87,519
미국	607,056	805,025	527,483	863,895	778,804	813,994	810,715	809,351
프랑스	157,138	78,380	180,293	112,255	187,155	125,817	178,805	98,979
영국	230,788	127,676	256,635	122,338	423,783	133,419	282,776	116,853
오스트레일리아	28,113	21,497	29,571	21,723	41,482	25,479	38,847	26,527

자료 :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국제통계, 국제기구 회원국별 통계, APEC 재정통화금융, 보험료

-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구성은 부동산 비중 80%로 타 국가들에 비하여 높았으며,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선진국 가계는 이보다 낮은 자산의 40~60%를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일반적으로 가계가 다른 자산보다 부동산을 선호하는 이유는 주거서비스에 대한 효용이 높고 투자리스크 분산 등에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표 II-7-4 한국·일본·미국 가계의 자산구성비 비교

(단위 : %)

자산종류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금융자산	20	57	43	42	48	62
비금융자산	80	43	57	58	52	38

주 : 한국은 2006년, 다른 나라는 2003년 자료임  
 자료 : 이상호(2010); IMF(2005)

- 일본가계의 자산구성은 1990년대 61%에서 2000-2003년 44%로 부동산 보유비중이 줄어든 반면 유동성이 크고 안전한 자산(예·적금)과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자산(연금 및 보험)의 비중은 늘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7-5 일본가계의 자산구성 추이

(단위 : %)

자산종류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2003년
비금융자산	66	65	61	44
금융자산				
• 주식·채권	10	10	12	10
• 예·적금	21	21	17	27
• 연금·보험	3	4	10	19

자료 : IMF(2005)

- 우리나라의 실물자산과 금융자산의 비중은 각각 78.6%, 21.4%로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실물자산에 집중되어 있었다.

표 II-7-6 자산 중 실물자산과 금융자산의 비중

(단위 : %)

국가	한국	미국	영국	일본
기준년	2010년	2010년 2/4	2009년	2008년
실물자산	78.6	35.1	54.8	41.3
금융자산	21.4	64.9	45.2	58.7

자료 : 1. 한국을 제외한 국가는 금융투자협회(2011), 주요국 가계금융자산을 비교함  
 2. 한국은 통계청, 가계금융조사



○ 주요국 가계의 금융자산 구성에서 노후대비와 관련이 높은 보험 및 연금의 경우 우리나라는 24.2%에 그치고 있는 반면 미국은 29.5%, 일본은 27.2%, 영국은 54.4%로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II-7-7 주요국 가계 금융자산의 구성

(단위 : %, 배)

자산종류	한국	미국	영국	일본
현금·예금	46.6	14.7	28	55.8
보험·연금	24.2	29.5	54.4	27.2
금융투자상품	28.4	52.0	13.9	12.9
기타	0.7	3.7	3.6	4.0
20~64세인구/65세이상인구	6.0	4.6	3.6	2.6

주 : 1. 원 자료는 한국 통계청, 미 FRB, 영국 통계청, 일본은행  
 2. 영국(2010. 1/4)을 제외한 모든 국가는 2010. 2/4분기 기준임  
 3. 20~64세 인구/65세 이상 인구는 2010년 기준(OECD 추계)  
 자료 : 금융투자협회(2011)

○ 사적연금가입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캐나다로 전체에서 65%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독일(63%), 미국(56%), 아일랜드(52%) 순이었으며, 포르투갈(5%)의 가입률이 가장 적게 나타났다.

표 II-7-8 사적연금가입률의 국제비교

(단위 : %)

구분	사적연금가입률
캐나다	65
독일	63
미국	56
아일랜드	52
영국	51
노르웨이	45
일본	45
벨기에	45
스페인	40
체코	40
오스트리아	40
헝가리	31
슬로바키아	27
룩셈부르크	22.5
뉴질랜드	20
핀란드	20
이탈리아	9
포르투갈	5

주 : 사적연금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합계임

- GDP 대비 사적 연기금 자산비율에서 네덜란드, 아이슬란드, 스위스는 사적 연기금이 GDP를 훨씬 상회하고 있었으며, 미국, 호주, 아일랜드 등도 사적 연기금이 GDP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었다.

표 II-7-9 GDP 대비 사적 연기금 자산비율

(단위 : %)

구분	자산비율
네덜란드	124.9
아이슬란드	123.2
스위스	117.4
미국	98.9
영국	70.1
호주	58
아일랜드	52.8
덴마크	33.6
일본	18.8
스웨덴	14.5
포르투갈	12.9
뉴질랜드	11.3
폴란드	8.7
헝가리	8.5
노르웨이	6.8
한국	5.6

주 : 우리나라는 2008년 말 기준임  
 자료 : OECD(2009b)

## 2.2 국내 환경 변화

### 1) 고령자 금융 및 노후준비 현황

- 60세 이상 가구주 대상 생활비(용돈) 마련 방법으로는 본인 및 배우자 부담이 6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자녀 또는 친척지원이 31.4%, 정부 및 사회단체가 8.6% 순이었다.
- 생활비(용돈) 마련 방법으로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한 본인 및 배우자 부담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56.2%로 가장 많았으며 연금, 퇴직금이 24.5%, 재산소득 13.3%, 예금(적금)이 6.1%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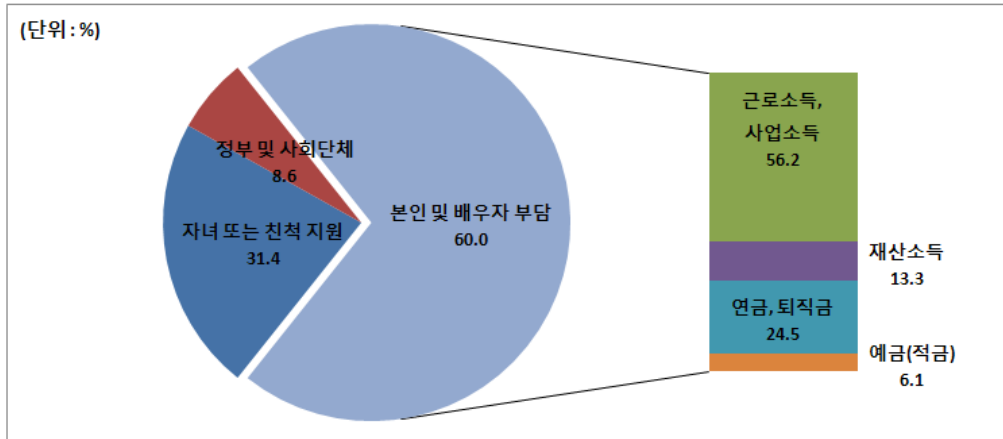


그림 II-7-1 60세 이상 가구주 대상 생활비(용돈) 마련 방법(2009년)

자료 :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보건/사회/복지, 사회조사 자료

- 동부의 60세 이상 가구주 대상 생활비(용돈) 마련방법은 본인 및 배우자 부담이 58.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중 근로소득이 48.3%였다. 그다음으로 자녀 또는 친척 지원이 33.2%, 정부 및 사회단체가 8.4%, 기타가 0.1% 순이었다.
- 읍면부의 경우도 동부와 마찬가지로 본인 및 배우자 부담이 63.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근로소득은 무려 73.0%로 재산소득, 연금 퇴직금, 예금(적금)의 비율보다 월등히 높았다.

표 II-7-10 60세 이상 가구주 대상 생활비(용돈) 마련 방법(2009년)

(단위 : %)

	총합	본인 및 배우자 부담				자녀 또는 친척 지원	정부 및 사회단체	기타
		근로소득	재산소득	연금, 퇴직금	예금(적금)			
동부	58.3	48.3	16.8	27.9	7.1	33.2	8.4	0.1
읍면부	63.9	73.0	5.8	17.1	4.0	27.1	9.0	-

자료 :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보건/사회/복지, 사회조사 자료

- 가구주 연령별 노후준비의 여부에서 준비하고(되어)있음의 응답률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30~39세로 87.5%였고, 40~49세와 50~59세도 80%대의 응답률을 보였다.
- 한편 준비하고(되고) 있지 않음의 응답률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65세 이상 고령자그룹으로 57.8%였으며, 60세 이상은 49.4%로 준비하고(되어) 있음의 비율과 큰 차이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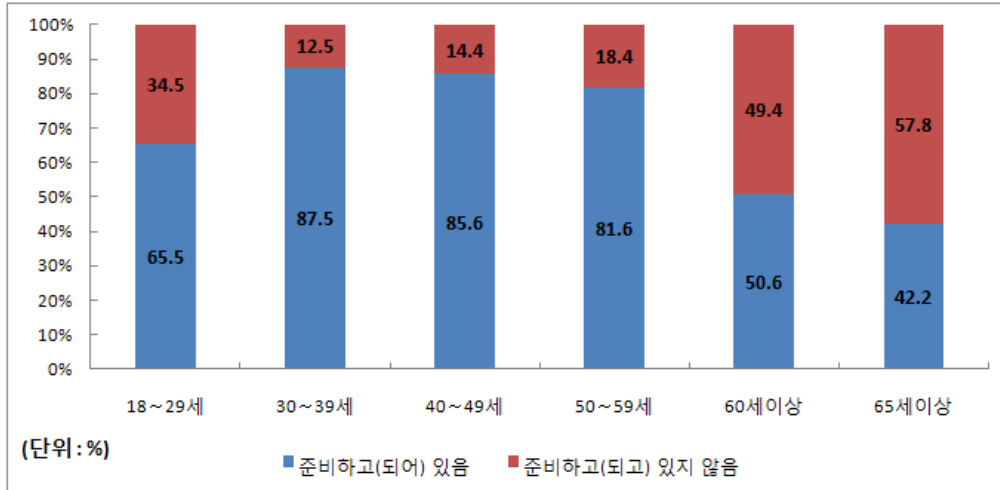


그림 II-7-2 가구주 연령별 노후준비 여부(2009년)

자료 :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보건/사회/복지, 사회조사 자료

○ 65세 이상 가구주의 노후준비 방법은 국민연금이 31.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예금/적금/저축성보험이 25.9%, 부동산 운용 14.2%, 기타 공적연금 11.9%, 사적연금 11.1%, 기타 5.6%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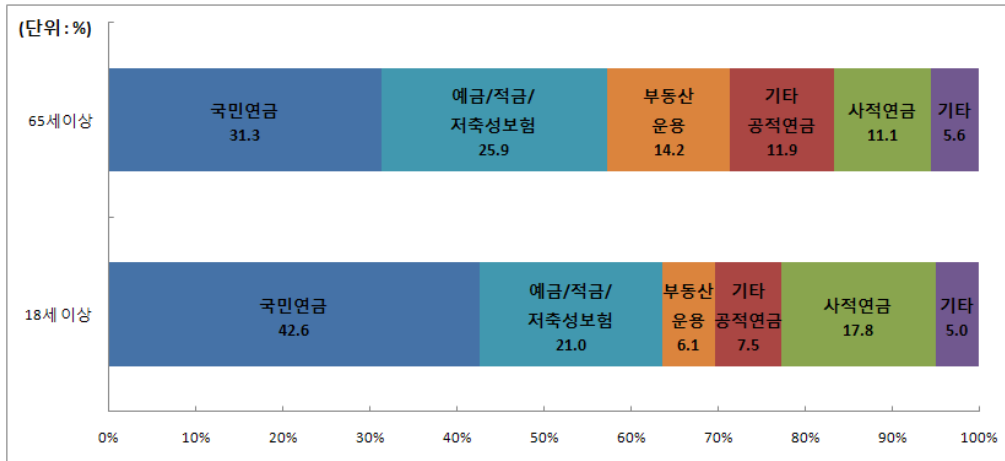


그림 II-7-3 65세 이상 가구주의 노후준비 방법(2009년)

자료 :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보건/사회/복지, 사회조사 자료

주 : 1. 노후를 준비하고(되어) 있다고 응답한 가구주 대상임

2. 비중이 작은 퇴직금, 주식, 채권 등은 기타에 포함됨

- 가구주 연령별 노후 준비에 대한 생각을 준비 능력 부족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49.5%로 가장 많았고, 앞으로 준비할 계획이 25.7%, 자녀에게 의탁이 16.3%,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음이 8.6%로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하였다.
- 연령별로 살펴보면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높은 그룹은 18~29세로 35.6%였고, 앞으로 준비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그룹은 30~39세, 40~49세로 각각 59.2%, 47.7%를 나타냈다.
- 한편 준비능력이 부족하다고 답한 비율이 높은 연령대는 50~59세의 차기고령자와 60세 이상, 65세 이상으로 50%대의 응답률을 기록하였다.

표 II-7-11 가구주 연령별 노후준비에 대한 생각(2009년)

(단위 : %)

	전체	18~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65세이상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음	8.6	35.6	12.6	9.2	5.7	3.6	2.6
앞으로 준비할 계획임	25.7	47.9	59.2	47.7	32.9	5.0	3.6
준비 능력 부족	49.5	16.5	27.8	42.2	57.4	59.7	59.5
자녀에게 의탁	16.3	-	0.4	0.9	3.9	31.6	34.2

자료 :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보건/사회/복지, 사회조사 자료

주 : 노후를 준비하고(되어) 있지 않음에 응답한 가구주 대상임

- 상위 5대 기업의 수익성 지수에서 매출액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08년 246조 원에서 2009년 158조 원으로 감소하였다.
- 영업이익은 2006년 75억 원에서 117억 원으로 42억 원이 증가하였다가 2008년부터는 급격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매출액영업이익률은 2007년에 14.9%로 가장 높았으며 영업이익과 마찬가지로 2008년에 2.2%로 급격히 감소하였다가 2009년 0.2%p 소폭 상승하였다.

표 II-7-12 금융 및 보험업 수익성 지수(상위 5대 기업)

(단위 : 십억원, 백만원, %)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매출액	48,067	61,671	78,848	245,922	158,485
영업이익	6,661	7,536	11,722	5,309	3,765
매출액영업이익률	13.9	12.2	14.9	2.2	2.4

자료 : 산업연구원 통계포털(ISTANS), 산업별 통계 자료

- 사회적 보호서비스에 대한 욕구조사에서 받고 싶다는 응답이 81.7%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받고 싶은 복지 서비스로 35.6%가 건강검진을 꼽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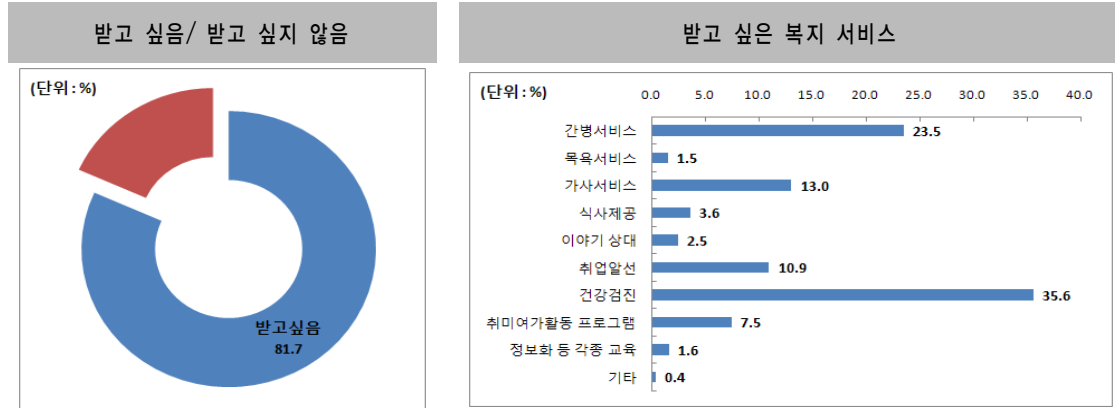


그림 II-7-4 사회적 보호서비스에 대한 욕구(주된 응답)(2009년)

자료 :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보건/사회/복지, 사회조사 자료  
 주 : 60세 이상 인구 대상임

-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은 49.4%로 2008년 대비 0.6% 감소하였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40-49세로 65.8%였으며, 그 뒤를 20-29세가 62.4%로 잇고 있다. 이는 지난 10동안 지속되어온 것으로 판단된다.
- 한편 60-64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2-2004년에 3%가 감소한 이후로 2006년 소폭 상승한 것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65세 이상 최근에 21.7%로 2008년 대비 하락세가 있었지만 그동안 소폭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7-13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

(단위 : %)

	2000년	2002년	2004년	2006년	2008년	2010년
여성 전체	48.8	49.8	49.9	50.3	50.0	49.4
15 - 19세	12.6	11.9	11.1	8.9	7.5	8.5
20 - 29세	58.4	61.1	63.3	63.5	62.7	62.4
30 - 39세	54.1	54.6	54.5	56.4	56.1	55.3
40 - 49세	64.3	64.0	64.2	65.0	65.8	65.8
50 - 59세	53.5	54.3	53.2	54.7	57.1	57.9
60 - 64세	46.1	46.4	43.4	43.8	42.3	41.5
65세 이상	22.8	23.0	22.2	22.7	22.9	21.7

자료 :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고용/노동/임금,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 경제활동인구(공식 실업률, 구직기간 4주 기준) 기준임

- 조사결과에 따르면, 베이비붐세대는 주 소득원, 직장, 사회활동 중 한 가지가 소멸될 경우 본인의 은퇴로 인식한다고 답변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응답자의 직종별로 다소 차이가 있어 사무직 종사자의 경우 ‘직장에서 물러나는 시점’(47.9%)을 자영업자의 경우 ‘주 소득원이 없어지는 시점’(47.4%)을 은퇴로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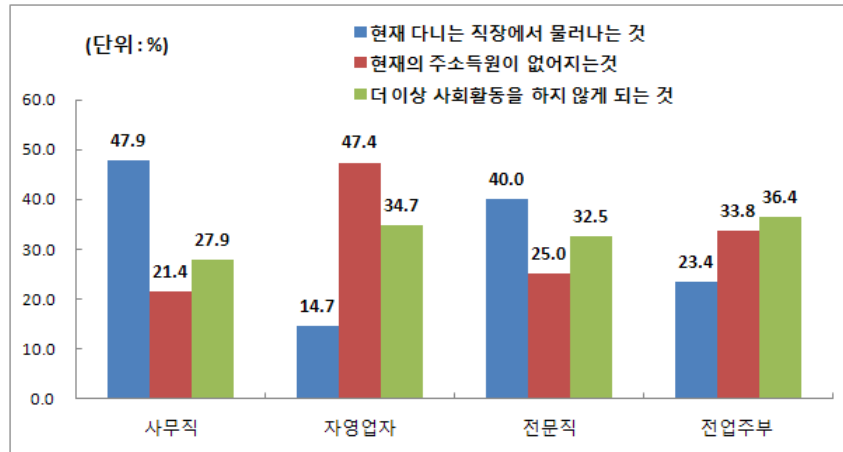


그림 II-7-5 베이비부머 직업별 은퇴에 대한 인식(2010년)

자료 : 푸르덴셜생명, 베이비부머의 행태조사

- 은퇴준비가 힘든 이유로는 베이비붐세대의 61.0%가 자녀 교육비 지출을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은퇴 준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다는 응답도 많아 실제 은퇴설계에 대한 금융 및 관계기관을 통한 적극적인 니즈 환기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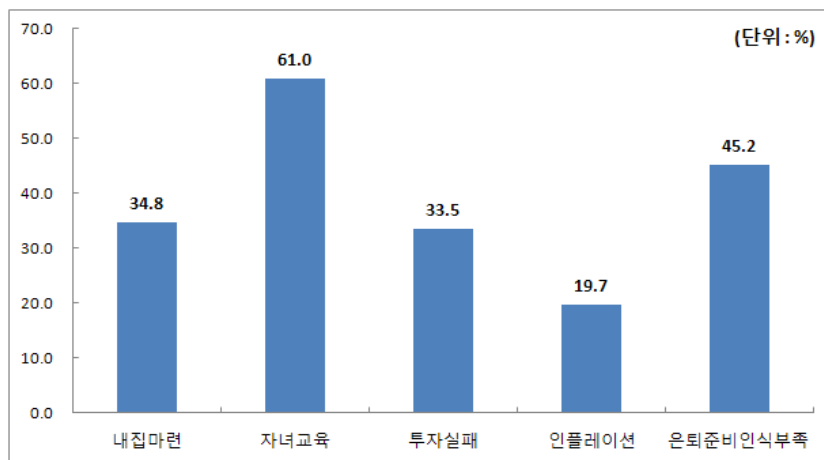


그림 II-7-6 은퇴준비를 못한 이유(베이비부머 대상)(2010년)

자료 : 푸르덴셜생명, 베이비부머의 행태조사



- 연금(공적+사적연금)에 대한 의존도가 83.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베이비붐세대는 은퇴 후 안정적인 소득원으로 연금을 가장 중요하게 꼽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자녀에게 의지하겠다는 응답은 7%대에 그쳐, 은퇴 후에도 기존 시니어세대와 비교하였을 때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길 희망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적극적인 인식변화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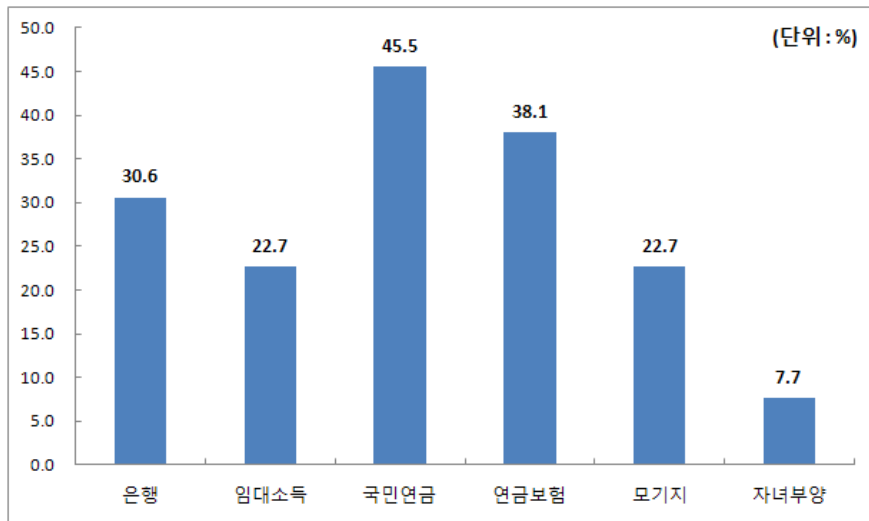


그림 II-7-7 은퇴 후 소득원(베이비부머 대상)(2010년)

자료 : 푸르덴셜생명, 베이비부머의 행태조사

- 베이비붐세대는 특히 노후설계와 관련해서는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붐세대 응답자의 40.6%는 향후 전문가를 통한 은퇴컨설팅을 받아볼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이미 연금보험에 가입되어있더라도 63.8%는 현재 준비상태로는 노후생활 유지에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중 추가로 금융상품을 가입하길 희망하는 경우도 72.1%에 달해, 기존 금융상품 이용자도 은퇴설계 및 노후 생활자금에 대한 추가적인 수요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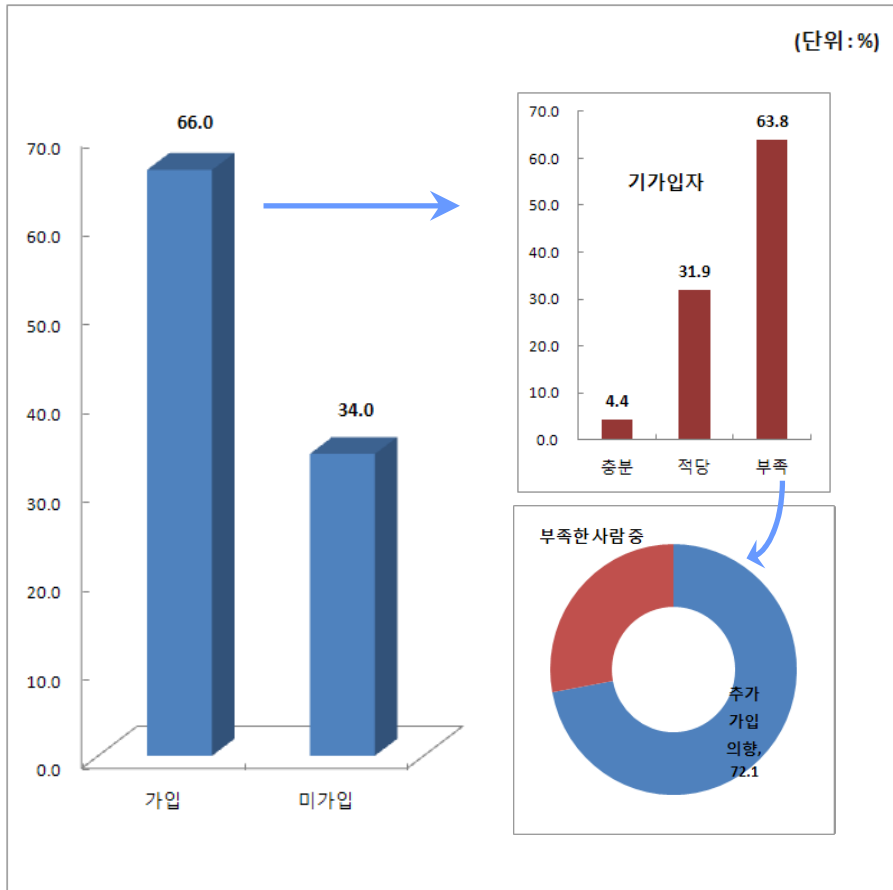


그림 II-7-8 연금보험 가입률(베이비부머 대상)(2010년)

자료 : 푸르덴셜생명, 베이비부머의 행태조사

## 2) 금융자산, 연금 및 민간의료보험 현황

-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라 우리나라 가계도 부동산 비중은 줄고 채권과 연금 및 보험의 비중이 늘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의 경우 은퇴인구가 필요로 하는 정기적인 소득제공에 있어 한계를 보이고 있는 반면 연금 및 보험업의 경우 고령화에 대한 문제의식과 소득공제로 인하여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 II-7-14 우리나라 가계의 금융자산 구성

(단위 : 조원, %)

구분	2002년 4/4분기	2005년 2/4분기	2008년 2/4분기	2010년 2/4분기
통화·예금	589(54)	644(49)	763(44)	956(47)
연금·보험	232(21)	289(22)	409(23)	498(24)
주식·채권	247(22)	357(27)	560(32)	584(29)
채권	91(8)	121(9)	204(12)	200(10)
주식	156(14)	236(18)	356(20)	384(19)
금융자산	1,084(100)	1,306(100)	1,745(100)	2,054(100)

주 : ( )는 각 금융자산의 비중임  
 자료 : 한국은행, 자금순환표

- 우리나라의 실물자산의 집중현상은 중·고령가계에서도 나타나는데 노동연구원, 「고령친화연구패널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고령<sup>44)</sup>가계는 주택 등을 포함한 비금융자산에 대한 선호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7-15 우리나라 중·고령자 가계의 자산구성

(단위 : %)

자산종류	2006년	2008년
금융자산	20	18
비금융자산	80	82

주 : 1. 1, 2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음  
 2. 비금융자산에는 거주 주택, 거주 주택 외 부동산 자산의 전체 시가 및 업체 및 농장의 현재자산 가치, 운송수단, 기타 비금융자산가치를 포함함

- 2010년 개인금융자산의 규모는 경상소득 3,771만원, 자산총액 2억 7,268만원, 금융자산 5,828만원, 실물자산 2억 1,440만원으로 경상소득과 금융자산의 구성비는 1.55%로 나타났다.
- 또한 60-65세, 65세 이상의 고령자 계층은 전체 연령보다 경상소득과 금융자산의 구성비(1.64%, 1.89%)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4) 중·고령 가계는 만 45세 이상의 가구원이 있는 가구로 정의함.

표 II-7-16 개인금융자산의 규모(가구주 연령계층별 자산현황)(2010년)

(단위 : 만원, %)

	경상소득 (A)	자산총액	금융자산 (B)	실물자산	구성비 (B/A)
전체	3,771	27,268	5,828	21,440	<b>1.55</b>
25세 미만	2,130	4,841	2,796	2,045	<b>1.31</b>
25-30세	2,854	8,250	4,571	3,679	<b>1.60</b>
30-35세	3,836	15,998	5,686	10,312	<b>1.48</b>
35-40세	4,409	21,501	6,831	14,671	<b>1.55</b>
40-45세	4,822	26,145	6,972	19,172	<b>1.45</b>
45-50세	4,731	30,411	7,591	22,820	<b>1.60</b>
50-55세	4,909	35,578	7,048	28,530	<b>1.44</b>
55-60세	4,297	36,086	6,223	29,863	<b>1.45</b>
60-65세	3,457	42,191	5,676	36,515	<b>1.64</b>
65세 이상	1,649	24,694	3,122	21,572	<b>1.89</b>

자료 :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물가/가계, 가계금융조사

- 65세 이상 가구주의 개인금융자산 규모는 저축액 2,555만원, 전월세 보증금 567만원으로 각각 81.8%, 18.2%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 저축액 2,555만원 중에서 목돈투자가 1,577만원, 61.7%로 가장 많았고, 적립식 869만원, 34.0% 기타 저축 109만원, 4.3%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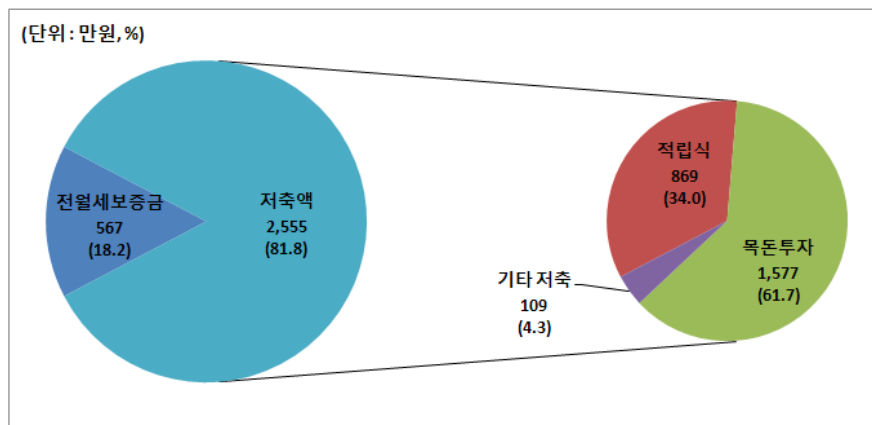


그림 II-7-9 65세 이상 가구주 개인금융자산 규모

자료 :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물가/가계, 가계금융조사

- 2009년 공적연금 재정적자로 인한 국고부담은 GDP 대비 0.3%이며, 2030년에 이르면 그 비중은 GDP 대비 1.22%로 상승하고 2050년에는 1.64%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표 II-7-17 공적연금 재정추계

(단위 : GDP 대비 %)

연도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총지출	국고부담
2009년	0.83	1.01	1.84	0.3
2010년	0.86	1.04	1.9	0.32
2030년	2.46	2.11	4.57	1.22
2050년	5.48	2.91	8.39	1.64

자료 : 박형수·전병목(2009)

- 건강보험은 공적연금과 달리 매년 국고지원을 통하여 정산되기 때문에 국고부담이 누적되어 증가하지 않는다. 그러나 재정적자의 경우 2009년 GDP 대비 0.28%에서 2030년 1.65%, 2050년 2.71%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II-7-18 건강보험 재정추계

(단위 : GDP 대비 %)

연도	총지출	국고부담	보험료	재정적자
2009년	2.72	0.41	2.03	0.28
2010년	2.77	0.41	2.03	0.33
2030년	4.08	0.41	2.03	1.65
2050년	5.12	0.4	2.01	2.71

자료 : 박형수·전병목(2009)

- 5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연금수령자는 2010년 현재 45.9%에 불과하고 연금수령자 가운데 85.1%는 50만 원 미만의 연금을 받고 있었다. 월평균 연금 수령액이 35만 원인데 10만 원 미만을 수령하는 노인도 수령자 가운데 45.6%에 달하였다.

표 II-7-19 고령인구 연금수령 여부

(단위 : 천명, %)

구분	55~79세 인구	연금 미수령자	연금 수령자	월평균 연금수령액				평균 수령액 (만 원)
				10만원 미만	10~50 만원 미만	50~100 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010년 5월	9,481 (100.0)	5,133 (54.1)	4,348 (45.9) (100.0)	1,982 (45.6)	1,717 (39.5)	244 (5.6)	403 (9.3)	35
남자	4,388	2,142	2,246	610	1,082	213	342	51
여자	5,092	2,990	2,102	1,372	636	31	62	18
2009년 5월	9,111 (100.0)	5,133 (56.3)	3,978 (44.7) (100.0)	1,774 (44.6)	1,601 (40.2)	208 (5.2)	394 (9.9)	34
2008년 5월	8,841 (100.0)	6,193 (70.0)	2,648 (29.9) (100.0)	847 (32.0)	1,304 (49.2)	148 (5.6)	349 (13.2)	-

주 : ( )는 비중임

자료 : 통계청

- 국민건강보험의 65세 이상에 대한 급여율(보험자부담률)은 2002년 53.3%에서 2008년 57.5%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냈다. 반면 본인부담률은 46.7%에서 42.5%로 4.2%p 상승하였다.

표 II-7-20 연도별 국민건강보험 65세 이상의 급여율 추이

(단위 : 천명, 십억원, %)

연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계	5,092.0 (100.0)	6,163.5 (100.0)	7,234.4 (100.0)	8,517.6 (100.0)	9,973.4 (100.0)	12,094.1 (100.0)	14,090.7 (100.0)
보험자부담 (급여비)	2,715.3 (53.3)	3,275.7 (53.1)	3,841.1 (53.1)	4,557.6 (53.5)	5,598.9 (56.1)	6,953.7 (57.5)	8,102.1 (57.5)
본인부담 (소계)	2,376.6 (46.7)	2,887.8 (46.9)	3,393.3 (46.9)	3,960.1 (46.5)	4,374.5 (43.9)	5,140.4 (42.5)	5,988.6 (42.5)
법정	920.3 (18.1)	1,125.0 (18.3)	1,295.3 (17.9)	1,515.5 (17.8)	1,751.5 (17.6)	2,165.3 (17.9)	2,635.0 (18.7)
비급여	1,456.3 (28.6)	1,762.8 (28.6)	2,098.0 (29.0)	2,444.6 (28.7)	2,623.0 (26.3)	2,975.2 (24.6)	3,353.6 (23.8)

주 : 1. 정형선(2010)의 비급여본인부담률을 이용하여 비급여본인부담금을 산출함

2. 보험자부담액은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를 포함함

자료 : 1. 정형선(2010)

2. 국민건강보험공단(2008)

○ GDP 대비 사적연금시장의 규모는 10,239,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489,00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개인연금자산과 퇴직연금자산의 비중은 각각 4.92%, 0.6%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7-21 사적연금시장의 규모(GDP 대비)

(단위 : 천억원, %)

연도	명목GDP	개인연금자산/GDP	퇴직연금자산/GDP
2001년	6,514	3.51	-
2002년	7,205	3.61	-
2003년	7,671	3.72	-
2004년	8,269	3.75	-
2005년	8,652	3.91	-
2006년	9,087	4.02	0.1
2007년	9,750	4.42	0.3
2008년	10,239	4.92	0.6

주 : 세계적격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적립금 자산규모의 합을 의미함

○ 우리나라 생명보험의 실제가입률을 보면 2007년 말 기준 61.9%(남자 60.3%, 여자 63.6%)이다. 연령별로는 20세 미만의 저연령층과 60세 이상 고연령층의 가입률이 낮은 수준이다.

표 II-7-22 생명보험 연령별 가입률(2007년)

(단위 : %)

구분	연령별						평균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남자	55.0	60.2	73.6	72.3	62.7	27.1	60.3
여자	52.6	65.7	82.2	79.8	71.0	29.8	63.6

자료 : 보험개발원, 보도자료(2008.11.26)

○ 생명보험 상품별 가입률은 상품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상해보험과 건강보험은 40%대 이상, 종신보험과 CI 보험은 10%대, 정기보험은 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40대 경우에도 정기보험 가입률이 다른 보험에 비해 훨씬 낮았다.

표 II-7-23 생명보험 상품별 가입률(2007년)

(단위 : %)

연령대	종신	정기	CI	변액	유니버설	상해	건강
20대이하	24.1	7.8	14.3	11.0	11.5	35.4	48.5
30대	36.7	13.3	16.8	16.8	16.5	55.9	72.1
40대	30.1	10.1	15.0	13.0	12.6	55.8	73.4
50대	19.0	7.9	9.0	7.1	6.5	49.3	65.7
60대	6.7	3.7	2.5	1.7	1.3	32.6	40.0
70대 이상	1.5	0.8	0.0	0.0	0.0	10.3	8.0
전 인구	18.5	6.5	10.7	8.0	9.0	40.0	55.1

자료 : 보험개발원, 『FY'08생명보험 통계자료집』, 2009.3

○노령(퇴직)연금의 수급자는 2009년 1,273,403명으로 전년대비 155,176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7-24 연도별 노령(퇴직)연금 수급자 현황

(단위 : 명)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노령(퇴직)연금	635,190	783,820	968,574	1,118,227	1,273,403

자료 : 1.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2009년 고령자 통계

2.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통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학연금통계연보』, 각년도

주 : 연금수급자 중 일시 수급정지자를 제외한 실수령자 기준임

○소득을 통한 자산 축적이 짧아지고 소비기간은 길어져 퇴직 후 소득과 자산에 대한 재무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베이비붐 세대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73.5%이지만 기초 수급자의 전업주부 등을 포함하면 50.1%로 노후소득 보전책이 긴요한 상황이다.

표 II-7-25 베이비붐 세대의 국민연금 가입실태(2009년 기준)

(단위 : 만 명, %)

구분	베이비붐 세대	국민연금가입대상 제외			국민연금 가입대상자	국민연금 소득신고자
		타공적연금가입자 및 수급자	기초수급자 전업주부 등	소계		
인원	714	39	215	254	460	338

자료 : 국민연금공단

주 : 가입대상 제외는 국민연금법상 가입대상 제외자를 지칭



## 2.3 국내 시장규모 및 전망

### 1) 시장규모 분석 방법

#### 가. 기준연도 시장규모 추정 방법

모태산업(금융산업)의 시장규모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자료원으로 보험연구원 자료<sup>45)</sup>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 시장규모 분석을 위한 자료로 이용하였다.

모태산업 대비 고령친화 금융산업의 시장규모를 분석하기 위하여 퇴직연금, 개인연금, 민영의료보험, 주택연금 등으로 나누어 시장규모를 추정하였다.

첫째, 주택연금 중 고령친화 주택연금의 시장규모는 주택연금 보증공급액<sup>46)</sup>을 기준으로 시장규모를 추정하였다. 주택연금은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므로 65세 이상 가입률을 100%로 가정하였다.

둘째, 민영의료보험<sup>47)</sup> 중 고령친화 민영의료보험의 시장규모는 민영의료보험 전체 시장규모 중 65세 이상 가입률을 기준으로 시장규모를 추정하였다.

셋째, 고령친화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적립금<sup>48)</sup> 추이를 이용하였으며, 65세 이상 가입률은 3.6%<sup>49)</sup>로 하여 시장규모를 추정하였다.

넷째, 고령친화 개인연금은 개인연금 적립금 규모를 이용하였으며, 65세 이상 가입률은 3.1%<sup>50)</sup>로 하여 시장규모를 추정하였다.

45) 보험연구원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세부적으로 보도자료(“주택연금, 가입자, 월지급금 정액형 선호”, 한국주택공사),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46)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 자문을 통하여 시장규모는 보증공급액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며, 성장률은 가입자 기준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또한 보증공급액은 한국주택공사가 부담하는 총 채무한도(연금지급액+보증료+이자 등)를 의미한다.

47)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건강보험(생명보험사가 판매하는 건강보험, 손해보험회사가 판매하는 건강보험)의 수입보험료를 민영의료보험 시장규모로 하며, 2009년 기준 65세 이상 가입률(8.2%)은 금감원 보도자료인 2011.6.20 “암보험 판매 현황 및 활성화 방안 마련 추진”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48) 퇴직연금 적립금과 퇴직보험, 신탁 적립금을 합하여 전체 퇴직연금 시장규모를 추정하였으며, 퇴직보험과 신탁은 2011년까지 퇴직연금제도로 이행되어야 하므로 2011년 이후에는 시장이 소멸된다.

49) 퇴직연금 65세 이상 가입률은 현대경제연구소의 ‘잠내성장률 2%p 제고’를 위한 VIP REPORT(신성장 산업의 발굴: 실버산업의 현황과 전망)를 이용하였다.

50) 개인연금 65세 이상 가입률은 현대경제연구소의 ‘잠내성장률 2%p 제고’를 위한 VIP REPORT(신성장 산업의 발굴: 실버산업의 현황과 전망)를 이용하였다.

$$y_i = \sum_{j=1}^4 (\text{부문별 시장규모}_{ij}) \times (65\text{세 이상 가입률}_{ij})$$

- $y_i$  :  $i$ 연도의 고령친화 금융산업 시장규모
- $j$  : 금융산업의 부문( $j = 1, \dots, 4$ )
- 65세 이상 가입률 $_{ij}$  :  $i$ 연도의  $j$ 번째 부문의 65세 이상 가입률

## 나. 시장규모 전망(예측) 방법

국내 고령친화 금융산업의 시장규모를 예측하기 위해 금융산업 4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예측하였으며, 각 부문별 시장규모의 성장률과 65세 이상 가입률의 성장을 고려하였다.

먼저 주택연금 부문의 시장규모는 연평균 30%<sup>51)</sup>에서 15%로 점차 하향조정<sup>52)</sup> 하여 2020년 고령친화 주택연금 시장규모를 전망하였다.

민영의료보험 부문의 시장규모는 연평균 10% 정도 성장하는 것으로 고려하였으며, 65세 이상 가입률은 8%에서 점진적으로 9%, 10%로 상향해서 사용하였다.

퇴직연금 부문의 시장규모 전망은 삼성생명 은퇴연구소(The Retirement Journal, Vol.1, 2011.4)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65세 이상 가입률은 3.6%를 적용하여 시장규모를 전망하였다.

개인연금 부문의 시장규모는 연평균 13%<sup>53)</sup> 정도로 성장하는 것을 고려하였으며, 65세 이상 가입률<sup>54)</sup>은 현대경제 연구소 자료를 이용하여 전망하였다.

## 2) 시장규모 추정 및 예측 결과

### 가. 기준연도 시장규모 추정 결과

- 퇴직연금, 개인연금, 민영의료보험, 주택연금 등으로 구성되는 고령친화 금융산업의 2010년 시장규모는 10조 5,663억 원으로 나타났다.
- 그 중 개인연금 시장규모가 전체 157조 9,940억 원에서 4조 8,978억 원으로 가장 컸으며,

51) 주택산업의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 보도자료(2011.7.8) “주택연금 가입자, 월지급금 정액형 선호”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성장률은 가입자 기준으로 보는 것이 합당(자문 결과)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주택연금은 절대규모가 높은 것을 고려하여 2011년 이후 시장규모는 연 30%, 15% 성장을 가정하였다.(하향조정함)

52) 주택연금은 가입초기인 점을 감안하며 절대규모가 높아 상승률을 하향조정 하였다.

53) 2011년부터 세계적격연금의 소득공제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전체적인 성장률은 세계적격(12.3%)이 세제비적격(14.1%)보다 낮으며 이를 고려하여 13%(2011년 소득공제 한도 인상 요인 감안 후) 정도로 가정하였다.

54) 2010년 개인연금 65세 이상 가입률은 현대경제연구소의 ‘잠내성장률 2%p 제고’를 위한 VIP REPORT(신성장 산업의 발굴: 실버산업의 현황과 전망)를 이용하였으며, 3.1%에서 점진적으로 3.7%, 4.3%로 상향해서 사용하였다.

주택연금(3조 361억 원), 퇴직연금(1조 6,253억 원), 민영의료보험(1조 70억 원) 순으로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었다.

표 II-7-26 2010년 고령친화 금융산업 시장규모

(단위 : 억 원, %)

구분	금융산업	60세 이상 가입률	고령친화 금융산업
퇴직연금	451,483	3.6	16,253
개인연금	1,579,940	3.1	48,978
민영의료보험	121,329	8.3	10,070
주택연금	30,361	100	30,361
전체	2,183,113	-	105,663

- 자료 : 1. 현대경제연구소, '잠재성장률 2%p 제고'를 위한 VIP REPORT  
 2.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The Retirement Journal, Vol.1, 2011.4  
 3.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 자료  
 4. 금감원 보도자료 2011.6.20 "암보험 판매 현황 및 활성화 방안 마련 추진"  
 5. 한국주택금융공사, 보도자료(2011.7.8) "주택연금 가입자, 월지급금 정액형 선호"

○ 선정된 고령친화 금융산업 전략품목의 시장규모는 2010년 6조 5,232억 원으로 전체 고령친화 금융산업의 시장규모 중 약 61.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7-27 고령친화 금융산업 전략품목 시장규모

(단위 : 억 원, %)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퇴직연금	10,584	12,135	13,464	16,253
개인연금	27,011	31,655	40,736	48,978
전략품목 전체	37,595	43,790	54,201	65,232
비중	73.5	72.5	67.1	61.7
고령친화 금융산업	51,169	60,418	80,719	105,663

- 자료 : 1. 현대경제연구소, '잠재성장률 2%p 제고'를 위한 VIP REPORT  
 2.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The Retirement Journal, Vol.1, 2011.4  
 3.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 자료  
 4. 금감원 보도자료 2011.6.20 "암보험 판매 현황 및 활성화 방안 마련 추진"  
 5. 한국주택금융공사, 보도자료(2011.7.8) "주택연금 가입자, 월지급금 정액형 선호"

## 나. 시장규모 전망(예측) 결과

- 앞에서 설명한 방법을 활용하여 향후 고령친화 금융산업의 시장규모를 전망하여 본 결과, 고령친화 금융산업의 시장규모는 2015년 30조 1,711억 원, 2020년 61조 404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 2010년 모태산업 대비 고령친화 금융산업의 비중은 4.8%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 6.4%, 2020년 7.1% 정도의 비중으로 전망된다.

표 II-7-28 고령친화 금융산업 시장규모 전망(예측)

(단위 : 억 원, %)

	2010년	2015년	2020년	CAGR(10-20)
퇴직연금	16,253	35,640	62,640	14.4
개인연금	48,978	127,085	272,116	18.7
민영의료보험	10,070	17,586	31,470	12.1
주택연금	30,361	121,400	244,178	23.2
고령친화 금융산업	105,663	301,711	610,404	19.2
비중	4.8	6.4	7.1	-
모태산업	2,183,113	4,741,535	8,627,149	14.7

- 자료 : 1. 현대경제연구소, '잠재성장률 2%p 제고'를 위한 VIP REPORT  
 2.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The Retirement Journal, Vol.1, 2011.4  
 3.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 자료  
 4. 금감원 보도자료 2011.6.20 "암보험 판매 현황 및 활성화 방안 마련 추진"  
 5. 한국주택금융공사, 보도자료(2011.7.8) "주택연금 가입자, 월지급금 정액형 선호"

## 3. 전략품목 및 지원정책

### 3.1 전략품목 선정

#### 1) 선정기준

고령친화 금융산업 범위 설정에서 분류된 장수리스크, 건강리스크, 재무리스크 등 3개 분야의 세부품목들에 대하여 고령자 대상 수요조사 결과, 산업기여도, 국제경쟁력, 공공성 등 4개 선정기준을 가지고 선정하였다. 선정기준별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산업기여도, 국제경쟁력, 공공성 3가지 분야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적으로 수요조사 결과 및 3개

선정기준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상위 품목을 전략품목으로 선정하였다.

표 II-7-29 고령친화 금융산업 전략품목 선정기준

기준	내용
수요조사 결과	•중고령자가 노후 준비를 위해 필요한 금융 서비스로 선택한 비율을 적용 35% 이상 : 5점, 25% 이상~35%미만 : 4점, 15%이상~25%미만 : 3점, 5%이상~15%미만 : 2점, 5%미만 : 1점
산업 기여도	•운용규모, 성장성, 가입자수에 대해 각 5점 배점을 부여하여 결정
국제 경쟁력	•시스템 구축, 전문성, 인력수에 대해 각 5점 배점을 부여하여 결정
공공성	•공공의 이익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를 평가(5점 척도)

※ 5점 척도 : 아주 낮음(1), 낮음(2), 보통(3), 높음(4), 매우 높음(5)

## 2) 전략품목 선정

고령친화 금융산업 3개 분야 6개 품목에 대하여 4가지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종합점수가 30점 이상인 경우를 전략품목으로 선정하였다. 전략 품목으로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2개 품목이다. 고령친화 금융산업이 사회보험의 성격을 벗어나고 장기적인 수익원 확보를 위한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을 감안하면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은 전략품목으로 선정됨에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표 II-7-30 고령친화 금융산업의 전략품목 선정

구분	수요조사	산업 기여도			국제경쟁력			공공성	합계	평가	
		운용규모	성장성	가입자	시스템	전문성	인력수				
장수 리스크	개인연금	5	5	5	5	5	5	3	38	전략품목	
	퇴직연금	2	5	5	4	2	5	5	5	33	전략품목
	역모기지론	2	3	5	2	5	3	2	5	27	
건강 리스크	민영건강	3	5	2	5	2	2	3	4	26	
	장기간병보험	3	2	2	2	2	4	3	4	22	
재무 리스크	자산관리	3	4	3	1	5	5	5	3	29	

※ 항목별 5점 척도 : 아주 낮음(1), 낮음(2), 보통(3), 높음(4), 매우 높음(5)

### 3.2 제약요인 및 정책과제

고령화 진전에 따라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고령소비자 및 금융기관을 통한 실태조사를 통해 중장기적인 고령친화 금융산업의 방향 및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령화에 따른 건강, 간병 및 의료 관련 보장서비스에 대한 수요증대에 대비하여 보험시장 육성을 적극 도모해야 할 것이다. 고령화 관련 금융상품의 접점을 확대하는 노력이 함께 경주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생애주기, 투자성향 등을 감안한 종합적인 금융자문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소비자의 선택범위가 증대되고, 금융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금융권 퇴직자의 재취업 및 전문인력 육성에 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고령친화 금융상품의 완전판매를 위해 투자자 교육 및 계약자 보호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불공정 판매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는데 감독기관의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감독체계를 공고화할 필요가 있다.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혜택을 강화하여 가입을 유도하고, 투자자 교육 강화 및 홍보강화를 통해 노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퇴직연금은 향후 국민연금과 더불어 노후 자금의 한 축으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기업내 이와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도 필요하다.

표 II-7-31 고령친화 금융산업 정책과제

정책지원
(1) 전략화 방향 설정
- 고령친화 금융산업 실태조사
(2) 법·제도 지원
- 자산운용 규제 완화
- 적극적인 세제 혜택 부여
- 투자자 교육 강화
- 계약자 보호체계 강화
- 불공정 판매 근절
- 금융회사 재무건정성 확보를 위한 감독기관의 관리감독 강화
- 전문인력 양성

### 3.3 정책 기대효과

노후준비란 노후에 직면하게 될 3가지 위험요소(장수, 의료비용 증가, 시장불확실성에 대한 위험)를 최소화하는 시키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은퇴 후 소득이 거의 없거나 예전보다 적은 소득으로 살아야 하는 노인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라기 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함께 준비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미 지난 1994년 세계은행은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예측하고 “고령화 위기 대처 보고서”를 발간, 급격히 진행되는 고령화 현상의 대처방안으로 ‘3층 연금 체계’를 제안한 바 있다. ‘3층 보장’제도라고도 불리는 ‘3층 연금체계’의 1층은 국가가 주체가 된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2층은 기업이 주체가 된 퇴직연금으로 표준수준의 생활을, 3층은 개인연금으로 개인의 여유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또한 가장 기초가 되는 국민연금이 최근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로 보장수준이 지속적으로 재조정되고 있어, 민간 기업 및 개인의 자조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고령친화 금융산업 활성화를 통해 노후소득 준비 강화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정부측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노후 소득 보장 안전화를 통해 소비 촉진에 기여하여 전체 산업의 육성에도 기여할 것이다.

## 제8장 고령친화 주거산업

### 1. 개요 및 범위

#### 1.1 고령친화 주거산업의 범위

현재 고령자 주거를 규정하는 ‘노인복지법’<sup>55)</sup>이 있으나, 일반주택보다는 노인복지시설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에는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건강한 노인들을 위한 주거시설 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인해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을 위한 의료시설, 여가활동을 위한 장소를 제공해주는 여가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령자가 거주하는 일반주택과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중 독립적 전용 주거를 공급하는 노인주거시설만을 고령친화주거산업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표 II-8-1 고령친화 주거산업의 대상

구 분		내 용
일반주택		•노인이 거주하는 일반주택
노인 주거 복지 시설	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공동생활 가정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복지주택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자료 : 보건복지부(2011), 2010 노인복지시설현황

55) 노인복지법 31조에 의하면, 노인복지시설에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노인복지주거시설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고령자를 위한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으로 이루어져 있다. 양로시설은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며, 노인공동생활가정은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고령친화주거산업 내용들을 보면 크게 고령자가 기존에 거주했던 주택을 고령친화적으로 개조 또는 보수하는 산업과 고령자에게 맞는 전용 주거를 별도로 공급하는 산업으로 구분되어질 수 있다.

표 II-8-2 고령친화 주거산업의 범위

구 분	내 용
주택 개보수	•신체적 노화에 대응하는 평면 및 설비를 갖춘 주거공간을 개보수 - 계단이나 문턱 등의 단차를 제거, 욕조 손잡이 설치
	•고령자를 위한 주거 관련설비(욕조, 손잡이, 수변장치, 문짝 미끄럼 방지 바닥재 등) 생산
고령자 주택공급	•고령에 맞는 주거공간을 갖춘 독립된 주호와 공동으로 이용하는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노인복지주거시설 및 주택을 공급

## 1.2 고령친화 주거산업의 특징

우리나라 고령친화주거산업은 전통적으로 노인을 부양하던 자녀의 노인부양기능이 약화되고, 인구고령화로 인해 독립적인 노인거주 욕구가 양적으로 증대되면서 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연금제도나 퇴직제도 등으로 경제력 있는 고령층의 형성되면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고령층을 위한 질적으로, 기능적으로 다양한 주거산업이 등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고령친화주거산업은 고령층의 특수한 상황들, 즉,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특징들을 고려하여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장해 주는 위한필수적 항목으로써, 기존의 주거산업과 구분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고령친화주거산업은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일상적인 생활 능력 저하가 고령층의 독자적 생활영위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고령자가 주거시설에서 안전하게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 욕조 손잡이, 바닥미끄럼 방지 설비등을 생산·설치하는 주택개·보수사업들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고령친화주거산업은 노후 생활의 커다란 위협요인 중 하나로 사회적 고립(social isolation)의 위험을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고령친화주거산업은 고령층만 모여 사는 곳이 아니라, 가족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인근의 젊은 주민들과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셋째, 고령친화주거산업은 은퇴로 인해 더 이상 노동을 할 수 없게 된 고령자들에게 적절한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고령층은 은퇴로 인한 임금소득의 감소로 경제적으로 다른 연령계층보다는 주거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운 경향이 높다. 저렴한 비용의 노인용 주택 및 노인복지주거시설 등을 공급하는 것도 고령친화주거산업의 특징으로 기존의 주거산업과 구별된다.

## 2. 시장분석

### 2.1 세계 시장 변화

#### 1) 일본

인구 고령화는 고령자의 주거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일본에서도 한국과 비슷하게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고령기의 주거 형태와 환경 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0년 기준 일본의 인구는 128,056,026명이며<sup>56)</sup> 이중 65세 고령인구는 약 22.7%인 2,900만명에 달하고 있다. 또한 2030년까지 전체 인구는 점차 하락하는 가운데 고령자 인구는 약 3,660만명(31.8%)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주택의 1차 취득자인 젊은 세대의 감소로 이어지고, 그 결과, 신축 주택의 착공 수는 중장기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반면, 건축한지 20~30년에 달하는 주택을 대거 소유하고 있는 고령층 세대들이 주택의 개보수를 시행할 가능성이 있어, 고령자 층의 주택 개보수 수요는 더 확대될 것이다. 한편, 고령자의 주거 형태가 자택, 양로 시설과 더불어 ‘서비스 포함 고령자주택’이 제3의 선택으로서 부상하고 있으며, 관련법의 정비에 힘입어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가. 신규주택 시장의 축소

전체 인구의 감소에 따른 젊은 세대의 감소로 일본의 주택 신축 시장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다만, 급속한 고령화와 더불어 고령자 주택 시장은 서서히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56) 2010년 국세조사 속보치

고령자 층의 노후 주택에 관한 조사<sup>57)</sup>에 의하면 60세 이상의 세대 중, ‘현재 주택에서 계속 거주’한다고 답한 세대가 전체의 약 72%에 달하며, 이중 약 30%는 개보수 등을 통해 계속 거주한다고 답하고 있다. 또한 현거주지에서 다른 주택으로 이사한다고 답한 세대는 약 28%로, 향후 주거에 관해 어떤 형태로든 변화를 계획하고 있는 고령층은 전체의 반수 이상으로 늘어난다. 따라서 고령자 주택에 대한 니즈는 고령자 수의 증가와 더불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자의 세대구조를 통해서도 고령자 주택관련 수요 확대를 예상할 수 있다. 2008년 국립사회보장 인구연구소의 장래추계에 따르면 세대주 65세 이상의 세대 수는 2010년 약 1,568만 세대에서 2020년 약 1,899만 세대로 10년간 약 3,30만 세대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중에서도 고령자 단신 세대, 고령자 부부 세대 등 고령자만의 세대의 증가 폭이 크게 나타난다. 특히 고령자의 단신 세대 증가가 커, 향후 10년간 약 166만 세대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65세 이상 전체 세대 증가분의 약 50%에 해당한다. 고령자 단신 세대는 부부세대에 비해 자가율이 낮고, 민영 및 공공을 중심으로 한 임대주택 거주율이 30%를 점하고 있다. 따라서 고령자 단신 세대 수의 급격한 증가는 고령자 주택 수요 확대로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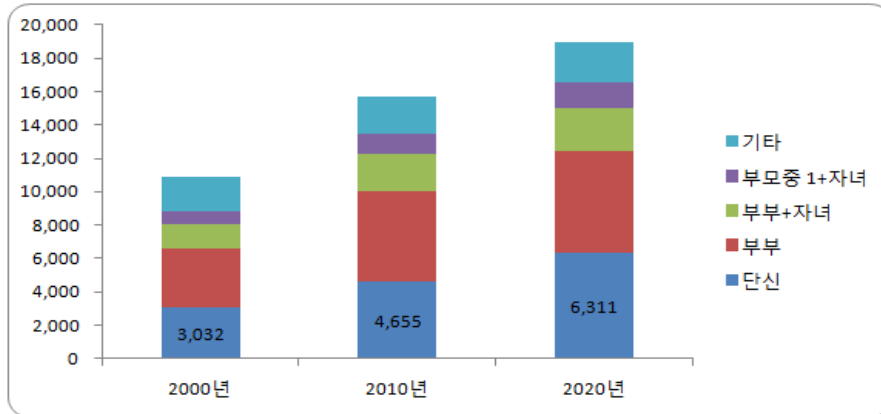


그림 II-8-1 연도별 65세 이상 세대의 가족 유형별 세대수 추이

자료 : 국립사회보장 인구연구소(2008.3). ‘일본 세대수 장래추계’

하지만, 고령자 수의 증가 또는 단신세대의 증가가 곧 바로 신축 착공수의 증가로 이어질 것 기대하기는 어렵다. 일본의 부동산 시장은 1990년대 버블 붕괴 이후 추세적인 가격 하락세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며, 거시 경제 환경도 2011년 3월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일본의 주택 관련 산업은 신축 시장을 중심으

57) 리쿠르트 주택총연.(2007) ‘단카이 세대의 향후 라이프스타일과 주거에 관한 조사’. 미쓰비시도쿄UFJ은행경제조사실

로 향후에도 추세적인 하락세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로 일본의 신규 주택 착공 건수는 1989년 약 167만 호에서 2010년 82만 호로 거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되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2009년에는 최근 20년간 가장 낮은 수준인 78만호에 머물렀다. 2010년에는 반등에 성공했고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면서 신규 주택 수요가 일시적으로 확대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신규 주택 관련 시장은 서서히 축소될 전망이다.

#### 나. 개·보수 시장의 확대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고령자 주택 관련 시장의 확대가 기대되고 있으나, 이러한 현상은 신규 주택보다는 기존 주택의 개보수 시장의 확대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의 주택 시장은 구미 선진국과는 달리 신축 주택 중심으로, 개보수 금액도 상대적으로 적은 유지, 보수에 머물러 왔다. 하지만 전체 주택 투자에 대한 개보수 비중은 1989년 약 14.9%에서 현재 약 30%까지 착실하게 높아지고 있다<sup>58)</sup>. 향후 10년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면서 개보수 시장이 전체의 50% 이상에 달하는 유럽 국가들과의 동조화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했듯이 현 거주 주택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하는 고령자 세대의 약 30%에 지나지 않지만, 향후 건물의 노후화, 거주자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 될 경우, 개보수에 대한 니즈 확대로 연결될 것이다.

2004년~2008년 간 개보수를 시행한 주택을 건축 연수별로 보면 건축 20년 이상의 주택부터 개보수가 급증하기 시작해, 30~40년 사이에 최고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동기간 지은 지 15~19년 사이에 해당되는 주택의 개보수 시행건수는 100만 호 미만이었으나 20~29년 사이는 200만호, 30~39년 사이는 약 230만호로 증가했다.<sup>59)</sup> 따라서 향후에도 30년 정도 지난 주택에 관해서는 개보수 수요가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고령자 층의 주택을 연령별 건축연수별로 보면, 70세 이상의 세대에서는 이미 반수 이상의 주택이 30년 이상을 경과하고 있고, 60대의 경우에도 30년 이상 경과한 주택이 약 30~40%에 달고, 20년 이상 주택이 60%를 점하고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개보수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층의 현 거주 주택의 건축연수를 근간으로 잠재적 개보수 수요를 추정해 보면, 2010년 시점의 38.1만호가 2015년에는 45.6만호, 2020년 54.2만호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58) (재)주택리폼 분쟁처리지원센터. '주택리폼시장 규모'

59) 총무성. '주택토지통계조사' 2008년 말 기준

표 II-8-3 연령계급별 주택 건축 년수 분포

(단위 : %)

연령계급	10년 이하	20년 이하	30년 이하	30년 이상	기타
60~64세	11.0	21.6	23.0	38.0	6.4
65~69세	12.4	18.6	22.2	41.4	5.4
70~74세	9.6	16.8	21.0	48.4	4.2
75~79세	7.2	15.2	14.6	57.8	5.2
80~84세	5.4	15.7	14.9	57.1	6.9

자료 : 고령자의 주택과 생활환경에 관한 의식조사. 내각부(2010)

주 : 기타는 건축 년수를 모르거나, 태어나서 줄곧 거주하는 비중의 합

이외 개보수 시장을 확대시키는 요인이 또 있다. 2012년 이후 진행되는 단카이 세대의 대거 퇴직<sup>60)</sup>도 개보수 시장의 확대에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전적 여유에도 불구하고 시간 제약으로 소비 기회가 적었던 단카이 세대들이 퇴직으로 얻게 된 시간적 여유를 거주 주택의 개보수에 쓸 가능성이 크다. 또한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주택 소실, 에너지 절약형 주택에 대한 니즈 증대 등이 고령자 주택 관련 개보수 시장의 확대를 견인할 전망이다.<sup>61)</sup> 따라서 향후 10년간은 구조적으로 고령자 주택관련 시장이 확대되는 시기이며, 특히 개보수 시장이 그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물의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많은 고령층 세대는 안정성과 사용의 편리성 등의 측면에서 계단이나 문턱을 낮추는 등의 설비, 구조의 개선 필요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 다. 서비스 포함 고령자 임대주택의 증가

기존 고령자의 주거 형태는 주로 자택이나 양로 시설의 2가지 종류가 주류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제 3의 선택으로서 서비스가 포함된 고령자 주택 시장이 부상하고 있다. 특히 2011년부터는 서비스 포함 고령자 주택의 등록제도가 신설되고 고령자관련 개정법이 공포되면서<sup>62)</sup>, 향후에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고령자전용임대주택<sup>63)</sup>의 등록 제도가 시행된 2005년 12월 이후 총 관련 주택건수는 우상향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60) 2012년부터 단카이 세대가 65세에 달하면서, 그간 제도적으로 지연되었던 대량 퇴직이 진행. 일본에서는 2007년에 단카이 세대의 60세 퇴직이 대량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경제적 충격 완화를 위해 대부분의 기업들이 5년 연장 또는 재고용을 추진한 바 있음

61) 시장조사회사 (주) 후지경제는 전체 주택 개보수 시장 규모가 2014년 약 8.06조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2010년 기준 7.5조원 규모).

62) 신제도에서 고령자 임대주택의 건설, 개보수에 관한 보조금 제도가 신설

63) 고령자전용임대주택이라함은 고령자의 입주를 거부하지 않는 고령자입주임대주택 중 전문적으로 고령자만을 대차인으로 하는 임대주택을 지칭. 일본에서는 고전임(高專賃)으로 약칭

제도 개시 직후인 2006년 3월 말 기준에는 2,331호에 머물렀던 고령자전용임대주택 수는 2011년 3월말 51,059호로 20배나 성장했다. 고령자전용임대주택 증가의 주요인으로는 개호 서비스 포함 유료 양로원 등의 특정 시설에 대한 총량 규제가 2006년 도입되면서,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고령자전용임대주택이 급증한 측면이 있다.

한편 국토교통성이 현행 고령자 인구의 약 1%에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고령자형 주거 정비 비율을 2020년에는 구미 선진국 수준인 3~5%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정하고 있어, 의료 및 개호 등 서비스와 일체화된 주택의 공급이 촉진될 가능성이 크다. 2011년 4월, '서비스 포함 고령자형 주택'의 등록 제도를 포함하는 '고령자거주법개정법안'이 성립되어, 고령자전용임대주택은 폐지되고 서비스 포함 고령자형 주택으로 일체화되면서, 기준에 맞는 유료 양로원도 신제도에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2011년 6월에 성립한 개정개호보험법에서는 24시간 대응 방문개호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재택 서비스가 충실해지면, 개호의 필요도가 높아진 노인들도 고령자 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정부의 적극적 홍보에 힘입어 고령자주택의 사업 환경이 날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 II-8-4 서비스 포함 고령자형 주택제도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령자전용임대, 고령자우량임대 폐지, 서비스포함고령자형 주택으로 일체화</li> <li>도도후현 지자체의 장에 등록할 수 있는 제도를 창설</li> </ul>	
기준	바닥면적 원칙 25평방미터, 배리어 프리 등
서비스	식사, 청소, 세탁 등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
사업자 의무	등록사항, 정보개시, 계약 이행, 서비스 내용과 비용을 설명

자료 : 국토교통성. '고령자거주법개정안' 일부

## 2) 미국

미국 사회의 고령화 정도는 일본의 수준을 하회한다. 2008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총인구의 12.4%(3,730만명), 75세 후기 고령자 비중은 6.1%(1,830만 명)이다. 2000년에 고령자 비중이 12.7%(3,530만명)이었다는 점에서 보면 고령자 비율에는 큰 변화가 없다. 이는 이민을 통해서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와 더불어 2030년에는 고령화율이 20%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고령자 주택과 개호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표 II-8-5 고령화율 전망(미일 비교)

(단위 : %)

	2000년	2015년	2030년	2045년
일본	17.2	25.4	28.5	33.0
미국	12.7	14.4	20.9	21.6

자료 : World Bank

고령자의 거주 형태를 살펴보면 고령자의 약 90%가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나머지 10%(약 370만명) 중 약 50%가 너싱홈(nursing home), 나머지는 서비스가 포함된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고령자는 모두 너싱홈 입소자라는 등식과 큰 괴리감이 있으며, 고령자의 주택과 돌봄 문제에 있어서도, 현재의 거주 주택이나 지역을 근간으로 한 ‘자기 집에서 보내는 노후(Aging in Place)’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간호요양시설인 너싱홈(nursing home)은 높은 수준의 개호, 간호가 필요한 고령자를 위한 시설이다. 고령자 전용 시설은 아니지만 입소자의 약 85%가 65세 이상, 45%가 85세 이상인 후기 고령자에 해당한다.<sup>64)</sup> 다만, 고령자 전체 중 입소자 비중은 65~84세의 경우 전체의 2%, 85세 이상도 14% 정도이다. 너싱 홈(nursing home)의 침대 수는 1980년대 이후 회복 상태이나 연간 이용자 총수는 증가해, 2005년 기준 약 320만 명에 달하고 있다. 다만 비용<sup>65)</sup>, 케어의 질, 프라이버시 등이 문제시 되면서 이에 대한 개혁이 필요한 실정이다.

너싱홈(nursing home)의 생활환경 개선의 예로서는 에덴 프로젝트, 그린하우스 프로젝트 등이 있다. 에덴 프로젝트는 입소자의 고독감을 해소시킬 목적으로 너싱홈(nursing home) 내에 애완동물을 키우거나, 정원손질을 하게 하는 등 생활의 장소으로서 너싱홈(nursing home)을 만들자는 운동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그린하우스 프로젝트는 지역 밀착형 소형 너싱홈(nursing home)의 건설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서포트 주택(Supportive housing)은 일반적으로 식사, 세탁, 청소, 제한적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공동주택을 가리키나, 명확한 정의가 없고 그 실태가 정확히 파악되고 있지 않다. 다만, 연방정부는 서포트 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자 비중은 전 고령자의 2~5%라고 추정하고 있다. 서포트 주택은 고령자만 입주 자격이 주어진 경우와, 타 세대 층도 입주 할 수 있는 2가지 형태로 나누어져 있다. 고령자 전용의 경우 대표적인 예로서는 저소득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연방정부 유일의 고령자주택인 섹션 202주택, 비영리조직이 중심이 되어 발전시킨

64) AARP Public Policy Institute(2007). Nursing Home

65) 너싱 홈의 경비는 개인실의 경우 2006년 평균 약 7만 5천 달러 수준으로, 경제적으로 넉넉한 노인들이 주로 입주

평생보호노인주거단지(CCRC : 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등이 있다.<sup>66)</sup> 이 단지에는 입주자의 건강상태, 시설의 입주자 관리 계획 등에 따라 독립주거시설로부터 간호형 요양시설까지 입주자가 생활하게 된다. 대부분의 평생보호노인주거단지는 입소 전에 미리 고령자에게 입주보증금을 청구하고 입소 후에도 매월 사용료를 청구하기 때문에 시설 이용 노인들이 경제적 부담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표 II-8-6 서포트 주택(supportive housing)의 종류와 특징

종류	호수(입소자 수)	특징
섹션202 주택	6,200개소, 25만호	62세 이상 거주지 주민의 평균 소득 이하인 고령자 대상
CCRC	약 75만 명	입소 대기 10년 이상으로 인기가 높지만 고액의 경비가 필요. 고령자 주거 선택의 폭을 넓혔다는 긍정적 평가
Assisted Living	2만개소, 100만명	자신의 집에서 혼자 생활하기에는 어려우나 너싱홈에 입주할 정도로 건강이 나빠지는 않은 고령자를 대상
Residential(family) Care home	3.8만시설, 100만명	저소득층 중심, 주 보조금 사용, 24시간 개호가 필요한 고령자만 대상

자료 : クルーム 洋子(2008). '미국의 고령자 주택과 케어의 실정'.

미국의 고령자는 임대주택을 포함해 약 90%는 지역사회의 일반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이는 대다수의 고령자가 재택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령자의 약 20%가 향후 5년 이상의 개호 서비스를 필요로 하게 될 것으로 보여, 일반 주택 거주 고령자와 그 가족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가 할 것인가가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 과제의 중심에는 '고령자가 살기 편한 주택의 건축', '지역 서비스의 확충', '고령자의 편리를 추구한 지역 만들기' 등이 있다. 다만, 혁신적인 프로그램이 특정 지역에서 성공한다 하더라도, 이를 전국적으로 보급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90년대 이후 중산층의 장기돌봄(long-term care)의 장으로 부상한 Assisted Living의 경우에도 행정력이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혼란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주택 및 케어 정책의 유연성 있는 연대가 필요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66) CCRC에는 중간소득층을 주 입소대상으로 한 어시스트 리빙(AL : Assisted Living), 저소득층 입소자가 많은 주택형 케어 홈(residential care home), 가족형 케어 홈(family care home)이 포함



## 2.2 국내 환경 변화

### 1) 법·제도

#### 가. 전용주거시설 공급정책

노인전용 주거와 관련된 최초의 명시적 규정은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1981.6.5, 법률 3453호)<sup>67)</sup>에 언급되어 있다. 당시 법률에는 노인복지시설로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유료 양로시설, 노인복지회관이 언급되어 있었다. 여기서 양로시설과 요양시설의 차이는 양로시설이 건강상태가 양호한 노인이 입소하는 것인 반면 요양시설은 건강상태가 쇠약한 노인이 입소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립되며, 서울시장 또는 해당 도지사의 허가를 얻는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기관이 노인복지시설을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복지시설기관 또는 「사회복지사업기금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기금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었다.

1989년 12월 노인복지법이 전문개정되면서 노인복지주택이라는 유형이 추가되었다. 당시 주택 및 전세가격이 급등하고 있었으므로 무료나 유료 등의 시설건설만으로 고령자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한계를 느꼈기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무료 양로시설 이외에 최하위 소득계층은 아니나 저소득 노인이 입소할 수 있는 실비양로시설과 노인복지주택이 새로운 복지시설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1990년대 후반, 국제화와 민영화가 정책 이슈가 되면서 노인관련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민간부문의 참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1993년의 노인복지법을 보면, 1989년과는 달리 약간 혼동스럽지만 일단 노인복지시설을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실비양로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회관, 실비노인복지주택의 6가지 외에 유료노인복지시설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유료노인복지시설에는 유료양로시설, 유료요양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이 포함되며, 유

67) 노인복지법은 1981년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의 진전에 따라 노인문제가 점차 큰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전통적인 가족제도에 연유하고 있는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을 유지·발전시켜 나아가는 한편, 노인을 위한 건강보호와 시설의 제공 등 노인복지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노인의 안락한 생활을 복돋우어 주며 나아가 사회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매년 5월 경로주간을 설정토록 한다. ②노인의 복지를 위한 상담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노인복지상담원 둘 수 있도록 한다. ③보건사회부장관,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복지실시기관)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신체·정신·환경·경제적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한 자를 노인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도록 한다. ④복지시설기관은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건강진단 또는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⑤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송시설 기타 공공시설 및 민간 서비스 사업의 이용료를 무료로 하거나 할인 우대할 수 있도록 한다. ⑥노인복지시설을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유료양로시설 및 노인복지 센터 등으로 구분하고 양로시설 및 노인요양시설은 무료와 실비시설로 구분한다. ⑦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⑧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그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한다.

료양로시설의 경우 개인이나 법인의 건설 및 관리운용이 가능해졌다.

1994년 7~8월 「노인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가정봉사원 파견, 주간보호시설의 설치 등 재가목적(在家目的) 노인집합주택 서비스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법률 개정을 통해 유료노인복지주택이 건설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1997년 7월에는 노인복지법이 다시 전면개정<sup>68)</sup>되면서 무료 및 실비노인복지시설, 유료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시설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던 시설분류를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으로 세분화하였으며, 후기고령인구 증가와 단독노인세대 증가에 따라 개호 서비스를 별개의 시설로 독립, 추가함으로써 향후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시설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중요성을 반영했다.

1999년 2월에는 규제완화를 통해 시설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한편, 경로연금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이 있었다. 이 개정 조치를 통해 실비시설에 대해서는 입소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 규정이 만들어졌으나, 유료시설에 대해서는 비용수납 신고제 등이 폐지되었다.

2003년 5월에는 노인복지법 조문 개정이 아니라 1972년 제정되어 주택건설·공급·관리와 관련된 기본법으로서 역할을 한 주택건설촉진법이 주거복지 및 주택관리를 강화한 주택법으로 개정됨에 따른 개정이 있었다<sup>69)</sup>.

2004년 1월에는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인학대와 관련된 조문을 두고, 국가와 지자체가 학대받는 노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는 개정이 있었다. 2005년 3월에는 노인의료보호시설의 설치, 폐지 등의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개정이 있었다.

2005년 7월에는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들의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보급과 교육훈련을 전담할 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있었다. 2006년 12월에는 노인치매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시·군·구의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노인학대<sup>70)</sup>에 정신적·성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까지 포함하게 되었다.

68) 인구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치매 등 만성퇴행성 노인질환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노인생활의 안정을 위해 전국민연금이 실시되어도 연금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65세 이상 노인 중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소득지원과 노인취업 활성화를 도모하며, 노인복지시설 이용 및 운영체계 개편 등을 통하여 노인 보건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개정이 이루어졌다.

69) 2000년 1월 12일에도 비슷한 이유로 노인복지법 개정이 있었다. 당시의 개정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변화된 것이었다.

70) 법에서 정한 노인학대에는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2007년 8월에는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치매·중풍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이 증가하면서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가정에서 돌보는 것이 어렵고 그 가정의 비용부담<sup>71)</sup>이 과중한 점에서 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정 2007.4.27 법률 제8403호], 시행일 2008.7.1)<sup>72)</sup>으로 인해 무료·실비·유료시설의 구분이 폐지되는 개정이 있었다.

2011년 3월 30일, 입주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분양 또는 임대된 노인복지주택 거주자들의 민원을 국회가 받아들여 이들을 구제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 2008년 8월 4일 전에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 받은 노인복지주택에 대하여는 입소·양도·임대의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특례 규정을 마련하였다.

71)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되는 급여에는 현물과 현금급여의 두 가지가 있다. 현물급여는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에 해당하는 대인복지 서비스이다. 현금급여는 현물서비스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을 의미한다. 급여가 지급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재가수발급여와 시설수발급여로 구분된다. 재가수발급여는 수발 서비스 대상 고령자가 가정 등에서 일정한 시간 또는 단기간 동안 제공받는 수발급여를 말한다. 시설수발급여는 수발서비스 대상 고령자를 수발기관의 시설에 장기간 입소시킬 때 제공되는 급여를 말한다.

72) 2001년 8월 15일 김대중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 축사에서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을 제시한 이후, 2002년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당시 노무현 후보진영의 공약사항으로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이 포함되었다. 2003년 3월부터 2004년 2월까지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이 운영되었으며, 2004년 4월에는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가 구성되어 2005년 2월까지 운영되었다. 2005년 당정협의를 통해 노인요양보장제도기본안이 확정되었으며, 노인요양보장제도를 사회보험 방식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제도도입시기는 2008년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안으로 노인수발보험법안이 제출되어 2006년 2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국회에 제출되었다. 노인수발보험법안은 국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07년 4월 27일, 법률 제8403호)로 법률명이 변경되어 제정되었다. 법제정의 목적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제1조)”하는 것에 있다.

표 II-8-7 복지법개정 주요골자 및 노인복지주택 관련 조항 개정의 변화

시기	배경	주요골자	노인주거관련 시설규정
' 81.2.8 제정 및 시행	- 경로효친의 미풍양속 유지 - 노인건강보호시설 제공	- 저소득노인에 대한 국가보호 개념 확립	- 무료·유료양로시설/요양시 노인 복지센터 개념, 설립주체규정
' 89.12.30 전문개정 및 시행	- 노인문제의 심각성 인식	- 노인복지대책위원회 설립 -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국 가수당지급근거 마련	- 실비양로시설, 유료요양시설, 노인복 지주택 개념의 추가
' 93.12.27 개정 ' 94.6.28 시행	- 경제회정규제완화 (민간단체의 사회복지사업 참 여 활성화)	- 민간기업체나 개인의 유료노 인복지시설 설치 운영 허용	- 재가노인복지사업 - 가정봉사파견사업, 단기보호사업의 법 적 근거 - 유료노인복지시설(양로, 요양, 복지주 택) 개념 포함 - 노인복지주택은 임대형만 가능
' 97.8.22 전문개정 ' 98.5.23 시행	- 만성퇴행성 노인질환대처, 노인의 경제생활 안정	- 경로연금 지급 - 치매노인에 대한 연구, 관리 재활사업에 대한 지자체의무 강화 - 노인의 부양의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허용	- 유료(실비)복지주택은 임대외에 분양 도 허용 -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의료 시설, 노인전문병원 설치
' 99.2.8 개정 및 시행	- 규제완화를 통한 시설운영의 자율성 강화 - 경로연금제도 미비점 보완	- 노인복지대책위원회 폐지 - 경로연금대상자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정비	- 노인복지주택의 설치, 관리 및 공급에 대해 주택건설촉진법 관련 규정 준수 - 노인복지주택의 건축물 용도는 건축관 계법령에도 불구하고 노유자시설로 봄 - 양로시설, 실비노인복지시설 입소자에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 규정 -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비용 수납 신고제 폐지
' 03.5.29 개정 ' 03.11.30 시행	- 「노인복지법」 조문 개정이 아 닌, 관련법인 주택건설촉진법 이 주택법으로 개정됨에 따른 개정	- 타법개정	- 노인복지주택의 설치, 관리 및 공급에 대해 주택법 관련 규정 준수
' 07.8.3 개정 ' 08.8.4 시행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무 료/실비/유료기준 폐지 - 노인복지주택에 노인입소를 분 명히 규정	- 노인복지시설의 무료/실비/ 유료기준 폐지	- 실비노인복지주택은 폐지 - 유료노인복지주택은 60세 이상(배우 자는 기준이하라도 허용)에게만 분양 또는 임대하며, 거주역시 60세 이상에 게만 허용
' 11.3.30 개정 및 시행	- ' 08년 8월 4일 시행된 노인복 지주택 입소자격 조항에 위반 되는 노인복지주택 입주자의 민원해결	- 노인복지주택 특례 규정	- ' 08년 8월 4일 이전 건축법이나 주택 법에 의해 허가받은 경우에 한해, 입 소자격이 벗어나는 경우도 거주가능, 매매 또는 임대도 가능한 것으로 허용

자료: <http://www.law.go.kr/> 노인복지법 개정 현황 자료 분석하여 작성

## 나. 고령자의 가족 동거 권장 정책

관습적인 측면에서 강조되고 있는 자식의 부모부양, 그리고 부모부양의 상징인 동거를 권장하는 정책이 세제와 용자를 수단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1989년 일시적으로 3세대 동거를 전제로 하는 3세대 동거형 주택이 공급된 바 있고, 2002년부터 공공주택 물량 중 10%를 우선분양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 ① 소득세공제는 1988년 소득세법에 신설된 내용으로 소득세공제(소득세법 50조), 경로우대공제(소득세법 51조)가 있다. 소득세공제는 대상 60세(여55세) 이상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부양자에 한해 연간 1인당 100만원을 공제하는 제도이다. 경로우대공제는 부양가족 중 65세 이상인 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자에 대해 연간 50만원을 공제하는 제도이다. 가족동거를 권장하기 위해 도입하였으나 매우 미흡한 정책이다.
- ② 양도소득세면제(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역시 비슷한 시기에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따로 살다가 세대를 합친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조치로 도입되었다. 대상은 부모의 나이가 아버지의 경우 60세(어머니의 경우는 55세) 이상으로 부양가족공제 대상이고 먼저 매매하는 집에 3년 이상 살았으며, 세대를 합친 후 2년 이내에 집을 매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정책이다.
- ③ 주택자금우대지원은 국민주택기금 용자가 추진된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주 및 배우자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세대주가 전세보증금을 대출받을 때 500만원의 할증, 개인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 개량자금 용자를 받을 때 1000만원을 더 용자해주는 제도이다. 우대금액이 워낙 적기 때문에 동거를 권장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 ④ 3대 동거형 주택은 주택구입을 지원하면서 한편으로 자녀의 부모와의 동거를 권장하기 위해 1988년 도입되었다. 당시는 주택가격이 급등하던 시기로 일반 근로자가구가 주택을 구입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던 때였다. 공급을 담당한 대한주택공사는 주택설계를 위한 세미나의 개최와 설계도 현상모집 등의 단계를 거쳐 1988년에 서울 상계동에 3세대 주택을 건설하였다. 3세대 주택의 규모는 전용면적 85㎡이며 360호가 공급되었다. 주택유형은 동거형(同居型), 인거형(隣居型)의 2가지 유형이며, 양자는 모두 세대간에 침실과 화장실, 욕실이 분리되어 있다. 동거형과 인거형의 차이는 인거형은 현관이 2개라는 점이다. 3세대 주택의 경우 주택규모가 너무 협소하고, 향후 매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이후 확대·공급되지 못하고 중단되었다. 2000년 6월의 조사에 의하면 인거형 중 노인부부와 자녀부부가 거주하는 경우는 하나도 없었다고 한다(곽희석, 2003 : 30).
- ⑤ 직계존속 부양자 국민주택 규모 우선공급제도란 2002년 9월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하여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85㎡

이하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국민주택)은 주택공급량의 10% 범위내에서 우선 공급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신청 자격은 주택신청 자격을 가진 무주택세대주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해야 한다. 단,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전용면적 600㎡ 미만 신청시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0년 기준 3인 이하 가구 280만 5천원) 이하이어야 한다. 그러나 제도의 이용실적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상 언급한 고령자와 가족의 동거정책은 고령인 부모와 자식의 동거를 장려하는 것이지, 고령자에게 적절한 주거를 제공하는 정책으로 보기에 는 무리가 있다.

#### 다. 신규 국민임대주택<sup>73)</sup>에서 고령입주자를 위한 주택개조

2004년 9월 건설교통부는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국민임대주택 최초 분양자중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이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분양계약할 때, 편의시설을 고쳐주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2004년 처음 도입 시에는 편의시설은 11가지였으나, 2005년 12월 14가지로 편의시설이 늘었으며, 입주자가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국민임대주택의 공급자인 대한주택공사나 지자체에 요청하면, 사업자가 입주 전까지 무료로 설치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고령자에 대해서는 욕실에만 한정하여 편의시설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는 점에서 고령자를 위한 기준으로 보기에 는 미흡하다.

2004년 10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대한주택공사가 공급한 국민임대주택 57,279호에 대해 편의시설 설치를 요청한 가구는 125가구였다. 고령자와 지체장애인 모두 요청할 수 있는 욕실에 적용된 편의시설(5종)의 이용실적을 보면, 고령자의 요청이 53.8%로 지체장애인보다 많았다. 고령자의 요청사항은 단차제거 9건, 미끄럼 방지 타일 77건, 출입문 확장 10건, 출입문 개폐방향 변경 8건, 좌식샤워시설 15건으로 총 119건이었다. 좌식샤워 시설은 2005년 12월 이전에는 재료비를 부담해야 했던 점에서 이용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생각된다.

73) 국민임대주택은 처음에는 임대기간이 30년인 임대주택이다. 건설비의 30%는 재정에서 지원되면, 40%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된다. 입주자격은 50-60㎡ 이하인 주택은 무주택세대주로 당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에게 공급된다. 40-50㎡미만 주택은 무주택세대주로 당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에게 공급한다.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시장임대료에 비해서는 약 40% 정도 저렴하다. 2002년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크게 부족할 것이 문제라는 인식을 한 정부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표 II-8-8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기준(국민임대주택)

구분	시설 개요	대상
현관	① 마루급틀 경사로 : 휠체어 이동에 지장이 있는 단차극복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체장애인
	② 도어 카메라 높이 조정 :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욕실	③ 통행에 지장이 되는 바닥의 단차를 줄임	노인가구 및 지체장애 가구
	④ 바닥에 미끄럼 방지타일을 시공	
	⑤ 출입문 규격 확대 : 출입구 폭은 80cm 이상(단, 구조적으로 가능한 지구 한함) ⑥ 출입문 개폐방향 변경 (안여닫이-밖여닫이)	
	⑦ 좌식 샤워시설 : 욕조 제거 후 샤워공간 확보 및 안전손잡이 (L자형2개, -자형1개) 설치	
주방 가구	⑧ 좌식 싱크대 : 의자 사용이 가능한 싱크대 설치	지체장애 가구
	⑨ 가스밸브 높이조정 :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내외)	
거실	⑩ 비디오폰 높이조정 : 휠체어에 앉아서 이용이 가능한 높이(1.2m내외)	청각장애 가구
	⑪ 시각경보기 : 세대내 1개소 설치	
	⑫ 야간센서 등 : 욕실출입구 벽체 하부에 설치	
유도 시설	⑬ 음성유도신호기 :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주동입구에 설치	시각장애 가구
	⑭ 점자 스티커 :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동현관 입구의 램프난간·계단난간, 내부경사로 난간에 점자 스티커를 부착.	

### 라. 고령자 주택개조기준 마련

2005년말 건교부 주거복지지원팀은 고령자 가구가 기존주택을 개조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주택개조 기준을 발표<sup>74)</sup>하였다. 노인가구 주택개조 기준은 개조공간을 현관, 침실, 거실, 욕실·화장실, 부엌·식당, 다용도실, 발코니 등 6개 공간으로 구분하고 개조항목을 보조발판, 미끄럼방지시설, 비상연락장치, 안전 손잡이 및 목욕용 의자 설치 등 38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개조항목은 기초기준 21항목, 유도기준 1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6년말에는 주택개조기준에 맞추어 개조공사를 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고령자주택개조 매뉴얼을 만들었으며, 이를 전문가용과 고령자인 이용자용 책자로 만들어서 2007년 8월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였다. 고령자 주택개조 매뉴얼은 현재 건설교통부의 홈페이지에도

74) 노인가구 주택개조기준은 건설교통부 지침(주거복지지원팀-883호 : 2005.12.9)으로 발표되었다. 주택개조기준은 집안 내 고령자 안전사고의 원인이 노인 신체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주택구조와 시설물에 있다는 소비자보호원의 연구결과에 기초해 한국주거학회의 연구용역을 거쳐 제시된 것이다.

게재되어 있어 누구라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건설교통부의 주거환경팀에서는 고령자를 위한 공동주택 신축기준을 2006년 12월말에 만들었으며, 택지개발팀도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의 시설기준을 만들었다.

게다가 2006년 9월에는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 우리나라 고령자 및 비고령자의 인체 특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범용설계(Universal Design)개념이 적용된 건축 계획 방법과 설계 규격을 제시하는 ‘고령자 배려 주거시설 설계치수 원칙 및 기준<sup>75)</sup>’을 한국산업규격(KS)으로 제정하였다.

#### 마. 고령자 전용 국민임대주택의 공급

2004년 국민임대주택 453호를 고령자 전용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시범사업이 실시된 이래, 고령자 전용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 지추진되어 2010년말까지 총 7,953호의 사업승인이 추진되었다. 고령자 전용임대주택은 지자체와 LH가 건설하며 국민임대주택 단지에 일반가구용과 함께 건설되거나 독립단지로 건설되고 있다.

표 II-8-9 고령자전용 임대주택 사업계획 승인 실적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고령자전용 국민임대주택	2,201	569	497	685	680	2,868

자료 : 고령자전용사업승인실적은 국토부 내부자료

특히, 2011년 국토해양부는 지침으로 보금자리주택중 30년 이상 임대하는 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총 세대수의 5%(비수도권은 3%)를 고령자 전용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한 바, 앞으로 고령자 전용임대주택의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바. 고령자주거안정법안 제정

2008년 국토해양부는 고령기에 있어서는 주거가 더욱 중요해짐을 감안하여 고령자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시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겠다는 계획을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한 바 있다. 사전단계로 2006년에는 연구용역<sup>76)</sup>을 발주한 바 있으며, 2007년 12월

75) 주거시설 내부의 표준화 고려대상은 다음과 같다. 공간별 - 현관, 통로, 거실, 침실, 부엌 및 식당, 화장실 및 욕실, 발코니 등이며 요소별 - 가구, 문, 창문, 핸드레일, 조명, 스위치 및 콘센트, 비상장치 등이다.

76) 주택도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으며, 2006년 12월 13일 1차례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였다.



공청회를 거친 바 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고령자 주거지원계획의 수립, 고령자의 안전하고 자립적인 주거생활을 위한 기준 설정, 고령자 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 고령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개조를 위한 용자, 고령자 주거지원센터의 설치 등이 주요내용이다<sup>77)</sup>. 2011년 고령자주거안정법안은 국회법안 소위에 계류 중이며, 정부는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 2) 국내시장 동향

### 가. 고령자 주거 현황

- 1980년부터 2010년까지의 일반가구에서 고령자를 세대주로 하는 가구의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령자를 세대주로 하는 가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은 고령자 증가가 근본적인 원인이지만, 고령자 1인 또는 부부가구의 비율이 급증하는 것도 원인이다. 2010년 현재 고령자를 세대주로 하는 가구 311만 1천 가구 중 고령자 1인과 부부로 구성된 가구가 2/3를 상회한다.

표 II-8-10 일반가구 중 고령자가 세대주인 가구 비중(1985~2010년)

(단위 : %)

년도	일반가구	고령자가 세대주인 가구	고령자만으로 구성된 가구 (1인, 부부)		일반가구 중 고령자가 세대주인 가구 비율	일반가구 중 고령자로만 구성된 가구 비율	고령자를 세대주로 하는 가구 중 고령자 단독가구비율
1985년	9,571	677	261		7.1	2.7	38.6
			115	146			
1990년	11,355	963	422		8.5	3.7	43.8
			193	229			
1995년	12,958	1,251	730		9.7	5.6	58.4
			349	381			
2000년	14,312	1,734	1,117		12.1	7.8	64.4
			543	574			
2005년	15,887	2,448	1,611		15.4	10.1	65.8
			783	828			
2010년	17,339	3,111	2,112		17.9	12.2	67.9
			1,066	1,046			

자료 : KOSIS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토대로 작성

77) 주된 내용은 건설교통부, 주택도시연구원 주최 고령자주거안정법안 공청회(2007.12.18)에 소개되어 있다.

- 65세 이상 가구주 대상 동,별거형태는 1인가구 34.2%, 1세대가구 34.8%, 2세대가구 22.6%, 3세대 가구 7.9%, 기타 0.5%(2010년)로 1인가구의 비율이 2000년에 비하면 약 3%가량 늘었으며, 이는 2020년, 2030년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반면 2세대가구, 3세대가구의 비율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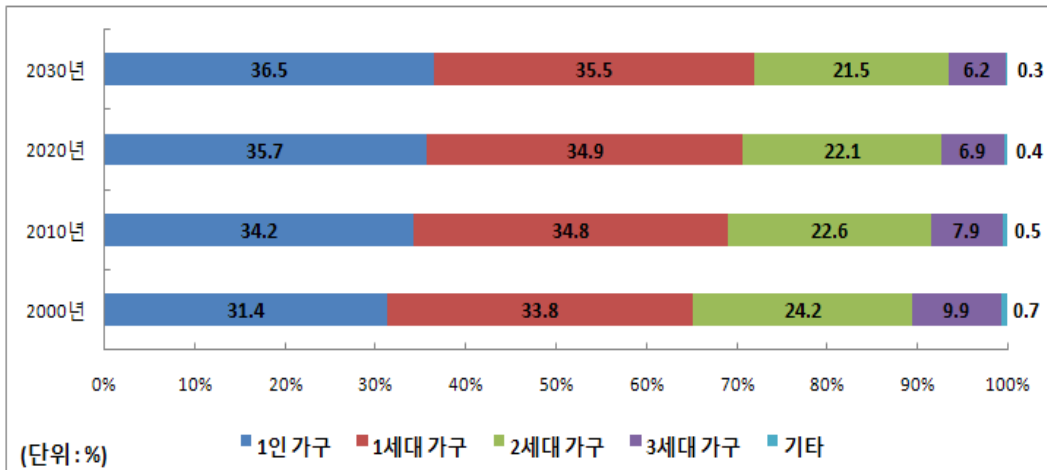


그림 II-8-2 연도별 65세 이상 가구주 대상 동,별거형태

자료 :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장래가구추계  
 주 : 기타는 4세대 이상 및 비친족가구임

- 아직까지 사회적 부양보다는 가족부양이 중심이 되는 한국에서는 고령자가 자녀와 동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고령자의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물론 자녀와 떨어져 산다고 해서 자녀가 부양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니며, 자녀와 동거한다고 해서 적절한 부양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경제적 자원을 감안하거나 고령자의 신체적 쇠퇴를 감안할 때, 자녀와의 동거는 고령자 생활을 결정하는 것에서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고령자만 거주하는 가구가 늘어나는 것은 고령자만이 거주해도 안전하고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주택을 필요로 함을 의미한다. 또한 고령자 가구의 경우 다양한 특성을 가지는 점에서 다양한 주택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다만 고령기에는 주거이동을 원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점에서 새로운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 외에 기존 주택의 개조 및 수선을 지원하는 정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 2010년 고령자 가구의 자가거주율을 보면 74.8%로 일반가구 자가거주율 54.2%에 비하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 고령자의 연령대별 거주유형을 보면, 70세에서 74세 사이의 고령자의 자가거주율이 76.1%로 가장 높으며 이후 점차 하락하여 85세 이상이 되면 69.7%로 떨어진다.

표 II-8-11 2010년 고령자 연령대별 거주 유형

(단위 : %)

	자가	전세	보증부 월세	월세	사글세	무상
65세-69세	75.3	11.8	8.9	1.4	1.0	1.7
70세-74세	76.1	11.6	8.0	1.3	1.0	1.9
75세-79세	74.8	12.0	8.1	1.4	1.2	2.4
80세-84세	71.7	13.0	9.0	1.7	1.4	3.2
85세 이상	69.7	12.9	9.5	1.9	1.7	4.3
전체	74.8	11.9	8.5	1.4	1.1	2.2

자료 :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 고령자의 지난 1년 동안의 낙상장소로는 집밖이 61.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계단 14.4%, 화장실,욕실 11.3% 순이었다.
- 또한 낙상장소로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한 집 밖의 낙상장소로는 길(도로)에서의 낙상이 65.4%로 가장 많았고 야외(논밭) 18.0%, 마당 16.6%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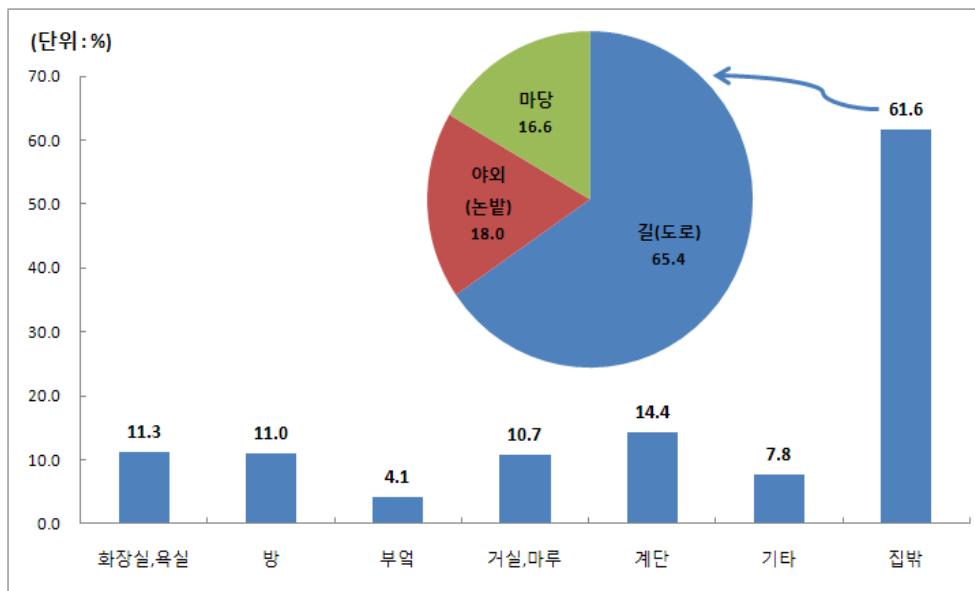


그림 II-8-3 지난 1년 동안의 낙상 장소(중복응답)

자료 : 보건복지부, 2008 노인실태조사-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기초분석보고서

주 : 1. 낙상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2,260명을 대상으로 함(조사대상은 60세 이상)

2. 집밖(실외)에서 낙상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1,393명 중 구체적 장소를 표기하지 않은 676명을 제외함

- 낙상 경험이 있는 60대 이상 조사 대상자의 낙상 이유로 다리 접질림이 37.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미끄러운 바닥이 29.2%, 갑자기 어지러움이 25.1%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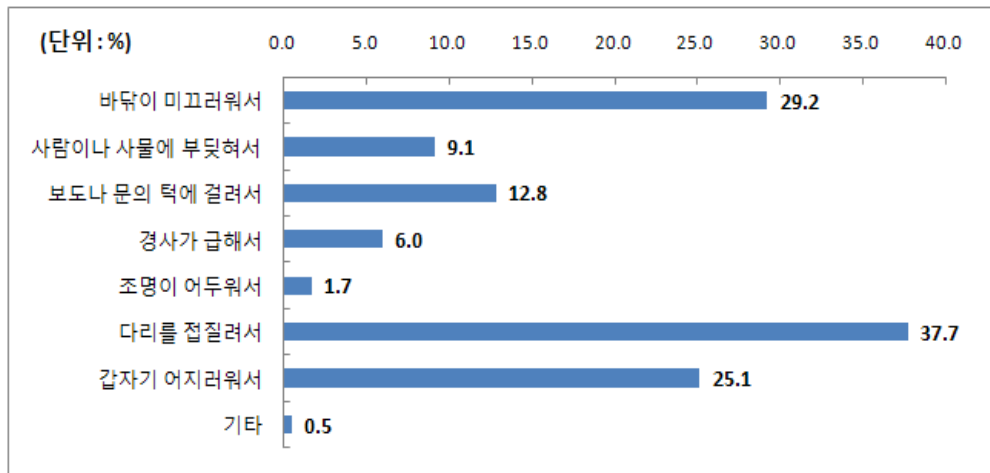


그림 II-8-4 낙상 경험이 있는 60대 이상 조사 대상자의 낙상 이유(중복응답)

자료 : 보건복지부, 2008 노인실태조사-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기초분석보고서

주 : 1. 낙상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2,260명을 대상으로 함(조사대상은 60세 이상)

2. 집밖(실외)에서 낙상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1,393명 중 구체적 장소를 표기하지 않은 676명을 제외함

- 최근 노년층에게 인기가 있는 실버타운은 법적으로 그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현행 노인복지법상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양로시설 또는 유료노인복지주택에 속한다. 예를 들면, 삼성노블카운티와 같은 실버타운은 보증금과 월 생활비를 납부하고 일정기간 입주하는 유료 양로시설로 분류되고, SK 그레이스힐과 같은 실버타운은 분양을 통해 소유권을 사고파는 주거형태로 유료노인복지주택에 속한다. 따라서, 실버타운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의존하는 기존의 양로원이나 요양원과 달리 입주자들이 낸 입주금으로 운영되고 있어 저소득 노인보다는 주로 중간소득층과 고소득 노인층들을 대상으로 한다.
- 노인들을 위한 일반주택 개보수산업은 주로 65세이상 노인 중 자기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계층이 주요 수요 대상이 될 수 있다.<sup>78)</sup>
- 2007년 국토연구원의 노인가구조사에 의하면 만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26.1%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일부를 개조하고 싶은 것으로 조사되어, 이를 바탕으로 2010년 311만 고령가구 중 노인친화적 주택 개보수를 선호하는 고령가구는 약 61만가구로 추계할 수 있

78) 만65세 이상 노인이 포함된 노인가구의 자가점유율은 전국 75%로 일반가구와 장년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통계청, 2010년 인구총조사결과)

다.79) 개조희망사항 1순위로는 수도권과 도지역의 경우는 단차제거, 광역시는 화장실 욕실손잡이로 조사되었다.

표 II-8-12 지역별 주택 개조 희망여부와 희망사항(노인개인)

(단위 : %)

구분	개조 희망*	개조 희망사항									
		복도 계단 손잡이	화장실 욕실 손잡이	화장실문	단차제거	양변기	바닥재	복도 출입문 넓히기	응급 비상벨	부엌 작업대 높이	기타
수도권	19.5	12.4	20.7	5.8	24.0	3.8	17.8	1.5	2.7	1.9	9.5
광역시	21.7	13.2	26.9	7.2	17.6	13.5	10.9	0.0	2.5	0.7	7.5
도지역	33.9	7.8	18.4	6.5	24.7	20.5	8.1	1.0	3.5	1.8	7.7
전국	26.1	9.9	20.3	6.4	23.4	14.6	11.4	1.0	3.1	1.7	8.2

자료 : 국토연구원(2007). 2007년노인가구실태조사

주 : 1. 주택 내 안전사고 예방 및 신체적 불편 해소를 위해 개조하고 싶은 공간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2. 개조하고 싶은 공간 1순위

- 가구주의 연령이 65세 이상이면서 혼자 사는 독거노인가구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고령친화주거시설과 환경을 필요로 하는 수요층도 많아지고 있다. 2011년 고령자통계에 의하면 2010년 독거노인가구수는 102만 가구에서 2030년 234만 가구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노인주거복지시설 수는 397개소로 전년대비 37개소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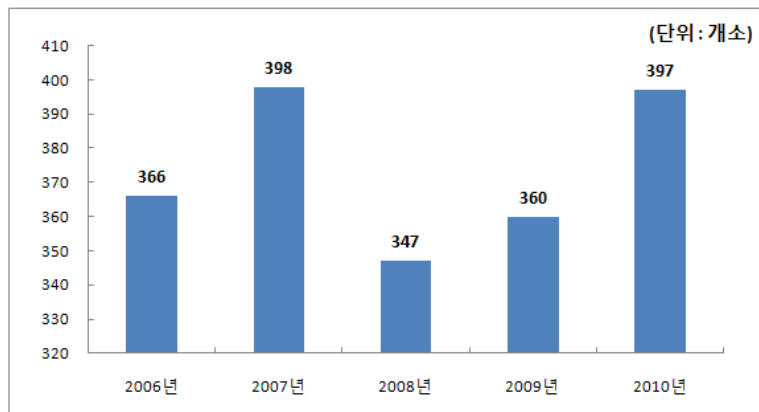


그림 II-8-5 연도별 노인주거복지시설 현황

자료 : 보건복지부 통계포털, 2011년 노인복지시설 현황 자료

79) 고령친화 주택산업 시장규모 분석시 사용됨(주택개보수가 예상되는 고령가구(58만가구)는 총고령가구(2,982,240)중 자가점유율(75%)과 개보수희망비율(26.1%)를 바탕으로 추계)

- 2010년 노인주거복지시설 현황은 입소정원 17,270명, 총 397개소 중 양로시설이 300개소, 노인공동생활가정이 75개소, 유료노인복지주택이 22개소였다.
-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입소정원 131,074명, 3,852개소로 주거복지시설 수와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중 노인요양시설 수가 2,429개소로 가장 많았다.

표 II-8-13 2010년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현황<sup>80)</sup>

(단위 : 개소, 명)

종 류		시설수	입소정원
노인주거복지시설	소 계	397	17,270
	양로시설	300	11,906
	노인공동생활가정	75	618
	유료노인복지주택	22	4,746
노인의료복지시설	소 계	3,852	131,074
	노인요양시설	2,429	107,506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346	11,361
	노인전문병원	77	12,207

자료 : 보건복지부 통계포털, 2011년 노인복지시설 현황 자료

- 선호하는 노후부양방법으로는 가족과 정부·사회가 47.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가족이 36%, 스스로 해결이 12.7%, 정부·사회가 3.9% 순이었다. 가족의 부양형태는 모든 자녀가 62.4%로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자식 중 능력있는 자가 14.3%, 장남 또는 맏며느리가 13.8%로 나타났다.
- 65세 이상의 경우 가족이 38.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가족과 정부·사회가 37.8%, 스스로 해결이 18.4% 정부·사회가 5.5% 순이었다.
- 가족의 부양형태는 모든 자녀가 47.8%, 장남 또는 맏며느리가 28.2%, 자식 중 능력 있는 자가 14.3%로 나타났다.

80) 유료노인복지주택 입소정원은 08 및 07년에는 시, 군, 구 조사 자료에 의거 입소정원을 표기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주택은 1세대에 1명 또는 여러명이 거주 가능하므로 입소정원이 없음. 따라서 '09년부터는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정원을 세대수로 표기함('08년 노인복지주택 세대수는 2,596세대, '07년 2,012세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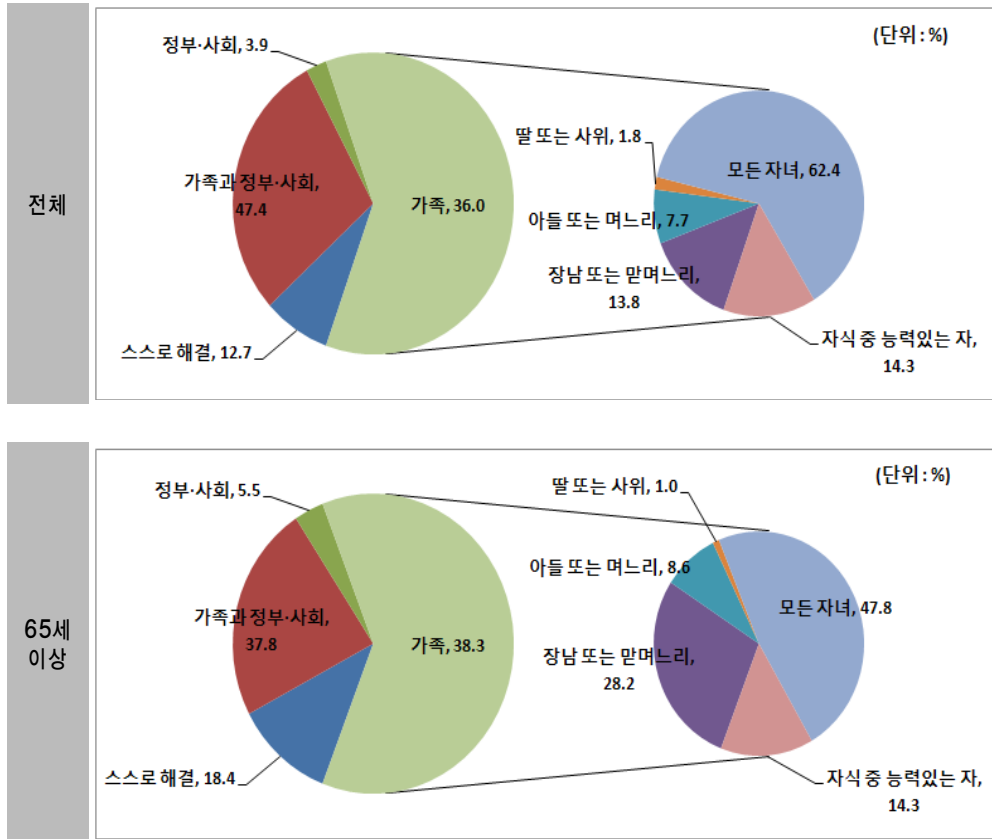


그림 II-8-6 선호하는 노후부양방법(2010년)

자료 :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보건/사회/복지, 사회조사

- 2004년 국민임대주택 453호를 고령자 전용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시범사업이 실시된 이래, 고령자 전용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 지추진되어 2010년말까지 총 7,953호의 사업승인이 추진되었다. 고령자 전용임대주택은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하며 국민임대주택 단지에 일반가구용과 함께 건설되거나 독립단지로 건설되고 있다.
- 특히, 2011년 국토해양부는 지침으로 보금자리주택중 30년 이상 임대하는 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총 세대수의 5%(비수도권은 3%)를 고령자 전용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한 바, 앞으로 고령자 전용임대주택의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표 II-8-14 고령자전용 임대주택 사업계획 승인 실적

(단위 : 호)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고령자전용국민임대주택	2,201	569	497	685	680	2,868

자료 : 고령자전용사업승인실적은 국토해양부 내부자료

## 나. 국내 주택산업 현황

- 고령친화주거산업의 모태산업인 신규주택산업현황을 먼저 살펴보면, 2008년 분양상한제 확대시행 이후 민간 주택공급 실적이 감소하면서 2010년 현재까지 40만호 이하의 주택이 공급되고 있다.
- 연도별 주택건설실적은 2005년 463,641호에서 2007년 555,792호로 92,151호가 증가하였다. 2008년 371,285호로 전년에 비하여 급격히 감소하였다가 다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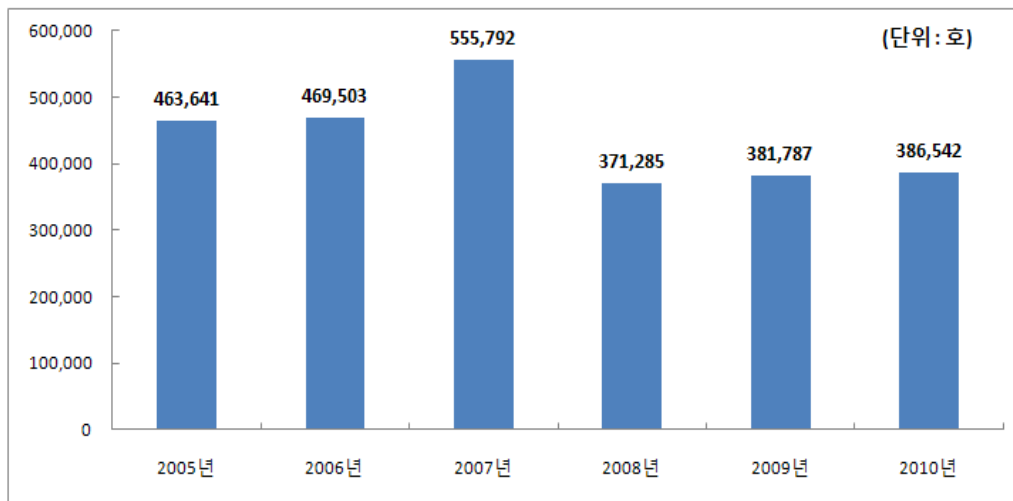


그림 II-8-7 연도별 주택건설실적

자료 :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주택건설실적통계  
 자료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 2010년 주택건설실적은 386,542호로 전년보다 4,755호가 증가하였다. 항목별 주택 건설실적은 공공주택이 138,315호로 전년보다 감소한 반면 민간주택은 248,227호로 증가하였다.



표 II-8-15 연도별 항목별 주택건설실적

(단위 : 호)

항목		2009년	2010년
합계		381,787	386,542
공공주택	소계	168,300	138,315
	국가기관	0	0
	지자체	22,882	43,430
	주택공사	141,049	88,781
	주택사업자	4,369	6,104
	기타	0	0
민간주택	소계	213,487	248,227
	주택공사	0	0
	주택사업자등	213,487	248,227

자료 : 1.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주택건설실적통계  
 2.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 주거유형별 주택건설실적은 아파트가 71.7%로 2005년 대비 17.9%p 하락하였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단독주택 16.1%, 다세대 주택 10.7%, 연립주택 1.5% 순이었다.
- 또한 지난 5년 동안의 주택건설실적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줄면서 그 외 주택건설의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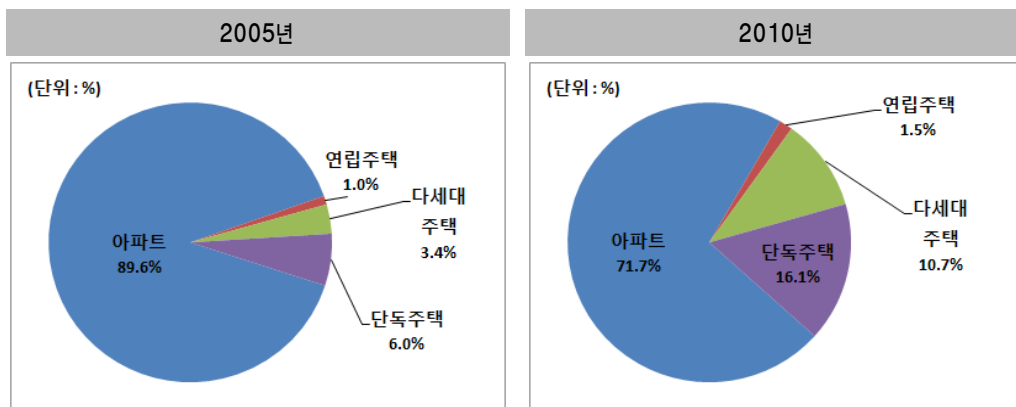


그림 II-8-8 주거유형별 주택건설실적

자료 : 1.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주택건설실적통계  
 2.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 연도별 총조사 주택규모는 2000년 11,472천호, 2005년 13,233천호, 2010년 14,677천호로 그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주택 수가 증가하면서 빈집 수도 513천호에서 794천호로 10년 동안 281천호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조사 주택규모는 2005년 대비 11% 증가하였다.

표 II-8-16 연도별 총조사 주택규모

(단위 : 천호, %)

조사연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총 주택	소계	5,434	6,271	7,357	9,570	11,472	13,223	14,677
	주택	5,319	6,104	7,160	9,205	10,959	12,495	13,884
	빈 집	115	167	197	365	513	728	794
증가율		-	15.4	17.3	30.1	19.9	15.3	11.0

자료 :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 결과(가구 주택 부문)

## 2.3 국내 시장규모 및 전망

### 1) 시장규모 분석 방법

#### 가. 기준연도 시장규모 추정 방법

모태산업(주거산업)의 시장규모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자료원으로 주택 인허가 자료(국토해양부), 인구주택총조사 등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 시장규모 분석을 위한 자료로 이용하였다.

모태산업 대비 고령친화 주거산업의 시장규모를 분석하기 위하여 몇 가지 가정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 주택은 기기, 한방 관련 상품처럼 소모성 자재가 아니기 때문에 고령기에 갑자기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고령자용 주거전용 시설이 대부분 보증금과 이용료를 내는 시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택을 개조하는 시장의 규모도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거의 시장규모를 추정함에 있어서 이용료 중심으로 주거시장 규모를 파악하려면, 모태산업의 규모를 추정하는 것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한다. 따라서 고령친화주택 신규 시장규모는 매년 신축되는 주택시장 규모를 추정하고, 그 가운데 고령자 가구가 구입하는 주택가격을 추정하였다. 즉, 이용료 시장이 아닌 신축되는 주택을 중심으로 시장규모를 파악한 것이다.

개조시장의 경우도 주택개조 시장을 추론하고, 고령자가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을 고령친화 주거산업의 개조시장으로 파악하였다.

결국 본 연구에서 모태산업의 규모란 2010년도에 신축된 신규주택 가격과 주택개조가 이루어진 개조비용으로 구성된다.

먼저 고령자의 주택구입시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기준연도의 신축된 신규주택 시장규모를 추정하게 된다. 즉, 이용료 시장이 아닌 신축되는 주택을 중심으로 시장규모를 파악한 것이다.

$y_i = (\text{신축가구수}_i) \times (\text{평당분양가}_i) \times (\text{평형}_i) \times (\text{가중치}_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ath>y_i</math>: <math>i</math>연도의 고령친화 신규주택관련 시장규모</li> <li>▪ 신축가구수<math>_i</math>: <math>i</math>연도의 신축되는 가구수</li> <li>▪ 평당분양가<math>_i</math>: <math>i</math>연도의 공공 및 민간의 평당 분양가<sup>81)</sup></li> <li>▪ 평형<math>_i</math>: <math>i</math>연도의 평균 규모<sup>82)</sup></li> <li>▪ 가중치<math>_i</math>: 주택구입과 관련된 고령자 가중치<sup>83)</sup></li> </ul>

개조시장의 경우도 전체 주택개조시장을 추정한 후, 고령자가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을 고령친화 주택산업 중 개조시장으로 파악하였다.

$y_i = (\text{리모델링 착공면적}_i) \times (\text{리모델링 단가}_i) \times (\text{가중치}_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ath>y_i</math>: <math>i</math>연도의 고령친화 리모델링관련 시장규모</li> <li>▪ (리모델링 착공면적<math>_i</math>) × (리모델링 단가<math>_i</math>): <math>i</math>연도의 리모델링 시장규모<sup>84)</sup></li> <li>▪ 가중치<math>_i</math>: 총가구대비 개보수 희망 고령자 가구비<sup>85)</sup></li> </ul>

81) 2011년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자료를 참조하였다.

82)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파악된 전국 평균규모(20.4평)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83) 고령자의 경우 신축주택구입이 소극적인 점을 감안하여 신규주택의 1%만을 고령자 가구가 구입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분석하였다. 고령자 구입률은 2005년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의 가정을 적용한 것이다.

84) 리모델링 착공면적은 국토해양부의 ‘건축물 착공통계’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면적당 리모델링 단가는 [(건물건설투자/건축착공면적)\*신축대비 리모델링단가비중]으로 자세한 도출방법은 윤영선·박철한(2011) “건축물 리모델링 시장의 부문별 성장 추이와 전망” 참조하였다.

85)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총가구수는 1,715만가구로 이중 자신의 주택을 소유한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수는 233만가구이며, 이중 주택 개·보수를 희망하는 비율은 26.1%(국토연구원, 노인주거실태조사 자료)로, 실제 주택 개·보수 가능 고령자가구 비율을 산정하였다.

## 나. 시장규모 전망(예측) 방법

고령친화 주거산업의 2020년까지의 시장규모를 예측하기 위하여, 기준연도의 시장규모를 추정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신규주택 가격과 주택개조 비용으로 구분하여 전망(예측)하였다.

먼저 고령자의 주택구입시장을 살펴보면, 신규공급 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수를 바탕으로 고령친화주거산업의 신규주택산업 부문의 규모를 예측하였다.

2011년~2015년 신축가구수는 국토해양부 택지개발사업지구 통계를 기초로 하고 있으며, 2016년~2020년 신축가구수는 2011~2015년 자료의 연간평균값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을 가정하여 추정하였다. 또한 평당분양가, 평형, 가중치<sup>86)</sup> 등은 2010년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여 전망하였다.

리모델링관련 주거산업의 경우 성장잠재력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예측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기존 10년간 시장규모를 바탕으로 추정하였다. 2001~2010년간의 리모델링 시장규모를 단순선형회귀모형(OLS : Ordinary Least Square)을 2005년 불변가격을 바탕으로 추계하였다.<sup>87)</sup>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에 의한 가구수를 반영하였으며, 기준연도의 리모델링관련 시장규모 추정에 사용된 개보수 희망률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 2) 시장규모 추정 및 예측 결과

### 가. 기준연도 시장규모 추정 결과

- 평당분양가(공공부문이 1,044만원, 민간부문은 1,009만원)와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조사된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 규모(20.4평, 84㎡)를 바탕으로 2010년 신규주택관련 고령친화 주거산업의 규모를 추정하면, 총 9,441억원에 이른다.

표 II-8-17 2010년 고령친화 주거산업 신규주택관련 시장규모

(단위 : 호, 만 원, 평, 억 원, %)

구분		신축가구수	평당 분양가	평형	고령자구입율	신규주택 시장규모
주택 공급	공공	248,227	1,212	20.4	1	6,137
	민간	138,315	1,171	20.4	1	3,304
총계		386,542				9,441

자료 : 국토해양부, 통계청, LH주택공사, 국토해양부 국정감사(2011),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2007)

86) 고령층의 경우 주택보유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고, 주택을 지속적으로 보유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신축가구 중 고령자 구입율(1%)은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87) 리모델링 모태산업의 구체적 추정방법은 윤영선·박철한(2011)을 참조

○ 국토해양부의 ‘건축물 착공통계’자료에 의하면, 리모델링시장<sup>88)</sup>은 신축과 대비되는 분야로 건축 구분별 통계 중 신축을 제외한 증축·개축·이전·대수선 항목에 해당되는 부문을 포함하고 있다. 연도별 주거용 건축물 리모델링 착공면적을 살펴보면 2004년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여 2010년 현재까지 70만㎡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03년의 113.2만㎡ 과 비교하면 2010년 주거용 리모델링 착공면적은 70.5만㎡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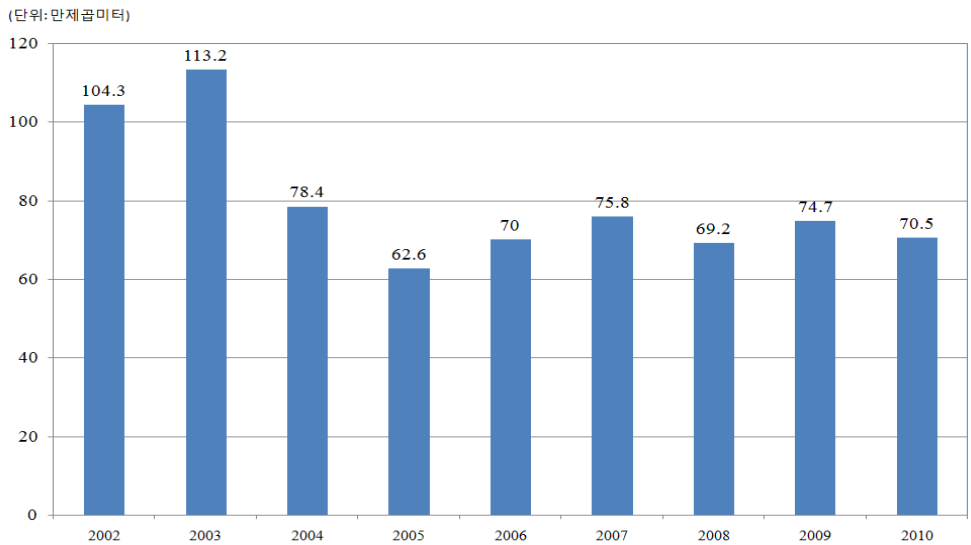


그림 II-8-9 연도별 주거용 건축물 리모델링 착공 면적(2002-2010)

자료 : 국토해양부, 2011.

○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총가구수는 1,734만가구로 이중 자신의 주택을 소유한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수는 233만가구이다. 하지만, 고령자 주택 자가소유 가구 중 주택개·보수를 희망하는 비율은 26.1%로<sup>89)</sup>, 실제 주택 개·보수 가능 고령자 가구수는 61만 가구로 추정된다. 따라서 총가구 대비 개보수 희망 고령자가구 비율은 3.5%로 아직까지는 저조한 실정이다.

88) 리모델링은 신축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기존 건축물의 유지·보수·개수를 포함하는 활동으로 현행 건축법에서는 리모델링을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89) 국토연구원 (2007). 2007년 노인주거실태조사

표 II-8-18 총가구대비 개보수희망 고령자 가구비율 변화

(단위 : 호, %)

연도	총가구수(A)	고령자 가구중 자가 가구수(B)	개보수 희망률(C)	실제 개보수가능 고령자가구 수(D=B*C)	총가구대비 개보수희망고령자 가구비율(E=D/A)
2000년	14,311,807	1,318,126	26.1	344,031	2.40
2005년	15,887,128	1,852,385	26.1	483,472	3.04
2010년	17,399,422	2,327,913	26.1	607,585	3.50

자료 :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각 년도 인구주택총조사

- 리모델링 관련 고령친화주거산업의 시장규모는 주거용 리모델링 모태산업의 시장규모를 바탕으로 도출되었다. 연도별 주거 리모델링관련 모태산업규모는 각 해의 리모델링 착공 면적과 면적당 리모델링 단가를 바탕으로 도출되었으며, 5,000억 원~9,000억 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주거용 리모델링 사업 중 고령자 거주주거 산업부분은 총가구대비 개보수 희망 고령자 가구비율을 통해 추정되었는데, 2008년 293.43억 원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0년 175.01억 원에 이르고 있다.

표 II-8-19 연도별 고령친화 주거산업 리모델링관련 시장규모(전략품목)

(단위 : 억 원, %)

연도	총 주거 리모델링 시장규모 <sup>90)</sup>	가중치(총가구대비 개보수희망 고령자 가구비율(E))	리모델링관련 고령친화주거산업시장 규모
2005년	5000	3.04	151.97
2006년	6000	3.13	187.89
2007년	5000	3.22	161.19
2008년	9000	3.32	298.43
2009년	7000	3.41	238.56
2010년	5000	3.50	175.01

자료 : 국토해양부(2011), 통계청(2011), 국토연구원(2007), 운영선·박철한(2011)를 바탕으로 저자가 재구성

주 : 2005년 불변가격 기준임.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연평균치를 적용하여 조사되지 않은 해의 가중치를 추정

- 따라서, 고령친화주거산업의 총 규모는 2010년 현재 신규주택시장규모 9,441억 원과 리모델링관련 시장규모 175억 원을 합친 총 9,616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90) 리모델링 시장규모=㎡ 면적당 리모델링 단가×리모델링 착공면적(㎡). 리모델링 착공면적은 국토해양부의 ‘건축물 착공 통계’에 의해 알고 있으며, 리모델링 단가는 아래의 수식으로 도출. 면적당 리모델링 단가=(건물건설투자/건축착공면적)×신축대비 리모델링단가비중. 자세한 도출방법은 운영선·박철한(2011) “건축물 리모델링 시장의 부분별 성장 추이와 전망” 참조

표 II-8-20 2010년 고령친화 주거산업 시장규모

(단위 : 억 원, %)

	신규주택 시장규모	리모델링 시장규모	합계
고령친화 주거산업	9,441	175	9,616
모태산업	944,149	5,000	949,149

자료: 1. 국토해양부, 통계청, LH주택공사, 국토해양부 국정감사(2011),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2007)  
 2. 국토해양부(2011), 통계청(2011), 국토연구원(2007), 윤영선·박철환(2011)를 바탕으로 저자가 재구성  
 주: 2005년 불변가격 기준임

### 나. 시장규모 전망(예측) 결과

- 신규주택산업전망은 향후 5년간 준공될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추정되었는데, 2011~2015년 동안 준공될 택지개발 사업지구내 계획된 총 주택물량은 131만호로 연간 26만호가 공급되는 규모이다.

표 II-8-21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주택공급 예정주택 수

(단위 : 호, %)

준공년	전국		수도권		지방		해당기간의 연간평균
2011년	338,563	100.0%	239,275	70.67%	99,288	29.33%	전 국 : 261,136 수도권 : 185,282 지 방 : 75,854
2012년	220,610	100.0%	160,897	72.93%	59,713	27.07%	
2013년	211,240	100.0%	163,525	77.41%	47,715	22.59%	
2014년	179,822	100.0%	98,403	54.72%	81,419	45.28%	
2015년	355,447	100.0%	264,311	74.36%	91,136	25.64%	
2016년	261,136	100.0%	185,282	70.95%	75,854	29.05%	전 국 : 261,136 수도권 : 185,282 지 방 : 75,854
2017년	261,136	100.0%	185,282	70.95%	75,854	29.05%	
2018년	261,136	100.0%	185,282	70.95%	75,854	29.05%	
2019년	261,136	100.0%	185,282	70.95%	75,854	29.05%	
2020년	261,136	100.0%	185,282	70.95%	75,854	29.05%	

자료 : 국토해양부 택지개발사업지구 통계 (2010.12)

- 주 : 1. 2011년~2015년 주택공급예정 주택수는 국토해양부 택지개발사업지구 통계를 기초를 하고 있으며, 2016년~2020년 주택공급예정 주택수는 2011~2015년 자료의 연간평균값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을 가정하여 추정하였음.  
 2. 개발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준공년도가 정해지지 않은 주택공급물량은 주택예정주택 주택수에서 제외되었음.

- 따라서, 신규공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수를 바탕으로 고령친화주거산업의 신규주택산업 부문의 규모를 측정하면 2011년 8,371억에서 2014년에는 4,446억으로 감소하고, 2015년에는 8,788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고령층의 경우 주택보유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고, 주택을 지속적으로 보유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신축가구 중 고령자 구입율(1%)은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II-8-22 고령친화 주거산업 신규주택관련 시장규모 전망(예측)

(단위 : 호, 만원, 평형, %, 억원)

구분	신축가구수	평당 분양가	평형	모태산업	고령자 구입율	신규주택시장규모
2011년	338,563	1,212	20.4	837,090	1%	8,371
2012년	220,610	1,212	20.4	545,454	1%	5,455
2013년	211,240	1,212	20.4	522,287	1%	5,223
2014년	179,822	1,212	20.4	444,606	1%	4,446
2015년	355,447	1,212	20.4	878,836	1%	8,788
2016년	261,136	1,212	20.4	645,654	1%	6,457
2017년	261,136	1,212	20.4	645,654	1%	6,457
2018년	261,136	1,212	20.4	645,654	1%	6,457
2019년	261,136	1,212	20.4	645,654	1%	6,457
2020년	261,136	1,212	20.4	645,654	1%	6,457

자료 : 국토해양부 택지개발사업지구 통계 (2010.12)

주 : 1. 평당 분양가, 평형 및 고령자 구입율은 2010년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

2. 2011년~2015년 신축가구수는 국토해양부 택지개발사업지구 통계를 기초를 하고 있으며, 2016년~2020년 신축가구수는 2011~2015년 자료의 연간평균값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을 가정하여 추정하였음.

- 앞에서 설명한 방법을 활용하여 향후 고령친화 주거산업 리모델링관련 시장규모를 추계하여 본 결과, 추정된 리모델링관련 주거산업 시장규모는 2005년 불별금액 기준으로 2011년에는 6,800억 원, 2015년에는 7,527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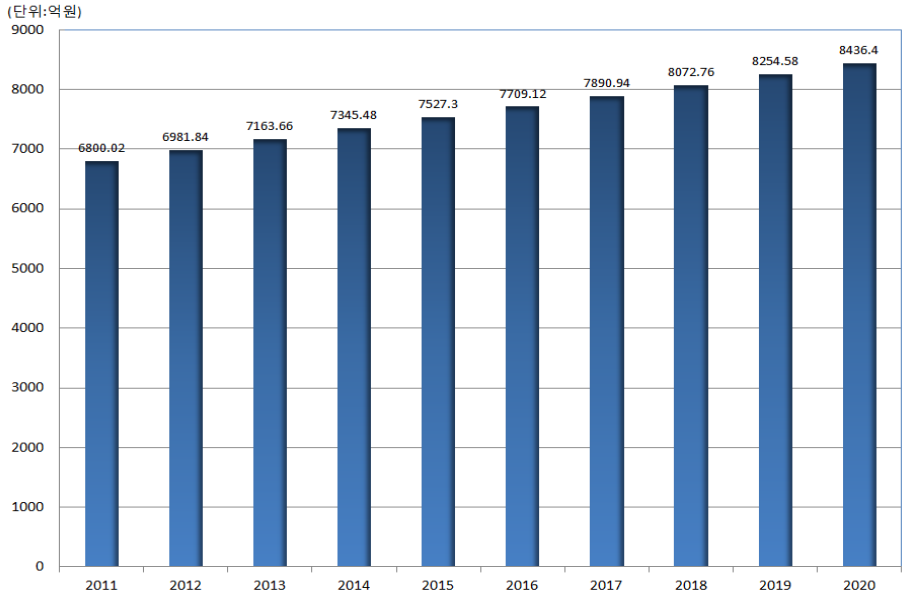


그림 II-8-10 연도별 주거용 건축물 리모델링 착공 면적(2011-2020)

주 : 2005년 불변가격 기준

- 위에서 추정된 리모델링관련 모태시장규모를 바탕으로 고령친화주거산업 관련 규모를 살펴보면 2011년 235억 원에서, 매년 증가하여 2015년에는 285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 통계청(2007)의 장래가구추계에 의하면 고령자 가구는 매년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개보수를 희망하는 고령자수도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주거안정을 위한 법적제도장치가 마련되어 노인가구의 주택개보수를 위한 용자 및 개조비용 지원 등이 정책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고령친화적 주택 리모델링사업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sup>91)</sup> 하지만, 본 보고서의 리모델링 관련 고령친화주거산업 시장규모전망은 관련법의 제정을 고려하지 않고, 과거의 추세만을 반영하여 추계하였다.

91) 현재 고령자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를 위해 발의된 '고령자주거안정법'은 고령자에게 주택개조 보조금이나 저리 용자 등을 제공해주고 재개발 재건축시 100분의 3이상을 고령자 전용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나, 2008년 12월 26일 의원발의 이후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에 있음.

표 II-8-23 고령친화 주거산업 리모델링관련 총가구대비 개보수희망고령자 가구비율 전망(예측)

(단위 : 호, %)

년도	총가구수 (A)	고령자 가구중 자가 가구수(B)	개보수 희망률(C)	실제 개보수가능 고령자가구 수 (D=B*C)	총가구대비 개보수희망고령자 가구비율(E=D/A)
2011년	17,379,667	2,304,576	26.10%	601,494	3.46%
2012년	17,596,139	2,387,845	26.10%	623,228	3.54%
2013년	17,803,198	2,477,396	26.10%	646,600	3.63%
2014년	18,001,541	2,564,308	26.10%	669,284	3.72%
2015년	18,191,663	2,644,399	26.10%	690,188	3.79%
2016년	18,373,604	2,724,263	26.10%	711,033	3.87%
2017년	18,546,858	2,815,169	26.10%	734,759	3.96%
2018년	18,711,665	2,916,297	26.10%	761,154	4.07%
2019년	18,867,058	3,031,263	26.10%	791,160	4.19%
2020년	19,011,815	3,166,413	26.10%	826,434	4.35%

주 : 2011~2020년의 총가구수는 통계청(2007) 장래가구추계를 참조하였으며, 자가비율(74.8%) 및 개보수 희망률(26.1%)은 2011~2020년까지 일정하다고 가정

자료 :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장래가구추계

표 II-8-24 고령친화 주거산업 리모델링관련 시장규모 전망(예측)

(단위 : 억 원, %)

연도	총 주거 리모델링 시장규모	총가구대비 개보수희망 고령자 가구비율(E)	리모델링관련 고령친화주거산업시장 규모
2011년	6,800	3.46	235
2012년	6,982	3.54	247
2013년	7,163	3.63	260
2014년	7,345	3.72	273
2015년	7,527	3.79	285
2016년	7,709	3.87%	298
2017년	7,891	3.96%	312
2018년	8,073	4.07%	329
2019년	8,255	4.19%	346
2020년	8,436	4.35%	367

자료 : 국토연구원 (2007) 『2007년 노인주거실태조사』, 통계청(2011) 『2010인구주택총조사결과』, 통계청(2007) 『장래가구추계』를 바탕으로 추계

주 : 1. 개보수희망률(26.1%)은 2007년 노인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2020년까지 불변을 가정

2. 고령자 가구 중 자가 가구수는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자료와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결과에 의한 65세이상의 총 고령자 자가비율(74.8%)을 이용하여 계산

3. 2005년 불변가격기준

### 3. 전략품목 및 지원정책

#### 3.1 전략품목 선정

##### 1) 선정기준

고령자친화주거산업은 다른 산업과 달리 재화의 최종소비자인 고령자뿐만 아니라 및 그들을 돌보는 가족들의 수요와 욕구가 소비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최근 고령자들이 노후를 새로운 시설에서 보내는 것보다 자신이 평생 살아온 집이나 지역에서 보내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보건의료측면에서도 고령층이 병원이나 요양시설보다는 자신의 집에서 재가서비스를 받는 것이 의료비 절감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미국 등 서구에서도 고령층을 자신의 주택에 거주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sup>92)</sup>

세계보건기구 (WHO : World Health Organization)도 고령친화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매뉴얼인 'Global Age-Friendly Cities : A Guide'를 개발하고, 세계 35개 도시가 참여하여 고령자들이 자신이 살던 지역내에서 건강하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프로젝트인 'Global Network of Age-friendly Cities'를 전개하고 있다.<sup>93)</sup>

따라서 고령친화주거산업은 '새로운 시설로의 이주'가 아니라, '지역사회 계속거주' (Aging-in-community)의 개념을 중시하면서 고령층이 오랫동안 살아온 지역에서 적절한 도움을 받으면서 삶의 '계속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지역사회 계속거주'의 개념이 단지 주택을 개조·보수하는 차원을 넘어 사회 보건 서비스와 연계하여 지역사회의 전체적인 구조와 설계를 고령자 친화적인 환경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고령친화주거산업의 세계적인 추세와 고령자 대상 수요조사 결과, 관련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전략품목을 선정하고자 한다.

##### 2) 전략품목 선정

고령자용 주택 개조 지원은 고령자 수요조사 결과,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가 예비고령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필요성 인식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는 2010년 현재 노인인구 비중이 전체인구의 11%를 넘었고, 2018년에는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92) H. Kaye, et al.,(2009) Do Non-Institutional Long-Term Care Services Reduce Medicaid Spending? Health Affairs 28, No. 1 : 262-272.

93) WHO(2007). Global Age-Friendly Cities : A Guide.  
([http://www.who.int/ageing/publications/Global\\_age\\_friendly\\_cities\\_Guide\\_English.pdf](http://www.who.int/ageing/publications/Global_age_friendly_cities_Guide_English.pdf))

예상되는 만큼 고령자를 위한 주거산업도 새로운 시설위주의 주거산업보다는 기존 주택을 개·보수하는 리모델링 산업으로 정책목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주택개조(리모델링)를 전략품목으로 도출하였다.

현행 ‘주택법’에 제 2조 제 15호에 의하면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大修繕)을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토해양부 행정통계인 ‘건축물 착공 통계’에서는 신축을 제외한 증축·개축·이전·대수선과 용도변경이 리모델링 개념에 해당되는 통계범위로 정의될 수 있다. 따라서, 고령친화주거산업 중 리모델링 산업은 고령층이 거주하고 있는 기존 주거건물의 유지·보수·개수를 기본적으로 포괄하는 건축활동을 주요 전략품목으로 선정할 수 있다. 유지(maintenance)는 고령자가 오랫동안 살아왔던 주거시설의 초기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일상적 활동으로 청소, 점검 및 교체관련 품목들을, 보수(repair)는 수명이 다하여 파손되거나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건축물의 성능을 원래 수준으로 회복하는 건축행위관련 품목들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개수(renovation)은 새로운 기능을 부가하는 것으로 기존 주거시설의 성능을 고령자들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향상시키는 건축관련 행위를 포함한다.

표 II-8-25 고령친화주거산업 전략품목

구 분		정 의	전략품목들(예시)
주택 개보수 (리모델링)	유 지 (Maintenance)	•고령자가 오랫동안 살아왔던 주거시설의 초기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일상적 활동	•청소, 점검 및 교체
	보 수 (repair)	•수명이 다하여 파손되거나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건축물의 성능을 원래 수준으로 회복하는 건축행위	•난방시설, 도배 및 장판, 목공 및 창호, 전기 배선, 방수공사, 지붕 보수 등
	개 수 (Renovation)	•새로운 기능을 부가하는 것으로 기존 주거시설의 성능을 고령자들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향상시키는 건축행위	•휠체어용 거실바닥 시공, 고령자용 화장실 개조 등 무장애(barrier-free) 공간 개조사업들

### 3.2 제약요인 및 정책과제

리모델링관련 고령친화주거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령친화주거산업을 위한 주택 개·보수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현재 및 미래 고령층이 자신이 거주했던 주택에서 계속적으로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택 개·보수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민간기업들도 지역사회 고령친

화주거산업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시장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2007년 건설교통부는 고령자의 주거안전 확보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노인가구 주택 개조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하였으나, 주택개조를 원하는 고령층을 위한 금융지원 및 용자 등의 구체적 지원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이다. 왜냐하면 현재 주택리모델링 관련 지원정책들은 노인보다는 저소득계층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2010년 11월부터 시행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지원법’은 공공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리모델링재원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규정(제8조)하고 있으며, 대한주택보증은 매년 사회공헌활동으로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사업’을,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수준이다.

따라서, 리모델링관련 고령친화주거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일부계층에게 제한적으로 실시되는 주택 개보수사업들의 대상자를 확대하고, 지원분야도 다양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2008년 국회에 제안되어 현재 계류중인 ‘고령자 주거안정법’의 실행이 요구된다. ‘고령자 주거안정법안’ 제 16조는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자 등이 고령자의 활동능력에 적합하도록 기존 주택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 개조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주택기금에서 용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실현하려는 고령층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개·보수 제품을 공급하는 산업의 발전도 기대된다.<sup>94)</sup>

94) 일본의 벤처기업 Quetto Japan사는 주택 개·보수 용품으로 독자적이고 인체공학적 고령자용 신개념 난간을 제조 판매하여, 2004년 상업화 이후 불과 3년만에 약 4만건 시공실적을 달성하여 크게 성장하고 있다.(Kotra(2010). 일본실버산업 현황과 비즈니스 기회, Global Business Report 10-005.)

표 II-8-26 고령자 주거안정법 주요내용

<p>가. 국토해양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각각 주택종합계획 및 시·도 주택종합계획에 고령자주거지원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p> <p>나. 국토해양부장관은 고령자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도록 하고, 고령자용 주택이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설비로서 고령자 최소안전기준을 설정함(안 제8조 및 제9조).</p> <p>다.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량의 100분의 3 이상을 고령자용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비율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함(안 제10조)</p> <p>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자용 임대주택의 건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국세 및 지방세의 감면, 국민주택기금 추가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p> <p>마. 고령자용 임대주택을 고령자인 세대주 또는 고령자인 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에게 공급하도록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p> <p>바. 고령자용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입주자격에 관한 사항, 입주 고령자에 대한 생활관리 계획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입주 고령자에 대하여 안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관리하도록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p> <p>사.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자 등이 고령자의 활동능력에 적합하도록 기존 주택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 개조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p> <p>아. 국가 및 지자체에 고령자용 임대주택의 입주 고령자 생활관리 업무, 고령자 주택개조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고령자 주거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p>
---

자료 : 대한민국국회 의안정보시스템(2011)

두 번째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중 (전문)요양시설, 요양병원 등에 입소하지 않은 재가서비스 또는 가족수발비 대상자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주택 개·보수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현재는 이동변기, 간이변기, 안전손잡이, 목욕의자, 자세변환용구, 목욕리프트, 이동욕조 등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지원을 하고 있으나, 주택 개·보수관련 비용은 본인이 지불해야 하는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2000년부터 실시된 개호 보험이 고령자 주택보조 비용을 보조하게 되면서, 주택 개조수요가 최근 10년동안 1.3배 증가한 사례가 있다. 특히 일본은 신규 주택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고령자를 위한 주택 개·보수 시장은 점차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sup>95)</sup>

95) Kotra (2010). 일본실버산업 현황과 비즈니스 기회, Global Business Report 10-005.

표 II-8-27 고령친화 주거산업 정책과제

정책지원
법·제도 개선
- 주택·개보수산업 지원 육성
- 고령자 주거 안전법 추진(개조비용에 대한 용자 지원)
- 노인장기요양법 개정(주택 개보수 비용 지원)
- 고령층을 위한 주택개조를 위한 금융·용자지원 등의 지원 프로그램 개발

### 3.3 정책 기대효과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시설은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기 위해 필수적 요소인 ‘의·식·주’의 하나로 인간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 중 하나이다. 특히, 고령자에게 주거는 가족과 관련한 기본적인 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남은 일생을 편안하고 안락하게 보내며 정서적·육체적으로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는 단순한 ‘집’ 이상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고령친화 주거산업은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고령친화 주거산업육성은 인간의 기본권을 확립시켜주는 것뿐만 아니라, 고령자, 부모를 부양하는 가족구성들, 그리고 노후를 준비하는 중·장년층 등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안정적 노후생활 안정의 근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제9장 고령친화 여가산업

### 1. 개요 및 범위

#### 1.1 고령친화 여가산업의 범위

여가는 노동의 반대개념으로 심신의 강제성과 의무성이 희박한 상태로서 자유롭게 휴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가는 피로와 압박감으로부터 벗어나 휴식을 취함으로써 생활 재창조를 위해 에너지를 충전하는 창조적인 여가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오락적인 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여가활동 모두를 포함한다. 노년의 여가란 노인이 일차적으로 노인 자신을 위하여 흥미를 갖고 자유시간에 행해진 활동 일체로 본다. 구체적으로는 노년기의 시간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순수한 취미·오락 활동 또는 건강과 능력의 범위 내에서 직접 지역사회나 국가를 위하여 하는 활동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노인의 여가활동은 자아존중감을 높여주고, 심리적 안정감을 향상시켜 주며 사회적 통합을 제고시켜 주는 등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준다.

평균수명의 증가로 은퇴 이후 노년기 생활에 있어서 20년 이상의 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개인적·사회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노인의 여가는 두 가지 측면으로 의미가 부여되고 있는데, 하나는 고령기에도 일정한 사회적·가장적 역할에 있어 그 역할을 추구하는 도중에 갖게 되는 여유 있는 시간을 말하고, 또 다른 하나는 자신에게 부여된 일정한 역할이 없어서 막연하게 시간을 보내는 긴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노인의 여가는 노동력 재생산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노동을 전제로 하지 않는 삶의 가치 중 일부 분으로 일과 대립되는 개념이다.<sup>96)</sup>

96) 한국임상사회사업학회, 2005



고령친화 여가 산업의 주요한 분야로는 다음의 4가지를 들 수 있다.

- ① 문화산업 : TV, 영화, 음악 등
- ② 여행/레저산업 : 여행, 레저 등 관광레저산업
- ③ 스포츠 산업 : 운동, 스포츠 시설 운영
- ④ 기타 산업 : 고령자 대상 음식점,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자서전 집필 대행 서비스 등

## 1.2 고령친화 여가산업의 특징

고령친화 여가 산업은 자유경쟁원리를 바탕으로 고령자에게 안정감, 평안감 등을 준다는 측면에서 공익성이 강조된다. 타 고령친화 산업군에 비해 엔터테인먼트적 요소가 부각되며 보건·의료 등 타제품과 연계성이 강하여 전문노동력을 다수 필요로 하는 노동집약적 성격을 가진다. 또한 이동성이 적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강한 지역성을 가지며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에서 사업 성립이 가능하다.

### 1) 공익성과 수익성이 결부된 사업

고령친화 여가산업은 자유경쟁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단순히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기업의 신용과 신뢰를 통해 고령자들에게 안정감과 평안감, 신뢰 등도 함께 제공함으로써 고령자 복지에도 기여하는 공익성과 수익성이 결부된 산업이다.

### 2) 중소형 기업에 적합한 사업

고령친화 여가산업은 구조적으로 세분화된 작은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고령자의 수요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수요의 세분화에 민감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소형 기업에 알맞다. 그러나 인건비가 많이 들어 규모의 경제를 얻기 어렵고 경비절감이 곤란하여 규모가 확대된다 하더라도 이익을 증강시키기 어려운 산업특성을 지니고 있다.

### 3) 연계성이 강한 사업

고령친화 여가산업은 여러 분야에 걸쳐 있는 산업이지만, 몇 가지 분야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데 특히 보건·의료와 상호연계성이 높으며, 여가산업 내에서도 스포츠, 문화, 관광 등의 분야가 혼합되어 나타나는 양상을 보인다. 시설과 서비스가 연계되어 이루어지는 형태

를 띠고 있으며, 재가서비스가 확대될수록 소프트웨어(서비스) 부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 4) 노동집약적 사업

고령자는 건강한 사람에서부터 수발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획일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매우 세분화된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며 따라서 특정한 자격을 갖춘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 5) 지역성이 강한 사업

한정된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고령자의 신체적 특징, 질병상태, 정신상태 등과 함께 국가·문화적 특성에 따라 기기나 용품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므로 지역과 밀접한 연관 관계를 지니고 있다.

#### 6) 도시 및 도시근교형 사업

각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고령자들은 비고령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동성이 낮고, 새로운 상품에 대한 적응성이 낮아 시장에 잘 노출되지 않는다. 그러한 이유로 기업은 고객 확보가 쉽지 않은 형편에 놓여 있어 일정 규모 이상의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도시를 대상으로 해야만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7) 고령층의 보다 나은 여가생활 영위를 위한 사업

고령층에게 특화된 여행, 스포츠, 문화 프로그램 및 여가생활을 위한 각종 용품, 보조기구 등을 통해 고령층이 보다 나은 여가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으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타 고령친화산업 군과 달리 엔터테인먼트적 요소가 가미된다. 이를 통해 고령층에게 즐거움을 선사하여 정신건강 및 복지 증진에까지 기여하고 있다.

## 2. 시장분석

### 2.1 세계 시장 변화

#### 1) 세계 시장 현황

- 국가별 가계의 오락 문화비 지출(2000-2006)은 미국이 6.4%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으며, 일본이 6%대, 덴마크가 5%대를 기록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3년까지 4%대를 유지하다가 2004년에 3.6%로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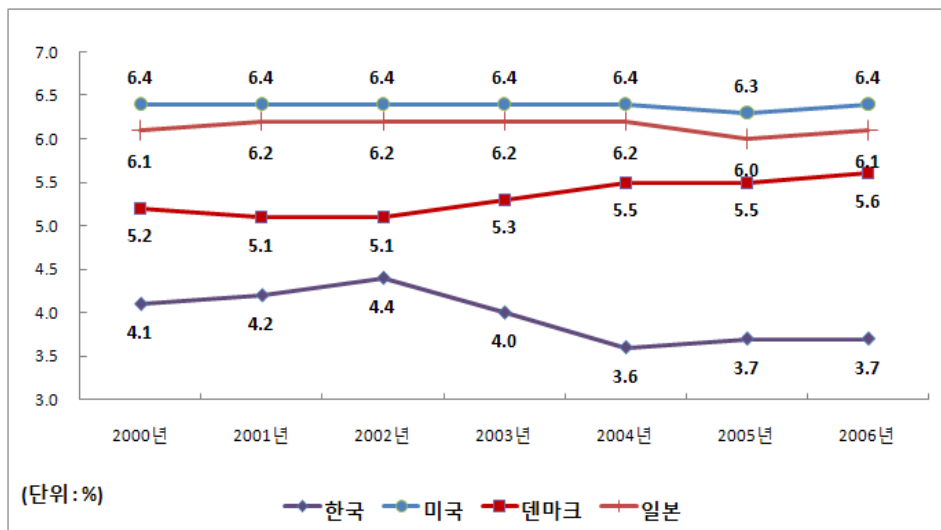


그림 II-9-1 국가별(한국/미국/덴마크/일본) 가계의 오락, 문화비 지출

자료 :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국제통계 자료

- 국가별 정부의 오락 문화비 지출(2000-2006)은 미국이 0.3%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으며, 일본이 0.2%대, 덴마크가 1.6%대를 기록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2년 0.6%에서 2003년 0.8%로 증가하였고, 2006년 0.9%로 전년보다 0.1%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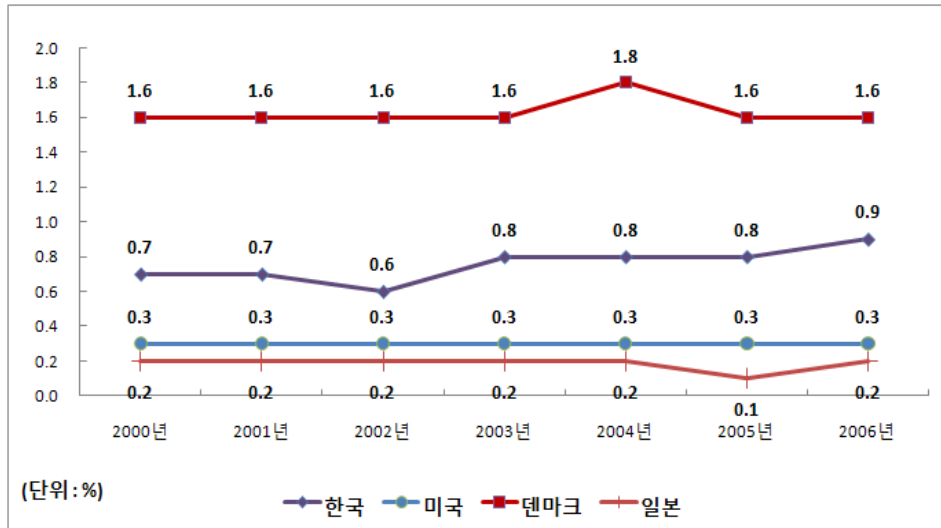


그림 II-9-2 국가별(한국/미국/덴마크/일본) 정부의 오락, 문화비 지출

자료 :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국제통계 자료

## 가. 일본

고령자의 교양오락에 대한 소비지출 증가

- 연도별 일본 세대주의 연령계층별 월평균 교양오락 소비지출은 40~49세가 37,247엔으로 가장 많았으며, 70세 이상이 21,249엔으로 가장 적었다. 또한 50세 이상 고령자계층 중에서는 60~69세 29,543엔으로 지출이 가장 많았다.

표 II-9-1 연도별 일본 세대주의 연령계층별 월평균 교양오락 소비지출

(단위 : 엔)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9세 이하	23,399	27,050	25,718	23,629	22,488
30~39세	31,169	30,426	30,854	30,460	30,727
40~49세	34,460	35,712	35,839	34,749	37,247
50~59세	27,579	29,162	28,723	26,630	28,368
60~69세	26,897	28,417	28,560	28,013	29,543
70세 이상	21,042	21,027	20,982	21,266	21,249

자료 :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교육/문화/과학, 문화, 여가관련 해외통계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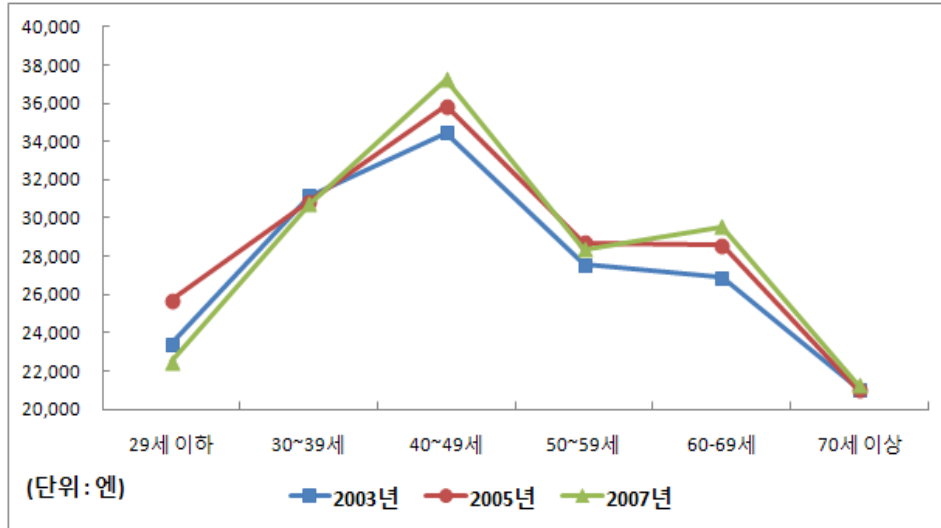


그림 II-9-3 연도별 일본 세대주의 연령계층별 월평균 교양오락 소비지출

자료 :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교육/문화/과학, 문화, 여가관련 해외통계 자료

- 고령자의 교양오락 분야별 소비지출 형태를 보면, 패키지여행 소비지출은 60대(6,498엔)가 제일 많으며 70대(5,705엔)와 50대(4,053엔)가 그 뒤를 이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숙박료 소비지출도 60대(1,542엔)가 40대(1,632엔)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9-2 세대주의 연령별 소비지출 (2인 이상 세대의 연령군 1개월간 지출)

(단위 : 엔)

항목	연도	세대주의 연령							
		평균	~29세	~39세	~49세	~59세	~69세	70세~	
소비 지출	2007년	297,782	249,092	270,490	335,237	348,594	287,586	240,887	
	2008년	296,932	251,125	277,531	336,766	346,682	284,386	240,276	
교양 오락	2007년	30,976	23,882	30,054	38,129	30,439	31,672	25,503	
	내구재	내구재	3,397	3,015	3,382	4,533	3,706	3,111	2,341
		오락용품	6,387	5,117	6,561	8,340	6,493	6,133	4,720
		서적, 인쇄물	4,275	3,053	3,664	4,557	4,495	4,372	4,242
		오락서비스	16,917	12,697	16,447	20,699	15,746	18,057	14,201
		숙박료	1,427	874	1,483	1,761	1,331	1,447	1,250
		패키지여행	4,606	2,772	2,153	3,449	4,243	7,008	5,238
		교습료	3,311	1,918	4,759	6,564	2,660	1,888	1,832
		기타서비스	7,573	7,133	8,051	8,925	7,512	7,715	5,881
	2008년	31,372	22,319	30,674	37,072	30,836	32,078	27,059	
	내구재	내구재	3,431	3,120	3,576	4,236	3,525	3,136	2,824
		오락용품	6,464	4,797	6,765	8,088	6,821	6,175	4,816
		서적, 인쇄물	4,232	2,383	3,590	4,569	4,425	4,321	4,280
		오락서비스	17,244	12,019	16,742	20,179	16,066	18,446	15,140
		숙박료	1,453	1,067	1,480	1,632	1,357	1,542	1,300
		패키지여행	4,583	3,115	2,862	3,119	4,053	6,498	5,705
교습료		3,163	1,644	4,391	6,311	2,519	1,913	1,550	
기타서비스		8,045	6,194	8,009	9,117	8,137	8,493	6,584	

자료 : 총무성, 가계조사연보

주 : 패키지여행에서 숙박은 제외함

- 내각부 조사에 따르면 실버세대들이 점점 취미생활로 스포츠, 여행에 대한 니즈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과거 활동 범위가 작았던 노인들에 비해 지금의 실버세대들은 적극적으로 취미생활을 즐기는 액티브한 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9-3 일본 실버세대가 생각하는 즐거움 (대상 : 65세 이상)

구 분	2005년	2002년
텔레비전을 보거나 라디오를 듣는 것	527	545
취미나 스포츠에 빠지는 것	365	345
친구나 지인과 식사, 잡담	352	346
여행	264	232
손자 등 가족과 만나는 것	211	202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189	186
일하는 것	116	76
음주	114	92
공부하거나 교양 등을 쌓는 것	74	64
봉사활동이나 지역활동	66	50
젊은 세대와 교류하는 것	52	36
애원동물과 지내는 것	40	50

자료 : 내각부, 세대유형에 따른 고령자의 생활실태 등에 관한 의식조사, 2006.

- 일본 국토교통성의 조사에 따르면, 2008년 크루즈 여행객은 약 19만명으로 전년 대비 33% 증가하였다.
- 불경기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있는 것인데, 그 이유는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고령자가 주요 타깃 고객이기 때문이다. 향후 크루즈 여행객 비즈니스는 오히려 확대될 전망이다.
- 크루즈 여행 비즈니스는 구미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나 일본에서도 2007년부터 단카이 세대가 정년퇴임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크루즈 여행 비즈니스가 전개되고 있다.
- 일본 정부는 2006년 11월 한중일 항만행정담당자 회의를 거쳐 ‘동북아시아크루즈협의회’를 설치하는 등 아시아에서도 크루즈 여행 비즈니스 인프라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표 II-9-4 크루즈 여행객수 추이

단위 : 명)

	2007년	2008년
합계	183,600	189,700
외항크루즈합계	96,000	103,000
일본선사운행선	21,400	20,100
외국선사운행선	74,600	82,900
국내크루즈합계	87,600	86,700

자료 : 국토교통성 해사국 외선과

- 1947년-1949년의 제1차 베이비붐시대에 태어난 단카이 세대는 인구가 800만 명에 가까워 그 규모와 크기로 향후 여행시장의 중핵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표 II-9-5 일본 숙박 관광여행자의 비율 (2005년)

(단위 : %)

	남성	여성
20대 전반	29.7	54.3
20대 후반	47.4	59.8
30대 전반	41.0	40.7
30대 후반	46.0	53.2
40대	51.5	43.2
50대	46.4	52.5
60대	62.1	59.0
70대 이상	47.8	46.6
전체	49.6	51.0

자료 : 일본관광협회.

표 II-9-6 일본 숙박 관광여행의 연간실시횟수 (경험자의 평균, 2005년)

(단위 : 횟수)

	남성	여성
20대 전반	1.77	1.93
20대 후반	1.74	1.96
30대 전반	2.44	1.59
30대 후반	2.00	1.74
40대	2.43	2.25
50대	2.14	2.32
60대	2.46	2.62
70대 이상	2.55	2.19
전체	2.17	2.13

자료 : 일본관광협회.

- 아날로그 TV방송은 2011년 7월 24일에 종료되고, 지상파 디지털 TV 방송으로 완전히 전환되었다. 일본 총무성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2008년 말 기준 지상파 디지털 TV 방송 대응 수신기 보유율은 52.7%에 머물러 있다. 완전 이행 시점이 가까워지면서 총무성은 특



히 고령자층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고 판단, 2009년 하반기부터 적극적으로 지상파 디지털 방송의 보급 촉진책을 내놓았으며, 지상파 디지털 TV로 바꿀 때 한 세대에 1000엔을 지원 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어 2011년 완전 이행 시까지 다양하나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 NTT 히가시니혼은 2009년 7월 16일부터 텔레비전으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부터 서포트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패키지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주요 타겟 고객은 50대 이상의 시니어 실버 층으로 NTT 히가시니 혼 관할 지역 내에만 400만~500만 세대가 해당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표 II-9-7 세대별 인터넷 이용률(개인)

(단위 : %)

연령구분	이용률
6~12세	68.9
13~19세	95.5
20~29세	96.3
30~39세	95.7
40~49세	92.0
50~59세	82.2
60~64세	63.4
65~69세	37.6
70~79세	27.7
80세 이상	14.5

자료 : 총무성, 통신이용동향조사, 2008.

## 나. 미국

- 미국은 민간기업을 주도로 고령친화 산업이 크게 발달했으며 특히 국내외 일반여행 및 학습을 겸한 여행, 야외스포츠(골프, 게이트볼, 샤플보드 등), 스포츠지도, 휴양지 여행 등 여행 및 레저분야가 인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 55세 이상 노인들의 국내여행비중은 사업 및 레저관광을 포함하여 전체의 31%(1999년)인 1억 8천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은 타 계층보다도 많은 매년 3번 이상 국내여행을 하는데, 차로 여행하는 비중은 전체의 46%, 휴식을 위한 여행은 42%, 모험을 위한 여행은 32%인 것으로 나타났다.
- 미국 소비자의 연령별 엔터테인먼트 소비지출은 65-74세가 2,636달러로 전년대비 28.6%

의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반면 55-64세는 2,730달러로 전년대비 2.4%의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표 II-9-8 연도별 미국 소비자의 연령별 엔터테인먼트 소비지출

(단위 : 달러, %)

구분	연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5세 이하	소비지출	1,212	950	1,166	1,393	1,348	1,448
	증감률	-	-21.6	22.7	19.5	-3.2	7.4
25~34세	소비지출	2,027	1,958	2,122	2,455	2,237	2,462
	증감률	-	-3.4	8.4	15.7	-8.9	10.1
35~44세	소비지출	2,685	2,519	2,504	2,765	2,966	3,551
	증감률	-	-6.2	-0.6	10.4	7.3	19.7
50~54세	소비지출	2,565	2,407	2,711	3,034	2,770	3,163
	증감률	-	-6.2	12.6	11.9	-8.7	14.2
55-64세	소비지출	2,297	2,414	2,823	2,429	2,666	2,730
	증감률	-	5.1	16.9	-14.0	9.8	2.4
65-74세	소비지출	1,371	2,016	1,879	2,143	2,049	2,636
	증감률	-	47.0	-6.8	14.1	-4.4	28.6
75세이상	소비지출	896	909	990	1,032	1,099	1,255
	증감률	-	1.5	8.9	4.2	6.5	14.2

자료 :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교육/문화/과학, 문화, 여가관련 해외통계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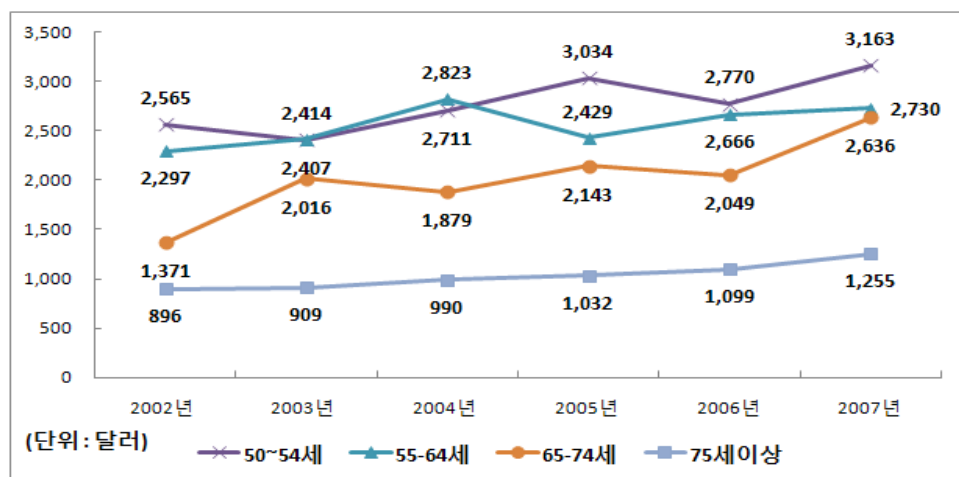


그림 II-9-4 연도별 미국 소비자의 연령별 엔터테인먼트 소비지출

자료 :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교육/문화/과학, 문화, 여가관련 해외통계 자료

## 2) 선진사례

### 가. 일본

- 일본의 고령친화 여행상품은 크게 저가격형, 고가격형, 배리어프리(barrier free)형 등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최근 각사에서는 고가격형에 초점을 맞춘 상품에 주력하지만 배리어프리형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저가격형은 건강고령자계층을 주로 대상으로 회원제로 운영하는 패키지여행상품인 경우가 많고 고가격형은 부유층을 대상으로 주문형 여행상품으로 JTB 등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한편, 배리어프리형은 개호를 동반한 여행으로 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 또한 노인들이 건강 등의 이유로 도심에서 즐길 수 있는 가까운 온천을 선호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도심형 온천이 인기를 끌고 있다. 한 예로, 도쿄에 있는 도심형 온천인 ‘오에도 온센모노가타리’는 테마공원과 같은 시설을 구비하고 있으며 이곳에는 선술집을 비롯한 다양한 음식점이 들어서 있으며, 전통적인 놀이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활쏘기, 부채 던지기, 고리 던지기, 표적 던지기 등 다양한 놀이시설도 마련되어 있고 코미디나 연극관람이 가능하도록 공연장도 설치되어 종합테마파크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 2009년 11월 닌텐도는 고령자를 고객층을 대상으로 기존의 상품과 비교하여 액정화면을 약 2배로 터치펜 크기를 크게 하여 잡기 쉽도록 한 ‘닌텐도 DSi LL’를 발매하여 발매 후 한 달 만에 약 18만대를 판매할 정도를 인기를 끌었다.(※ 일본경제신문 12월 8일자)
- 후지쯔는 고령자도 간단히 쓸 수 있는 휴대폰인 라쿠라쿠폰을 출시하였으며, 2008년부터는 라쿠라쿠 컴퓨터를 시장에 내놓았다. 라쿠라쿠 시리즈의 컨셉트는 하드, 소프트, 서비스의 일체화 되어 있고, 고령자를 위해 간단한 사용, 전용 홈페이지, 방문 서비스, 전용 상담 창구, 원격 지원 서비스 등을 실시하여 노인층에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 ‘50세 미만의 손님은 사절’이라는 간판을 걸고 노년층만을 겨냥하여 만든 전용 게임센터인 ‘유락원(遊樂園)’이 인기를 누리고 있다. 유락원은 영업시간을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로 하고 편안하고 쾌적한 분위기 연출과 고령자 위주 게임과 시끄러운 음악 등도 지양하여 노인들에게 안락한 분위기로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 세가토이즈의 고양이 인형 ‘꿈 고양이 비너스’(희망소매가격 10500엔)는 실물과 똑같이 움직이거나 울음소리를 내어 번거로움없이 애완동물을 기르는 기분을 느낄 수 있어 60대 이상에게 인기가 있다.

### 나. 미국

- 50세 이상의 시니어를 대상으로 창시한 EONS(www.eons.com)는 트위터, 블로그, 온라인

커뮤니티 서비스, 게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대표적인 노인전문 채널인 ‘시니어 시티즌 네트워크(Senior Citizens Network)’는 각 프로그램은 30분 단위로 편성되어 있으며, 미용, 건강, 취미, 음식, 여행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 24시간 방영한다.
- 노인관련 정보콘텐츠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시니어넷(<http://www.senior.net>)은 50세 이상의 컴퓨터를 이용하는 노년층의 컴퓨터 습득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 240여개의 오프라인 교육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시니어넷에서는 6가지 콘텐츠분야를 나누어 제공하고 있는데, 기술(Technology), 서적&문화(Books & Culture), 건강(Health), 금융(Money), 레크리에이션(Recreations), 자원봉사(Volunteering), 시장(Marketplace) 등이다.
- 헤리티지 빌리지는 은퇴한 노인들의 입주공간으로 취미활동 클럽은 볼링, 체스, 컴퓨터, 댄싱 등이 100여 개 정도로 즐겁게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준다.
- 엘더호스텔은 5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교육과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스호스텔의 고령자관으로 자전거여행, 문화사찰 등의 여행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미술, 문학, 컴퓨터 등 거의 모든 장르를 포함하고 있다.
- 노년층 주거와 더불어 휴양을 위한 주거단지인 오크 해먹은 입주자(노년층 은퇴자)의 요양에 필요한 의료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을 별도로 조성할 필요 없이 대학의 시설을 활용하여 개발비용의 절감효과 극대화한 형태이다. 즉, 대학에서는 학생들에게 간호, 의료, 보건, 공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의 장을 제공할 수 있으며, 노인들은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거주 주민이 각종 공연이나 문화시설 관람, 축제 등 지역 및 플로리다 대학에서 개최되는 행사에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연계 교통망을 구성하고 있다.
- 노인센터는 1950년대부터 노인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복지적 측면에서 개발하고 있다. 세부내용으로는 오락프로그램의 기획지도, 지역사회 참여와 봉사활동의 유도, 직업훈련과 직업소개 등 취업 알선, 기업의 공동운영, 이익의 공동분배원칙에 의한 노인복지공장의 설립과 운영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실천 등을 하고 있다.<sup>97)</sup>

97) 김혜정 외 7인, 《고령친화산업론》, 계축문화사, 2010, pp.105-106.

## 2.2 국내 환경 변화

### 1) 고령자 여가활동 동향

- 노인여가복지시설은 경기도 8,945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 8,486 개소, 경북 7,372개소, 경남 6,967개소 순이었다. 한편 제주는 407개소로 노인여가복지시설 수가 타 시도에 비해 현격히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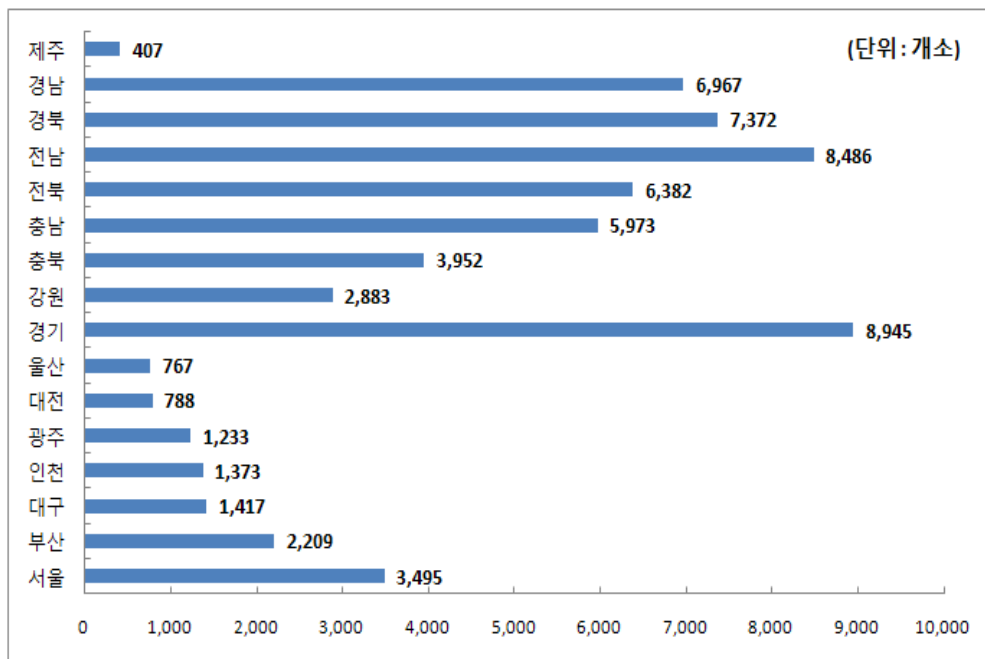


그림 II-9-5 2010년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자료 : 보건복지부 통계포털, 2011 노인복지시설현황 자료

주 : 2010년 12월 31일 현재 자료임

- 2010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5,506,352명, 노인여가복지시설은 62,469개소로 나타났다. 그 중 경로당이 60,737개소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노인휴양소는 9개소로 그 수가 매우 적었다.

표 II-9-9 2010년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단위 : 개소, 명)

시도	65세이상 노인인구	합계	노인복지관 시설수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합계	5,506,352	62,469	259	60,737	1,464	9
서울	1,002,770	3,495	31	3,118	344	2
부산	401,784	2,209	16	2,012	180	1
대구	252,084	1,417	10	1,353	54	0
인천	237,805	1,373	15	1,324	34	0
광주	130,457	1,233	10	1,205	18	0
대전	130,245	788	6	746	35	1
울산	76,800	767	8	732	27	0
경기	1,022,456	8,945	48	8,609	287	1
강원	226,505	2,883	9	2,853	20	1
충북	204,470	3,952	16	3,930	5	1
충남	308,556	5,973	13	5,703	77	0
전북	284,373	6,382	20	6,278	84	0
전남	350,900	8,486	26	8,366	94	0
경북	418,858	7,372	13	7,254	104	1
경남	388,648	6,967	16	6,867	83	1
제주	69,641	407	2	387	18	0

자료 : 보건복지부 통계포털, 2011 노인복지시설현황 자료

주 : 2010년 12월 31일 현재 자료임

- 연도별 평일의 여가시간은 2008년 3시간에서 2010년 4시간으로 1시간이 늘었으며, 향후에는 5.1 시간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일의 여가시간은 6.5시간에서 7시간으로 0.5 시간이 늘었으며, 향후에는 8.5시간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여가비용은 14만 2천원에서 16만 8천원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여가비용으로 26만 6천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9-10 연도별 여가시간 및 비용

(단위 : 시간, 천원)

		2006년	2008년	2010년	향후 희망
하루평균 여가시간	평일	3.1	3.0	4.0	5.1
	휴일	5.5	6.5	7.0	8.5
월평균 여가비용		142	139	168	266

자료 : 문화관광체육부, 2010년 국민여가활동조사

- 연령별 평일의 여가시간은 10~50대까지가 3시간대이며 60대가 5.4시간, 70대(이상)가 7.1시간으로 고령층일수록 여가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0~50대의 희망여가시간은 현재의 여가시간과 1시간가량 차이가 있는데 60~70대는 증가량이 미미하거나(5.4→6.0시간) 감소하는 현상(7.1→7.0시간)이 나타났다.
- 휴일의 여가시간이 가장 많은 연령대는 20대로 7.4시간을 여가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50대는 6시간대였으며, 60대는 7.1시간, 70대(이상)는 8.1시간이었다.
- 희망여가시간은 연령대별로 2시간가량 차이가 있는데 60대는 1시간, 70대는 0.2시간으로 증가량이 미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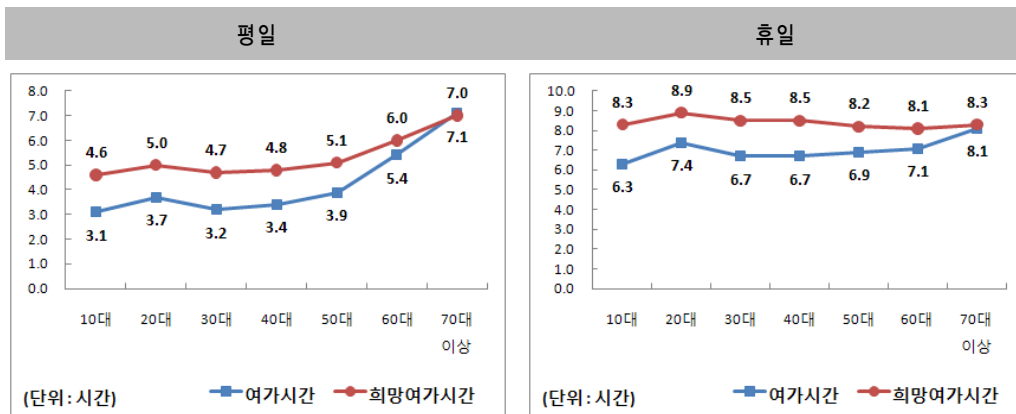


그림 II-9-6 연령별 여가시간 및 희망여가시간

자료 : 문화관광체육부, 2010년 국민여가활동조사

- 연령별 여가비용은 10대 62,000원, 20대 205,000원, 30대 196,000원, 40대 19,2000원, 50대 18,7000원, 60대 131,000원, 70대 77,000원으로 10~40대까지 증가하던 여가비용이 50대에 들어서면서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여가비용은 전 연령 모두 현재의 여가비용보다 높았으며 여가비용 충분정도는 2.42%로 70대 이상이 가장 높고 3, 40대 60대가 2.27%로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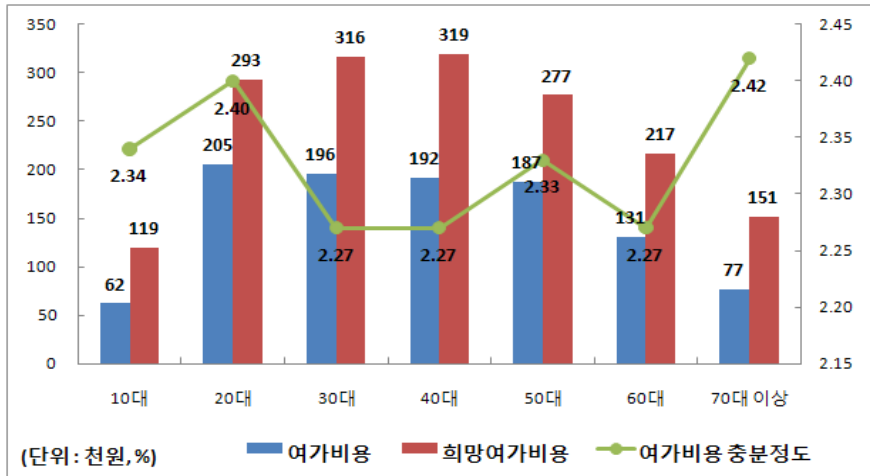


그림 II-9-7 연령별 여가비용 및 희망여가비용

자료 : 문화관광체육부, 2010년 국민여가활동조사

- 여가활동의 유형으로는 문화예술활동, 스포츠활동, 관광활동, 취미·오락·휴식·기타활동 등이 있는데 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형은 취미·오락·휴식·기타활동(78.6%)으로 나타났다.

표 II-9-11 여가활동 유형(2010년)

(단위 : %)

특성	문화예술활동	스포츠활동	관광활동	취미, 오락, 휴식, 기타활동
여가활동 비중	7.2	9.5	4.7	78.6

자료 : 문화관광체육부, 2010년 국민여가활동조사

- 전 연령대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여가활동 유형은 관광활동으로 약 40%가량이다. 또한 고령층으로 갈수록 취미·오락·휴식·기타활동의 비중이 늘어나는 반면 스포츠활동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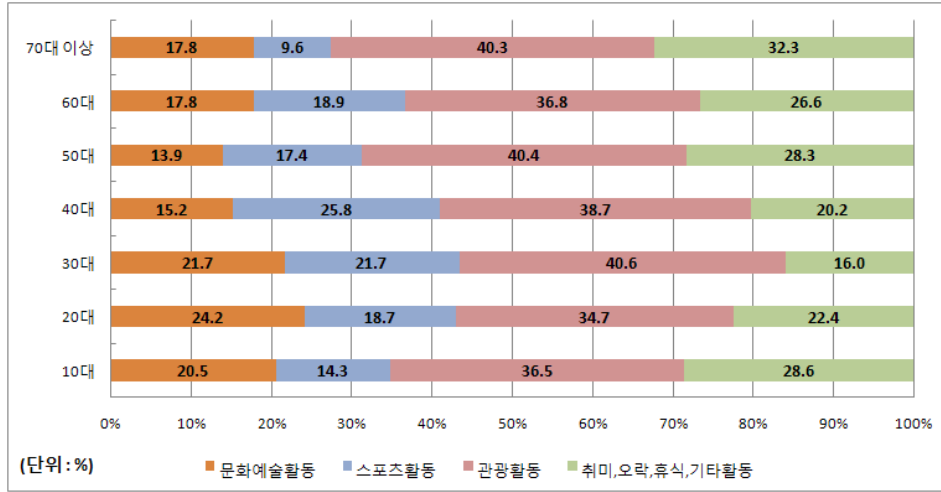


그림 II-9-8 연령별 희망 여가활동 유형(2010년)

자료 : 문화관광체육부, 2010년 국민여가활동조사

○ 여가생활 불만족 이유로 시간부족을 든 연령대는 10~30대의 비고령층이었고 경제적 부담을 든 연령대는 50~70대 이상까지의 고령층이었다. 한편 40대는 시간 부족과 경제적 부담 비중이 비슷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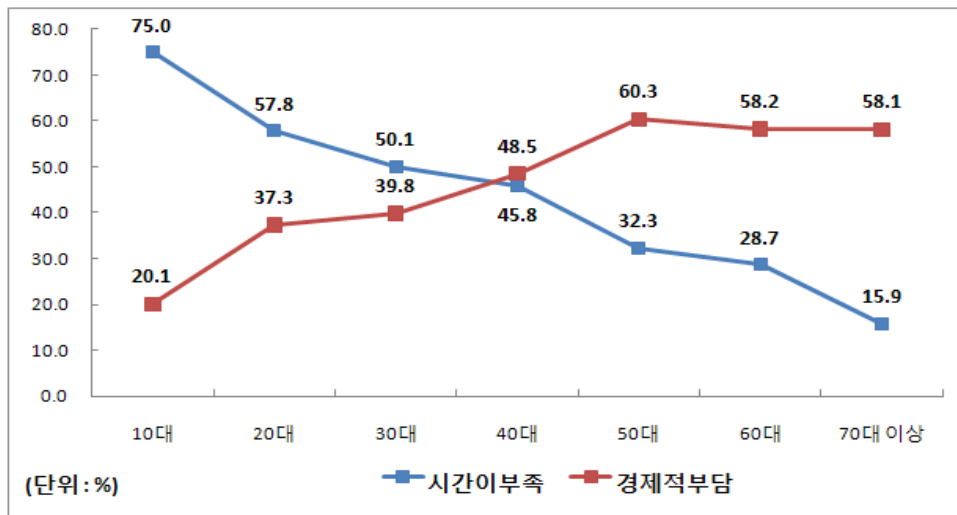


그림 II-9-9 여가생활 불만족 이유

자료 : 문화관광체육부, 2010년 국민여가활동조사

○ 60대 여가생활에서 취미오락활동의 참여유형은 등산이 28.9%, 쇼핑/외식이 20.0%, 기타가 15.0% 순이었다. 이는 전체 여가생활보다 60대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60대 여가생

활 참여유형에서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형은 인터넷 검색 채팅 (5.1%)으로 전체 비중과의 차이는 10% 이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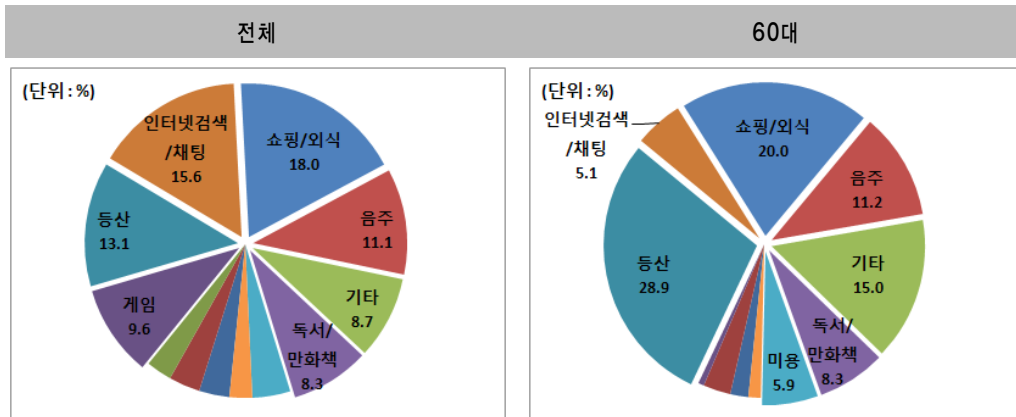


그림 II-9-10 60대 여가생활 참여유형(취미오락활동)

자료 : 문화관광체육부, 2010년 국민여가활동조사

○ 60대 여가생활에서 휴식활동의 참여유형은 TV시청 36.4%, 산책 22.5%, 낮잠 17.6% 순이었다. 60대의 TV시청 비중은 36.4%로 전체비중 42.4%보다 낮았지만 그 외에 다른 여가유형은 전체 비중보다 60대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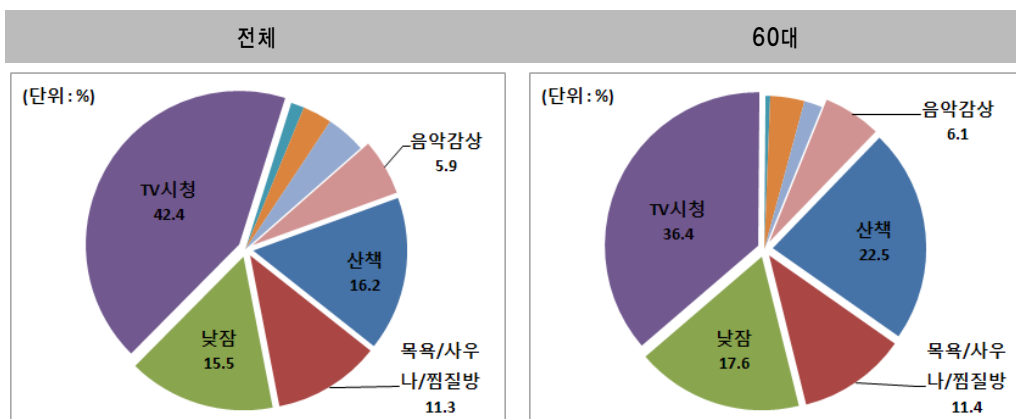


그림 II-9-11 60대 여가생활 참여유형(휴식활동)

자료 : 문화관광체육부, 2010년 국민여가활동조사

○ 60대 여가생활에서 사회 및 기타활동의 참여유형은 종교활동 26.9%, 친구만남/동호회모임 22.4%, 잡담/통화/문자 17.0% 순이었다. 전체보다 60대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중

교활동이고, 낮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친구만남/동호회모임이었다. 잡담/통화/문자의 비중이 전체와 60대가 17.0%로 동일한 것을 제외한 다른 유형은 60대의 비중이 전체비중보다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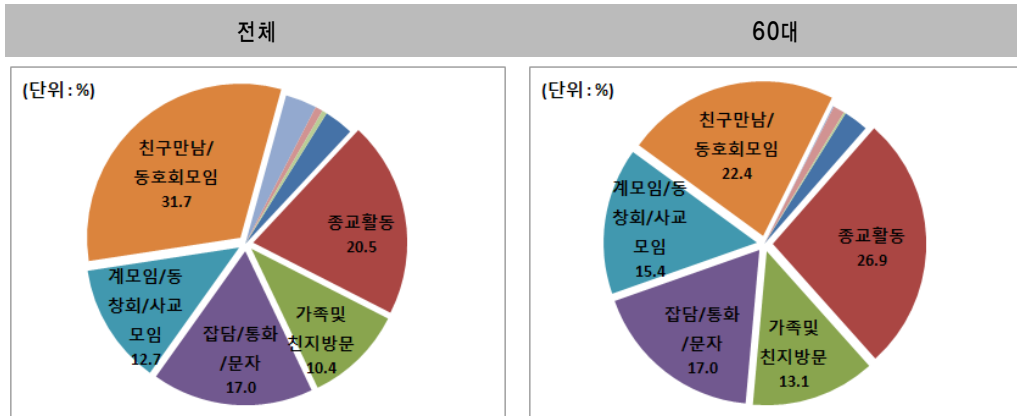


그림 II-9-12 60대 여가생활 참여유형(사회 및 기타활동)

자료 : 문화관광체육부, 2010년 국민여가활동조사

○ 여가활동의 목적으로 10~30대의 비고령층에서는 마음의 안정과 휴식, 그리고 건강의 비중이 높았고, 40~70대 이상의 고령층에서는 39.4%, 33.7%로 개인의 즐거움에 대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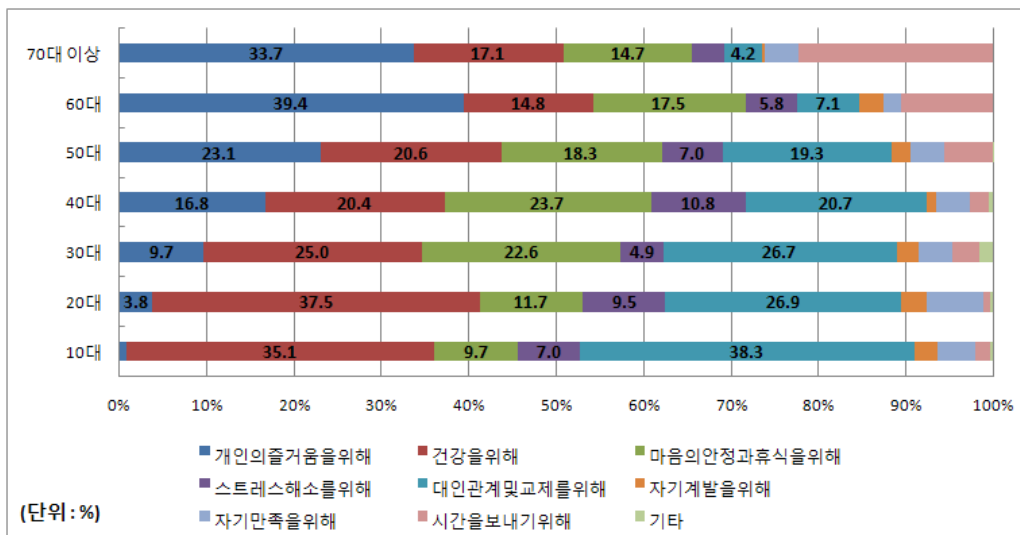


그림 II-9-13 연령별 여가활동의 목적

자료 : 문화관광체육부, 2010년 국민여가활동조사

- 현재고령자와 차기 고령자의 여가인식을 비교해보면 차기 고령자인 50대는 70.6%, 60대는 71.4%, 70대 이상의 현재고령자는 68.1%가 여가시간을 늘린다고 하였다. 이처럼 여가시간의 중요도가 커질수록 노동시간을 늘린다는 인식은 50대 25.1%, 60대 20.7%, 70대 이상 12.7%로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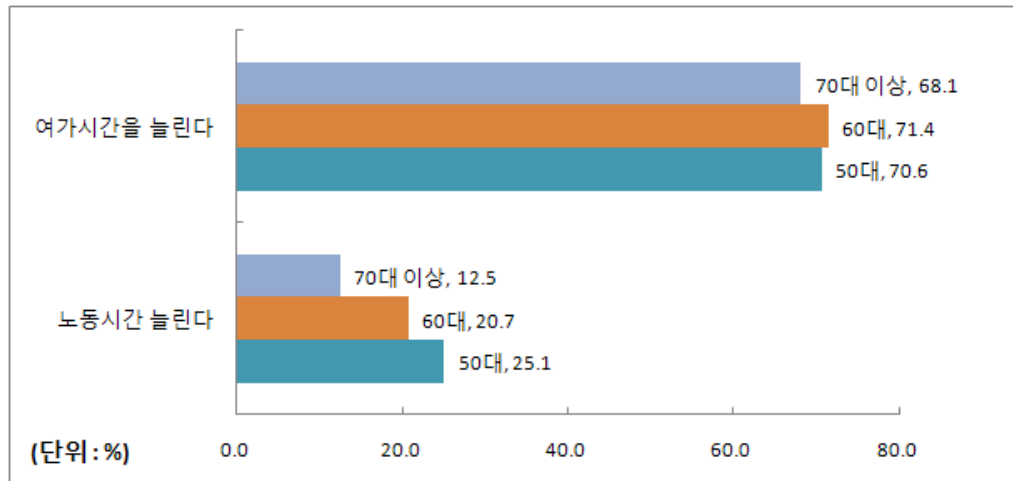


그림 II-9-14 현재 고령자와 차기 고령자의 여가인식 비교

자료 : 문화관광체육부, 2010년 국민여가활동조사

- 연령별 주당 TV 시청 시간이 가장 많은 연령대는 60세 이상으로 주당 27.3시간동안 TV 시청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4년보다 1시간가량 늘어난 것으로 연평균 0.8%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표 II-9-12 연령별 주당 TV 시청 시간

(단위 : 시간, %)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전체
2004년	18.8	21.6	21.7	20.9	22.5	26.2	22.2
2009년	18.0	20.6	20.6	20.0	22.1	27.3	21.9
CAGR(04-09)	-0.9	-0.9	-1.0	-0.9	-0.4	0.8	-0.3

자료 :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사회, 문화와 여가 관련 자료

- 공연장 및 전시장 입장률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영화로 44.8%인 반면 무용 공연장 입장률은 1.1%로 가장 낮았다.
- 공연장 및 전시장 입장률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20~29세였고, 60세 이상 그룹은 타 연령

대에 비하여 공연장 및 전시장 입장률이 낮았다.

표 II-9-13 2009년 연령별 공연장 및 전시장 입장률

(단위 : %)

	계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상대적이용률
음악	12.8	18.3	19.2	13.3	14.1	11.7	3.9	0.304
극,마당극,뮤지컬	12.9	15.1	23.6	16.8	12.0	8.6	3.0	0.230
무용	1.1	2.2	2.0	1.1	1.1	0.7	0.3	0.240
영화	44.8	70.4	74.8	58.1	45.7	26.4	7.1	0.158
박물관	13.8	15.7	14.1	22.3	15.4	9.3	5.0	0.360
미술관	10.0	13.6	14.3	13.2	10.5	7.7	2.8	0.276
스포츠	11.3	10.9	18.5	14.9	12.8	7.8	2.5	0.220

자료 :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사회, 문화와 여과 관련 자료

주 : 입장률은 관람한 사람 중 공연장 및 전시장 이용률에 각각의 비율을 곱한 것으로 분석함

- 가구주 연령별 서적 및 기타인쇄물 항목의 가계수지는 평균 24,610원으로 전년에 비하여 늘었고, 상대적 이용률도 0.282%로 증가하였다.
- 항목 가계수지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40~49세로 34,817원인 반면 60세 이상은 6,945원으로 가계수지가 가장 적었다.

표 II-9-14 가구주 연령별 서적 및 기타인쇄물 항목 월평균 가계수지(전국, 2인 이상)

(단위 : 원, %)

년도	전체평균	39세이하	40~49세	50~59세	60세이상	상대적이용률
2009년	24,076	30,776	33,344	17,324	6,148	0.255
2010년	24,610	30,936	34,817	17,511	6,945	0.282

자료 :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가계동향조사

주 : 가계수지항목 중 오락·문화의 서적과 기타인쇄물의 값을 합하여 분석함

-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50,385명으로 전년대비 15.9% 성장하였다. 외국인 관광객의 연령대는 31-40대가 9,52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년대비 14.1% 성장하면서 전 연령대에서 18.9%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 한편 61세 이상 외국인 관광객은 4,341명에서 5,621명으로 늘어 전년대비 29.5%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표 II-9-15 연령별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단위 : 천명, %)

연령별	계	0-20세	21-30세	31-40세	41-50세	51-60세	61세 이상	승무원
2009년	50,385	3,468	9,326	9,529	8,832	7,828	5,621	5,781
2008년	43,463	2,968	7,153	8,353	7,959	6,710	4,341	5,978
성장률	15.9	16.8	30.4	14.1	11.0	16.7	29.5	-3.3
비율	100.0	6.9	18.5	18.9	17.5	15.5	11.2	11.5

자료 : 통계청, 교육문화관광, 한국관광통계-외래객입국

주 : 통계청 월별 자료를 합하여 2008년과 2009년 외국인관광객수를 분석함

## 2) 문화(콘텐츠)산업 현황

- 문화(콘텐츠)산업의 매출액은 2009년 69조 5억 원에서 2010년 72조 5,377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종사자 수 또한 521,876명에서 532,445명으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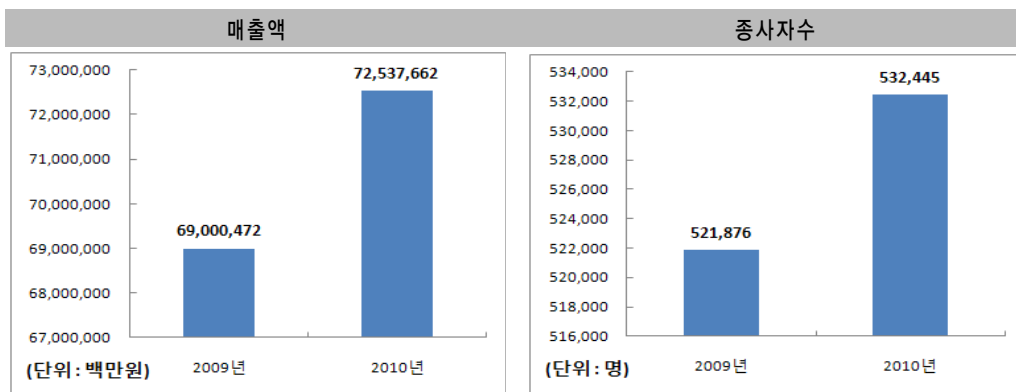


그림 II-9-15 문화(콘텐츠)산업 매출액 및 종사자 현황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동향분석보고서

주 : 분기별 동향조사에서 일부 제외된 방송과 광고산업의 통계값을 2009년 통계값으로 적용한 후 비교

- 문화(콘텐츠)산업의 2008년 수출액은 2조 3,376억 원에서 2009년 2조 6,042억으로 11.4%의 수출증가율을 기록하였다.
- 수입액은 2008년 1조 9,870억 원에서 2010년 1조 7,695억 원으로 수입증가율이 10.9% 감소하였다.
- 증가율 면에서 보면 수출 증가율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 반면 수입증가율은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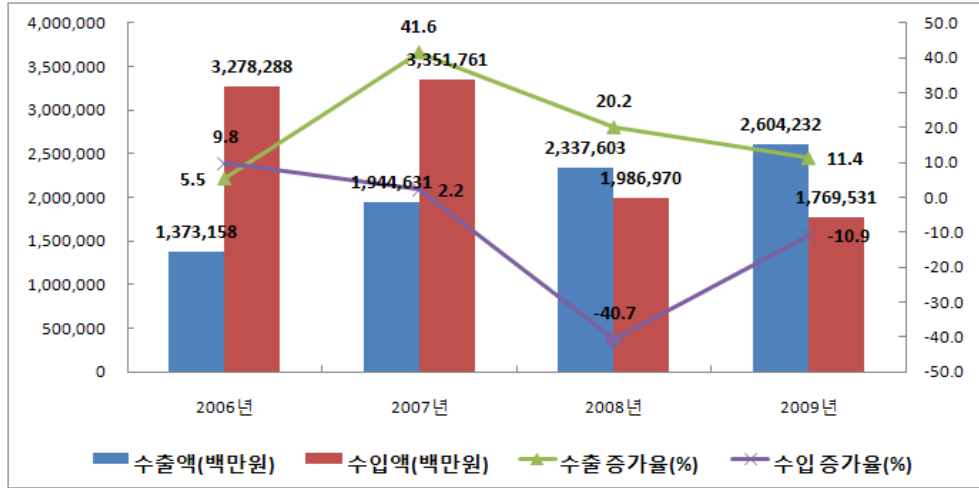


그림 II-9-16 연도별 문화(콘텐츠)산업 수출입 현황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동향분석보고서

주 : 분기별 동향조사에서 일부 제외된 방송과 광고산업의 통계값을 2009년 통계값으로 적용한 후 비교

- 문화(콘텐츠)산업의 총 매출액은 72조 5,377억 원으로 전년대비 5.1% 증가하였다. 이 중 매출액이 가장 많은 산업은 20조 1,490억 원을 기록한 출판산업으로 전년대비 2.4% 감소하였다. 방송산업은 11조 9,728억 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매출액을 기록하였으며, 광고산업은 9조 3,182억 원으로 전년대비 1.4% 증가하였다.
- 지식정보산업은 전년대비 증감률 32.9%로 12개 산업 중 증가율이 가장 컸던 반면 방송영상독립제작산업은 전년대비 10.4%의 감소율을 기록하였다.
- 문화(콘텐츠)산업의 총 종사자 수는 532,445명으로 전년대비 2.0% 증가하였다. 이 중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산업은 204,432명의 출판산업이고, 전년대비 증가율이 가장 큰 산업은 콘텐츠솔루션산업으로 전년대비 18.2% 증가하였다.

표 II-9-16 문화(콘텐츠)산업 매출액 및 종사자수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산업명	매출액		전년대비 증감률	종사자		전년대비 증감률
	2009년	2010년		2009년	2010년	
출판	20,609,123	20,148,965	-2.4	206,926	204,432	-1.2
만화	739,094	709,991	-3.9	10,748	11,068	3.0
음악(공연포함)	2,740,753	3,028,905	12.7	76,539	77,756	1.6
게임	6,580,600	7,853,473	19.3	43,365	48,834	12.6
영화	3,306,672	3,335,080	0.9	28,041	29,118	3.8
애니메이션	418,570	488,377	16.7	4,170	4,262	2.2
방송	11,972,788	11,972,788	0.0	29,560	29,560	0.0
방송영상독립제작사	796,175	713,113	-10.4	4,748	4,632	-2.4
광고	9,186,878	9,318,189	1.4	33,509	33,205	-0.9
캐릭터	5,358,272	5,779,389	7.9	23,406	23,080	-1.4
지식정보	5,255,185	6,983,631	32.9	44,897	47,626	6.1
콘텐츠솔루션	2,036,362	2,205,761	8.3	15,967	18,872	18.2
합계	69,000,472	72,537,662	5.1	521,876	532,445	2.0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동향분석보고서

주 : 분기별 동향조사에서 일부 제외된 방송과 광고산업의 통계값을 2009년 통계값으로 적용한 후 비교

○ 2010년 문화(콘텐츠)산업 세부 산업별 매출액 비중은 출판이 27.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방송 16.5%, 광고 12.8%, 게임 10.8%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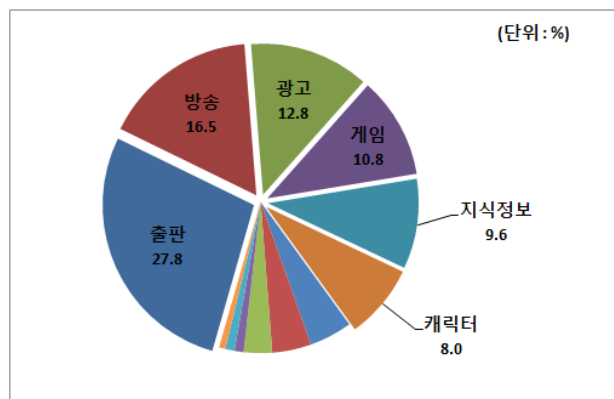


그림 II-9-17 문화(콘텐츠)산업 세부 산업별 매출액 비중(2010년)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동향분석보고서

주 : 1. 분기별 동향조사에서 일부 제외된 방송과 광고산업의 통계값을 2009년 통계값으로 적용한 후 비교

2. 음악에 공연 포함됨



- 2009년 문화(콘텐츠)산업의 세부 산업별 수출 비중은 게임이 47.6%로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지식정보 13.3%, 출판 9.6% 캐릭터 9.1%, 방송 7.1% 순이었다.
- 수입비중은 애니메이션이 34.5%로 가장 높았으며, 게임 19.7% 캐릭터 18.8%, 음악 11.1%, 광고 10.3%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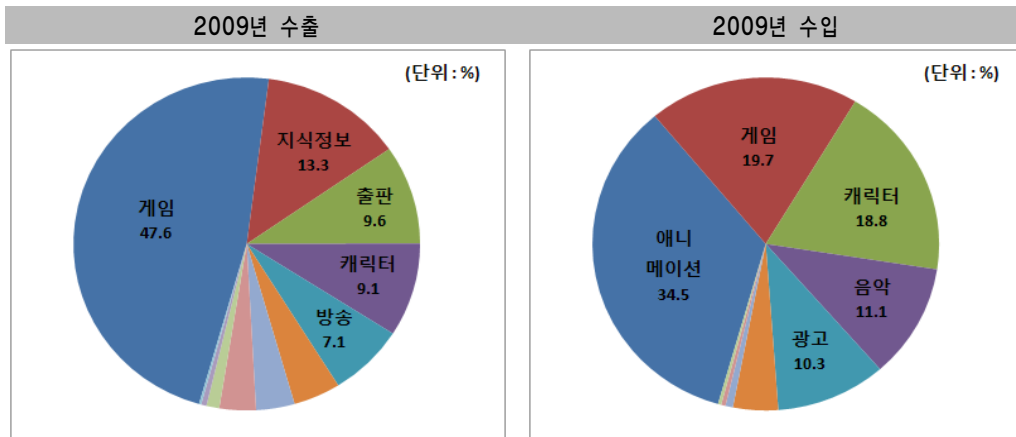


그림 II-9-18 2009년 문화(콘텐츠)산업 세부산업별 수출입 비중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동향분석보고서

주 : 분기별 동향조사에서 일부 제외된 방송과 광고산업의 통계값을 2009년 통계값으로 적용한 후 비교

### 가. 스포츠산업

- 2009년 국내 스포츠산업의 총 매출액 33조 4,439억 원에서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의 매출액이 23조 1,384억 원으로 전체에서 69.2%의 비중을 차지하며 가장 큰 시장규모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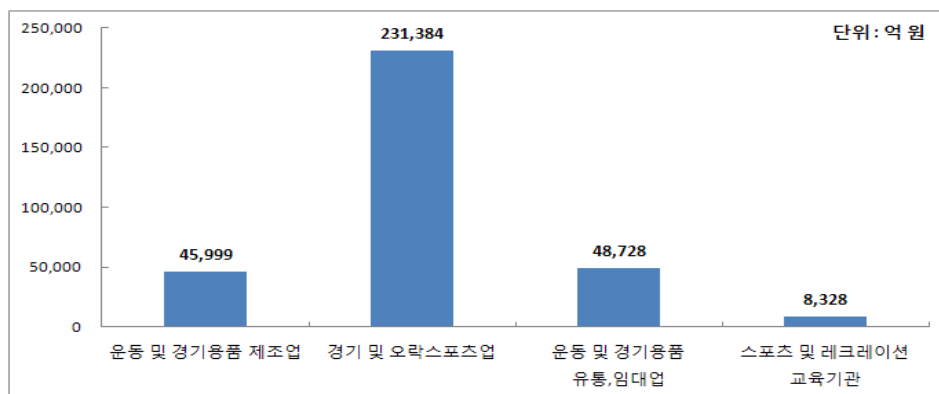


그림 II-9-19 2009년 국내 스포츠산업 시장규모

자료 : 문화관광부, 2010 스포츠산업 경영정보 보고서

표 II-9-17 2009년 국내 스포츠산업 시장규모

(단위 : 억원, %)

가계수지항목별		매출액	비중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기타 비알콜음료 제조업(스포츠음료)	1,784	0.5
	섬유제품 및 의복 제조업(스포츠 의류)	25,269	7.6
	가방 및 신발 제조업(스포츠 신발)	9,062	2.7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공류, 라켓류 등)	9,884	3.0
	소계	45,999	13.8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경기장 운영업	33,425	10.0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12,926	3.9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36,825	11.0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42,179	12.6
	수상스포츠시설 운영업	825	0.2
	캐블링 및 베팅업	104,993	31.4
	기타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211	0.1
	소계	231,384	69.2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 임대업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24,292	7.3
	운동, 경기용품 및 자전거 소매업	23,955	7.1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용품 임대업	481	0.1
	소계	48,728	14.5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교육기관		8,328	2.5
합계		334,439	100.0

자료 : 문화관광부, 2010 스포츠산업 경영정보 보고서

○2009년 국내 스포츠산업 교육서비스업 매출액 중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6.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II-9-18 2009년 스포츠산업 교육서비스업 고객유형별 매출액 비중

(단위 : %)

7세 이하	8-13세	14-19세	20-39세	40-59세	60세 이상
11.4	53.9	11.7	7.3	8.8	6.8

자료 : 문화관광부, 2010 스포츠산업 경영정보 보고서

## 나. 여행관광산업

○ 2009년 여행관광산업의 시장규모는 15조 4,298억 원으로 전년대비 6.5% 성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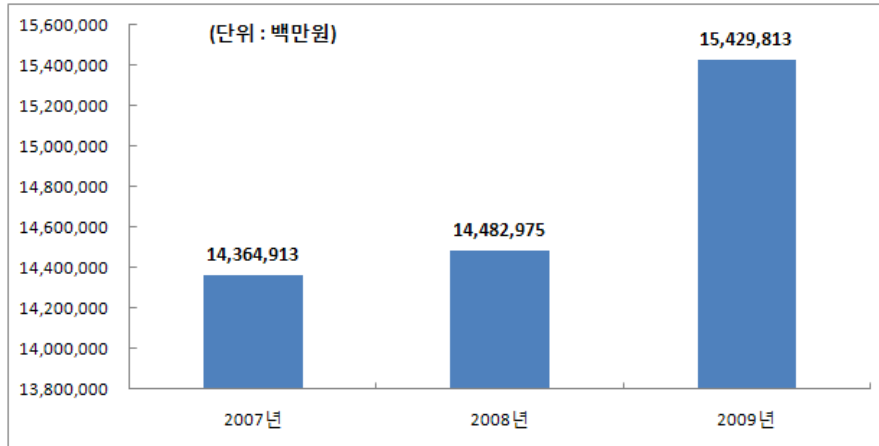


그림 II-9-20 2009년 국내 관광사업체 연간 매출액 현황

자료 : 문화관광부, 2009년 기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 여행관광산업에서 가장 큰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는 관광숙박업은 3.1%의 증가율을 기록한 반면 그 뒤를 잇는 여행업은 전년대비 5%가 감소하면서 여행관광산업 중에서 유일하게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유원시설업은 8,515억 원으로 1,443억 원이 증가하면서 전년대비 20.4%의 가장 큰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표 II-9-19 연도별 여행관광산업 시장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증감	증감률
전체	14,364,913	14,482,975	15,429,813	946,838	6.5
여행업	2,815,745	2,896,571	2,750,419	-146,152	-5.0
관광숙박업	4,943,740	4,940,447	5,092,650	152,203	3.1
관광객이용시설업	1,013,961	1,153,131	1,317,715	164,584	14.3
국제회의업	1,389,193	1,264,133	1,321,120	56,987	4.5
카지노업	1,950,370	1,982,595	2,306,733	324,138	16.3
유원시설업	680,720	707,224	851,486	144,262	20.4
관광편의시설업	1,571,184	1,538,874	1,789,690	250,816	16.3

자료 : 문화관광부, 2009년 기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주 : 1. 여행업은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국내외여행업으로 구성됨

2. 관광숙박업은 호텔업(가족호텔업,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으로 구성됨

3. 관광객이용시설업은 관광공연장업, 관광유람선업,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자동차야영장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으로 구성됨

4. 국제회의업은 국제회의기획업과 국제회의시설업으로 구성됨

5. 유원시설업은 기타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종합유원시설업으로 구성됨

6. 관광편의시설업은 관광사진업, 관광식당업, 관광유희음식점업, 관광펜션업, 시내순환관광업, 외국인전용유희음식점업, 관광캐노우업, 한옥체험업으로 구성됨

## 2.3 국내 시장규모 및 전망

### 1) 시장규모 분석 방법

#### 가. 기준연도 시장규모 추정 방법

모태산업(여가산업)의 시장규모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자료원으로 콘텐츠산업동향분석 보고서<sup>98)</sup>(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 경영정보 보고서(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보고서(문화관광부) 등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 시장규모 분석을 위한 자료로 이용하였다.

모태산업 대비 고령친화 여가산업의 시장규모를 분석하기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 스포츠산업, 여행관광산업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 시장규모를 추정하였다.

첫째, 문화(콘텐츠)산업 중 고령친화 문화(콘텐츠)산업의 시장규모는 문화(콘텐츠)산업의

98) 2009년 기준 2010년 문화산업통계는 그 명칭과 내용이 콘텐츠산업통계(디지털콘텐츠 분야 포함)로 변경되었다.

각 부문별 시장규모에 65세 이상 인구 비중, 소비 비중, 가중치를 곱하여 시장규모를 추정하였다.

$y_i = \sum_{j=1}^{12} (\text{부문별 시장규모}_{ij}) \times (\text{인구비율}_i) \times (\text{소비비율}_{ij}) \times (\text{가중치}_{ij})$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ath>y_i</math> : <math>i</math>연도의 고령친화 문화(콘텐츠)산업 시장규모</li> <li>▪ <math>j</math> : 문화(콘텐츠)산업의 부문(<math>j = 1, \dots, 12</math>)<sup>99)</sup></li> <li>▪ 인구비율<sub><math>i</math></sub> : <math>i</math>연도의 <math>j</math>번째 부문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sup>100)</sup></li> <li>▪ 소비비율<sub><math>ij</math></sub> : <math>i</math>연도의 <math>j</math>번째 부문의 60세 이상의 상대적 이용률</li> <li>▪ 가중치<sub><math>ij</math></sub> : <math>i</math>연도의 <math>j</math>번째 부문의 고령자 가중치<sup>101)</sup></li> </ul>

둘째, 스포츠산업 중 고령친화 스포츠산업의 시장규모는 스포츠산업의 시장규모에 65세 이상 인구 비중과 소비 비중을 곱하여 시장규모를 추정하였다.

$y_i = (\text{스포츠산업 시장규모}_i) \times (\text{인구비율}_i) \times (\text{소비비율}_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ath>y_i</math> : <math>i</math>연도의 스포츠산업 시장규모</li> <li>▪ 인구비율<sub><math>i</math></sub> : <math>i</math>연도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li> <li>▪ 소비비율<sub><math>i</math></sub> : <math>i</math>연도의 60세 이상의 상대적 이용률</li> </ul>

셋째, 여행관광산업 중 고령친화 여행관광산업의 시장규모는 관광레저산업의 시장규모에 61세 이상 여행객 비중을 곱하여 시장규모를 추정하였다.

$y_i = (\text{여행관광산업 시장규모}_i) \times (\text{여행객 비율}_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ath>y_i</math> : <math>i</math>연도의 여행관광산업 시장규모</li> <li>▪ 여행객비율<sub><math>i</math></sub> : <math>i</math>연도의 61세 이상 여행객 비율</li> <li>※ 여행객비율은 한국을 방문하는 연령별 외국인관광객 자료를 이용함</li> </ul>

전체 고령친화 여가산업의 시장규모는 위에서 분석한 고령친화 문화(콘텐츠)산업, 스포츠산업, 여행관광산업 등의 시장규모를 합한 규모가 된다.

99) 문화(콘텐츠)산업은 출판, 만화, 음악(공연포함),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방송영상독립,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으로 구분된다.

100) 분석을 위해 사용된 참고자료 각 부문별 사용비율이 60세 이상 자료이다. (인구비율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사용하였다.)

101) 문화(콘텐츠)산업의 각 부문에 고령자가 다른 효과를 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 나. 시장규모 전망(예측) 방법

국내 고령친화 여가산업의 시장규모를 예측하기 위해 경제성장률, 노인인구의 변화 등을 고려<sup>102)</sup>하였다. 고령화 사회의 진전에 따라 노인인구가 많아지면서 고령친화 여가산업도 영향을 받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 2) 시장규모 추정 및 예측 결과

### 가. 기준연도 시장규모 추정 결과

- 문화(콘텐츠)산업의 총 매출액 69조 5억 원인데, 방송 시장규모가 가장 크고 이어서 출판, 광고의 순이다.
- 방송,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경우 노인층의 인구비율과 TV 시청시간 비율을 고려하여 고령친화 시장규모를 추정하였다. 65세 이상 노인층의 인구비율은 2010년 10.65%이고, 노인의 상대적인 TV 시청시간 비율은 평균을 1로 보았을 때, 1.247로 노인들의 TV시청시간이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 광고시장은 소비가 왕성한 청년층이나 중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노인들의 시청시간이 많다고 하더라도 노인에 대한 광고효과는 반감될 것이다. 이를 반영하기 위해 여기에서는 일반인보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시장은 50% 할인해서 계산하였다.
- 따라서 고령친화 방송, 방송영상독립제작사, 광고 등의 시장규모는 각각 1조 5,895억 원, 1,057억 원, 6,098억 원으로 추정된다.
- 마찬가지로 음악, 영화 등도 65세 이상 인구비율과 평균과 비교한 상대적인 입장비율을 고려하여 추정하였다. 영화의 경우 상대적 이용률이 0.158, 음악의 경우 0.304이므로 영화 시장규모는 556억 원이고 음악의 경우 886억 원으로 나타났다.
- 만화, 게임, 캐릭터, 애니메이션 등은 주로 어린이나 젊은 층에서 이용하는 분야이므로 노인들의 사용비중이 매우 낮다고 보아 상대적인 비중을 0.02로 하였다. 이에 따라 시장규모를 산출하면 모두 합쳐서 279억 원이 추정된다.
-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및 출판 등은 65세 이상 인구비율과 평균과 비교한 상대적인 이용률<sup>103)</sup>을 고려하여 추정하였다.

102) 여가산업의 경우 고령친화 여가산업 시장규모 분석에 사용된 자료가 2009년 자료로 한정되어 있어 시장규모 전망(예측)에 있어 타 산업과 다른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경제성장 및 노인인구의 증가 정도를 반영하였다. 경제성장률은 2010년 예측의 경우 한국은행 자료(6.2%)를 이용하였으며, 2011년부터 2020년 예측의 경우 IMF 경제전망 자료(약 4%)를 이용하였다. 또한 노인인구의 증가 정도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이용하여 2020년까지의 전년대비 성장률을 기준으로 예측하였다.

103)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전체 서적 및 기타인쇄물 가계수지 평균을 1로 보았을 때, 60세 이상 가구의 상대적 서적 및 기타인쇄물 가계수지 비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이들을 모두 합하여 고령친화 문화산업 시장규모를 구하면, 3조 2,359억 원이 된다.
- 고령친화 문화(콘텐츠)산업시장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방송으로 1조 5,895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광고가 6,098억 원, 출판이 5,605억 원 순이었다. 산업별 상대적 이용률도 방송, 1.247%로 방송영상독립제작사, 광고 등 방송계통이 가장 높았다.
- 이를 미루어보아 문화(콘텐츠)산업에서는 출판산업의 규모가, 고령친화 문화(콘텐츠)산업에서는 방송산업의 규모가 큰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표 II-9-20 2009년 고령친화 문화(콘텐츠)산업 시장규모

(단위 : 백만원, %)

세부 산업별	문화(콘텐츠)산업	인구비율	사용비율	가중치	고령친화 문화(콘텐츠)산업
출판	20,609,123	0.107	0.255	-	560,478
만화	739,094	0.107	-	0.020	1,574
음악(공연포함)	2,740,753	0.107	0.304	-	88,593
게임	6,580,600	0.107	-	0.020	14,017
영화	3,306,672	0.107	0.158	-	55,642
애니메이션	418,570	0.107	-	0.020	892
방송	11,972,788	0.107	1.247	-	1,589,511
방송영상독립제작사	796,175	0.107	1.247	-	105,700
광고	9,186,878	0.107	1.247	0.500	609,826
캐릭터	5,358,272	0.107	-	0.020	11,413
지식정보	5,255,185	0.107	0.255	-	142,918
콘텐츠솔루션	2,036,362	0.107	0.255	-	55,380
총계	69,000,472	-	-	-	3,235,944

자료 : 1.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동향분석보고서

2.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사회, 문화와 여가 관련 자료, 가계동향조사, 장애인구추계

- 2009년 기준 국내 스포츠산업 시장규모는 33조 4,439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고령친화 스포츠산업 시장규모는 문화(콘텐츠)산업 시장규모 추정방법과 마찬가지로 스포츠산업 시장규모 총계에 65세 인구비율과 상대적 소비비율을 곱하여 계산하였다.
- 연령별 체육시설 이용률은 가계동향조사 소비지출 금액 중 운동관련 용품/서비스 등에 소비하는 금액의 60세 이상 상대적 소비 비율이 0.556으로 나타났다.

표 II-9-21 2009년 가구당 월평균 운동관련 용품/서비스 가계수지(전국, 2인 이상)

(단위 : 원, %)

	전체 평균	39세이하	40~49세	50~59세	60세이상
소비지출	2,149,184	2,173,863	2,518,339	2,210,992	1,391,141
운동관련용품/운동서비스	17,412	17,189	21,350	18,365	9,684
상대적 소비비율	1.000	0.987	1.226	1.055	0.556

자료 :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사회, 문화와 여과 관련 자료, 가계동향조사

○ 이에 따라 2009년 고령친화 스포츠산업 시장규모는 1조 9,809억 원으로 추정된다.

표 II-9-22 2009년 고령친화 스포츠산업 시장규모

(단위 : 억 원, %)

스포츠산업 시장규모	인구비율	소비비율	고령친화 스포츠산업
334,439	0.107	0.556	19,809

자료 : 1.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동향분석보고서

2.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사회, 문화와 여과 관련 자료, 가계동향조사, 장애인구추계

○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관광객수는 약 5,038만명이고, 61세 이상이 11.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관광객도 같은 비율로 가정하였다.

표 II-9-23 2009년 한국을 방문하는 연령별 외국인관광객

(단위 : 천 명, %)

연령별	계	0-20세	21-30세	31-40세	41-50세	51-60세	61세 이상	승무원
관광객수	50,385	3,468	9,326	9,529	8,832	7,828	5,621	5,781
비율	100.0	6.9	18.5	18.9	17.5	15.5	11.2	11.5

자료 :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교육문화관광, 한국관광통계-외래객입국

주 : 통계청 월별 자료를 합하여 2008년과 2009년 외국인관광객수를 분석함

○ 전체 여행관광시장 중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고령친화 여행관광시장은 총 1조 7,281억 원인데, 이는 여행관광시장인 15조 4,298억 원에 61세 이상 노인 여행객 비중인 11.2%를 곱하여 계산하였다.



표 II-9-24 2009년 고령친화 여행관광산업 시장규모

(단위 : 백만원, %)

여행관광산업 시장규모	여행객 비율	고령친화 여행관광산업
15,429,813	0.112	1,728,139

자료 : 1. 문화관광부, 2009년 기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2.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사회, 문화와 여과 관련 자료, 가계동향조사, 장애인구추계

3. 문화관광부, 2009년 기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주 : 1. 여행업은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국내외여행업으로 구성됨

2. 관광숙박업은 호텔업(가족호텔업,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으로 구성됨

3. 관광객이용시설업은 관광공연장업, 관광유람선업,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자동차야영장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으로 구성됨

4. 국제회의업은 국제회의기획업과 국제회의시설업으로 구성됨

5. 유원시설업은 기타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종합유원시설업으로 구성됨

6. 관광편의시설업은 관광사진업, 관광식당업, 관광유희음식점업, 관광펜션업, 시내순환관광업, 외국인전용유희음식점업, 관광캐노우업, 한옥체험업으로 구성됨

○ 선정된 고령친화 여가산업 전략품목의 시장규모는 2009년 2조 728억 원으로 전체 고령친화 여가산업의 시장규모 중 약 29.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9-25 2009년 고령친화 여가산업 전략품목 시장규모

(단위 : 억 원, %)

선정된 전략품목		시장규모
문화(콘텐츠)산업	기능성 게임(게임)	140
	고령친화방송(방송)	15,895
	정보제공 웹 사이트(지식정보)	1,429
스포츠산업	시설운영업(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766
	고령친화 휴양단지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교육기관
여행관광업		관광편의시설업
전략품목		20,728
비중		29.8
고령친화여가산업		69,450

자료 : 1.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동향분석보고서

2.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사회, 문화와 여과 관련 자료, 가계동향조사, 장애인구추계

3. 문화관광부, 2010 스포츠산업 경영정보 보고서

4. 문화관광부, 2009년 기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 나. 시장규모 전망(예측) 결과

- 앞에서 설명한 방법을 활용하여 향후 고령친화 여가산업의 시장규모를 전망하여 본 결과, 고령친화 여가산업의 시장규모는 2015년 11조 268억 원, 2020년 16조 1,917억 원으로 나타났다.
- 2010년 모태산업 대비 고령친화 여가산업의 비중은 6.1%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 7.2%, 2020년 8.7% 정도의 비중으로 전망된다.

표 II-9-26 고령친화 여가산업 시장규모 전망(예측)

(단위 : 억 원, %)

	2009년	2010년	2015년	2018년	2020년	CAGR(10-20)
고령친화 여가산업	69,450	76,088	110,268	137,525	161,917	7.8
비중	5.9	6.1	7.2	8.0	8.7	
모태산업	1,168,093	1,243,768	1,525,698	1,718,406	1,858,075	4.1

## 3. 전략품목 및 지원정책

### 3.1 전략품목 선정

#### 1) 선정기준

고령친화 여가산업의 범주에서 크게 스포츠, 문화, 관광레저 산업 등 3개 분야로 나누고, 스포츠산업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관광레저진흥법을 근거로 세부적인 품목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토대로, 고령자 대상 수요조사 결과, 노인의 접근성, 경제적 측면, 기술적 측면, 문화·복지적 측면 등 5개 선정기준을 가지고 선정하였다. 선정기준별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노인의 접근성, 경제적 측면, 기술적 측면, 문화·복지적 측면 4가지 분야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적으로 수요조사 결과 및 4개 선정기준에 대해 4점척도를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상위 품목을 전략품목으로 선정하였다.

표 II-9-27 고령친화 여가산업 전략품목 선정기준

기준	내용
수요조사 결과	• 중고령자가 노후에 가장 필요한 여가지원서비스로 선택한 비율을 적용 30% 이상 : 4점, 20% 이상~30%미만 : 3점, 10%이상~20%미만 : 2점, 10%미만 : 1점
접근성	• 노년층의 접근성 : 노년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가산업군인지에 대한 정도
경제적 측면	• 경제적 파급효과 : 고령친화 여가산업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경제적 파급력의 정도 • 국제경쟁력 : 해외수출을 감안하여 해외에서 선진업체와 경쟁했을 때 국내기업의 경쟁력 정도
기술적 측면	• 첨단 기술과의 연계 : IT, CT 등 노년층의 여가생활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진기술과의 연계 정도
문화·복지적 측면	• 지속적인 여가문화 창출 : 단발적인 유행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여가문화를 창출해낼 수 있는지 평가 • 복지 증진 : 노년층의 삶의 질 개선 및 복지 증진에 대한 기여의 정도

※ 척도 : ×낮음(1), △보통(2), ○높음(3), ◎매우 높음(4)

## 2) 전략품목 선정

고령친화 여가산업 3개 분야에서 관련법에 근거하고, 고령소비자 수요조사 결과 및 전문가 의견을 통하여 총 17개 유망품목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유망품목에 5가지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종합점수가 13점 이상인 경우를 전략품목으로 선정하였다. 전략 품목으로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는 품목은 스포츠 시설운영업, 고령친화방송, 문화오락센터, 기능성 게임, 정보 제공 웹사이트, 고령 친화 휴양단지의 6개 품목이다. 특히 고령친화 휴양단지는 미국, 일본 등 해외사례에서 처럼 향후 우리나라도 휴양, 레저 등 복합적인 형태의 단지에 대한 수요증가에 대한 욕구에 대한 반영으로 나타났고, 기능성 게임과 정보 제공 웹 사이트는 IT, CT 등의 첨단 기술과의 연계 정도가 높으며 문화, 복지 측면에서도 의미가 큰 것으로 전망된다.

표 II-9-28 고령친화 여가산업의 전략품목 선정

분야 및 품목		수요조사	접근성	경제적	기술적	문화·복지	종합평가	
							점수	적합
스포츠	경기업	○	○	△	×	○	12	부적합
	정보업	○	○	△	×	○	12	부적합
	시설운영업	○	○	△	×	◎	13	적합
문화	고령친화방송	△	○	○	△	○	13	적합
	영화	△	△	○	△	○	12	부적합
	음악 및 공연	△	△	△	×	○	10	부적합
	공예	△	○	△	×	○	11	부적합
	문화오락센터	△	◎	○	△	◎	15	적합
	기능성게임	△	○	◎	◎	○	16	적합
	정보 제공 웹사이트	△	○	○	◎	○	15	적합
관광 레저	국내관광	△	○	○	×	○	12	부적합
	해외관광	△	○	△	×	△	10	부적합
	복권	△	△	×	×	×	7	부적합
	카지노	△	×	×	×	×	6	부적합
	경마	△	×	×	×	×	6	부적합
	놀이공원	△	△	○	×	○	11	부적합
	고령친화 휴양단지	◎	◎	○	○	◎	18	적합

※ 수요조사 결과 : 30% 이상 : 4점, 20% 이상~30%미만 : 3점, 10%이상~20%미만 : 2점, 10%미만 : 1점

※ 척도 : ×낮음(1), △보통(2), ○높음(3), ◎매우 높음(4)

## 3.2 제약요인 및 정책과제

### 1) 노인 여가문화 활성화<sup>104)</sup>

#### 가. 노인 여가 향유 지원

○IT교육의 확대 및 노인여가활동 정보공간의 개설

- 노인은 주변의 권유와 지역신문을 통해 여가활동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노인들

104) 윤소영, 《노인 여가문화 활성화 방안을 위한 실태조사-노인여가시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 pp.112-120.

을 위한 여가정보의 공간을 개설함으로써 여가활동의 접근성을 확대시킬 수 있고, 또한 기존의 IT교육을 국가적으로 확대시켜 노인들의 인터넷 활용을 유도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자체적 친목다짐은 물론 노인들의 대화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 노인들의 적극적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시니어를 위한 대회, 이벤트 및 활동비 지원
  - 노인들의 여가활동 참여 유도를 위해 시니어를 위한 공연이나 자격증 대회 등과 같은 성취를 이루는 이벤트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여가정보에 대한 온라인 시스템을 마련하여 누구나가 쉽게 공연정보를 찾아보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공연준비를 위한 활동비, 의상비 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대여하거나 지원받을 수 있는 루트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 나. 여가 프로그램의 특성화

- 정년퇴직 후 여가적응 프로그램의 개발
  - 노인들의 퇴직 후 늘어난 여가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취지에서 여가적응 프로그램을 마련, 새로운 삶의 적응을 통해 노인여가문화를 활성화하는 방법에 대하여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난이도에 따른 프로그램의 다양화
  - 노인을 위한 여가프로그램의 현재 초급단계에 머물러 있으므로, 노인의 정신적·신체적 조건을 감안하여 참여의 난이도별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 세대공유 여가프로그램 및 시설의 개발
  - 노인들이 여가활동을 함에 있어 다른 세대로부터 고립된 존재가 아닌 사회의 한 일원으로 인식되어지기를 바라므로, 노인복지관 외에 다른 자치센터나 문화센터에서도 노인활동 영역에 맞고, 여러 세대가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할 필요가 있음

#### 다. 제도 정비

- 여가활동 지도자 교육의 제도화
  - 노인을 이해하고, 다양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인관련 여가교육을 체계적으로 지도받을 수 있는 자격증 제도 및 연수제도를 제공하고, 이를 가르칠 수 있는 전문적인 지도자를 육성하는 것이 필요
- 지역사회 봉사활동 연계시스템 마련
  - 봉사활동도 노인의 능력을 발휘함과 동시에 이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봉사활동 연계시스템을 통해, 지역사회 내 고학력자 및 교수, 유명인사 등의

참여확대를 유도하여 이러한 배움을 통한 여가활동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여가자원의 지원

- 노인들의 휴식공간의 확대, 여가활동 비용의 저렴화를 위한 현물적 지원, 자치센터 내 전문 인력 투입을 통해 노인들의 여가활동을 보장해야 할 것임

## 2) 노인 여가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 가. 고령자를 위한 콘텐츠산업의 정책적 개념화

- 고령자를 위한 콘텐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과 고령자를 위한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가칭 실버콘텐츠진흥위원회) 설치를 통해 산업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업기반을 조성하고 산업진흥위원회를 설치하여 법률에 규정된 사업 추진을 지원할 수 있는 기구 마련이 필요

### 나. 범부처 및 지자체와 민간 주체의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

- 범부처간 협력은 실버콘텐츠진흥위원회를 통해 추진
  - 실버콘텐츠진흥위원회를 통해 범부처 협력을 통한 여가산업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소관 관련 부처장관, 전문가를 포함한 위원 구성이 필요
- 지자체 및 민간주체와 협력 추진
  - 실버콘텐츠진흥위원회와 지자체, 콘텐츠 제작사, 플랫폼 사업자, 네트워크 사업자, 실버콘텐츠서비스 관련 비영리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여 산업 진흥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여 협력을 추진

### 다. 고령자를 위한 콘텐츠 비즈니스 혁신 클러스터 구축

- 광역 경제권별 지역 클러스터 구축
  - 광역권별 기술개발(R&D), 인력양성, 산업화 지원, 기술거점 등 종합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실버콘텐츠 공동 진흥센터를 설립하고 인위적인 단지조성 보다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실버산업에 특화된 지역 클러스터를 발굴하고, 국제 박람회, 세미나, 컨퍼런스 개최 및 참가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한 혁신시스템 구축이 필요

### 라. 고령자를 위한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 현재 실버콘텐츠 인력 및 수요현황 등의 실태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실버콘

텐츠 관련 인력 현황을 조사 및 분석하고, 이를 통해 중장기계획에 따른 기획, 마케팅, 뉴미디어 및 첨단 CT활용 제작 인력 등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

#### 마. 투자 활성화 지원

- 실버콘텐츠분야를 주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을 결성하여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민간 참여 부진 시 정부에서 우선 지원토록 하며, 민간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부여 및 공공기금을 활용한 지원을 통해 산업 활성화 유도

#### 바. 핵심 기술 개발

- 산·학·연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실버콘텐츠 기술전략지도 및 기술로드맵을 수립하고, 미래 글로벌 실버콘텐츠시장 선도를 위한 미래 실버콘텐츠 핵심기술 개발을 선정하여 개발 추진하는 것이 필요
- 핵심 및 원천기술개발 추진과 동시에 국제 표준 및 품질인증을 통해 안전하고 건전한 콘텐츠 유통 문화 확산을 유도

#### 사. 선도 콘텐츠 개발

- IT 및 VR기술을 적용한 실버 세대용 기능성 콘텐츠가 시장 창출을 선도할 킬러콘텐츠로 예상 되므로, 스크린골프나 스크린 승마와 같은 기능성 콘텐츠, 노인들의 체력과 편리성을 고려한 Full스크린 활용 콘텐츠, 작은 동작으로도 조작이 가능한 Haptic(촉각)기술 접목 콘텐츠 등 고령자를 위한 선도적인 콘텐츠 개발 등 발굴 지원 노력일 필요

#### 아. 비영리단체 및 시민단체의 실버콘텐츠 서비스 참여 보장

- 비영리단체 및 시민단체가 실버콘텐츠 서비스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지자체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소관 부처 공동 주관으로 이들이 제작하는 콘텐츠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표 II-9-29 고령친화 여가산업 정책과제

정책지원
(1) 노인 여가문화 활성화
- 노인 여가 향유 지원
- 여가 프로그램의 특성화
- 제도 정비(여가활동 지도자 교육의 제도화 등)
(2) 노인 여가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 실버콘텐츠산업 정책의 개념화
- 범부처 및 지자체와 민간 주체의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
- 고령자를 위한 콘텐츠 비즈니스 혁신 클러스터 구축
- 고령자를 위한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 투자 활성화 지원
- 핵심 기술 개발
- 선도 콘텐츠 개발
- 비영리단체 및 시민단체의 실버콘텐츠 서비스 참여 보장

### 3.3 정책 기대효과

노인들이 활발한 여가활동 지원을 통해 고립된 존재가 아닌 사회의 한 일원으로 활기찬 노후생활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고, 고령친화 여가산업의 선도적 콘텐츠 개발 및 혁신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 및 국제적으로 산업경쟁력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 제10장 고령친화 기타산업

### 1. 고령친화 농업

#### 1.1 지원 현황

##### 1) 외국

일본의 고령자복지대책은 내각부 내에 설치되어 있는 고령사회대책실에서 고령사회대책 기본법에 의거하여 계획수립되고 있는데, 농촌의 노인들에게는 농업노동자조령연금제도를 통해 노후소득보장의 기회를 주고 있다. 또 고령자의 사회참여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후생성의 『장수개발센터』를 발족으로 고령자의 건강한 삶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농어촌의 고령자를 위하여 농림어업에 관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농촌 고령자를 중요한 지역사회의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역자원 활용법, 자연 접촉방법 등으로 다양한 능력을 지역사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고령자 중심의 생산적 활동 참여를 위하여 라이프스타일별 고령자 적합 생산활동, 도·농 고령자 교류활동 등 생산적 활동을 위한 자립적인 농업관계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 2) 국내

농림수산물식품부와 농촌진흥청에서는 고령화 분야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연금보험료,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 형식으로 지원한다. 65세 이상 부부가구 등 취약농가에 가사도우미를 지원하여 기초생활 보장을 하고 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65세 이상 노인비율이 마을 인구의 20%

이상인 마을 중 전체 노인의 50% 이상이 사업에 참여할 의지가 있는 마을을 지정하고, 지정된 마을에 3년간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건강생활 활동 실천(게이트볼, 노인체조, 노인공동식생활 프로그램 등), 평생학습 차원의 노년 교육·사회활동(원예, 한글, 무용 등 치매예방활동), 노년 안전 생활환경 정비(계단 및 문턱제거, 안전손잡이 등 생활안전시설), 노년에 적절한 소득·경제활동(농작물 재배, 전통장류 생산, 공예품 제작 등) 4개 영역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다. 농촌지원생활 안전관리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통해 마을단위 자생적 농촌지원 돌봄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및 도우미 양성교육, 공동체 조직체계 기반 구축(노인관찰, 긴급 구급물품 지원 등) 및 도우미 활동 지원, 고령농가의 주거공간 안전생활 환경조성, 건강, 치매예방 등 마을 주민을 위한 다양한 안전생활 교육 프로그램 지원하고 있다.

고령자 대상은 아니지만 정부는 귀농인 지원대책을 추진중에 있다. 지난 2009년 8월 "귀농귀촌종합센터(www.returnfarm.com)"를 구축하여, 귀농교육, 정부·지자체 지원사업현황, 귀농 성공사례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콜센터(1577-9597)를 운영하여 귀농상담을 시행하고 있다.(귀농귀촌종합센터는 농협중앙회에서 운영), 또 농업 농촌에 대해서 바로 알고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매년 1,200명 수준의 예비 귀농인을 대상으로 실습위주의 귀농교육을 실시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농업창업 및 주택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귀농인에게는 저리의 융자금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돕고 있으며, 각 지자체에서도 귀농인 유치를 위해 중앙정부와는 별도의 조례제정 및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고령자를 위한 작물 재배 등 실제적인 농업 지원방안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 1.2 시장 현황

### 1) 농업 인구 현황

- 2009년 총 농가인구 3,117 천 명 중에서 60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1,393천 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인구 44.7%의 절반 가까운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 중에서도 65세 이상 인구 비중(34.2%, 1,067천 명)이 60-64세 인구 비중(10.5%, 326천 명)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년대비 각각 0.3%, 0.9%가 늘어난 비중임을 알 수 있다.

표 II-10-1 연령별 농가인구 추이

(단위 : 명, %)

연도	계	0-14세	15-19세	20-49세	50-59세	60세 이상	60세 이상	
							60-64세	65세 이상
2000년	4,031,065 (100.0)	458,775 (11.4)	262,026 (6.5)	1,300,902 (32.3)	676,367 (16.8)	1,332,995 (33.1)	456,986 (11.3)	876,009 (21.7)
2001년	3,933,250 (100.0)	444,466 (11.3)	241,910 (6.2)	1,187,709 (30.2)	636,188 (16.2)	1,422,977 (36.2)	464,321 (11.8)	958,656 (24.4)
2002년	3,590,523 (100.0)	384,044 (10.7)	193,057 (5.4)	1,052,217 (29.3)	589,662 (16.4)	1,371,544 (38.2)	431,214 (12.0)	940,330 (26.2)
2003년	3,530,102 (100.0)	377,262 (10.7)	176,603 (5.0)	1,019,727 (28.9)	579,740 (16.4)	1,376,769 (39.0)	394,803 (11.2)	981,966 (27.8)
2004년	3,414,551 (100.0)	352,635 (10.3)	158,603 (4.6)	962,702 (28.2)	565,834 (16.6)	1,374,778 (40.3)	372,750 (10.9)	1,002,028 (29.3)
2005년	3,433,573 (100.0)	335,085 (9.8)	157,792 (4.6)	988,780 (28.8)	600,863 (17.5)	1,351,053 (39.3)	351,747 (10.2)	999,306 (29.1)
2006년	3,304,173 (100.0)	314,905 (9.5)	144,196 (4.4)	896,100 (27.1)	601,418 (18.2)	1,347,555 (40.8)	329,242 (10.0)	1,018,313 (30.8)
2007년	3,274,091 (100.0)	307,746 (9.4)	143,090 (4.4)	855,487 (26.1)	592,457 (18.1)	1,375,312 (42.0)	323,611 (9.9)	1,051,701 (32.1)
2008년	3,186,753 (100.0)	287,848 (9.0)	133,136 (4.2)	796,077 (25.0)	584,185 (18.3)	1,385,506 (43.5)	325,428 (10.2)	1,060,078 (33.3)
2009년	3,117,322 (100.0)	265,306 (8.5)	132,587 (4.3)	749,375 (24.0)	576,955 (18.5)	1,393,099 (44.7)	325,837 (10.5)	1,067,262 (34.2)

자료 : 1.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농업조사, 각년도

2. 농림수산식품부, 2010 농림수산물 주요통계

주 : 괄호( ) 안의 숫자는 각 연도 연령별 비율임

- 2009년 전체 농가 수 1,195천 가구 중에서 60세 이상 경영주의 가구가 777천 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농가의 65%로 그 비중이 상당하였다. 그 중에서도 65세 이상 경영주의 가구(594천 가구)가 대부분이었으며, 49.7%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타 연령대의 농가 수는 50-59세 276천 가구(23.1%) 30-49세 142천 가구(11.9%), 30세 미만 656 가구(0.1%)로 그 수가 미미하였는데 이와 같은 농촌인구의 급속한 노령화 현상은 청장년층의 지속적인 이농, 평균수명의 연장, 영농후계 인력의 단절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II-10-2 농업 경영주 연령별 농가수

(단위 : 가구, %)

연도	계	30세 미만	30-49세	50-59세	60세 이상	60세 이상	
						60-64세	65세 이상
2000년	1,383,468 (100.0)	7,270 (0.5)	321,983 (23.3)	348,067 (25.2)	706,148 (51.0)	254,390 (18.4)	451,758 (32.7)
2001년	1,353,687 (100.0)	3,505 (0.3)	274,541 (20.3)	326,004 (24.1)	749,637 (55.4)	253,929 (18.8)	495,708 (36.6)
2002년	1,280,462 (100.0)	2,948 (0.2)	252,159 (19.7)	298,655 (23.3)	726,700 (56.8)	234,475 (18.3)	492,225 (38.4)
2003년	1,264,431 (100.0)	2,358 (0.2)	239,553 (18.9)	292,797 (23.2)	729,723 (57.7)	211,715 (16.7)	518,008 (41.0)
2004년	1,240,406 (100.0)	1,838 (0.1)	218,135 (17.6)	286,096 (23.1)	734,337 (59.2)	199,726 (16.1)	534,611 (43.1)
2005년	1,272,908 (100.0)	2,382 (0.2)	225,859 (17.7)	302,852 (23.8)	741,815 (58.3)	192,325 (15.1)	549,490 (43.2)
2006년	1,245,083 (100.0)	1,624 (0.1)	207,405 (16.7)	302,053 (24.3)	734,000 (59.0)	181,134 (14.5)	552,866 (44.4)
2007년	1,231,009 (100.0)	1,186 (0.1)	184,792 (15.0)	291,356 (23.7)	753,675 (61.2)	181,709 (14.8)	571,966 (46.5)
2008년	1,212,050 (100.0)	1,141 (0.1)	161,282 (13.3)	282,928 (23.3)	766,697 (63.3)	183,835 (15.2)	582,862 (48.1)
2009년	1,194,715 (100.0)	656 (0.1)	141,821 (11.9)	275,582 (23.1)	776,657 (65.0)	182,306 (15.3)	594,351 (49.7)

자료 :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농업조사, 각년도

주 : 괄호( ) 안의 숫자는 각 연도 연령별 비율임

- 2010년 귀농, 귀촌 가구는 4,067 가구로 전년대비 13 가구가 줄었으나 10년 전에 비하여 2,913 가구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현상은 삶의 질 향상, 건강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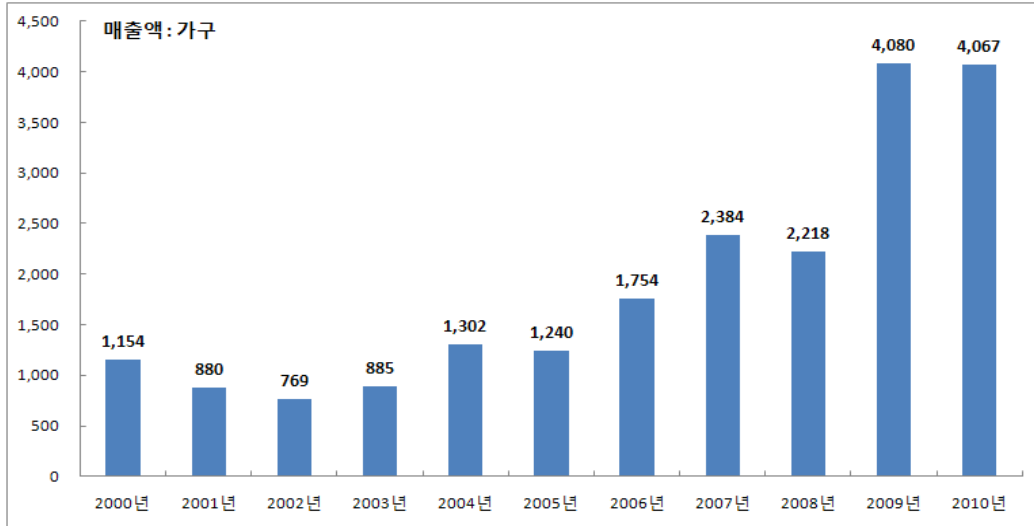


그림 II-10-1 연도별 귀농, 귀촌 가구수 현황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2010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

## 2) 농업 현황

- 농림어업 생산액은 430조 원으로 전년보다 33조 원이 증가하였다. 전체에서 농업 생산액이 414조 원으로 임업생산액(16조 원)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0-3 농림어업 생산액 현황

(단위 : 십억원)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전체	36,272.9	36,389.3	35,837.2	39,662.6	42,995.1
농업	35,088.9	35,232.4	34,685.0	38,469.8	41,364.3
임업	1,184.0	1,156.9	1,152.2	1,192.8	1,630.9

자료 : 1. 농림수산식품부, 2010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  
 2. 농림업생산액 및 생산지수(정책통계담당관실)  
 주 : 생산액=품목별 연간생산량\*연평균 농가판매가격

- 농업 전체 생산액 414조 원에서 재배업 생산액이 249조 원, 축산업 생산액 165조 원으로 재배업 생산액이 더 많았다.
- 재배업에서 생산액이 가장 많은 품목은 식량작물로 99조 원이고, 채소 76조 원, 과일 35조 원 순이었다.

○ 한편 축산업 생산액은 가축생산액이 129조 원으로 축산업 생산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였다.

표 II-10-4 농림어업 품목별 생산액 현황

(단위 : 십억원)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농업 전체		35,088.9	35,232.4	34,685.0	38,469.8	41,364.3
재배업	합계	23,321.7	23,556.1	23,407.7	24,876.9	24,880.2
	식량작물	9,738.3	9,411.8	8,909.5	10,606.7	9,863.5
	채소	6,918.6	7,353.4	7,483.0	7,213.5	7,554.1
	과실	3,081.7	2,970.6	2,822.3	2,998.4	3,510.6
	특용작물	347.2	282.6	326.9	332.6	296.0
	약용작물	523.7	563.5	821.9	616.1	645.8
	화훼류	994.9	941.1	923.7	904.3	864.0
	버섯	301.4	484.8	451.1	476.5	444.3
	전매작물	776.8	867.8	958.3	1,028.9	1,078.4
	벼짚	639.3	680.4	711.1	700.0	623.4
축산업	합계	11,767.2	11,676.3	11,277.3	13,592.9	16,484.0
	가축	8,814.9	9,014.6	8,508.6	10,357.0	12,946.7
	축산물	2,952.3	2,661.8	2,768.7	3,235.9	3,537.3

자료 : 1. 농림수산식품부, 2010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

2. 농림업생산액 및 생산지수(정책통계담당관실)

주 : 생산액=품목별 연간생산량\*연평균 농가판매가격

### 1.3 고령친화 농업 현황 및 결과

#### 1) 시장규모 분석 방법

##### 가. 기준연도 시장규모 추정 방법

고령친화농업의 시장규모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자료원으로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 자료(농림수산식품부)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 시장규모 분석을 위한 자료로 이용하였다.

모태산업 대비 고령친화 농업의 시장규모를 분석하기 위하여 모태산업인 농업의 시장규모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y_i = (\text{농업 시장규모}_i) \times (\text{인구비율}_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ath>y_i</math> : <math>i</math>연도의 고령친화 농업 시장규모</li> <li>■ 인구비율<math>_i</math> : <math>i</math>연도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li> </ul>

**나. 시장규모 전망(예측) 방법**

고령친화 농업의 2020년까지의 시장규모를 예측하기 위하여, 모태산업 및 고령친화 농업 시장규모의 2005년-2009년 연평균성장률(CAGR)을 이용하였다.

**2) 시장규모 추정 및 예측 결과**

**가. 기준연도 시장규모 추정 결과**

- 이에 따른 고령친화 농업의 시장규모의 추정결과는 아래와 같다.
- 2009년 고령친화 농업의 시장규모는 모태산업 전체 시장규모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고려하여 약 4조 4,063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2005년-2009년 연평균성장률(CAGR)은 8.5%로 모태산업의 연평균성장률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II-10-5 고령친화 농업 시장규모

(단위 : 억원, %)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CAGR (05-09)
고령친화	31,829	33,452	34,433	39,699	44,063	8.5
비중	9.1	9.5	9.9	10.3	10.7	-
모태산업	350,889	352,324	346,850	384,698	413,643	4.2

자료 : 1. 농림수산물부, 2010 농림수산물 주요통계  
 2. 농림업생산액 및 생산지수(정책통계담당관실)  
 주 : 생산액=품목별 연간생산량\*연평균 농가판매가격

**나. 시장규모 전망(예측) 결과**

- 앞에서 설명한 방법을 활용하여 향후 고령친화 농업 시장규모를 전망하여 본 결과, 고령친화 농업 시장규모는 2015년 7조 1,887억 원, 2020년 10조 8,094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표 II-10-6 고령친화 농업 시장규모 전망(예측)

(단위 : 천명, 억원, %)

구분	2009년	2010년	2015년	2018년	2020년
고령친화 농업	44,063	47,808	71,887	91,821	108,094
비중	10.7	11.1	13.6	15.3	16.6
모태산업	413,643	431,016	529,459	599,011	650,385

자료 : 1. 농림수산물부, 2010 농림수산물 주요통계  
 2. 농림업생산액 및 생산지수(정책통계담당관실)  
 주 : 생산액=품목별 연간생산량\*연평균 농가판매가격

## 2. 고령친화 교통산업

### 2.1 지원 현황

#### 1) 외국

##### 가. 일본

일본의 고령자를 위한 교통 정책을 보면, 1965년 횡단보도교 설계기준을 마련, 1978년 입체횡단시설기준을 마련하여 횡단보도, 입체횡단시설 등의 기준정비를 먼저 시작하고, 1994년 고령자 및 장애인 등이 원활한 이동을 위한 특정건축물 촉진법을 제정하여 장애인 및 고령자를 위한 시설정비 가이드라인, 대중교통 여객시설의 이동원활화 정비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고, 2000년 BarrierFree법에 의해 리프트장착 버스가 도입되었고, 그 후 리프트 장착 버스가 폐지되고 유니버설 디자인의 적용으로 저상버스가 도입되었다. 일본의 고령자 교통 정책은 오랜 기간동안 순차적으로 진행되었고, 보행과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정책임을 알 수 있다.

##### 나. 미국

미국은 대중교통이 미흡하고, 광대한 지역에 사람들이 흩어져 살기 때문에 대도시 이외에는 개인용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노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각 주에서는 자체적으로 교통 제공을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 체계를 관리하면서 연간 평균 4,650만 달러 정도의 교통수단 제공 예산을 활용하며, 이러한 지원은 주 내에서 교통수단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수요의 75% 정도를 충족시킨다. 교통수단제공을 위해 지원되는 예산은 전



체 연방노인청 예산의 약 3%정도에 다다르고 있다.

#### 다. 대만

노인에게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50%의 할인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많은 야외활동 참여 기회를 권장하고 있다.

#### 라. 프랑스

교통편의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어 버스 이용에서부터 항공 여행에 이르기까지 노인의 소득에 따라 할인 혜택 및 무료 이용권이 보장되고 있음

### 2) 국내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1차('06 - '10년) 및 2차('11 - '15년)계획에서 교통분야 지원정책을 보면 1차에서는 ·교통약자이동 편의증진 5개년 계획 수립 등을 포함하는 고령자를 배려한 대중교통 이용 및 보행 환경 개선과 노인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추진 등 고령운전자에 적합한 교통기반 마련 사업을 추진하였고, 2차 계획에서는 1차계획에 이어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고령운전자 안전교육 등을 추진하여 고령자를 배려한 대중교통 이용 및 보행 환경 개선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고령자를 위한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철도역사내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확충, 저상버스 보급 확대 및 장애물 없는 보행환경 조성을 확대하고 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노인 통행량이 많은 도로를 중심으로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도로교통법을 개정('10년 7월)하여 노인 통행이 잦은 자연·도시공원 및 생활 체육시설 주변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2.2 시장 현황

- 고령자 외출 시 주 교통수단으로 버스가 49.7%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자가용 15.6%, 지하철 14.2% 택시 4.8%의 비중을 나타냈다. 또한 교통수단이 없다는 응답도 2.7%나 되었다.
- 이는 현재 고령자가 타 연령대에 비하여 통행량 및 통행거리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나, 고령인구 비율이 증가하여 통행활동이 활발해지면 현 상황 또한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II-10-7 고령자 대상 외출 시 주 교통수단

(단위 : %)

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자전거	오토바이	전동휠체어	경운기	없음
49.7	14.2	4.8	15.6	2.0	2.8	0.4	0.2	2.7

자료 : 보건복지부 통계포털, 2008 노인실태조사-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기초분석보고서

- 고령자 대상 외출 시 불편한 사항으로 불편함이 없다는 응답이 42.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계단이나 경사로 오르내리기 버스(전철) 타고 내리기가 각각 27.4%, 16.6%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표 II-10-8 고령자 대상 외출 시 불편한 사항

(단위 : %)

불편한 사항	비중
버스(전철) 타고 내리기	16.6
계단이나 경사로 오르내리기	27.4
고르지 못한 인도	2.7
짧은 횡단보도 신호	0.9
대중교통 노선을 모름	1.5
글씨가 작아 노선표시가 안보임	1.1
차량이 많아 다니기 위험함	3.2
전철, 버스정류장 많	2.3
이동 수단이 용하기 힘들	1.4
불편함이 없음	42.8

자료 : 보건복지부 통계포털, 2008 노인실태조사-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기초분석보고서

### 3. 고령친화 교육산업

#### 3.1 지원 현황

##### 1) 외국

##### 가. 일본

노인의 교육·학습은 두가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개인으로서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 존재 의의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후자는 자원봉사활동을 일컫는 것으로 마을 조성을 위한 활동, 자연이나 환경을 지키기 위한 활동 등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진행중에 있고, 이 이외에도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노인을 해외에 파견하는 ‘시니어해외자원봉사활동’이 2004년 1,746명이 파견되었다. 전자인 노인의 자가 학습 측면에서는 교육위원회와 사회교육시설 등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2004년 노인만을 대상으로 한 학급 강좌 수는 10,685강좌이고, 공민관에서는 34,816강좌에 이른다. 생애학습은 이러한 공공의 장소 외에도 민간이 사업 주체가 되어 개설된 것도 다수 존재한다. 특히 최근에는 문화센터 등에서 많은 강좌가 개설되어 있다. 2004년 『문부과학통계요람』에 의하면 개설된 강좌 수는 168,375강좌이고, 수강생은 3,082,000명에 이르고 있다.

##### 나. 대만

노인교육의 목적은 현대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노인 자신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냐를 교육활동을 통해서 노인 스스로가 터득하도록 하는데 있다. 때와 장소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일상생활에서의 모든 것을 배우게 하는 그 매개체의 역할은 방법이나 선택 면에서 매우 중요할수 있는데, 대표적 노인교육시설은 장청학원(Senior Learning Centers Evergreen Institutes)이라고 할 수 있다. 장청학원의 주요 교육내용은 교양(동양화, 서예, 음악, 무용, 헬스 등), 언어학습(국어, 영어, 일어, 한국어 등), 상식(의료, 보건, 법률 등), 정보화(인터넷, 쇼핑물, 워드 등)이며, 중앙정부의 장청학원 보조 규정에 따라 1개 강좌에 20명 이상 노인을 모집하여 3개월 이상 개설한 클래스에 대해서는 과목당 월 TWD 6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과목당 연 보조금 상한액은 6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장청학원은 2004년 264개소에 1,519개 강좌가 개설되어 5만 1,973여 명의 노인이 참여했다. 그밖에 별도의 퇴직 대기자들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은 민간단체에서 보조를 하고 있으며 주요 교육내용은 노후 생활 계획과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사회보장 관련 법령 및 노인복지서비스 시책을 이해하고 심리적, 생리적 및 사회적 적응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다.

그리고 민간단체에서는 직무교육의 커리큘럼으로 채택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두고 있으며 아울러 노인 인력은행도 설치하여 노후 생활에 적합한 취업 직종 개발과 취업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 다. 프랑스

고령 근로자의 일부만 취업 대상이 되고 있는 노동시장의 선별적 성격을 약화시키기 위한 조치로 2001년에 고용차별금지법 제정되면서 중견 경력 소자의 직업 훈련(mid-career training)을 강화하였다. 이를 촉진하기 위해 2003년 사회적 협상자들은 여러 가지 산업 분야에 걸쳐 직업 훈련에의 접근을 유도하는 평생교육에 대한 산업 간 협정을 체결하기도 했다(multi-sector agreement on lifelong learning). 이는 연령 제한 없이 연 20시간의 직업 훈련 참여 자격(training entitlement)을 모든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협정은 근로자, 특히 고령 근로자의 직업 훈련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EIWC, 2004 : 16 ; OECD, 2005 : 29). 노인대학(UTA : Université de troisième âge)을 통해 60세 이상 노인에게 여가-문화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노인대학은 1973년에 Pierre Vallas에 의하여 Toulouse에 처음 설립된 후 현재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있다. 재원은 회원의 등록비, 지역사회 내의 교육기관 혹은 지자체에 의해 조달되며 일부는 교육부에 의해 지원되기도 한다.

## 2) 국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으로 취업교육 등을 진행중에 있으나 고령자 대상 교육지원사업은 뚜렷하게 없으며, 복지관, 민간, 종교단체 등을 통한 노인대학 등이 운영중에 있다.

## 3.2 시장 현황

### 1) 국내 교육산업 현황

- 2009년 교육산업의 사업체 총 141,525개소 중에서 기타교육기관 78,601개소, 일반교습학원 61,532개소로 기타교육기관의 사업체 수가 17,069개소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일반교습학원 중 사업체 수가 가장 많은 예술학원은 41,877개소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기타교육기관의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교육기관 22,030개소, 그 외 기타교육기관 6,504개소로 나타났다.

- 교육산업별 종사자 총 513,743명 중에서 일반교습학원 종사자 308,936명, 기타교육기관 종사자 197,450명으로 일반교습학원 종사자가 기타교육기관의 종사자보다 111,486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가 반드시 비례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표 II-10-9 우리나라 교육산업별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단위 : 개소, 명)

산업별		2007년		2008년		2009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합계		133,792	485,361	139,064	505,549	141,525	513,743
일반교습학원		52,846	288,974	58,176	304,733	61,532	308,936
기타교육기관		79,681	190,064	79,567	193,995	78,601	197,450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교육기관	소계	22,751	41,129	22,493	40,021	22,030	39,282
	스포츠 교육기관	18,875	32,455	18,634	31,696	18,363	31,726
	레크레이션 교육기관	3,876	8,674	3,859	8,325	3,667	7,556
예술학원		43,152	73,589	42,899	72,729	41,877	71,181
사회교육시설		1,484	13,155	1,593	15,338	1,714	18,211
직원훈련기관		723	11,905	732	13,714	806	13,472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4,732	29,041	5,300	31,815	5,670	34,227
그외 기타 교육 기관		6,839	21,245	6,550	20,378	6,504	21,077
교육지원 서비스업		1,265	6,323	1,321	6,821	1,392	7,357

자료 :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서비스업조사(9차개정)

주 : 조사기준시점(12.31)과 조사시점(익년도 조사기간 중)사이 폐업되어 조사되지 못한 사업체는 직전년도 실적으로 결측치를 대체하였음

- 2009년 교육산업의 총매출액 22조 1,326억 원 중에서 일반교습학원 13조 6,469억 원, 기타교육기관 7조 6,884억 원으로 종사자 수가 많은 일반교습학원의 매출액이 기타교육기관의 매출액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사업체 수가 가장 많았던 예술학원이 매출액도 1조 6,760억 원으로 가장 컸으며, 그 다음으로는 직원훈련기관 1조 6,629억 원,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1조 6,535억 원,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교육기관 1조 845억 원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0-10 우리나라 교육산업별 매출액 현황

(단위 : 백만원)

산업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합계		16,317,872	18,860,916	21,053,221	22,132,555
일반교습학원		9,795,965	11,237,151	12,822,004	13,646,924
기타교육기관		6,203,315	7,106,856	7,510,983	7,688,431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교육기관	소계	992,974	1,183,291	1,120,807	1,084,453
	스포츠 교육기관	855,868	990,639	920,748	876,329
	레크레이션 교육기관	137,106	192,653	200,059	208,124
예술학원		1,571,625	1,738,648	1,755,581	1,676,019
사회교육시설		487,567	667,650	665,856	702,083
직원훈련기관		1,297,701	1,365,729	1,567,952	1,662,868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1,262,426	1,303,677	1,505,097	1,653,525
그외 기타 교육 기관		591,023	847,859	895,690	909,481
교육지원 서비스업		318,591	516,909	720,234	797,201

자료 :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서비스업조사(9차개정)

주 : 조사기준시점(12.31)과 조사시점(익년도 조사기간 중)사이 폐업되어 조사되지 못한 사업체는 직전년도 실적으로 결측치를 대체하였음

## 2) 국내 평생교육 현황

- 60세 이상 고령층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형식교육 0.2%, 비형식교육 21.4%로 비형식교육의 비중이 형식교육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0-11 고령층(60세 이상) 평생학습 참여율

(단위 : %)

	형식교육	비형식교육
전체	0.2	21.4
남자	0.5	20.6
여자	0.0	22.1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2007

- 비형식 평생학습 기관별 참여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61.7% 참여율을 보인 기타 평생교육기관이었으며, 그 다음은 학원 28.5%, 직장 내(연수원 등) 15.1%인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60-64세 고령층의 평생학습 기관은 대체로 기타 평생교육기관이었으며, 그 비율은

무려 83.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0-12 2007년 비형식 평생학습 기관별 참여 비율

(단위 : %)

기관별 참여율별	전체	2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직장 내(연수원 등)	15.1	7.9	22.5	17.0	8.7	1.2
학원	28.5	59.2	31.4	22.3	15.6	8.9
온라인교육기관,방송매체	5.1	11.2	6.3	4.6	0.5	0.0
그룹과외,개인과외	4.9	6.2	5.5	3.2	4.1	8.9
기타 평생교육기관	61.7	41.6	52.4	65.8	80.0	83.6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2007

주 : 응답자 특성별 비형식교육 참여자

- 평생학습의 개인적 성과에서 형식교육은 교양함양·지식습득 등 자기계발이 8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정신적 건강유지 78점, 육체적 건강유지 58점으로 나타났다.
- 비형식교육의 경우 정신적 건강유지(82점), 교양함양·지식습득 등 자기계발(80점), 육체적 건강유지(70점)순으로 나타났다.
- 한편 55-64세의 고령층은 형식교육을 교양함양·지식습득 등 자기계발로, 비형식교육은 정신적 건강유지에 큰 점수를 주었다.

표 II-10-13 2008년 평생학습의 개인적 성과

(단위 : 점)

성과별	형식교육					비형식교육				
	전체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전체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육체적건강유지	58.0	54.0	58.0	76.0	86.0	70.0	64.0	70.0	74.0	74.0
정신적건강유지	78.0	76.0	82.0	86.0	92.0	82.0	82.0	82.0	84.0	84.0
교양함양·지식습득 등 자기계발	86.0	84.0	90.0	92.0	100.0	80.0	82.0	80.0	80.0	78.0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2008

주 : 1. 형식교육 Base : 형식교육 참여자 (n=1,104,914)[2008]

2. 비형식교육 Base : 비형식교육 참여자 (n=6,430,172)[2008]

3. 5점 척도(1점:전혀도움이안됨~5점 : 매우도움이됨)를 100점으로 환산함

- 평생학습의 사회적 성과에서 형식교육과 비형식교육 모두 시민의식 증진(66점 58점)을 위함이라고 보았는데 이는 55-64세의 고령층 또한 마찬가지였다.

표 II-10-14 2008년 평생학습의 사회적 성과

(단위 : 점)

성과별	형식교육					비형식교육				
	전체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전체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시민의식 증진	66.0	64.0	64.0	76.0	54.0	58.0	52.0	58.0	64.0	68.0
지역사회참여증진	60.0	60.0	58.0	72.0	42.0	54.0	46.0	54.0	60.0	62.0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2008

주 : 1. 형식교육 Base : 형식교육 참여자 (n=1,104,914)[2008]

2. 비형식교육 Base : 비형식교육 참여자 (n=6,430,172)[2008]

3. 5점 척도(1점:전혀도움이안됨~5점 : 매우도움이됨)를 100점으로 환산함

- 평생학습 정보 접근 경로가 용이한 곳은 인터넷, 기관 홈페이지로 전체에서 75.2%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대중매체 22.3%, 가족, 이웃, 친구 21.1%, 기관의 전화상담 및 직접방문 14.1%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55-64세의 고령층의 경우 평생학습 정보를 대중매체를 통해 접한다는 응답이 55.2%로 가장 많았고, 가족, 이웃, 친구 35.8%, 인터넷, 기관 홈페이지 33.7%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0-15 2008년 평생학습 정보 접근 경로 분포 비율

(단위 : %)

정보접근 경로 분포 비율별(1)	전체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가족, 이웃, 친구	21.1	17.4	19.2	25.8	35.8
직장동료 및 상사	12.4	11.9	15.4	9.5	8.9
경력개발 안내기관	3.9	3.1	3.7	5.6	4.0
기관의 전화상담 및 직접방문	14.1	12.3	13.8	18.5	13.1
인터넷, 기관 홈페이지	75.2	87.1	77.0	65.8	33.7
대중매체	22.3	15.2	17.7	31.2	55.2
기타	1.0	1.1	1.6	0.2	0.0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2008

주 : 정보탐색 성공자 (n=8,061,571)

- 전체 65세 이상 고령자의 13.3%가 평생교육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평생교육의 실시기관으로는 노인복지관(38.0%)이라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시군구청(31.6%), 종교기관(23.7%) 순으로 고령자 대상 평생교육을 많이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0-16 일반적 특성별 평생교육 경험 여부 및 실시기관

(단위 : %)

2008년		전체(65 이상)	60-64세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세 이상
교육경험 있음		13.3	8.7	11.2	15.3	15.8	14.3	9.1
실시기관	시군구청	31.6	63.4	41.9	32.3	24.7	20.3	10.5
	노인복지관	38.0	19.7	39.1	38.3	39.2	35.6	27.2
	노인단체	6.3	2.2	4.3	8.1	5.2	8.4	7.3
	종교기관	23.7	9.4	17.8	18.4	30.2	32.3	55.0
	대학부설	2.3	5.4	3.9	1.9	1.3	0.7	2.2
	사설기관	5.0	5.8	2.7	6.8	4.4	8.1	3.8
	기타	1.0	1.8	0.8	1.5	1.0	0.3	0.0

자료 : 보건복지부, 2008 노인실태조사-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기초분석보고서

주 : 1. 복지부통계포털>분야별통계>복지통계>노인>최신자료>2008년 노인실태조사(p940~944)

2. 전체 조사대상자 15,146명을 대상으로함
3. 평생교육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1,817명을 대상으로 함

○ 향후 평생교육 참여를 희망한다는 고령자계층은 전체의 22.7%였으며, 희망 교육내용은 주로 건강관리(41.4%), 여가취미(31.8%)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0-17 일반 특성별 향후 평생교육 참여희망 및 희망 교육내용

(단위 : %)

2008년		전체	60-64세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세 이상
교육희망		22.7	33.6	29.1	24.7	18.0	10.8	6.6
희망 교육내용	건강관리	41.4	40.6	40.6	40.4	42.6	51.9	43.7
	여가취미	31.8	31.4	29.8	32.9	34.0	33.4	44.9
	일반교양	7.4	9.8	8.6	7.1	5.5	4.9	3.1
	정보교육	8.7	7.8	9.7	9.3	6.3	3.8	1.7
	사회참여	3.5	4.2	3.6	3.7	3.3	1.8	5.3
	대인관계	3.4	3.0	3.0	3.3	5.0	3.6	1.3
	취업	1.9	2.5	2.2	1.7	2.0	0.6	0.0
	노후경제	1.3	0.5	2.0	1.0	0.1	0.0	0.0
	기타	0.6	0.2	0.6	0.5	1.3	0.0	0.0

자료 : 보건복지부, 2008 노인실태조사-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기초분석보고서

주 : 1. 전체 조사대상자 15,146명 중 무응답자 2명을 분석에서 제외함

2. 평생교육 참여희망자 3,911명을 대상으로 함

- 평생교육프로그램 미희망 이유에 대한 응답으로 60-64세(42.6%), 65-69세(39.5%), 70-74세(38.4%)의 고령자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 한편 75-79세(39.3%), 80-84세(45.4%), 85세 이상(55.6%)의 고령자는 건강이 안 좋아서 평생교육을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0-18 연령별 평생교육프로그램 미희망 이유

(단위 : %)

	시간이 없어서	건강이 안 좋아서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참가비용이 부담스러워서	사람과의 만남이 부담되서	교육장소가 멀어서	교육장소를 몰라서	받고 싶은 프로그램이 없어서	기타
60-64세	30.0	14.1	42.6	4.9	2.9	1.5	0.4	3.5	0.0
65-69세	21.1	22.4	39.5	6.8	2.8	2.4	0.9	4.0	0.1
70-74세	13.8	30.1	38.4	5.9	3.4	2.4	1.4	4.4	0.2
75-79세	7.9	39.3	36.2	6.3	3.5	2.8	0.6	3.1	0.3
80-84세	4.1	45.4	38.6	3.9	1.9	2.3	0.4	3.0	0.4
85세 이상	4.3	55.6	29.5	3.0	1.2	2.3	0.4	3.2	0.4

자료 : 보건복지부, 2008 노인실태조사-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기초분석보고서

- 평생학습 참여 장애요인은 가족 부양에 대한 책임 등으로 시간이 없다는 응답이 81.6%로 가장 많았으며, 근무시간과 겹쳐서(40.1%), 교육훈련 비용이 너무 비싸서(33.8%), 가까운 거리에 교육훈련기관이 없어서(20.7%)등 평생학습 참여에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55-64세의 연령층은 가까운 거리에 교육훈련 기관이 없어서(33.5%), 건강 또는 나이 때문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장애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0-19 2008년 평생학습 참여 장애요인

(단위 : %)

장애요인	전체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자격요건이 안되서	0.9	0.8	0.5	1.9	0.0
교육훈련비용이 너무 비싸서(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33.8	41.8	36.3	26.4	14.7
회사의 자원이 부족해서	0.9	1.2	1.3	0.4	0.0
근무시간과 겹쳐서	40.1	49.6	43.2	30.6	18.1
시간이 없어서(가족 부양에 대한 책임 등)	81.6	84.3	86.8	73.2	74.5
가까운 거리에 교육훈련기관이 없어서	20.7	15.6	14.8	31.5	33.5
학창시절과 같이 학습에 임할 자신이 없어서	5.8	4.8	6.3	7.6	4.4
건강 또는 나이 때문에	3.7	1.1	1.8	4.9	16.0
기타(훈련기관 부족, 정원초과, 원하는 강좌가 없어서 등)	1.6	0.5	2.3	2.9	1.2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2008

주 : 참여의사가 있었으나 불참한 사람(n=9,410,530)을 대상으로 함

- 평생학습 참여희망 프로그램 중 형식교육으로는 고등학교에 진학(7.0%)하고 싶다는 응답이 많았고 비형식교육으로는 컴퓨터 관련 교육이 46.0%로 절반에 가까운 응답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 이외에는 스포츠강좌(28.9%), 음악(16.0%), 건강 및 의료(13.1%), 가정(10.5%)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55-64세 고령자 기준).

표 II-10-20 2008년 평생학습 참여희망 프로그램

(단위 : %)

학습영역 및 참여희망 프로그램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형식교육	초중학교	0.0	0.3	0.8	5.0
	고등학교	0.0	0.5	0.7	7.0
	대학교	4.2	7.3	5.2	3.6
	대학원(석사, 박사)	10.7	6.7	4.6	3.8
비형식교육	경제, 경영	21.9	17.8	15.1	4.9
	외국어 관련 교육	36.6	26.1	18.7	5.2
	컴퓨터 관련 교육	23.6	28.4	35.2	46.0
	종교	2.0	6.9	5.4	9.2
	음악	15.2	11.8	13.7	16.0
	미술강좌	11.5	6.7	5.7	4.2
	스포츠강좌	43.0	38.4	40.8	28.9
	지도자과정	4.3	7.8	2.1	0.8
	가정	19.0	18.1	14.3	10.5
	교양강의	2.9	5.4	2.7	4.4
	건강 및 의료	2.7	9.6	13.4	13.1
	기타	1.9	1.4	1.0	0.0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2008

주 : 문항응답자(참여의사가 있었으나 불참한 사람)(n=9,410,530)

## 4. 고령친화 장묘산업

### 4.1 지원 현황

#### 1) 외국

##### 가. 일본

일본은 철저한 법적 규제와 행정지도 덕분에 화장위주(약 99%)의 관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948년부터 '묘지 및 매장취체규칙'을 제정하여 공영화장장을 전국에 건설하면서 매장을 금지하고 화장을 장려하였다. 매장이나 화장된 유골에 대한 토장은 지방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묘지구역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설치된 분묘 1기당 묘지면적은 도시주변의 경우 약 4.5㎡가 많고, 지방의 경우 6㎡ 정도로 우리나라 묘지에 비해 차지하는 공간이 매우 작은 편이다. 또한 도시주변의 사설묘지를 금하는 대신 공동묘지를 도시계획의 일부로 도입하여 묘지의 공동화를 추진하였다. 일본의 묘지문화는 묘지에 대한 혐오시설의 인식을 떨쳐버리고 주변경관을 살리면서 선인을 추모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될 수 있는 공원식 묘지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또한 화장터는 물론이고 납골당도 만원이어서 시내 중심가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고층 납골당 등 도심형 납골당이 등장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납골당의 면적을 줄이는 동시에 가족 합장 납골당의 설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가능한 유골을 산이나 바다 뿌리는 '자연장'을 권장하고 있다. 매장 및 화장장취체법률이 제정된 이후 화장시설의 확대 및 현대화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

##### 나. 프랑스

프랑스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공설 묘지를 만든 나라로도 유명하다. 세계에서 맨 먼저 문을 연 공설묘지는 파리 제 20지구 초입에 있는 페르라세즈 묘지로 1800년부터 파리 시민의 유족지로 애용되고 있다. 나무가 우거진 야산 0.42평방킬로미터에 영국식 정원 개념을 살려 조성한 이 묘지는 세계 최고의 근대식 묘지답게 파리 시민이 가장 많이 묻힌 프랑스의 대표적 집단 묘지로 자리 잡았다. 남북을 가로지르는 도로와 그 사이사이에 싹틔줄처럼 난 도로 사이에 97개의 크고 작은 분묘 단지가 구획되어 있는데 총 10여만 개의 분양 묘소에 50여만 명의 유해가 안치되어 있다. 예술의 도시 파리에서 가장 오래된 시립 묘지인 만큼 쇼팽, 발자크에서부터 수 년 전 숨진 세계적 샹송가수 이브 몽땅에 이르기까지 유명인들의 묘소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페르라세즈 묘지는 프랑스 건축가 부로니야르가 최초의 정원식 묘지로 설계한 사실로도 유명해 이후 유럽 각국과 미국에 선보인 공원식 묘지의 효시가 되었다

고 볼 수 있다. 공원식 묘지답게 박물관으로 지정돼 문화재 대접을 받고 있으며 인근 주민들에게 항상 무료로 개방돼 햇볕이 좋은 날이면 묘지 곳곳에 심어진 수목 아래 벤치에 산책 나온 주민들이 책을 읽거나 명상에 잠기는 등 공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파리 시내에는 총 면적이 0.92km<sup>2</sup>인 시립 묘지가 14곳에 분산 설치돼 파리장의 유택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묘지는 대다수가 5, 10, 30, 50, 100년의 시한부로 이용되어 끊임없이 재사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연간 파리 시에서 사망하는 사람이 1만 6천 명가량으로 이중 2천명(13%)이 화장되고 나머지는 매장되지만 묘지과잉으로 인한 토지 부족 현상은 찾기 힘들다. 매장되더라도 대부분이 가족묘 형태로 합장되는데다 1기당 분묘 면적도 반 평 이하로 넓지 않기 때문이다.

#### 다.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의 집단묘지에 가보면 4-5m높이의 니초(Nicho)가 길게 뻗어 있다. 지상 아파트처럼 세워진 콘크리트 묘실이다. 집단 묘지의 크기에 따라 길게는 1백m 이상 된 것도 있어 멀리서 보면 얼핏 아파트로 착각하나 가까이 가보면 가로 세로 각 50cm에 깊이 2m 가량의 칸막이가 벌집처럼 설치되어 있다. 관이 앞뒤 양쪽으로 각각 1개씩 들어가거나 또는 한쪽으로부터 들어갈 수 있으며 3층짜리에서부터 6층짜리까지 다양하다. 이 같은 아파트식 묘실로 지상 면적 1평에 시신이 평균 15구나 안치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에는 묘지 부족현상을 찾아 볼 수 없다. 물론 시민의 선택에 따라 땅에 묻힐 수도 있다. 공설 묘지 이권 교회가 운영하는 사설 묘지건 간에 니초와 땅에 설치된 전통 분묘가 함께 있어, 망자나 유족의 희망으로 유택의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니초가 매장 분묘보다 짝 사용료를 내는 것이 다를 뿐이다. 시립 묘지의 경우 10년 사용 조건의 분양 가격이 매장의 경우 한화 60만 원가량이나 니초 한 칸을 차지하는 것은 15만원에 불과하며 99년간 임대 시에도 니초가 절반 이상 싸게 먹힌다. 마드리드에서 가장 큰 시립 묘지인 알부데나 묘지의 경우 1945년에는 매장 대 니초의 이용비율이 9 : 1이던 것이 지금은 45 : 55로 오히려 니초가 앞서고 있다.

#### 라. 스웨덴

스웨덴의 스톡홀름시의 공공묘지는 25년 시한부사용(연장가능)이며, 스톡홀름 시민, 외국인 등 누구든 원하는 대로 묻힐 수 있다. 그리고 묘지, 화장장 사용료를 2000년부터 세금으로만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에 70개소 화장장을 보유하고 있다. 화장에 따른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환경 기준치를 계속 상향 조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설비를 개발, 교체하고 화장용 관을 사용한다. 매장 시설의 경우엔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대지의 특징과 숲 자체를 그대로 살려 나무숲에 평장묘를 조성하고 있으며 묘지의 크기는 1.2m×2.4m이다. 납골 시설의 경우엔 지상납골과 지하납골이 있는데 지상납골은 화장장의 오른쪽에 위치한 단순하면서 독특

한 형태를 지닌 지상납골시설로 되어있고, 가족 합동납골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 마. 덴마크

덴마크 코펜하겐시의 경우는 공공묘지 5개소가 있으며, 주택가 바로 옆 대로변에 위치한 묘지의 경우 뛰어난 조경으로 아름다운 공원으로도 손색이 없다. 실내납골시설(콜롬바리움)에는 1만기 정도의 유골함을 안치할 수 있는 ‘ㄷ’ 자형의 단층 붉은 벽돌 건축물로서 여러 개의 방에 비둘기집 같은 형태로 납골단이 개방되어 있다. 그 안에는 도난방지를 위해 감시 카메라 등 안전장치를 하였다. 납골단은 파스텔 색조로 페인트칠이 되어 있어 화사하고 아늑한 느낌을 준다. 유골함의 경우 모양과 재질이 다양하고(세라믹, 대리석, bronze 등), 개인이 직접 제작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또한 10년 사용 후 계속 연장이 가능하다. 일반 납골묘는 1×1m 크기, 80cm 깊이로 사용하는데 4기의 유골함을 안치할 수 있다. 덴마크의 경우 조금 색다른 합동납골묘역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넓은 잔디공간의 지하에 24㎡크기의 Vault(납골시설)를 설치하여 유골함을 보관하며 유골함이 Vault에 다채워지면 잔디를 덮은 후 다른 잔디공간에 다시 합동납골묘역을 조성한다. 그래서 유가족들은 정해진 장소 없이 자유롭게 합동 납골묘역에 꽃을 갖다놓고 고인을 추모한다.

## 2) 국내

우리나라 장사제도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 및 『장례식장 표준약관』등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법의 목적은 공공복리, 보건위생 그리고 국토공간의 효율적 이용 등을 골격으로 하고 있어 매장을 억제하고 화장은 장려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2004년 7월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사제도의 고질적 병폐를 개선하기 위하여 민·관 합동으로 '장사제도개선추진위원회'를 발족하였다. 2006년 4월에 수목장(자연장)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포함시켰고, 추후 산골 및 바다장과 같은 제도도 도입될 수 있도록 연구중에 있다. 하지만,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는 장묘에 대한 지원책이 나타나 있지 않다.

## 4.2 시장 현황

### 1) 국내 장묘관련 현황

- 장례식장 및 관련 서비스업의 사업체수는 2009년 2,686개로 전년대비 22개소가 늘었으며 매출액은 1조 259억 원에서 1조 837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종사자 수는 2008년 22,468명에서 22,322명으로 감소하였다.

○ 또한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이 화장 묘지분양 관리업보다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등 모든 면에서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0-21 장례식장 및 관련 서비스업 현황

(단위 : 개, 명, 백만원)

산업별		전체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2006년	사업체수	2,262	1,880	382
	종사자수	14,064	11,343	2,721
	매출액	566,189	355,124	211,065
2007년	사업체수	2,444	2,034	410
	종사자수	18,306	15,296	3,010
	매출액	766,083	549,340	216,743
2008년	사업체수	2,664	2,238	426
	종사자수	22,468	19,258	3,210
	매출액	1,025,942	765,618	260,324
2009년	사업체수	2,686	2,238	448
	종사자수	22,332	18,892	3,440
	매출액	1,083,690	805,026	278,664

자료 :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서비스업조사(통계청, 도소매서비스, 서비스업조사-9차개정)

주 : 서비스업체 중 장례식장 및 관련 서비스업 자료 이용

○ 공설묘지의 개소수가 2005년 281개소에서 2009년 348개소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그로인하여 묘지면적은 점차 줄어들었으며, 분묘설치 가능기수와 매장장은 전년 대비 각각 30,690개소, 34,940개소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0-22 공설묘지 이용현황

(단위 : 개소)

구분	개소수	묘지면적(㎡)	분묘설치 가능기수(기)	매장(기)
2005년	281	27,779,282	792,760	558,741
2006년	282	27,649,100	803,512	568,647
2007년	344	24,433,047	783,898	578,683
2008년	347	24,517,355	945,229	555,620
2009년	348	25,859,108	914,539	520,680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 법인묘지 이용현황도 공설묘지와 마찬가지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분묘설치가능기수와 매장장은 전년대비 각각 52,284개소, 31,031개소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0-23 법인묘지 이용현황

(단위 : 개소)

구분	개소수	묘지면적(㎡)	분묘설치 가능기수(기)	매장(기)
2005년	137	36,506,930	1,443,330	798,145
2006년	136	37,081,834	1,499,051	802,172
2007년	154	37,852,661	1,469,565	780,846
2008년	150	37,327,351	1,497,841	823,323
2009년	152	36,897,095	1,550,125	854,354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 2009년 화장장의 화장건수는 246,241건으로 전년대비 44,113건이 증가하였으며, 봉안당의 봉안수도 795,520개소로 전년대비 118,842개소가 증가하였다.

표 II-10-24 화장시설 및 봉안당 이용현황

(단위 : 개소)

구분	화장장		봉안당		
	개소수	화장건수	개소수	봉안능력	봉안수(현재)
2005년	46	172,420	188	1,627,088	508,166
2006년	47	197,735	210	1,918,944	576,286
2007년	48	187,991	242	2,271,003	529,774
2008년	49	202,128	257	2,540,876	676,678
2009년	50	246,241	300	3,026,154	795,520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주 : 1. 장건수는 시체, 죽은태아, 개장유골 포함  
2. 봉안당은 공설, 법인, 종교단체 봉안당 현황

○ 연도별 화장률 현황은 2009년 65.0%로 전년대비 3.1% 증가하였으며, 이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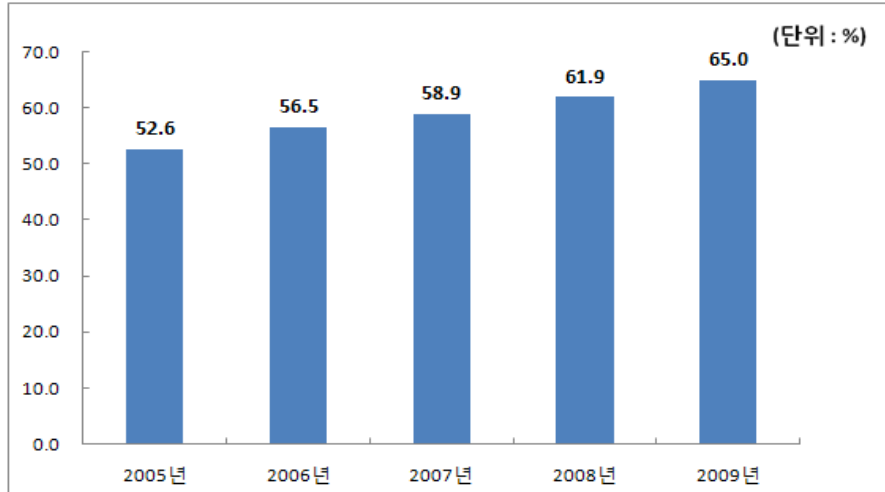


그림 II-10-2 연도별 화장률 현황

자료 : 1.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2008년 이전자료)  
 2. 보건복지부 통계포털, 2009년도 화장률현황(2009년)  
 주 : 2008년 전국 화장진수에는 무직자 화장진수 포함

### 4.3 고령친화 장묘산업 현황 및 결과

#### 1) 시장규모 분석 방법

##### 가. 기준연도 시장규모 추정 방법

고령친화장묘산업의 시장규모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자료원으로 장래인구추계(통계청), 소비자보호원 자료, 사망원인통계연보(보건복지부) 등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 시장규모 분석을 위한 자료로 이용하였다.

위의 자료를 토대로 고령친화장묘산업의 시장규모 추정을 위해서 장묘관련 총 비용<sup>105)</sup>의 구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장묘관련 비용은 장례장소와 장례방법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크게 장례관련 비용과 장묘관련 비용으로 구성되며, 장례비용으로는 접객비, 장의용품, 염습비, 장의식장비용, 차량비용 등이 있으며, 장묘 관련 비용으로 매장의 경우 매장비용, 묘지 및 석물 구입비가 있으며, 화장의 경우 납골안치 비용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크게 장례 방식으로 매장과 화장<sup>106)</sup>을 구분하여 비용을 계산하였으며, 65

105) 장묘관련 총비용에 관한 자료는 소비자보호원(2004년) 자료를 이용하였다.

106) 매장은 매장구입 비용, 석물, 잔디, 식비 및 연간 사용료 등이 포함되며, 화장은 화장비용, 유골향아리, 봉안시설안치료 등이 포함된다.

세 이상 사망자 수에 계산된 장묘관련 총 비용 및 매장/화장 비율을 고려하여 고령친화장묘 산업 시장규모<sup>107)</sup>를 추정하였다.

$$y_i = (\text{사망자수}_i) \times \{(\text{매장비율}_i) \times (\text{매장비용}_i) + (\text{화장비율}_i) \times (\text{화장비용}_i)\}$$

- $y_i$  :  $i$ 연도의 고령친화 장묘산업 시장규모
- 매장비율 $_i$ , 화장비율 $_i$  :  $i$ 연도의 매장 및 화장 비율<sup>108)</sup>
- 매장비용 $_i$ , 화장비용 $_i$  :  $i$ 연도의 매장 및 화장 비용
- 사망자수 $_i$  :  $i$ 연도의 65세 이상 사망자 수

## 나. 시장규모 전망(예측) 방법

고령친화장묘산업의 향후 시장규모를 추정하고자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결과 중 사망자수와 소비자보호원(2004)년 장례비용 현황 자료를 활용하여 전망<sup>109)</sup>하였다.

## 2) 시장규모 추정 및 예측 결과

### 가. 기준연도 시장규모 추정 결과

- 이에 따른 고령친화 장묘산업의 시장규모의 추정결과는 아래와 같다.
- 화장 및 매장 등으로 구성되는 고령친화 장묘산업 2010년 시장규모는 2조 4,005억 원으로 나타났다.
- 2010년 모태산업 중 고령친화 장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9.9%로 전체 사망자 중 65세 이상 사망자수의 비율과 같다.

107) 모태산업 시장규모는 기준연도의 전체 사망자수 장묘 관련 총 비용을 고려하였으며, 고령친화장묘산업은 65세 이상 사망자수 장묘 관련 총 비용을 고려하였다.

108) 분석을 위해 사용된 참고자료 각 부문별 비율은 2004년 소비자보호원(2004년) 평균 장례비용 현황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2010년 화장 및 매장 비율은 2004년도 자료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시장규모를 분석하였다.

109) 장례비용 및 매장/화장 비율은 기준연도와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 2010년 사망자수는 2010 사망원인 통계결과(통계청, 보건복지부)를 이용하였으며, 2011년-2020년 사망자수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결과 중 사망자수 예측결과를 이용하였다.

표 II-10-25 2010년 고령친화 장묘산업 시장규모

(단위 : %, 천원, 명, 백만원)

	화장/매장	비율	비용	사망자수	시장규모
고령친화 장묘산업	화장	67.5	11,980	178,400	1,442,632
	매장	32.5	16,520	178,400	957,830
	소계	-	-	-	2,400,461
모태산업(장묘산업)	화장	67.5	11,980	255,403	2,065,316
	매장	32.5	16,520	255,403	1,371,259
	소계	-	-	-	3,436,575

자료 : 1.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장래인구추계  
 2. 소비자보호원, 평균 장례비용 현황(2004년)

#### 나. 향후 시장규모 전망(예측)

○ 앞에서 설명한 방법을 활용하여 향후 고령친화 장묘산업의 시장규모를 추계하여 본 결과, 고령친화 장묘산업의 시장규모는 2015년 3조 1,204억 원, 2020년 3조 5,245억 원 정도로 전망<sup>110)</sup>된다.

표 II-10-26 고령친화 장묘산업 시장규모 전망(예측)

(단위 : 백만원, %)

연령별	2010년	2015년	2020년	CAGR(10-20)
고령친화장묘산업	2,400,461	3,120,357	3,524,500	3.9
비중	69.9	69.9	69.9	-
장묘산업	3,436,575	4,467,226	5,045,813	3.9

자료 : 1.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장래인구추계  
 2. 소비자보호원, 평균 장례비용 현황(2004년)

110) 비용 및 매장/화장의 비율이 고정된 상태에서 사망자수의 변화만을 고려하여 시장규모를 분석하였으므로 과소 추정되었으며, 향후 경제성장률, 물가 및 매장/화장 비율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시장규모가 분석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전체 사망자 중 65세 이상 사망자 비율은 2010년 자료(69.9%)를 전망에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 참 고 문 헌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고령친화산업진흥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노인복지법
- 후생노동성, 개호보험 현황 보고서, 2011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0년 장기요양보험주요통계, 2011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9년 장기요양보험주요통계, 2011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0년 건강보험 주요통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0년 진료비통계지표
- 보건복지부, 2011년 노인 복지시설 현황
- OECD Health Data 2009
-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Office of the Actuary, Medicare and Medicaid Cost Estimates Group, Medicare Administrative Data; unpublished data.
- 박수천, 일본의 실버산업을 통해 본 우리나라 고령친화산업의 정책대안-노인요양의 효율화를 위한 대안 모색, 한국노인복지학회, 2005
- 박상하, 고령친화산업 분류체계 모형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학회, 2008
- 최은영, 권순만, 김찬우, 강주희, OECD 국가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체계 비교와 정책적 함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 권진희, 박종덕, 감신, 이정석, 강임옥,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질 평가체계 구축 방안, 국민건강보험공단. 2007
- 한국산업연구원, KIET, 산업동향 브리프, 2011
- 유문무, 일본의 실버산업과 한국의 고령친화산업의 전망과 과제, 아시아연구(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과제, 2008
- 산업연구원, 의료서비스산업의 2020비전과 전략

이서영,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동향, 보건복지포럼, 2009

Brief summaries of Medicare&Medicaid, Health care financing review, 2010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Office of the medicare beneficiary ombudsman, 2009

한국 노인요양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과제(독일 사례와 함의), 한국행정학회, 2010,

World Health Organization Collection on Long-Term Care, A LONG-TERM CARE FUTURES TOOL-KIT, 2011

강현아, 전산화 DUR 시스템의 약물 상호 작용 검색률 향상을 위한 모듈개발과 유용성 평가, 숙명여대 석사논문, 2010

교육과학기술부, 2009생명공학백서, 2009

교육과학기술부, '전주기적 부처연계 신약개발사업', 2010

교육과학기술부, 2011년도 생명공학육성시행계획, 2011

(주)글로벌헬스케어 생명과학연구소, 신약개발 인프라구축을 위한 추진전략 기획연구, 식품의약품안전청, 2006

김상미, 의료기관에서의 의약품사용평가프로그램 사용에 따른 약물사용 패턴변화의 비교 분석, 숙명여대 석사논문, 2008

대웅증권, 돈 버는 신약에 주목, 산업분석, 2008.10.31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 2005.2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 (II), 2006.2

더이슈, 양승조 의원 "약가인하 공동 공청회 긍정적 검토", 2011.9.16

메디컬투데이, 약가인하정책, 다국적 제약사도 감당 못해, 2011.8.12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고혈압과 당뇨, 동네의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 2011.9.8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국산 글로벌 항암신약 개발의 산실, 국립암센터 '항암신약개발사업단' 출범, 2011.7.1

보건복지부 보도해명자료, 2011.7.6

보건복지부, 2009 국민건강통계\_국민건강영양조사, 2009

보건복지부, 만성질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선택의원제 도입계획, 2011.9

보건복지부, 약국판매약 DUR 운영지침(안), 2011.7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의약품 소비량 및 판매액 통계조사, 2008-2010

- 삼일경영연구원, 국내 제약 산업의 생존 전략, 삼일회계법인 이슈보고서 제2호, 2008.9
-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2010년 생명공학주요통계자료모음, 2011.4
-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국내 신약개발 R&D 활성화를 위한 신약개발 현황 및 신약개발비 분석, BT 산업 동향 보고서, 2010
-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국내외 주요 바이오제약기업의 R&D 현황분석, BT 산업동향 보고서, 2011
- 식품의약품안전청, 보도자료, 2011.8.17
-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통계연보, 2009 - 2010
- 양봉민, 보건경제학, 2002
- 이은경, 만성질환과 노인의료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가환자표본자료를 이용한 학술심포지움 자료집, 2011.10.6
- 전세계 제네릭 의약품 시장 동향, KIET 해외산업정보, 2010
- 전해숙, 노인 외래환자의 의약품 사용평가, 성균관대 석사논문, 2008
- 조경미, 의약품 사용평가의 현황과 개선방향 검토, 이화여대 석사논문, 2009
-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9차개정, 2008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신약개발을 위한 융합기술인력 양성 방안 연구, 2007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 연구개발실태조사 분석, 2008 - 2010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약품산업분석보고서, 2007 - 2010
-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 제약산업 연구개발 백서, 2009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Facts & Survey Report
- 한국표준산업분류(9차, 2008)
- Data Monitor Pharma Vitae Explorer / Financial Analysis
- <http://www.kiet.go.kr/servlet/isearch?mode=view&dataNo=41356>
- 개호복지용구용품의 시장분석과 메이커 전략 <야노경제연구소, 2011>
- 고령친화용품 보험급여 산정방안 <지식경제부/고령친화RIS사업단/한국고령친화용품산업협회, 2010>
- 고령친화산업 발전방안-5대전략 및 10대 정책과제 <지식경제부, 2005>
-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 <(재)부산테크노파크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2010>
- 고령친화산업 해외시장 동향 및 진출방안 <KOTRA, 2007>

-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 <대통령직속 고령화 및 미래 사회 위원회, 2005>
-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2008>
- 신성장 산업의 발굴 : 실버산업의 현황과 전망 <현대경제연구원, 2011>
- 일본의 실버산업과 한국의 고령친화산업의 전망과 과제 <아시아학회, 2006>
- 김혜정 외 7인, 《고령친화산업론》, 계축문화사, 2010
- 내각부, 세대유형에 따른 고령자의 생활실태 등에 관한 의식조사, 2006
- 총무성, 통신이용동향조사, 2008
- 박조원, 《노년층 대상 콘텐츠 시장 창출을 위한 정책 개발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0
- 윤소영, 《노인 여가문화 활성화 방안을 위한 실태조사-노인여가시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
- 삼성경제연구소, <고령화 사회 도래에 따른 기회와 위협>, 2002.
- 한국콘텐츠진흥원, <CT심층리포트-모바일 AR의 기술 및 산업동향>, 2010.
- KOTRA, <일본 실버산업 현황과 비즈니스 기회>, 2010
- Datamonotor, Anti-Aging&Beauty Attitudes And Behaviors(Positioning and marketing personal and oral care products for success with beauty focused consumers), 2008
- 시니어파트너즈 (2010.09), 시니어 인식 및 행태조사 분석보고서
- 교보생명, 시니어파트너즈 (2011.05), 대한민국 시니어 리포트
- 푸르덴셜생명 (2010.03) 베이비 부머의 행태조사
- 보험연구원 (2011.09) 보험회사의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자본시장연구원, (2010.9) 연구위원 송홍선 금융투자회사의 자산관리서비스 발전과제
- 한국금융연구원,(2006.1) 강종만, 이석호, 역모기지 활성화 방안
- 보험연구원 (2010.봄) 계간보험동향
- 한국개발연구원 (2006.12)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및 대응과제
- 보험연구원 (2010.6.14) 권용재 부연구위원. KIRI Weekly
- 전국은행연합회 (2011.10) 월간금융. The Banker
- 임춘식, 외국의 고령화 사회 대책 추진체계 및 노인복지 정책 분석, 2005
- 유연우, 고령친화산업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2009



# 부 록

1. 고령친화산업 욕구조사 설문지 .....	489
2. 고령친화산업 통계 .....	504



<부록 1> 고령친화산업 욕구조사 설문지

## 고령친화산업 욕구조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누리서베이 면접원 ○○○입니다.

이번에 저희 기관에서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의뢰를 받아,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고령친화산업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고령친화산업이란?’

○노인을 위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말하며, 의약품, 화장품, 식품, 의료기기, 핸드폰 등 정보 기기, 여행상품, 금융상품, 주거, 교통, 건강지원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분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보건복지부 연구사업인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분석』 일환으로 고령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현재 및 미래노인의 고령친화산업 요구도를 파악하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사 내용은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절대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주관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담당자 :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김기향 연구원 043)713-8808

수행기관 : 누리서베이

담당자 : 정재원 실사연구원 02)333-3250

## 사전확인사항

PQ 1. 귀하의 연령은 ?

출생년도 : (            )년 (만    세)

※ 만45세 미만(1967년 포함 이후 출생) 면접 종료

- ① 45세~49세            ② 50세~54세            ③ 55~59세            ④ 60~64세  
⑤ 65~69세            ⑥ 70~74세            ⑦ 75~79세            ⑧ 80세 이상

PQ 2. 귀하의 성별은(면접원 기재)?

- ① 남자                    ② 여자

PQ 3. 귀하 및 배우자의 월평균 소득수준은? (            ) 만원

(월평균소득은 근로수입 뿐 아니라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국민연금 등 공적 이전소득, 사적이전 소득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 ① 300만원 미만            ② 300~400만원 미만            ③ 400~500만원 미만  
④ 500~600만원 미만            ⑤ 600~700만원 미만            ⑥ 700~800만원 미만  
⑦ 800만원 이상

※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미만 면접 종료



**B. 산업별 세부 이용 의향 조사**

**❖ B-1 영양/건강지원서비스 분야**

3. 귀하는 영양서비스를 어디에서 받고 싶으신지요?

- ① 집(4번으로)
- ② 요양시설(5번으로)
- ③ 기타(적을 것 : )

4. 귀하는 집에서 어떤 서비스를 받고 싶으신지요?

- ① 수발(배설, 목욕, 산책 등)
- ② 가사지원(식사, 세탁, 청소 등)
- ③ 건강지원(영양, 운동, 질병상담 등)(4-1번으로)
- ④ 배달서비스(도시락, 물품 등)
- ⑤ 이동지원(병원 등 이동시 차량지원 등)
- ⑥ 간단한 심부름 대행(물품 구매, 공과금 납부 등)
- ⑦ 기타(적을 것 : )

4-1 귀하는 건강관리를 위해 어떤 건강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습니까?

- ① 정기적 건강검진(혈압, 혈당 등)
- ② 건강관리를 위한 교육
- ③ 질병상담 및 관리
- ④ 정신건강(스트레스) 상담
- ⑤ 영양 또는 운동처방
- ⑥ 온라인 건강관리서비스
- ⑦ 기타(적을 것 : )
- ⑧ 이용의사 없다(4-2번으로)

4-2 귀하는 건강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내 건강은 내가 더 잘 관리할 수 있다.
- ② 건강증진에 별 효과가 없을 것 같다.
- ③ 내 건강증진에 별 관심이 없다.
- ④ 서비스를 받을 만한 시간이 부족하다.
- ⑤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것이다.

5. 귀하는 요양시설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은 무엇인지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서대로 3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 ⇒ 1순위( ) 2순위( ) 3순위( )
- ① 자연환경(강, 호수 등)
  - ② 자녀와의 거리
  - ③ 좋은 시설
  - ④ 전문인력과 친절도
  - ⑤ 각종 프로그램 운영
  - ⑥ 저렴한 비용
  - ⑦ 기타(적을 것 : )

## ❖ B-2 금융자산관리서비스

6. 귀하와 배우자는 노후 소득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또는 이미 하셨습니까)?(모두 선택)

- |                                   |                               |
|-----------------------------------|-------------------------------|
| ① 현재 살고 있는 집                      | ② 현재 살고 있는 집 이외에 부동산(집, 빌딩 등) |
| ③ 적금, 보험 등 금융자산                   | ④ 주식, 채권, 펀드 등 투자             |
| ⑤ 공적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                               |
| ⑥ 개인연금 등 연금상품                     | ⑦ 퇴직연금                        |
| ⑧ 기타(적을 것 : _____ )               |                               |
| ⑨ 준비하고 있지 않다.(6-1번)               |                               |

6-1 귀하께서 노후 준비를 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모두 선택)

- |                     |                      |
|---------------------|----------------------|
| ① 자녀 교육, 결혼 등 준비    | ② 부동산 구입 등에 따른 부채 부담 |
| ③ 부모 부양             | ④ 배우자 및 가족 의료비 지출    |
| ⑤ 이외 경제적 사정으로       | ⑥ 노후를 대비할 나이가 아니어서   |
| ⑦ 노후 준비방법을 몰라서      |                      |
| ⑧ 기타(적을 것 : _____ ) |                      |

7. 귀하는 금융 및 자산관리를 위한 정보를 어디에서 얻는가?

- |                     |                 |
|---------------------|-----------------|
| ① 가족 및 친지           | ② 가까운 금융기관      |
| ③ TV, 인터넷 등 매체      | ④ 펀드매니저 등 금융전문가 |
| ⑤ 기타(적을 것 : _____ ) |                 |

8. 귀하께서 노후 준비를 위해 가장 필요한 금융서비스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① 소유한 주택을 활용한 주택연금(역모기지) |                      |
| ② 적금, 보험, 펀드 등 금융자산관리서비스 |                      |
| ③ 개인연금, 연금저축 등 연금상품      | ④ 건강, 간병 등에 대비한 보험상품 |
| ⑤ 퇴직연금 상품의 활성화           | ⑥ 기타(적을 것 : _____ )  |

❖ B-3 문화/여가

9. 귀하께서 평소 주로 하는 여가활동 및 향후 하고 싶은 여가활동은?

⇒ 9-1 평소 여가활동 : 1순위( ) 2순위( )

9-2 향후(노후)에 하고 싶은 여가활동 : 1순위( ) 2순위( )

- ① TV시청, 음악감상, 산책 등 휴식활동
- ② 등산, 낚시, 독서, 바둑, 쇼핑 등 취미오락활동
- ③ 온천/해수욕, 드라이브, 여행 등 관광
- ④ 영화, 연극, 전시회 등 예술 관람
- ⑤ 서예, 사진촬영, 목공 등 문화예술 참여
- ⑥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 관람
- ⑦ 조깅, 요가, 헬스, 수영 등 스포츠 참여
- ⑧ 종교 및 봉사활동
- ⑨ 기타(적을 것 : )

10. 귀하께서 평소 여가활동을 하기 어려운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여가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없어서
- ② 여가비용이 없어서
- ③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 ④ 여가 시설 및 장소가 없어서
- ⑤ 교통이 불편해서
- ⑥ 몸이 불편해서
- ⑦ 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없어서
- ⑧ 기타(적을 것 : )

11. 귀하께서는 노후에 가장 필요한 여가지원서비스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고령자를 위한 휴양단지 및 시설
- ② 고령자를 위한 영화, 공연, 오락 등 문화컨텐츠
- ③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여행상품
- ④ 고령자를 위한 운동 및 스포츠 활동
- ⑤ 고령자를 위한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
- ⑥ 기타(적을 것 : )

12. 귀하께서 노후에 여가활동을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 ① 배우자
- ② 혼자서
- ③ 친척, 친구
- ④ 자녀
- ⑤ 손자, 손녀들
- ⑥ 동호회 회원
- ⑦ 상관없다
- ⑧ 기타(적을 것 : )

## ❖ B-4 주거

13. 귀하께서 살고 있는 집은 본인 소유입니까?

- ① 예(13-1번으로)                      ② 아니오(14번으로)

13-1 귀하께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의 형태는?

- ① 단독주택                              ② 아파트                              ③ 빌라·다세대  
④ 전원주택                              ⑤ 주상복합  
⑥ 기타(적을 것 :                              )

13-2 귀하께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의 나이는?

- ① 2년미만                              ② 2년~5년 미만                              ③ 5년~10년 미만  
④ 10~15년 미만                              ⑤ 15~20년 미만                              ⑥ 20년 이상

13-3 귀하께서는 현재 집에서 노후를 보낼 생각이신가요?

- ① 예(13-4번으로)                      ② 아니오(14번으로)

13-4 현재 집에서 노후를 보내는 가장 큰 이유는?

- ① 생활환경에 적응해서                      ② 경제적 사유                              ③ 편리한 교통  
④ 쾌적한 환경(공원, 녹지 등)                      ⑤ 편의시설(쇼핑, 의료, 문화시설 등)이 잘 되어 있는 곳  
⑥ 자녀, 친인척과 가까워서                      ⑦ 기타(적을 것 :                              )

13-5. 현재 집에서 노후를 보내기에 가장 불편한 사항은 무엇인가요?

- ① 집의 구조                              ② 집의 크기, 면적                              ③ 주변환경(공원, 산책로 등)  
④ 교통                              ⑤ 편의시설(의료시설, 쇼핑, 의료, 문화시설 등)과의 접근성  
⑥ 기타(적을 것 :                              )

14. 귀하께서 노후에 살고 싶은 집과 집을 선택할 때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14-1. 귀하께서 노후에 살고 싶은 집의 형태는?

- ① 고령자용 주택                              ② 전원주택                              ③ 단독주택  
④ 아파트                              ⑤ 빌라·다세대                              ⑥ 주상복합  
⑦ 기타(적을 것 :                              )

※ 고령자용 주택 : 고령자 전용 임대 주택이나 실버타운 등 건강한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조성된 주택

14-2. 귀하께서 노후에 집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 ① 생활비용 등 경제적 여건    ② 부부중심의 작은 집    ③ 집구조가 편리한 집
- ④ 교통이 편리한 곳    ⑤ 쾌적한 주변환경(공원, 녹지 등)
- ⑥ 편의시설(쇼핑, 의료, 문화시설 등)이 잘 되어 있는 곳
- ⑦ 자녀, 친인척과 가까운 곳
- ⑧ 기타(적을 것: \_\_\_\_\_ )

15. 귀하께서는 노후에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서비스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고령자용 주택개조 지원    ② 고령자용 임대주택    ③ 고령자용 실버타운
- ④ 노인주거용 복합단지(의료, 문화시설 등 포함)
- ⑤ 기타(적을 것: \_\_\_\_\_ )

❖ **B-5 고령친화제품**

16. 귀하께서 현재 사용하고 계신 고령친화제품이 있습니까?(모두 선택)

- ① 혈당 등 **건강확인용품**    ② 고령자를 위한 휴대폰 등 **정보통신기기**
- ③ 건강유지를 위한 **운동기구**    ④ 게임기, 장난감 등 **여가용품**
- ⑤ 휠체어 등 **이동기기**    ⑥ 전동침대 등 **침구용품**
- ⑦ 목욕의자 등 **목욕용품**    ⑧ 없다(16-1번으로)
- ⑨ 기타(적을 것: \_\_\_\_\_ )

※ **고령친화제품이란 노인을 주요 수요자로 하는 제품을 말하며, 사용자인 노인을 고려하여 제작된 제품을 말함**

16-1. 귀하께서는 고령친화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가격이 비싸서    ② 그런 제품이 있는지 몰라서    ③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 ④ 노인용이라고 해서 봐도 별 기능이 없어서
- ⑤ 노인용 제품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서
- ⑥ 기타(적을 것: \_\_\_\_\_ )





17-3. 귀하께서는 가장 사고 싶은 패션용품 종류는 무엇입니까?

- ① 등산복, 조깅복, 수영복 등 운동복
- ② 체형보정 및 건강보조용 속옷
- ③ 보온, 향균, 냄새 제거 등을 고려한 스마트웨어
- ④ 신발
- ⑤ 가방
- ⑥ 모자
- ⑦ 양말 및 장갑
- ⑧ 지갑 및 벨트
- ⑨ 스카프, 머플러, 넥타이 등 기타 패션용품
- ⑩ 기타(적을 것 : )

17-4. 귀하께서는 가장 사고 싶은 가전제품 종류는 무엇입니까?

- ① 에어컨, 선풍기 등 냉난방기
- ② 가습 및 제습기
- ③ 청소로봇 등 청소기
- ④ 세탁기
- ⑤ 냉장고
- ⑥ 김치냉장고
- ⑦ 식기세척기
- ⑧ 쥬스기, 믹서기 및 녹즙기
- ⑨ 기타(적을 것 : )

17-5. 귀하께서는 고령친화제품을 사용할 의향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거 같아서
- ② 별 필요가 없 것 같아서
- ③ 노인용 제품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서
- ④ 믿을만한 제품이 없어서
- ⑤ 기타(적을 것 : )

18. 귀하께서 현재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의 종류는 무엇인가요?(모두 선택)

- ① 신경계 의약품(뇌경색 등 중추신경계 및 말초신경계 치료제)
- ② 소화계 의약품(위염, 위십이지장 궤양, 간경변 등 치료제)
- ③ 순환계 의약품(고혈압, 뇌졸중, 고지혈증, 협심증/심근경색증 치료제)
- ④ 대사성 의약품(당뇨병, 갑상선 질환 등 치료제)
- ⑤ 호흡계 의약품(만성기관지염, 천식, 폐결핵 등 치료제)
- ⑥ 근골격계 의약품(류마티스 관절염, 골다공증 등 치료제)
- ⑦ 기타(아래 기타 세부 내용에서 선택)

※ 기타

- ⑦-1 감각기관용 의약품(백내장, 녹내장, 만성중이염 등 치료제)
- ⑦-2 비노생식기 및 항문용 의약품(성기능개선제 포함)
- ⑦-3 종양용 의약품(위암, 감암을 위한 치료제)
- ⑦-4 노화방지 등을 위한 호르몬제제

- ⑦-5 항생물질제제
- ⑦-6 비타민제
- ⑦-7 탈모방지제 및 발모제
- ⑦-8 기타(적을 것 : \_\_\_\_\_ )

19. 귀하께서는 현재 의약품을 복용하실 때 가장 불편한 점은 무엇인가요?

- ① 약이 너무 커서 먹기가 힘들다
- ② 약이 너무 딱딱해서 삼키거나 씹기가 힘들다
- ③ 약을 시간에 맞춰 챙겨 먹는게 어렵다
- ④ 약을 먹고 안 먹은 것 같아서 두 번씩 먹기도 한다
- ⑤ 기타(적을 것 : \_\_\_\_\_ )

20. 귀하께서는 고령자용 식품을 구매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 ① 있다(20-1번으로) \_\_\_\_\_
- ② 없다(21번으로) \_\_\_\_\_

20-1 구매하실 의향이 있다고 하셨는데, 고령자용 식품으로 어떤 것을 선호하십니까?

- ① 소화가 잘 되는 식품
- ② 씹기 편하고 넘기기 좋은 부드러운 식품
- ③ 영양분이 골고루 갖춰진 식품
- ④ 특정 영양성분이 들어있는 식품
- ⑤ 기타(적을 것 : \_\_\_\_\_ )

21. 귀하께서 평소에 선호하는 식품은?(모두 선택)

- ① 건강기능식품(홍삼제품, 글루코사민 등)
- ② 특수용도식품(당뇨환자용, 대사질환자용, 연하곤란환자용 점도증진식품, 열량 및 영양공급용 의료용도식품, 환자용 균형영양식)
- ③ 제과제빵류
- ④ 면류제품
- ⑤ 우유, 유제품
- ⑥ 어육제품
- ⑦ 두부류 또는 묵류
- ⑧ 전통·발효식품(장류, 김치류, 젓갈류, 절임식품 포함)
- ⑨ 음료·다류제품(커피포함)
- ⑩ 시리얼류
- ⑪ 즉석섭취·편의식품
- ⑫ 유기농가공식품
- ⑬ 기타(적을 것 : \_\_\_\_\_ )

22. 귀하께서 향후(노후)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식품은?

⇒ 1순위( ) 2순위( )

- ① 건강기능식품(홍삼제품, 글루코사민 등)
- ② 특수용도식품(당뇨환자용, 대사질환자용, 연하곤란환자용 점도증진식품, 열량 및 영양공급용 의료용도식품, 환자용 균형영양식)
- ③ 제과제빵류
- ④ 면류제품
- ⑤ 우유, 유제품
- ⑥ 어육제품
- ⑦ 두부류 또는 묵류
- ⑧ 전통·발효식품(장류, 김치류, 젓갈류, 절임식품 포함)
- ⑨ 음료·다류제품(커피포함)
- ⑩ 시리얼류
- ⑪ 즉석섭취·편의식품
- ⑫ 유기농가공식품
- ⑬ 기타(적을 것 : )

23. 귀하께서 현재 사용하고 계신 화장품의 종류는 무엇인가요?(모두 선택)

- ① 주름개선 등 기능성 화장품
- ② 기초화장품(로션, 크림, 에센스 등)
- ③ 염모용(헤어칼라스프레이 등)
- ④ 방향용 제품(체취, 땀냄새 제거용 향수, 향낭 등)
- ⑤ 기타(아래 기타 세부 내용에서 선택)

※ 기타

- ⑤-1 두발용(샴푸, 린스, 헤어컨디셔너 등)
- ⑤-2 색조화장용(파우더, 립스틱, 메이크업 베이스, 아이섀도 등)
- ⑤-3 목욕용 제품(목욕용 오일, 바블바스, 바디클렌저 등)
- ⑤-4 손발톱용(네일크림, 메니큐어 등)
- ⑤-5 면도용
- ⑤-6 기타(적을 것 : )



**C. 응답자 일반 특성**

26. 귀하의 거주지는?

주소	(            )광역시(도) (            )시(군) (            )구 (            )동(읍/면)
※ 면접원은 아래 항목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6-1 지역(면접원 기재)?

- ① 서울특별시
- ② 부산광역시
- ③ 대구광역시
- ④ 인천광역시
- ⑤ 광주광역시
- ⑥ 대전광역시
- ⑦ 울산광역시
- ⑧ 경기도
- ⑨ 강원도
- ⑩ 충청북도
- ⑪ 충청남도
- ⑫ 전라북도
- ⑬ 전라남도
- ⑭ 경상북도
- ⑮ 경상남도
- ⑯ 제주도

26-2 지역 규모(면접원 기재)?

- ① 서울/광역시
- ② 시지역(동)
- ③ 시지역(읍면)
- ④ 군지역

27. 귀하의 최종 학력은?

- ① 초등학교 이하
- ② 중학교
- ③ 고등학교
- ④ 전문대학
- ⑤ 대학교
- ⑥ 대학원 이상

※ 중퇴의 경우 이전 학력으로 간주함, 재학의 경우는 현재 학력으로 간주

28. 귀하의 가구형태는?

- ① 1인 가구
- ② 부부가족
- ③ 응답자(부/모)+미혼자녀
- ④ 응답자(부/모)+기혼자녀
- ⑤ 노부모+응답자(부/모)+기타 가족원
- ⑥ 기타 가족

29. 귀하는 현재 소득이 있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 ① 있다(29-1로 갈 것)
- ② 없다(29-2로 갈 것)

29-1 귀하는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생애 주된 일자리입니까?

- ① 그렇다(29-1-1)
- ②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 후, 새로운 일을 하고 있다(29-1-2)

29-1-1 귀하의 현재 직업은?

- ① 사무관리직                      ② 판매·서비스직                      ③ 생산노무직  
④ 기타(적을 것 :                      )

29-1-2 귀하의 생애 주된 일자리와 현재 일자리는?

- (1) 과거 :  
① 사무관리직  
② 판매·서비스직  
③ 생산노무직  
④ 기타(적을 것 :                      )  
(2) 현재 :  
① 사무관리직  
② 판매·서비스직  
③ 생산노무직  
④ 기타(적을 것 :                      )

29-2 귀하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시나요?

- ① 은퇴 후 휴양  
② 은퇴 후 재취업 준비중  
③ 은퇴 후 창업 준비중  
④ 은퇴 후 귀농 준비중  
⑤ 은퇴 후 이민 준비중  
⑥ 일을 해 본 적이 없다.  
⑦ 기타(적을 것 :                      )

지금까지 질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록 2> 고령친화산업 통계

▶ 고령친화산업 전반적 상황

부표 1 노인의료복지시설 총괄표

(단위 : 개소, 명)

시도	계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전문병원	
	시설수	정원	시설수	정원	시설수	정원	시설수	정원
합계	3,852	131,074	2,429	107,506	1,346	11,361	77	12,207
서울	432	13,688	231	11,139	195	1,656	6	893
부산	159	5,758	92	4,758	65	572	2	428
대구	140	4,749	63	3,624	75	640	2	485
인천	211	7,344	145	6,413	63	537	3	394
광주	93	3,505	73	3,035	18	147	2	323
대전	91	3,172	56	2,608	33	273	2	291
울산	42	1,701	32	1,565	9	70	1	66
경기	1,108	35,978	675	27,835	403	3,388	30	4,755
강원	191	6,533	126	5,771	63	518	2	244
충북	212	5,511	134	4,851	78	660	0	0
충남	218	7,371	125	5,750	86	732	7	889
전북	196	7,514	150	6,494	43	363	3	657
전남	249	6,720	154	5,828	94	803	1	89
경북	262	10,826	168	8,087	81	647	13	2,065
경남	200	8,280	162	7,346	35	288	3	628
제주	48	2,424	43	2,384	5	40	0	0

자료 : 보건복지부 통계포털, 분야별통계, 2011 노인복지시설현황  
 주 : 1.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10년 12월 31일 주민등록 인구 기준임  
 2. 2010년 12월 31일 현재 자료임



부표 2 재가노인복지시설 총괄표

(단위 : 개소, 명)

시도	계		방문요양 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 서비스
	시설수	정원	시설수	시설수	정원	시설수	정원	시설수
합계	2,496	14,792	1,118	786	14,086	67	706	525
서울	344	3,720	106	173	3,477	14	243	51
부산	141	827	68	48	817	1	10	24
대구	125	556	64	29	527	4	29	28
인천	121	312	64	16	299	1	13	40
광주	242	458	131	41	445	2	13	68
대전	80	473	35	23	438	3	35	19
울산	26	139	17	9	139	0	0	0
경기	367	3,000	133	159	2,918	9	82	66
강원	124	670	53	37	653	2	17	32
충북	85	498	40	27	485	3	13	15
충남	89	422	40	17	398	2	24	30
전북	151	836	88	39	775	6	61	18
전남	252	978	125	64	967	2	11	61
경북	148	752	68	38	666	12	86	30
경남	165	788	73	47	723	5	65	40
제주	36	363	13	19	359	1	4	3

자료 : 보건복지부 통계포털, 분야별통계, 2011 노인복지시설현황

주 : 1.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10년 12월 31일 주민등록 인구 기준임

2. 방문요양, 방문목욕서비스는 정원이 없음

3. 2010년 12월 31일 현재 자료임

부표 3 64세 이상 가구주 대상 동, 별거형태 변화 추이

(단위 : 개소, 명)

	1인 가구	1세대 가구	2세대 가구	3세대 가구	기타
2000년	31.4	33.8	24.2	9.9	0.7
2001년	31.4	34.0	24.2	9.7	0.7
2002년	31.5	34.2	24.2	9.5	0.7
2003년	31.6	34.3	24.1	9.3	0.7
2004년	31.8	34.4	24.0	9.2	0.7
2005년	31.9	34.5	23.9	9.0	0.6
2006년	32.7	34.7	23.5	8.5	0.6
2007년	33.0	34.8	23.3	8.4	0.5
2008년	33.4	34.8	23.1	8.2	0.5
2009년	33.8	34.8	22.8	8.1	0.5
2010년	34.2	34.8	22.6	7.9	0.5
2020년	35.7	34.9	22.1	6.9	0.4
2030년	36.5	35.5	21.5	6.2	0.3

자료 :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장래가구추계

주 : 기타는 4세대 이상 및 비친족가구임

부표 4 연령별 복용하는 약이나 건강식품 가지수

(단위 : %, 가지)

2008년	특성	전체	60-64세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세 이상
병의원 처방약	0	6.3	9.9	8.2	5.4	5.5	3.5	5.2
	1	35.2	45.3	37.6	32.5	32.0	34.9	43.7
	2	31.0	25.8	30.0	32.2	31.6	32.1	28.1
	3이상	27.5	19.0	24.2	29.8	30.9	29.5	23.0
한방 처방약	0	93.4	95.1	94.3	92.3	93.3	94.2	91.6
	1	5.3	3.6	4.8	6.1	5.5	3.6	7.3
	2	0.9	0.9	0.6	1.2	0.8	1.7	0.6
	3이상	0.4	0.4	0.3	0.5	0.4	0.5	0.5
비처방약	0	93.5	93.3	94.2	93.1	93.5	91.8	93.4
	1	6.1	6.0	5.5	6.6	5.9	7.2	6.2
	2	0.3	0.4	0.3	0.2	0.4	0.7	0.4
	3이상	0.1	0.3	0.0	0.1	0.2	0.3	0.0
건강보조, 기능성 식품	0	78.6	72.9	76.7	78.9	79.4	81.4	81.0
	1	15.2	17.4	16.8	15.1	14.3	12.6	13.7
	2	4.6	6.9	4.9	4.6	4.2	4.7	3.2
	3이상	1.6	2.8	1.5	1.4	2.2	1.3	2.0
전체복용 가지수	평균	2.4	2.2	2.3	2.5	2.5	2.5	2.3
	표준편차	1.5	1.4	1.4	1.5	1.5	1.4	1.4

자료 : 보건복지부 통계포털, 2008 노인실태조사-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기초분석보고서  
 주 : 약 또는 건강식품을 복용한다고 응답한 12,433명을 대상으로 함

▶ **요양산업**

부표 5 2009년 연령별 1인당 연간 총요양비 크기별 실인원 및 진료비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계		65세미만		65세이상		
	실인원	총요양비	실인원	총요양비	실인원	총요양비	
2009년	계	291,389	1,971,789	19,173	120,722	272,219	1,851,068
	1,000,000 이하	32,113	15,818	2,110	1,061	30,003	14,757
	1,000,001 ~ 5,000,000	92,954	268,429	6,421	18,634	86,533	249,795
	5,000,001 ~ 10,000,000	94,340	703,012	6,798	50,479	87,542	652,533
	10,000,001 ~ 15,000,000	48,348	594,791	2,890	34,790	45,461	560,002
	15,000,001 이상	23,634	389,739	954	15,758,003	22,680	373,981
2010년	계	348,561	2,745,586	23,141	178,047	325,420	2,567,539
	1,000,000 이하	29,622	14,315	1,848	922	27,774	13,393
	1,000,001 ~ 5,000,000	80,800	236,274	4,996	14,719	75,804	221,556
	5,000,001 ~ 10,000,000	132,392	1,039,076	10,034	79,448	122,358	959,627
	10,000,001 ~ 15,000,000	66,842	807,807	4,570	54,590	62,272	753,217
	15,000,001 이상	38,905	648,114	1,693	28,368	37,212	619,746
전년대비 증가율	계	19.6	39.2	20.7	47.5	19.5	38.7
	1,000,000 이하	-7.8	-9.5	-12.4	-13.1	-7.4	-9.2
	1,000,001 ~ 5,000,000	-13.1	-12.0	-22.2	-21.0	-12.4	-11.3
	5,000,001 ~ 10,000,000	40.3	47.8	47.6	57.4	39.8	47.1
	10,000,001 ~ 15,000,000	38.3	35.8	58.1	56.9	37.0	34.5
	15,000,001 이상	64.6	66.3	77.5	-99.8	64.1	65.7

자료 : 1. 보건복지부 통계포털, 2009년 장기요양보험주요통계  
 2.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털 통계자료실, 2010년 장기요양보험 주요통계  
 주 : 각 연도별 결산 기준

부표 6 급여종류 및 설립구분별 장기요양기관 현황

(단위 : 개소, 명)

		2008년					2009년					
		계	지방단체	법인	개인	기타	계	지방단체	법인	개인	기타	
계	기관	8,318	182	3,504	4,856	226	14,560	227	3,889	10,135	309	
	정원	89,068	6,796	56,829	24,696	747	121,170	7,817	70,651	42,013	689	
재가	소계	기관	6,618	109	2,269	4,024	216	11,931	138	2,840	8,663	290
		정원	20,096	1,436	12,981	5,390	283	32,979	1,929	17,494	13,183	373
	방문요양	기관	4,206	24	1,121	2,917	144	8,446	31	1,429	6,783	203
	방문목욕	기관	2,959	16	691	2,145	107	6,279	17	908	5,202	152
	방문간호	기관	592	9	148	418	17	787	9	165	595	18
	단기보호	기관	790	55	546	174	15	1,368	43	685	623	17
		정원	13,075	1,020	9,425	2,408	222	14,677	426	5,888	8,259	104
	주야간 보호	기관	694	33	431	222	8	1,106	78	647	364	17
		정원	7,015	416	3,556	2,982	61	18,302	1,503	11,606	4,924	269
	복지용구	기관	720	-	92	597	31	1,086	-	128	920	38
시설	소계	기관	1,700	73	785	832	10	2,629	89	1,049	1,472	19
		정원	68,978	5,360	43,848	19,306	464	88,191	5,888	53,157	28,830	316
	노인 요양시설	기관	522	10	184	325	3	725	24	363	333	5
		정원	20,703	713	11,308	8,604	78	31,567	1,202	19,259	10,940	166
	노인전문 요양시설	기관	482	46	335	100	1	488	47	342	99	-
		정원	28,478	3,849	21,042	3,489	98	29,159	3,901	21,838	3,420	-
	노인요양 시설(구법)	기관	375	13	190	168	4	482	10	166	304	2
		정원	17,043	762	10,722	5,284	275	19,492	713	10,406	8,324	49
	노인요양 공동 생활가정	기관	321	4	76	239	2	934	8	178	736	12
		정원	2,754	36	776	1,929	13	7,973	72	1,654	6,146	101

자료 : 보건복지부 통계포털, 2009년 장기요양보험주요통계

부표 7 연도별 급여종류별 총요양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증가율
계	480,818	1,971,789	2,745,586	39.2
방문요양	121,470	828,482	1,282,456	54.8
방문목욕	10,506	45,687	78,676	72.2
방문간호	1,616	6,911	6,949	0.5
주야간보호	20,104	70,744	83,760	18.4
단기보호	17,675	96,524	36,870	-61.8
복지용구	13,266	67,330	71,881	6.8
노인요양시설	53,555	248,936	454,392	82.5
노인요양시설(구법)	84,157	177,328	155,385	-12.4
노인전문요양시설(구법)	151,099	379,543	380,127	0.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7,369	50,304	102,991	104.7
노인요양시설(단기보호전환)	-	-	92,099	-

자료 : 1. 보건복지부 통계포털, 2009년 장기요양보험주요통계  
 2.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털 통계자료실, 2010년 장기요양보험 주요통계  
 주 : 1. 연도말 지급기준  
 2. 노인요양시설(단기보호전환)은 2010년 3월부터 시행

부표 8 연도별 급여종류별 요양급여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증가율
계	426,779	1,736,894	2,402,287	38.3
방문요양	108,565	733,447	1,129,639	54.0
방문목욕	9,443	40,599	69,097	70.2
방문간호	1,454	6,194	6,175	-0.3
주야간보호	17,588	61,834	73,142	18.3
단기보호	15,339	84,289	32,283	-61.7
복지용구	11,606	59,234	63,699	7.5
노인요양시설	45,470	211,776	388,337	83.4
노인요양시설(구법)	74,681	156,913	137,291	-12.5
노인전문요양시설(구법)	136,438	340,252	338,342	-0.6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6,194	42,355	87,519	106.6
노인요양시설(단기보호전환)	-	-	76,764	-

자료 : 1. 보건복지부 통계포털, 2009년 장기요양보험주요통계  
 2.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털 통계자료실, 2010년 장기요양보험 주요통계  
 주 : 1. 연도말 지급기준  
 2. 노인요양시설(단기보호전환)은 2010년 3월부터 시행

부표 9 연도별 급여종류별 장기요양 급여실적

(단위 : 개수, 명, 일, 시간, 천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전년대비증가율
계	기관	8,318	13,451	14,979	11.4
	실인원	149,656	291,389	348,561	19.6
	요양일수	12,245,433	51,151,250	73,566,709	43.8
	서비스시간	13,062,588	374,526,676	131,280,760	-64.9
	총요양비	480,818,142	1,971,789,476	2,745,586,363	39.2
	요양급여비	426,778,661	1,736,893,742	2,402,287,301	38.3
재 가	기관	6,618	10,964	11,228	2.4
	실인원	92,614	223,560	266,047	19.0
	요양일수	4,925,905	30,650,653	45,642,825	48.9
	서비스시간	13,062,588	374,526,676	131,280,760	-64.9
	총요양비	184,637,745	1,115,678,604	1,560,592,135	39.9
	요양급여비	163,995,073	985,597,137	1,374,034,780	39.4
시 설	기관	1,700	2,487	3,751	50.8
	실인원	61,107	85,585	115,274	34.7
	요양일수	7,319,528	20,500,597	27,923,884	36.2
	서비스시간	-	-	-	-
	총요양비	296,180,397	856,110,872	1,184,994,228	38.4
	요양급여비	262,783,588	751,296,604	1,028,252,522	36.9

자료 : 1. 보건복지부 통계포털, 2009년 장기요양보험주요통계

2.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털 통계자료실, 2010년 장기요양보험 주요통계

주 : 연도말 지급기준

▶ 의약품산업

부표 10 세계 상위 15개 의약품 기업 판매 현황

(단위 : 백만달러)

기업(국가)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Total	568,047	609,614	671,164	727,067	752,022
Pfizer(미국)	59,204	59,415	59,909	58,677	57,024
Merck & Co.(미국)	33,676	35,965	39,365	39,488	38,963
Novartis(스위스)	29,427	31,653	34,479	36,684	38,460
Sanofi-Aventis(프랑스)	31,286	31,843	34,390	36,437	35,524
GlaxoSmithKline(영국)	34,222	36,212	37,620	36,736	34,973
AstraZeneca(영국)	24,420	27,311	29,999	32,498	34,434
Roche(스위스)	19,706	23,168	27,232	30,285	32,763
Johnson & Johnson(미국)	26,771	27,615	29,010	29,638	26,783
Lilly(미국)	13,977	15,176	17,177	19,042	20,310
Abbott(미국)	14,715	15,971	17,359	19,401	19,840
Teva(이스라엘)	9,677	11,664	13,295	15,143	15,947
Bayer(독일)	11,588	12,329	14,103	15,887	15,711
Boehringer Ingel(영국)	10,385	11,320	12,556	14,109	15,275
Amgen(미국)	13,162	15,932	15,900	15,281	15,038
Takeda(일본)	11,265	11,786	12,754	13,835	14,352

자료 : 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0년 의약품산업 분석 보고서  
 2. IMS Health(2009) IMS Health Midas



부표 11 2009년 세계시장 매출 상위 15대 의약품 판매 현황

(단위 : 백만달러)

제품명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Lipitor	12,846	13,458	13,454	13,646	13,288
Plavix	5,904	5,751	7,289	8,657	9,100
Nexium	5,607	6,607	7,146	7,828	8,236
Seretide	5,617	6,254	7,113	7,697	8,099
Seroquel	3,255	3,875	4,619	5,376	6,012
Enbrel	3,768	4,404	4,998	5,521	5,863
Remicade	2,942	3,564	4,198	4,919	5,453
Crestor	1,306	2,081	2,988	3,942	5,383
Zyprexa	4,680	4,697	5,016	5,026	5,357
Humira	1,276	1,928	2,692	3,941	5,032
Avastin	976	1,981	2,837	4,009	5,015
Singulair	3,178	3,763	4,407	4,639	4,986
Mabthera	2,681	3,213	3,712	4,404	4,681
Abilify	1,605	2,130	2,714	3,574	4,673
Lovenox	2,959	3,345	3,921	4,375	4,572
Global Market	568,047	609,614	671,164	727,067	752,022

자료 : 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0년 의약품산업 분석 보고서  
 2. IMS Health(2009) IMS Health Midas

부표 12 2009년 세계시장 매출 상위 15대 의약품 판매 전년대비 성장률

(단위 : %)

제품명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Lipitor	4.4	-2.4	-0.1	-0.3
Plavix	-2.6	21.8	16.8	7.9
Nexium	17.3	5.8	8.3	7.1
Seretide	10.4	10.0	7.3	8.9
Seroquel	18.9	17.1	15.0	13.4
Enbrel	17.2	10.8	8.6	9.3
Remicade	21.4	15.4	14.9	13.1
Crestor	57.5	41.0	30.9	39.2
Zyprexa	0.4	3.5	-2.2	9.3
Humira	50.3	34.8	43.6	31.8
Avastin	104.8	41.3	40.2	27.2
Singulair	18.2	15.3	3.9	8.9
Mabthera	19.5	12.3	15.4	9.5
Abilify	33.2	26.4	30.6	31.7
Lovenox	12.3	12.9	9.0	8.1
Global Market	6.8	6.3	5.1	6.7

자료 : 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0년 의약품산업 분석 보고서  
 2. IMS Health(2009) IMS Health Midas

부표 13 국내 주요 의약품 업체별 매출액

(단위 : 백만원)

기업명	2007년	2008년	2009년
동아제약(주)	635,934	702,316	801,060
(주)녹십자	442,299	516,097	643,208
(주)유한양행	482,205	595,720	630,347
한미홀딩스(주)	501,049	558,327	616,103
(주)대웅제약	484,242	547,665	613,750
(주)중외제약	385,010	437,648	455,147
제일약품(주)	305,441	319,440	369,487
(주)종근당	252,022	303,233	354,497
(주)LG생명과학	256,403	281,891	327,258
일동제약(주)	270,391	300,420	316,641
(주)한독약품	262,992	275,095	293,442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0년 의약품산업 분석 보고서

부표 14 국내 주요 의약품 연령별 매출액

(단위 : 천원)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0-28일 미만	75,040	94,914	98,302	126,632
28일-1세 미만	52,767,096	59,942,629	57,156,628	61,482,818
1-9세	485,924,151	511,406,608	562,809,226	603,697,311
10-19세	347,306,028	364,851,170	443,552,937	461,549,465
20-29세	493,023,337	506,677,938	549,003,854	573,429,230
30-39세	879,570,288	912,515,211	980,043,899	1,031,133,798
40-49세	1,566,599,925	1,657,599,884	1,808,982,062	1,892,847,205
50-59세	2,143,257,208	2,339,437,555	2,622,329,794	2,902,397,902
60-69세	2,470,318,330	2,676,685,559	2,952,357,845	3,166,484,906
70-79세	1,820,265,476	2,030,884,604	2,324,975,276	2,594,745,050
80-89세	492,020,308	560,194,794	668,433,155	785,315,054
90-99세	34,284,819	38,361,275	46,258,822	57,469,735
100세 이상	816,106	3,736,218	1,334,442	1,391,125
합계	10,786,228,113	11,662,388,359	13,017,336,242	14,132,070,232

자료 :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의약품정보

주 : 의약품유통현황이 2008년부터 의약품이 유통되는 포장단위별로 부여된 의약품 표준코드에 의해 관리되어, 2007년도 생산, 수입실적과 2008년 이후 생산, 수입실적 및 공급내역은 기존의 수량단위(정, 포, mg, ml 등)와 다른 포장단위의 수량임

부표 15 노인의료서비스 수요 현황(질병분류별)

(단위 : 일, 천원)

구 분		내원일수	진료비	급여비
총계 Total	계 S,T	195,536,347	12,045,906,939	9,088,227,395
	입원 I,P	39,264,131	5,025,626,026	3,977,624,659
	외래 O,P	156,272,216	7,020,280,914	5,110,602,737
특정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A00-B99)	계 S,T	3,332,529	237,080,194	174,191,233
	입원 I,P	780,375	118,574,347	91,909,246
	외래 O,P	2,552,154	118,505,847	82,281,987
신생물(C00-D48)	계 S,T	6,989,040	1,328,358,641	1,165,543,701
	입원 I,P	3,941,673	850,536,786	748,098,736
	외래 O,P	3,047,367	477,821,856	417,444,965
혈액및조혈기관의질환과면역기전 을침범한특정장애(D50-D89)	계 S,T	248,273	24,693,421	18,255,408
	입원 I,P	64,329	11,314,878	9,013,482
	외래 O,P	183,944	13,378,544	9,241,926
내분비,영양 및 대사질환(E00-E90)	계 S,T	9,377,882	667,012,819	466,278,098
	입원 I,P	1,495,011	111,211,194	83,318,313
	외래 O,P	7,882,871	555,801,625	382,959,785
정신및행동장애(F00-F99)	계 S,T	10,791,247	641,677,138	459,217,694
	입원 I,P	7,689,846	454,164,881	333,265,239
	외래 O,P	3,101,401	187,512,256	125,952,455
신경계의 질환(G00-G99)	계 S,T	5,320,669	435,121,140	321,955,405
	입원 I,P	2,653,303	238,747,612	181,078,903
	외래 O,P	2,667,366	196,373,528	140,876,502
눈및유양돌기의질환(H00-H59)	계 S,T	8,531,283	556,871,470	426,065,456
	입원 I,P	352,627	261,745,520	211,284,568
	외래 O,P	8,178,656	295,125,950	214,780,888
귀및유양돌기의질환(H60-H95)	계 S,T	2,832,389	84,322,722	60,246,203
	입원 I,P	108,906	13,610,908	10,102,932
	외래 O,P	2,723,483	70,711,814	50,143,271
순환기계의질환( I00-I99)	계 S,T	32,718,009	2,711,059,218	1,988,315,405
	입원 I,P	9,482,316	1,146,783,762	903,274,720
	외래 O,P	23,235,693	1,564,275,456	1,085,040,685
호흡기계의질환(J00-J99)	계 S,T	19,501,046	794,706,887	599,115,990
	입원 I,P	2,341,771	345,217,361	266,247,388
	외래 O,P	17,159,275	449,489,526	332,868,602

구 분		내원일수	진료비	급여비
소화기계의질환(K00-K93)	계 S,T	17,163,275	777,051,267	560,111,141
	입원 I,P	1,345,543	237,172,560	182,697,933
	외래 O,P	15,817,732	539,878,707	377,413,208
피부및피하조직의질환(L00-L99)	계 S,T	5,914,474	152,940,909	116,502,083
	입원 I,P	256,721	23,755,210	18,053,391
	외래 O,P	5,657,753	129,185,699	98,448,692
근골격계및결합조직의질환(M00-M99)	계 S,T	51,535,727	1,830,857,311	1,384,109,700
	입원 I,P	3,525,999	553,884,572	429,372,346
	외래 O,P	48,009,728	1,276,972,739	954,737,355
비뇨생식기계의질환(N00-N99)	계 S,T	6,622,741	694,609,289	537,945,295
	입원 I,P	1,176,109	177,073,555	141,087,947
	외래 O,P	5,446,632	517,535,735	396,857,348
임신,출산및산욕(O00-O99)	계 S,T	0	0	0
	입원 I,P	0	0	0
	외래 O,P	0	0	0
주산기에기원한특정병태(P00-P96)	계 S,T	0	0	0
	입원 I,P	0	0	0
	외래 O,P	0	0	0
선천성기형,변형및염색체이상(Q00-Q99)	계 S,T	33,947	4,821,924	3,512,923
	입원 I,P	10,858	2,829,404	2,295,033
	외래 O,P	23,089	1,992,520	1,217,890
달리분류되지않은증상,징후와임상및검사이상소건(R00-R99)	계 S,T	2,429,768	136,094,293	89,490,650
	입원 I,P	307,991	34,771,006	25,938,180
	외래 O,P	2,121,777	101,323,287	63,552,471
손상,중독및외인에의한특정기타결과(S00-T98)	계 S,T	10,930,434	626,993,803	469,680,507
	입원 I,P	3,628,764	429,021,297	328,451,472
	외래 O,P	7,301,670	197,972,506	141,229,035
건강상태및보건서비스접촉에영향을주는요인(Z00-Z99)	계 S,T	882,978	40,576,919	31,038,689
	입원 I,P	53,787	9,196,306	7,522,609
	외래 O,P	829,191	31,380,613	23,516,080
기타	계 S,T	380,636	301,057,574	216,651,815
	입원 I,P	48,202	6,014,868	4,612,222
	외래 O,P	332,434	295,042,706	212,039,593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9년 건강보험통계연보

주 : 1. 298개 질병분류별 자료를 이용하여 대분류 22개로 분석함

2. 세부연령별 자료에서 65세 이상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함

부표 16 연령별 주요 만성질환 유병률(의사진단 유병률)

(단위 : %)

구분		1998년	2001년	2005년	2007년	2008년	2009년	
비만(만19세 이상)	전체(19세이상)	26.0	29.2	31.3	31.7	30.7	31.3	
	19-29세	15.2	17.3	19.3	22.0	23.0	22.1	
	30-39세	24.6	25.6	29.0	27.8	28.0	29.5	
	40-49세	31.6	35.8	35.2	32.5	34.4	34.7	
	50-59세	35.6	37.2	42.1	42.4	37.4	40.0	
	60-69세	30.2	38.3	39.6	46.2	37.2	37.0	
	70세 이상	22.2	29.5	31.5	31.7	29.3	31.1	
당뇨병(만 30세 이상)	전체(30세이상)	11.6	8.6	9.1	9.6	9.7	9.6	
	30-39세	5.8	4.9	1.4	4.2	2.1	2.5	
	40-49세	8.1	5.9	7.4	5.7	7.6	5.8	
	50-59세	18.4	10.2	14.0	13.4	12.6	12.3	
	60-69세	18.9	16.1	18.1	19.7	21.1	22.0	
	70세 이상	18.2	15.1	17.9	17.5	19.2	21.8	
이상 지혈증	고콜레스테롤혈증 (만30세 이상)	전체(30세이상)	10.0	9.1	8.0	10.7	10.9	11.5
		30-39세	4.7	5.4	3.9	5.5	5.9	6.3
		40-49세	8.5	7.5	7.1	8.4	8.5	9.4
		50-59세	15.9	11.8	11.5	15.0	15.2	17.4
		60-69세	14.7	16.8	13.5	18.7	18.2	18.0
		70세 이상	13.4	10.3	9.7	15.2	15.6	14.0
	저HDL콜레스테롤 혈증 유병률 (만30세 이상)	전체(30세이상)	-	-	-	-	-	28.2
		30-39세	-	-	-	-	-	25.1
		40-49세	-	-	-	-	-	25.2
		50-59세	-	-	-	-	-	29.6
		60-69세	-	-	-	-	-	34.5
		70세 이상	-	-	-	-	-	34.2
	고중성지방혈증 (만 30세 이상)	전체(30세이상)	10.2	19.6	16.7	16.9	17.3	16.5
		30-39세	7.3	14.4	12.6	11.7	14.7	12.4
		40-49세	10.8	19.2	18.5	17.1	18.3	15.5
		50-59세	14.5	23.1	21.1	24.5	18.7	21.8
		60-69세	12.8	24.8	17.5	19.9	17.7	21.7
		70세 이상	5.8	23.4	14.4	14.5	19.3	15.9
고혈압(만 30세 이상)	전체(30세이상)	29.9	28.6	28.0	24.6	26.9	30.3	
	30-39세	12.3	10.3	8.8	7.5	10.7	9.1	

구분		1998년	2001년	2005년	2007년	2008년	2009년	
	40-49세	25.2	20.7	19.7	15.7	19.9	22.7	
	50-59세	39.5	36.1	41.3	33.6	35.0	39.2	
	60-69세	47.5	57.2	53.7	45.9	47.5	55.6	
	70세 이상	58.5	58.1	55.0	60.2	56.8	69.5	
폐쇄성폐질환(만 40세 이상)	전체(40세이상)	-	-	-	15.3	13.1	10.5	
	40-49세	-	-	-	5.4	4.8	3.2	
	50-59세	-	-	-	14.3	9.0	9.1	
	60-69세	-	-	-	21.5	21.4	17.7	
	70세 이상	-	-	-	38.8	34.8	26.2	
구강질환	영구치우식 (만 19세 이상)	전체(19세이상)	-	-	-	-	-	33.8
		19-29세	-	-	-	-	-	40.5
		30-39세	-	-	-	-	-	38.6
		40-49세	-	-	-	-	-	31.7
		50-59세	-	-	-	-	-	29.1
		60-69세	-	-	-	-	-	27.2
		70세 이상	-	-	-	-	-	28.8
	치주질환 (만 19세 이상)	전체(19세이상)	-	-	-	35.0	32.1	29.4
		19-29세	-	-	-	9.6	5.3	6.4
		30-39세	-	-	-	24.6	21.4	19.0
		40-49세	-	-	-	42.9	39.0	37.2
		50-59세	-	-	-	51.7	53.2	49.2
		60-69세	-	-	-	57.6	57.2	47.8
70세 이상	-	-	-	59.4	53.7	47.4		
B형 간염 표면항원 양성률 (만 10세 이상)	전체(10세이상)	4.6	4.5	3.7	3.7	2.9	3.2	
	10-18세	2.2	2.0	0.4	1.9	0.6	0.2	
	19-29세	5.1	4.5	4.3	2.1	1.4	2.4	
	30-39세	6.1	5.2	4.5	4.4	3.1	4.4	
	40-49세	5.1	6.5	4.4	4.3	5.4	4.7	
	50-59세	5.3	5.0	5.7	6.5	4.4	3.6	
	60-69세	2.9	2.7	3.4	3.1	3.6	3.2	
	70세 이상	2.3	3.2	1.1	3.3	1.3	2.6	
빈혈(만 10세 이상)	전체(10세이상)	8.4	8.3	8.5	9.5	7.4	8.2	
	10-18세	4.8	4.2	4.2	3.6	2.6	3.5	
	19-29세	8.5	8.0	7.2	7.9	5.1	6.6	

구분		1998년	2001년	2005년	2007년	2008년	2009년	
	30-39세	8.4	10.0	8.8	10.4	8.2	7.9	
	40-49세	9.3	9.6	9.3	11.7	9.8	11.4	
	50-59세	6.5	6.2	6.6	7.3	6.0	6.0	
	60-69세	7.5	7.0	10.2	8.2	9.3	9.3	
	70세 이상	17.7	14.7	20.2	23.5	15.2	18.3	
안질환	시력장애 (만 40세 이상)	전체(40세이상)	-	-	-	-	-	1.0
		40-49세	-	-	-	-	-	0.1
		50-59세	-	-	-	-	-	0.5
		60-69세	-	-	-	-	-	1.2
		70세 이상	-	-	-	-	-	4.3
	안검하수 (만 3세 이상)	전체(3세이상)	-	-	-	-	-	10.0
		3-5세	-	-	-	-	-	8.4
		6-11세	-	-	-	-	-	9.6
		12-18세	-	-	-	-	-	8.8
		19-29세	-	-	-	-	-	4.0
		30-39세	-	-	-	-	-	3.8
		40-49세	-	-	-	-	-	5.1
		50-59세	-	-	-	-	-	11.9
		60-69세	-	-	-	-	-	22.5
		70세 이상	-	-	-	-	-	35.6
	백내장(만 40세 이상)	전체(40세이상)	-	-	-	-	-	40.4
		40-49세	-	-	-	-	-	9.9
		50-59세	-	-	-	-	-	32.9
		60-69세	-	-	-	-	-	71.5
		70세 이상	-	-	-	-	-	94.1
	군날개 (만 40세 이상)	전체(40세이상)	-	-	-	-	-	9.2
		40-49세	-	-	-	-	-	4.0
		50-59세	-	-	-	-	-	8.2
		60-69세	-	-	-	-	-	13.7
		70세 이상	-	-	-	-	-	18.5
	단요망막병증 (초기) (만 30세 이상)	전체(30세이상)	-	-	-	-	-	5.3
		40-49세	-	-	-	-	-	1.4
		50-59세	-	-	-	-	-	4.7
60-69세		-	-	-	-	-	8.8	
70세 이상		-	-	-	-	-	13.8	



구분		1998년	2001년	2005년	2007년	2008년	2009년
	나이관련항반변성 (만 40세 이상)	전체(40세이상)	-	-	-	-	11.2
		30-49세	-	-	-	-	12.2
		50-59세	-	-	-	-	8.6
		60-69세	-	-	-	-	14.6
		70세 이상	-	-	-	-	9.0
이비인후 (귀, 코, 목)질환	만성중이염 (만 4세 이상)	전체(4세이상)	-	-	-	-	2.7
		전체(19세이상)	-	-	-	-	3.1
		4-9세	-	-	-	-	1.2
		10-18세	-	-	-	-	0.4
		19-29세	-	-	-	-	0.9
		30-39세	-	-	-	-	0.8
		40-49세	-	-	-	-	3.9
		50-59세	-	-	-	-	4.7
		60-69세	-	-	-	-	6.0
		70세 이상	-	-	-	-	6.3
	일측성 난청 (만 12세 이상)	전체(12세이상)	-	-	-	-	5.7
		12-18세	-	-	-	-	2.6
		19-29세	-	-	-	-	1.6
		30-39세	-	-	-	-	2.4
		40-49세	-	-	-	-	3.8
		50-59세	-	-	-	-	6.9
		60-69세	-	-	-	-	14.7
		70세 이상	-	-	-	-	17.8
	양측성 난청 (만 12세 이상)	전체(12세이상)	-	-	-	-	4.5
		12-18세	-	-	-	-	0.3
		19-29세	-	-	-	-	0.0
		30-39세	-	-	-	-	0.3
		40-49세	-	-	-	-	0.7
		50-59세	-	-	-	-	2.9
		60-69세	-	-	-	-	12.1
		70세 이상	-	-	-	-	31.7
	비중격만곡증 (만 12세 이상)	전체(12세이상)	-	-	-	-	43.1
		12-18세	-	-	-	-	32.4
		19-29세	-	-	-	-	44.8
		30-39세	-	-	-	-	44.9

구분		1998년	2001년	2005년	2007년	2008년	2009년	
	40-49세	-	-	-	-	-	42.9	
		-	-	-	-	-	47.1	
		-	-	-	-	-	44.9	
		-	-	-	-	-	41.0	
	후각장애 (만 12세 이상)	전체(12세이상)	-	-	-	-	-	4.1
		12-18세	-	-	-	-	-	2.0
		19-29세	-	-	-	-	-	2.8
		30-39세	-	-	-	-	-	3.5
		40-49세	-	-	-	-	-	3.2
		50-59세	-	-	-	-	-	5.1
		60-69세	-	-	-	-	-	7.2
		70세 이상	-	-	-	-	-	8.6
	비염(만 6세 이상)	전체(6세이상)	-	-	-	-	-	26.0
		전체(19세이상)	-	-	-	-	-	25.6
		6-9세	-	-	-	-	-	24.2
		10-18세	-	-	-	-	-	28.8
		19-29세	-	-	-	-	-	33.6
		30-39세	-	-	-	-	-	30.7
		40-49세	-	-	-	-	-	23.6
		50-59세	-	-	-	-	-	22.0
60-69세		-	-	-	-	-	17.8	
70세 이상		-	-	-	-	-	16.2	
골다공증(만 50세 이상)	전체(50세이상)	-	-	-	-	-	23.1	
	전체(65세이상)	-	-	-	-	-	42.0	
	50-59세	-	-	-	-	-	8.1	
	60-69세	-	-	-	-	-	24.0	
	70세 이상	-	-	-	-	-	48.4	
골감소증 (만 50세 이상)	전체(50세이상)	-	-	-	-	-	47.5	
	전체(65세이상)	-	-	-	-	-	42.1	
	50-59세	-	-	-	-	-	50.1	
	60-69세	-	-	-	-	-	49.3	
	70세 이상	-	-	-	-	-	40.9	
골관절염 (만 50세 이상)	전체(50세이상)	-	-	-	-	-	24.2	
	전체(65세이상)	-	-	-	-	-	37.8	

구분		1998년	2001년	2005년	2007년	2008년	2009년
	50-59세	-	-	-	-	-	14.0
	60-69세	-	-	-	-	-	24.5
	70세 이상	-	-	-	-	-	43.6
뇌졸중 (만 50세 이상)	전체(50세이상)	2.9	3.4	4.5	4.8	4.3	3.3
	50-59세	1.4	1.8	2.4	2.6	1.8	1.5
	60-69세	3.0	3.7	5.8	5.5	5.3	4.2
	70세 이상	5.5	5.9	6.8	7.8	8.0	5.6
천식(만 19세 이상)	전체(19세이상)	15.6	7.3	-	5.2	7.4	7.6
	19-29세	15.1	7.0	-	2.3	6.2	6.2
	30-39세	11.4	5.5	-	3.2	5.6	7.0
	40-49세	14.1	5.7	-	4.7	5.9	6.0
	50-59세	15.9	6.9	-	6.1	7.6	7.3
	60-69세	19.7	10.4	-	8.9	11.8	10.3
	70세 이상	28.3	15.3	-	15.6	15.0	15.1
알레르기성비염 (만 19세 이상)	전체(19세이상)	1.2	2.7	8.3	12.0	12.1	11.9
	19-29세	1.6	3.6	10.1	17.1	15.1	16.5
	30-39세	1.5	4.0	10.6	16.5	18.3	15.6
	40-49세	1.4	2.6	8.4	9.6	11.2	11.6
	50-59세	0.8	1.7	7.1	8.6	7.9	8.0
	60-69세	0.6	0.9	4.6	6.3	5.2	5.7
	70세 이상	0.1	0.3	2.5	3.1	3.1	2.9
아토피피부염 (만 19세 이상)	전체(19세이상)	-	-	-	2.4	3.2	2.9
	19-29세	-	-	-	5.7	5.4	6.1
	30-39세	-	-	-	1.6	3.3	3.9
	40-49세	-	-	-	1.5	2.3	1.0
	50-59세	-	-	-	1.0	2.4	1.9
	60-69세	-	-	-	1.6	1.7	0.6
	70세 이상	-	-	-	0.8	2.2	0.6
협심증 또는 심근경색증 (만 30세 이상)	전체(30세이상)	-	-	-	-	-	1.6
	30-39세	-	-	-	-	-	0.1
	40-49세	-	-	-	-	-	0.8
	50-59세	-	-	-	-	-	1.4
	60-69세	-	-	-	-	-	4.5
	70세 이상	-	-	-	-	-	4.4

구분		1998년	2001년	2005년	2007년	2008년	2009년
위십이지장궤양 (만 30세 이상)	전체(30세이상)	-	-	-	-	-	6.4
	30-39세	-	-	-	-	-	3.7
	40-49세	-	-	-	-	-	5.0
	50-59세	-	-	-	-	-	9.3
	60-69세	-	-	-	-	-	9.5
	70세 이상	-	-	-	-	-	7.3

자료 : 보건복지부, 2009 국민건강통계\_국민건강영양조사(2009)

주 : 1. 비만, 치주질환, 알레르기성 비염, 아토피피부염 및 천식 전체(19세 이상)의 유병률 계산시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2. 당뇨병, 고콜레스테롤혈증, 고중성지방혈증 및 고혈압 전체(30세 이상)의 유병률 계산시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3. 고혈압 2009년 결과는 잠정치로 자료 추가 검토 후 재발표 예정
4. 폐쇄성폐질환 전체(40세 이상)의 유병률 계산시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5. B형 간염 표면항원 전체 및 빈혈 전체(10세 이상)의 유병률 계산시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6. 뇌졸중 전체(50세 이상)의 유병률 계산시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부표 17 2007년 의약품산업 기술수준 현황

(단위 : %, 개월, 년)

의약품기술별		전반적기술수준 (%)	기술격차
개발단계별		64.9	4.4(년)
	약물작용점발굴기술	62.7	68(개월)
	선도물질도출기술	67.8	61(개월)
	후보물질도출기술	67.7	55(개월)
	생산공정기술	69.8	52(개월)
	의약품제제기술	67.7	48(개월)
	전임상시험기술	67.7	54(개월)
	임상시험기술	68.5	44(개월)
약효군별		59.0	5.6(년)
	감염성질환치료제	62.3	64(개월)
	대사성질환치료제	58.3	79(개월)
	면역계질환치료제	55.1	70(개월)
	비노생식기계질환치료제	61.3	70(개월)
	소염진통제	62.0	51(개월)
	소화기계질환치료제	69.4	48(개월)
	심혈관질환치료제	52.3	81(개월)
	중추신경계약	56.9	74(개월)
	항암제	57.6	64(개월)
	호흡기계질환치료제	54.5	73(개월)
바이오		65.3	4.6(년)
	항체치료제	57.7	72(개월)
	유전자치료제	56.5	62(개월)
	백신	55.0	76(개월)
	호르몬제	49.2	62(개월)
	면역조절단백질	56.3	63(개월)
	세포치료제	66.6	64(개월)
	혈액단백제제	69.3	41(개월)
	효소및저해제	63.3	59(개월)
의약품전반		64.2	4.8(년)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 기술수준조사

▶ 의료기기산업

부표 18 2009년 국가별 의료기기 시장규모

(단위 : 백만달러, %)

순위	국 가	2009년 시장규모	비중
1	미국	92,662	39.7
2	일본	21,713	9.3
3	독일	18,843	8.1
4	프랑스	9,071	3.9
5	이탈리아	8,703	3.7
6	영국	8,284	3.5
7	중국	6,695	2.9
8	캐나다	4,922	2.1
9	러시아	4,913	2.1
10	스페인	4,257	1.8
11	스위스	3,969	1.7
12	호주	3,370	1.4
13	한국	2,855	1.2
14	멕시코	2,608	1.1
15	네덜란드	2,371	1.0
16	오스트리아	2,222	1.0
17	브라질	2,219	0.9
18	스웨덴	2,195	0.9
19	인도	1,986	0.9
20	덴마크	1,890	0.8
20개국 합계		205,747	88.1
세계시장		233,651	100.0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0년 의료기기산업 분석 보고서

부표 19 2009년도 기준 생산액 상위 10대 품목 현황

(단위 : 백만원, %)

순위	구분 품목명	생산액			2008년 대비 성장률
		2007년	2008년	2009년	
1	초음파영상진단장치	255,980	321,449	286,733	-10.8
2	치과용귀금속합금	221,068	265,673	253,955	-4.4
3	치과용임플란트	159,308	192,274	179,144	-6.8
4	시력보정용안경렌즈	161,847	161,929	167,563	3.5
5	개인용온열기	68,031	101,580	131,439	29.4
6	의료영상상처리용장치· 소프트웨어	68,761	45,135	77,688	72.1
7	소프트콘택트렌즈	39,433	53,112	72,260	36.1
8	의료용프로브	42,659	36,036	70,368	95.3
9	디지털엑스선촬영장치	28,454	53,704	68,919	28.3
10	개인용조합자극기	80,045	76,079	68,797	-9.6
전체 의료기기 합계		2,216,965	2,525,203	2,764,261	9.5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0년 의료기기산업 분석 보고서

주 : 제조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은 제조업체 중 생산실적을 보고한 업체들의 실적을 근거로 작성

부표 20 2009년도 기준 수출액 상위 10대 품목 현황

(단위 : 천달러, %)

순위	구분 품목명	생산액			2008년 대비 성장률
		2007년	2008년	2009년	
1	초음파영상진단장치	286,291	304,820	226,280	-25.8
2	개인용온열기	72,294	87,840	99,264	13.0
3	시력보정용안경렌즈	82,201	62,552	74,162	18.6
4	혈당측정검사지	36,947	37,727	50,643	34.2
5	의료용프로브	35,869	30,608	50,178	63.9
6	소프트콘택트렌즈	24,747	34,915	47,516	36.1
7	치과용임플란트	27,794	32,208	35,783	11.1
8	개인용조합자극기	38,015	40,144	33,312	-17.0
9	전산화단층엑스선촬영장치	42,684	24,296	32,016	31.8
10	디지털엑스선촬영장치	14,185	29,683	31,973	7.7
전체 의료기기 합계		1,032,172	1,132,005	1,190,087	5.1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0년 의료기기산업 분석 보고서

부표 21 2009년도 기준 수입액 상위 10대 품목 현황

(단위 : 천달러, %)

순위	구분 품목명	생산액			2008년 대비 성장률
		2007년	2008년	2009년	
1	스텐트	108,850	114,852	92,970	-19.1
2	인공무릎관절	56,144	57,978	66,934	15.4
3	소프트콘택트렌즈	50,669	61,261	60,148	-1.8
4	전산화단층엑스선촬영장치	70,301	77,933	55,003	-29.4
5	인공신장기용여과기	56,438	56,148	47,245	-15.9
6	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장치	77,170	73,631	44,622	-39.4
7	치료용하전입자가속장치	54,392	38,282	42,147	10.1
8	시력보정용안경렌즈	55,771	42,881	41,455	-3.3
9	의료용스태플	25,619	31,742	35,791	12.8
10	수술용기구	34,790	32,417	31,900	-1.6
전체 의료기기 합계		2,153,921	2,123,076	1,879,359	-11.5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0년 의료기기산업 분석 보고서

부표 22 주요 국가의 출원연도별 의료기기 특허출원동향

(단위 : 건)

	미국	일본	스위스	독일	영국
1998년	162	78	26	19	15
1999년	169	76	9	27	17
2000년	229	87	8	28	17
2001년	224	115	26	39	22
2002년	253	125	33	47	23
2003년	277	151	39	40	39
2004년	350	173	47	46	25
2005년	407	201	70	49	38
2006년	526	213	127	68	25
2007년	588	284	167	93	38
2008년	715	394	193	142	50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0년도 보건산업 연구개발실태 조사·분석

주 : 국가는 제1출원인의 국적임



부표 23 2009년 고령친화의료기기 일본수입회사 수입금액별 30위 업체

(단위 : USD)

No.	기업명	수입금액(USD)
1	지이헬스케어코리아㈜	12,354,169
2	㈜지씨코리아	7,238,419
3	㈜신흥	6,027,950
4	동강메디칼시스템㈜	5,488,368
5	㈜중외메디칼	3,244,826
6	㈜티아이메디칼시스템즈	1,651,100
7	니혼코덴코리아㈜	1,302,956
8	바이엘코리아㈜	1,001,598
9	구백교역상사	981,540
10	㈜미동양행	950,693
11	㈜흥일메디칼	906,023
12	㈜조광덴탈	753,636
13	신원덴탈㈜	615,843
14	동아제약㈜	564,464
15	㈜신우메디랜드	545,413
16	남일메디칼	522,000
17	한국에이앤디㈜	512,946
18	메디언스㈜	504,135
19	에스원광학㈜	497,285
20	동서의료기산업㈜	467,974
21	동해렌즈㈜	467,542
22	아크레이글로벌비즈니스㈜	441,632
23	칼자이스비전코리아㈜	426,836
24	㈜태양메디텍	414,685
25	㈜유진의료전자	390,075
26	㈜에실로코리아	327,492
27	㈜보령수앤수	301,445
28	㈜동방	285,131
29	제일메디칼㈜	280,481
30	㈜엑심	276,354

자료 : 의료기기 정책연구원, 고령친화 의료기기 시장, 제도 및 기업현황

▶ **화장품산업**

부표 24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단위 : 개, 명)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이용 및 미용업	소계	106,605	162,631	108,095	164,990	110,347	166,872	112,208	170,376
	이용업	21,462	27,711	20,660	25,997	19,829	24,305	19,109	23,327
	두발미용업	76,530	117,236	77,032	118,184	77,409	117,397	78,154	119,042
	피부미용업	6,930	13,644	8,414	16,097	10,181	18,622	11,276	20,165
	기타미용업	1,683	4,040	1,989	4,712	2,928	6,548	3,669	7,842
욕탕 마사지 및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소계	13,315	48,487	14,014	49,785	13,876	47,315	14,080	46,921
	욕탕업	8,066	34,571	7,811	33,870	7,466	31,678	7,275	30,879
	마사지업	3,765	10,721	4,748	12,904	5,271	13,176	5,470	13,449

자료 :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도소매서비스, 서비스업조사

부표 25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매출액 현황

(단위 : 백만원)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이용 및 미용업	소계	3,877,149	4,185,251	4,506,831	4,714,443
	이용업	498,814	480,332	449,853	412,094
	두발미용업	2,911,005	3,159,301	3,324,053	3,466,081
	피부미용업	380,598	442,199	577,222	647,758
	기타미용업	86,732	103,420	155,702	188,510
욕탕 마사지 및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소계	1,830,300	2,005,414	1,977,083	1,966,440
	욕탕업	1,435,215	1,522,267	1,474,712	1,434,190
	마사지업	307,214	378,484	412,275	425,455

자료 :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도소매서비스, 서비스업조사

부표 26 2010년 화장품 유형별 생산실적

(단위 : 개, 천원, %)

대분류	소분류	생산량	생산금액	점유율
어린이용 제품류	어린이용 샴푸, 린스	4,898,260	7,903,965	0.1
	어린이용 로션, 크림	22,549,265	40,334,551	0.7
	어린이용 오일	1,414,314	1,955,451	0.0
	어린이용 인체세정용 제품	6,364,085	7,893,597	0.1
	어린이용 목욕용 제품류	1,279,196	6,333,715	0.1
어린이용 제품류 소계		36,505,119	64,421,279	1.1
목욕용 제품류	목욕용오일,정제,캡슐	1,033,863	2,067,521	0.0
	목욕용 염류	573,183	1,274,790	0.0
	바블 바스	4,747,441	960,901	0.0
	그밖의 목욕용 제품류	2,041,524	2,574,373	0.0
목욕용 제품류 소계		8,396,012	6,877,585	0.1
인체세정용 제품류	폼클렌저	36,144,157	24,518,228	0.4
	바디클렌저	157,508,460	194,852,836	3.2
	액상비누	2,173,107	4,197,441	0.1
	외음부 세정제	32,922,697	14,111,771	0.2
	그밖의 인체세정용 제품류	18,411,105	14,216,926	0.2
인체세정용 제품류 소계		247,159,526	251,897,200	4.2
눈화장용 제품류	아이브라우펜슬	15,716,055	13,518,212	0.2
	아이라이너	22,637,411	43,206,059	0.7
	아이새도	20,101,448	42,726,097	0.7
	마스카라	17,823,157	48,210,641	0.8
	아이메이크업 리무버	5,995,664	7,492,343	0.1
	그밖의 눈화장용 제품류	1,886,230	2,368,040	0.0
눈화장용 제품류 소계		84,159,965	157,521,392	2.6
방향용 제품류	향수	2,687,026	13,409,894	0.2
	분말향	35,981	326,543	0.0
	향낭	460	2,213	0.0
	코롱	3,537,091	18,419,010	0.3
	그밖의 방향용 제품류	392,376	700,618	0.0
방향용 제품류 소계		6,652,935	32,858,278	0.5
염모용 제품류	헤어틴트	4,018,707	10,990,376	0.2
	헤어칼라스프레이	33,676	44,045	0.0
	그밖의 염모용 제품류	9,685,183	22,856,267	0.4

대분류	소분류	생산량	생산금액	점유율
염모용 제품류 소계		13,737,566	33,890,687	0.6
색조화장용 제품류	불연지	8,768,734	35,392,186	0.6
	페이스 파우더, 페이스케익	18,814,677	73,412,706	1.2
	리퀴드, 크림, 케익, 파운데이션	14,221,448	26,363,341	0.4
	메이크업 베이스	12,195,698	26,407,283	0.4
	메이크업픽서티브	608,771	1,883,671	0.0
	립스틱, 립라이너	23,349,048	71,685,411	1.2
	립글로스, 립밤	36,715,907	54,239,027	0.9
	바디페인팅, 분장용 제품	493,397	309,237	0.0
	그밖의 메이크업제품류	23,915,121	31,711,204	0.5
색조화장용 제품류 소계		139,082,801	321,404,068	5.3
체취방지용 제품류	데오드란트	340,212	488,766	0.0
두발용 제품류	헤어컨디셔너	37,147,684	64,448,801	1.1
	헤어토닉	2,371,296	7,100,471	0.1
	헤어그루밍에이드	3,690,088	7,860,634	0.1
	헤어크림, 로션	8,620,825	10,210,563	0.2
	헤어오일	19,028,649	37,968,630	0.6
	포마드	92,504	669,353	0.0
	헤어스프레이,무스,왁스,젤	25,479,020	50,544,673	0.8
	샴푸, 린스	265,459,055	703,146,893	11.7
	퍼머넨트 웨이브	38,195,141	33,060,748	0.5
	헤어스트레이트너	3,111,416	8,060,636	0.1
	그밖의 두발용 제품류	1,300,486	3,596,431	0.1
두발용 제품류 소계		404,496,164	926,667,832	15.4
손발톱용 제품류	베이스코트 및 언더코트	1,622,469	879,127	0.0
	네일폴리시릿네일에나멜	43,798,040	21,646,254	0.4
	탑코트	2,618,673	1,219,395	0.0
	네일크림,로션,엔센스	4,274,762	3,104,277	0.1
	네일폴리시리무버 및 네일에나멜 리무버	10,017,262	5,244,490	0.1
	그밖의 매니큐어용 제품류	1,498,510	908,431	0.0
손발톱용 제품류 소계		63,829,715	33,001,974	0.5
면도용 제품류	애프터세이브로션	46,738,324	152,271,832	2.5
	남성용탈취	10,121	11,946	0.0
	프리세이브 로션	3,310	14,739	0.0

대분류	소분류	생산량	생산금액	점유율
	세이빙 크림	1,126,785	74,635	0.0
	세이빙 폼	1,109,386	1,093,949	0.0
	그밖의 면도용 제품류	2,304,552	3,485,057	0.1
면도용 제품류 소계		51,292,478	156,952,158	2.6
기초화장용 제품류	수렴,유연,영양화장수	410,458,803	448,676,169	7.5
	마사지 크림	31,209,769	29,908,341	0.5
	에센스, 오일	342,974,771	413,441,497	6.9
	파우더	541,438	1,705,808	0.0
	바디제품	84,523,154	96,005,518	1.6
	팩, 마스크	410,365,813	193,667,664	3.2
	눈주위 제품	107,029,777	164,447,679	2.7
	로션, 크림	667,690,111	802,230,265	13.3
	손발의 피부연화 제품	45,841,283	65,296,546	1.1
	클렌징워터,/오일,/로션/ 크림, 메이크업리무버	269,767,164	263,657,174	4.4
	그밖의 기초화장용 제품류	58,730,724	30,874,131	0.5
기초화장용 제품류 소계		2,429,132,808	2,509,910,793	41.7
기능성 제품류	미백	194,422,702	286,519,785	4.8
	주름개선	262,436,219	342,278,896	5.7
	자외선 차단	186,228,937	472,066,109	7.8
	복합유형	225,217,815	417,794,227	6.9
기능성 제품류 소계		868,305,673	1,518,659,017	25.2
총합계		4,353,090,973	6,014,551,028	100.0

자료 : 대한화장품협회, 화장품 생산실적 자료, 각년도

## ▶ 식품산업

부표 27 2009년 매출액 기준 세계 식품제조기업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순위	기업명	국적	종업원수	매출액
1	Nestlé	Switzerland	281,000	44,708
2	Kraft Foods, Inc.	United States	127,000	39,800
3	Cargill, Incorporated	United States	131,000	38,860
4	PepsiCo, Inc.	United States	294,000	27,236
5	JBS-Swift Argentina	Argentina	2,570	26,836
6	Tyson Foods, Inc.	United States	115,000	26,704
7	Unilever	United Kingdom	167,000	18,425
8	Mars, Incorporated	United States	65,000	14,400
9	General Mills, Inc.	United States	33,000	13,000
10	Kellogg Company	United States	30,900	12,575
11	Groupe Danone	France	80,976	12,435
12	BRF-Brasil Foods S.A.	Brazil	114,273	12,162
13	ConAgra Foods, Inc.	United States	24,400	12,079
14	Groupe Lactalis	France	36,500	11,819
15	Royal FrieslandCampina N.V.	Netherlands	20,034	11,347
16	Smithfield Foods, Inc.	United States	48,000	11,203
17	Associated British Foods plc	United Kingdom	96,915	10,515
18	Nippon Meat Packers, Inc.	Japan	14,722	10,494
19	H.J. Heinz Company	United States	29,600	10,148
20	Ajinomoto Co., Inc.	Japan	27,215	8,989
21	Maruha Nichiro Holdings, Inc.	Japan	600	8,852
22	Arla Foods amla	Denmark	16,231	8,632
23	Grupo Bimbo S.A. de C.V.	Mexico	102,000	8,608
24	McCain Foods Limited	Canada	20,000	8,051
25	Danish Crown Amla	Denmark	24,274	7,751
26	Bunge Limited	United States	25,945	7,711

순위	기업명	국적	종업원수	매출액
27	Yamazaki Baking Co., Ltd.	Japan	16,174	7,653
28	Sara Lee Corporation	United States	33,400	7,604
29	Sü	Germany	18,062	7,474
30	Campbell Soup Company	United States	18,400	7,164
31	Pilgrim's Pride Corporation	United States	41,240	7,089
32	Kerry Group plc	Ireland	21,997	6,916
33	Dole Food Company, Inc.	United States	39,100	6,777
34	Hormel Foods Corporation	United States	19,300	6,534
35	Olam International Limited	Singapore	14,600	5,908
36	Barilla Holding	Italy	16,000	5,800
37	China Resources Enterprise, Limited	Hong Kong	152,000	5,299
38	The Hershey Company	United States	13,700	5,299
39	Kato Sangyo Co., Ltd.	Japan	1,006	5,239
40	Tingyi (Cayman Islands) Holding Corp.	China	64,436	5,081
41	Nippon Suisan Kaisha, Ltd.	Japan	8,801	4,855
42	Itoham Foods Inc.	Japan	2,378	4,833
43	Kikkoman Corporation	Japan	5,263	4,645
44	Bongrain SA	France	17,076	4,560
45	J. R. Simplot Company	United States	10,000	4,500
46	Tate & Lyle PLC	United Kingdom	5,666	4,492
47	Barry Callebaut AG	Switzerland	7,525	4,490
48	Maple Leaf Foods Inc.	Canada	23,500	4,395
49	Nisshin Seifun Group Inc.	Japan	5,283	4,333
50	Perdue Incorporated	United States	20,000	4,100
51	Unified Grocers Inc.	United States	3,100	4,036
52	Nissin Foods Holdings Co. Ltd.	Japan	7,388	3,965
53	Wilmar International Limited	Singapore	88,000	3,898
54	Kewpie Corporation	Japan	10,507	3,848
55	Gruma S.A.B. de C.V.	Mexico	18,000	3,735

순위	기업명	국적	종업원수	매출액
56	Land O'Lakes, Inc.	United States	9,000	3,731
57	Nichirei Corporation	Japan	6,250	3,723
58	Golden State Foods Corporation	United States	4,000	3,700
59	Corn Products International, Inc.	United States	8,100	3,672
60	Chiquita Brands International, Inc.	United States	21,000	3,470
61	Schreiber Foods, Inc.	United States	5,000	3,410
62	Fresh Del Monte Produce Inc.	Cayman Islands	42,000	3,400
63	Cremonini S.p.A.	Italy	11,500	3,316
64	Orkla ASA	Norway	30,167	3,288
65	OUG Holdings Inc.	Japan		3,277
66	Tereos	France	16,851	3,211
67	Ebro Puleva S.A	Spain	5,693	3,208
68	McCormick & Company, Incorporated	United States	7,500	3,192
69	Fromageries Bel	France	11,500	3,088
70	Ezaki Glico Co., Ltd.	Japan	1,088	3,087
71	CSM nv	Netherlands	8,430	3,061
72	PT Indofood Sukses Makmur Tbk	Indonesia	66,700	2,992
73	Dr. August Oetker KG	Germany	24,539	2,974
74	Glanbia plc	Ireland	4,349	2,959
75	Charoen Pokphand Foods Public Company Limited	Thailand	24,202	2,805
76	A. Moxsel AG	Germany	2,500	2,781
77	Leprino Foods Company	United States		2,725
78	Hostess Brands, Inc.	United States	21,000	2,700
79	Dean Foods Company	United States	27,157	2,678
80	Bakkavor Group Hf	Iceland	19,000	2,572
81	Valio, Ltd.	Finland	4,403	2,485
82	Premier Foods plc	United Kingdom	16,000	2,453
83	Alfa, S.A. de C.V.	Mexico	52,000	2,224
84	Dairy Farmers of America, Inc.	United States	3,000	2,106



순위	기업명	국적	종업원수	매출액
85	TINE SA	Norway	5,675	2,059
86	Del Monte Foods Company	United States	5,300	1,954
87	Tiger Brands Limited	South Africa	-	1,807
88	Wimm-Bill-Dann Foods OJSC	Russia	16,299	1,759
89	Danisco A/S	Denmark	6,800	1,716
90	United Biscuits Topco Limited	United Kingdom	8,367	1,637
91	The Procter & Gamble Company	United States	127,000	1,568
92	Northern Foods plc	United Kingdom	9,472	1,523
93	George Weston Limited	Canada	143,000	1,477
94	Nutreco Holding NV	Netherlands	9,690	1,443
95	Hindustan Unilever Limited	India	15,000	1,435
96	Yakult Honsha Co., Ltd.	Japan	2,872	1,289
97	Nongshim,Co.,Ltd	South Korea	4,684	1,285
98	Agrokor d.d.	Croatia	33,000	-

부표 28 국가별 가공식품 시장규모

(단위 : 백만 달러)

순위	Country	2005	2006	2007	2008	2009
1	United States	334,587	344,844	355,905	368,774	381,067
2	China	190,930	209,815	230,256	253,106	274,621
3	Japan	226,218	230,747	235,646	241,118	246,892
4	Germany	162,397	165,880	169,652	173,227	176,408
5	France	127,914	130,120	132,644	135,209	137,756
6	Brazil	107,897	113,082	117,670	122,460	127,461
7	Italy	109,424	112,458	115,784	119,111	122,474
8	United Kingdom	90,198	93,106	96,426	100,640	104,765
9	Russia	89,078	91,896	94,764	97,930	101,152
10	Mexico	79,593	82,209	86,071	87,376	90,482
11	Spain	70,282	72,735	75,141	77,590	80,010
12	Canada	45,539	46,719	47,812	48,949	50,094
13	Australia	33,009	34,026	35,079	36,190	37,341
14	Netherlands	31,852	32,541	33,276	34,019	34,763
15	Republic of Korea	27,394	28,232	29,246	30,177	31,226
16	Poland	25,123	25,887	26,635	27,401	28,187
17	Turkey	21,372	22,418	23,490	24,650	25,846
18	Colombia	20,420	21,282	22,033	22,951	23,791
19	Belgium	20,558	21,104	21,861	22,518	23,193
20	Argentina	19,932	20,662	21,339	22,005	22,725
21	Saudi Arabia	18,586	19,364	20,393	21,426	22,579
22	Switzerland	18,878	19,483	20,134	20,757	21,327
23	Sweden	19,282	19,761	20,194	20,642	21,099
24	Taiwan	18,487	19,024	19,528	20,172	20,865
25	Portugal	18,600	19,080	19,573	20,075	20,581
26	South Africa	16,834	17,650	18,380	19,253	20,204
27	India	11,346	12,693	14,339	16,796	19,455
28	Austria	16,373	16,695	17,040	17,400	17,779
29	Philippines	14,750	15,233	15,753	16,301	16,891
30	Ukraine	14,031	14,634	15,261	15,937	16,582
31	Greece	14,331	14,832	15,349	15,852	16,357

순위	Country	2005	2006	2007	2008	2009
32	Denmark	14,082	14,331	14,567	14,806	15,061
33	Indonesia	11,760	12,509	13,326	14,142	15,015
34	Venezuela	12,591	13,063	13,489	14,000	14,501
35	Thailand	12,065	12,518	13,104	13,702	14,320
36	Norway	12,591	12,875	13,170	13,471	13,783
37	Chile	12,056	12,437	12,774	13,188	13,625
38	Egypt	11,986	12,326	12,732	13,075	13,467
39	Finland	11,660	11,983	12,320	12,672	13,028
40	Peru	11,207	11,604	11,971	12,402	12,864
41	Czech Republic	9,160	9,497	9,854	10,229	10,612
42	Romania	8,485	8,794	9,227	9,603	10,018
43	Ireland	8,395	8,602	8,842	9,081	9,332
44	Hong Kong	7,722	8,010	8,301	8,592	8,883
45	Nigeria	7,217	7,602	8,006	8,415	8,848
46	Hungary	6,910	7,141	7,360	7,586	7,816
47	Malaysia	6,527	6,791	7,067	7,361	7,704
48	New Zealand	6,156	6,481	6,799	7,120	7,452
49	Israel	5,557	5,787	6,097	6,372	6,655
50	Morocco	5,031	5,291	5,567	5,843	6,125
51	Bulgaria	4,529	4,756	4,975	5,196	5,401
52	Singapore	4,346	4,539	4,784	4,980	5,207
53	Croatia	4,197	4,337	4,478	4,623	4,765
54	Slovakia	4,059	4,196	4,325	4,461	4,600
55	Vietnam	3,085	3,315	3,566	3,823	4,087
56	United Arab Emirates	2,219	2,398	2,590	2,798	3,021
57	Slovenia	2,454	2,539	2,621	2,706	2,793
58	Uruguay	2,249	2,370	2,487	2,593	2,713
59	Lithuania	2,141	2,234	2,324	2,419	2,505
60	Pakistan	1,564	1,708	1,876	2,082	2,314
61	Latvia	1,581	1,661	1,740	1,823	1,909
62	Estonia	1,187	1,259	1,331	1,404	1,480
All Countries		2,229,980	2,311,164	2,398,343	2,490,581	2,583,874

부표 29 건강기능식품 국가별 매출액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04~'08 (CAGR)
USA	70,583	76,967	84,653	93,657	101,779	9.6
	35.9	36.1	36.7	37.5	37.7	
Western Europe	57,110	61,111	65,750	71,127	76,206	7.5
	29.0	28.6	28.5	28.5	28.2	
Japan	34,598	36,694	37,303	37,066	38,264	2.5
	17.6	17.2	16.2	14.8	14.2	
Canada	4,880	5,268	5,691	6,175	6,645	8.0
	2.5	2.5	2.5	2.5	2.5	
China	7,950	9,031	9,711	10,829	11,998	10.8
	4.0	4.2	4.2	4.3	4.4	
Rest Asia	8,465	9,281	10,330	11,182	12,029	9.2
	4.3	4.3	4.5	4.5	4.5	
Latin America	4,696	5,336	6,069	6,921	7,931	14.0
	2.4	2.5	2.6	2.8	2.9	
Australia/ New Zealand	3,674	4,108	4,487	5,144	5,788	12.0
	1.9	1.9	1.9	2.1	2.1	
Eastern Europe /Russia	2,799	3,423	4,210	5,135	6,229	22.1
	1.4	1.6	1.8	2.1	2.3	
Middle East	989	1,125	1,268	1,432	1,601	12.8
	0.5	0.5	0.5	0.6	0.6	
Africa	935	1,016	1,107	1,218	1,326	9.1
	0.5	0.5	0.5	0.5	0.5	
Total	196,679	213,361	230,578	249,886	269,797	8.2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산업 분석 보고서, 2009

출처 : Nutrion Business Journal, NBJ's Global Supplement & Nutrition Industry Report, USA (2010)

주 : 괄호( ) 안의 숫자는 2008년도 국가별 점유율

부표 30 유기농 식품의 연도별 수입 현황

(단위 : 달러)

연도	제조국가	수입건수	수입금액 (USD)
2005년	29개국	2,078	18,351,453
2006년	35개국	2,451	27,486,073
2007년	35개국	3,009	40,357,998
2008년	45개국	3,844	56,604,304
2009년	43개국	3,686	39,735,113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식품등검사연보, 2010

부표 31 건강기능식품 연도별 국내 생산실적

(단위 : 톤, 억원, 천달러)

연도	생산현황			출하현황			
	생산능력	생산량	생산액	국내 판매량	국내 판매액	국외 판매량	국외 판매액
2004년	228	5.47	1,815	4.25	2,264	0.51	20,224
2005년	350	12.67	5,026	13,262	6,332	1,316	41,327
2006년	518,653	12,269	4,929	10,933	6,637	667	38,889
2007년	472,691	10,934	7,215	10,239	6,888	339	37,143
2008년	467,827	12,944	5,886	12,989	7,516	697	39,263

자료 : 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각년도  
 2.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통계연보(제11호), 2009

부표 32 2009년 유기농 식품의 국가별 수입 현황

(단위 : USD)

번호	국가(금액순)	금액(USD)	2008년도	
	합계	39,735,113	56,604,304	
1	미국	10,512,038	미국	14,139,456
2	호주	3,133,177	독일	8,121,866
3	필리핀	3,105,539	터키	5,794,032
4	브라질	3,051,284	호주	4,249,317
5	콜롬비아	2,181,487	중국	2,845,488
6	터키	1,831,266	이탈리아	2,600,555
7	이탈리아	1,794,800	브라질	2,502,233
8	중국	1,772,903	필리핀	2,232,811
9	독일	1,755,982	뉴질랜드	2,149,482
10	뉴질랜드	1,748,010	스위스	2,028,918
11	멕시코	901,678	캐나다	1,730,629
12	일본	842,926	스페인	1,038,910
13	파라과이	745,460	콜롬비아	941,048
14	스위스	708,503	오스트리아	899,326
15	캐나다	680,840	멕시코	877,484
16	스페인	670,455	일본	720,647
17	아르헨티나	634,321	네덜란드	607,368
18	오스트리아	525,349	프랑스	586,770
19	네덜란드	467,446	파라과이	545,149
20	태국	392,274	키르기스스탄	502,000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식품등검사연보, 2010

## ▶ 여가산업

부표 33 국가별 가계의 오락, 문화비 지출

(단위 : %)

국가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아시아	한국	4.1	4.2	4.4	4.0	3.6	3.7	3.7	3.7
	이스라엘	4.4	4.3	4.0	4.0	4.3	4.4	4.4	4.5
	일본	6.1	6.2	6.2	6.2	6.2	6.0	6.1	-
	터키	3.8	3.4	3.5	3.4	3.8	3.7	3.5	3.2
북아메리카	캐나다	5.7	5.7	5.8	5.7	5.6	5.5	5.5	5.4
	미국	6.4	6.4	6.4	6.4	6.4	6.3	6.4	6.5
유럽	오스트리아	7.0	7.1	6.9	6.9	6.8	6.7	6.5	-
	벨기에	5.2	5.2	4.8	4.8	4.7	4.7	4.6	4.7
	체코	6.1	6.2	6.0	6.2	6.0	5.9	5.7	5.6
	덴마크	5.2	5.1	5.1	5.3	5.5	5.5	5.6	5.6
	에스토니아	4.9	4.9	5.1	4.9	4.8	4.7	4.8	-
	핀란드	5.2	5.1	5.1	5.3	5.5	5.5	5.6	5.6
	프랑스	5.1	5.1	5.2	5.2	5.2	5.2	5.2	5.1
	독일	5.6	5.6	5.4	5.3	5.3	5.2	5.2	5.1
	그리스	5.1	5.8	5.8	5.4	5.5	5.6	6.6	6.3
	헝가리	4.1	4.2	4.2	4.2	4.2	4.3	4.2	-
	아이슬란드	7.1	6.9	6.8	6.7	6.5	6.4	6.1	-
	아일랜드	3.4	3.5	3.2	3.1	3.2	3.2	3.1	3.1
	이탈리아	4.5	4.4	4.3	4.2	4.3	4.1	4.1	4.0
	룩셈부르크	3.6	3.8	3.9	3.5	3.5	3.2	2.9	2.8
	네덜란드	5.5	5.4	5.3	5.1	5.0	4.8	4.8	4.8
	노르웨이	5.2	5.3	5.5	5.6	5.5	5.1	-	-
	폴란드	5.6	4.9	4.8	5.0	5.0	4.7	4.5	-
	포르투갈	4.2	4.1	4.1	4.1	4.2	4.3	4.5	-
	슬로바키아	4.7	5.2	5.0	4.7	4.8	4.9	4.8	5.0
	슬로베니아	6.0	6.0	6.0	6.1	6.1	6.1	5.9	5.6
스페인	5.7	5.7	5.6	5.5	5.5	5.5	5.3	-	
스위스	5.1	5.1	5.1	5.1	5.0	4.9	4.6	-	
오스트레일리아	7.3	7.1	7.2	7.1	7.0	6.8	6.6	-	

자료 :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국제통계 자료

부표 34 국가별 정부의 오락, 문화비 지출

(단위 : %)

국가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아시아	한국	0.7	0.7	0.6	0.8	0.8	0.8	0.9	-
	이스라엘	1.6	1.7	1.7	1.7	1.5	1.4	1.4	1.4
	일본	0.2	0.2	0.2	0.2	0.2	0.1	0.2	-
북아메리카	캐나다	0.9	0.9	0.9	0.9	0.9	0.9	0.9	-
	미국	0.3	0.3	0.3	0.3	0.3	0.3	0.3	0.3
유럽	오스트리아	1.0	1.1	1.0	1.0	1.0	1.0	1.0	1.0
	벨기에	1.0	1.0	1.3	1.2	1.3	1.3	1.3	-
	체코	1.0	1.1	1.3	1.3	1.2	1.2	1.3	-
	덴마크	1.6	1.6	1.6	1.6	1.8	1.6	1.6	1.6
	에스토니아	1.9	2.0	2.1	2.1	2.1	2.5	2.5	-
	핀란드	1.2	1.2	1.2	1.2	1.2	1.2	1.1	-
	프랑스	1.1	1.2	1.3	1.4	1.4	1.5	1.5	1.5
	독일	0.9	0.8	0.8	0.8	0.8	0.7	0.7	0.7
	헝가리	-	1.6	1.8	1.8	1.8	1.6	1.7	-
	아이슬란드	3.2	3.0	3.3	3.6	3.7	3.3	3.6	-
	아일랜드	0.5	0.6	0.6	0.6	0.6	0.6	0.6	-
	이탈리아	0.9	0.8	0.8	0.8	0.9	0.9	0.8	-
	룩셈부르크	1.6	1.7	1.8	1.9	2.1	2.2	1.7	1.9
	네덜란드	1.4	1.4	1.5	1.5	1.5	1.4	1.4	1.3
	노르웨이	1.1	1.1	1.2	1.2	1.1	1.1	1.0	-
	폴란드	-	-	1.1	1.0	1.0	1.0	1.1	-
	포르투갈	1.1	1.1	1.1	1.1	1.1	1.1	1.0	-
	슬로바키아	-	-	-	1.0	1.2	0.9	0.9	-
	슬로베니아	1.1	1.1	1.1	1.1	1.1	1.1	1.2	-
	스페인	1.4	1.4	1.4	1.4	1.4	1.4	1.5	-
스웨덴	1.1	1.1	1.1	1.1	1.0	1.0	1.1	-	
영국	1.0	1.0	1.0	0.9	0.9	0.9	-	-	
뉴질랜드	-	-	-	1.3	1.3	1.1	-	-	

자료 :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국제통계 자료



부표 35 일반적 특성별 노후 희망활동(자원봉사)

(단위 : %, 명)

특성		자원봉사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런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65세이상	15.5	42.9	28.8	11.1	1.6	10,702
	60세이상	13.4	40.1	30.5	13.9	2.1	15,037
성별	남성	11.3	39.0	31.8	15.9	2.0	6,401
	여성	15.0	40.9	29.6	12.4	2.2	8,636
연령	60-64세	8.2	33.1	34.7	20.6	3.4	4,335
	65-69세	11.1	40.2	31.8	14.9	2.0	4,073
	70-74세	14.7	44.9	27.2	11.1	2.1	3,058
	75-79세	18.5	44.1	28.2	8.5	0.7	1,887
	80-84세	21.4	47.3	24.0	6.3	1.0	1,025
	85세이상	29.1	39.9	27.6	3.1	0.3	660
가구 형태	노인독거	19.9	43.8	25.0	9.9	1.5	2,509
	노인부부	10.9	39.3	32.4	14.9	2.5	7,119
	자녀동거	13.2	39.2	31.2	14.5	1.9	4,494
	기타	16.2	40.1	28.0	13.8	1.9	915

자료 : 보건복지부, 2008 노인실태조사-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기초분석보고서

주 : 전체 조사대상자 15,146명 중 무응답자 109명을 분석에서 제외함

부표 36 일반적 특성별 노후 희망활동(종교활동)

(단위 : %, 명)

특성		종교활동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런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65세이상	12.3	32.8	27.0	20.9	7.1	10,702
	60세이상	11.3	31.5	27.9	22.1	7.2	15,027
성별	남성	14.4	36.8	27.6	16.0	5.2	6,401
	여성	9.0	27.5	28.1	26.7	8.7	8,625
연령	60-64세	8.9	28.3	30.2	25.0	7.6	4,325
	65-69세	10.6	33.8	28.8	19.5	7.2	4,073
	70-74세	11.6	33.1	27.1	21.6	6.6	3,055
	75-79세	14.2	30.7	25.3	22.0	7.8	1,888
	80-84세	13.8	33.5	24.0	22.2	6.5	1,025
	85세이상	18.0	29.4	23.9	21.7	7.1	661
가구 형태	노인독거	12.8	30.1	25.8	23.2	8.1	2,510
	노인부부	10.8	33.4	29.1	19.8	6.9	7,118
	자녀동거	11.1	29.5	27.6	24.6	7.3	4,482
	기타	12.2	30.5	25.5	24.7	7.0	917

자료 : 보건복지부, 2008 노인실태조사-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기초분석보고서

주 : 전체 조사대상자 15,146명 중 무응답자 119명을 분석에서 제외함

부표 37 일반적 특성별 노후 희망활동(자아개발)

(단위 : %, 명)

특성		자아개발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런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65세이상	13.1	38.1	28.8	17.5	2.5	10,704
	60세이상	10.9	35.1	29.5	21.6	3.0	15,043
성별	남성	7.5	31.7	31.3	25.7	3.9	6,403
	여성	13.4	37.6	28.1	18.5	2.3	8,639
연령	60-64세	5.4	27.7	31.2	31.7	4.0	4,339
	65-69세	8.5	32.5	31.6	23.3	4.1	4,071
	70-74세	10.7	38.4	30.6	18.1	2.3	3,059
	75-79세	16.4	42.7	26.7	13.1	1.2	1,888
	80-84세	20.8	47.6	22.7	7.8	1.2	1,025
	85세이상	31.5	42.7	18.6	6.7	0.5	661
가구 형태	노인독거	17.2	40.9	26.1	13.9	1.9	2,511
	노인부부	8.1	32.7	31.4	24.5	3.2	7,123
	자녀동거	11.2	35.5	28.6	21.4	3.3	4,493
	기타	13.8	35.5	28.1	20.2	2.4	917

자료 : 보건복지부, 2008 노인실태조사-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기초분석보고서

주 : 전체 조사대상자 15,146명 중 무응답자 103명을 분석에서 제외함

부표 38 일반적 특성별 노후 희망활동(여가 및 취미활동)

(단위 : %, 명)

특성		여가 및 취미활동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런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65세이상	9.9	28.1	31.0	27.1	3.9	10,700
	60세이상	8.5	27.7	30.6	28.8	4.3	15,033
성별	남성	6.7	27.8	31.4	29.5	4.6	6,398
	여성	9.9	27.6	30.0	28.4	4.1	8,635
연령	60-64세	5.1	26.8	29.7	33.2	5.2	4,333
	65-69세	6.9	26.1	30.3	31.8	4.8	4,071
	70-74세	7.8	28.2	31.6	28.0	4.3	3,059
	75-79세	12.0	28.4	31.2	25.3	3.2	1,886
	80-84세	16.0	30.8	33.0	17.6	2.5	1,024
	85세이상	22.0	34.4	28.5	13.6	1.5	658
가구 형태	노인독거	12.8	30.7	29.3	24.5	2.8	2,511
	노인부부	5.7	26.1	31.8	31.7	4.7	7,121
	자녀동거	10.3	28.0	30.5	26.7	4.4	4,486
	기타	10.1	30.6	25.7	29.2	4.4	915

자료 : 보건복지부, 2008 노인실태조사-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기초분석보고서

주 : 전체 조사대상자 15,146명 중 무응답자 113명을 분석에서 제외함

부표 39 일반적 특성별 노후 희망활동(근로활동)

(단위 : %, 명)

특성		근로활동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런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65세이상	12.5	29.2	27.4	25.4	5.5	10,701
	60세이상	10.1	26.3	26.7	29.3	7.7	15,037
성별	남성	6.5	19.6	25.0	36.8	12.1	6,402
	여성	12.8	31.2	27.9	23.7	4.4	8,635
연령	60-64세	4.2	19.1	24.8	39.0	12.9	4,336
	65-69세	7.1	22.0	27.8	33.9	9.3	4,073
	70-74세	10.5	29.2	28.4	27.3	4.6	3,058
	75-79세	15.4	35.7	28.1	17.8	3.0	1,886
	80-84세	21.5	40.8	25.2	11.3	1.1	1,022
	85세이상	32.8	37.4	21.6	7.4	0.8	661
가구 형태	노인독거	14.5	30.1	26.3	24.7	4.5	2,510
	노인부부	7.1	24.4	29.0	31.9	7.5	7,123
	자녀동거	11.8	27.1	23.8	28.3	9.0	4,490
	기타	13.0	26.8	23.4	26.2	10.6	915

자료 : 보건복지부, 2008 노인실태조사-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기초분석보고서

주 : 전체 조사대상자 15,146명 중 무응답자 109명을 분석에서 제외함

부표 40 일반적 특성별 여가생활 불만족 이유

(단위 : %)

특성		시간이 부족	경제적 부담	여가정보및 프로그램부족	여가시설 부족	함께즐길 사람부족	자기설계 부족	기타
전체		45.9	45.6	0.8	1.7	2.1	1.1	2.8
성별	남성	49.1	43.4	0.9	1.5	2.4	0.7	2.0
	여성	42.7	47.9	0.8	1.9	1.8	1.5	3.5
가구 원수	1인	21.3	53.9	0.0	1.7	9.4	2.1	11.6
	2인	39.1	51.6	1.4	1.3	1.5	1.8	3.3
	3인 이상	51.4	42.6	0.8	1.8	1.4	0.7	1.4
연령	10대	75.0	20.1	0.6	3.8	0.0	0.0	0.5
	20대	57.8	37.3	0.0	0.5	1.3	0.6	2.5
	30대	50.1	39.8	1.4	2.5	1.8	3.0	1.3
	40대	45.8	48.5	0.7	1.3	2.2	1.0	0.5
	50대	32.3	60.3	0.5	1.6	3.1	0.1	2.0
	60대	28.7	58.2	2.7	0.8	1.5	2.0	6.0
	70대 이상	15.9	58.1	0.0	2.0	6.9	0.0	17.1
혼인 상태	미혼	60.3	33.7	0.2	1.8	1.9	2.0	0.2
	배우자있음	45.1	47.5	1.3	1.6	1.1	0.9	2.6
	사별/이혼	17.6	63.1	0.0	1.8	8.0	0.0	9.5

자료 : 문화관광체육부, 2010년 국민여가활동조사

부표 41 문화(콘텐츠)산업 수출입 현황

(단위 : 천달러)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수출액	출판	191,346	184,867	213,100	260,010	250,764
	만화	3,268	3,917	3,986	4,135	4,209
	음악	22,278	16,666	13,885	16,468	31,269
	게임	564,660	671,994	781,004	1,093,865	1,240,856
	영화	75,995	24,515	24,396	21,037	14,122
	애니메이션	78,429	66,834	72,770	80,583	89,651
	방송	121,763	133,917	150,953	171,348	184,577
	광고	9,359	75,981	93,859	14,212	93,152
	캐릭터	163,666	189,451	202,889	228,250	236,521
	지식정보	34,764	5,016	275,111	339,949	345,693
	콘텐츠솔루션	35,608	-	112,678	107,746	113,418
합계		1,301,136	1,373,158	1,944,631	2,337,603	2,604,232
수입액	출판	231,741	307,184	354,404	368,536	348,336
	만화	900	3,965	5,901	5,937	5,492
	음악	8,306	8,347	9,831	11,484	11,936
	게임	232,923	207,556	389,549	386,920	332,250
	영화	46,830	45,813	67,527	78,775	73,646
	애니메이션	5,458	5,095	8,148	6,132	7,397
	방송	43,177	72,563	64,939	149,396	183,011
	광고	2,292,762	2,415,540	2,225,807	780,696	610,277
	캐릭터	123,434	211,909	225,257	198,679	196,367
	지식정보	360	316	398	415	432
	콘텐츠솔루션	-	-	-	-	387
합계		2,985,891	3,278,288	3,351,761	1,986,970	1,769,531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동향분석보고서

주 : 1. 2009년 기준 콘텐츠산업통계 수출액 비교를 위해 분기별 동향조사 수출액 단위를 천달러로 수정함(10년 평균환율 1,156원)

2. 향후 2009년 기준 2010년 문화산업통계는 그 명칭과 내용이 콘텐츠산업통계(디지털콘텐츠 분야 포함)로 변경

3. 방송에 독립제작사 포함됨

부표 42 일반적 특성별 단체활동 유형별 횟수별 참여율

(단위 : %)

2008년		전체	60-64세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세 이상
친목 단체	1년 1-2번	6.1	6.4	6.3	6.7	5.4	4.0	4.8
	3개월 1-2번	7.3	9.3	8.8	6.8	6.7	4.5	2.4
	1개월 1-2번	45.3	62.8	55.2	44.0	36.0	23.7	24.5
	1주 1-2번	18.0	15.5	15.4	19.2	19.8	23.6	19.4
	1주 4회 이상	23.3	5.9	14.2	23.3	32.1	44.2	48.9
종교 단체	1년 1-2번	22.0	17.1	23.3	23.3	19.7	20.3	16.5
	3개월 1-2번	10.9	12.1	12.7	10.6	10.5	8.8	4.4
	1개월 1-2번	11.5	18.7	12.9	12.4	10.0	7.7	7.0
	1주 1-2번	44.0	41.7	40.0	42.9	47.2	49.2	61.2
	1주 4회 이상	11.5	10.3	11.1	10.8	12.6	14.0	10.9
스포츠 레저 단체	1년 1-2번	3.8	5.2	2.7	6.2	3.8	0.0	0.0
	3개월 1-2번	6.0	11.7	9.2	1.8	0.0	0.0	0.0
	1개월 1-2번	43.3	52.5	47.0	37.2	45.8	20.2	0.0
	1주 1-2번	29.3	17.7	26.1	33.9	28.1	35.5	100.0
	1주 4회 이상	17.6	12.9	15.1	20.9	22.3	44.3	0.0
학습 단체	1년 1-2번	7.9	6.2	8.2	6.5	6.9	12.3	12.2
	3개월 1-2번	3.9	3.5	3.3	4.6	2.9	6.6	0.0
	1개월 1-2번	20.4	25.3	18.9	21.0	18.6	28.2	15.0
	1주 1-2번	53.6	58.4	54.8	52.8	61.7	36.1	51.7
	1주 4회 이상	14.3	6.6	14.8	15.2	9.9	16.8	21.2

자료 : 보건복지부, 2008 노인실태조사-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기초분석보고서

- 주 : 1. 친목단체에 참여한다고 응답한 9,032명 중 무응답자 36명을 분석에서 제외함  
 2. 종교단체에 참여한다고 응답한 6,909명 중 무응답자 23명을 분석에서 제외함  
 3. 스포츠레저단체 참여정도 조사대상자 611명 중 무응답자 7명을 분석에서 제외함  
 4. 학습단체 참여정도 조사대상자 788명 중 무응답자 7명을 분석에서 제외함

부표 43 일반적 특성별 단체활동 유형별 참여율

(단위 : %)

2008년		전체	60-64세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세 이상
중복응답		74.5	85.8	78.6	77.4	72.9	66.3	53.6
참여한 단체활동	친목단체	54.9	71.5	61.9	57.7	51.1	40.8	32.2
	종교단체	44.3	49.0	44.4	46.6	44.6	42.6	34.7
	문화활동 단체	0.7	2.3	0.7	1.1	0.4	0.5	0.5
	스포츠투레저단체	2.9	6.9	4.5	3.0	1.4	0.3	0.4
	시민및사회단체	1.6	1.3	1.3	2.2	2.1	0.8	0.4
	이익및정치단체	0.4	1.1	0.4	0.4	0.3	0.3	0.0
	봉사단체	2.6	5.6	3.3	3.0	1.7	1.1	0.2
	학습단체	6.0	3.2	4.9	7.2	7.4	6.3	2.6

자료 : 보건복지부, 2008 노인실태조사-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기초분석보고서

주 : 1. 전체 조사대상자 15,146명을 대상으로 함(중복응답)

2. 한 가지 이상 단체활동에 참여한다고 응답한 대상자의 비율을 의미함

부표 44 희망하는 가족여가활동 : 부모-자녀와 함께(2010년)

(단위 : %)

구분별	문화예술 관람	문화예술 참여	스포츠 관람	스포츠 활동	여행	취미오락 활동	휴식 활동	사회 활동	기타	없음	
전체	전체	12.7	5.8	6.7	6.4	29.4	12.5	14.7	3.3	0.4	8.0
연령	10대	19.4	6.1	4.6	5.2	41.4	7.2	12.1	1.4	0.0	2.6
	20대	11.4	4.7	9.6	6.4	22.9	11.8	20.6	1.3	0.3	11.0
	30대	14.5	8.9	7.2	9.8	32.3	9.9	12.8	1.5	0.2	3.1
	40대	16.1	5.2	6.1	7.3	29.2	17.0	10.6	4.0	0.6	3.9
	50대	9.5	4.6	8.5	5.5	27.4	11.2	14.3	6.7	0.2	12.1
	60대	8.2	4.2	3.8	2.6	31.0	15.9	16.7	4.8	0.7	12.1
	70대 이상	5.9	5.6	2.7	2.7	23.2	12.6	22.3	3.7	1.1	20.2

자료 :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부표 45 희망하는 가족여가활동 : 배우자와 함께(2010년)

(단위 : %)

구분별		문화예술 관람	문화예술 참여	스포츠 관람	스포츠 활동	여행	취미오락 활동	휴식 활동	사회 활동	기타	없음
전체	전체	17.6	6.7	5.7	7.5	28.5	11.6	12.0	4.1	0.3	6.0
연령	10대	29.8	3.9	7.7	3.7	15.9	4.8	12.2	8.1	0.1	13.8
	20대	21.3	9.8	4.0	14.3	25.7	5.6	10.3	4.1	1.1	3.8
	30대	23.5	8.2	6.3	11.8	28.9	7.9	11.4	0.9	0.1	1.0
	40대	18.9	6.3	7.5	6.4	30.5	13.6	7.6	5.1	0.0	4.0
	50대	13.8	4.3	5.2	4.7	33.8	14.9	10.0	4.0	0.2	9.2
	60대	8.5	8.0	2.8	3.6	25.5	16.7	18.4	7.3	0.5	8.8
	70대 이상	4.6	4.6	4.3	1.9	21.6	12.1	29.3	3.7	1.1	16.9

자료 :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부표 46 연령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전국, 2인 이상)

(단위 : 원)

가계수지항목별	2009년		2010년	
	전체 평균	60세이상 가구	전체 평균	60세이상 가구
가계지출 (원)	2,775,560	1,780,050	2,960,892	1,922,064
소비지출 (원)	2,149,184	1,391,141	2,286,874	1,495,177
09.오락·문화 (원)	112,251	60,875	126,568	74,495
영상음향기기 (원)	9,198	4,842	9,172	5,140
사진광학장비 (원)	2,180	635	2,116	427
정보처리장치 (원)	9,331	2,334	9,793	2,648
기록매체 (원)	265	86	312	106
영상음향및정보기기수리 (원)	1,073	383	1,233	542
오락문화내구재 (원)	228	81	202	63
악기기구 (원)	983	533	1,166	352
오락문화내구재유지및수리 (원)	118	51	115	6
장난감및취미용품 (원)	4,374	1,524	4,787	1,766
캠핑및운동관련용품 (원)	4,299	1,645	5,085	2,229
화훼관련용품 (원)	2,571	2,764	2,735	3,364
애완동물관련용품 (원)	1,467	847	1,682	1,041
화훼및애완동물서비스 (원)	873	772	1,135	832
운동및오락서비스 (원)	13,113	8,039	14,524	9,359
문화서비스 (원)	22,552	15,368	24,333	17,755
복권 (원)	305	177	280	210
서적 (원)	21,211	3,126	21,902	4,103
기타인쇄물 (원)	2,865	3,022	2,708	2,842
문구 (원)	3,358	898	3,761	856
단체여행비 (원)	11,884	13,749	19,529	20,854

자료 :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가계동향조사

▶ 금융산업

부표 47 생활비(용돈) 마련하는 방법(2009년)

(단위 : %)

	계	60-64세	65-69세	70-79세	80세이상	만족	보통	불만족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본인 및 배우자 부담	60.0	80.0	67.9	48.0	23.8	77.9	66.6	48.8
근로소득, 사업소득	56.2	66.5	58.0	44.2	27.8	55.8	52.4	61.0
재산소득	13.3	9.1	14.0	17.6	18.0	16.2	14.7	10.1
연금, 퇴직금	24.5	20.0	22.0	30.1	46.2	25.3	25.8	22.4
예금(적금)	6.1	4.4	6.0	8.1	7.9	2.6	7.1	6.5
자녀 또는 친척 지원	31.4	15.9	25.5	40.4	59.5	19.1	28.5	37.6
함께 살고 있음	44.9	56.1	42.2	42.4	45.4	47.9	52.6	39.2
함께 살고 있지 않음	55.1	43.9	57.8	57.6	54.6	52.1	47.4	60.8
정부 및 사회단체	8.6	3.9	6.6	11.5	16.7	3.0	4.9	13.5
기타	0.1	0.1	0.0	0.1	-	-	0.0	0.1

자료 :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보건/사회/복지, 사회조사 자료

주 : 60세 이상 가구주 대상

부표 48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 여부(2010년)

(단위 : %)

구분		2010년		
		사례수	그렇다	아니다
전체	전체	4,754	42.3	57.7
성별	남자	2,368	45.4	54.6
	여자	2,386	39.1	60.9
연령	15~20세 미만	382	1.1	98.9
	20~30세 미만	787	23.8	76.2
	30~40세 미만	949	54.5	45.5
	40~50세 미만	996	64.5	35.5
	50~60세 미만	774	49.3	50.7
	60~70세 미만	469	42.2	57.8
	70세 이상	398	19.7	80.3

자료 :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부표 49 노후생활에 중요한 것(1순위)(2010년)

(단위 : 명, %)

	사례수	경제력	취미와 여가	건강	가족 관계	친구 관계	주택과 주거 환경	노인을위한 국가적 서비스	일자리
전체	4,754	53.7	7.0	32.8	3.4	0.5	1.3	0.8	0.4
15~20세 미만	382	62.1	7.3	22.5	3.0	0.9	2.6	1.3	0.3
20~30세 미만	787	52.3	5.3	33.6	5.2	0.4	2.0	0.8	0.3
30~40세 미만	949	53.1	7.6	33.5	3.3	0.4	1.6	0.1	0.3
40~50세 미만	996	59.4	7.2	26.5	3.2	0.5	1.7	0.7	1.0
50~60세 미만	774	55.3	9.8	31.3	2.1	0.6	0.1	0.6	0.2
60~70세 미만	469	47.4	4.8	41.2	3.1	0.9	0.6	1.3	0.6
70세 이상	398	39.9	5.3	47.9	4.3	0.2	0.6	1.8	0.0

자료 :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부표 50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단위 : 명, %)

	총수급자(일반수급자)			65세 이상 수급자		
	소계	남 자	여 자	수급자수	구성비	수급률
2007년	1,463,140	622,400	840,740	386,157	26.39	8.03
2008년	1,444,010	617,015	826,995	382,050	26.46	7.62
2009년	1,482,719	638,061	844,658	387,847	26.16	7.47

자료 : 1. 보건복지부 통계포털, 2010년 고령자 통계

2.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각년도

주 : 1. 구성비는 65세이상 수급자/총수급자×100

2. 수급률은 65세이상 총(남녀별, 시도별) 수급자/65세이상 전국(남녀별, 시도별) 추계인구×100

부표 51 연령별 가입종별 가입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전체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
	계	비중				
계	19,534,950	100.0	10,765,069	8,585,883	128,683	55,315
30세미만	3,578,264	18.3	2,305,813	1,269,118	3,333	-
30~39세	5,592,182	28.6	3,523,331	2,054,194	14,657	-
40~49세	5,675,277	29.1	3,073,446	2,559,566	42,265	-
50~59세	4,633,446	23.7	1,862,479	2,702,539	68,428	-
60세이상	55,781	0.3	-	466	-	55,315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포털, 통계로 보는 국민연금

주 : 2011년 6월 말 기준 자료임

부표 52 연도별 수급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06년말	'07년말	'08년말	'09년말	'10년말	11년6월말누계
계	1,858,769	2,110,519	2,366,626	2,602,630	2,820,649	3,187,253
노령연금	1,517,649	1,731,560	1,949,867	2,149,168	2,330,128	2,595,998
장애연금	61,762	67,091	72,166	74,535	76,280	119,907
유족연금	279,358	311,868	344,593	378,927	414,241	471,348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포털, 통계로 보는 국민연금  
 주 : 2011년 6월 말 기준 자료임

부표 53 65세 이상 공적연금 수급자

(단위 : 명, %)

	합 계	노령(퇴직)연금	장애(장해,상이)연금	유족연금	연금수급률
2005년	703,508	635,190	3,911	64,407	16.1
국 민 연 금	600,421	541,990	3,532	54,899	13.8
공무원 연금	92,782	83,674	372	8,736	2.1
사 학 연 금	10,305	9,526	7	772	0.2
2006년	869,741	783,820	5,031	80,890	19.0
국 민 연 금	751,897	677,850	4,590	69,457	16.4
공무원 연금	104,188	93,372	431	10,385	2.3
사 학 연 금	13,656	12,598	10	1,048	0.3
2007년	1,078,954	968,574	6,301	104,079	22.4
국 민 연 금	944,651	848,349	5,781	90,521	19.6
공무원 연금	118,503	105,667	507	12,329	2.5
사 학 연 금	15,800	14,558	13	1,229	0.3
2008년	1,252,152	1,118,227	7,369	126,556	25.0
국 민 연 금	1,103,007	986,564	6,781	109,662	22.0
공무원 연금	131,482	115,448	574	15,460	2.6
사 학 연 금	17,663	16,215	14	1,434	0.4
2009년	1,432,387	1,273,403	8,518	150,466	27.6
국 민 연 금	1,268,935	1,129,942	7,834	131,159	24.4
공무원 연금	143,882	125,544	670	17,668	2.8
사 학 연 금	19,570	17,917	14	1,639	0.4

자료 : 1.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2009년 고령자 통계  
 2.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통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학연금통계연보」, 각년도

주 : 1. 노령(퇴직)연금은 연금수급자 중 일시 수급정지자를 제외한 실수령자 기준임  
 2. 연금수급률은 각 연금수급자의 합계를 65세이상 추계인구로 나눈 비율임

부표 54 사회적 보호서비스에 대한 욕구(주된 응답)

(단위 : %)

2009년	계	동부	읍면부	60~64세	65~69세	70~79세	80세이상
받고 싶음	81.7	83.8	76.6	81.5	79.7	82.5	84.4
- 간병서비스	23.5	22.1	26.9	17.1	20.1	27.2	36.9
- 목욕서비스	1.5	1.3	2.2	0.8	1.2	2.1	2.7
- 가사서비스	13.0	11.7	16.2	10.0	12.6	14.6	16.4
- 식사제공	3.6	3.5	3.8	2.5	3.1	3.9	6.7
- 이야기 상대	2.5	2.6	2.2	1.8	1.9	2.9	5.0
- 취업알선	10.9	13.1	5.2	17.6	13.2	6.4	1.9
- 건강검진	35.6	35.6	35.6	36.2	38.6	35.5	26.7
- 취미여가활동 프로그램	7.5	8.3	5.4	11.0	7.1	6.1	3.1
- 정보화 등 각종 교육	1.6	1.4	2.0	2.8	1.9	0.7	0.1
- 기타	0.4	0.3	0.5	0.1	0.3	0.6	0.4

자료 :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보건/사회/복지, 사회조사 자료  
60세 이상 인구 대상임

부표 55 국가별 보험료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국가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생명보험	손해보험	생명보험	손해보험	생명보험	손해보험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국	60,026	27,902	69,819	35,349	79,382	40,387	67,581	38,316
일본	257,345	86,040	238,635	83,134	270,356	81,052	340,530	87,519
터키	774	4,494	968	4,941	1,024	7,385	1,214	7,856
캐나다	40,695	57,951	43,857	65,678	62,573	73,496	52,591	75,116
멕시코	5,236	7,685	6,791	8,444	7,711	9,991	8,384	10,431
미국	607,056	805,025	527,483	863,895	778,804	813,994	810,715	809,351
오스트리아	8,160	11,814	8,873	12,392	9,697	14,064	10,576	15,705
벨기에	31,596	10,225	26,044	11,093	30,382	12,655	28,491	14,234
체코	1,877	3,011	2,091	3,316	2,668	3,882	3,332	4,857
덴마크	13,693	7,420	15,668	8,016	18,641	9,822	21,948	10,551
핀란드	3,869	3,954	3,687	4,119	3,807	4,482	4,105	4,964
프랑스	157,138	78,380	180,293	112,255	187,155	125,817	178,805	98,979
독일	112,905	184,750	110,769	153,545	117,244	163,163	126,795	174,688
그리스	2,389	2,485	2,879	3,123	3,461	3,685	3,657	4,107
헝가리	1,517	1,935	1,961	1,928	2,783	2,287	2,695	2,440
아이슬란드	44	-	41	426	47	537	35	439
아일랜드	29,653	9,174	36,729	9,104	52,860	10,374	69,105	17,702
이탈리아	97,431	49,632	96,418	51,030	91,109	56,132	84,768	58,542
룩셈부르크	11,554	1,161	13,420	1,272	13,706	1,627	14,247	1,610
네덜란드	31,030	29,638	32,197	25,144	36,590	28,688	38,994	32,466
노르웨이	9,463	7,695	8,535	7,701	12,077	7,719	14,186	9,966
폴란드	4,738	4,841	6,802	5,292	9,222	6,590	16,176	8,457
포르투갈	11,333	5,467	10,785	5,414	12,610	6,113	15,958	6,512
슬로바키아	706	-	855	953	1,154	1,170	1,565	1,426
스페인	26,563	37,466	31,907	40,359	31,967	46,451	40,189	51,069
스웨덴	18,157	13,245	17,158	13,728	15,451	15,604	14,665	16,741
스위스	24,187	18,968	22,400	19,519	23,927	21,577	29,174	27,844
영국	230,788	127,676	256,635	122,338	423,783	133,419	282,776	116,853
오스트레일리아	28,113	21,497	29,571	21,723	41,482	25,479	38,847	26,527
뉴질랜드	-	3,109	-	2,904	-	3,314	-	3,143

자료 :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국제통계, 국제기구 회원국별 통계, APEC 재정통화금융, 보험료

부표 56 월평균 부모 부양비 지출(2010년)

(단위 : 명, %)

		없음	10만원 미만	10-20만원 미만	20-30만원 미만	30-40만원 미만	40-50만원 미만	50-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전체	전체	6.5	15.4	28.7	16.9	11.6	3.9	15.8	1.3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5.1	49.7	26.7	7.7	9.1	0.0	1.8	0.0
	100-200만원 미만	6.1	26.8	48.8	12.5	3.9	0.0	2.0	0.0
	200-300만원 미만	8.2	22.2	35.1	21.4	4.7	1.9	4.6	1.9
	300-400만원 미만	9.2	16.8	28.4	20.0	17.6	0.2	7.8	0.0
	400만원 이상	3.2	4.4	18.9	12.7	13.7	9.6	34.9	2.5
	모름/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0.0	0.0
가족 형태	부부	7.4	12.5	34.2	20.4	8.2	2.2	13.8	1.4
	양친+자녀	7.2	15.1	25.8	16.3	10.6	4.8	18.7	1.5
	한부모+자녀	4.6	30.0	33.0	18.0	6.8	0.0	7.7	0.0
	3세대 이상	4.6	12.3	39.3	20.7	13.0	2.1	5.6	2.4
	1인 가구	1.4	16.5	26.3	16.7	25.4	2.7	10.9	0.0
	기타	6.4	5.5	46.7	9.7	25.3	0.0	6.3	0.0
거주 지역 규모	대도시	7.8	4.9	17.9	13.8	18.5	6.5	28.1	2.4
	중/소도시	4.4	22.7	39.2	21.3	5.1	1.6	4.9	0.7
	농어촌	5.7	28.3	39.9	18.9	4.2	0.8	2.2	0.0
맞벌이 여부	맞벌이	9.6	16.8	38.9	17.5	6.7	2.9	6.1	1.3
	홀벌이	5.4	13.3	23.7	16.6	13.2	4.9	21.3	1.6
세대 구성	1인 가구	1.4	16.5	26.3	16.7	25.4	2.7	10.9	0.0
	1세대	7.3	11.3	34.4	18.7	10.7	2.0	14.2	1.3
	2세대	6.9	16.0	27.1	16.3	10.7	4.3	17.3	1.3
	3세대	4.6	12.3	39.3	20.7	13.0	2.1	5.6	2.4

자료 : 1.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보건/사회/복지, 사회, 가족실태조사  
 2.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 주거산업

부표 57 일반적 특성별 지난 1년 동안의 낙상률 및 낙상 횟수

(단위 : %, 회)

특성		전체	60-64세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세 이상
낙상경험있음		17.2	9.3	14.6	16.5	19.0	23.9	20.5
낙상 횟수	1회	58.2	61.3	65.1	58.5	55.7	53.3	43.2
	2회	18.0	22.4	16.1	18.9	16.1	18.0	27.9
	3회 이상	23.7	16.4	18.8	22.6	28.1	28.8	28.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836	400	592	500	358	246	140
	평균	2.1	1.8	2.0	2.1	2.2	2.4	2.3
	표준편차	2.0	1.5	1.9	2.1	2.0	2.3	2.0

자료 : 보건복지부, 2008 노인실태조사-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기초분석보고서

주 : 1. 전체 조사대상자 15,146명을 대상으로 함

2. 낙상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2,260명 중 무응답자 24명을 분석에서 제외함

부표 58 연령별 지난 1년 동안의 낙상 장소(중복응답)

(단위 : %)

특성		60-64세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세 이상
화장실, 욕실		9.1	11.8	10.4	10.3	13.7	10.4
방		7.3	7.6	8.2	11.6	18.9	20.3
부엌		2.0	3.1	4.4	5.8	4.8	1.6
거실, 마루		5.1	9.4	9.8	13.1	9.8	14.4
계단		14.7	15.6	13.0	14.3	16.1	12.0
기타		12.5	9.0	8.1	7.8	6.1	4.4
집밖	집밖 전체	62.6	59.1	64.9	61.3	62.4	60.0
	길(도로)	71.1	61.7	65.2	69.7	77.4	51.0
	야외(논밭)	22.8	24.4	18.0	14.5	5.7	18.3
	마당	6.2	13.9	16.8	15.7	16.9	30.8

자료 : 보건복지부, 2008 노인실태조사-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기초분석보고서

주 : 1. 낙상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2,260명을 대상으로 함

2. 집밖(실외)에서 낙상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1,393명 중 구체적 장소를 표기하지 않은 676명을 제외함

부표 59 연령별 낙상 이유(중복응답)

(단위 : %)

2008년	60-64세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세 이상
바닥이 미끄러워서	39.5	28.9	32.3	28.6	26.7	26.3
사람이나 사물에 부딪혀서	8.7	6.9	8.0	12.1	11.6	10.1
보도나 문의 턱에 걸려서	10.5	11.0	12.5	13.1	15.1	17.1
경사가 급해서	3.2	6.2	7.0	4.8	7.5	2.2
조명이 어두워서	2.3	2.7	0.2	0.9	2.6	3.5
다리를 접질려서	34.9	37.4	36.3	37.1	41.6	38.7
갑자기 어지러워서	13.8	21.4	22.9	25.1	32.1	36.6
기타	1.0	0.5	0.4	1.2	0.0	0.0

자료 : 보건복지부, 2008 노인실태조사-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기초분석보고서

주 : 1. 낙상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2,260명을 대상으로 함

2. 집밖(실외)에서 낙상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1,393명 중 구체적 장소를 표기하지 않은 676명을 제외함

부표 60 65세 이상 가구주 대상 동, 별거형태 변화추이

(단위 : 명)

	2000년	2005년	2010년	2020년	2030년
계	1,733,525	2,432,247	2,982,240	4,231,578	6,410,665
부부	572,911	821,596	1,015,618	1,447,568	2,229,984
부부+형제자매(친인척)	3,243	4,297	5,039	6,921	10,326
가구주+형제자매	404	544	632	882	1,290
가구주기타친인척	3,644	4,604	5,507	7,606	11,082
1세대기타	6,286	8,743	10,606	14,813	22,332
부부+자녀	183,868	248,553	275,837	380,489	553,910
부+자녀	15,771	24,713	28,114	39,389	58,234
모+자녀	63,241	94,505	110,842	154,951	236,643
부부+양친	7,367	8,438	9,879	12,924	17,444
부부+한부모	20,548	29,610	34,597	50,817	76,467
부부+자녀+형제자매	182	205	223	308	434
조부모+손자녀	29,033	39,568	48,043	65,677	99,214
2세대기타	99,281	134,792	165,151	229,145	337,540
부부+자녀+양친	58,188	55,553	58,764	61,742	71,918
부부+자녀+한부모	34,965	50,416	51,928	64,458	86,375
3세대기타	78,137	113,826	125,724	166,058	241,733
4세대이상	4,368	4,416	4,644	5,455	6,838
1인가구	543,522	776,996	1,021,008	1,512,082	2,338,354
비친족가구	8,566	10,872	10,084	10,293	10,547

자료 :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장래가구추계

부표 61 연령별 선호하는 노후부양방법(2010년)

(단위 : %)

특성별	계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65세 이상
스스로 해결	12.7	11.8	10.8	11.2	10.5	12.9	18.5	18.4
가족	36.0	42.0	37.3	32.4	34.6	37.0	37.1	38.3
- 장남 또는 만며느리	13.8	7.8	8.4	10.0	10.8	15.9	26.2	28.2
- 아들 또는 며느리	7.7	7.0	7.5	7.9	7.4	7.6	8.3	8.6
- 딸 또는 사위	1.8	3.6	2.8	1.5	1.5	1.4	1.1	1.0
- 모든 자녀(아들과 딸)	62.4	69.2	67.9	65.9	64.5	60.9	50.4	47.8
- 자식 중 능력있는 자	14.3	12.4	13.4	14.7	15.7	14.3	13.9	14.3
가족과 정부·사회	47.4	43.2	49.5	52.8	51.2	45.8	38.8	37.8
정부·사회	3.9	2.9	2.4	3.7	3.7	4.3	5.5	5.5
기타	0.0	0.1	0.0	-	0.0	0.0	0.1	0.1

자료 :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보건/사회/복지, 사회조사 자료

부표 62 노인주거복지시설 현황

(단위 : 개소, 명)

시도	65세 이상 노인인구	계		양로시설		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시설수	정원	시설수	정원	시설수	정원	시설수	정원
합계	5,506,352	397	17,270	300	11,906	75	618	22	4,746
서울	1,002,770	31	2,452	21	908	0	0	10	1,544
부산	401,784	7	600	5	317	0	0	2	283
대구	252,084	5	345	5	345	0	0	0	0
인천	237,805	23	887	22	671	0	0	1	216
광주	130,457	3	184	3	184	0	0	0	0
대전	130,245	8	126	6	108	2	18	0	0
울산	76,800	2	49	1	40	1	9	0	0
경기	1,022,456	141	6,946	111	4,324	24	199	6	2,423
강원	226,505	31	797	16	656	14	111	1	30
충북	204,470	33	589	21	487	12	102	0	0
충남	308,556	29	662	18	575	11	87	0	0
전북	284,373	16	757	13	589	2	18	1	150
전남	350,900	27	849	24	825	3	24	0	0
경북	418,858	25	854	20	722	4	32	1	100
경남	388,648	14	1,083	12	1,065	2	18	0	0
제주	69,641	2	90	2	90	0	0	0	0

자료 : 보건복지부 통계포털, 분야별통계, 2011 노인복지시설현황

주 : 1.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10년 12월 31일 주민등록 인구 기준임

2. 2010년 12월 31일 현재 자료임



부표 63 우리나라 주택보급률(2005년, 2010년)

(단위 : 천 가구, 천 호, %)

구분	2005년				2010년			
	일반가구	주택 수 1)	주택 수 2)	주택보급률	일반가구	주택 수 1)	주택 수 2)	주택보급률
전 국	15,887	13,223	15,623	98.3	17,339	14,677	17,672	101.9
수도권	7,462	5,782	7,165	96.0	8,254	6,565	8,173	99.0
서울	3,310	2,322	3,102	93.7	3,504	2,525	3,400	97.0
부산	1,186	967	1,161	97.9	1,244	1,031	1,243	99.9
대구	815	609	780	95.7	868	692	887	102.1
인천	823	724	815	99.1	919	823	936	101.9
광주	460	379	438	95.2	516	444	528	102.4
대전	479	380	465	97.0	533	422	536	100.6
울산	339	277	338	99.5	374	311	387	103.6
경기	3,329	2,736	3,248	97.5	3,831	3,217	3,837	100.1
강원	521	494	542	104.0	558	536	599	107.4
충북	505	456	520	102.9	559	510	599	107.3
충남	660	635	685	103.8	749	716	807	107.8
전북	620	598	638	103.0	660	633	709	107.4
전남	666	671	692	103.9	681	691	727	106.7
경북	939	878	965	102.8	1,005	933	1,092	108.7
경남	1,056	943	1,062	100.6	1,151	1,034	1,201	104.3
제주	179	153	172	96.0	187	159	183	97.4

자료 : 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 결과(가구 주택 부문)

## ▶ 정보산업

부표 64 연도별 인터넷 이용 비율(인터넷 이용자수 100명당)

(단위 : %)

국가별		2007년	2008년	2009년
아시아	한국	78.8	81.0	81.6
	일본	74.3	75.4	76.8
	터키	28.6	34.4	35.3
북아메리카	캐나다	72.9	75.4	78.1
	멕시코	20.6	21.4	26.0
	미국	71.8	74.0	76.2
남아메리카	칠레	31.0	32.5	34.0
유럽	오스트리아	69.4	72.9	73.5
	벨기에	69.3	71.3	76.2
	체코	51.9	63.0	64.4
	덴마크	85.0	85.0	86.8
	핀란드	80.8	83.7	84.1
	프랑스	66.1	70.7	71.6
	독일	75.2	77.9	79.3
	그리스	35.9	41.2	44.5
	헝가리	53.3	61.0	61.8
	아이슬란드	90.6	91.0	93.5
	아일랜드	60.6	65.3	67.4
	이탈리아	40.8	44.5	48.8
	룩셈부르크	78.9	82.2	87.3
	네덜란드	85.8	87.4	89.6
	노르웨이	86.9	90.6	92.1
	폴란드	48.6	53.1	59.0
	포르투갈	42.1	44.1	48.3
	슬로바키아	61.8	71.3	75.2
	스페인	55.1	59.6	62.6
	스웨덴	82.0	89.1	90.8
스위스	66.8	69.8	72.4	
영국	75.1	78.4	83.6	
오세아니아	오스트레일리아	68.6	72.0	74.0
	뉴질랜드	69.8	72.0	84.4

자료 :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국제통계, OECD 국가의 주요통계지표

부표 65 20대 대비 연령별 정보화 수준

(단위 : %)

연령별	부문별	2005년	2006년	2007년
19세이하	종합부문	-	98.6	96.7
	접근부문	-	100.6	99.8
	역량부문	-	97.8	94.6
	양적활용부문	-	99.2	97.2
	질적활용부문	-	93.5	89.9
7-19세	종합부문	99.7	-	-
	접근부문	100.5	-	-
	역량부문	99.8	-	-
	양적활용부문	100.7	-	-
	질적활용부문	95.8	-	-
20대	종합부문	100.0	100.0	100.0
	접근부문	100.0	100.0	100.0
	역량부문	100.0	100.0	100.0
	양적활용부문	100.0	100.0	100.0
	질적활용부문	100.0	100.0	100.0
30대	종합부문	87.1	90.8	92.4
	접근부문	96.7	99.5	99.9
	역량부문	72.6	75.1	79.6
	양적활용부문	86.2	91.1	92.3
	질적활용부문	79.2	84.8	86.7
40대	종합부문	68.3	74.9	78.9
	접근부문	92.3	93.4	97.5
	역량부문	43.2	52.2	55.6
	양적활용부문	60.9	70.3	75.1
	질적활용부문	49.2	61.5	64.8
50대이상	종합부문	37.5	45.3	47.6
	접근부문	65.8	75.6	81.2
	역량부문	14.7	20.6	20.9
	양적활용부문	24.0	30.5	31.8
	질적활용부문	19.5	26.7	26.4

자료 :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교통/정보통신,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

주 : 20대를 100으로 비교함

부표 66 60세 이상 고령자 인터넷 이용률 상위 10위(%)

(단위 : %)

울산 남성	대전 남성	서울 남성	부산 남성	인천 남성	광주 남성	경기 남성	전북 남성	대구 남성	부산 여성	강원 남성
43.0	43.0	40.4	37.3	37.2	35.7	33.2	26.4	26.1	25.0	23.8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2010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_요약보고서

부표 67 연령대별 인터넷 쇼핑물 이용률(%)-만12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

(단위 : %)

	12-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전체
2009년	68.0	88.6	73.5	44.1	30.1	16.0	62.3
2010년	70.5	90.1	77.4	48.0	32.7	17.7	64.3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2010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_요약보고서

부표 68 연령대별 인터넷뱅킹 이용률(%)-만12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

(단위 : %)

	12-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전체
2009년	12.6	58.8	57.0	38.0	28.7	16.2	41.2
2010년	13.3	61.1	59.4	39.3	29.4	16.4	42.3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2010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_요약보고서

부표 69 연령대별 인터넷 주식거래 이용률(%)-만18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

(단위 : %)

	18-29세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전체
2009년	8.4	10.9	8.9	7.7	5.9	9.0
2010년	9.0	11.9	9.8	8.2	6.7	9.8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2010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_요약보고서

부표 70 연령대별 전자책 이용 의향(%)-만12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

(단위 : %)

	12-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전체
2009년	91.5	89.6	83.8	72.6	63.1	30.7	78.7
2010년	99.4	99.1	99.4	99.3	99.4	99.9	99.3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2010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_요약보고서

## ▶ 농업

부표 71 농업 경영주 연령별 농업 경영 기간(2009년)

(단위 : 가구)

경지규모, 영농 형태, 시도별	전국	3년 이내	4-5년	6-7년	8-10년	11-20년	21-30년	31년 이상
계	1,194,715	16,608	27,071	50,783	28,793	138,993	149,796	782,672
20세미만	-	-	-	-	-	-	-	-
20 - 24세	65	65	-	-	-	-	-	-
25 - 29세	591	59	279	175	51	27	-	-
30 - 34세	4,113	544	709	1,206	699	954	-	-
35 - 39세	15,962	1,116	2,172	2,821	1,581	7,438	834	-
40 - 44세	39,327	1,758	2,224	4,986	3,156	17,379	9,801	23
45 - 49세	82,419	2,234	3,875	7,238	3,839	22,868	35,519	6,845
50 - 54세	134,514	2,621	4,178	7,769	4,160	22,218	42,299	51,269
55 - 59세	141,068	2,699	4,265	7,303	3,522	17,293	23,437	82,550
60 - 64세	182,306	2,443	4,109	8,767	4,183	17,191	14,958	130,655
65 - 69세	205,061	1,594	3,247	5,326	4,380	14,927	10,523	165,066
70 - 74세	214,559	1,013	1,698	3,656	2,267	11,932	7,175	186,819
75 - 79세	125,229	308	165	1,241	824	5,169	3,588	113,934
80세이상	49,502	155	151	294	129	1,601	1,661	45,511

자료 : 통계청, 농업조사, 각 연도

부표 72 연령계층별 농림어업 취업자

(단위 : 천명)

	총수	15~29세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1998년	2,397	105	8	97	283	444	640	925
1999년	2,302	103	7	96	249	417	581	952
2000년	2,243	79	5	74	218	404	553	989
2001년	2,148	67	6	61	184	382	518	998
2002년	2,069	51	4	46	145	372	489	1,013
2003년	1,950	48	4	44	127	341	449	985
2004년	1,824	36	3	33	105	305	417	961
2005년	1,813	29	3	26	83	286	420	994
2006년	1,781	29	2	26	80	270	411	992
2007년	1,723	26	2	24	79	258	403	957
2008년	1,686	23	1	22	74	239	404	947
2009년	1,648 (100.0)	25 (1.5)	2 (0.1)	23 (1.4)	75 (4.6)	227 (13.8)	404 (24.5)	918 (55.7)

- 자료 : 1. 통계청, 2009 경제활동인구연보  
 2. 농림수산물부, 2010 농림수산물 주요통계  
 주 : 1. 2000년부터 한국표준산업분류 8차 개정 기준  
 2. 2005년부터는 연령구간 10세 단위로 구분  
 3. 괄호( )안의 숫자는 연령별 비중임

부표 73 시도별 귀농, 귀촌 현황

(단위 : 가구)

구분	계	90년-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38,446	17,713	1,154	880	769	885	1,302	1,240	1,754	2,384	2,218	4,080	4,067
부산	16	15	-	-	-	-	-	-	1	-	-	-	-
대구	52	52	-	-	-	-	-	-	-	-	-	-	-
인천	189	95	1	-	1	-	16	28	2	-	-	26	20
광주	68	53	3	-	-	5	6	-	1	-	-	-	-
대전	4	2	-	1	-	-	-	-	1	-	-	-	-
울산	31	24	-	-	-	-	-	7	-	-	-	-	-
경기	2,095	1,432	54	57		44	19	28	57	89	126	102	69
강원	3,126	1,373	151	151		156	227	102	134	121	141	232	312
충북	2,604	1,184	35	25	43	56	141	68	172	196	142	270	272
충남	3,330	1,470	111	28	74	46	137	237	184	157	227	335	324
전북	5,210	1,847	166	127	90	145	166	73	250	467	385	883	611
전남	5,960	3,297	230	77	67	51	37	89	249	257	289	549	768
경북	8,789	3,621		115	218	86	334	359	378	772	485	1,118	1,112
경남	6,046	2,787	119	243	210	265	203	242	267	277	373	525	535
제주	926	461	93	56	22	31	16	7	58	48	50	40	44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2010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

부표 74 연령별 귀농, 귀촌 현황

(단위 : 가구)

구분	계	90년-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38,446 (100.0)	17,713	1,154	880	769	885	1,302	1,240	1,754	2,384	2,218	4,080	4,067
29세이하	2,850 (7.4)	1,643	65	38	62	64	34	54	70	44	31	686	59
30-39세	12,759 (33.2)	8,135	515	316	258	239	243	287	315	386	328	1,184	553
40-49세	11,104 (28.9)	4,574	391	293	238	260	402	393	565	766	699	1,294	1,229
50-59세	7,885 (20.5)	2,426	155	187	149	201	423	319	481	706	632	749	1,457
60세이상	3,848 (10.0)	935	28	46	62	121	200	187	323	482	528	167	769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2010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

주 : 괄호( )안의 숫자는 연령별 비중임

부표 75 2010년 귀농현상

(단위 : 가구, 명, %)

구분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인천
가구수 (비율)	4,067 (100.0)	69 (1.7)	312 (7.7)	272 (6.7)	324 (8.0)	611 (15.0)	768 (18.9)	1,112 (27.3)	535 (13.2)	44 (1.1)	20 (0.5)
인구수 (비율)	9,732 (100.0)	180 (1.8)	641 (6.6)	635 (6.5)	756 (7.8)	1,511 (15.5)	1,901 (19.5)	2,538 (26.1)	1,388 (14.3)	136 (1.4)	46 (0.5)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2010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

부표 76 2010년 연령별 귀농현상

(단위 : 명, %)

귀농가구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4,067	59 (1.5)	553 (13.6)	1,229 (30.2)	1,457 (35.8)	665 (16.4)	98 (2.4)	6 (0.1)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2010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

주 : 괄호( )안의 숫자는 연령별 비중임

부표 77 2010년 귀농 후 농업 주종사 분야

(단위 : 명, %)

계	경종	원예(시설)	과수	축산	기타
4,067	1,918 (47.2)	442 (10.9)	722 (17.8)	314 (7.7)	671 (16.5)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2010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

주 : 1. 경종(벼, 배추 등 노지작물), 원예(시설작물)

2. 괄호( )안의 숫자는 분야별 비중임

부표 78 2010년 귀농 전 직업현황

(단위 : 명, %)

계	자영업	사무직	생산직	영업직	건설	공무원	주부	학생	무직	기타
4,067	1,348 (33.1)	771 (19.0)	441 (10.8)	194 (4.8)	281 (6.9)	141 (3.5)	171 (4.2)	10 (0.20)	156 (3.8)	554 (13.6)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2010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

주 : 괄호( )안의 숫자는 직업별 비중임



부표 79 농촌 계속 거주 의향

(단위 : 명, %)

구분별	전체	지역		연령				
		면	읍	30대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이상
응답자수	2,000	1,261	739	215	174	398	539	673
계속살겠다	94.2	95.1	92.6	76.0	87.2	94.7	98.0	98.4
농촌을떠나겠다	5.8	4.9	7.4	24.0	12.8	5.3	2.0	1.6

자료 : 1. 농촌진흥청, 농촌생활자기표조사  
 2. 통계청, 중앙행정기관, 농촌진흥청, 농촌생활자기표조사, 인구 및 사회부문

부표 80 농촌 계속 거주 이유

(단위 : 명, %)

구분별	전체	지역		연령				
		면	읍	30대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이상
응답자수	1,877	1,196	681	164	151	377	526	660
선조대대로살아온곳이라서	52.1	52.4	51.5	26.6	25.2	46.4	58.9	62.5
자연환경이좋아서	16.9	15.3	19.7	25.9	29.0	19.5	12.4	14.1
자녀교육심신건강을위해	1.0	0.5	1.7	5.1	1.4	0.4	0.7	0.3
농촌/농업이좋아서	13.3	14.7	10.9	9.1	14.8	16.8	14.5	11.1
땅값등지가상승이대되어	1.2	0.7	2.2	3.5	3.5	1.1	0.2	1.0
도시의번잡함이싫어서	10.7	10.8	10.6	26.0	20.3	11.0	8.9	6.0
기타	4.8	5.6	3.4	3.8	5.8	4.8	4.4	5.0

자료 : 1. 농촌진흥청, 농촌생활자기표조사  
 2. 통계청, 중앙행정기관, 농촌진흥청, 농촌생활자기표조사, 인구 및 사회부문

▶ **교육산업 및 교통산업**

부표 81 비형식 평생교육기관 총개황

(단위 : 개, 명)

기관 및 시도별	교육기관 상황별	2008년	2009년	2010년
소계	기관수	2,620	2,807	3,213
	학습자수	11,403,373	22,454,539	27,026,042
	교강사수	55,292	57,177	64,605
유·초·중등 학교부설	기관수	12	11	12
	학습자수	6,236	2,193	3,283
	교강사수	119	81	82
대학부설	기관수	378	380	388
	학습자수	615,923	758,586	883,196
	교강사수	13,351	12,496	14,139
원격형태	기관수	611	674	781
	학습자수	8,425,854	19,083,102	23,123,612
	교강사수	7,817	10,214	13,602
사업장부설	기관수	244	268	298
	학습자수	1,095,290	1,169,182	1,236,890
	교강사수	15,095	15,096	15,792
시민단체부설	기관수	244	275	386
	학습자수	109,582	132,987	169,401
	교강사수	2,825	2,256	3,171
언론기관부설	기관수	92	107	203
	학습자수	113,747	126,862	119,007
	교강사수	1,197	1,530	2,233
지식·인력개발형태	기관수	681	713	761
	학습자수	562,005	633,724	768,736
	교강사수	8,710	8,690	8,104
평생학습관	기관수	358	379	384
	학습자수	474,736	547,903	721,917
	교강사수	6,178	6,814	7,482

기관 및 시도별	교육기관 상황별	2008년	2009년	2010년
〈평생학습관〉	기관수	25	25	28
	학습자수	60,900	65,759	48,797
	교강사수	1,300	1,015	877
학원	기관수	70,213	-	4,948
	학습자수	4,689,053	-	736,877
	교강사수	187,020	-	20,096
주민자치센터	기관수	2,621	2,605	2,646
	학습자수	-	-	-
	교강사수	-	-	-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2008

주 : 문항응답자(참여의사가 있었으나 불참한 사람)(n=9,410,530)

## ■ 고령친화산업 분야별 원고 집필진

구분	집필자
고령친화 의료기기산업	강태건(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정책연구실장)
고령친화 주거산업	김정근(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고령친화 식품산업	박기환(중앙대학교 교수)
고령친화 의약품산업	박혜경(의약품정책연구소 연구실장)
고령친화 화장품산업	이강태(코리아나 팀장) 임두현(아모레퍼시픽 부장)
고령친화 금융산업	전영선(주시니어파트너즈 팀장)
고령친화 용품산업	한국고령친화산업용품협회

##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 및 산업분석

---

발행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발행인 / 고 경 화

발행일 / 2011년 11월 30일

인쇄처 / 신생용사촌인쇄정보(주)

전화 : 02)426-4415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www.khidi.or.kr](http://www.khidi.or.kr)